

2020  
청소녀배서



여성가족부



# 발간사



우리사회는 인구구조의 변화, 제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 급격한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정책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미래세대의 성장을 도와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정책의 특성을 진단하고, 새로운 전환기를 바로 바라보는데 있어서 유의한 자료가 될 청소년 참여, 활동, 안전, 복지 등 분야별 청소년정책의 주요성과와 현황을 담은 「2020 청소년백서」를 발간합니다.

2020년에는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정책으로 전환을 위해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확대하고,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건강을 지원하고, 인터넷 중독, 신종 불법·유해사이트 등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2020 청소년백서」가 정부부처, 지자체, 청소년 학계 및 시설·단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업무에 자주 활용되고, 청소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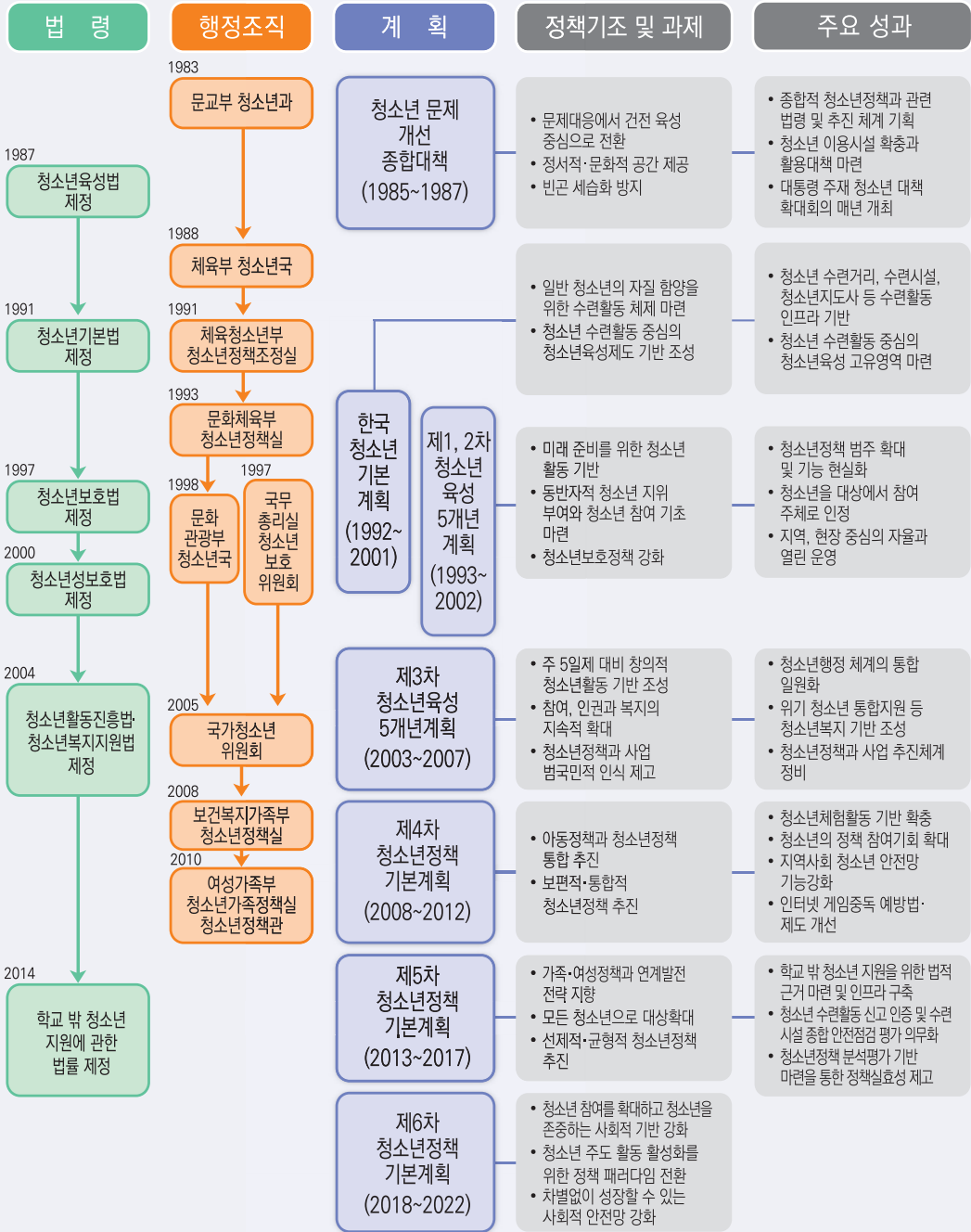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업무의 주무부처로서 청소년들이 주인이 되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청소년을 포함한 정책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여, 정책에 담아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서발간에 도움을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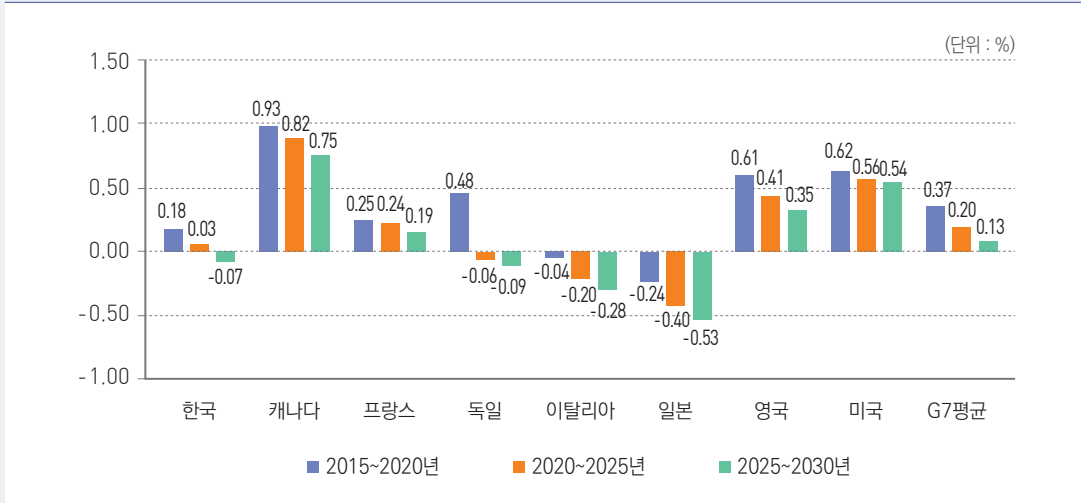
여성가족부장관 정 영 애

# 청소년정책의 변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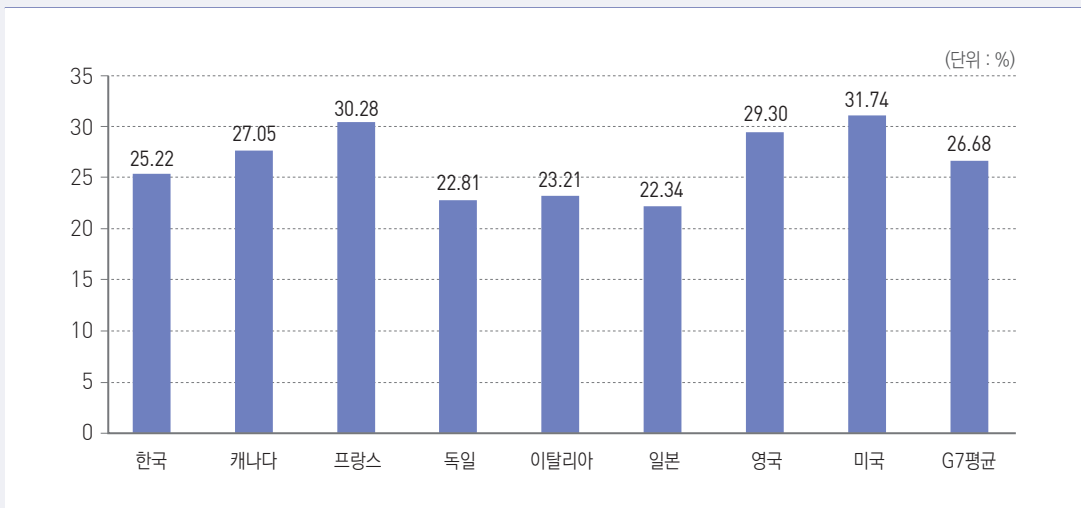


## | 인구 성장률 |



주 : 인구 성장률(%)은 특정 연도간의 평균 인구 증가(감소)율을 의미하며,  $\ln(Pt/P0)/t$ 로 계산함.  
 자료 : UN(2020). World Population Prosp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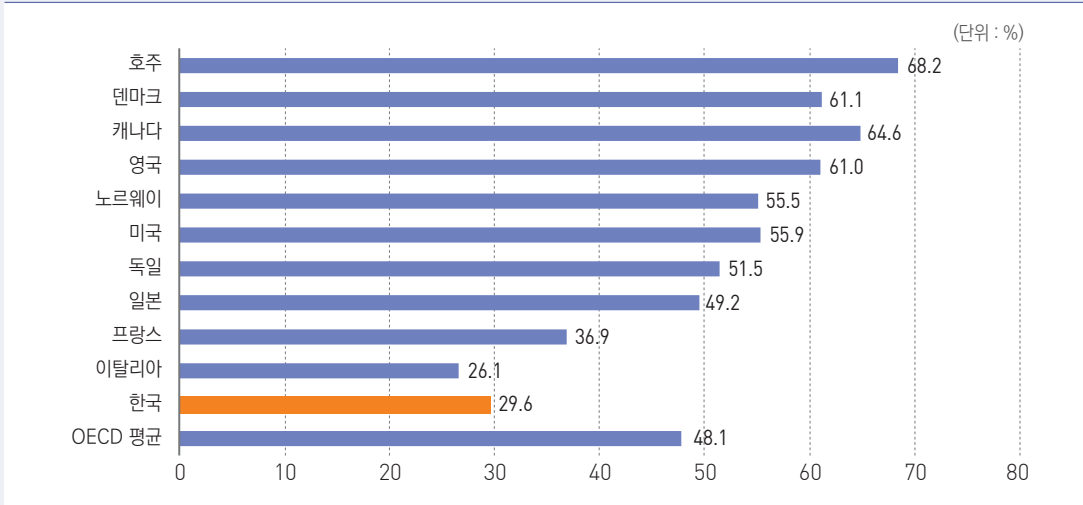
## | 전체 인구 대비 아동·청소년(0~24세) 인구 |



주 : 2018년 기준 <https://www.cia.gov>에서 2020. 11. 18. 인출.  
 자료 : CIA World Factbook(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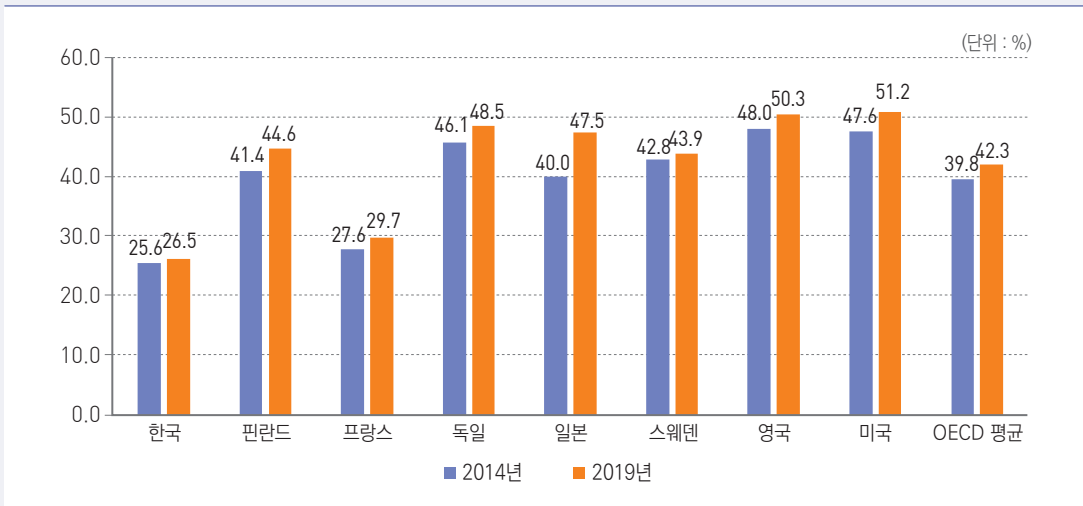
# 청소년정책의 변천과정

## | 청소년(15~24세) 경제활동참가율 국제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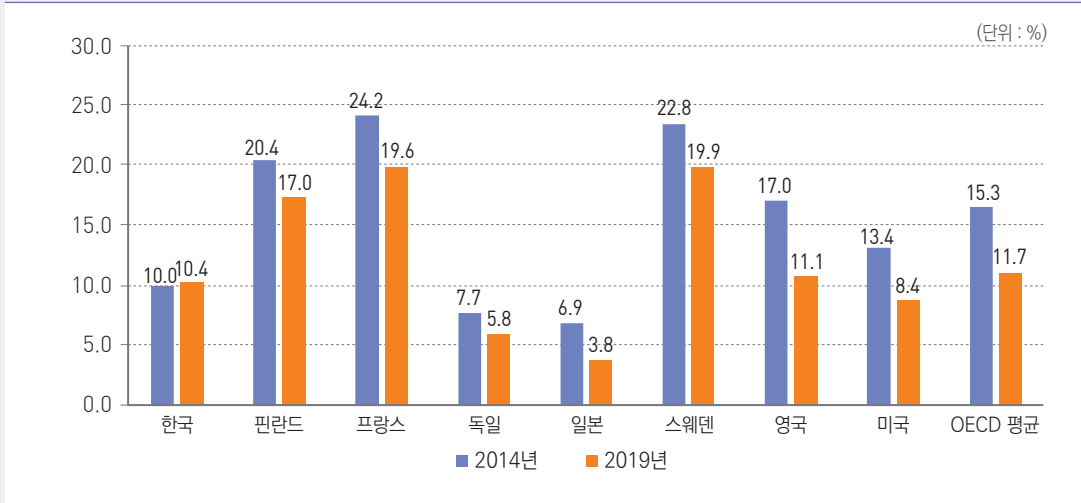
자료 : OECD(2020). 2019 Labour Market Statistics.

## | 청소년(15~24세) 고용률(2014/201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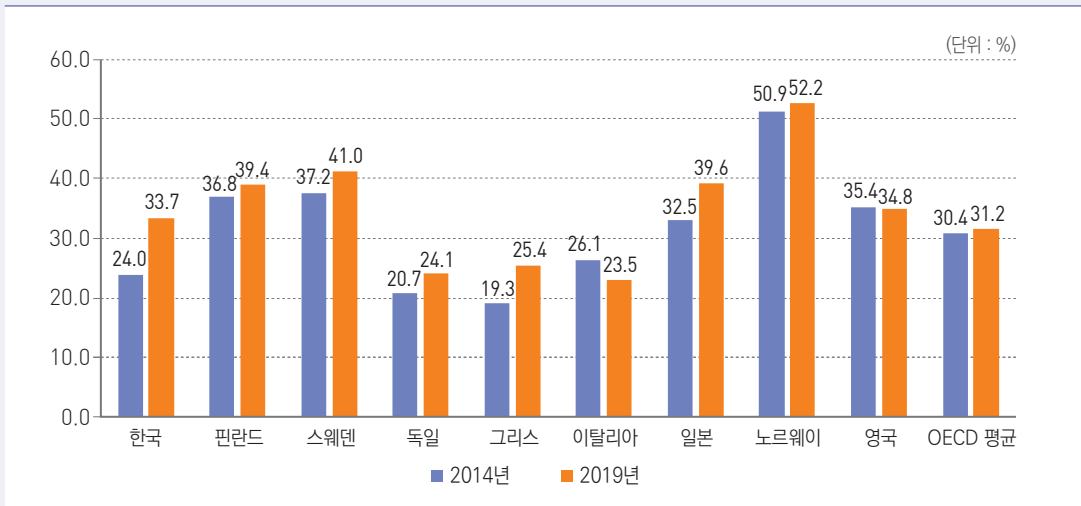
자료 : OECD(2020). Labour Market Statistics.

## | 청소년(15~24세) 실업률(2014/2019) |



자료 : OECD(2020). Labour Market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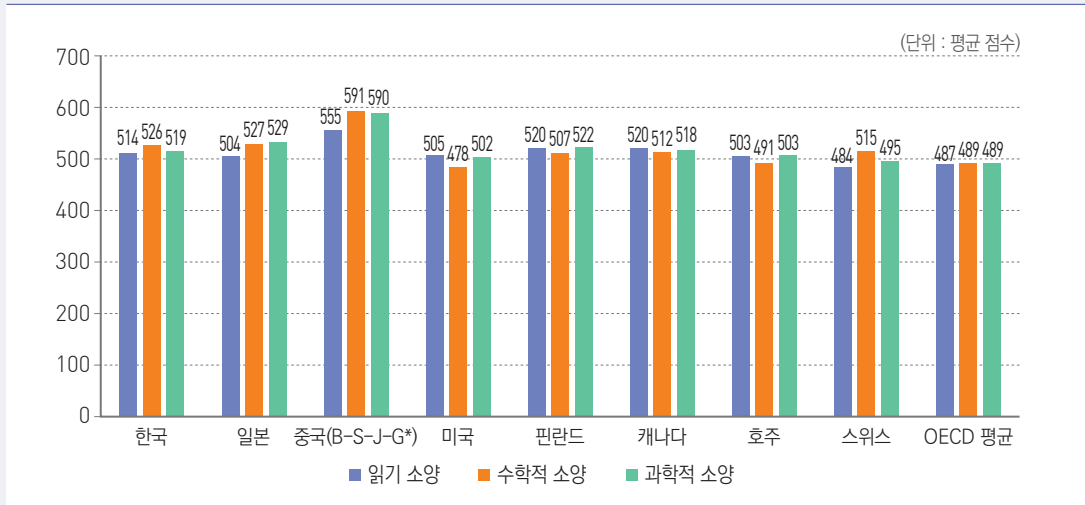
## | 고용된 청소년(15~24세) 중 파트타임 비율(2014/2019) |



자료 : OECD(2020). Labour Market Statistics.

# 청소년정책의 변천과정

## | PISA 결과 국제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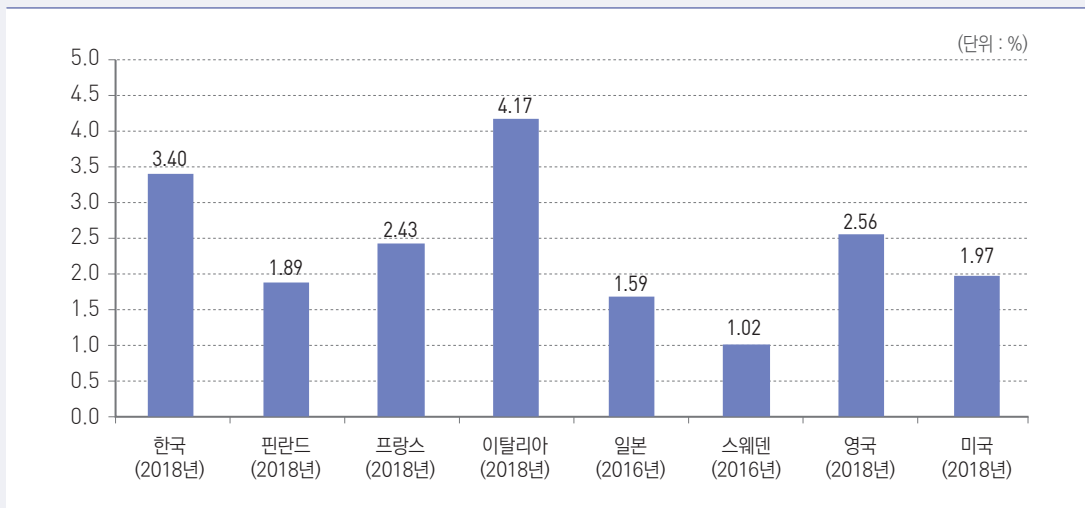


주 : 1)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는 3년 주기로 실시함.

2) B-S-J-G는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 장쑤성, 광둥성 지역을 의미함.

자료 : OECD(2020). PISA 2018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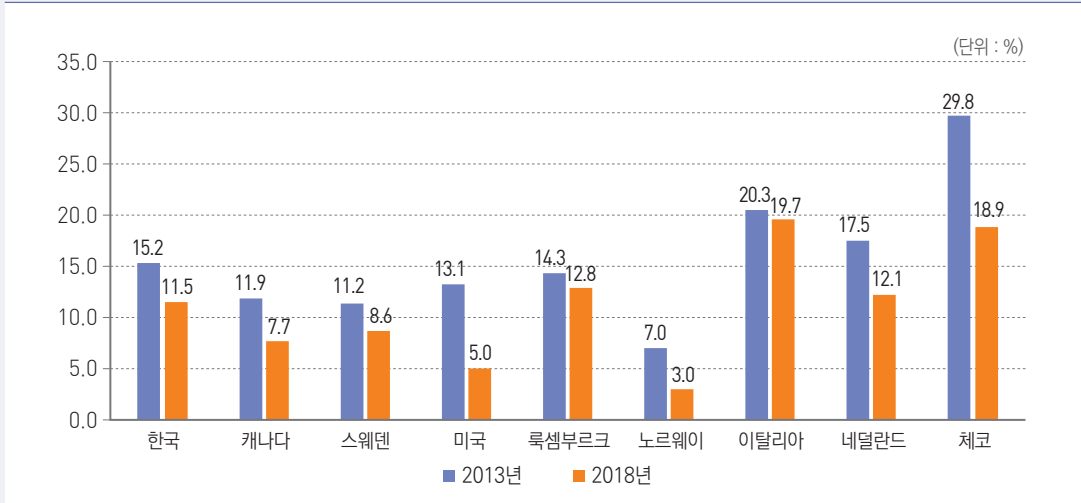
## | 중등교육 학령기의 학교 밖 청소년 비율 |



주 : 국가별 중등교육 학령기의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을 산출하는 연령 대상에 대한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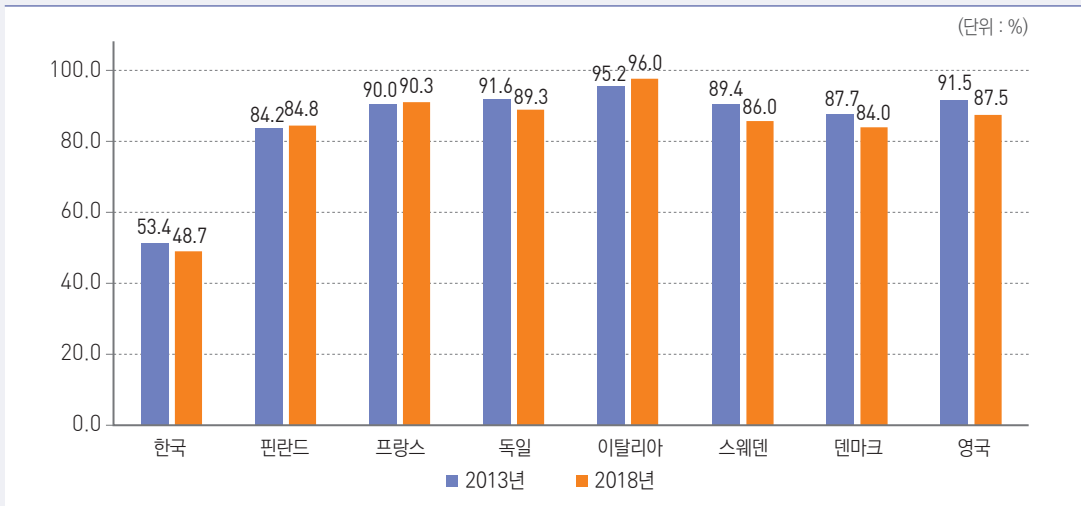
자료 : UNESCO(2020). UIS Statistics. Education.

## | 청소년(15~24세) 흡연율(2013/2018) |



주 : 흡연 여부를 묻는 질문에 매일 또는 30번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  
 자료 : OECD(2020). Non-Medical Determinants of Heal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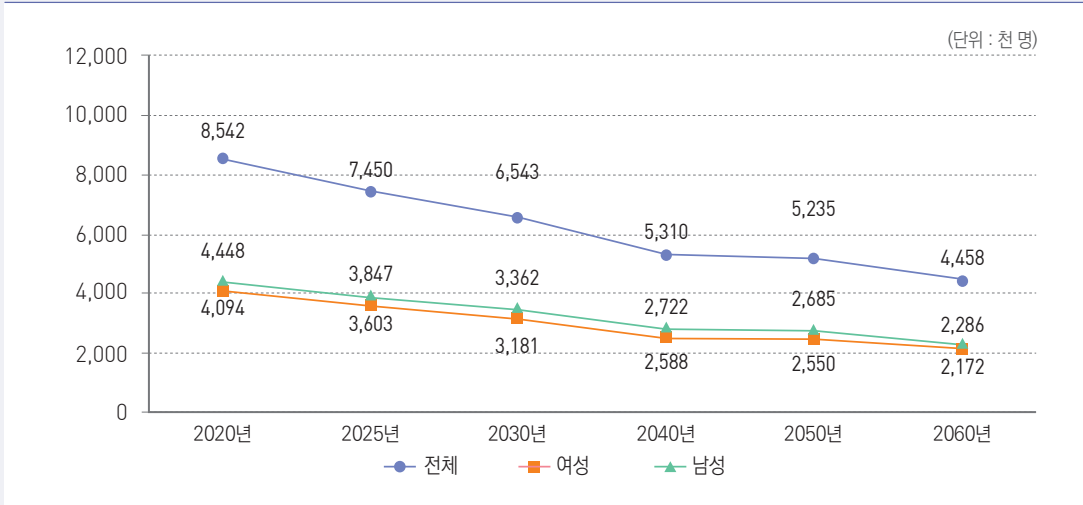
## | 청소년(15~24세)의 주관적 건강상태(2013/2018) |



주 :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응답한 비율.  
 자료 : OECD(2020). Health Status. Morbidity. Perceived health status by 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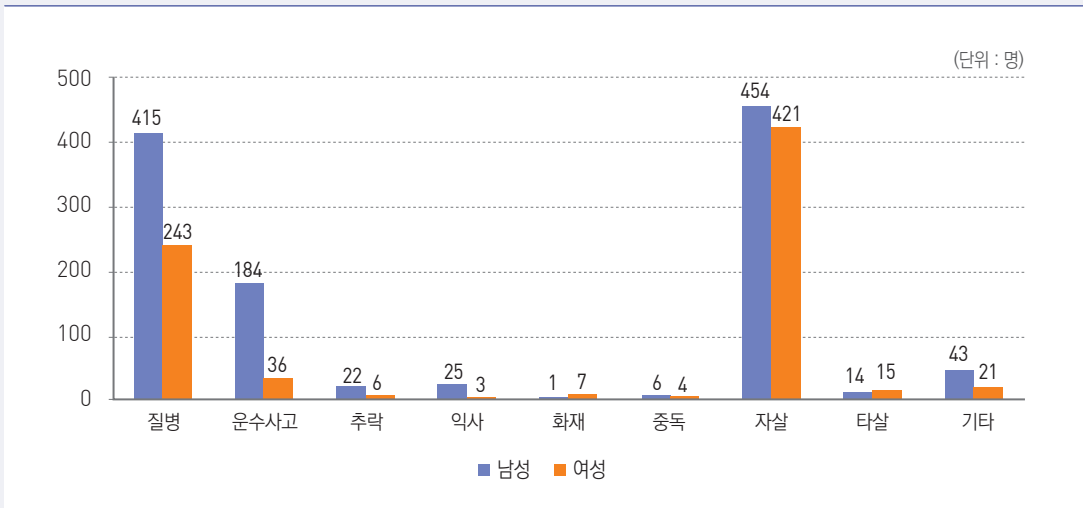
# 청소년정책의 변천과정

## | 청소년(9~24세) 인구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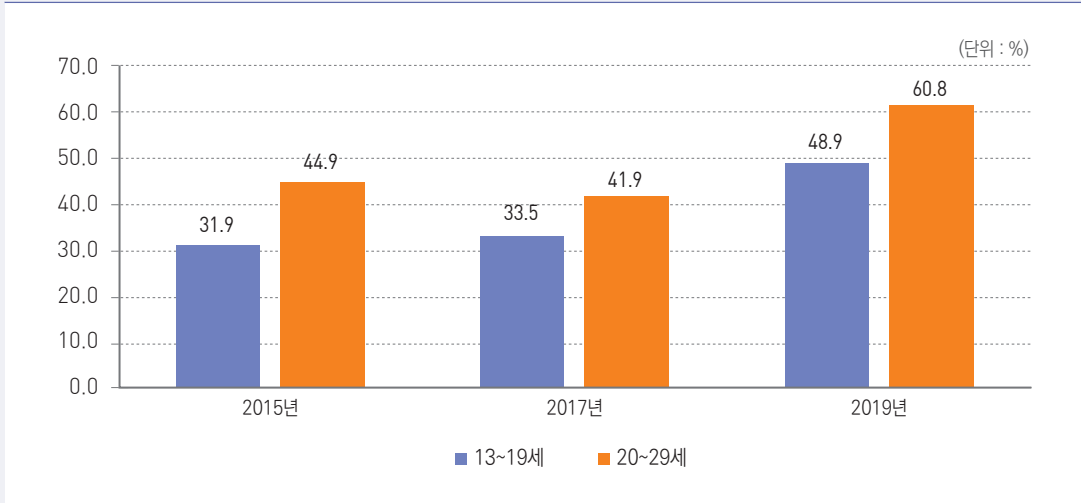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2020). 장래인구추계.

## | 청소년(10~24세) 사망 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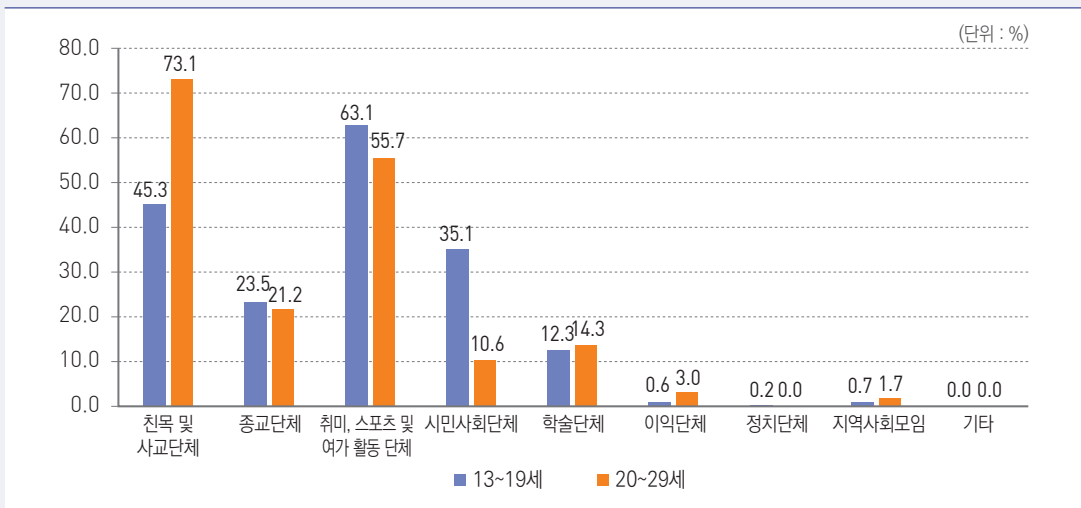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2020). 2019년 사망원인통계.

## | 청소년(13~19세) 단체 참여 경험 유형 |



자료 : 통계청(각 년도),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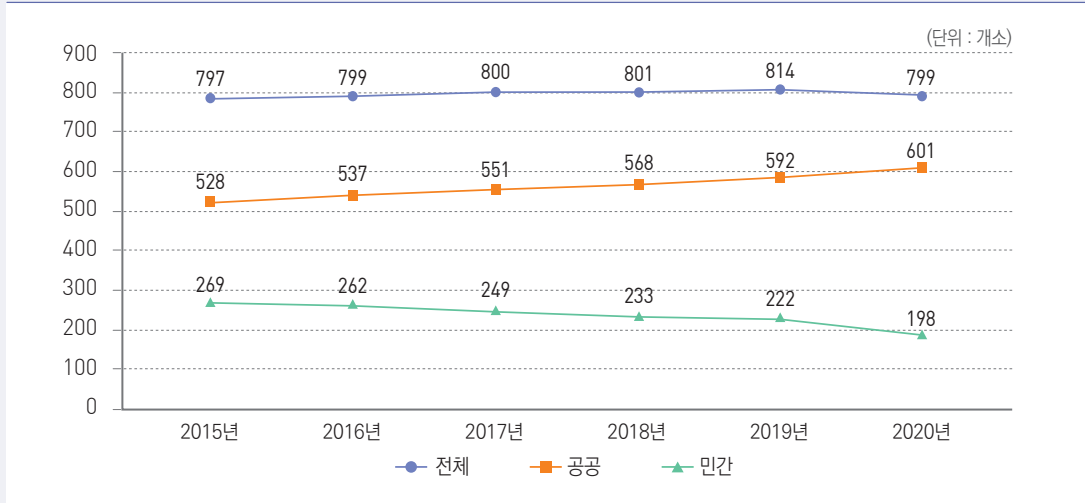
## | 청소년(13~19세) 단체 참여 이유 |



자료 : 통계청(2019),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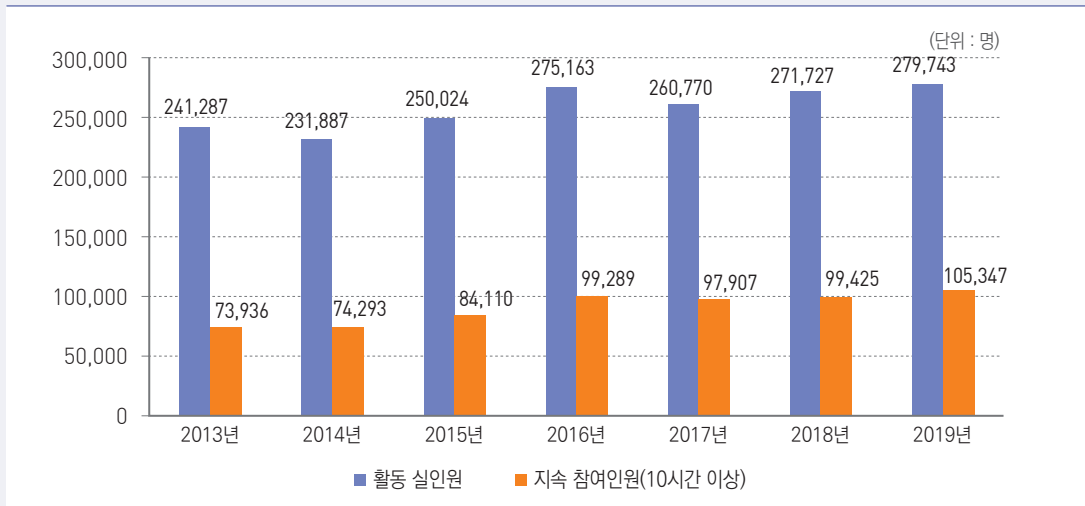
# 청소년정책의 변천과정

## |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



자료 : 여성가족부(2020).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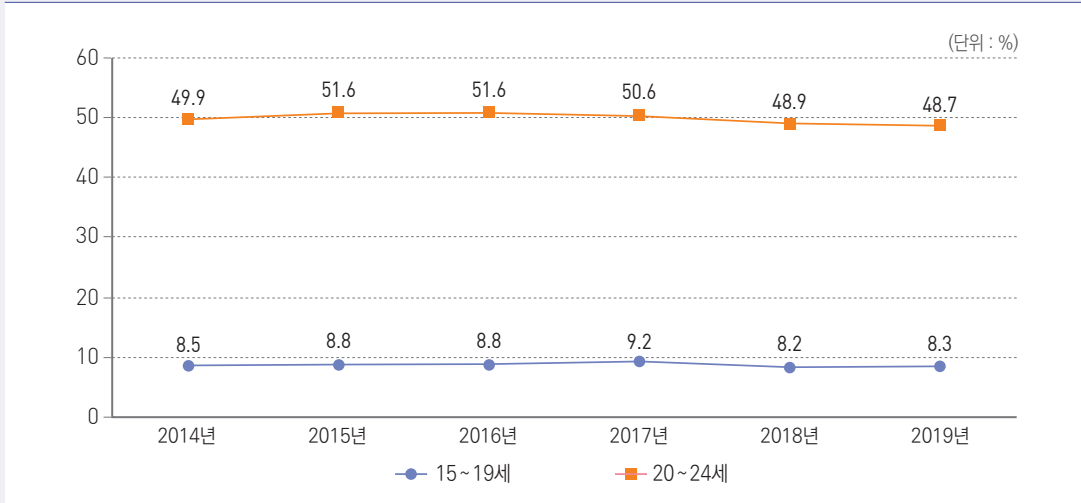
## |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인원 |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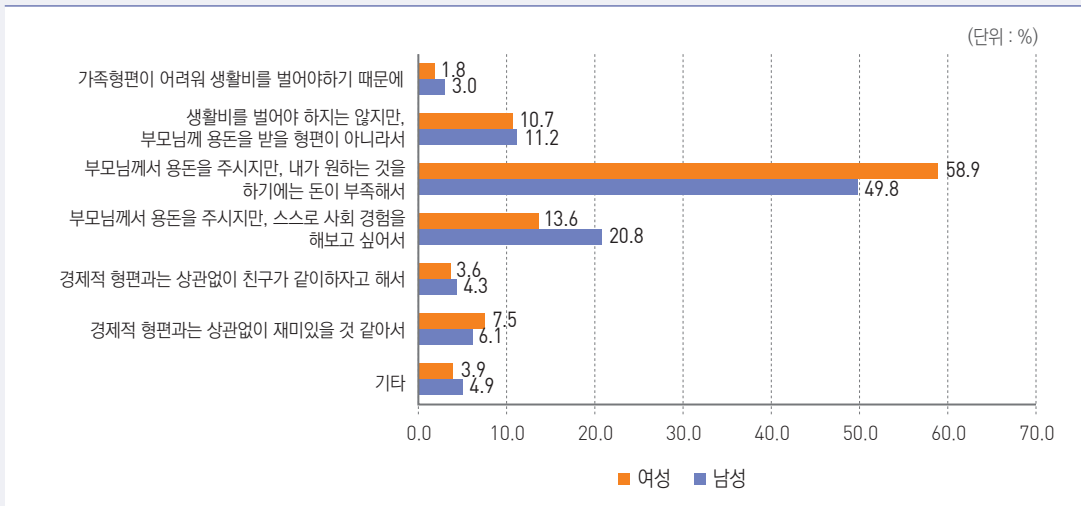


## | 청소년(15~24세) 경제활동 참가율 |



자료 : 통계청(2020).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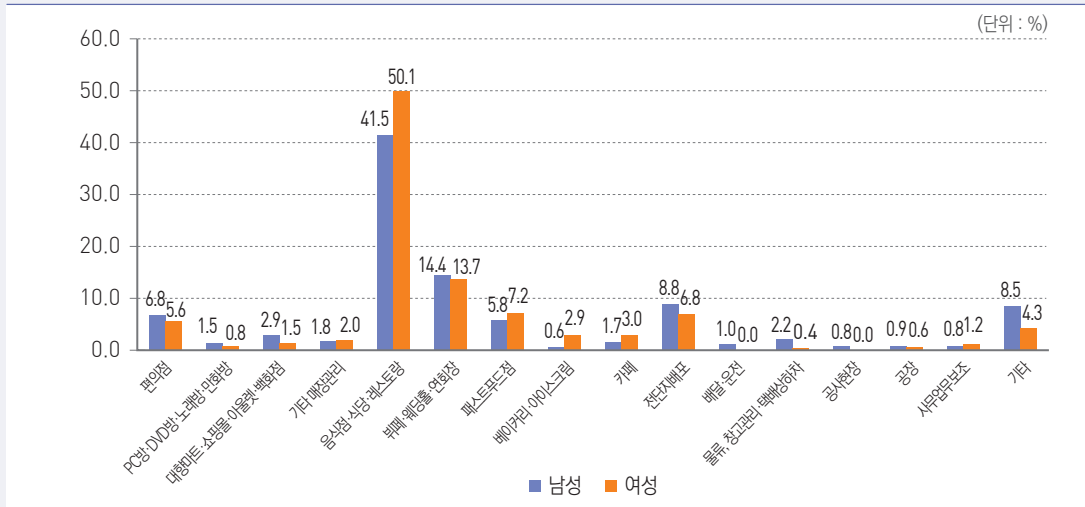
## | 청소년(만 10~18세) 아르바이트 목적 |



자료 : 여성가족부(2019). 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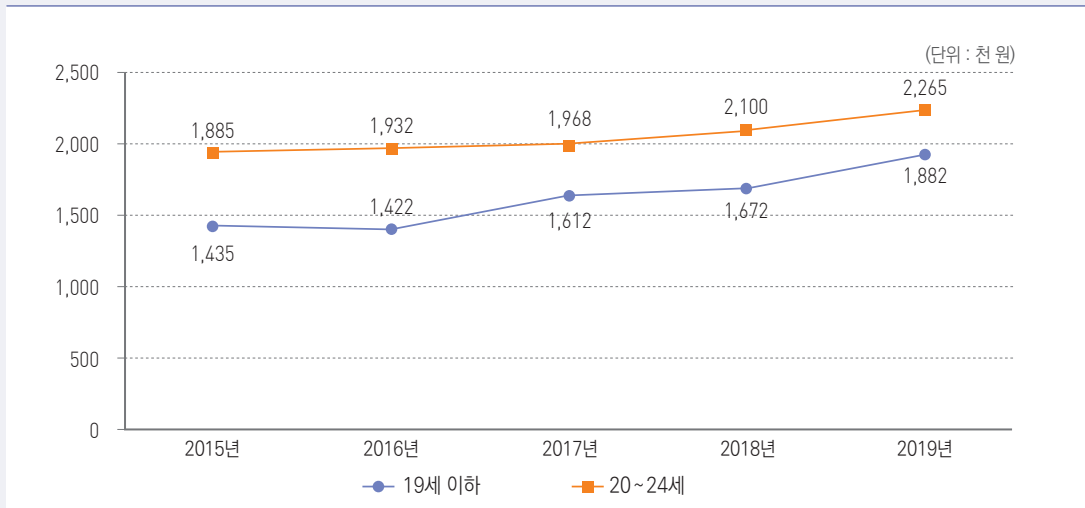
# 청소년정책의 변천과정

## | 청소년(만 10~18세) 아르바이트 업종별 참여율 |



자료 : 여성가족부(2019). 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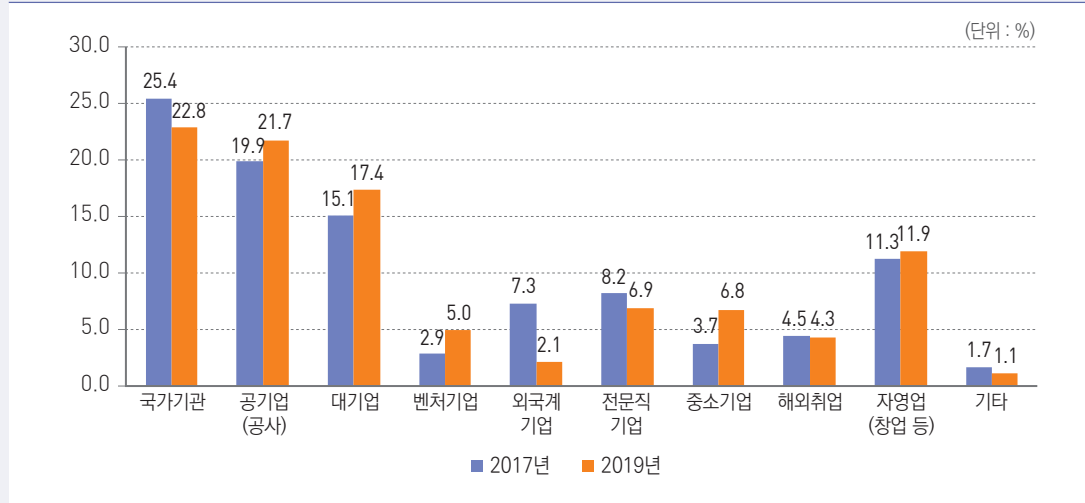
## |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 수준 |



주 : 임금 수준은 월 임금 총액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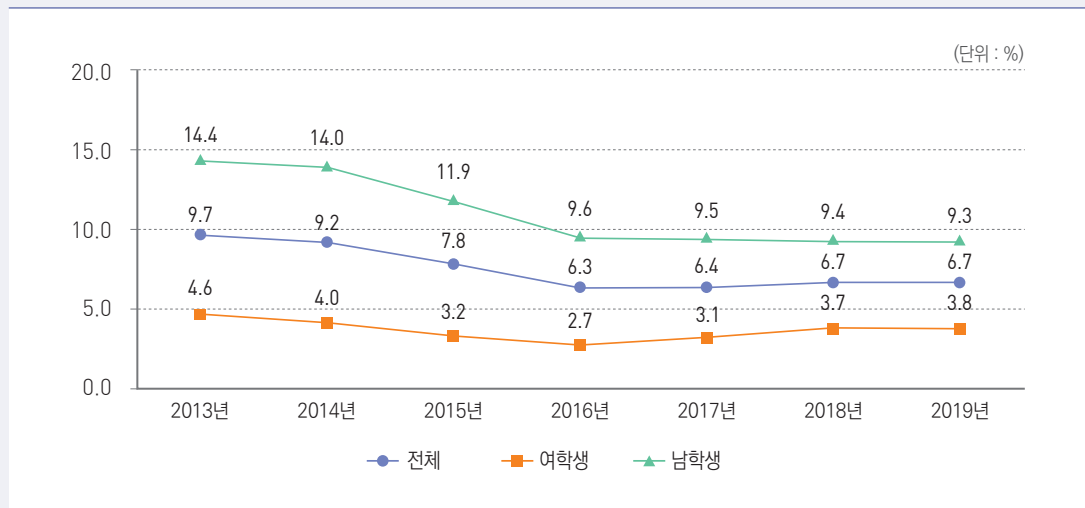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2020).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 청소년(13~29세)이 선호하는 직장 |



자료 : 통계청(각 년도),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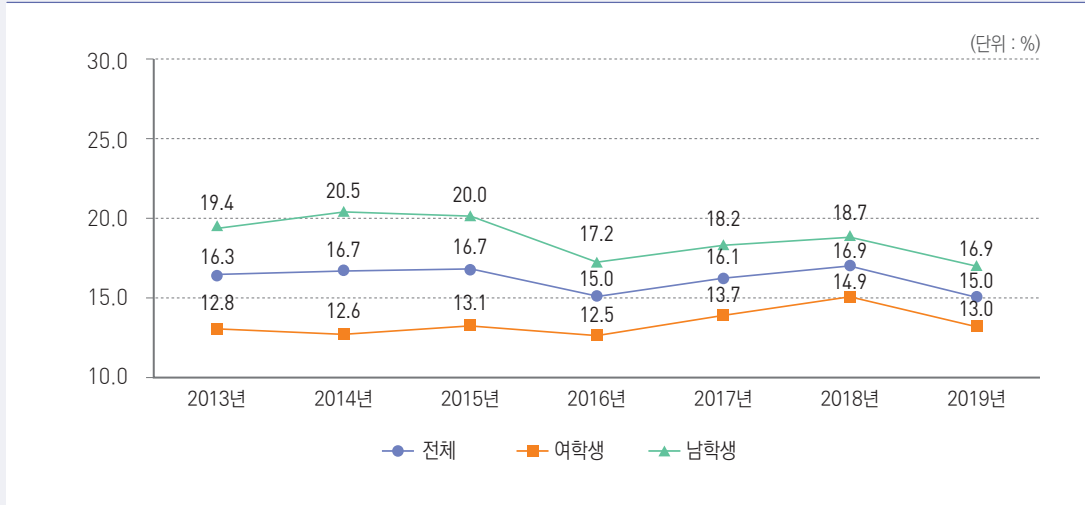
## | 청소년(중·고생) 현재 흡연율 추이 |



주 : 청소년 현재 흡연율은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비율임.  
 자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교육부(각 년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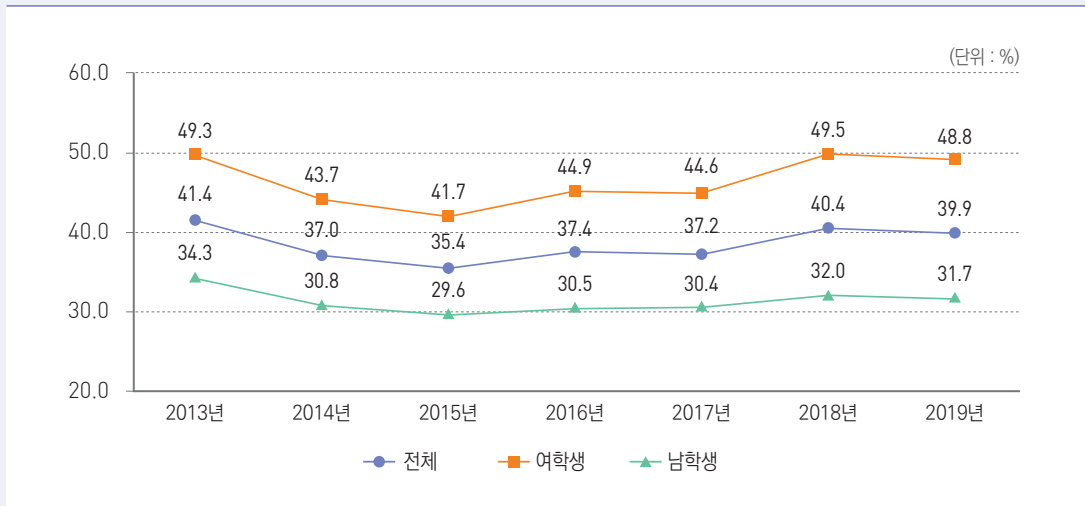
# 청소년정책의 변천과정

## | 청소년(중·고생) 현재 음주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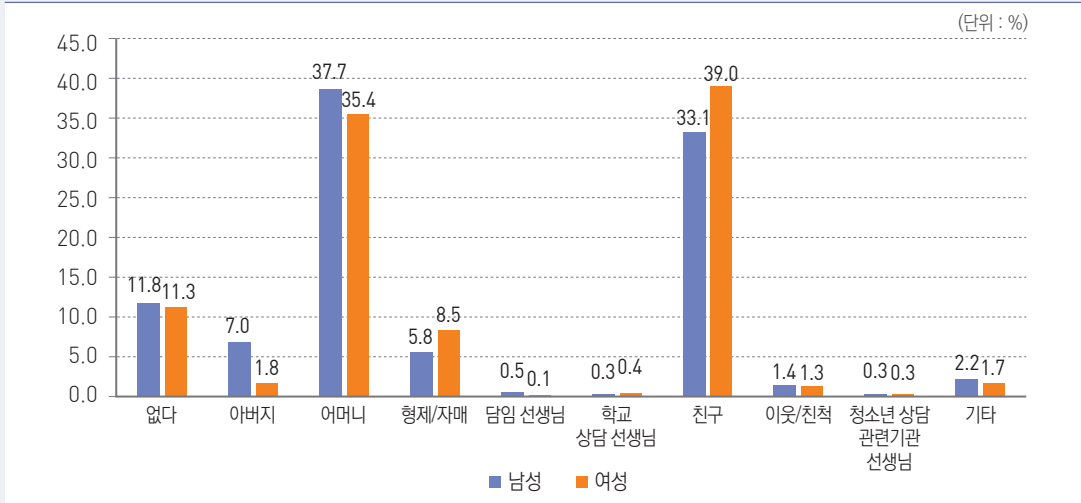
주 : 청소년 현재 음주율은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임.  
 자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교육부(각 년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 | 청소년(중·고생) 스트레스 인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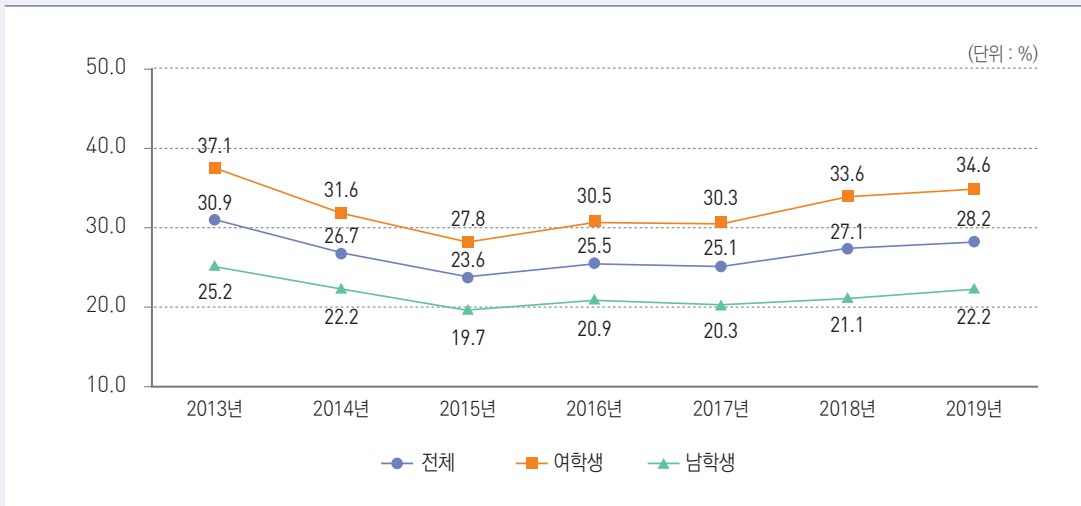
주 : 스트레스 인지율은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인 사람의 비율임.  
 자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교육부(각 년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 | 고민거리를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 |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0).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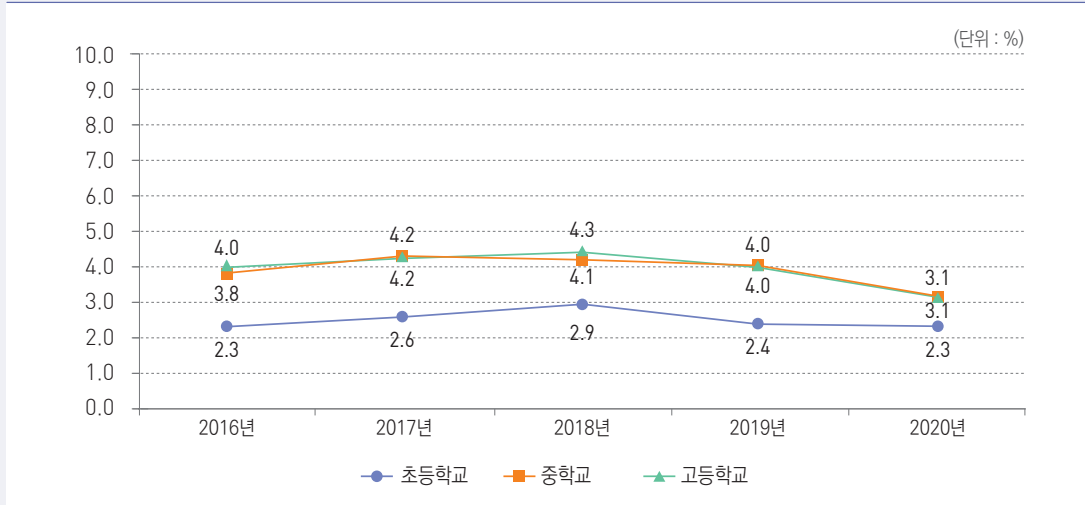
## | 청소년(중·고생) 우울감 경험률 |



주 : 우울감 경험률은 최근 12개월 동안 2주 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임.  
 자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교육부(각 년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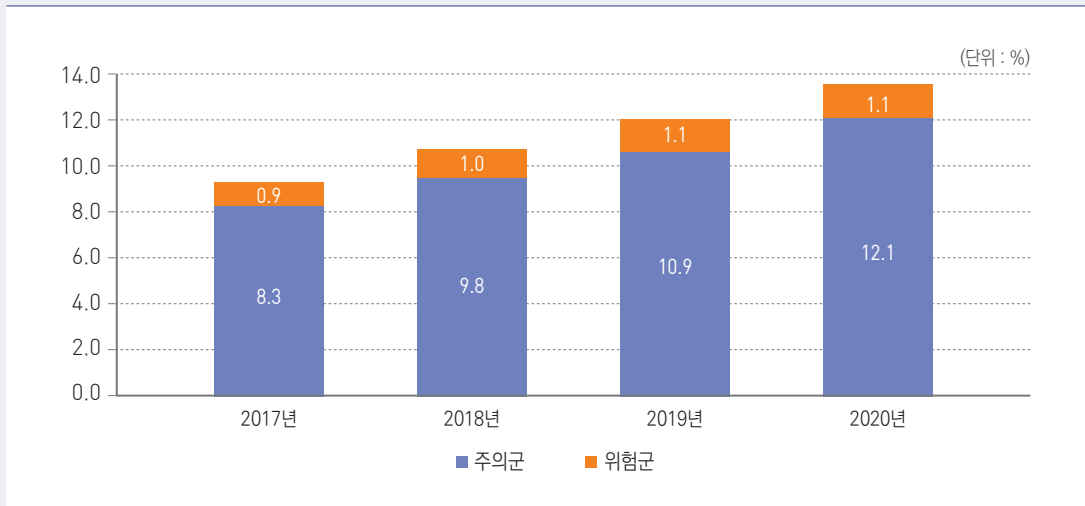
# 청소년정책의 변천과정

## | 청소년 가출 경험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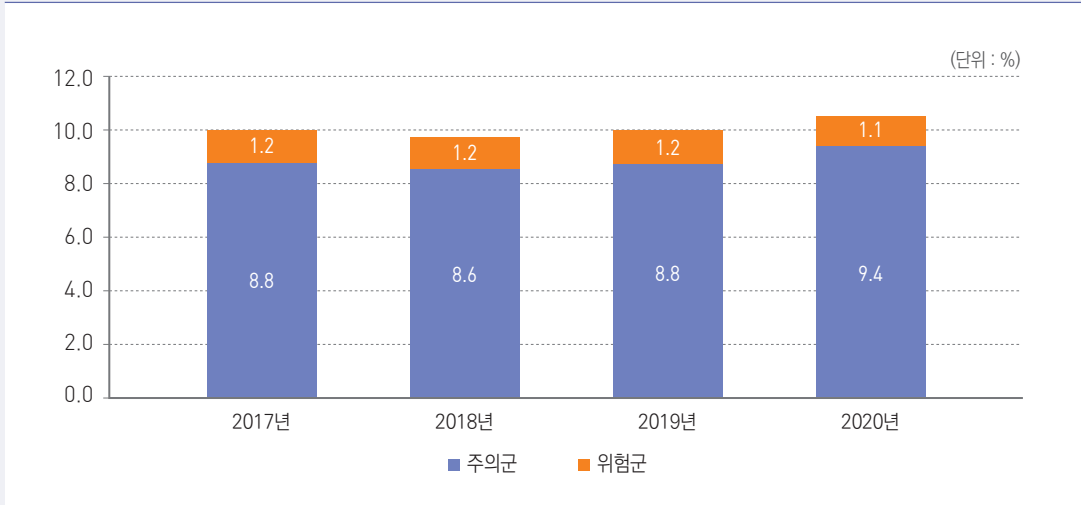
주 : 청소년 가출 경험률은 최근 1년 간 가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임.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0).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 청소년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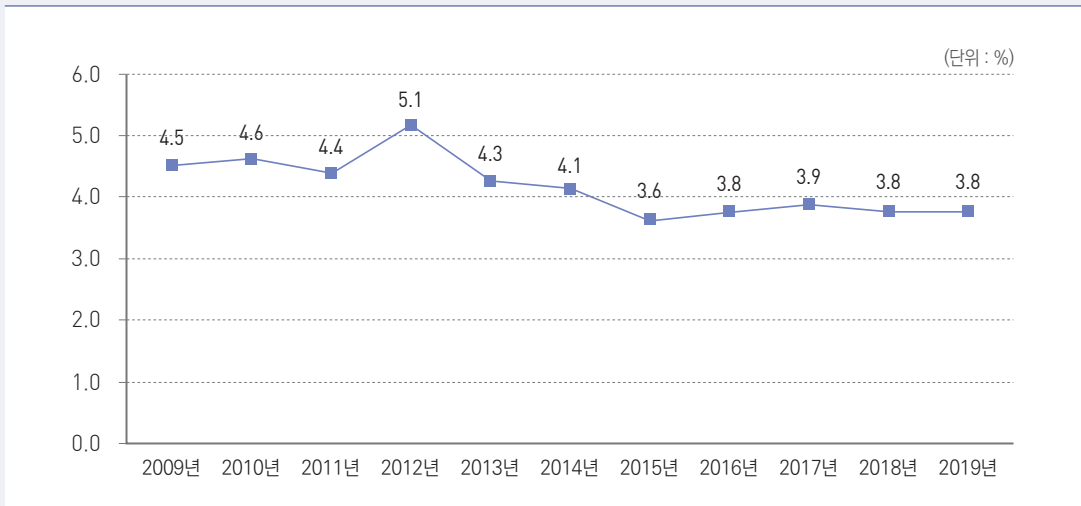
주 : 설문대상 청소년은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임.  
 자료 : 여성가족부(2020).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 |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 |



주 : 설문대상 청소년은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임.  
 자료 : 여성가족부(2020).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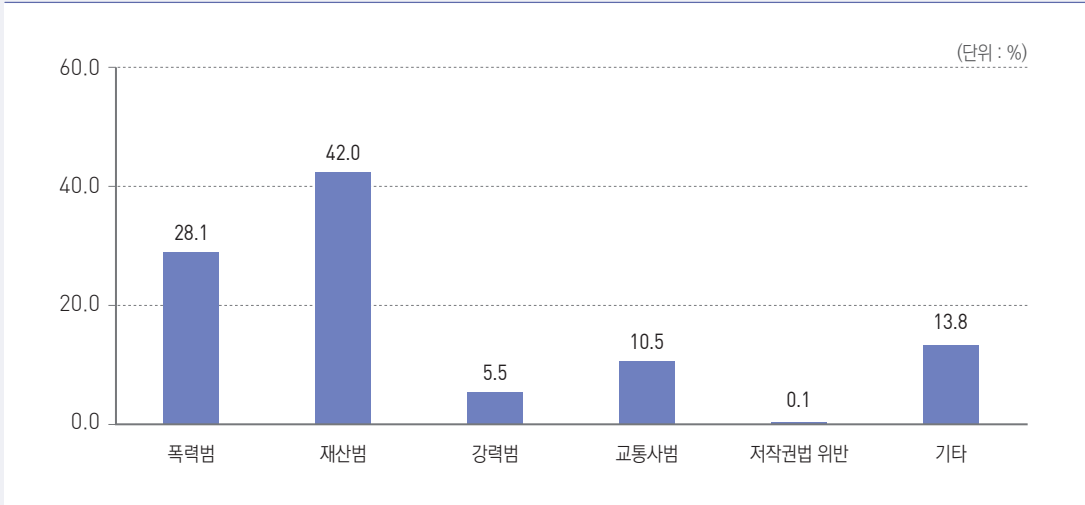
## | 전체 범죄대비 청소년 범죄의 비율 추이 |



자료 : 대검찰청(2009~2020). 범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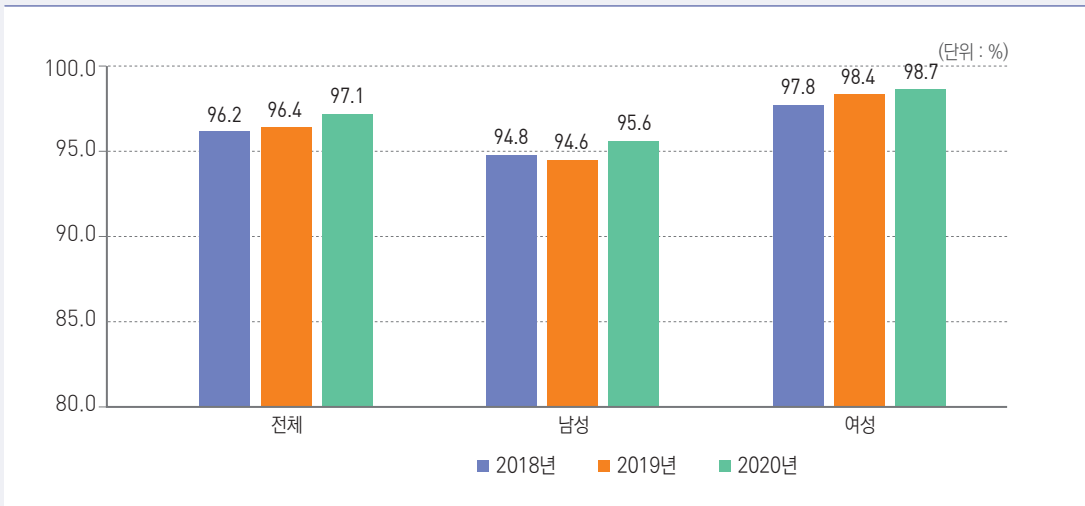
# 청소년정책의 변천과정

## | 청소년 범죄 유형 |



주 : 2019년도 소년 범죄자 유형별 현황임.  
 자료 : 대검찰청(2020). 범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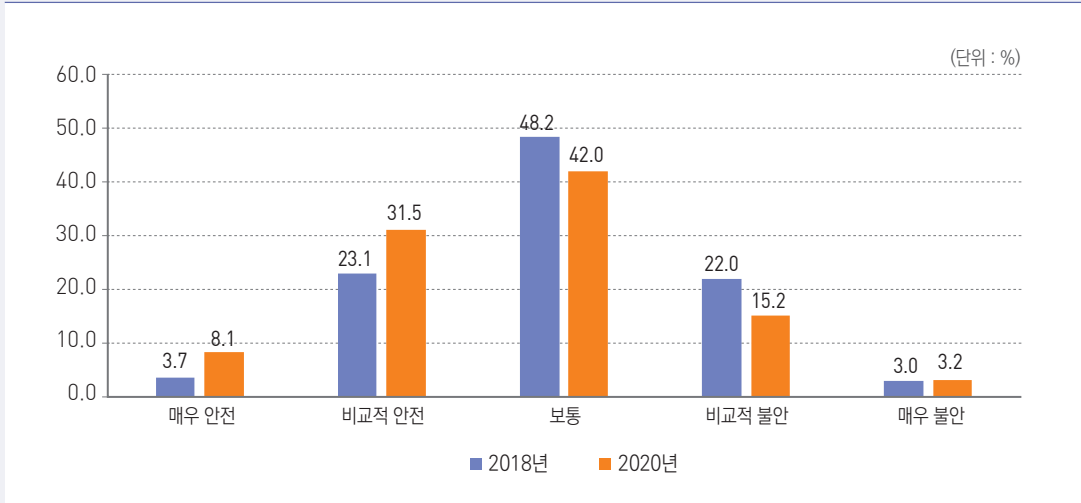
## | 양성평등의식 |



주 : 양성평등의식은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질문에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합계를 산출하였음.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각 년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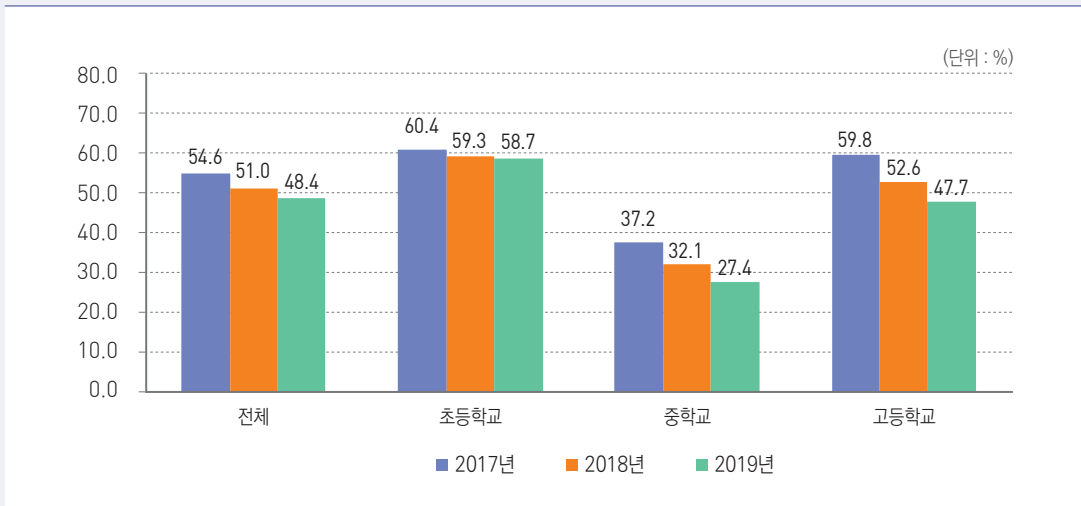


## |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13~19세) |



자료 : 통계청(각 년도),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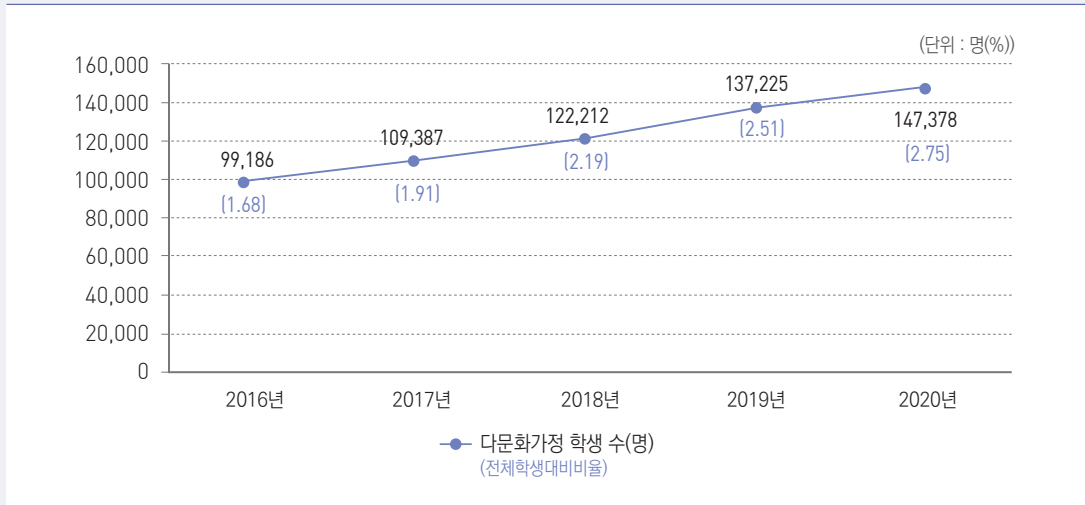
## | 방과후학교 참여율 |



주 :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유상' 및 '무상'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합한 값임.  
 자료 : 통계청(2020), 2019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 청소년정책의 변천과정

## | 다문화가정 학생 수, 비율 |



자료 : 교육부(각 년도), 다문화지원계획.

제1부

총 론

제1장 청소년정책 연혁	2
1. 청소년정책의 범주	2
2. 청소년정책의 변천과정	3
제2장 청소년정책 기본방향	7
1. 총괄	7
2. 추진방향 및 주요 실적	9
제3장 세계 청소년정책 현황	26
1. 주요 국제기구 및 국가 청소년 연령 현황	26
2. UN 청소년정책 현황	31
3. 주요 국가 청소년정책 현황	37

제2부

청소년 인구 및 생활환경

제1장 청소년 인구	60
1. 청소년 인구 현황	60
2. 청소년 인구 전망	61
3. 청소년 인구동태	64
제2장 청소년 생활환경	73
1. 가족환경	73
2. 학교환경	90
3. 미디어환경	100

## 제3부

### 청소년 권리·참여

제1장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의 형성	112
1.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의 형성	112
제2장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	113
1. 청소년 권리증진 정책	113
2. 청소년 참여 활성화 정책	117
제3장 청소년 주요 행사	126
1. 청소년의 달 행사	126
2. 전국청소년지도자대회	133
3. 청소년푸른성장대상	137

## 제4부

### 청소년활동

제1장 청소년활동 지원	142
1.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활동분야)	142
2. 청소년문화활동	143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145
4.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도	152
5.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156
6.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158
7. 지역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	160
제2장 청소년자원봉사활동	163
1. 청소년자원봉사활동 도입 배경	163
2.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추진 현황	163

<b>제3장 청소년 교류활동</b>	166
1. 청소년 국제교류	166
2.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	173
3. 민간단체 주관 청소년국제행사 지원	174
4. 세계스카우트잼버리(2023년) 개최 지원	175

## 제5부

**청소년 복지**

<b>제1장 대상별 청소년 현황</b>	182
1. 아동빈곤율 현황	182
2. 한부모가구 현황	184
3. 다문화가족 및 아동 현황	185
4. 보호대상아동 현황	188
<b>제2장 대상별 청소년 지원</b>	193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193
2. 가출 청소년 지원	198
3.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201
4. 청소년 특별지원	203
5.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204
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206
7. 지역아동센터 운영	209
8. 드림스타트 사업(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212
9. 디딤씨앗 통장(CDA)사업	220
10. 가정보호 및 시설보호사업	221
11. 아동 급식 지원	229
12. 보호대상아동 조기 발견·지원(e아동행복지원시스템)	231

제3장 청소년 상담·복지활동	234
1. 상담서비스	234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241
3. 청소년상담 1388	243
4.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246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	247
제4장 청소년의 건강	250
1. 청소년의 체격과 체력	250
2. 청소년의 영양	258
3.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	261
4. 청소년의 정신건강	264

## 제6부

### 청소년의 안전과 보호

제1장 청소년 안전	268
1.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위생점검	268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72
3. 아동학대 대책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지원	284
4. 아동실종예방 및 실종가족 지원	292
5. 청소년 안전사고 예방	297
제2장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304
1. 청소년 유해약물예방 기반 구축	304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정화활동	309

<b>제3장 청소년의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b>	320
1.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사회적 감시체계 강화	320
2. 청소년보호를 위한 업계자율정화 지원	325
<b>제4장 사이버 역기능 해소를 위한 대응체계 마련</b>	327
1.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대응	327
2. 청소년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실시 및 효과	328
<b>제5장 성범죄로부터 청소년 보호</b>	331
1.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사회복귀 지원	331
2.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	333
3.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337
4.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운영	339
5.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실시	343

## 제7부

**청소년의 교육**

<b>제1장 학교교육 현황</b>	348
1. 학령인구	348
2. 학생 인구 및 학교 수	350
3. 조기유학 현황	356
4. 대안교육 학교	357
5. 진학률	358
6. 학업중단율	360
7. 교육재정	361
<b>제2장 학업성취도 및 학교생활 만족도</b>	366
1. 청소년의 학업성취도	366
2. 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도	372

제3장 교육복지정책	374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374
2. 방과후학교	378
3. 농산어촌 지역 교육	383
4. 다문화학생 교육	393
5. 탈북학생 교육 지원	399

## 제8부

### 청소년 노동

제1장 청소년 고용 상황 및 노동조건	414
1.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414
2. 청소년 비경제활동인구	417
3. 청소년의 취업 현황	419
4. 청소년의 실업 현황	422
5. 임금 및 노동시간	425
6. 청소년 아르바이트	429
제2장 신규졸업자의 취업 상황	436
1. 중학교 신규졸업자의 진로 상황	436
2. 고등학교 신규졸업자의 취업 상황	437
3. 특수학교 신규졸업자의 취업 상황	438
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상황	439
제3장 청소년의 고용·직업·진로정책	442
1. 청소년근로 보호대책	442
2. 청소년 창업지원 대책	447
3. 청소년 고용촉진 대책	451



## 제9부

## 청소년 범죄

제1장 청소년 범죄의 현황	464
1. 청소년 범죄의 동향	464
2. 청소년 마약사범류 동향	469
3. 학생 범죄의 동향	471
제2장 청소년 범죄 예방활동	472
1. 경찰의 예방활동	472
2. 검찰의 예방활동	478
3. 법무부의 예방활동	485
제3장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건처리	491
1. 경찰단계의 사건처리	491
2. 검찰단계의 사건처리	493
3.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비행진단 및 처우	495
4. 소년법원에서의 사건처리	499
5. 형사법원에서의 사건처리	504
제4장 청소년 범죄에 대한 교정교육	506
1. 소년원의 교정교육	506
2. 소년교도소의 교정교육	514
3. 보호관찰소의 교정교육	519

## 제10부

### 청소년정책 추진 인프라

제1장 청소년시설	530
1. 청소년 활동시설	530
2. 청소년보호·복지시설	536
제2장 청소년지도자	540
1. 청소년지도자의 정의 및 유형	540
2. 청소년지도사	541
3. 청소년상담사	547
제3장 청소년 단체	553
1.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553
2.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555
제4장 청소년관련 행정기관	557
1.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557
2. 청소년관련 업무 추진기관	562
3. 청소년관련 시·도 행정조직	564
4.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566
5. 정부 산하기관	567
제5장 청소년관련 연구·개발기관	570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570
2. 청소년관련 학과 및 민간 청소년관련 연구기관	577
3.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WARDY)	579
제6장 청소년정책 재정기반	583
1. 청소년정책 재정 현황	583
2.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현황	585

## 부록

[부록 1] 청소년관련 학과(전공) 현황	590
[부록 2]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단체 현황	594
[부록 3]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원 현황	598
[부록 4] 전국 청소년복지시설(쉼터, 자립지원관) 현황	621
[부록 5]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황	630
[부록 6] 지방자치단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현황	643
[부록 7]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현황	644
[부록 8] 청소년백서 용어집	655

# 표목차

〈표 1-1-1〉 청소년정책의 변천	3
〈표 1-3-1〉 UN 및 UN기구 청소년과 아동 연령기준과 근거 법률	26
〈표 1-3-2〉 미국 청소년과 아동 연령기준과 근거 법률	27
〈표 1-3-3〉 영국 청소년과 아동 연령기준과 근거 법률	28
〈표 1-3-4〉 독일 청소년과 아동 연령기준과 근거 법률	28
〈표 1-3-5〉 일본 청소년, 청년 연령 기준 및 근거 법률	30
〈표 1-3-6〉 유럽연합 Youth Strategy(2019~2027)의 3개 분야	38
〈표 1-3-7〉 일본 아동·청년비전의 우선과제(priority issues)	52
〈표 1-3-8〉 2014년 및 2019년 MSF 주요 아동·청소년정책	57
〈표 2-1-1〉 2020년 연령별 아동·청소년 인구	60
〈표 2-1-2〉 총인구와 청소년(9~24세) 인구 전망	62
〈표 2-1-3〉 연도별 인구동태 추이	65
〈표 2-1-4〉 연도별 인구동태율 추이	66
〈표 2-1-5〉 출생아 수 및 조출생률	67
〈표 2-1-6〉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69
〈표 2-1-7〉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70
〈표 2-1-8〉 2019년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자 수 및 구성비	72
〈표 2-2-1〉 연도별 가구 수 및 가구원 수	73
〈표 2-2-2〉 세대구성 유형별 가구 수 현황	75
〈표 2-2-3〉 자녀에 대한 견해(찬성비율)	77
〈표 2-2-4〉 양육관련 만족도 : 현재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한다	77
〈표 2-2-5〉 양육관련 만족도 : 평소 자녀와의 대화가 충분하다	78
〈표 2-2-6〉 자녀양육책임의 범위(2012년, 2015년, 2018년)	80
〈표 2-2-7〉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	80
〈표 2-2-8〉 부모님과 함께하는 활동	82
〈표 2-2-9〉 가족과 함께 참여한 여가문화활동	83
〈표 2-2-10〉 부모님과 대화 여부 및 대화시간(1일 평균)	85

〈표 2-2-11〉 청소년의 고민상담 대상	86
〈표 2-2-12〉 청소년의 가정생활 만족도	87
〈표 2-2-13〉 부모님으로부터의 비용 지원	88
〈표 2-2-14〉 청소년이 지각한 학업성취도	90
〈표 2-2-15〉 나는 수업시간이 재미있다	92
〈표 2-2-16〉 우리 학교는 우리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	92
〈표 2-2-17〉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	93
〈표 2-2-18〉 우리 학교는 교칙이 엄격하다	94
〈표 2-2-19〉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이 만족스럽다	95
〈표 2-2-20〉 진로교육 경험 :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	97
〈표 2-2-21〉 진로교육 경험 : 현장학습 및 견학	98
〈표 2-2-22〉 진로교육 경험 : 상담교사의 상담	99
〈표 2-2-23〉 진로교육 경험 : 진로관련 검사	100
〈표 2-2-24〉 인터넷 이용 빈도 및 주당 평균 이용시간	101
〈표 2-2-25〉 인터넷 이용 용도(복수응답)	103
〈표 2-2-26〉 인터넷 서비스 이용률(복수응답)	104
〈표 2-2-27〉 스마트폰 이용 빈도	105
〈표 2-2-28〉 스마트폰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음성통화 제외)	106
〈표 2-2-29〉 스마트폰 기능별 중요도	107
〈표 2-2-30〉 필수 매체 인식	108
〈표 2-2-31〉 미디어·인터넷 매체 이용률	109
〈표 3-2-1〉 연도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현황	119
〈표 3-2-2〉 2020년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지원 현황	119
〈표 3-2-3〉 2020년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	120
〈표 3-2-4〉 연도별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및 과제 제안 현황	121
〈표 3-2-5〉 연도별 청소년증 발급 현황	124
〈표 3-3-1〉 청소년의 달 기념 유공자 시상 현황	126

# 표목차

〈표 3-3-2〉 2020년 ‘청소년의 달 기념식’ 주요 행사내용	126
〈표 3-3-3〉 2020년 ‘대한민국청소년 온라인 박람회’ 행사개요 및 구성	128
〈표 3-3-4〉 역대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현황	129
〈표 3-3-5〉 ‘성년의 날’ 기념행사 현황	132
〈표 3-3-6〉 유공자 포상 현황	134
〈표 3-3-7〉 역대 ‘전국청소년지도자대회’ 현황	134
〈표 3-3-8〉 연도별 ‘청소년푸른성장대상’ 개최 현황	137
〈표 4-1-1〉 2020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공모지원 현황	142
〈표 4-1-2〉 전국 청소년동아리 지원 현황	143
〈표 4-1-3〉 전국 시·도별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현황(2011~2020)	144
〈표 4-1-4〉 청소년수련활동 인증기준	149
〈표 4-1-5〉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활동유형 구분	150
〈표 4-1-6〉 연도별 인증제 운영 현황	150
〈표 4-1-7〉 기관 유형별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현황	150
〈표 4-1-8〉 인증수련활동 보유기관별 운영 현황	151
〈표 4-1-9〉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관련 주체 및 요건	153
〈표 4-1-10〉 지역별 신고 수리 현황	154
〈표 4-1-11〉 시설 유형별 신고 현황	155
〈표 4-1-12〉 포상 단계별 최소 활동 기간	156
〈표 4-1-13〉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운영 현황	157
〈표 4-1-14〉 포상 단계별 최소 활동 기간	159
〈표 4-1-15〉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운영 현황	160
〈표 4-1-16〉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현황	161
〈표 4-1-17〉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주요 기능	162
〈표 4-2-1〉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 등록(가입) 터전 수(누적)	165
〈표 4-2-2〉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 연간 프로그램 제공 수	165
〈표 4-2-3〉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실인원 및 지속 참여인원	165

〈표 4-3-1〉 청소년 교류 약정체결국 현황(36개국)	166
〈표 4-3-2〉 국가 간 청소년 교류 약정체결 및 교류 현황	167
〈표 4-3-3〉 한·중 청소년 교류 현황	169
〈표 4-3-4〉 국제청소년리더 교류 지원 사업 프로그램 현황(2020년)	171
〈표 4-3-5〉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	172
〈표 4-3-6〉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 현황	173
〈표 4-3-7〉 2020년 청소년 국제행사 개최 지원	174
〈표 4-3-8〉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역대 개최 현황	175
〈표 4-3-9〉 조직위 사무국 구성(1단계 : '20.7.~)	179
〈표 4-3-10〉 2023년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요	179
〈표 5-1-1〉 연도별 아동빈곤율 현황	183
〈표 5-1-2〉 연도별 한부모가구 현황	184
〈표 5-1-3〉 다문화가족 자녀 수 연령별 현황	186
〈표 5-1-4〉 부 또는 모의 국적별 다문화가족 자녀 수 현황	187
〈표 5-1-5〉 연도별 다문화학생 현황	188
〈표 5-1-6〉 2019년 학교급별 다문화학생 수 현황	188
〈표 5-1-7〉 연도별 보호대상아동 현황 및 발생원인	189
〈표 5-1-8〉 보호대상아동 보호 현황	191
〈표 5-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연혁	193
〈표 5-2-2〉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운영현황	194
〈표 5-2-3〉 학교 밖 청소년 연계 인원	196
〈표 5-2-4〉 청소년쉼터의 발전단계	198
〈표 5-2-5〉 연도별 청소년쉼터 운영 현황	199
〈표 5-2-6〉 쉼터의 종류 및 기능	200
〈표 5-2-7〉 연도별 청소년쉼터 입소 현황	201
〈표 5-2-8〉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대상 및 내용	202
〈표 5-2-9〉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	203

# 표목차

〈표 5-2-10〉 특별지원 종류 및 지원내용	204
〈표 5-2-11〉 이주배경청소년 현황	205
〈표 5-2-1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개요	207
〈표 5-2-13〉 지역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현황	208
〈표 5-2-14〉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영역	209
〈표 5-2-15〉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지원 규모 및 운영 현황	212
〈표 5-2-16〉 드림스타트 서비스 유형 및 서비스별 프로그램	213
〈표 5-2-17〉 드림스타트 설치 현황 및 사례관리 아동 수	215
〈표 5-2-18〉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의 특징	219
〈표 5-2-19〉 연도별 디딤씨앗 통장 저축 현황	221
〈표 5-2-20〉 연도별 아동복지시설 현황	222
〈표 5-2-21〉 연도별 가정위탁 보호 현황	223
〈표 5-2-22〉 연도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	226
〈표 5-2-23〉 국내·외 입양 현황	228
〈표 5-2-24〉 국내 입양가정 지원제도 현황	228
〈표 5-2-25〉 연도별 아동 급식 지원 현황	230
〈표 5-2-26〉 위기의심 아동 현황	232
〈표 5-2-27〉 현장조사 완료 현황	233
〈표 5-3-1〉 2019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주요 교육연수 실적	236
〈표 5-3-2〉 2020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현황	238
〈표 5-3-3〉 2019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상별 상담실적	239
〈표 5-3-4〉 2019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문제유형별 상담실적	240
〈표 5-3-5〉 연도별 청소년안전망 서비스 이용인원	242
〈표 5-3-6〉 연도별 청소년안전망 지원서비스 이용건수	243
〈표 5-3-7〉 2019년 청소년상담 1388 주요 실적	244
〈표 5-3-8〉 연도별 청소년상담 1388 호소문제 유형별 이용건수	244
〈표 5-3-9〉 연도별 청소년동반자 사업 운영 현황	246



〈표 5-3-10〉 2020년 또래상담 사업 실적	247
〈표 5-3-11〉 2020년 또래상담 사업 효과분석(또래상담자 역량)	248
〈표 5-3-12〉 2020년 또래상담 사업 효과분석(내담자 학교생활 만족도)	249
〈표 5-4-1〉 성별·연령별 신장의 추이	250
〈표 5-4-2〉 성별·연령별 체중의 추이	252
〈표 5-4-3〉 성별·연령별 50m달리기의 추이	254
〈표 5-4-4〉 성별·연령별 오래달리기 및 걷기의 추이	255
〈표 5-4-5〉 성별·연령별 제자리멀리뛰기의 추이	255
〈표 5-4-6〉 성별·연령별 윗몸일으키기의 추이(2011-윗몸말아올리기)	256
〈표 5-4-7〉 성별·연령별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의 추이	257
〈표 5-4-8〉 영양소별 영양섭취기준에 대한 섭취 비율	258
〈표 5-4-9〉 영양소별 영양섭취기준 미만 섭취자 분율	259
〈표 5-4-10〉 영양섭취부족자 및 에너지/지방과잉섭취자 분율	260
〈표 5-4-11〉 아침식사 결식률	260
〈표 5-4-12〉 흡연 관련 지표	262
〈표 5-4-13〉 음주 관련 지표	263
〈표 6-1-1〉 분야별 점검등급 구분	269
〈표 6-1-2〉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주요 내용	269
〈표 6-1-3〉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평가기준	270
〈표 6-1-4〉 2020년 분야별 점검 결과	271
〈표 6-1-5〉 「7.23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	275
〈표 6-1-6〉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5~2019)」	277
〈표 6-1-7〉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	279
〈표 6-1-8〉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지원 방안」	280
〈표 6-1-9〉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	280
〈표 6-1-10〉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283
〈표 6-1-11〉 연도별 아동학대 발생 현황(2002~2019)	286

# 표목차

〈표 6-1-12〉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2011~2019)	288
〈표 6-1-13〉 피해아동 상황(2019)	289
〈표 6-1-14〉 아동학대 응급조치 현황(2019)	291
〈표 6-1-15〉 실종아동 보호·지원 추진체계	295
〈표 6-1-16〉 실종 일반아동 발생 및 가족복귀 현황(2011~2019)	296
〈표 6-1-17〉 연도별·유형별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현황	298
〈표 6-1-18〉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수 국제 비교	299
〈표 6-1-19〉 「어린이 안전대책」 추진과제	301
〈표 6-2-1〉 청소년 현재 흡연율, 평생 흡연 경험률 및 처음 흡연 연령	305
〈표 6-2-2〉 청소년 현재 음주율, 평생 음주 경험률 및 처음 음주 연령	305
〈표 6-2-3〉 관계부처의 청소년 흡연예방 정책 주요 내용	307
〈표 6-2-4〉 관계부처의 청소년 음주예방 정책 주요 내용	308
〈표 6-2-5〉 청소년 유해업소의 수	310
〈표 6-2-6〉 2020년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	311
〈표 6-2-7〉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범 단속실적	312
〈표 6-2-8〉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현황	313
〈표 6-2-9〉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현황	315
〈표 6-2-10〉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적법 해제시설 현황	316
〈표 6-2-11〉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 현황	318
〈표 6-3-1〉 매체물 심의기관 현황	321
〈표 6-3-2〉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별 결정·고시 현황	322
〈표 6-3-3〉 청소년 유해음반 결정·고시 현황	324
〈표 6-5-1〉 교육과정 및 운영기관	332
〈표 6-5-2〉 교육프로그램 구성	332
〈표 6-5-3〉 지역센터별 교육 실시 현황	333
〈표 6-5-4〉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 실적	341
〈표 6-5-5〉 청소년성문화센터 지역별 설치 현황	341

〈표 6-5-6〉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현황	342
〈표 6-5-7〉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실적 현황	344
〈표 6-5-8〉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실적 현황	345
〈표 7-1-1〉 연도별 학령인구	349
〈표 7-1-2〉 학교급별 학생 수	351
〈표 7-1-3〉 학교급별 학교 수	353
〈표 7-1-4〉 교원 1인당 학생 수	355
〈표 7-1-5〉 연도별·학교급별 유학 현황	356
〈표 7-1-6〉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 현황	357
〈표 7-1-7〉 학교급별 진학률	359
〈표 7-1-8〉 학교급별 학업중단율	360
〈표 7-1-9〉 연도별 중앙정부 예산 대비 교육부 예산	361
〈표 7-1-10〉 GDP 대비 교육재정	363
〈표 7-1-11〉 국가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2017)	364
〈표 7-1-12〉 학교급별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365
〈표 7-2-1〉 중학교 3학년 성취수준별 비율	368
〈표 7-2-2〉 고등학교 2학년 성취수준별 비율	369
〈표 7-2-3〉 중학교 3학년 지역규모별 성취수준별 비율	370
〈표 7-2-4〉 고등학교 2학년 지역규모별 성취수준별 비율	371
〈표 7-2-5〉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373
〈표 7-3-1〉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	381
〈표 7-3-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현황	382
〈표 7-3-3〉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현황	382
〈표 7-3-4〉 2000년 이후 초·중등 학생 수 감소 추이	383
〈표 7-3-5〉 학교별 등교수업 시기	385
〈표 7-3-6〉 학생 등교수업 조정 현황	386
〈표 7-3-7〉 농어촌 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388

# 표목차

〈표 7-3-8〉 농어촌 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지원 현황	388
〈표 7-3-9〉 2019년 화상교실 운영학교 현황	390
〈표 7-3-10〉 화상교실의 교육적 효과 조사 결과	390
〈표 7-3-11〉 최근 5년간 다문화학생 현황	393
〈표 7-3-12〉 다문화학생 유형별·학교급별 현황	394
〈표 7-3-13〉 탈북학생 지칭 용어 및 지원 비교	399
〈표 7-3-14〉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400
〈표 7-3-15〉 북한이탈주민 지역별 거주 현황	400
〈표 7-3-16〉 탈북청소년 학교 유형별 재학 현황	401
〈표 7-3-17〉 지역별 탈북학생 재학 현황	402
〈표 7-3-18〉 정규학교 재학 탈북학생 출생지별 재학 현황	403
〈표 7-3-19〉 탈북학생 연도별 재학 현황	403
〈표 8-1-1〉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추이	414
〈표 8-1-2〉 연령 계층별·성별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416
〈표 8-1-3〉 청소년(15~24세)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 상태별 현황 추이	418
〈표 8-1-4〉 연령 계층별·성별 청소년 취업자 추이	420
〈표 8-1-5〉 연도별 청소년 실업률 추이	422
〈표 8-1-6〉 연령 계층별·성별 청소년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424
〈표 8-1-7〉 청소년 근로자의 연령 계층별 임금수준 추이: 정액 및 초과급여	426
〈표 8-1-8〉 20대 청소년 근로자의 학력별 임금수준 추이: 정액 및 초과급여	427
〈표 8-1-9〉 연령 계층별·성별 청소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428
〈표 8-1-10〉 근로시간 형태별 청소년 근로자 수 현황	430
〈표 8-2-1〉 2020년 중학교 신규 졸업자의 진로 상황	436
〈표 8-2-2〉 2020년 비직업계 고등학교 신규 졸업자의 진로 상황	437
〈표 8-2-3〉 2020년 직업계 고등학교 신규 졸업자의 진로 상황	437
〈표 8-2-4〉 2020년 특수학교(고등학교 과정) 신규 졸업자의 취업상황과 취업률	438
〈표 8-2-5〉 2019년 졸업자의 취업상황과 취업률	439

〈표 8-2-6〉 2019년 성별·학제별 취업자 및 취업률	440
〈표 8-3-1〉 청소년용 직업심리검사 개요	457
〈표 8-3-2〉 대학생 및 성인 대상의 직업심리검사 개요	457
〈표 9-1-1〉 연도별 청소년 범죄자 현황 및 구성비	464
〈표 9-1-2〉 주요 범죄군별(청소년 범죄) 발생비 추이(2010~2019)	465
〈표 9-1-3〉 청소년 범죄의 연령별 현황(2009~2019)	466
〈표 9-1-4〉 청소년 범죄의 전과별 현황	467
〈표 9-1-5〉 청소년 범죄의 성별 현황	468
〈표 9-1-6〉 청소년 마약류 사범 연령별 현황(2009~2019)	469
〈표 9-1-7〉 청소년 마약범죄의 마약류별 현황(2009~2019)	470
〈표 9-1-8〉 연도별 학생 범죄 현황	471
〈표 9-2-1〉 학교폭력 유형별 검거현황(2013~2019)	473
〈표 9-2-2〉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현황	473
〈표 9-2-3〉 연도별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범 단속 현황	475
〈표 9-2-4〉 연도별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운영현황	476
〈표 9-2-5〉 연도별 명예경찰소년소녀단 현황	477
〈표 9-2-6〉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현황(2017~2019)	478
〈표 9-2-7〉 연도별 우범소년 결연사업 추진실적	479
〈표 9-2-8〉 연도별 학교담당검사제 활동실적	480
〈표 9-2-9〉 연도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실적	481
〈표 9-2-10〉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죄명별 현황(2013~2019)	482
〈표 9-2-1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연령별 현황(2013~2019)	483
〈표 9-2-12〉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현황	485
〈표 9-2-13〉 청소년꿈키움센터의 주요 임무	486
〈표 9-2-14〉 대안교육 실시 현황	488
〈표 9-2-15〉 연도별 청소년심리검사실 운영 현황	489
〈표 9-2-16〉 연도별 보호자교육 실적	490

# 표목차

〈표 9-3-1〉 청소년 범죄자 유형별 검거현황(2013~2019)	491
〈표 9-3-2〉 연도별 청소년 범죄자의 재범 현황	492
〈표 9-3-3〉 연도별 청소년 범죄 조사 시 전문가 참여제 운영 현황	493
〈표 9-3-4〉 연도별 청소년 범죄 처리 현황	494
〈표 9-3-5〉 연도별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소년 수용 현황	496
〈표 9-3-6〉 연도별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 인원 현황	497
〈표 9-3-7〉 연도별 청소년 보호사건에 대한 조사 현황	498
〈표 9-3-8〉 연도별 소년보호사건 접수 인원 및 접수구분 인원	500
〈표 9-3-9〉 연도별 소년보호사건의 처분현황	501
〈표 9-3-10〉 소년보호사건처분의 유형별 현황(2013~2019)	502
〈표 9-3-11〉 연도별 제1심 소년형사사건 재판 현황	504
〈표 9-4-1〉 소년원 학교 명칭 및 교육과정	508
〈표 9-4-2〉 연도별 소년원 수용기간별 인원	509
〈표 9-4-3〉 연도별 보호소년 수용 현황	510
〈표 9-4-4〉 연도별 소년원 학생 자격 취득 현황	511
〈표 9-4-5〉 연도별 소년원 학생 취업 현황	511
〈표 9-4-6〉 연도별 상급학교 진학 현황	512
〈표 9-4-7〉 소년원 출원사유별 인원(2009~2019)	513
〈표 9-4-8〉 연도별 소년교도소 수용 현황	515
〈표 9-4-9〉 소년수형자 죄명별 인원(2009~2019)	515
〈표 9-4-10〉 청소년수형자 형명·형기별 인원(2009~2019)	516
〈표 9-4-11〉 연도별 소년교도소 학과교육 현황	517
〈표 9-4-12〉 청소년수형자 석방사유별 인원(2009~2019)	518
〈표 9-4-13〉 연도별 청소년보호관찰 비율	520
〈표 9-4-14〉 연도별 청소년보호관찰 실시현황	521
〈표 9-4-15〉 연도별 청소년대상자 보호관찰 성적에 따른 조치 현황	522
〈표 9-4-16〉 청소년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부과형태(2009~2019)	523

〈표 9-4-17〉 청소년대상자 사회봉사명령 분야별 집행인원(2009~2019)	524
〈표 9-4-18〉 청소년대상자 수강명령 분야별 집행인원(2009~2019)	525
〈표 9-4-19〉 연도별 청소년 대상 판결(결정)전조사, 검사 결정전조사 및 환경조사 접수 현황	526
〈표 10-1-1〉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531
〈표 10-1-2〉 시·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532
〈표 10-2-1〉 청소년지도사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 기준	541
〈표 10-2-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	542
〈표 10-2-3〉 청소년지도사 양성 현황	544
〈표 10-2-4〉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545
〈표 10-2-5〉 청소년상담사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 기준	547
〈표 10-2-6〉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과목과 방법	548
〈표 10-2-7〉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과목	550
〈표 10-2-8〉 청소년상담사 양성 현황	550
〈표 10-2-9〉 청소년상담사 배치기준	551
〈표 10-4-1〉 청소년정책관의 조직과 기능	559
〈표 10-4-2〉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관 정원 현황	561
〈표 10-4-3〉 청소년정책 영역별 소관부처 현황	562
〈표 10-4-4〉 시·도 청소년관련 행정조직 현황	565
〈표 10-4-5〉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성격	566
〈표 10-5-1〉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 회원 현황	580
〈표 10-6-1〉 연도별 청소년 예산	583
〈표 10-6-2〉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내역	586

# 그림목차

[그림 1-2-1]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년)」 비전, 목표 및 중점과제	8
[그림 2-1-1] 청소년(9~24세) 인구 전망	64
[그림 2-2-1] 주중 아버지와 대화시간(1일 평균)	84
[그림 2-2-2] 주중 어머니와의 대화시간(1일 평균)	84
[그림 3-2-1] 청소년특별회의 추진 절차	121
[그림 3-2-2] 청소년증 발급 절차	124
[그림 4-1-1]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절차	148
[그림 4-1-2]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수리 절차	154
[그림 4-3-1] 2023년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잰버리」 엠블럼	178
[그림 5-1-1] 아동빈곤율 국제 비교(2018년, 중위소득 50%)	183
[그림 5-1-2] 한부모가구 비율 추이	185
[그림 5-1-3] 연도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수 추이	190
[그림 5-2-1]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연계 체계	195
[그림 5-2-2]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	197
[그림 5-2-3]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절차	203
[그림 5-2-4]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수	210
[그림 5-2-5]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수	210
[그림 5-2-6]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현황	211
[그림 5-2-7]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체계	214
[그림 5-2-8] 드림스타트 참여 여부에 따른 아동 발달 차이(횡단분석 결과)	216
[그림 5-2-9] 드림스타트 개입을 통한 아동과 가족의 변화(종단분석 결과)	216
[그림 5-2-10] 서비스 기간에 따른 만족도	217
[그림 5-2-11] 최근 4개년('16~'19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218
[그림 5-2-12]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절차 및 지역자원 연계도	219
[그림 5-2-13]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추진 체계	231



[그림 5-3-1]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체계도	241
[그림 5-3-2] 2019년 청소년상담 1388 월별 이용실적	245
[그림 5-4-1] 학년별 현재 흡연율	261
[그림 5-4-2] 학년별 현재 음주율	263
[그림 5-4-3] 학년별 스트레스 인지율	264
[그림 5-4-4] 학년별 우울감 경험률	265
[그림 6-1-1] 신고접수건수 비율(2019)	286
[그림 6-1-2] 아동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0~14세)	297
[그림 6-3-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절차도	322
[그림 6-3-2]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 청구 절차	324
[그림 6-4-1] 여성가족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정책 추진 체계도	328
[그림 7-1-1] 연도별 학령인구	348
[그림 7-1-2] 교원 1인당 학생 수	354
[그림 7-1-3] 학교급별 진학률	358
[그림 7-3-1] 방과후학교 비전·목표·전략	379
[그림 7-3-2] 농어촌 지역 학생 수 변화(분교기준)	384
[그림 7-3-3] 도서벽지 화상교실 운영 유형(단일형, 거점형)	389
[그림 7-3-4] 다문화가정 학생 구분	393
[그림 7-3-5] 2019년 다문화교육정책학교 및 일반학교 다문화 수용성 변화 비교	397
[그림 7-3-6] 탈북학생 단계별 교육지원 체계	405
[그림 7-3-7] 2020년 교육부 탈북학생 교육지원 목표 및 중점 추진 방향	406
[그림 8-1-1] 2019년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 국제 비교	415
[그림 8-1-2] 2019년 청소년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국제 비교	417
[그림 8-1-3] 취업자 중 청소년 비중	419
[그림 8-1-4] 청소년 취업자의 첫 취업 소요기간	421

## 그림목차

[그림 8-1-5] 청소년 취업자의 취업경로	421
[그림 8-1-6] 2019년 청소년 실업률 국제 비교	423
[그림 8-1-7] 2019년 청소년의 성별 실업률 국제 비교	425
[그림 8-1-8]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431
[그림 8-1-9]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이유	431
[그림 8-1-10] 청소년 아르바이트 업종 분포	432
[그림 8-1-11]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속기간 분포	432
[그림 8-1-12] 청소년 아르바이트 주간 근로시간 분포	433
[그림 8-1-13] 청소년 아르바이트 급여기준 분포	434
[그림 8-1-14]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434
[그림 8-2-1] 고등교육기관 학제별 취업률(2018년·2019년 비교)	440
[그림 8-2-2] 고등교육기관 계열별 취업률(2018년·2019년 비교)	441
[그림 9-1-1] 주요 범죄군별(청소년 범죄) 발생비 추이(2010~2019)	466
[그림 9-2-1] 학교폭력 신고 추이	474
[그림 10-1-1] 청소년 활동시설의 종류	530
[그림 10-2-1] 청소년지도자의 분류	540
[그림 10-2-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체계도	543
[그림 10-2-3] 청소년상담사 양성체계	549
[그림 10-4-1] 여성가족부 조직도	558
[그림 10-5-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직 현황	573



# 제1부 요약

‘제1부 총론’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연혁 및 기본방향, 세계 청소년정책의 현황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간 추진되어온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변천과정과 성과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되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년)」을 중심으로 청소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주요 추진실적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와 함께 세계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정책의 현황 및 국가별 청소년 연령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사회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년)」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는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하여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의 4대 정책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12대 중점과제와 144개 세부과제를 수립하여 2022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4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된 12대 중점과제로는 첫 번째로 청소년 참여 및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소년의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며,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청소년 주도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활동 및 성장을 지원하는 체계를 혁신하고, 청소년 체험활동을 활성화하며,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세 번째는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다양한 위기 청소년들의 특성을 반영하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며,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고 보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정책의 추진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과제로 청소년정책의 총괄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중심의 청소년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며, 청소년지도자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여러 정부 부처들은 각 과제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세계 청소년정책 현황에서는 UN 등 주요 국제기구와 국가들의 청소년 연령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UN을 비롯해 유럽연합, 영국, 독일,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들의 청소년정책 변화와 흐름, 청소년정책 담당 기구 및 사업 등을 살펴보았다. 주요 국제기구와 국가들 역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UN은 2018년 9월에 발표한 ‘청소년 2030 전략(The Youth 2030 Strategy)’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청소년의 역할에 주목하며, 5대 우선순위와 실행계획을 통해 청소년지원에 관한 포괄적인 틀을 제시하였다. 지속가능발전 논의의 역사에서 아동과 청소년은 여전히 주요 그룹으로 여겨지고,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를 보장하며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인 참여의 기회를 보장할 것을 강조해 왔다. 유럽연합, 영국, 독일,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도 모두 청소년세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으로 관련 법령을 구축·정비하고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 주요 핵심 추진 기구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제1부

# 총론

제1장 청소년정책 연혁

제2장 청소년정책 기본방향

제3장 세계 청소년정책 현황

# 1

## 제1장

## 청소년정책 연혁

## 1. 청소년정책의 범주

청소년정책은 그 개념 및 정의에 따라 크게 광의적 범주와 협의적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넓은 의미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국가정책으로서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함께 청소년과 관계된 중앙정부 각 부처의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실제로 1965년 ‘중앙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가 펴낸 청소년백서는 당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사회교육 정책을 포함해 복지, 노동, 비행 및 농어촌 청소년지도 등 청소년과 관계된 범정부 차원의 정책 모두를 청소년정책의 범주로 포함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9년까지 발간된 청소년백서도 청소년 관련 업무를 여성가족부 및 중앙정부 각 부처의 고유 기능과 연계한 정책영역별로 분류해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청소년정책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청소년정책의 총괄 조정이 중요한데,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총괄 조정은 「청소년 기본법(제9조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의 권한으로 부여되어 있다.

청소년정책을 좁은 의미에서 살펴보면,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안전과 보호, 청소년의 교육, 청소년과 노동, 청소년의 비행 및 범죄, 청소년정책 추진체제 등 대체로 여성가족부가 주도하는 청소년정책들을 말한다. 물론 청소년 유관부처인 ‘보건복지부(청소년복지의 일부 업무)’, ‘교육부(청소년의 안전과 보호, 청소년의 교육 중 일부 업무)’, ‘고용노동부(청소년과 노동의 일부 업무)’ 등이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업무 중 일부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정책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협의적 범주의 청소년정책은 대체로 「청소년 기본법」을 근간으로 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나 중장기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추진된다.

한편, 정책대상을 아동과 청소년으로 구분하지 않고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을 통합하여

접근하는 광의의 시각이 있는 반면,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근거 법률, 즉 「아동복지법」 및 「UN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0~18세 미만)과 「청소년 기본법」 등에 따른 청소년(9~24세)의 연령을 나누어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을 구분하기도 한다. 이 가운데 정책대상으로 중복되는 만 9~17세 청소년이 포함되는 경우 각기 정책의 수립과 추진부처에 따라 아동정책 혹은 청소년정책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 백서에서는 청소년정책을 협의적 범주에서 살펴보고 있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유관된 아동정책<sup>1)</sup>을 포함한 청소년에 관한 정책과 사업을 위주로 삼고 있다.

## 2. 청소년정책의 변천과정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변천과정은 중앙정부 청소년정책 담당부처 및 주요 관계 법령 제정과 맥을 같이 한다. 청소년정책의 변천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표 1-1-1>과 같이 7단계로 나눌 수 있다.

<표 1-1-1> 청소년정책의 변천

단계	시기	특성	명칭	주무부처(기구)	주요 관계 법령
1단계	1948. 8. ~ 1964. 9.	부처별 산발추진	부처별 관련업무 추진	각 부처	
2단계	1964. 10. ~ 1977. 8.	부처차원의 조정	청소년보호 대책위원회	내무부 무임소장관실	
3단계	1977. 8. ~ 1988. 6.	정부차원의 조정	청소년 대책위원회	국무총리실 문교부	「청소년육성법」 제정

1) 아동정책의 예로는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 디딤씨앗통장사업, 가정보호 및 시설보호사업, 아동급식사업 등이 있음.

단계	시기	특성	명칭	주무부처(기구)	주요 관계 법령
4단계	1988. 6. ~ 2005. 4.	정부차원의 조정, 부처차원의 총괄 집행	청소년 육성위원회	체육부/체육청소년부/ 문화체육부/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기본법」 제정 「청소년 보호법」 제정 「청소년성보호법」 제정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정
5단계	2005. 4. ~ 2008. 2	통합적 청소년정책 수립, 단일청소년 전담 조직 출범	청소년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국무총리실	
6단계	2008. 3. ~ 2010. 2.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통합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7단계	2010. 3. ~ 현재	여성가족부 개편 및 이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카우트 지원특별법」 제정

자료 : 여성가족부(2016).

1단계는 1948년 8월부터 1964년 9월까지로, 이 기간은 특별히 청소년정책을 조정하는 정부 행정기구나 전담기구가 없던 시기다. 이 시기 청소년정책은 각 부처별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전부였다.

2단계는 1964년 10월부터 1977년 8월까지 약 13년간의 시기로서 내무부 및 무임소장관실에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다. 주요 업무는 문제청소년에 대한 규제 및 보호위주 정책으로 이 시기 청소년정책의 특징은 부처차원의 조정과 규제·보호위주의 청소년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3단계는 1977년 8월부터 1988년 6월까지 11년간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정부차원의 청소년 관계정책의 조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즉, 국무총리실에 ‘청소년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 조정이 시작되었으며, 1983년 4월부터 1985년 1월까지 청소년정책이 문교부 소관으로 이관되었다가 다시 1985년 2월 국무총리실로 이전되었다. 이 때 「청소년문제개선종합대책(1985~1987)」이 수립되었고, 1987년 11월 28일에 청소년정책 발전의 모태라 할 수 있는 「청소년육성법」이 제정 및 공포되었으며, 1988년 7월 1일에 동 법률이 시행되었다.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기 전까지의 단계는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중심과 청소년일탈 및



비행예방, 규제 등 청소년의 긍정적 개발보다는 청소년을 청소년 비행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주체이거나 피해대상으로 간주하여 이들을 선도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관점이 우세하였다.

4단계는 1988년 6월부터 2005년 4월 청소년위원회가 설치되기 전까지의 시기로 「청소년육성법」의 시행과 함께 출발하였다. 「청소년육성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비로소 청소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수립과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청소년육성법」의 시행은 단지 선언적 의미로 그쳐 실질적인 청소년정책의 발전을 이루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한편 이 시기는 청소년 관련 전담조직의 설치·운영이 시작되던 시기였다. 즉 이 시기에 전체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장기적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체육부가 관장하는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체육부 내에 청소년국이 신설되었다. 이는 청소년정책 조정실로 확대·개편 되었으며, 「청소년헌장」(구)이 제정(1990. 5. 12.)되었다.

1990년 12월, 체육부의 명칭이 체육청소년부로 변경되면서 청소년업무의 영역이 확장되고 청소년정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근간이 되는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이 수립(1991. 6.)되었고, 「제1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이 수립(1993. 6.)되었으며, 「청소년육성법」을 대체하는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1991. 12.)되었다. 이후 1993년 문화체육부로 통합되면서 청소년정책조정실은 청소년정책실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또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1998년 10월 25일 새로운 「청소년헌장」이 제정되었다. 이와 함께 청소년정책 전담기구에 대한 조정도 함께 이루어졌는데,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 산하에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따로 두게 되었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1998년 2월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됨에 따라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육성을 전담하는 문화관광부와 청소년보호를 전담하는 ‘청소년보호위원회’로 분리되었다.

특히 이 기간 동안에 청소년에 관한 주요 관계 법령의 제정과 시행이 이어졌고, 중앙정부 차원의 청소년 증장기 기본계획이 수립·추진되면서 청소년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과 개발(참여와 권리존중)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 또한 이 시기부터 청소년정책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5단계는 2005년 4월 청소년정책 조직의 통합과 단일 청소년전담조직이 출범한 이후부터 2008년 2월까지의 시기이다. 그동안 문화관광부와 청소년보호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던 청소년 관련 중앙행정조직은 체계적·종합적 정책수행의 곤란과 함께 새로운 청소년정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를 노정하였고, 나아가 각 부처에 산재한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04년 12월 17일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는 정부의 청소년기능(육성 및 보호) 통합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위원회’ 설치를 확정·발표하였다. 2004년 12월 20일, ‘청소년위원회 설립추진단’을 구성·운영하였고, 2005년 4월 27일 국무총리 소속 하의 ‘청소년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발족하였으며,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2006년 3월 30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 시기에는 위기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 청소년복지기반이 조성되었고, 청소년참여와 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6단계는 2008년 3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아동과 청소년정책의 통합이 추진되면서 청소년정책이 보건복지가족부로 편입된 이후 2010년 2월 여성가족부로 이관되기까지의 시기를 말한다. 하지만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통합 추진은 상당한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어 다시 분리되기에 이르렀다.

7단계는 2010년 1월 18일 가족 해체 및 다문화가족 등 현안사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및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가족 기능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개편(2010. 3. 19. 시행)되어 지금에 이르는 시기다. 이 기간에 여성정책의 조정과 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 향상뿐만 아니라 가족정책이 일층 강화되면서 청소년정책이 여성·가족정책과 연계하는 발전 전략을 지향하게 되었다. 2014년 5월,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5년 5월 동 법률이 시행되면서 학교 밖 청소년을 포괄하여 모든 청소년으로 청소년정책의 대상이 확대되었다. 아울러 이 시기는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 세월호 참사 등의 안전사고들로 인해 청소년정책 및 사업에 있어 청소년의 안전이 무엇보다 강조되었다. 또한 2018년 12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 추진단을 구성하여 잼버리 행사준비를 추진하고 있다. 2018년부터 추진되어 온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청소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청소년이 주도하는 활동을 확대하고 내실화하는 과제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신장한다는 적극적인 정책 기조가 강조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가 추진되고 있다.

## 제2장

## 청소년정책 기본방향

## 1. 총괄

우리나라는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해 1993년부터 5년마다 법정부적 차원의 중장기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해 왔다. 2017년까지 추진된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를 비전으로 ‘청소년의 역량 함양 및 미래핵심인재 양성’, ‘청소년의 자기 주도적 참여와 권리증진’, ‘청소년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5대 영역<sup>2)</sup>의 15대 중점과제와 75개 세부과제를 추진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는 그동안 안전한 청소년활동 환경 구축을 통한 청소년활동 기반 강화, 청소년 체험활동의 다양화로 건강한 성장지원, 청소년정책참여의 기회 확대, 보호 사각지대에 있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청소년 대상별 맞춤형 보호·치료지원 강화,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의 뚜렷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가족구조의 다양화와 가족 기능의 위축, 뉴미디어와 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에 따른 매체환경의 급변과 이로 인한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 위험 증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청년 노동시장의 위축 및 고용 불안 등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함에 따라 청소년정책이 새롭게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와 관심의 부족, 공급자 중심의 수요 예측과 계획에 의한 청소년 프로그램의 전개, 위기 청소년의 예방·보호·자립을 위한 종합적이고 충분한 지원의 부족, 지역 중심의 성과 지향적 청소년정책 추진 체계 미흡 등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법정부 차원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청소년정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보다 미래 지향적이고 실효성을 갖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학계,

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5대 영역: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시설, 단체, 청소년, 학부모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년)」을 수립하였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의 4대 정책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12대 중점과제와 144개 세부과제를 수립하여 2022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따라서 청소년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본 장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근간이 되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더불어 현재까지의 주요 실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2-1]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년)」 비전, 목표 및 중점과제



자료 : 여성가족부(2018).

## 2. 추진방향 및 주요 실적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년)」은 청소년이 미래를 준비하는 존재일 뿐 아니라 현재 삶을 영위하는 존재라는 인식에 기초한다. 이에 따라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년)」은 청소년들이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속에서 자기주도적 참여와 활동을 통해 현재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갖추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하는 것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도전하는 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를 확대하고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과제들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급속한 사회변화에 적응뿐만 아니라 도전하고 협력하는 창의·융합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인 청소년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하므로 청소년이 주도하는 활동으로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들도 포함한다.

아울러 사회적 격차와 빈곤 등 어려운 여건에 있는 청소년들이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며, 청소년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하여 지속적이고 충분한 지원 아래 성인기로 이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 보호·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들을 포함한다.

청소년정책의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행을 촉구함으로써 청소년정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지역과 현장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청소년시설의 체질을 성과 지향적 조직으로 개선하는 것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 청소년활동, 청소년보호 및 복지,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등의 4대 영역별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립된 중점과제 및 세부 과제들과 더불어 현재까지 진행된 주요 실적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첫 번째 정책목표인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을 달성하기 위해 청소년 참여 확대,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 및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지원이 중점과제로

제시되어 있다.

첫째, 청소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 참여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컨설팅, 운영모델 제공,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며, 청소년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 매뉴얼을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 어울림마당과 동아리 활동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 청소년 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회참여 및 자기개발 관점의 자기주도형 자원봉사모델을 확산하고자 한다. 청소년 참여기구의 위원 구성 방법을 다원화하여 청소년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청소년이 스스로 실천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참여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학교에서의 참여 및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관 및 의견 제안 등 학교 공동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소년 참여기구를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학생 자치활동 및 교육정책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며, 학생자치법정의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청소년 참여 방식을 다변화하기 위하여 온·오프라인 상의 청소년 의견수렴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 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에 청소년(19~24세) 위원의 위촉을 권고하며, 청소년특별회의가 제안하는 정책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수용하는 등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 실적을 살펴보면, 우선 청소년동아리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청소년문화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과정에 참여하는 '어울림마당 청소년기획단'을 기존 16개 시·도에서 시·군·구 단위로 확대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정책 및 활동에 대한 대국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2019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부스와 MBC 특별생방송 및 청소년 유튜브 생중계 등 새로운 시도를 통해 역대 최대규모의 인원이 참가하였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였음에도 약 16만 명 이상이 참여하였다.

지역단위 자원봉사센터 및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시스템(1365자원봉사포털)과 연계한 청소년자원봉사 포털(두볼, Dovol)을 기반으로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활동 및 실적 관련 증빙을 교육부시스템을 통해 학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주적인 학교문화의 조성을 위한 학교 관리자 연수를 확대하여 실시하였고, 학생회 법제화를 기반으로 하는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지역 청소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대한 예산 지원을 233개 위원회로



확대하였으며(2020년),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내 정책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정책참여 모델을 개발하여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기도 하였다. 또한 청소년참여기구를 모든 청소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상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체험적 민주시민의 장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온라인 참여 활성화, 원탁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특별회의의 위원을 43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하고 청소년들이 직접 주제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청소년들이 발굴한 정책과제가 해당 부처의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특별회의의 전문가 자문단을 확대하였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참여기구에 취약계층 청소년이나 청년 등을 포함하는 등 구성을 다양화하여 운영하고 그에 따른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자 워크숍 등을 추진하였다.

청소년참여포털<sup>3)</sup> 시스템을 개편하여 누구나 정책 제안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제안된 과제는 청소년특별회의에서 논의할 정책 제안과제로 연계하였다. 또한 온라인 영상교육 교재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청소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청소년정책의 주요 현안에 대한 공유 및 부처 간 정책연계 강화를 위해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지자체 및 유관기관이 추천한 청소년 후보자에 대한 서류 및 대면심사를 거쳐 6인을 선정하여 위촉함으로써 청소년정책에 청소년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 조성을 위한 과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인권조례 제정의 권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제 정비 및 국가행동계획 수립, 청소년, 유관기관 종사자,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권리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권리교육 활성화, 청소년 연예인과 운동선수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생활수칙 가이드라인 제작 및 보급, 건전한 스포츠 환경조성을 통한 운동선수들의 인권 침해 사전 예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상담채널을 통한 근로권익 상담, 근로감독관·공인노무사 등을 통한 근로권익 침해 구제 지원 및 부당해고 구제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당처우 구제를 지원하며, 최저임금 미준수 등의 문제가 있는 청소년 근로현장 모니터링 및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근로 동의 발급 주체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근로권익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의식을 제고하여 청소년 근로권익에 대한 침해를 예방하고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한다.

3) 청소년참여포털 홈페이지: <https://www.youth.go.kr/ywith/index.do>.

이와 더불어 아동·청소년의 여가권 신장을 위해 가정에서의 놀이문화 확산, 학교에서의 놀이·여가 시간 확보 권장, 지역사회, 가정, 학교와 연계한 아동·청소년 놀이·여가 필요성 홍보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놀이·여가시간 확보 및 문화 확산을 도모하며, 다양한 문화·놀이·여가 프로그램 체험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청소년 자살예방사업 연계·협조 체계를 강화하고 정신건강 관심군으로 분류된 청소년들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며, 정서·행동 문제를 갖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충하고,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등 청소년 상담복지체계를 활용한 자살예방 및 연계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청소년의 정신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한다. 아울러 청소년의 신체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생애주기별로 청소년 국가 건강검진체제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 건강증진학교 운영,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방식 개선 등을 추진 중이다. 또한 건강 식생활 교육프로그램 운영, 수련시설 식중독 예방,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등 관리 및 지도·점검 강화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식생활 안전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 조성과 관련한 주요 실적을 살펴보면, 우선 스포츠 (성)폭력 예방을 위한 선수, 지도자, 학부모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스포츠인권센터를 운영하고 스포츠 인권향상을 위한 다양한 홍보사업을 진행하여 스포츠 인권향상 관련 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체육계 (성)폭력 실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였다. 이와 더불어 학생 선수의 기본 권리인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학습권 보장제를 확대 시행하고, e-school 시스템 운영을 통해 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 및 유관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권리보호에 대한 홍보 및 권리교육을 활성화하였으며, 청소년 수련시설 내 집단급식소 위생 안전 확보를 위한 지도·점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청소년의 신체 건강권 보장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소년의 근로권익 침해에 대한 실시간 상담 및 현장중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근로 보호센터'를 확대하여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근로현장도우미가 아르바이트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업주와의 면담·중재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였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비대면 상담 및 야간 전화상담을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방식의 상담창구를 운영하였다. 또한 청소년 대상의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확대·운영하였고, 교육부 및 서울교육청과 협업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교과서 개발을 추진하였다. 또한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점검 및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통한 지역사회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동 놀이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해 선별된 자살 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연계·협조·지원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자살위험군의 전문기관 연계율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자살이나 폭력 등 위기청소년의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자체에 청소년안전망팀을 설치하였으며, 고위험군 청소년에게 특화된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이버 아웃리치의 신규 추진, 온라인 상담으로의 전환 등을 통하여 코로나 블루로 인한 위기 상황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청소년의 우울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 및 소년원 재원생에게 정기 건강검진을 제공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검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건강검진을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2019년에는 보건위생물품 지원 체계를 현물지원에서 바우처 시스템으로 개편하여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하였고, 라디오 광고와 유튜브 등을 통한 제도 홍보 및 대형마트, 편의점, 모바일 앱 등 가맹점을 확대함으로써 바우처 신청 및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셋째,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과제로 토론 능력과 정치참여 의식 증진을 위한 청소년 대상 체험형 교육을 활성화하고, 어린이·청소년법제관의 운영을 확대하며, 디지털 시민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민주시민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세대 간 상호이해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보급 및 다문화중점학교 확대,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 지원 및 일반 청소년과의 교류 촉진, 장애·비장애 청소년이 함께하는 통합교육 실시 등을 통해 사회통합을 위한 상호이해 및 수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양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양성평등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진단기준 개정 및 활용, 청소년 연령대별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 개발, 청소년활동과 연계한 양성평등 프로그램 확산, 이성에 대한 상호이해 프로그램 개발 및 양성평등 캠페인 실시 등 청소년을 위한 양성평등 콘텐츠 개발 및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 대상 젠더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 성교육 전문교사 양성 및 청소년성문화센터 이용 활성화 등 양성평등 관점에 기반한 청소년 성교육을 강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청소년활동과 연계한 인성함양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인성교육 우수사례 확산 및 보급,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및 언어순화 저해 매체환경 대응 강화 등 청소년의 언어문화 향상을 위한 노력 등을 통하여 청소년 인성 함양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주요 실적을 살펴보면, 다문화에 대한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사회 통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교육의 확대, 강사 양성 및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 등을 통해 다양한 입법 체험활동을 실시함으로써 법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제고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진학상담 및 학과박람회를 개최하여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진로·진학지도 및 장학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과·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교육 강화를 통해 양성평등문화를 확산하고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활동 과정에서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과정에 성평등 교육과정을 분리하여 개설하였으며,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과정에 양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였다.

민주시민과 사회정서 등과 관련한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인성함양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을 확대하고, 인성교육 우수사례를 보급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어촌 인성학교 지정을 통하여 농어촌 마을·권역에 구축된 현장체험 학습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청소년 인성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2020년에는 2개 국립청소년수련원에 '세계시민교육센터'를 설치하여 글로벌 시민의식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나.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 주도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시된 주요 과제는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및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체제 강화이다.

첫째,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역량 기반 청소년활동 지원 체계 구축,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활동 활성화, 과학기술·산업 분야 핵심인재 양성,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활동 인프라 재구조화가 제시되어 있다. 역량 기반 청소년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역량지표 개발을 통해 역량중심 청소년활동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민주시민, 사회정서활동, STEAM·메이커 활동 등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여 시범 운영을 추진하고, 창의적·융합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활동 인프라 구축 지원을 확대하며, 역량기반 청소년수련활동 인증기준을 개발하여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는 등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지원하고자 한다.

청소년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구상하고 실행하는 사업 추진체계를 마련하며, 청소년이 기획하고 과제를 개발하는 자기주도형 자원봉사 활동을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청소년활동을 연계한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를 확산하며, 프로젝트 기반 청소년활동 및 아이디어 창출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를 집중해서 배울 수 있는 교과중점학교를 확대하고 운영과목을 다양화하며, 청소년이 직접 선택해서 수강하고 학습할 수 있는 쌍방향 온라인 실시간 학습 시스템을 마련하고, 디지털플랫폼을 통하여 청소년활동의 성과를 집적하는 공유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계와 과학교육 간 연결고리를 통한 과학·기술 분야 인프라를 구축하고, 창의적 기술 역량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인재를 발굴하며, 창의역량 제고를 위한 공학교육 혁신 및 창의적 공학인재 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을 청소년센터(가칭)로 변경하여 종합시설로 개편하고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여 청소년활동 인프라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구조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적으로 첫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청소년 역량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 핵심역량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청소년 역량지표 표준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으며 STEAM, SW교육,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메이커 동아리, 청소년비즈쿨, 발명교육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역량기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다. 과학기술특성화 대학과목 선이수제(공동AP), 첨단 인프라 활용을 통한 교육(pre-URP) 등 고교-대학교육 연계를 강화하여 과학영재 양성을 위한 지속적·안정적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를 집중해서 배울 수 있는 교과중점학교를 확대하고, 청소년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비즈쿨 운영 학교를 확대하였다.

청소년 주도형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9년에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다시 청소년이다' 프로그램과 청소년주도형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지원하였다. 또한 청소년 프로젝트활동 운영모형(KYWA형 PBL 운영모형)을 개발하여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165개 청소년시설·기관에 보급하여 운영을 지원하였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청소년활동을 기존 방식대로 진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짐에

따라 청소년 프로그램 공모사업,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운영에 온라인 비대면 형식을 도입하였으며,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인 'e-청소년'에 비대면 청소년활동 메뉴를 개설하여 비대면 청소년활동 정보를 제공하였고, 기존 대면 봉사활동을 전환하여 참여가 가능한 비대면 봉사활동 모형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를 통해 참여한 봉사활동 실적을 행정안전부의 1365 나눔포털과 연계하고, 교육부 학생생활기록부 전산시스템으로의 전송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 자원봉사 실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수련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을 청소년센터로 변경하여 종합시설로 전면 개편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동아리 활동 및 어울림마당 등을 통한 청소년 문화 활동의 장려, 문화기반시설 연계를 통한 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 문화시설 및 여가시설 등에서의 청소년 우대 활성화를 통하여 청소년의 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의 운동 흥미를 제고할 수 있는 맞춤형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과 청소년에 적합한 생활체육 보급을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며, 여성청소년의 신체활동 장려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특성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며, 청소년교류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여 확산함과 더불어 2023년에 개최 예정인 세계 잼버리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수련시설을 활용한 통일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남북한 청소년 교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안전·위생 점검 및 종합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청소년수련 활동의 신고·인증 활성화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함과 동시에 청소년지도사 양성 및 교육과정에 안전 관련 교육과정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종사자 안전교육을 확대하며, 수련활동과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청소년지도사의 활동 현장 배치 확대, 위험도 높은 체험활동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실적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문화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을 시·군·구까지 확대하는 등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원 대상 동아리 수를 확대하는 등 청소년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청소년증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청, 학교, 지자체 등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증의 단체 발급을 추진하였다. 특히 청소년증 활성화 방안을 마련(2019. 8.)하여 민관협력을 통해 청소년증 활용 우대 혜택을 확대하였으며, 2019년 12월에

만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부여됨에 따라 2020년 4월에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에서 청소년증을 투표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다. 또한 코로나19 공적 마스크 구매 시 청소년증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대국민 안내를 실시하였다.

또한 여학생스포츠클럽, 청소년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i-League 운영 등을 통해 청소년의 체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여성청소년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학생 특화 우수학교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고, 학교 스포츠클럽 리그의 여학생 종목을 5종목 이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였다.

청소년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 청년의 중국파견, 일본 대학생대표단 방한 초청 및 한국 대학생대표단의 일본 파견,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지원하여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다. 2019년에는 '통합과 포용'을 주제로 54개국 198명이 참여한 국제청소년포럼을 개최하여 각국별 청소년활동 사례 등 사전 정책 조사 및 사후 공유를 통하여 쌍방향·참여형 청소년교류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20년에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비대면·소규모 온택트 방식의 국제교류를 발굴·추진하였다. 11개국 110명이 참여한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을 개최하였으며, 30개국 5,200여 명이 참여한 세계디지털야영대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국제교류 활동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일본 및 브루나이와 온택트 방식으로 국가간 청소년 교류를 실시하였으며, 아시아 4개국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교육봉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관련 이용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청소년 체험활동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청소년 안전체험시설 증대 및 생존수영 교육의 청소년 참여 확대 등을 통하여 청소년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활동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및 운영 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였으며, 수련활동 신고제 및 인증제의 운영, 수련활동 현장 점검의 강화, 국가안전 대진단 등 수련시설 및 체험활동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 등을 통하여 청소년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수련시설별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 결과를 전산화하여 안전 운영과 관련한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운영 종합시스템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수련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오프라인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온라인 안전교육의 강화,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 코로나19 대응 안전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수련활동 환경의 안전성을 높이고 활동 종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셋째,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체제 강화와 관련하여 대상별 맞춤형 진로활동을 내실화하기 위해 초·중·고 자유학기제를 연계한 진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진로동아리 등 자율적 진로활동을 활성화하며, 진로 관련 과목, 창의적 체험활동 및 교과연계 진로교육을 확산할 예정이다. 진로탐색-개발-취업을 연계한 대학생 진로활동을 위해 지역 산업계·대학·고용센터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원스톱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 직업체험장을 구축하며, 찾아가는 진로 교육이나 원격진로 특강·상담·멘토링 등을 통하여 진로체험 기회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작업장과 내일이룸학교의 운영을 활성화하며,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탐색 및 설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취·창업 기반을 조성하고 자립 동기를 강화할 예정이다. 청소년 수련시설을 활용한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체험활동 강화를 통해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워크넷과 연계한 정보 제공, 청소년(청년) 특화 청년내일찾기 패키지를 통한 맞춤형 지원 강화 등 청소년(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취업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정원의 3% 이상을 청소년(청년)으로 고용하는 의무고용제 내실화 등을 통해 청소년(청년) 취업 지원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교육 및 창업동아리 활동 내실화, 대학창업펀드 조성 등 창업 준비를 위한 교육 및 지원을 내실화하고, 청년 스타트업, 중소 벤처기업의 R&D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협동조합 형태의 창업 모델 확산 등을 통하여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의 자생력을 제고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청소년(청년)의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국내·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실적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진로체험지원전산망인 ‘꿈길’을 통해 체험처 활동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진로교육 지원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자유학년제와 연계한 다양한 청소년 활동·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잠재역량을 계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즉, 자유학기제 관련 청소년의 관심이 높은 우수한 진로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였으며, 청소년이 자기주도적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창의융합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진로체험형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로체험버스를 통한 진로탐색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계층·지역 인프라의 불균형에 따른 진로체험 기회의 격차를 해소하고 있다. 또한, R&D 역량이 부족한 ICT 기업이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소 등 비영리 기관의 연구개발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R&D 바우처 신규 지원을 통해 청소년(청년)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다. 청소년의 자립과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의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는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대상별 맞춤형 지원,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청소년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하여 제안된 과제들을 살펴보면, 위기 유형별 청소년에 대한 상담, 회복, 자립지원까지의 종합적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체계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CYS-Net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 관심과 서비스 제공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촘촘한 청소년 복지지원체계를 운영하고자 한다. 또한 위기 유형에 따른 필수연계 기관 및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활성화하여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위기 청소년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스템 환경 구축, 위기청소년 평가 및 진단 도구 개발·보급 등을 통하여 위기청소년의 발굴-진단-분석평가 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사회안전망과의 조기 연결을 위한 현장 아웃리치(거리 및 사이버)를 활성화하고, 전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통한 청소년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상담서비스 질 제고, 전문상담교사를 통한 학교폭력 및 학교 부적응 학생의 학교 적응 상담 지원 강화, 청소년 동반자를 통한 정서·심리 상담 지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위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심리·정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주거 우선의 자립 여건 마련을 위한 청소년(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비진학 또는 미취업 후기 청소년(19~24세)의 사회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소년 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 및 예방교육을 체계화하고, CCTV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안전 환경을 조성하며,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 강화, 아동·청소년 실종 예방 및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청소년 폭력 예방 및 아동 안전 강화를 도모하고, 취약·위기 가족 대상별 특성에 맞는 가족서비스를 확대하며, 가족 사랑의 날, 가족친화인증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족 친화적 사회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 또한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및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가해·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 지원을 확대하며, 부모를 위한 가족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자 한다.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실적으로 현장 아웃리치 사업을 활성화하고,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을 수립·추진하였으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개통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아동 조기발견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 특히 위기청소년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르면, 지자체에

청소년안전망팀을 신설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위기청소년 발굴체계를 강화하며 자살이나 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안전망팀 선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80개 지자체에 97명의 위기청소년 전담 공무원을 신규 배치하였고,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간 정보공유 및 지원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한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안전망을 내실화하는데 필요한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236개로 확대(2020년)하였으며, 청소년동반자는 1,349명으로 확대(2020년)하였다. 또한 365일 24시간 전화, 문자, 사이버 상담 등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상담채널을 운영하여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굴 및 위기 개입 체계를 확보하였다.

또한 CCTV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성을 향상하여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 및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예방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조기 연계를 위한 정보연계시스템을 전국 교육청 및 경찰관서와 연계하여 운영하였으며, 학교전담경찰관을 활용하여 학교 및 가정 밖 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등 위기 청소년을 선도하고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둘째,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을 내실화하여 학교 부적응 초기부터 위기 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을 시도하며,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발굴·연계하며,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자존감 회복 및 관계형성 증진을 위한 전문 적응지원 상담프로그램 제공, 미취학·학업중단 학생의 학습 및 학력인정 지원, 건강증진 지원, 직업체험 및 전문화된 직업훈련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가출 청소년의 경우에는 청소년쉼터를 확대하고, 청소년의 다양한 특성과 욕구에 맞는 청소년쉼터 운영방식을 도입하여 쉼터의 전문화 및 특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환경이 취약한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통한 주거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정서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설 퇴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및 직업훈련 등의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의 회전문을 차단하고자 한다.

비행 청소년의 재범 예방 및 회복 지원을 위해 교육적 선도 활동을 활성화하고, 검찰 기소유예자 및 조건부 기소유예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비행 예방 및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범죄·비행 청소년의 조기 선도를 강화하고,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문화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해 다문화중점학교를 확대 운영하며, 학령기 다문화 청소년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발달, 한국어 학습을 위한 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등 다문화 청소년의 한국어 교육 및 학습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며, 아울러 북한이탈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 및 사회적응 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청소년 한부모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양육비를 현실화하고 미혼모 시설의 양육환경을 개선하며, 양육비 이행 신청 및 확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를 추진하며, 공동생활 지원형 매입임대주택 지원, 취업지원, 청소년 한부모 대상 특화형 내일이룸학교 훈련과정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습 환경이 구비된 전용 시설을 운영하고, 학생 미혼모 전담 위탁교육기관 지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청소년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교육비 및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위기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미취업 저소득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직활동비용을 지원하고, 저소득 취업 청소년 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해 자립기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나홀로 청소년 활동·돌봄 지원을 위해 초등돌봄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며, 지역아동센터 서비스의 내실화 및 공공성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실적을 살펴보면, 우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학업·취업·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연계를 위한 관계부처 간 협력 강화를 통하여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2019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도모하였으며, 학업중단 학생의 정보연계 업무절차를 개선하여 정보연계의 신속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시·도 교육청 및 경찰청 등과의 협업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전국 시·군·구까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센터)를 확대하여 접근성을 제고하였으며, 학습동아리 운영, 멘토링, 검정고시 지원, 대학입시반 운영 및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학업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대학입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청소년 생활기록부를 개발하여 2021학년도 입시를 위해 전국 4개 대학에서 시범 적용하였다. 아울러 내일이룸학교의 훈련과정 확대 및 운영방식 개선 등을 통하여 훈련 참여도를 제고함으로써 자격 및 학력 취득 인원이 증가하였고, 직업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가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를 135개소로 확대(2020년)하였으며, 쉼터 퇴소 이후에도 자립여건을 갖추지 못한 후기 청소년(19~24세)에게 주거지원·생활지원 등 종합 자립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은 9개소로 확대하는 등 청소년복지시설을 확충하였다. 청소년쉼터

입소를 꺼리는 요인으로 지적된 ‘보호자 연락 원칙’을 완화하여 청소년의 위기 정도에 따라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쉼터 퇴소 청소년들이 청년임대주택에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였고,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서비스를 적시에 연계하기 위한 거리상담 전문요원을 확대 배치하였다.

갈 곳이 없는 비행경험 청소년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20개소로 확대(2020년)하였으며, 정서·행동문제를 지닌 청소년들의 지유를 위한 상담, 학습지원, 자립지원, 생활·보호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한 청소년치료재활센터를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을 신설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함과 동시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행복주택을 통해 청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거우선 자립여건 마련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고, 월 소득 대비 주택임차료 비율이 높아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 특성에 적합한 전월세자금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자금 지원을 강화하였다.

셋째,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서 신·변종 유해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및 학원밀집지역 내 유해업소 점검·단속 강화 등을 통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한다. 또한 술·담배 판매 업소의 청소년 대상 불법판매 모니터링, 아동·청소년 대상 흡연·음주 예방교육 강화 등을 통해 청소년의 유해약물에 대한 노출 예방활동을 강화하며, 유해약물 피해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치료·재활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신·변종 유해·불법 정보의 유통 차단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인터넷 개인방송, 웹툰, 인터넷신문 광고 등의 청소년 유해성 상시 모니터링, 음란정보 및 사이버도박 등 불법·음란정보 차단 및 유통사업자 처벌, 청소년 매체환경보호센터를 내실화하고자 한다.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및 게임시간 선택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여 건강한 미디어 이용 문화를 조성하고,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의 체계적 발굴 및 기숙치유프로그램과 가족치유캠프의 내실화를 추진하며, 고위험군의 적기 전문적 치유 서비스 제공 및 진단·발굴·치유지원·사후관리 체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을 활성화하는 등 효과적인 상담·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주요 실적을 살펴보면, 우선 관계기관 합동 및 계기별 기획 점검 등을 통해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으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을 확대하고, 동시에 학교 주변 유해환경의 이전이나 폐쇄를 유인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털사이트나 인터넷신문 등의 청소년 유해광고 차단을 위해 매체물 유통사업자 자율심의를 확대함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사업체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터넷 신문광고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유해업소 홍보 사이트 및 불법도박 사이트에 대한 심의 및 차단 요청, 유튜브 상의 성인용품 판매 홍보물 등에 대한 유통 제한 등을 실시하였으며, 본인인증의무 등 청소년보호제도 이행 점검을 통하여 청소년보호를 강화하였고,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전문적·시의적 대응을 위하여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성착취의 주요 경로로 알려진 랜덤채팅 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여 청소년 대상 제공을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실명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신고기능, 대화저장 기능 등을 구비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채팅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프로그램인 사이버 안심존 운영 학교의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치유서비스를 지원하였다. 특히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인터넷 중독 개선에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학령전환기(초4, 중1, 고1) 청소년 전수 대상 진단조사를 실시하여 과의존 치유가 필요한 위험군 청소년을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 기숙형 치유프로그램의 운영,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을 통한 고위험군 청소년 대상 전문적·종합적 과의존 치유 서비스를 상시 지원하고 있다.

## 라.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강화, 지역·현장 중심의 청소년정책 활성화,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등의 과제가 설정되었다.

첫째,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강화를 위해 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높이고, 아동·청소년 업무를 가족정책과 연계하여 예방부터 보호·치료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며, 증거기반 정책분석을 위한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활동, 보호·복지·상담 분야 빅데이터, 인공지능 도입 등 디지털화 작업을 기획·설계하는 청소년사업디지털화 기획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청소년 관련 법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시·도 단위의 청소년 관련기관인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허브 기능을 강화하고, 청소년활동과 상담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개편을 유도하여 청소년시설의 기능을 강화하며, 청소년 성장·지원 혁신 지역을 지정 운영하는 등 통합형 청소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청소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청소년 육성기금의 수입 재원 다각화와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 지원 등을 통하여 청소년정책 관련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청소년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주요 실적을 살펴보면, 우선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 및 청소년들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청소년 위원을 일정 비율 이상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청소년 기본법」을 개정(2019년)하였으며, 6명의 청소년을 청소년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2020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과 관련한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청소년정책 릴레이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청소년정책의 추진 실적에 대한 분석·평가를 통해 청소년정책 역량 및 책무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역 간 청소년정책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소년정책 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 지역·현장 중심의 청소년정책 내실화를 위해 청소년이용 권장시설 지정을 늘리고, 청소년 수련시설, 학교, 지역사회 공공시설을 연계한 찾아가는 체험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공간을 활용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공공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청소년활동 터전을 확충하고자 한다. 아울러 청소년 인구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공립 청소년수련시설을 중장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도 및 시·군·구에 아동·청소년정책 전담조직의 설치를 확대하고 청소년정책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청소년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지자체의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계획하고 있다. 지자체 청소년정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함으로써 지자체의 청소년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하고, 청소년사업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마련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기 실적을 살펴보면, 우선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립청소년생태센터(을숙도)와 국립청소년산림센터(봉화)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5개 국립청소년수련원 내에 VR 기반 디지털 체험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확대하였고,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의 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배치지도사의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자원과 연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을 개정함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 288명의 청소년정책 전담공무원 배치(2020년)함으로써 청소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셋째,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지도자들이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연구·학습 문화를 조성하며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아울러 청소년단체 지도자들의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연수 확대,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 다양화, 지역 내 협력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단체 활동의 특성화 및 전문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전문역량 확보에 부응하도록 청소년 분야 국가자격검정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실습을 연수 과정에 추가하여 현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임금기준표를 마련하는 등 보수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향후 지자체 청소년정책 성과평가 도입 시 임금 기준표 적용 여부를 지표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청소년지도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공제회 설립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정서·행동 장애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스트레스나 무력감을 예방하는 등 정신건강 회복 및 에너지 재충전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청소년지도자 전문역량 향상을 위한 자격연수와 보수교육 과정에 청소년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교육과정의 도입과 더불어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연수의 제약으로 자격연수와 보수교육이 온라인으로 이뤄졌으며,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학습관리시스템)가 도입되는 등 교육디지털화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또한 청소년지도자 보수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를 토대로 마련된 임금기준표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준용하는 지방자치 단체를 확대해가는 등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 제3장

## 세계 청소년정책 현황

## 1. 주요 국제기구 및 국가 청소년 연령 현황

유엔(United Nation)은 국제협약 및 청소년 관련 정책과 사업 등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 ‘청소년(youth)’을 15~24세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ILO)’나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 WHO)’ 등 UN 국제기구들은 ‘청소년(youth)’ 통계를 산출할 때 15~24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세계은행(World Bank)’은 ‘아동(child)’을 12세 미만으로, ‘청소년(youth)’을 12~24세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은 「UN아동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UNCRC)」을 기준으로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 협약을 1991년에 비준함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역시 18세 미만으로 아동을 규정하고 있다.

〈표 1-3-1〉 UN 및 UN기구 청소년과 아동 연령기준과 근거 법률

기관	대상	연령구분
UN 세계청소년행동계획 (UN's World Programme of Action for Youth)	청소년(youth)	15~24세
국제노동기구(ILO), 세계보건기구(WHO)	청소년(youth)	15~24세
	청소년(adolescent)	10~19세
	청소년(young person)	10~24세
세계은행(World Bank)	아동(child)	12세 미만
	청소년(youth)	12~24세
UN아동권리협약(UNCRC)	아동(child)	18세 미만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2016). 청소년과 청년의 연령구분 및 청소년·청년 정책 사례.



미국은 「연방 청소년정책 조정에 관한 법률 2008(Federal Youth Coordination Act 2008)」에 따라, 청소년을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청소년 연령 기준에 대하여 법령 별로 상이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가출청소년법(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은 21세 이하로, 「인력투자법(The Workforce Investment Act)」에서 청소년은 14세 이상 21세 이하이다. 아동은 대체로 18세 미만인데, 「아동온라인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의 아동은 13세 미만이다.

〈표 1-3-2〉 미국 청소년과 아동 연령기준과 근거 법률

법률	호칭	연령구분
연방 청소년정책 조정에 관한 법률 2008(Federal Youth Coordination Act 2008)	청소년(Youth)	24세 이하
가출청소년법(Runaway and Homeless Youth Act)	청소년(Youth)	21세 이하
인력투자법(The Workforce Investment Act)	청소년(Youth)	14세 이상 21세 이하
아동시민법(Child Citizenship Act)	아동(Child)	18세 미만
표준소년법(Uniform Juvenile Court Act)	아동(Child)	18세 미만
아동온라인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아동(Child)	13세 미만
공정노동표준법(The Fair Labor Standards Act)	아동(Child)	18세 미만

자료 :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2016). 청소년과 청년의 연령구분 및 청소년·청년 정책 사례.  
2) 김정숙, 김기현, 황세영(2015). 동북아 청소년정책 국제비교 연구.

영국은 「아동 및 청소년법(Children and Young Person Act)」에 근거하여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3)」에서는 아동을 13세 미만의 연령으로, 청소년(young person)은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표 1-3-3〉 영국 청소년과 아동 연령기준과 근거 법률

법률	호칭	연령구분
아동 및 청소년법(Children and Young Person Act)	아동 및 청소년(Child and Young person)	18세 미만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3)	아동(Child)	13세 미만
	청소년(Young person)	18세 미만

자료 : 1) 김기현(2012). 청소년 관련 법령 연령기준 개정방향(안).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2016). 청소년과 청년의 연령구분 및 청소년·청년 정책 사례.

독일 연방정부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와 독일 ‘연방청소년협의회(Deutscher Bundesjugendring)’가 규정한 청소년의 연령은 12~26세이다. 기본적인 규정은 「8번째 사회법(Achtes Sozialgesetzbuch VIII: SGB)」이라 불리는 「아동·청소년 서비스관련 사회법」에 근거한다. 이외에도 아동·청소년 관련 법령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Jugendschutzgesetz)」은 14세 미만 연령을 ‘아동(Kind)’으로,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령을 ‘청소년(Jugendliche)’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년법원법(Jugendgerichtsgesetz)」에서 ‘청소년(Heranwachsende)’ 연령은 18세 이상 21세 미만이며 「연소근로자보호법(Jugendarbeitsschutzgesetz)」에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이 청소년(Jugendliche)이다. 「아동·청소년지원법(Kinder-und Jugendhilfegesetz)」에서 아동은 14세 미만이고, 청소년(Heranwachsende)은 18세 이상 21세 미만이다. 참고로 ‘청년(Junge Volljährige)’은 18세 이상 27세 미만이다. 독일에서 미성년자는 18세 미만이고, 자녀수당은 17세까지 지급되며, 18세부터 26세까지 자녀수당은 부분적으로 적용된다.

〈표 1-3-4〉 독일 청소년과 아동 연령기준과 근거 법률

법률	호칭	연령구분
청소년보호법 (Jugendschutzgesetz)	아동(Kind)	14세 미만
	청소년(Jugendliche)	14세 이상 18세 미만
소년법원법 (Jugendgerichtsgesetz)	청소년(Jugendliche)	14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Heranwachsende)	18세 이상 21세 미만



법률	호칭	연령구분
연소근로자보호법 (Jugendarbeitsschutzgesetz)	아동(Kind)	15세 미만
	청소년(Jugendliche)	15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지원법 (Kinder- und Jugendhilfegesetz)	아동(Kind)	14세 미만
	청소년(Jugendliche)	14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Heranwachsende)	18세 이상 21세 미만
	청년(Junge Volljährige)	18세 이상 27세 미만

자료 : 1) 김기현(2012). 청소년 관련 법령 연령기준 개정방향(안).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2016). 청소년과 청년의 연령구분 및 청소년·청년 정책 사례.

3) 장주리(2017). 독일 아동·청소년지원법(SGB VIII-Kinder und Jugendhilfegesetz) 개편과 시사점.

일본은 법령에 따라 ‘미성년자(未成年者)’, ‘소년(少年)’, ‘아동(兒童)’, ‘연소자(年少者)’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근거법률에 따라 각기 다른 연령기준을 정하고 있다. 「민법(民法)」의 미성년자와 「소년법(少年法)」상 소년, 「미성년자음주금지법(未成年者飲酒禁止法)」 및 「미성년자 흡연금지법(未成年者喫煙禁止法)」상의 미성년자는 2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고, 「형법(刑法)」상 형사 미성년자(刑事未成年者)는 14세 미만이며, 「아동복지법(兒童福祉法)」 등의 법률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청소년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일본 내각부는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을 제정하고,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대강(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大綱)을 통해 아동과 청년(若者)이라는 용어를 동시에 사용하며, 영유아기, 학령기 및 사춘기 아동·청소년, 청년기를 정책대상으로 포괄하였고 대상 연령을 30세 미만까지 대폭 확대시켰다. 나아가 포스트 청년기(청년기를 지났지만 원활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40세 미만의 청년)에 놓인 연령대도 포함하는 종합적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였다.

〈표 1-3-5〉 일본 청소년, 청년 연령 기준 및 근거 법률

법률	호칭	연령구분
민법(民法)	미성년자(未成年者)	20세 미만
형법(刑法)	형사미성년자 (刑事未成年者)	만 14세 미만
학교교육법(学校教育法)	학령아동(学齡児童)	6세 이상 12세 이하
노동기준법(労働基準法)	연소자(年少者)	15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복지법(児童福祉法)	소년(少年)	소학교 취학시기에서 만 18세에 이르지 않은 자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아동(児童)	18세 미만
아동매춘·아동 포르노 관련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보호 등에 관한 법률 (児童買春、児童ポルノに係る行為等の処罰及び児童の 保護等に関する法律)	아동(児童)	18세 미만
모자 및 과부 복지법(母子及び寡婦福祉法)	아동(児童)	13세 미만
소년법(少年法)	소년(少年)	20세 미만
청소년의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인터넷 이용 환경 정비 등에 관한 법률 (青少年が安全に安心してインターネットを利用できる 環境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청소년(青少年)	18세 미만
미성년자음주금지법(未成年者飲酒禁止法)	미성년자(未成年者)	20세 미만
미성년자흡연금지법(未成年者喫煙禁止法)	미성년자(未成年者)	20세 미만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아동과 청년(若者)	규정 없음 (지원시책은 30세 미만도 포함)

자료 :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2016). 청소년과 청년의 연령구분 및 청소년·청년 정책 사례.

2) 김정숙, 김기현, 황세영(2015). 동북아 청소년정책 국제비교 연구.

## 2. UN 청소년정책 현황

UN의 청소년정책은 국제평화를 위한 청소년의 역량 강화와 함께 청소년의 권리증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정책의 방향은 1964년 '세계 청소년회의'와 1965년 「청소년의 평화이념 및 국민 간 상호 존중과 이해 증진에 관한 선언」, 그리고 1985년 '세계 청소년의 해' 제정과 1995년 '세계청소년의 해' 10주년 기념을 맞아 발표한 「2000년과 그 이후의 세계청소년행동계획」, 1998년 「리스본 선언」, 그리고 2000년 '새천년개발목표'와 2015년 '지속가능 발전목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64년 유엔 전문가기구인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가 프랑스 그레노블(Grenoble)에서 개최한 '세계 청소년회의'는 학교교육의 보완책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교육의 필요성과 기능을 천명하고 다음과 같은 추진과제를 제기 하였다.

- 국제청소년위원회의 설립
- 청소년지도자와 전문가 간의 정보교환을 촉진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 전문가의 자질향상과 이를 통한 정보문헌 조사 연구와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센터의 설치
-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이러한 요소들의 통합 조정과 관련된 연구와 조사활동의 활성화
- 이 회의의 후속조치로서 지역회의 형태나 혹은 이 회의에서 논의된 주제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심층 연구하는 연구모임 형태의 협의기구 설립
- 전 세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각국 청소년지도자의 지역모임 혹은 국제모임의 소집
- 청소년문제를 검토하고 학교 밖 청소년교육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정부의 요청에 따른 전문가의 파견
- 기술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에 청소년을 위한 학교 밖 교육도 포함시킴으로써 개발도상국에 있는 지역들도 자신들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전문가를 지원받도록 하는 것
-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등의 개발도상국 청소년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 교육과정을 준비하는 것

자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청년원(1995), 프랑스 그레노블 세계청소년회의 자료집.

이어 UN은 1965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청소년의 평화이념과 국민 간 상호 존중과 이해의 증진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Promotion among Youth of the Ideals of Peace, Mutual Respect and Understanding between People)」을 채택하였다. UN은 이 선언문에서

청소년 교육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다. “청소년교육의 중요한 목적은 그들의 모든 재능을 개발하고, 그들이 보다 높은 도덕적 자질을 획득하며 평화·자유·만인의 존엄과 평등의 고상한 이상에 깊은 애착을 가지고 인간과 인간의 창조적 업적에 대한 존경과 애정이 고취되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족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청소년은 자신들이 관리하도록 소명 받은 이 세계에 대한 책임감을 의식하여야 하며, 인류행복의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고무되어야 한다.”

UN은 1985년을 ‘참여(participation)’, ‘개발(development)’, ‘평화(peace)’를 주제로 하여 ‘세계 청소년의 해’로 결의하면서 각 회원국이 청소년정책을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고 권고 하였다. 당시 UN은 청소년의 연령을 15~24세로 정의하고, 청소년을 ‘어른이 될 세대,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만이 아닌, 지금 현재 살아 있고 일을 하며 가정과 공동체, 사회와 경제에 기여하는 현 세대의 중요한 일부로 간주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UN은 인구, 교육, 고용, 보건 등에 관한 모든 발간물과 통계에서 이 연령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UN은 각국의 사정에 따른 다양한 청소년의 연령 정의 역시 존중하고 있다. 청소년 내에서도 연령에 따라 사회적·문화적·심리적 문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13~19세의 십대와 20세부터 24세까지의 초기 성인기(early adulthood)를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UN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이념은 이후 1995년 ‘세계청소년의 해’ 10주년을 맞아 채택한 「2000년과 그 이후의 세계청소년행동계획」, 1998년 「브라가 청소년실천계획」과 동년에 개최된 「청소년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리스본 선언」, 2000년 9월 ‘밀레니엄 정상회의(summit)’에서 채택된 「새천년개발목표(MDGs)」, 2014년 ‘청소년정책을 위한 글로벌 포럼’에서 채택한 「청소년정책에 대한 바쿠 선언」, 그리고 2015년 9월 25일 세계 123개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으로 지속되었다.

청소년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계획과 적절한 후속조치를 위한 실행지침은 「2000년과 그 이후의 세계청소년행동계획(The World Programme of Action for Youth to the Year 2000 and Beyond)」에서 구체화되었다. UN, 각 회원국 정부, 정부 간 혹은 비정부간 조직, 특히 다양한 차원에서 활동 중인 청소년기관에 대해 향후 청소년분야가 중점을 두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적절한 후속조치를 세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채택되었다. 주요 목적은 ‘세계 청소년의 해’의 주제인 ‘참여·개발·평화’와 관련된 활동을 촉진하고, 의사결정 참여자와 일반 대중들에게 청소년이 처한 상황과 청소년의 요구 및 권리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며,

사회·경제발전의 맥락에서 청소년정책과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고, 청소년과 청소년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하며, 평화의 이상과 상호 이해 및 존중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실행지침에서는 청소년을 단순한 인구집단으로 보기보다는 다양한 하위집단 즉, 도시와 비도시 청소년, 어린 여성, 인종차별을 받는 청소년, 어린 노동자, 학생, 어린 이주자와 난민, 장애청소년, 소년범법자, 소아 약물중독자의 집합체로 청소년집단을 조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정책 분야를 교육, 고용, 기아 및 빈곤, 건강, 환경, 마약, 청소년비행, 여가활동, 여성 및 청소년, 사회생활과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청소년의 참여 등 10개 분야로 나누어 구체적인 청소년의 삶에 대한 개입과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1998년 8월 세계 150개국 청소년들과 청소년단체의 대표 등이 참석하고, 포르투갈 브라가에서 개최된 제3회 'UN 세계 청소년포럼'에서는 「브라가 청소년실천계획(Braga Youth Action Plan)」이 채택되었으며, 주된 내용으로는 ▲청소년정책(청소년정책 분야 간 통합, 국가 내 청소년 업무관련 NGO 간 협력, 빈곤추방 및 청소년 개발), ▲청소년참여(모든 청소년들의 참여, 청소년 조직과 UN기구, 21세기를 대비한 교육, 사회개발을 위한 청소년 고용, 건강과 청소년 개발), ▲청소년인권(인권증진을 위한 청소년의 역할, 청소년 권리 현장과 청소년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 등을 제시하였다. 이어 동년 8월 158개국 청소년업무 담당 장관, 관련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여 리스본에서 열린 제1회 '청소년업무 담당 장관 회의'에서 채택한 「청소년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리스본 선언(Lisbon Declaration on Youth Policies and Programmes)」은 국가수준의 '청소년정책', '청소년참여', '청소년개발', '청소년과 평화', '청소년교육', '청소년고용', '청소년 건강', '마약과 약물남용' 등을 포함하면서 각 의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였다.

한편, '새천년개발목표(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는 세계 빈곤퇴치 및 타파에 관한 범세계적인 의제이다. 2000년 9월에 참여한 191개 UN회원 국가는 2015년까지 '빈곤의 감소', '보건', '교육의 개선', '환경보호'에 관해 지정된 8가지 목표를 실천하는 것에 동의를 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극심한 빈곤과 기아퇴치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산모건강의 증진 ▲환경지속성 보장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등이다. MDGs는 2015년 이후 지속가능발전목표라는 새로운 발전목표로 이어졌다.

2014년 10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청소년정책을 위한 글로벌 포럼(Global Forum for Youth Policies)'은 「청소년정책에 대한 바쿠 선언(Baku Commitment to Youth Policies)」을

채택하고 청소년 권리증진에 청소년정책이 기반을 두어야하며, 모든 청소년들은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고,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양성평등에 입각한 정책이 전 분야에 걸쳐 포괄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증거에 기반을 둔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과 국가 및 지역사회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청소년정책이 추진되어야 함을 천명하였다.

2015년 9월 25일에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지난 2000년에 채택되어 이행해 온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달성 시한이 2015년으로 종료되면서, 이를 대신하여 제시된 2016년부터 2030년까지의 새로운 발전 목표이다. 지속가능발전 논의의 역사에서 아동과 청소년은 주요 그룹으로 간주되어 왔고,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를 보장하며 개발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할 것을 강조해 왔다. SDGs의 논의에서도 이러한 관점이 계승되었다. SDGs의 우선순위 과제에는 ‘청소년의 권한 강화’, ‘참여’, ‘역량강화’, ‘교육’, ‘고용’, ‘기업가정신’, ‘성평등’, ‘건강권’, ‘기후변화’, ‘지속가능 생산과 소비’, ‘빈곤’, ‘이행 기제’ 등이 폭넓게 제시되었다. SDGs의 17개 목표는, ▲빈곤 퇴치 ▲기아 해소와 식량 안보 ▲보건 증진 ▲양질의 교육보장과 평생학습 ▲성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 ▲물과 위생 ▲에너지 ▲경제성장과 일자리 ▲인프라와 산업화 ▲불평등 해소 ▲도시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증진 ▲기후변화와 대응 ▲해양자원 ▲육상 생태계 ▲평화로운 사회와 제도 ▲이행 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모든 지역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시킨다.
2. 기아를 종식하고, 식량안보를 확보하며,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증진한다.
3.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을 증진한다.
4.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보장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증진시킨다.
5. 성 평등을 달성하고 여성과 여아의 역량을 강화한다.
6. 모든 사람을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의 접근성을 높이며 지속가능한 관리를 확립한다.
7. 모든 사람을 위한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의 접근을 확립한다.
8. 지속적·포괄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완전한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한다.
9. 복원력이 있는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진흥시키며 혁신을 장려한다.
10.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을 완화한다.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거주지를 조성한다.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양식을 확립한다.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는 긴급행동을 시행한다.
1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 바다, 해양자원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한다.
15. 육상 생태계를 보호·복원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며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사막화를 방지하며, 토지 황폐화를 막고 생물 다양성 감소를 억제한다.
16.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확대하고, 사법 정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한다.
17. 이행수단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한다.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청소년 삶의 질 정책방안 연구.

UN은 2018년 9월 24일 뉴욕에서 ‘청소년 2030 전략(The Youth 2030 Strategy)’을 공식 발표하며 평화와 안전, 인권,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세 가지 핵심에 걸쳐 청소년의 역할에 주목하며 청소년 지원의 포괄적인 틀을 제시하였다. 본 전략을 통해 전 세계의 다양한 청소년의 요구에 부응하고, 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영향력 및 세계·국가·지역수준의 행동을 확대하고,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를 이행하고, 검토 및 후속조치를 포함한 글로벌 의제 및 프레임워크에 청소년참여를 보장하고자 한다. 특히 청소년 권리 부여(empowerment), 개발 및 참여에 집중하며 청소년이 주도하는 과정을 강조하여 청소년 중심의 유엔으로 거듭날 것을 표명하였다. UN은 청소년전략을 통해 청소년의 리더십 표본(Leadership Example), 지식 및 혁신 선구자(Knowledge and Innovation Pioneer), 투자 및 솔루션 촉매자(Investment and Solution Catalyst), 책무성 리더(Accountability Leader) 역할을 하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전략 5대 우선순위 및 실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1대 우선순위: 관계, 참여 및 옹호 -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청소년의 목소리 확대
  - ▲ 실행계획: 주류화, 확대, 지원, 참여, 표준 수립, 연결, 강화, 증폭
- 2대 우선순위: 교육 및 보건 기반 - 양질의 교육과 보건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 확대 지원
  - ▲ 실행계획: 양질의 교육 옹호, 비형식교육 증진, 접근가능한 청소년 대응 보건 서비스 및 환경 보장, 청소년 친화적 정신 보건 서비스 지원, 성·생식 보건 및 권리 지원



- 3대 우선순위: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권한 강화 - 양질의 일자리 및 생산적인 고용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 확대 지원
  - ▲ 실행계획: 글로벌 공약 이행, 균형 잡힌 접근법 옹호, 안내 및 지원, 서비스 및 생산 자산에 대한 접근 증진, 저탄소 녹색 경제로의 전환 촉진
- 4대 우선순위: 청소년과 인권 - 청소년 인권을 보호 및 증진하며 청소년의 시민 및 정치적 참여를 지원
  - ▲ 실행계획: 청소년의 인권 보호 및 증진, 구체적인 청소년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 증진, 인권 주류화, 정치 및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 촉진, 인권 교육 및 역량 강화
- 5대 우선순위: 평화 및 탄력성 구축 - 평화와 안보 및 인도주의적 행동을 위한 촉매제로써 청소년을 지원
  - ▲ 실행계획: 가능한 환경 조성, 공식적인 평화 프로세스를 통한 청소년참여 추진, 안전한 공적 장소 제공, 파트너십 및 힘 실어주기, 지속적인 대화 촉진, 역량 강화, 기회 확대, 인도주의 환경의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자료 : 청소년활동진흥원(2019). 청소년 2030 UN 청소년전략.

UN은 산하에 다양한 전문기구 및 보조기구를 두고 있는데, 특히 청소년과 관련하여 각 기구별 사업들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유엔아동기금(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유엔식량농업기구(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유엔사무국 경제사회국(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DESA)’,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유엔봉사단(United Nations Volunteers: UNV)’, ‘유엔인구기금(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세계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등이 있다. 유엔 각 기구별 청소년 관련 사업들은 ‘유엔 사무총장 청소년 특사 사무국(Office of the Secretary General’s envoy on youth)’에서 협력 지원을 받고 있다. 2018년 현재 청소년 특사 사무국은 ‘지속가능발전’, ‘인권’, ‘평화와 안보’, ‘인도주의적 활동과 지원’이란 네 가지 핵심영역(pillars)을 중심으로 UN 차원의 청소년참여와 권리옹호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3. 주요 국가 청소년정책 현황

#### 가. 유럽연합(EU)

유럽 내 국가 연합체인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유럽의 정치·경제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1993년 11월 1일 발효된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 Treaty)」에 따라 출범하였다. 유럽연합의 정부형태는 국가연합이며,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EP)', 각국 정상들의 모임인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회원국 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장관들의 회의체인 '각료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CEU)', 각종 정책입안 및 집행을 담당하는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등 4개 기관이 유럽연합의 핵심기구를 형성한다. 이외에도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유럽회계감사원(European Court of Auditors)', '유럽경제사회위원회(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EESC)', '지역위원회(Committee of the Regions: COR)',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 '유럽옴부즈맨(European Ombudsman)',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EIB)' 등의 기관을 두고 있다.

유럽연합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각료이사회'는 정책분야별로 각 회원국을 대표하는 관계 장관으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외교, 일반(general affairs), 경제·재무, 사법·내무, 고용·사회 정책·보건·소비, 경쟁력(competitiveness), 교통·통신·에너지, 농업·수산, 환경, 교육·청(소)년·문화·체육이사회 등 10개의 각료이사회로 구성된다.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거나 회원국 또는 '집행위원회'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청(소)년 관련 정책은 청(소)년을 비롯해 교육과 문화 등 유관 분야의 정책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참고로 유럽연합의 경우 youth를 15~29세의 연령으로 정의하고 있어 여기서는 청(소)년이라고 표기하였다.

과거 유럽연합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 행동 프로그램(2007~2013)'과 '청(소)년 전략(Youth Strategy: 2010~2018)'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청(소)년 행동 프로그램'은 유럽연합에서 유럽 내 청(소)년을 위해 고안한 프로그램으로, 적극적인 유럽 시민의식과 젊은 유럽인들 간의 연대감·관용의식을 고취하고, 유럽연합의 미래 형성에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목표로 삼았다. 또한 청(소)년의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젊은 세대의 유럽연합 회원국 간 이동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청(소)년 행동 프로그램'은 ▲유럽의 청(소)년(Youth for

Europe) ▲유럽봉사활동서비스(European Voluntary System: EVS) ▲세계의 청(소)년(Youth in the World) ▲청(소)년 지원 시스템(Youth support system) ▲청(소)년 분야에서 유럽협력을 위한 지원(support for Europea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youth) 등 5개의 행동주제로 구성되었다.

한편, 유럽연합의 ‘청(소)년전략(2010~2018)’은 교육과 노동시장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보다 많은 평등한 기회제공과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적극적인 시민이 되고 참여하도록 장려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 특히 유럽 내 청년실업률이 점증하고 있어 청년세대의 고용 및 취업·창업에 초점을 맞추었다. 아울러 미래세대의 시민성 함양은 유럽공동체의 유지와 관련된 주제이기도 하다.

유럽연합은 2018년 11월 ‘청(소)년전략 2019~2027’을 발표하여 청년들이 사회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갖추 수 있도록, 민주적인 삶에 대한 청(소)년 참여 강화를 제시하였다. 유럽연합의 ‘청(소)년전략 2019~2027’은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삶을 설계하며, 탄력성을 기르고, 변화하는 세상에 대처할 수 있는 삶의 기술을 갖추도록 도우며, 유럽 전역의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시민으로서 긍정적인 변화의 주체가 되도록 하며,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고, 영역별 요구 사항 해결 및 대화를 통해 정책 결정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개선하고자 한다. 또한 ▲EU와 청(소)년의 연결, ▲모든 성별의 평등, ▲포용적 사회, ▲정보와 건설적인 대화, ▲정신건강과 웰빙, ▲농촌 청년의 발전, ▲모두를 위한 양질의 고용, ▲양질의 학습, ▲모두를 위한 공간과 참여, ▲지속 가능한 녹색 유럽, ▲청(소)년조직 및 유럽 프로그램 등 11개의 유럽 청년 목표를 포함한다. 본 청(소)년 전략은 ‘참여(Engage), 연결(Connect), 권한 부여(Empower)’라는 세 가지 활동 영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세부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3-6〉 유럽연합 Youth Strategy(2019~2027)의 3개 분야

분야	세부 정책
참여(Eng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EU 청(소)년 대화(EU Youth Dialogue) 출범</li> <li>• EU에 참여 가능한 유럽 청(소)년 포털의 통합</li> <li>• 청소년 민주생활 참여 강화 및 유럽과 기타 선거 참여 촉진</li> <li>• Erasmus+를 통한 유럽 전역의 참여활동에 대한 학습 지원 및 관심 제고 등</li> </ul>
연결(Conne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과 유럽 밖, 각지의 청(소)년 네트워크 구축</li> <li>• 정책협력 및 지역사회 구축을 통한 유럽 연대 조직 지원</li> <li>• 국경 간 학습 이동성 및 연대에 대한 참여 확대, 법적·행정적 장벽 제거 검토 등</li> </ul>

분야	세부 정책
권한 부여(Empow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질의 청(소)년 노동을 위한 실용적인 도구 개발 및 보급</li> <li>• 청(소)년 노동의 인식, 혁신, 역량강화 등을 다루는 풀뿌리 활동 지원</li> <li>• 디지털 청(소)년 노동에 대한 상호학습 지원 및 증거 구축</li> <li>• 청(소)년 근로자 기술 및 청년업무 자금조달 등</li> </ul>

자료 : European Commission(2018). Engaging, Connecting and Empowering young people: a new EU Youth Strategy. [https://ec.europa.eu/youth/sites/default/files/youth\\_com\\_269\\_1\\_en\\_act\\_part1\\_v9.pdf](https://ec.europa.eu/youth/sites/default/files/youth_com_269_1_en_act_part1_v9.pdf)에서 2020년 12월 31일 인출.

유럽연합의 청(소)년정책은 유럽연합 정책 집행기구인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교육·문화부서(Directorate-General Education and Culture: EAC)’에서 담당한다. ‘EAC’는 ▲교육과 훈련 ▲문화와 미디어 ▲청(소)년 ▲스포츠 등 4가지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7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에라스무스 플러스(Erasmus+): 교육과 훈련, 청소년, 스포츠분야의 유럽연합 예산지원 프로그램
- 젊은 기업가들을 위한 에라스무스(Erasmus for young entrepreneurs) 프로그램
- SALTO-YOUTH: 유럽 청소년을 지원하고 배움과 훈련을 향상시키는(Support, Advanced Learning and Training) 프로그램으로 에라스무스 플러스와 연계하여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들을 위한 무형식 학습자원을 제공하는 온라인 네트워크 프로그램(online tools for youth work and training)
- 청소년 포털(Youth portal): 청소년 대상 유럽 내 사회적 포용, 봉사, 여행, 보건, 학습, 노동에 관한 포털 서비스 정보 지원
- 유럽봉사활동서비스
- 유럽 내 다른 국가에서 일자리 구하기(Looking for work in another EU country)
- 지역·국가·유럽차원에서 선거에서 투표하기(Voting in local, national and European election)

자료 : [https://ec.europa.eu/info/topics/youth\\_en](https://ec.europa.eu/info/topics/youth_en)에서 2019년 11월 25일 인출.

오늘날 유럽연합의 청(소)년정책은 사회적 포용, 청소년의 고용과 기업가정신, 청소년의 보건과 웰빙, 시민사회에서의 참여, 봉사활동, 그리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청소년이란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발전해 가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 각 회원국별 다양한 문화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인종차별’과 ‘빈곤문제’ 등과 같은 각종 사회문제를 완화하고 난민을 비롯한 새로운 이주문제 등을 해결하는 과제들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유럽연합은 현재의 유럽사회가 청(소)년들에게 유례없는 실업과 사회적 배제 및 빈곤의 위기를 안겨준 상태에 처해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내 영국의 탈퇴 등도 주의 깊게 살펴볼

의제로 삼고 있다. 유럽연합은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유럽 시민들의 장기적 번영을 위한 조직적 대응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EUROPE 2020'을 설정하고, 청소년의 조기 학교중도탈락 방지와 고등교육 이수 증대에 역점을 두고 있다. 또 유럽연합은 기본적으로 청(소)년정책을 따로 분리해 진행할 수 없으며 필수적으로 고용, 교육, 훈련, 건강, 문화, 디지털미디어, 지속가능한 개발, 시민권, 스포츠와 같은 정책들과 협력하고 상호·보완하여야 함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 특히, 난민, 니트(NEET)족, 장기실업자 등 어려움에 처한 많은 청(소)년들이 유럽사회의 완벽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전망을 제시해 주어야 하며 향후 그들이 직면하게 될 문제들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유럽사회가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나. 영국

영국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경기침체가 본격화 되면서 재정 악화와 파운드화 가치 하락으로 경제 위기를 맞았다. 이후 영국의 국가 채무는 2010년 78.5%까지 치솟을 정도로 악화되었고 경제 성장률 하락, 실업률 상승 등의 결과로 이어졌다. 이후 2010년에 집권한 보수당- 자유민주당 연합정부는 긴축 정책을 펼치며 정부 예산을 크게 삭감했다. 전체 지출예산의 15~17%를 차지하는 복지 지출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총액한도를 1,000억 파운드로 설정하고, 경찰, 보건, 의료 등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한편, 행정관리 비용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실시하였다. 'Big society'라고 불리는 당시 영국 정부의 정책은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의 대안으로 사회를 부각시키고, 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를 국가에서 민간과 지역사회로 이전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영국 정부의 변화된 정책 기조 하에 영국의 청소년정책은 적은 재원으로 효율적인 정책 운영을 위하여 재구조화되었다. 그 특징으로, 첫째, 청소년을 위한 교육의 질을 높여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학업을 계속하고, 지속가능한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술과 자격을 획득하도록 하며, 둘째, 모든 청소년들이 그들의 배경이나 생활환경에 관계없이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수단과 기회를 얻도록 하고, 셋째, 더욱 많은 청소년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와 그들의 삶에서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청소년참여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철저하게 성과 지향적으로 개편하여 그 성과를 측정하고 개선하는 한편, 참가청소년이 성취한 내용을 중심으로 서비스 과정은 물론 성취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2011년 12월 19일 영국 정부는 「청소년을 위한 긍정적인 사회: 13~19세의 청소년을 위한 범정부정책의 새로운 접근(Positive for Youth: A new approach to cross-government policy for young people aged 13 to 19)」(정책보고서는 2012년 2월 출판)이란 청소년정책을 선언하고, 청소년을 정책 의사결정의 중심에 놓는 가치 실현을 다짐하였다. 이어 2013년 7월 청소년정책은 이전의 교육부 중심에서, 범정부 차원의 청소년정책을 이끌기 위해 수상 직속 국무조정실(Cabinet Office)로 이관되었다. 국무조정실로의 이관은 정부부처 간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시민사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청소년의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지원하고, 청소년의 성공에 필요한 지지적 관계 구축 등의 청소년의제(youth agenda)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영국 정부가 청소년정책 입안과정에서 청소년과 청년그룹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정책 이관 이후 국무조정실은 청소년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로 국가 시민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장과 청소년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캠페인 지원, 청년참여 증진, 지역 청소년 서비스 제공 등을 제시하였다.

최근 영국 청소년정책 및 사업의 동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Youth in Action'은 국가수준에서 운영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인데, 원래는 '유럽연합'의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으로 '영국문화원'이 참가자 선발과 파견, 평가의 역할을 한다. 당초 '유럽연합'은 이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유럽사회의 통합과 유럽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Youth in Action'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청소년이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의 시민성을 함양하여 이를 통해 고용의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둘째, 취약계층 청소년이 유럽연합의 다른 국가 청소년들과 교류하고 해외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 청소년대상 복지지원의 역할을 한다. 셋째, 참여청소년은 물론이고 청소년이 방문하는 지역의 주민들과 지역에도 문화감수성을 높여 성인들에게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주요 청소년정책으로 '청소년을 위한 긍정적인 사회(Positive for Youth: Pfy)', '국가시민성 함양 프로그램(National Citizen Service)', '국제개발과 청소년(Putting young people at the heart of development)', '사회참여촉진 캠페인(I will campaign)'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Pfy는 13~19세의 청소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새로운 접근방식이다. 청소년과 각종 협의회, 자선단체와 기업 등 사회의 모든 부문들이 Pfy의 비전을 개발·지원하는데 참여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청소년 서비스 영역에서 지방정부, 청소년기관, 지역사회와 기업의 책임을 강조한다. Pfy는 다음과 같은 실천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 예산 지원: 청소년들에 의한 국가정책 감시조직 설립 등 ▶헬프 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부모에게 유용한 정보제공 ▶지방정부 법령에 근거한 지역사회 중심 청소년 서비스 운영 ▶청년 취업지원(교육훈련, 인턴제도, 고용주 교육

등) ▶ 청소년 봉사활동 장려 ▶ 청소년문제 조기개입 촉진을 통해 취약 계층 지원 ▶ 보건서비스제도 개혁 ▶ 청소년 노숙자 예방 및 개입 ▶ 청소년 폭력 예방 ▶ 청소년 실천그룹(Youth Action Group)을 통한 9개 부처 간 협력 등이 그것이다.

‘국가시민성 함양 프로그램(NCS)’은 15~17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국무조정실 책임 하에 추진되는 국가 차원의 시민성 함양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봄, 여름, 가을에 운영되며,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리더십, 팀워크, 의사소통능력과 같은 기술을 습득하며 자기개발 및 사회성 개발을 장려한다. NCS는 3~4주 동안 네 단계(adventure - discovery - social action - celebration)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은 웹사이트인 NCS Opportunity Hub를 통해 교육, 워크숍, 자원봉사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개인에 맞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참여 청소년들은 NCS 청소년위원회에 가입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다양한 지역사회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또한 대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인턴십은 물론 학위취득까지 제공하는 ‘Get my First job’ 프로젝트 연계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국제개발과 청소년’은 영국 정부부처 중 하나인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에서 2016년에 발표한 청소년정책으로, 청소년을 국제개발의 중심에 세우자는 정책의 방향성을 제목에서부터 밝히고 있다. 국제개발부에서 시행 중인 영국의 해외원조 전략(British Aids Strategy)은 일찍이 ‘세계평화 거버넌스의 강화’, ‘위기대응력 강화’, ‘개발도상국의 변영’, ‘취약계층 지원’ 등의 4가지 목표를 설정해 왔다. 하지만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각국의 분쟁과 난민 문제, 개발도상국의 청소년 실업문제, 빈곤과 문맹을 겪고 있는 세계 청소년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영국정부는 세계 청소년 문제해결이야말로 영국 원조전략의 목표와 직결되고 이러한 문제해결의 중심에 청소년들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원조전략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국제개발부는 국제개발 프로그램들을 통합하면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프로그램 설계,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는 물론이고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에 대한 참여를 보장·지원하고 있다. 실행 전략으로는 첫째, 청소년팀을 조직해 연구를 위탁하여 정책개발에 반영하고, 둘째, UN과의 파트너십으로 청소년들이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셋째, 청소년들을 지역, 국가, 국제수준에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참여촉진 캠페인’은 ‘step up to serve’로도 불렸는데, 10~20세 청소년들의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201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I will campaign’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분야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다음의 세 가지 핵심목표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청소년들의 사회행동이 그들의 성격과 기술(skill)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두 가지 장점을 입증하고 전달할 것 ▶학교 정규교육과 기타 청소년활동(유소년 클럽, 스포츠클럽, 청소년단체, 예술 및 문화활동)을 통해 10~20세 사이의 모든 청소년에게 사회행동을 전파할 것 ▶영국 전역에서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부문의 젊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자발적인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우수한 청소년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매년 캠페인을 대표하는 50명의 청소년 대사를 선출하여 온라인을 통해 다른 청소년들을 멘토링 하거나 지역 청소년행사를 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500개 이상의 공공기관 및 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환경, 교육, 건강 등의 영역에서 청소년들에게 사회참여 활동의 기회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긴밀히 연계하고 있는 영국의 대표적인 민간조직으로는 ‘국가청소년위원회(National Youth Agency)’와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 ‘영국청소년위원회(British Youth Council)’ 등이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영국의 청소년활동을 조직·지원하고 정부와 민간단체를 연결하는 역할과 ‘청소년지도자(youth worker)’ 자격검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비록 민간단체이지만 정부 정책과 사업을 전달·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 단위 청소년사업의 파트너로서 ‘NCS’, ‘I will campaign’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외에도 청소년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청소년단체들이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도 한다.

‘영국문화원’은 1934년에 설립되었고, 1940년에는 ‘영국왕실인가(Royal Charter)’를 제정하여 현재 영국을 포함하여 110개의 국가에 지부를 두고 있다. ‘영국문화원’은 영국과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국제적인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하고 유럽연합의 ‘Youth In Action Programme’의 영국지부로서의 역할을 겸하기도 하는 등 민간차원의 청소년교육과 청소년교류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영국문화원’은 처음 설립될 당시만 해도 영국의 문화를 전달하고 세계적인 협력 구축을 위한 역할 수행이 목적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1980년대 이후에는 청소년의 학교 밖 청소년교육, 흔히 ‘무형식 교육(non-formal education)’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차원의 주요한 청소년기구라 할 수 있다.

‘영국청소년위원회’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외교부에 의해 설립되었다가, 1963년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오늘날까지 영국 청소년의 대표적인 자치조직이자 청소년지원 단체가 되었다. 25세

이하의 청소년 스스로에게 자신의 삶과 관련된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의 삶 자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청소년들로 하여금 지방, 국가, 국제적 수준에서 민주적 사회건설에 적극 참여하게 함으로써 자원봉사자, 지역사회 활동가, 핵심 의사결정자 및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만, 2020년 1월 단행된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이후 유럽연합과의 관계변화에 따라 영국의 청소년정책은 변화될 수도 있다.

## 다. 독일

독일 연방정부의 청소년정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은 ‘청소년지원(Jugendhilfe)’이다. 이 개념은 청소년들에게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사회참여를 권장하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여 성인들이 간섭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청소년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청소년지원’의 내용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장 내외에서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사회화, 교육과 훈련에 관련된 여러 대책들과 노력들, 그에 따르는 협력기관 및 시설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지원이라는 큰 개념을 실천하기 위해 독일은 다양한 청소년 관련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있다.

독일 청소년지원의 법적 토대는 1922년 제정된 제국청소년복지법(Das Reichsjugendwohlfahrtsgesetz: RJWG)으로부터 시작된다. 이 법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신과 신체, 그리고 직업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 부모들의 교육권과 책임의 관계, 민간 청소년지원과 공적지원 간의 관계 확정, 그리고 전국의 모든 지역에 청소년청(Jugendamt)을 설치하여 청소년복지를 위한 공공 담당기관을 확대·배치하는 등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이후 수급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아동과 청소년으로 구분하여 이들 취약계층의 물질적 박탈 및 빈곤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동법은 1961년 청소년복지법(Das Jugendwohlfahrtsgesetz: JWG)으로 개정하였다. 그러나 청소년복지법은 수급대상을 주체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한계점을 인식하고 보완하기 위한 법령이 1991년 1월 1일 개정된 「아동·청소년지원법(Kinder- und Jugendhilfegesetz: KJHG)」이다. 청소년복지법에서 수급대상을 주체로 인식하지 못한 것에 반해 아동·청소년지원법에서는 수급대상을 수행 주체로 바라봄으로써 개인의 개별성을 존중하고, 단순한 빈곤 구제 이상의 폭넓은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령에



의해 청소년은 교육과 발달에 관한 모든 문제를 청소년청에 묻고 자문 받을 권리가 있으며, 긴급 상황이나 갈등상황에서 이들에게 신뢰 있는 자문을 줄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였다. 또한 자신들의 발달 상태에 따라 청소년청의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는 개정될 당시, 청소년이 사회에 편입될 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스스로 발달의 주체가 된다는 청소년지원이라는 개념이 반영된 것이다. 이후 독일사회는 통일이란 급변을 맞이하였고 그에 따른 시대적인 요구 또한 변화되고 있다. 아동·청소년지원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지원의 주체로 보고 그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지원이란 개념과 사회적 지원 방안들을 발전시켰으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아동·청소년강화법(Kinder-und Jugendstärkungsgesetz)은 더욱 강한 공적 조정기구와 포괄적인 공적 책임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특히, 독일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는 아동보호, 장애 아동·청소년 보호, 청소년 참여, 요보호아동 등과 관련한 개혁안을 공식 발표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역량 강화를 핵심 목표로 내세웠다.

또 다른 법적 근거는 2002년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Jugendschutzgesetz)」으로 최근 독일의 「청소년 보호법」이 추구하는 새로운 방향으로서 청소년의 권리침해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청소년보호의 추진, 조기개입과 신뢰할 수 있는 공공의 관계망을 통한 적극적인 청소년보호 추진,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법적 보장을 통한 적극적인 청소년보호 추진, 지원과 보호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을 통한 적극적인 청소년 보호 추진 등을 핵심 방향으로 삼고 있다. 독일 연방정부의 청소년정책 지원구조와 관련해 우선 연방공화국인 독일의 국가 최고 행정기구로서 연방정부는 청소년정책과 관련해 다음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첫째, 독일 연방정부는 법령에 근거하여 각 주(州)정부의 청소년지원정책을 장려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둘째, 독일 연방정부는 청소년전문가로 구성된 연방청소년 자문위원회로부터 청소년지원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자문을 받는다. 셋째, 각 주 정부는 임기 동안 연방정부의 ‘아동·청소년보고서’를 작성하여 연방의회와 상원에 제출한다. 독일 청소년지원조직의 기본 골격은 「아동·청소년지원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상세한 사항들은 각 주의 관련 법규에서 보충적으로 다루어지게 되어 있다. 또 다른 법적 근거들은 주 자치단체 법령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법적 근거에서는 청소년정책 업무에서 실질적인 실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청(Jugendamt)’과 ‘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Jugendhilfeausschuss)’의 과제와 조직을 규정하고 있다. 「연방법」은 ‘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와 ‘행정관청’으로 전국에 청소년청이 구성되도록 정하여 자치단체 행정관청의 다른 영역들과 구별하고 있다.

‘아동·청소년보고서’는 매년 새 정부가 임기 중에 청소년들의 현황 및 청소년지원의 노력과 시행들에 관하여 연방의회와 상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따로 ‘청소년보고위원회(Jugendberichtskommission)’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에서 아동 및 청소년정책을 수행하는 중앙부처는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이고, 실질적인 부서는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하위부서인 ‘청소년실(국)’이며, 지역차원에서는 ‘청소년청(Jugendamt)’이다. 즉, 연방정부에서는 ‘청소년실’이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다루고, 지역차원에서는 실무기관인 ‘청소년청’이 전반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독일 아동·청소년정책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아동·청소년은 물론 가족 및 노인정책을 관할하는 부처인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독일은 아동정책이나 청소년정책을 여성정책 및 가족정책과 연관시킨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독일 연방정부의 주요 청소년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중앙정부인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에서는 크게 ‘세계아동권리’, ‘아동·청소년보호’, ‘통합(integration)’, ‘관용과 민주주의’, ‘참여’의 5개 영역으로 나누어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세부 정책영역은 다시 ‘청소년복지’, ‘범죄·극우주의·외국인 적대행위 예방’, ‘아동·청소년보호와 폭력보호’, ‘사회통합’, ‘연방아동·청소년계획’ 지원 및 ‘학교 밖 청소년활동’, ‘사교(邪交) 집단과 사이코집단 관리’, ‘아동·청소년지원’, ‘아동보육관리’, ‘중앙과 지방연계 전국 청소년정책 공동사업’, ‘지식정보 사회에서의 청소년지원’, 유럽청소년정책들과 같은 관련 청소년정책들로 나뉘어 있다.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세부적인 사업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보육센터의 질을 높이고 확장을 지원
- 2013년 8월 1일 이후 1세부터 유아교육에 대한 법적 권리 수립
-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아동보호 및 약자 예방을 위한 조기 개입
- 성적 폭력과 착취, 미디어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아동포르노 예방)
- 아동과 청소년의 극단적 경향에 대한 예방과 민주주의 프로젝트 추진
- 아동청소년의 복지와 청소년 보호에 대한 법적 책임
-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구현에 대한 국가적 책무
-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의 권리 구현
- 교육, 건강, 노동시장, 청소년 복지 등 모든 정책 분야에서 지원을 받아 청소년이 직접 정책을 개발하는 연방정부청소년위원회 설립

- 지원 및 가치의 방향, 내용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용 가능한 아동 및 청소년 서비스가 가능한 행정체제 구축
- 청소년과 청년 이민자에 대한 노동 조건 불이익의 개선
- 유럽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등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국제교류협력 및 개발
- 독립적인 청소년 전문가를 통한 정기적인 아동·청소년 보고서의 제공 등

자료 : 장주리(2017). 독일 아동·청소년지원법(SGB VIII-Kinder und Jugendhilfegesetz) 개편과 시사점.

독일에서 청소년지원의 의미는 우리나라의 청소년육성, 복지, 보호 등을 모두 묶는 총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프로젝트는 작게는 사회적·교육적 취약상황에 놓여 있거나 혹은 사회적 배제 경험을 갖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청소년복지관련 프로젝트로 볼 수 있고, 크게는 모든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지원하는 포괄적인 청소년지원 프로젝트로 볼 수 있다.

독일의 청소년 프로젝트들은 대체로 「아동·청소년강화법」이 정한 범주 내에서 수행되지만, 많은 부분에서 주별 자치권이 인정되므로, 각 주 별로 내용들이 상이하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청소년사업으로는 베를린의 ‘사회공간 집중사업’과 바이에른 주에 속해있는 지방자치단체인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의 ‘청소년사업’, 드레스덴의 ‘청소년 사회통합사업’ 등이 있다. 베를린의 ‘사회공간 집중사업’은 지원이 필요한 개인과 집단들이 마을별로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주거지 중심으로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의 ‘청소년사업’은 청소년청의 전문 인력이 청소년들을 상담하거나 돌보는 일과 학교와 연계된 다양한 교육적 워크숍과 강연, 코스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 청소년청은 ‘클릭(Klick) 프로젝트’를 통하여 청소년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청소년 관련 기관에게 워크숍이나 부모강연, 교사 보수교육, 체험 교육적 사례 등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로 하여금 약물중독이나 폭력, 인종차별, 유해매체 등에 긍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예방차원의 프로젝트이다. 드레스덴은 베를린, 라이프찌히 등과 함께 과거 동독의 핵심 지역임을 감안할 때 동서독 성장세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오래전부터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민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통합을 위한 지원프로그램도 수행하고 있다.

## 라. 미국

미국의 청소년정책은 주로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와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에서 담당하고 있다. 교육부는 법제상 교육에 관한 권한이 '주정부(State Government)'에 귀속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중앙부처는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과 교육 및 서비스 행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인 집행은 시나 '카운티(County)' 등과 같은 지방정부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청소년정책은 소속 차관보조직인 '아동가족실(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CF)'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아동가족실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가족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60여 개의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미국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본적인 '인간 서비스(human service)'를 제공하며, 특히 그들 스스로를 돕기 위한 주요한 정부기관으로서 아동 및 청소년정책의 대표적인 부서이다.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이 외의 부처에서도 청소년정책 및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예컨대, '노동부(Department of Labor)'는 「청소년고용 및 실업대책」, 「미성년자 고용의 안전대책」, 「청소년을 위한 공정한 고용기회 제공 프로그램」, 「청소년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노동기준법(The Fair Labor Standards Act)」을 통해 16세 미만 청소년의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등 청소년근로자의 고용 및 학대를 제한·보호하고 있다. 이외에도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는 농촌청소년을 위한 활동프로그램 등을 주로 제공하고 있으며,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는 교정국, 청소년사법과 비행예방사무국 등을 두어 청소년범죄의 예방과 치유역량을 제고하고 있고, 미성년 재판 및 미성년 비행예방활동 등을 주 활동 내용으로 삼고 있다. 또한, '국무부(Department of State)'는 청소년단체 등의 지원을 다루고 있으며,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는 도시청소년 프로그램인 'Youth Build'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경우, 각 단위별로 독자적인 청소년정책과 다양한 제도들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예산 및 인력 등 행정지원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정부는 주정부 산하에 '청소년 서비스국' 및 '복지국' 등을 두어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카운티에서는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각종 청소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경우, 규모가 거대하고 다양한 단체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단체로는 'National Collaboration for Youth'와 'US Student

Association' 등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운영예산은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청소년 관련 정책이 각 부처에 분산되어 실시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청소년 관련법은 각 부처의 청소년사업의 골격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청소년 관련법들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행정체계의 분산으로 인한 청소년정책 수행의 비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해 2005년 하월에 소개되었고, 2006년 법률로서 서명된 「연방 청소년정책조정에 관한 법률(Federal Youth Coordination Act: FYCA, 2009년 개정)」은 'Federal Youth Department Council'에 의해 제정되었다. FYCA는 청소년을 위한 연방정부 및 주정부 간의 의사소통을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적에 의해 자원을 배분하며,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2001년 의회에서 통과된 「아동낙오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NCLB)」은 미국의 모든 아이들로 하여금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불이익을 당한 학생들과 여유 있는 가정의 학생들 사이에 존재하는 현격한 학업성취 격차를 줄이고자 마련되었다. NCLB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입법된 연방초중등교육법이다. NCLB의 담당국은 교육부 내 '초·중등교육국'이다. 그러나 NCLB는 교육부는 물론이고 미국 연방정부의 모든 교육프로그램의 수립과 집행을 위한 기본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다. NCLB는 보편적으로 생활수준이 낮으면서 낮은 교육성취도를 보이고 있는 소외계층의 학생, 소수민족 학생, 영어에 능숙하지 못한 이민자 학생 등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각 주에서 정한 학업성취 기준을 달성하도록 함으로써, 전술한 바와 같이 빈부격차에 의한 학력격차를 줄이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즉, NCLB 프로그램을 통한 소외계층의 학력수준 향상은 고질적인 교육문제점을 해소하고 나아가 미국 전체의 교육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NCLB의 4대 원리는 '책무성(accountability)', '자유성(freedom)', '방법론(methods)', '선택권(choice)'이다. 4대 원리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직결되는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시킬 수 있고, 기본적인 학생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학부모 및 학생의 학교 선택권 보장을 통해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마련할 수 있고, 교원들의 자질 역시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NCLB가 제정된 지 1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면서 2012년 3월 「초·중등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에 다시 그 권한을 부여했다. 이것은 미국의 청소년정책에서 학업성취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정책이 더욱 강조되고 관련 정책과 제도가 앞으로도 점증할 것임을 시사한다.

그 밖에 2003년 개정된 「가출·노숙 청소년 법(the Runway and Homeless Youth Act: RHYA)」은 '집이 없는 소년(homeless young people)'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위해



설립된 기관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노동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 WIA)」은 광범위한 청년취업 및 고용과 관련된 직업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노동부’에 의해 제안된 「공정노동기준법(FLSA)」은 청소년 노동자의 고용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청소년 노동자의 기본급과 추가수당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 및 가정복지 서비스 증진법(The Child and Family Services Improvement Act)」은 안전하고 안정된 가족유지와 그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아동 및 가족 안전유지법(The Keeping Children and Families Safe Act of 2003)」은 「아동학대 방지 및 관리법(The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이 2003년에 개정된 것으로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교육문화 상호교류법(The Mutual Educational and Culture Exchange Act)」은 미국 국제청소년교류정책의 근거가 되고 있다.

미국 청소년정책의 방향을 살펴보면, 기존의 청소년 문제행동의 예방과 치료 및 교정중심의 정책이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진단에 기초하여 ‘긍정적인 청소년발달(positive youth development)’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이며, 방과 후 시간에 다양한 긍정적 기회와 지원을 위한 방과 후 지원 등에 정책적인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밖에 소외 청소년에 대한 보다 나은 지원, 확실한 책임, 청소년과 가족의 연결, 가장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우선권 부여 등의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대두되고 있는 긍정적인 청소년발달은 청소년의 능력을 개발하여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조력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청소년의 잠재적 역량개발을 지원해 줌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도전에 직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강조한다.

청소년개발은 오늘날 미국 청소년정책의 근간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소년개발은 청소년보호처럼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며, 청소년육성이나 지도처럼 성인이 청소년을 이끈다는 의미도 아니다. 오히려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청소년개발은 청소년들이 신체적, 사회적, 인지적, 직업적, 도덕적, 정서적으로 유능하게 되도록 도와주는 일련의 긍정적인 활동을 제공하고,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당면할 생애주기를 청소년 스스로가 대비하도록 지원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미국의 청소년 관련 사항 중 관심을 가질만한 새로운 변화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청소년 멘토링’에 관한 사회적 주목, ‘청소년 수감자’ 수의 감소, 그리고 ‘청소년 야외활동’에 대한 장려이다. 먼저, 사이버폭력의 경우, 청소년들 사이의 학교폭력이 점점 심각해지고, 이것이 오프라인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 사이버폭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청소년의 피해사례가 급증하면서

주정부에서는 사이버폭력에 관한 법을 통과시키는 경우가 많아졌다. 뉴욕, 워싱턴, 일리노이, 미네소타 등의 주에서는 이미 2008년 이전에 사이버폭력에 관한 법을 통과시켰고, 사이버폭력을 법으로 규정한 주정부는 이후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관심을 가질만한 또 다른 청소년정책은 청소년 멘토링이다. 청소년 멘토링은 청소년의 학업을 도와주는 멘토링을 시작으로 이제는 비행청소년, 위기청소년, 시설청소년, 소수청소년 등 취약계층 전반의 청소년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으며, 멘토링 대상 청소년 집단이 다양해짐에 따라 이를 담당하는 부서도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끝으로 최근 미국 연방정부차원에서 청소년정책과 관련하여 핵심 정책 이슈들을 28개로 정리한 바 있는데, 이는 오늘날 미국의 청소년정책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 단서라 할 수 있다. 28개 이슈로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After-school Programs), 아메리카 인디언과 알래스카 원주민(AI/AN) 청소년, 따돌림 예방(Bullying Prevention), 재정 능력 및 문해력(Financial Capability & Literacy), 갱단 참여 예방(Gang Involvement Prevention), 노숙과 가출(Homelessness and Runaway), 청소년 사법(Juvenile Justice), 성정체성에 대한 고민(LGBT), 정신건강(Mental Health), 멘토링(Mentoring), 긍정적인 청소년개발(Positive Youth Development), 임신 예방(Pregnancy Prevention), 재해대비와 복구(Preparedness & Recovery), 학교 분위기(School Climate), 약물남용방지(Substance Abuse Prevention), 자살 예방(Suicide Prevention), 인신매매 방지(Trafficking Prevention), 성인기로의 진입(Transition & Aging Out), 폭력 예방(Violence Prevention), 청소년 재결연(Reconnecting Youth), 투옥된 부모의 자녀들(Children of Incarcerated Parents), 가족과 지역사회 참여(Family and Community Engagement), 출산을 앞두거나 현재 양육중인 청소년 부모(Expectant and Parenting Young Families), 취업(Employment), 운전자의 안전(Driver Safety), 장애(Disabilities), 데이트 폭력 예방(Dating Violence Prevention), 시민적 참여(Civic Engagement) 등이 있다.

## 마. 일본

일본에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1965년 청소년비행 등 다양한 청소년문제들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1965년 11월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한 운동’ 등이 시작되면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이를 계기로 청소년의 육성을 국가 정책상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삼고, 광범위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연으면서 청소년과 관계되는 시책을 마련하여 종합적으로 추진하였다. 일본의 청소년정책은 크게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청소년정책의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중장기 계획·관계법령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2003년 6월, 보다 적극적인 청소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내각 부(副)총리대신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장관(대신)을 구성원으로 하는 ‘청소년육성추진본부’(이후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에 의해 아동·청년육성지원 추진본부로 변경)를 설치한 바 있다. ‘청소년육성추진본부’ 산하에는 부(副) 본부장(관방장관, 문부과학성대신, 법무대신, 후생노동대신 등)으로 구성된 회의, 청소년 관련부서의 과장급 회의, 청소년국제교류관련 연락회의, 청소년비해대책을 위한 과장급회의, 커리어교육 추진회의 등을 설치하여 청소년정책을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였다. 아울러 청소년정책의 중장기적 계획마련의 일환으로 2003년 12월 「청소년육성시책대강」을 수립하였고, 이어 2008년 12월에 새로운 「청소년육성시책대강」을 수립하였다. 2006년 6월에는 청소년들을 비행 또는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안전 및 안심 추진계획-비행, 범죄피해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2006년 12월에는 청소년들의 커리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커리어교육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조정실 특명담당대신을 본부장으로 각 부처의 각료가 참가하는 커리어 교육 등의 추진회의를 설치하였다.

오늘날 일본 청소년정책의 기본방향은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법률 제71호, 2010년 4월 1일 시행)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법은 아동·청년 육성지원 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와 원활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곤란을 겪는 아동과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 정비 등 체계적인 정부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본정부는 「아동·청년비전(vision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을 수립(2010. 6.)하여 모든 아동과 청년의 적극적이고 행복한 삶의 영위 지원, 취약아동·청년 및 가정 지원, 아동·청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 정비 등의 3가지 우선과제들을 추진하였다.

〈표 1-3-7〉 일본 아동·청년비전의 우선과제(priority issues)

구분	세부우선과제
모든 아동·청년의 적극적이고 행복한 삶의 영위 지원	1. 아동·청년의 자아형성 지원 2. 아동·청년의 사회형성 및 사회참여 지원 3. 아동·청년의 건강 및 안전 확보 4. 청년의 직업적 자립 및 취업 지원



구분	세부우선과제
취약 아동·청년 및 가정 지원	5. 취약 상황별 대응 6. 아동·청년의 피해방지 및 보호
아동·청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 정비	7. 환경 정비 8. 성인 사회구조의 재검토

자료 : 일본 내각부(2010). 아동·청년비전 <http://www8.cao.go.jp/youth/wakugumi.html>(영문판)에서 2019년 11월 25일 인출.

일본 정부는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에 근거하여 아동·청년육성지원 추진본부(본부장: 총리)를 구성하고, 여기서 아동·청년육성추진대강을 수립하면 도·도·부·현과 시·정·촌 등의 지방 자치단체에서 이를 추진하는 노력의 의무를 갖는다. 2016년 2월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본부에서 결정한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대강의 5대 중점과제는 아래와 같다.

#### 1. 모든 아동·청년의 건강한 육성

- 기본적인 생활습관 형성, 학력과 체력의 향상, 규범이나 리(원리, 이치)의 마음(りの心)의 함양
- 마음과 몸의 건강을 유지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를 지킬 힘을 육성
- 지역의 실정을 감안한 아동·청년 육성지원에 관한 상담창구 정비 촉진

#### 2. 어려움을 가진 아동·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 연령으로 단절되지 않는 새로운 네트워크 및 여러 기관의 유기적인 횡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원
-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지원하는 아웃리치(방문지원)의 충실
- 아동의 빈곤대책, 아동학대 방지대책 강화

#### 3. 아동·청년의 성장을 위한 사회 환경의 정비

- 지역 등에서 실시되는 각종 체험, 교류활동의 충실
-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을 바탕으로 한 정보통신기술의 적절한 이용

#### 4. 아동·청년의 성장을 돕는 담당자의 양성

- 관과 민의 제휴와 협력을 통한 지역에서의 공조기능 충실
- 종합적인 지식을 가진 코디네이터의 양성

#### 5. 창조적인 미래를 개척하는 아동·청년 지원

- 글로벌 인재, 과학기술 인재 육성
- 정보통신기술의 진화에 적응하고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인재의 육성
-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청년 지원

자료 : [https://www8.cao.go.jp/youth/suisin/pdf/taikou\\_gaiyou.pdf](https://www8.cao.go.jp/youth/suisin/pdf/taikou_gaiyou.pdf)에서 2019년 11월 25일 인출.

둘째, 정책대상인 청소년의 연령을 유아기에서 성인기 이전 청년기의 단계까지 폭넓게 설정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을 보호, 지원, 육성, 개발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즉,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을 연계하여 수상 직속 ‘국무조정실(내각부)’과 ‘문부과학성’ 등 별도의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법적 근거로 2010년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을 제정하였다. ‘국무조정실’은 청소년기획, 지원, 환경정비, 국제교류 등 아동·청년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의 기획·입안 및 종합조정, 관계부처 사무의 연락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문부과학성’은 청소년 건전육성 업무로서 청소년체험활동, 독서활동 등의 지원, 유해환경 대책 및 각종 청소년교육활동과 환경·시설 등을 관장한다. 특히 「아동·청년육성지원추진법」이 제정되면서 영유아기, 학령기 및 사춘기 아동·청소년, 청년기(약 18~30세 미만)와 포스트 청년기(청년기를 지났지만 원활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40세 미만의 청년)에 놓인 청년 모두를 포함하는 종합적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국가 정책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연령을 최소한 0~30세 미만까지 대폭 확대시켰다.

셋째, 청소년정책을 문제 상황별로 설정함으로써 정책과제 및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문제 상황의 내용으로는 먼저, ‘학습장애(LD)’와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곤란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 (장학금제도의 확충, 생활보호, 다문화가정 출신 청소년에 대한 지원), 비행소년들에 대한 사회복귀 및 자립지원, 가정폭력, 아동학대, 원조교제, 집단따돌림(이지메) 및 각종 재난으로부터의 예방 및 보호, 장애, 비행 및 학교중도탈락 청소년(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취업지원 등과 같은 정책들이 있다.

넷째, 청소년정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 정비에 관한 정책들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문 인력의 배치(의료, 복지, 심리상담, 진로상담분야 전문가 등), 청소년지원 및 상담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청소년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 환경 분위기 조성(학교 내 상담체제의 구축, 교사의 자질함양을 위한 연수, 학교재량권의 확대, 선택제 수업의 확충 등),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환경의 조성, 지역사회 내 청소년 활동공간의 확충 등과 같은 정책들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정보사회, 소비사회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적극적,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기회 및 제도적 장치로 ‘타운홀 미팅’, ‘모니터링제도’ 등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매년 청소년들의 ‘생활실태 및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인권에 관한 사회 계몽활동, 사회성 함양을 위한 캠페인, 청소년들도 이해하기 쉬운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등과 같은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 바.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1998년 11월 1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아동 및 청소년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후 2004년 지역사회개발·스포츠부(Ministry of Community Development and Sports: MCDS)가 지역사회개발·청소년·스포츠부(Ministry of Community Development, Youth and Sports: MCYS)로 개편되면서 MCYS가 청소년 주무부처가 되었다. 최근 사회·가족개발부(Ministry of Social and Family Development: MSF)로 개편되면서 아동·청소년정책 주무부처가 되었다. 오늘날 싱가포르의 아동·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인 MSF의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천연자원이 없는 작은 섬 싱가포르에서는 사람이 유일한 자원이다. 따라서 싱가포르는 발달의 결정적 단계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MSF는 싱가포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가정 및 사회적 차원에서의 각종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관련정책 수립과 실행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전통적으로 중시되었던 지역사회 및 국가와 관계되는 아동·청소년의 역동성과 역량개발 역시 여전히 중요한 국가적 임무로 삼아야 한다.
- 아동·청소년이 훌륭한 시민,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어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권한(empowerment)을 부여하고 좋은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자료 : <https://www.msf.gov.sg/policies/Children-and-Youth/Pages/default.aspx>에서 2019년 11월 25일 인출. 재구성.

이러한 역할에 근거하여 2019년 현재 MSF가 주요하게 다루는 아동·청소년정책을 기존의 아동·청소년정책(2014년)과 비교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체로 아동·청소년정책들은 이전의 정책들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지속하고 있고, 최근 싱가포르가 「무력충돌에 휩싸인 아동 관여에 관한 선택 의정서」를 비준하면서 주요 정책 주제로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부모 통제 밖의 청소년’과 관련해 싱가포르 정부는 현재 부모 통제를 벗어난 16세 이하의 자녀는 학교나 가정에서 행동 상에 문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적절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가해자 또는 범죄자는 아니지만, 때때로 그들의 행동은 법원에 도움을 청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할 수가 있어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청소년법(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CYPA) 제50조에 의거해 자녀를 통제 할 수 없다고 법원에 제기하면(이는 부모로서 갖는 최후의 수단임을 명시), 법원은 MSF에게 사회보고서(social report)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최대 5주 동안 아동을 소년의 집 혹은 소녀의 집(Boys’ or Girls’ Home)에 두도록 보호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MSF는 이 사건을 평가하여 법원에 선택적인 조치들을 권고하는데, 이후 법원은 청소년에게 주의를 주거나 사회봉사기관에 의뢰해 해당 청소년에게 상담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부모 혹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아동을 법원의 감독 하에 두거나 동일한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년의집 또는 소녀의집에 보호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HCCAICA)은 부모 중 한쪽이 해외로 불법 이동시킨 아동 자녀를 신속히 원래 살던 곳으로 귀환시키기 위해 1980년 국제사법회의에서 제정한 국제협약으로, 재판을 통해 양육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일단 아이를 원래 살던 곳에 있게 하라는 취지에 의해 제정되었다. 이는 전 세계 94개국(2016년 4월 기준)이 가입한 다자간 협약으로 본 협약의 적용 대상은 16세 미만의 아동이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귀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주 이내에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지만, 아이를 원래 살던 나라로 돌려보낼 경우 혼란이 커진다는 점 등을 입증하면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다. 이때 동 협약을 적용하려면 자녀가 살던 나라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나라가 모두 협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싱가포르 정부는 동 협약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은 아동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국제협약으로 싱가포르는 1995년 10월에 비준하였다. MSF는 UNCRC의 원칙과 이념에 근거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싱가포르 시민들과 아동들에게 아동권리교육 및 홍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근거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UN아동권리위원회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2017년 11월 3일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4차 정기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2009년과 2016년 사이의 싱가포르 아동권리의 진전 상황을 다루고 있으며, UNCRC의 원칙에 따라 아동의 복지를 보호하고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싱가포르 정부의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싱가포르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홍보하는데 있어 지역 사회와 정부 간 공동의 노력을 강조하였다. 싱가포르는 2008년 12월 11일 「무력충돌에 휩싸인 아동 관여에 관한 선택 의정서」를 비준하였고, 동 의정서가 2009년 1월에 발효되면서 아동·청소년정책의 주요 주제로 추가되었다.

〈표 1-3-8〉 2014년 및 2019년 MSF 주요 아동·청소년정책

2014년 MSF 주요 아동·청소년정책	2019년 MSF 주요 아동·청소년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6세 이하 부모 통제 밖의 청소년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모 통제 밖의 청소년(Children Beyond Parental Control)</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The 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HCCAICA)에 관한 의무 준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에 관한 의무 준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N 아동권리협약(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의무 준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N 아동권리협약의 의무 준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청소년보호법(The 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CYPA)에 근거한 16세 이하 청소년의 돌봄·보호·재활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정책 및 프로그램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가정 및 지역사회 등에서의 재활과 지원의 보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과 청소년의 재활과 갱생(Rebuilding Children and Youth) 지원의 보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범죄소년의 재활과 갱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파트너와의 협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파트너와의 협력 (Working with Partners to Help Youths-At-Risk)</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SF가 자금을 지원하는 Youth-At-Risk 프로그램을 위한 통합 서비스 제공기관(ISP) 구축(Integrated Service Providers for MSF-funded Youth-At-Risk Programmes)</li> </ul>
<p style="text-align: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력충돌에 휩싸인 아동 관여에 관한 선택 의정서(Optional Protocol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비준</li> </ul>

자료 : www.msf.gov.sg.

## 제2부 요약

‘제2부 청소년 인구 및 생활환경’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의 현황과 동태, 청소년 인구 규모의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보았고,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생활환경의 현황과 이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변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 인구는 1982년 1,421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0년 현재 9~24세의 청소년 인구는 약 854만 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의 16.5%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60년대에는 총인구 대비 청소년인구의 비율이 10.4%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청소년의 생활환경의 현황을 가족·학교(2017년 기준), 미디어환경(2019년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양육자의 만족도는 약 90.2%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연령대의 양육자가 높은 연령대의 양육자보다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가정생활 만족도는 약 95%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연령대의 청소년이 높은 연령대의 청소년보다 가정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학교생활 환경에 대해서는 먼저 청소년이 지각한 자신의 학업성취도는 보통(48.0%), 우수한 편(42.2%) 순으로 나타났으며 못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9.8%였다. 한편, 청소년이 수업시간에 재미있다고 느끼는 비율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감소하였으며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수업시간이 재미있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의 진로교육 경험에 대해서는 63.5%의 청소년이 진로와 직업 수업을 경험하였으며, 진로와 직업 수업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학생은 65.0%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환경에서 10대 청소년은 인터넷을 하루에 1회 이상 사용한다는 응답이 96.9%이고, 1주일간 평균 17.6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용도에 대해 중복으로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10대 청소년은 여가활동(99.5%), 커뮤니케이션(98.6%), 자료정보검색(96.0%) 순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20대의 경우 인터넷 이용을 하루에 1회 이상 이용한다는 응답은 98.6%였고, 주당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24.3시간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 용도는 자료정보검색 및 커뮤니케이션이 각각 100%, 여가활동이 99.7%를 차지하였다.

제2부

# 청소년 인구 및 생활환경

제1장 청소년 인구

제2장 청소년 생활환경

2

## 제1장

## 청소년 인구

## 1. 청소년 인구 현황

2020년 현재 9~24세의 청소년 인구는 약 854만 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 5,178만여 명 중 약 16.5%를 차지하고 있다. 9~24세 청소년 인구 중 24세 인구가 각각 8.4%로 가장 많은 반면, 14세 인구는 5.0%로 청소년 인구 중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자 1백 명당 남자의 수를 의미하는 성비는 2020년 기준 9~24세 청소년 인구의 경우 108.6명으로 청소년의 남녀 간 인구 규모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4세 인구의 성비는 112.4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4세의 인구 성비는 104.7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2-1-1〉 2020년 연령별 아동·청소년 인구

(단위: 천명, %, 여자 100명 당 남자의 수)

연령	청소년 인구	구성비(9~24세)	구성비(0~24세)	남자	여자	성비
0세	307	-	2.5	157	149	105.5
1세	322	-	2.7	165	157	105.5
2세	343	-	2.8	176	167	105.4
3세	382	-	3.2	196	186	105.4
4세	427	-	3.5	218	209	104.7
5세	440	-	3.6	225	215	104.9
6세	432	-	3.6	222	211	105.2
7세	459	-	3.8	235	224	105.0
8세	467	-	3.9	240	227	105.8
9세	475	5.6	3.9	244	231	105.7
10세	438	5.1	3.6	226	212	106.4



연령	청소년 인구	구성비(9~24세)	구성비(0~24세)	남자	여자	성비
11세	445	5.2	3.7	229	216	106.3
12세	478	5.6	3.9	246	232	106.2
13세	450	5.3	3.7	232	218	106.6
14세	430	5.0	3.5	223	207	107.5
15세	438	5.1	3.6	227	211	107.3
16세	470	5.5	3.9	244	226	107.9
17세	474	5.6	3.9	247	228	108.4
18세	512	6.0	4.2	267	245	108.8
19세	597	7.0	4.9	311	286	108.9
20세	627	7.3	5.2	329	298	110.3
21세	628	7.3	5.2	331	296	111.9
22세	669	7.8	5.5	350	319	109.6
23세	691	8.1	5.7	361	330	109.5
24세	719	8.4	5.9	380	338	112.4
계(9~24세)	8,542	100.0	-	4,448	4,094	108.6
계(0~24세)	12,122	-	100.0	6,284	5,838	107.6

주 :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 값임.

자료 : 통계청(2020), 장래인구추계.

## 2. 청소년 인구 전망

우리나라의 청소년(9~24세) 인구는 1960년 796만여 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0년에는 1,401만 명까지 증가하였다. 이후 출산율의 감소로 청소년 인구도 점차 줄어들게 되면서 2000년에는 1,150만 명, 2020년에는 854만여 명까지 감소하였다. 이처럼 저출산 현상이 향후에도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의 청소년 인구수는 2030년에 654만 명, 2040년에 531만 명, 2050년에는

524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며 2060년에는 446만 명, 2065년에는 401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소년 인구의 구성비는 1960년에 전체 인구의 31.8%에서 1980년에 36.8%까지 계속 증가하다 감소세로 전환되어 2000년에는 24.5%, 2020년에는 16.5%까지 낮아졌다. 이후에도 청소년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30년에는 12.6%, 2060년에는 10.4%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인구성장률은 1960년대에 연평균 2% 이상의 높은 수준에서 급격히 감소하여 1990~1995년에는 1.01%를 기록한 이후, 지금까지 1% 미만의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향후 2030년부터는 총인구가 감소하는 마이너스 인구성장률이 나타나고, 이는 2065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소년 인구 증가율은 1965년 3.72%로 총인구 증가율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이후 급속히 감소하여 1980년에는 1.15%, 1985년에는 -0.95%로 마이너스 성장세로 진입하였으며 이러한 감소추세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청소년인구 성장률은 2030년에 -2.41%, 2050년에 -0.55%, 그리고 2065년에 -2.13%로 향후에도 마이너스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2-1-2〉 총인구와 청소년(9~24세) 인구 전망

(단위 : 명, %)

연도	총인구	연평균 성장률	청소년 인구				
			전체	남성	여성	구성비	연평균 성장률
1960	25,012,374	-	7,956,903	4,072,726	3,884,177	31.8	-
1965	28,704,674	2.54	9,120,576	4,699,931	4,420,645	31.8	3.72
1970	32,240,827	2.18	11,329,714	5,848,491	5,481,223	35.1	4.42
1975	35,280,725	1.68	12,885,563	6,651,771	6,233,792	36.5	2.25
1980	38,123,775	1.56	14,014,932	7,216,195	6,798,737	36.8	1.15
1985	40,805,744	0.98	13,974,697	7,187,699	6,786,998	34.2	-0.95
1990	42,869,283	0.99	13,553,357	6,990,839	6,562,518	31.6	-0.06
1995	45,092,991	1.01	12,751,383	6,581,311	6,170,072	28.3	-2.28

연도	총인구	연평균 성장률	청소년 인구				연평균 성장률
			전체	남성	여성	구성비	
2000	47,008,111	0.84	11,501,436	5,987,274	5,514,162	24.5	-1.36
2005	48,184,561	0.21	11,022,283	5,799,481	5,222,802	22.9	-1.51
2010	49,554,112	0.50	10,370,213	5,468,113	4,902,100	20.9	-0.48
2015	51,014,947	0.53	9,653,802	5,080,852	4,572,950	18.9	-2.04
2020	51,780,579	0.14	8,541,708	4,447,614	4,094,094	16.5	-2.58
2025	51,905,126	0.03	7,449,812	3,846,561	3,603,251	14.4	-2.73
2030	51,926,953	-0.03	6,543,356	3,362,034	3,181,322	12.6	-2.41
2035	51,629,895	-0.18	5,822,383	2,986,050	2,836,333	11.3	-1.86
2040	50,855,376	-0.38	5,309,633	2,721,856	2,587,777	10.4	-1.59
2045	49,574,038	-0.60	5,224,223	2,678,649	2,545,574	10.5	0.35
2050	47,744,500	-0.86	5,235,101	2,685,091	2,550,010	11.0	-0.55
2055	45,405,902	-1.09	4,902,818	2,514,390	2,388,428	10.8	-1.66
2060	42,837,900	-1.20	4,458,075	2,285,661	2,172,414	10.4	-2.04
2065	40,293,293	-1.24	4,007,214	2,053,967	1,953,247	9.9	-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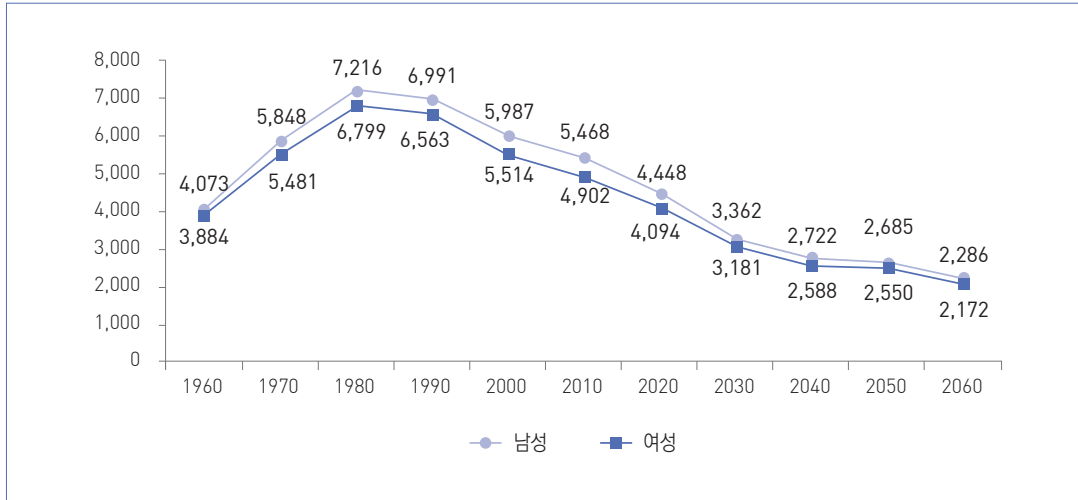
주 : 1) 연평균 인구성장률 =  $\ln(Pt/Po)/T \times 100$  (Po : 기준연도 인구, Pt : 비교연도 인구, T : 비교기간).

2) 인구성장률은 전년대비 성장률을 의미함.

자료 : 통계청(2020). 장래인구추계.

[그림 2-1-1] 청소년(9~24세) 인구 전망

(단위 : 천 명)



자료 : 통계청(2020). 장래인구추계.

### 3. 청소년 인구동태

인구동태 통계(Vital statistics)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기본적인 인구변동사건에 대한 통계로서 출생·사망·혼인·이혼에 관한 통계를 총칭하는 것이다. 조출생률, 조사망률, 조혼인율, 조이혼율 등 다양한 인구동태 지표가 작성되고 있다.

2019년 출생아 수는 약 30만 2천여 명, 사망자 수는 약 29만 5천 명이였다.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의 차이를 의미하는 자연증가로 인해 2019년 한 해 동안 약 7천 명의 인구가 증가한 셈이다.

출생아 수는 1970년 1백만여 명에서 급격히 감소하여 2005년에는 절반 이하의 수준인 약 43만 5천 명까지 감소했다. 2010년 이후 3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13년과 2014년에는 다시 감소하였으며, 2015년에 다시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6년에는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9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사망자 수는 1970년 약 25만 8천 명에서 증가한 후 1980년대 후반부터는 약 24만 명 수준에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해 왔으나, 2007년 이후 약간씩 증가하여 2010년에는 25만 5천여 명, 2015년에는 약 27만 5천 명, 2018년에는 약 29만 8천

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에 29만 5천 명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2019년 연간 혼인 건수는 23만 9천여 건으로 2018년에 비해 1만 8천여 건이 감소하였고, 2019년의 이혼 건수는 11만여 건으로 2017년에 비해 2천 1백여 건 증가했다. 혼인은 1980년 40만 3천여 건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2005년 31만 4천여 건까지 감소했다. 이후 2007년에는 약 34만 4천 건까지 증가하였으나, 글로벌 경제위기가 있었던 2009년에는 다시 약 30만 9천 건으로 감소하였다. 이후 2011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감소하고 있는데, 2019년에는 23만 9천여 건까지 감소했다. 반면 이혼은 1970년 약 1만 2천 건에서 2005년 약 12만 8천 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가 2018년 10만 8천여 건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으며, 2019년 11만여 건으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표 2-1-3〉 연도별 인구동태 추이

(단위 : 명, 건수)

연도	출생	사망	자연증가	혼인	이혼
1970	1,006,645	258,589	748,056	295,137	11,615
1975	874,030	270,657	603,373	283,226	16,453
1980	862,835	277,284	585,551	403,031	23,662
1985	655,489	240,418	415,071	384,686	38,187
1990	649,738	241,616	408,122	399,312	45,694
1995	715,020	242,838	472,182	398,484	68,279
2000	634,501	246,163	388,338	332,090	119,455
2005	435,031	243,883	191,148	314,304	128,035
2006	448,153	242,266	205,887	330,634	124,524
2007	493,189	244,874	248,315	343,559	124,072
2008	465,892	246,113	219,779	327,715	116,535
2009	444,849	246,942	197,907	309,759	123,999
2010	470,171	255,405	214,766	326,104	116,858
2011	471,265	257,396	213,869	329,087	114,284
2012	484,550	267,221	217,329	327,073	114,316

연도	출생	사망	자연증가	혼인	이혼
2013	436,455	266,257	170,198	322,807	115,292
2014	435,435	267,692	167,743	305,507	115,510
2015	438,420	275,895	162,525	302,828	109,153
2016	406,243	280,827	125,416	281,635	107,328
2017	357,771	285,534	72,237	264,455	106,032
2018	326,822	298,820	28,002	257,622	108,684
2019	302,676	295,110	7,566	239,159	110,831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2019년 조출생률(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은 5.9명으로 전년(6.4명)보다 감소했는데, 이는 통계 작성 시점인 197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였으며, 조사망률(인구 1천 명당 사망자 수)은 5.7명으로 전년(5.8)보다 0.1명 감소하였다. 조출생률에서 조사망률을 차감한 자연증가율은 2019년 기준 0.1명이었다.

2019년 조혼인율(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은 4.7건으로 2018년보다 0.3건 감소했고, 조이혼율(인구 1천 명당 이혼 건수)은 2.2건으로 2018년보다 0.1건 증가하였다.

〈표 2-1-4〉 연도별 인구동태율 추이

(단위 : 건(명), 1천 명당)

연도	조출생률	조사망률	자연증가율	조혼인율	조이혼율
1970	31.2	8.0	23.2	9.2	0.4
1975	24.8	7.7	17.1	8.0	0.5
1980	22.6	7.3	15.4	10.6	0.6
1985	16.1	5.9	10.2	9.4	0.9
1990	15.2	5.6	9.5	9.3	1.1
1995	15.7	5.3	10.3	8.7	1.5
2000	13.3	5.2	8.2	7.0	2.5
2005	8.9	5.0	3.9	6.5	2.6
2010	9.4	5.1	4.3	6.5	2.3

연도	조출생률	조사망률	자연 증가율	조혼인율	조이혼율
2011	9.4	5.1	4.3	6.6	2.3
2012	9.6	5.3	4.3	6.5	2.3
2013	8.6	5.3	3.4	6.4	2.3
2014	8.6	5.3	3.3	6.0	2.3
2015	8.6	5.4	3.2	5.9	2.1
2016	7.9	5.5	2.5	5.5	2.1
2017	7.0	5.6	1.4	5.2	2.1
2018	6.4	5.8	0.5	5.0	2.1
2019	5.9	5.7	0.1	4.7	2.2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 가. 출생

2019년 출생아 수는 30만 2천여 명,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는 5.9명으로 나타났다.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여성의 대학진학 및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20~30대의 미혼자 비중이 늘고 초혼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출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에 최저 수준을 보였다. 2006년 ‘쌍춘년’과 2007년 ‘황금돼지해’ 등의 영향으로 2007년 출생아 수가 49만 3천여 명까지 증가하였다가 2008년과 2009년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0년 이후에는 3년 연속 출생아 수가 증가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다시 감소세를 보였다가 2015년에는 소폭 증가하였으며, 이후 2016년부터는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2-1-5〉 출생아 수 및 조출생률

(단위 : 명, %, 인구 1천 명당)

연도	출생아 수	증감		1일 평균	조출생률
		증감	증감률		
1995	715,020	-	-	1,959	15.7
1996	691,226	-23,794	-3.3	1,894	15.0

연도	출생아 수	증감		1일 평균	조출생률
		증감	증감률		
1997	668,344	-22,882	-3.3	1,831	14.4
1998	634,790	-33,554	-5.0	1,739	13.6
1999	614,233	-20,557	-3.2	1,683	13.0
2000	634,501	20,268	3.3	1,738	13.3
2001	554,895	-79,606	-12.5	1,520	11.6
2002	492,111	-62,784	-11.3	1,348	10.2
2003	490,543	-1,568	-0.3	1,344	10.2
2004	472,761	-17,782	-3.6	1,295	9.8
2005	435,031	-37,730	-8.0	1,192	8.9
2006	448,153	13,122	3.0	1,228	9.2
2007	493,189	45,036	10.0	1,351	10.0
2008	465,892	-27,297	-5.5	1,276	9.4
2009	444,849	-21,043	-4.5	1,219	9.0
2010	470,171	25,322	5.7	1,288	9.4
2011	471,265	1,094	0.2	1,291	9.4
2012	484,550	13,285	2.8	1,328	9.6
2013	436,455	-48,095	-9.9	1,196	8.6
2014	435,435	-1,020	-0.2	1,193	8.6
2015	438,420	2,985	0.7	1,201	8.6
2016	406,243	-32,177	-7.3	1,113	7.9
2017	357,771	-48,472	-11.9	980	7.0
2018	326,822	-30,949	-8.7	895	6.4
2019	302,676	-24,146	-7.4	829	5.9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2019년 합계출산율은 0.918명으로 2018년 0.977명에 비해 약 0.1명 감소하였다. 2000년 이후



합계출산율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는 지속적으로 1.3명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2018년 이후로는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집계되었다.

2019년 출생아 모의 연령별 출산율(해당연령 여자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을 보면 30대 초반(30~34세)의 출산율이 86.2명으로 가장 높고, 30대 후반(35~39세)의 출산율이 45.0명, 20대 후반(25~29세)의 출산율이 35.7명 순으로 높았다. 미혼과 만혼이 늘어남에 따라 평균 출산 연령층이 높아져 2007년에 처음으로 20대 후반보다 30대 초반의 출산율이 더 높아졌다. 20대 후반(25~29세)의 출산율은 2000년 149.6명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19년에는 35.7명까지 급감했다. 30대 초반(30~34세)의 출산율은 2000년 83.5명에서 2016년 110.1명까지 증가하였으나 2017년(97.7명)부터 2019년(86.2명)까지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30대 후반(35~39세)의 출산율도 2000년 17.2명에서 2016년 48.7명으로 대체로 증가하였으나 2017년(47.2명)부터 2019년 45.0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1-6〉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단위 : 명, 해당연령 여자인구 1천 명당)

연도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합계출산율
2000	2.5	38.8	149.6	83.5	17.2	2.5	0.2	1.467
2001	2.2	31.4	129.2	77.5	17.0	2.4	0.2	1.297
2002	2.6	26.5	110.9	74.5	16.6	2.4	0.2	1.166
2003	2.5	23.6	111.7	79.1	17.1	2.4	0.2	1.180
2004	2.3	20.6	104.5	83.2	18.2	2.4	0.2	1.154
2005	2.1	17.8	91.7	81.5	18.7	2.4	0.2	1.076
2006	2.2	17.6	89.4	89.4	21.2	2.6	0.2	1.123
2007	2.2	19.5	95.5	101.3	25.6	3.1	0.2	1.250
2008	1.7	18.2	85.6	101.5	26.5	3.2	0.2	1.192
2009	1.7	16.5	80.4	100.8	27.3	3.4	0.2	1.149
2010	1.8	16.5	79.7	112.4	32.6	4.1	0.2	1.226
2011	1.8	16.4	78.4	114.4	35.4	4.6	0.2	1.244
2012	1.8	16.0	77.4	121.9	39.0	4.9	0.2	1.297

연도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합계출산율
2013	1.7	14.0	65.9	111.4	39.5	4.8	0.1	1.187
2014	1.6	13.1	63.4	113.8	43.2	5.2	0.1	1.205
2015	1.4	12.5	63.1	116.7	48.3	5.6	0.2	1.239
2016	1.3	11.5	56.4	110.1	48.7	5.9	0.2	1.172
2017	1.0	9.6	47.9	97.7	47.2	6.0	0.2	1.052
2018	0.9	8.2	41.0	91.4	46.1	6.4	0.2	0.977
2019	0.8	7.1	35.7	86.2	45.0	7.0	0.2	0.918

주 :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출생아 수(가임여자 1명당 명)임.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2019년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 수)는 2018년 105.4와 비슷한 수준인 105.5로 나타나 정상적인 출생성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출생성비는 105를 기준으로  $\pm 2$ (103~107) 수준을 의미한다. 출생성비는 1980년 중반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994년 태아의 성감별 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이 강화되면서 감소하기 시작했다. 2007년에 정상 성비 범위인 106.2 수준으로 내려간 이후에는 정상 성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출생아의 출산순위별로도 출생성비는 모두 정상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9년 첫째 아와 둘째 아의 성비는 각각 106.2와 105.3로 첫째 아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둘째 아는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 이상의 출생성비는 103.2로 2018년 106.0에 비해 감소하였다.

〈표 2-1-7〉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단위 : 여아 1백 명당 남아 수)

연도	총출생성비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이상
2000	110.2	106.3	107.4	144.2
2001	109.1	105.5	106.4	141.5
2002	110.0	106.5	107.3	141.4
2003	108.7	104.9	107.0	136.9
2004	108.2	105.1	106.2	133.0
2005	107.8	104.8	106.5	128.5

연도	총출생성비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이상
2006	107.5	105.7	106.0	121.9
2007	106.2	104.5	106.0	115.7
2008	106.4	104.9	105.6	116.7
2009	106.4	105.1	105.8	114.3
2010	106.9	106.4	105.8	110.9
2011	105.7	105.0	105.3	109.5
2012	105.7	105.3	104.9	109.2
2013	105.3	105.4	104.5	108.0
2014	105.3	105.6	104.6	106.7
2015	105.3	105.9	104.5	105.6
2016	105.0	104.4	105.2	107.4
2017	106.3	106.5	106.1	106.4
2018	105.4	105.2	105.8	106.0
2019	105.5	106.2	105.3	103.2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년도.

## 나. 사망

2019년 총 사망자 약 29만 5천 명 중 청소년(10~24세) 사망은 1,92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약 0.6%를 차지한다. 청소년 사망자 중 10~14세는 9.6%(184명), 15~19세는 31.8%(610명), 20~24세는 33.6%(1,126명)로 나타났다.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경우 전체 사망자에 비해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운수사고, 자살 등)에 의한 사망자 비중이 높다. 청소년 사망의 65.7%인 1,262명은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이었고, 신생물에 의한 사망이 231명(12.0%), 신경계통의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107명(5.6%)의 순으로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연령의 사망원인은 신생물이 28.1%, 순환기계통의 질환이 20.4%, 호흡계통의 질환 12.4%,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및 징후 9.5%,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이 9.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1-8〉 2019년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자 수 및 구성비

(단위 : 명, %)

사망원인	총 사망		청소년 사망						
	계	구성비	사망자 수			연령별 구성비			
			남녀 전체	남자	여자	10~24세	10~14세	15~19세	20~24세
전체	295,110	100.0	1,920	1,164	756	100.0	100.0	100.0	100.0
특정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8,692	2.9	14	9	5	0.7	0.5	0.7	0.8
신생물	82,844	28.1	231	157	74	12.0	18.5	13.3	10.3
혈액 및 조혈기관 질환과 면역 기전을 침범하는 특정장애	833	0.3	20	13	7	1.0	3.3	1.1	0.6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9,502	3.2	17	8	9	0.9	2.2	0.3	1.0
정신 및 행동장애	4,672	1.6	2	0	2	0.1	0.0	0.2	0.1
신경계통의 질환	12,903	4.4	107	69	38	5.6	12.0	6.9	3.8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1	0.0	0	0	0	0.0	0.0	0.0	0.0
귀 및 유도의 질환	6	0.0	0	0	0	0.0	0.0	0.0	0.0
순환계통의 질환	60,252	20.4	105	70	35	5.5	6.5	6.1	5.0
호흡계통의 질환	36,655	12.4	36	24	12	1.9	3.8	2.0	1.5
소화계통의 질환	11,963	4.1	12	8	4	0.6	1.1	0.5	0.6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617	0.2	0	0	0	0.0	0.0	0.0	0.0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1,366	0.5	10	3	7	0.5	0.5	0.8	0.4
비뇨생식계통의 질환	8,565	2.9	4	2	2	0.2	1.1	0.0	0.2
임신, 출산 및 산후기	36	0.0	1	0	1	0.1	0.0	0.0	0.1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병태	424	0.1	0	0	0	0.0	0.0	0.0	0.0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321	0.1	24	14	10	1.3	2.7	1.3	1.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	28,176	9.5	75	38	37	3.9	5.4	2.5	4.4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27,282	9.2	1,262	749	513	65.7	42.4	64.4	70.2

자료 : 통계청(2020). 사망원인통계.

## 제2장

## 청소년 생활환경

청소년의 생활환경은 가족환경, 학교환경, 사회환경, 미디어환경이 중심이 되므로 이를 각각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 1. 가족환경

가족환경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으나 청소년 생활환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족구성 현황, 가구의 세대구성, 자녀가치관, 부모와 청소년 자녀관계를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여기에서 활용된 자료는 통계청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사회조사,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청소년 친화적 가족활동 요구조사를 근거로 하였다.

## 가. 가족구성 현황

가구란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하며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경제·사회적 단위이다.

〈표 2-2-1〉 연도별 가구 수 및 가구원 수

(단위 : 가구, 명)

연도	총 가구 수	일반가구 <sup>1)</sup> 수	집단가구 <sup>2)</sup> 수	평균 가구원 수
1970	5,856,901	5,792,983	63,918	5.3
1975	6,754,257	6,647,778	106,479	5.0

연도	총 가구 수	일반가구 <sup>1)</sup> 수	집단가구 <sup>2)</sup> 수	평균 가구원 수
1980	7,992,968	7,969,201	23,767	4.5
1985	9,598,796	9,571,361	27,435	4.1
1990	11,370,160	11,354,540	15,620	3.7
1995	12,974,194	12,958,181	16,013	3.3
2000	14,326,224	14,311,807	14,417	3.1
2005	15,903,679	15,887,128	16,551	2.9
2010	17,574,067	17,339,422	20,727	2.7
2015	19,560,603	19,111,030	16,464	2.6
2018	20,499,543	19,979,188	17,209	2.4
2019	20,891,348	20,343,188	16,729	2.4

주 : 1) 외국인 가구 제외.

2) 1970년대에는 1인 단독가구를 추정하여 일반가구에 포함.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 연도.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가구구성에 있어 지속적인 변화를 겪어왔다. 전통적인 대가족의 해체, 친족가구의 비율 감소, 핵가족 비율의 증가, 고령화로 인한 노인 가구 및 1인 가구의 증가, 출산율 감소 등으로 가구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감소했다. 2019년 총 가구 수는 2,089만여 가구로, 2015년에 비해 133만여 가구가 증가했고, 1970년에 비해서는 약 1,503만 가구가 증가했다. 그러나 평균 가구원 수는 2019년 2.4명으로 2015년보다 0.2명 감소했다. 평균 가구원 수는 1970년 5.3명에서 급격히 감소하여 2005년에는 3명 이하로 줄었고, 2019년에는 2.4명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나. 가구의 세대구성

2019년의 세대구성 유형별 가구 수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의 경우, 총 가구(일반가구 기준) 중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2세대 가구가 45.3%로 가장 많고, 1인 가구 30.2%, 1세대 가구 18.5%, 3세대 가구 4.1%, 비혈연가구 1.9%, 4세대 이상 가구 0.0%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 비해 2세대 가구 비율은 3.5%p 감소한 반면, 1세대 가구는 1.1%p, 1인 가구는 3.0%p, 비혈연가구는

0.8%p 증가했다.

2세대 가구의 비중은 동지역이 47.0%, 읍면지역은 38.0%로 읍면지역의 2세대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1세대 가구 비중은 동지역이 17.3%, 읍면지역이 23.2%로 읍면지역의 비중이 더 높았다. 읍면지역에서 1세대 가구와 1인 가구의 구성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은 농촌의 청·장년층이 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노인부부 및 노인 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표 2-2-2〉 세대구성 유형별 가구 수 현황

(단위 : 천가구, %)

구분	2010년		2015년		2018년		2019년	
	가구 수	구성비	가구 수	구성비	가구 수	구성비	가구 수	구성비
전국	17,339	100.0	19,111	100.0	19,979	100.0	20,343	100.0
1세대 가구	3,027	17.5	3,324	17.4	3,600	18.0	3,752	18.5
2세대 가구	8,892	51.3	9,328	48.8	9,288	46.5	9,210	45.3
3세대 가구	1,063	6.1	1,029	5.4	894	4.5	840	4.1
4세대 이상 가구	13	0.1	11	0.1	8	0.0	6.9	0.0
1인 가구	4,142	23.9	5,203	27.2	5,849	29.3	6,148	30.2
비혈연가구	202	1.2	214	1.1	340	1.7	387	1.9
동지역	14,031	100.0	15,488	100.0	16,117	100.0	16,437	100.0
1세대 가구	2,182	15.6	2,504	16.2	2,718	16.9	2,844	17.3
2세대 가구	7,599	54.2	7,879	50.9	7,799	48.4	7,727	47.0
3세대 가구	842	6.0	810	5.2	705	4.4	663	4.0
4세대 이상 가구	9	0.1	8	0.1	5	0.0	5	0.0
1인 가구	3,244	23.1	4,125	26.6	4,624	28.7	4,899	29.9
비혈연가구	156	1.1	163	1.1	265	1.6	300	1.8
읍면지역	3,308	100.0	3,623	100.0	3,862	100.0	3,906	100.0
1세대 가구	846	25.6	821	22.7	881	22.8	908	23.2
2세대 가구	1,294	39.1	1,449	40.0	1,489	38.6	1,482	38.0
3세대 가구	221	6.7	220	6.1	189	4.9	176	4.5

구분	2010년		2015년		2018년		2019년	
	가구 수	구성비	가구 수	구성비	가구 수	구성비	가구 수	구성비
4세대 이상 가구	4	0.1	4	0.1	2	0.1	2	0.1
1인 가구	898	27.1	1,078	29.8	1,223	31.7	1,250	32.0
비혈연 가구	46	1.4	52	1.4	75	1.9	87	2.2

자료 : 통계청(2010, 2015, 2018, 2019).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 다. 자녀가치관

부모에게 자녀의 의미는 부모와 자녀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자녀가치관은 <표 2-2-3>에 제시되어 있다. 자녀에 대한 견해로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는 96.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라는 자녀를 통한 부부 관계에 대한 견해 91.5%,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는 81.7%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정서적 가치에 대한 기대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24.8%로 이는 자녀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기대감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는 21.1%로 이는 과거 자녀의 중요한 가치였던 '가문계승' 역할의 중요성이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연령별로는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가 25세 미만은 45.5%, 25~29세는 31.6%의 비율을 보인 반면, 3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22~26%로 낮은 편이었다. 이를 통해 20대의 경우 결혼생활 초기에 직업이나 소득의 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노후에 대한 자녀의 의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다소 존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견해 역시 20대에서 부정적인 태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해당 연령층에 결혼 직후 자녀 출산을 앞두고 있는 기혼여성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자녀 출산에 대한 기대가 자녀의 가문계승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2-3〉 자녀에 대한 견해(찬성비율)

(단위 : %)

구분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가 있는 일이다	자녀는 부모간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해준다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전체	96.8	91.5	81.7	24.8	21.1	
연령	25세 미만	97.2	89.9	83.1	45.5	33.6
	25~29세	95.6	90.2	83.1	31.6	29.5
	30~34세	96.9	91.6	81.4	24.7	21.8
	35~39세	97.4	91.7	81.2	22.6	19.0
	40~44세	96.2	91.7	82.1	23.7	19.9
	45~49세	96.9	91.5	81.6	25.9	22.0

주 : 기혼여성 15~49세를 대상으로 조사.

자료 : 이소영 외(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표 2-2-4〉와 같다. 2017년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90.2%로 2011년 90.1%와 비교하면 미미한 차이가 있고, 2014년 90.5%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연령별로 30대 이하는 93.8%로 40대 89.4%, 50대 이상 90.1%에 비해 30대 이하 양육자의 만족도가 다소 높았다. 이는 양육자의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감이 감소함을 시사한다. 성별로 남자 양육자는 91.8%로 여자 양육자 90.0%보다 긍정응답률(그런 편 및 매우 그러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농산어촌이 93.9%로 대도시 90.6%, 중소도시 88.1%보다 긍정응답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남자 양육자와 농산어촌 양육자가 다른 양육자에 비해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감이 다소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2-2-4〉 양육관련 만족도 : 현재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한다

(단위 : %)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은 편	그런 편	매우 그러함	
연도별	2011년	0.9	9.1	65.2	24.9
	2014년	0.9	8.6	59.6	30.9
	2017년	0.3	9.5	59.3	30.9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은 편	그런 편	매우 그러함	
2017년	연령	30대 이하	0.1	6.1	58.2	35.6
		40대	0.2	10.3	58.2	31.2
		50대 이상	0.5	9.4	61.3	28.8
	성별	남자	0.4	7.8	57.7	34.1
		여자	0.3	9.7	59.5	30.5
	지역별	대도시	0.3	9.2	60.6	30.0
		중소도시	0.3	11.5	58.6	29.5
		농산어촌	0.3	5.8	57.5	36.4

자료 : 여성가족부(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부모의 자녀양육에 있어 자녀와의 충분한 대화에 대한 견해는 <표 2-2-5>와 같다. 평소 자녀와의 대화이 충분하 편이라는 긍정응답률이 2014년 79.6%에서 2017년 75.5%로 4.1%p 감소하였다. 연령별로 30대 이하는 84.2%로 40대 76.0%, 50대 이상 72.0%보다 30대 이하 양육자의 긍정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양육자의 연령대가 낮을수록 자녀와의 대화이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성별로 여자 양육자는 75.9%로 남자 양육자 71.9%보다 긍정응답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농산어촌은 80.0%로 대도시 73.9%, 중소도시 75.4%보다 긍정응답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여자 양육자와 농산어촌 양육자가 다른 양육자에 비해 자녀와 충분하게 대화하는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다.

<표 2-2-5> 양육관련 만족도 : 평소 자녀와의 대화이 충분하다

(단위 : %)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은 편	그런 편	매우 그러함
연도별	2014년	1.1	19.3	59.3	20.3
	2017년	0.7	23.8	53.5	22.0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은 편	그런 편	매우 그러함	
2017년	연령	30대 이하	0.1	15.7	55.6	28.6
		40대	0.5	23.5	53.1	22.9
		50대 이상	1.1	26.9	53.3	18.7
	성별	남자	2.0	26.0	49.0	22.9
		여자	0.5	23.6	54.0	21.9
	지역별	대도시	0.5	25.6	53.7	20.2
		중소도시	0.7	23.8	53.1	22.3
		농산어촌	1.1	18.9	53.7	26.3

자료 : 여성가족부(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양육책임의 범위는 <표 2-2-6>에 제시되어 있다. 자녀양육책임의 범위로 2012년에는 자녀가 대학졸업까지가 49.6%로 가장 많았고,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 20.4%,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15.7%, 고등학교 졸업까지 8.9%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자녀가 대학 졸업까지 62.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17.2%,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까지 10.4%,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 8.8%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2018년에는 자녀가 대학 졸업까지가 59.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17.4%,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까지 14.7%,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 7.1%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5년 이전에는 62.4%로 자녀가 대학 졸업까지를 자녀양육책임의 범위로 보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2018년 59.2%로 3.2%p 감소하였다. 유사하게 부모의 자녀양육 책임이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5년 8.8%에서 2018년 7.1%로 약간 감소하였다. 반면에 자녀양육책임의 범위에 대하여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는 다소 증가하였고,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5년 10.4%에서 2018년 14.7%로 4.3%p 증가하였다. 자녀양육책임의 범위에 대하여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다소 증가하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와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의 비율이 다소 감소한 것은 자녀 양육책임에 대한 인식이 다소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2-6〉 자녀양육책임의 범위(2012년, 2015년, 2018년)

(단위 : %)

구분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까지	자녀가 대학 졸업까지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자녀가 혼인할 때까지	언제까지 라도	기타	생각해 보지 않음/ 모르겠음	계
2012년	8.9	49.6	15.7	20.4	4.6	-	0.8	100.0
2015년	10.4	62.4	17.2	8.8	1.2	-	-	100.0
2018년	14.7	59.2	17.4	7.1	1.6	-	-	100.0

자료 : 1) 김승권 외(2012).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 이삼식 외(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3) 이소영 외(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부모가 느끼는 자녀의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표 2-2-7〉에 제시되어 있다. 자녀의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는 2014년 68.6%에서 2017년 71.9%로 3.3%p 증가하였다. 자녀 사교육비에 대해 70% 이상의 양육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연령이 어릴수록 그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더 많았다. 30대 이하에서는 84.1%, 40대에서는 77.1%가 부담을 느끼는데 반해 50대 이상에서는 60.3%만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0대 이상에서는 학령기 자녀가 줄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된다. 성별로 여자 72.6%가 남자 65.1%보다 사교육비 부담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로 중소도시 73.8%, 대도시 71.4%, 농산어촌 68.6%로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양육자가 부담감을 느끼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양육자의 경우 부담감을 느끼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양육자의 연령이나 성별, 거주 지역에 따라 부담감을 느끼는 비율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경우이건 10명 중 최소 6~7명 이상이 사교육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7〉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

(단위 : %)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은 편	그런 편	매우 그러함	
연도별	2014년	11.6	19.7	45.2	23.4
	2017년	8.3	19.9	53.5	18.4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은 편	그런 편	매우 그러함	
2017년	연령	30대 이하	2.7	13.2	60.3	23.8
		40대	5.3	17.5	55.7	21.4
		50대 이상	14.3	25.4	48.0	12.3
	성별	남자	9.2	25.7	50.5	14.6
		여자	8.2	19.2	53.8	18.8
	지역별	대도시	8.0	20.6	55.6	15.8
		중소도시	6.4	19.8	53.2	20.6
		농산어촌	13.2	18.2	48.2	20.4

자료 : 여성가족부(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라. 부모와 청소년 자녀관계

부모와 청소년과의 관계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활동 및 대화시간 등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와 청소년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이 부모님과 함께 하는 활동, 가족과 함께 참여한 여가문화활동, 부모님과 대화시간, 청소년의 고민상담 대상자, 청소년의 가정생활 만족도,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 등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이 부모님과 함께하는 활동은 <표 2-2-8>과 같다. 2014년에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활동 중 저녁식사가 가장 많았다. 매일 부모님과 저녁식사를 한다는 청소년이 37.5%, 주 1~3회 저녁식사를 한다는 청소년 21.9%이었다. 반면 거의 하지 않는다는 청소년은 9.7%이었다. 저녁식사 이외에 청소년들이 부모님과 함께하는 활동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와 여가활동이 있다. 흥미로운 것은 청소년들은 자신의 고민에 관한 대화나 책, TV, 영화에 대한 대화보다 부모님과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를 더 많이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학교생활이나 학업에 대해서는 부모와 자주 대화를 하지만 자신의 고민이나 관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대화를 적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59.8%의 청소년은 부모와 정치, 사회, 문화적 주제에 대한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했다.

2014년도와 유사하게 2017년에도 이와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부모와 같이 하는 활동은 저녁식사가 가장 많았다. 매일 부모님과 저녁식사를 같이 한다는 청소년은 27.0%, 주 4~6회 저녁식사를 한다는 청소년 24.0%, 주 1~3회 저녁식사를 한다는 청소년 32.9%, 거의 안한다는

청소년은 4.5%이었다. 2014년보다 매일 부모님과 저녁식사를 한다는 청소년과 거의 안한다는 청소년 모두 감소했다. 2014년보다 2017년에 부모님과 함께 하는 활동으로 나의 고민에 관한 대화, 책, TV, 영화에 대한 대화, 여가활동은 거의 안한다는 청소년과 매일 한다는 청소년 모두 소폭 감소하였다. 즉, 나의 고민에 관한 대화, 책, TV, 영화에 대한 대화, 여가활동을 부모와 함께 하는 청소년은 감소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 사회, 문화적 주제에 대한 대화는 2014년 59.8%의 청소년이 하지 않는다고 한 반면, 2017년에는 62.0%의 청소년이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2014년보다 2017년의 경우 청소년이 부모와 정치, 사회, 문화적 주제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2-8〉 부모님과 함께하는 활동

(단위: %)

구분		거의 안함	월 1~3회	주 1~3회	주 4~6회	매일	해당 없음	계
나의 고민에 관한 대화	2014년	34.7	31.2	18.7	5.5	9.6	0.2	100.0
	2017년	25.9	38.8	24.2	5.9	5.3	-	100.0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2014년	13.6	23.8	23.0	8.8	19.0	11.8	100.0
	2017년	16.3	29.8	28.1	9.2	9.1	7.3	100.0
책, TV, 영화에 대한 대화	2014년	29.8	30.0	24.4	6.8	8.6	0.3	100.0
	2017년	27.0	36.4	24.8	6.8	5.0	-	100.0
정치, 사회, 문화적 주제에 대한 대화	2014년	59.8	24.7	9.4	2.4	3.4	0.4	100.0
	2017년	62.0	25.0	9.3	2.1	1.5	-	100.0
여가활동 (영화, 운동, 외식, 여행 등)	2014년	19.4	39.1	24.8	9.2	7.3	0.3	100.0
	2017년	19.2	41.4	26.5	7.9	5.0	-	100.0
저녁식사	2014년	9.7	15.4	21.9	15.2	37.5	0.3	100.0
	2017년	4.5	11.6	32.9	24.0	27.0	-	100.0

주 : 1) 해당 없음은 부모님이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계시지 않는 경우, 조부모 등과 사는 경우를 의미함.

2) 2014년에는 각각 항목에 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 '해당 없음'으로 조사하였으나, 2017년에는 부모님 외에 양육자를 포함하여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항목만 '해당 없음' 있음.

자료 : 1) 여성가족부(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 여성가족부(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학부모와 청소년 관점에서 최근 1년간 가족과 함께 참여한 여가문화활동 유형을 보면 <표 2-2-9>와 같다. 지난 1년 동안 가족과 함께 참여한 여가문화활동 1순위로 학부모는 외식 88.2%, 청소년은 TV보기 8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학부모와 청소년이 인식한 여가문화활동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의 활동에 있어서 학부모는 영화보기 82.5%, TV보기 81.2%, 쇼핑 78.3%, 국내여행 72.1%, 미술관, 박물관, 음악회 관람 41.6%, 캠핑, 자연학습 34.2%, 스포츠 관람 27.5%, 해외여행 27.3%, 종교 활동, 사회봉사 27.2%, 등산, 트레킹 27.1%, 스포츠 참여 17.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은 외식 79.0%, 영화보기 68.9%, 쇼핑 67.3%, 국내여행 49.1%, 스포츠 관람 17.3%, 해외여행 16.5%, 캠핑, 자연학습 16.4%, 등산, 트레킹 15.7%, 종교 활동, 사회봉사 15.4%, 미술관, 박물관, 음악회 관람 13.6%, 스포츠 참여 7.7%, 지난 1년 동안 참여한 활동이 없음 2.8% 순이었다.

성별로 학부모의 경우, 성별에 관계없이 부모 모두 외식이 86.3%와 90.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남자는 TV보기 81.5%, 영화보기 79.7% 순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여자는 영화보기 85.2%, 쇼핑 83.3% 순으로 높았다. 그 밖의 활동에 있어서 남자는 국내여행 73.9%, 쇼핑 73.2%, 미술관, 박물관, 음악회 관람 38.8% 순이었던 반면, 여자는 TV보기 80.9%, 국내여행 70.3%, 미술관, 박물관, 음악회 관람 44.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은 남녀 청소년 모두 TV보기가 77.1%와 88.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남자 청소년은 외식 70.3%, 영화보기 62.7%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여자 청소년은 외식 83.3%, 쇼핑 75.0% 순으로 높게 확인되었다. 남자 청소년은 쇼핑 52.0%, 국내여행 41.0%, 스포츠 관람 17.1%, 등산, 트레킹 15.1% 순이었던 반면, 여자 청소년은 영화보기 72.0%, 국내여행 53.2%, 캠핑, 자연학습 18.1%, 해외여행 18.0%, 스포츠 관람 17.4% 순으로 나타났다.

<표 2-2-9> 가족과 함께 참여한 여가문화활동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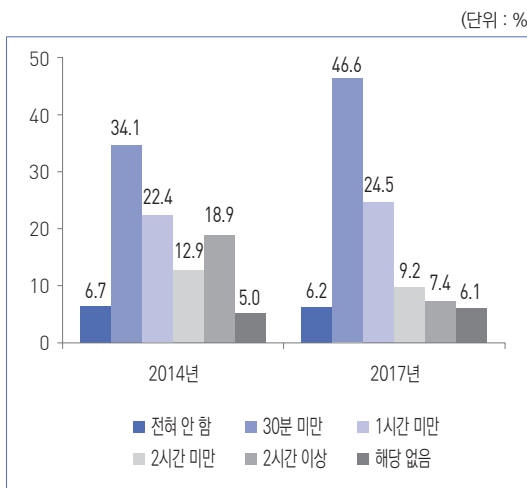
구분	TV 보기	영화 보기	미술관, 박물관, 음악회 관람	스포츠 관람	스포츠 참여	국내 여행	해외 여행	등산, 트레킹	캠핑, 자연 학습	종교 활동, 사회 봉사	외식	쇼핑	없음	
학부모	전체	81.2	82.5	41.6	27.5	17.0	72.1	27.3	27.1	34.2	27.2	88.2	78.3	0.7
	남자	81.5	79.7	38.8	32.3	22.8	73.9	26.4	29.9	34.8	26.8	86.3	73.2	0.8
	여자	80.9	85.2	44.4	22.7	11.2	70.3	28.3	24.3	33.6	27.6	90.1	83.3	0.7

구분	TV 보기	영화 보기	미술관, 박물관, 음악회 관람	스포츠 관람	스포츠 참여	국내 여행	해외 여행	등산, 트레킹	캠핑, 자연 학습	종교 활동, 사회 봉사	외식	쇼핑	없음	
청소년	전체	84.5	68.9	13.6	17.3	7.7	49.1	16.5	15.7	16.4	15.4	79.0	67.3	2.8
	남자	77.1	62.7	8.2	17.1	7.4	41.0	13.7	15.1	13.1	13.3	70.3	52.0	5.4
	여자	88.2	72.0	16.3	17.4	7.8	53.2	18.0	16.1	18.1	16.5	83.3	75.0	1.5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7). 2017 청소년활동 실태 및 요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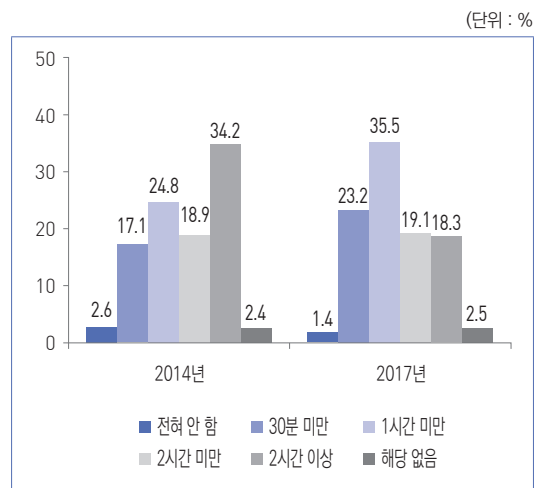
부모님과 대화 여부 및 1일 평균 대화시간은 [그림 2-2-1], [그림 2-2-2]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아버지와 청소년 자녀가 대화를 하는 비율은 2014년에 88.3%에서 2017년에 87.7%로 0.6%p 감소하였고, 어머니와 대화하는 비율은 동 기간 95.0%에서 96.1%로, 1.1%p 증가하였다. 아버지와 1일 평균 대화시간은 2014년에 1시간 미만 56.5%, 1시간 이상 31.8%이었고, 2017년에는 각각 71.1%와 16.6%로 나타났다. 2014년에 비해 아버지와 1일 평균 대화시간은 1시간 미만은 증가하고 1시간 이상은 감소하여, 3년 간 아버지와 청소년 자녀와의 대화하는 비율과 대화시간은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어머니와의 1일 평균 대화시간은 2014년에 1시간 미만은 41.9%, 1시간 이상 53.1%이었고, 2017년에는 각각 58.7%와 37.4%로 3년 간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와의 대화하는 비율과 대화시간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2-1] 주중 아버지와 대화시간(1일 평균)



자료 : 1) 여성가족부(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 여성가족부(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그림 2-2-2] 주중 어머니와의 대화시간(1일 평균)



자료 : 1) 여성가족부(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 여성가족부(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017년 조사를 중심으로 자녀의 연령별로 부모님과 대화 여부 및 1일 평균 대화시간을 살펴보면 <표 2-2-10>과 같다. 만 9~12세는 아버지와 대화하는 비율이 91.7%로 전체 87.7%보다 높았고,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은 4.3%로 낮았다. 1일 평균 대화시간은 1시간 미만 73.8%, 1시간 이상 22.2%로 전체보다 1시간 이상 대화하는 비율이 높은 분포를 보였다. 만 13~18세는 아버지와 대화하는 비율이 89.5%,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은 5.0%로 대화하는 비율은 전체 및 만 9~12세보다 낮았다. 1일 평균 대화시간은 1시간 미만 78.0%, 1시간 이상 16.5%로 1시간 이상은 만 9~12세보다 낮았다. 만 19~24세는 아버지와 대화하는 비율이 84.5%,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은 7.9%로 대화하는 비율은 전체, 만 9~12세 및 만 13~18세보다 낮았다. 1일 평균 대화시간은 1시간 미만 78.2%, 1시간 이상 14.2%로 1시간 이상은 만 9~12세 및 만 13~18세보다 낮았다. 이는 높은 연령대의 청소년이 낮은 연령대보다 아버지와 대화 비율과 1일 평균 대화시간이 적음을 나타낸다. 어머니와 대화하는 비율에서 만 9~12세는 97.1%로 전체 96.1%보다 높았고,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은 0.8%로 낮았다. 1일 평균 대화시간은 1시간 미만 47.4%, 1시간 이상 50.5%로 전체보다 1시간 이상 대화하는 비율이 높은 분포를 보였다. 만 13~18세는 어머니와 대화하는 비율이 95.9%,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은 1.2%로 대화하는 비율은 만 9~12세보다 낮았다. 1일 평균 대화시간은 1시간 미만 58.5%, 1시간 이상 38.6%로 1시간 이상은 만 9~12세보다 낮았다. 만 19~24세는 어머니와 대화하는 비율이 95.9%,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은 1.7%로 대화하는 비율은 전체, 만 9~12세 및 만 13~18세 보다 낮았다. 1일 평균 대화 시간은 1시간 미만 66.8%, 1시간 이상 30.9%로 1시간 이상은 전체, 만 9~12세 및 만 13~18세보다 낮았다. 높은 연령대의 청소년이 낮은 연령대의 청소년보다 어머니와의 대화비율 및 1일 평균 대화시간이 적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아버지와 대화 비율과 유사한 경향임을 알 수 있었다.

<표 2-2-10> 부모님과 대화 여부 및 대화시간(1일 평균)

(단위 : %)

구분		전혀 하지 않는다	30분 미만	30분 ~ 1시간 미만	1시간 ~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해당없음	계
아버지	전체	6.2	46.6	24.5	9.2	7.4	6.1	100.0
	만 9~12세	4.3	39.0	30.5	12.0	10.2	3.9	100.0
	만 13~18세	5.0	47.0	26.0	8.6	7.9	5.5	100.0
	만 19~24세	7.9	49.6	20.7	8.5	5.7	7.6	100.0

구분		전혀 하지 않는다	30분 미만	30분 ~ 1시간 미만	1시간 ~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해당없음	계
어머니	전체	1.4	23.2	35.5	19.1	18.3	2.5	100.0
	만 9~12세	0.8	13.5	33.1	23.3	27.2	2.1	100.0
	만 13~18세	1.2	21.7	35.6	20.7	17.9	2.9	100.0
	만 19~24세	1.7	28.6	36.5	16.1	14.8	2.4	100.0

주 : 해당없음은 부모님이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계시지 않는 경우 및 조부모 등과 사는 경우를 의미함.

자료 : 여성가족부(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청소년의 고민상담 대상에서 부모와의 질적인 관계를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 <표 2-2-11>에 의하면, 2010년 청소년의 상담대상은 친구동료가 51.1%로 과반수를 약간 상회하였고, 다음으로는 부모, 스스로 해결, 형제자매 순으로 많았다.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에도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부모와 고민상담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가 2016년에는 다소 감소하고, 2018년 다시 증가했다. 형제자매, 친구동료, 스스로 해결이라는 응답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었다. 2010년과 2018년을 비교해 보면, 부모와 고민상담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스스로 해결하거나 친구동료, 형제자매와 고민상담하는 비율이 다소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청소년 중 1/4 이상은 부모와 어느 정도 신뢰감을 형성하여 소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2-11> 청소년의 고민상담 대상

(단위 : %)

구분	부모	형제자매	친구동료	스스로 해결	기타	계
2010년	20.7	6.2	51.1	16.9	5.1	100.0
2012년	24.0	5.2	44.5	21.9	4.5	100.0
2014년	26.1	5.5	46.2	17.6	4.7	100.0
2016년	24.1	5.1	44.4	21.8	4.5	100.0
2018년	28.0	5.1	49.1	13.8	4.0	100.0

주 : 기타에는 스승, 선·후배 포함.

자료 : 통계청(2010, 2012, 2014, 2016, 2018). 사회조사.

청소년의 가정생활 만족도는 <표 2-2-12>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가정생활 만족도란 양육자(또는 부모님)와의 관계 및 형제자매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현재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한다.

2014년 전체 청소년의 가정생활 만족도는 만족하는 비율<sup>1)</sup>이 90.8%, 만족하지 않는 비율<sup>2)</sup>은 9.2%로 만족이 불만족보다 약 9.9배 높았다. 2017년에는 각각 95.0%와 5.0%로 3년 간 청소년의 가정생활 만족도는 4.2%p 증가하였다. 청소년 연령별로 만 9~12세는 만족하는 비율이 96.5%, 만족하지 않는 비율은 3.5%로 만족이 불만족보다 약 28배 높았고, 만 13~18세는 만족하는 비율이 95.9%, 만족하지 않는 비율은 4.1%로 만족이 불만족보다 약 23배 높았다. 만 19~24세는 만족하는 비율이 93.6%, 만족하지 않는 비율은 6.3%로 만족이 불만족보다 약 15배 높았다. 이것은 낮은 연령대의 청소년이 높은 연령대의 청소년보다 가정생활 만족도가 높아서 낮은 연령대 청소년의 부모 및 형제자매와의 관계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시사한다.

<표 2-2-12> 청소년의 가정생활 만족도

(단위 : %)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계
2014년	1.1	8.1	54.0	36.8	100.0
2017년	0.5	4.5	72.4	22.6	100.0
만 9~12세	0.5	3.0	63.6	32.9	100.0
만 13~18세	0.4	3.7	72.5	23.4	100.0
만 19~24세	0.6	5.7	76.0	17.6	100.0

자료 : 1) 여성가족부(2014).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 여성가족부(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017년 기준 부모님의 비용 지원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표 2-2-13>과 같다. 모든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학졸업까지는 52.0%, 그 이후 취업할 때까지 18.6%, 결혼할 때까지 5.7%로 2012년 대학졸업까지 15.6%, 취업할 때까지 4.1%, 결혼할 때까지 3.7%보다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대학졸업까지는 5년 사이에 36.4%p나 증가하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모든 항목에서 2010년에 크게 감소하였다가 다시

1) '매우 만족한다'와 '만족하는 편이다' 응답을 합한 비율을 뜻함.

2)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와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응답을 합한 비율을 뜻함.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결혼할 때까지 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2008년이 2017년보다 2.4%p 높았다. 이는 청소년들이 2010년에 대학졸업과 취업 이후 자립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단, 이전의 조사에서는 중·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2017년 조사에서는 13~24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도에 따른 부모의 비용지원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변화를 볼 때에는 이전 조사의 수치와 2017년 모든 연령대의 청소년보다는 13~18세 청소년의 수치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전체 청소년의 응답과 13~18세의 응답의 차이는 0.0~2.0%p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2017년 13~18세 청소년의 인식변화는 2017년 모든 청소년과 같은 경향을 보였다. 최근 청년실업과 대학등록금, 결혼자금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청소년기·청년기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을 부모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항목별 차이에서 대학졸업까지 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비율이 절반을 넘는 반면, 취업할 때까지와 결혼할 때까지의 비율이 낮고, 결혼할 때까지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응답이 40.5%인 것으로 볼 때, 대학졸업 후 취업 이후에는 자립해야 한다는 인식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남자 청소년은 여자 청소년보다 대학졸업까지와 취업할 때까지의 비율이 높고, 여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보다 결혼할 때까지 부모의 지원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13〉 부모님으로부터의 비용 지원

(단위: %)

구분		전혀 부담할 필요 없음	일부만 부담	모든 비용 부담		
대학졸업까지	연도별	2008년	5.6	69.8	24.6	
		2010년	8.1	76.4	15.4	
		2012년	6.8	77.6	15.6	
		2017년	3.4	44.6	52.0	
	2017년	연령	13~18세	2.8	43.4	53.7
			19~24세	3.8	45.6	50.6
		성별	남자	3.8	43.3	52.9
			여자	3.0	46.1	51.0
		지역별	대도시	2.5	45.7	51.7
			중소도시	3.3	43.9	52.8
농산어촌	5.6		43.5	50.8		

구분		전혀 부담할 필요 없음	일부만 부담	모든 비용 부담	
취업할 때까지	연도별	2008년	51.3	43.1	5.7
		2010년	57.5	39.7	2.7
		2012년	50.3	45.6	4.1
		2017년	17.0	64.4	18.6
	연령	13~18세	18.0	62.4	19.6
		19~24세	16.3	66.0	17.7
	성별	남자	16.3	64.6	19.1
		여자	17.9	64.1	18.0
	지역별	대도시	17.0	63.3	19.8
		중소도시	16.3	65.6	18.1
농산어촌		18.7	64.8	16.5	
결혼할 때까지	연도별	2008년	26.6	65.4	8.1
		2010년	65.3	32.8	1.9
		2012년	60.9	35.4	3.7
		2017년	40.5	53.8	5.7
	연령	13~18세	40.5	53.4	6.1
		19~24세	40.5	54.2	5.3
	성별	남자	38.5	56.0	5.5
		여자	42.7	51.4	5.9
	지역별	대도시	39.0	54.7	6.4
		중소도시	39.7	55.3	5.0
농산어촌		46.3	48.5	5.2	

주 : 1) 무응답(2012년 무응답률(0.6%))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임.

2) 청소년가치관조사 문항으로 2008~2012년은 중·고등학생, 2017년은 13~24세 청소년의 응답률임.

자료 : 여성가족부(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2. 학교환경

학교환경은 청소년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각된 학업성취도, 학교에 대한 느낌, 진로교육 경험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주로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근거하여 기술하였다.

### 가. 지각된 학업성취도

2017년 청소년들이 지각한 학업성취도는 '보통'이 48.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우수한 편' 38.2%, '못하는 편' 8.6%, '매우 우수' 4.0%, '매우 못함' 1.2%의 순이었다. 이런 결과는 2011년과 2014년도 청소년들이 지각한 학업성취도의 순서와 동일하다. 연도별로 청소년이 지각한 학업성취도를 살펴보면 자신이 '우수한 편' 혹은 '매우 우수'라고 지각하는 청소년이 2011년 32.7%, 2014년 36.9%, 2017년 42.2%로 계속 증가한 반면, '못하는 편' 혹은 '매우 못함'이라고 하는 청소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업성취도에 대해 청소년이 다소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청소년기의 주요 고민인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도 같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가능성도 높아서 청소년의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연령별로 살펴보면 13~18세 청소년은 9~12세 청소년보다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편' 혹은 '매우 우수'하다는 응답은 적고, '매우 못함' 또는 '못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많았다. 이것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업성취가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성별이나 지역별로는 이러한 차이가 크지 않았다.

〈표 2-2-14〉 청소년이 지각한 학업성취도

(단위: %)

구분	매우 못함	못하는 편	보통	우수한 편	매우 우수	
전체	2011년	3.3	16.7	47.3	26.3	6.4
	2014년	2.5	15.7	44.9	28.0	8.9
	2017년	1.2	8.6	48.0	38.2	4.0

구분		매우 못함	못하는 편	보통	우수한 편	매우 우수	
2017년	학교급별	초등생(9~12세)	0.6	4.6	43.7	45.0	6.1
		중·고생(13~18세)	1.5	11.0	50.6	34.1	2.8
	성별	남	1.3	8.7	48.5	37.3	4.2
		여	1.0	8.5	47.5	39.1	3.9
	지역별	대도시	0.8	6.9	47.5	40.7	4.1
		중소도시	1.3	9.1	47.5	38.4	3.7
농산어촌		1.5	11.8	50.3	31.6	4.8	

자료 : 여성가족부(2011, 2014,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나. 학교에 대한 느낌

### 1) 수업시간이 재미있다

2017년 ‘수업시간이 재미있다’의 경우, ‘그런 편이다’가 62.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그렇지 않은 편이다’ 26.6%, ‘매우 그렇다’ 9.1%, ‘전혀 그렇지 않다’ 1.6%의 순이었다. 2014년의 경우에도 ‘그런 편이다’ 56.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그렇지 않은 편이다’ 23.8%, ‘매우 그렇다’ 13.5%, ‘전혀 그렇지 않다’ 6.7%의 순이었다. ‘수업시간이 재미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2011년 65.9%에 이어 2014년 69.5%, 2017년 71.8%로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하였다.

연령별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수업시간이 재미있다’에 대하여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9~12세 청소년은 78.9%, 13~18세 청소년은 67.6%로 9~12세 청소년이 11.3%p 더 높았다. 이것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수업시간에 배우는 내용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별 차이를 보면 ‘수업시간이 재미있다’에 대해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농산어촌 청소년이 77.0%, 대도시 71.5%, 중소도시 69.9%로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경우가 대도시와 중소도시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표 2-2-15〉 나는 수업시간이 재미있다

(단위 :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2011년	6.1	28.0	55.3	10.6	
	2014년	6.7	23.8	56.0	13.5	
	2017년	1.6	26.6	62.7	9.1	
2017년	학교급별	초등생(9~12세)	0.8	20.3	64.6	14.3
		중·고생(13~18세)	2.1	30.3	61.5	6.1
	성별	남	1.8	27.6	61.4	9.2
		여	1.4	25.5	64.0	9.1
	지역별	대도시	1.6	26.9	63.2	8.3
		중소도시	1.8	28.4	61.9	8.0
농산어촌		1.3	21.7	63.2	13.8	

자료 : 여성가족부(2011, 2014,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2) 우리 학교는 우리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

‘우리 학교는 우리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의 경우, 2017년 ‘그런 편이다’가 57.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그렇지 않은 편이다’ 26.4%, ‘매우 그렇다’ 14.5%, ‘전혀 그렇지 않다’ 1.9%의 순이었다. 2011년 긍정응답률은 48.9%, 2014년 56.3%에 이어 2017년 71.6%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가 과거보다 학생의 의견수렴에 적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학교가 자신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고 응답한 9~12세 청소년은 80.2%, 13~18세 청소년은 66.5%로 9~12세 청소년이 13.7%p 더 높았다. 한편 성별과 지역별로는 이러한 차이는 크지 않았다.

〈표 2-2-16〉 우리 학교는 우리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

(단위 :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2011년	13.8	37.3	43.0	5.9
	2014년	11.2	32.5	46.9	9.4
	2017년	1.9	26.4	57.1	14.5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017년	학교급별	초등생(9~12세)	0.6	19.2	60.9	19.3
		중·고생(13~18세)	2.7	30.8	54.9	11.6
	성별	남	2.0	26.6	56.6	14.9
		여	1.8	26.3	57.8	14.1
	지역별	대도시	1.5	25.3	58.3	14.9
		중소도시	1.9	29.8	55.6	12.7
농산어촌		3.2	21.5	57.8	17.6	

자료 : 여성가족부(2011, 2014,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3)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라는 질문에 대하여 2017년에는 ‘그런 편이다’가 63.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그렇지 않은 편이다’ 19.2%, ‘매우 그렇다’ 15.9%, ‘전혀 그렇지 않다’ 1.7%의 순이었다. 2014년에는 ‘그런 편이다’ 53.7%, ‘그렇지 않은 편이다’ 24.4%, ‘매우 그렇다’ 11.9%, ‘전혀 그렇지 않다’ 10.0%로 나타났다. 학교가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를 지니고 있다는 긍정응답률은 2011년 58.6%, 2014년 65.6%에 이어 2017년에는 79.1%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게 증가하였다. 이런 결과는 학교가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라고 느끼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가 점차적으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별로 보면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에 대하여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9~12세 청소년은 86.1%, 13~18세 청소년은 74.9%로 9~12세 청소년이 11.2%p 더 높았다. 성별로 보면 여자 청소년보다는 남자 청소년에게서 긍정응답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17〉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

(단위 :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2011년	10.9	30.5	50.2	8.4
	2014년	10.0	24.4	53.7	11.9
	2017년	1.7	19.2	63.2	15.9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017년	학교급별	초등생(9~12세)	0.8	13.2	63.8	22.3
		중·고생(13~18세)	2.2	22.8	62.8	12.1
	성별	남	1.8	18.5	64.2	15.6
		여	1.6	20.1	62.1	16.2
	지역별	대도시	1.2	16.5	67.0	15.4
		중소도시	1.8	23.5	61.9	12.8
농산어촌		2.8	16.2	57.1	23.9	

자료 : 여성가족부(2011, 2014,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4) 우리 학교는 교칙이 엄격하다

‘우리 학교는 교칙이 엄격하다’는 설문에 대하여 2017년에는 ‘그런 편이다’가 52.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그렇지 않은 편이다’ 32.5%, ‘매우 그렇다’ 11.4%, ‘전혀 그렇지 않다’ 3.3%의 순이었다. 2014년에는 ‘그런 편이다’ 41.3%, ‘그렇지 않은 편이다’ 36.5%, ‘매우 그렇다’ 12.2%, ‘전혀 그렇지 않다’ 10.0%로 나타났다. 학교교칙이 엄격하다는 응답률은 2011년 50%, 2014년 53.5%, 그리고 2017년 64.2%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가하였다. 이것은 학교교칙이 엄격하다고 느끼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가 점차적으로 교칙의 엄격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별로 보면 학교교칙이 엄격하다고 응답한 9~12세 청소년은 60.6%, 13~18세 청소년은 66.3%로 13~18세 청소년이 5.7%p 더 높았다. 지역별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학교교육이 엄격하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표 2-2-18〉 우리 학교는 교칙이 엄격하다

(단위 :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2011년	9.5	40.6	37.8	12.2
	2014년	10.0	36.5	41.3	12.2
	2017년	3.3	32.5	52.8	11.4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017년	학교급별	초등생(9~12세)	4.9	34.5	49.2	11.4
		중·고생(13~18세)	2.4	31.3	54.9	11.4
	성별	남	3.1	33.0	53.3	10.7
		여	3.6	32.0	52.3	12.1
	지역별	대도시	2.5	31.0	56.0	10.6
		중소도시	3.5	32.8	53.3	10.5
농산어촌		5.1	35.6	44.1	15.2	

자료 : 여성가족부(2011, 2014,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5)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이 만족스럽다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이 만족스럽다’의 경우, 2017년 ‘그런 편이다’ 75.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매우 그렇다’ 13.3%, ‘그렇지 않은 편이다’ 11.1%, ‘전혀 그렇지 않다’ 0.6%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는 ‘그런 편이다’ 61.7%, ‘매우 그렇다’ 24.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0.4%, ‘전혀 그렇지 않다’ 3.7%로 나타났다.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이 만족스럽다’는 긍정응답률은 2011년 82.1%, 2014년 85.9%, 2017년 88.3%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였다. 이것은 과거보다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청소년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별로 보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이 만족스럽다’는 응답은 9~12세 청소년이 90.9%, 13~18세 청소년은 86.8%로 9~12세 청소년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로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학교의 생활이 만족스럽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표 2-2-19〉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이 만족스럽다

(단위 :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2011년	4.2	13.7	62.7	19.4
	2014년	3.7	10.4	61.7	24.2
	2017년	0.6	11.1	75.0	13.3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017년	학교급별	초등생(9~12세)	0.4	8.7	72.6	18.3
		중·고생(13~18세)	0.7	12.6	76.4	10.4
	성별	남	0.5	10.9	75.7	12.9
		여	0.7	11.4	74.2	13.7
	지역별	대도시	0.4	11.1	78.6	9.9
		중소도시	0.6	13.1	72.6	13.7
		농산어촌	0.7	6.7	71.9	20.7

자료 : 여성가족부(2011, 2014,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다. 진로교육 경험

### 1)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

청소년들의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에 대한 경험의 경우, 2017년 '경험 있음'이 63.5%로 2014년 81.0%보다는 17.5%p 감소하였다. 진로와 직업 과목을 수강한 학생 중 수업이 도움이 된다는 긍정응답률은 2011년 57.9%에서 2014년 58.3%, 2017년 65.0%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이 청소년들의 요구나 흥미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별로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3~18세 청소년이 68.9%로 19~24세 청소년 61.9% 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의 연령별 관심과 욕구를 파악하여 다양한 영역의 진로교육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성별에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긍정응답률이 약간 더 높았으며, 지역별로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2-2-20〉 진로교육 경험 : '진로와 직업' 과목 수업

(단위 : %)

구분		경험 없음	경험 있음	경험 있음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연도별	2011년	27.7	72.3	10.3	31.9	52.0	5.9	
	2014년	19.0	81.0	9.8	31.8	50.0	8.3	
	2017년	36.5	63.5	4.1	31.0	59.9	5.1	
2017년	연령별	13~18세	36.9	63.1	4.2	27.0	62.3	6.6
		19~24세	36.1	63.9	4.0	34.0	58.0	3.9
	성별	남	37.2	62.8	3.8	32.2	59.3	4.7
		여	35.6	64.4	4.4	29.6	60.5	5.5
	지역별	대도시	37.4	62.6	3.6	30.4	61.7	4.4
		중소도시	35.3	64.7	4.8	32.4	56.8	6.0
농산어촌		36.7	63.3	3.9	29.1	62.0	5.0	

주 : '도움 정도'는 '경험 있음' 응답자를 기준으로 합이 100이 되도록 산출한 결과임.

자료 : 여성가족부(2011, 2014,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2) 현장학습 및 견학

청소년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현장학습 및 견학' 경험의 경우, 2017년 '경험 있음'이 57.3%로 2014년 69.4%보다는 12.1%p 감소하였다. 현장학습 및 견학을 경험한 학생 중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은 2011년 55.6%, 2014년 60.5%, 그리고 2017년 62.4%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현장학습 및 견학 중심의 진로교육이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령별로 현장학습 및 견학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3~18세 청소년이 66.5%로 19~24세 청소년 59.1% 보다 높게 나타나 연령별 차이를 고려하여 다양한 현장학습 및 견학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긍정응답률이 약간 더 높았으며, 지역별로 농산어촌과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2-2-21〉 진로교육 경험: 현장학습 및 견학

(단위: %)

구분		경험 없음	경험 있음	경험 있음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연도별	2011년	45.2	54.8	10.3	34.1	48.1	7.5	
	2014년	30.6	69.4	8.4	31.2	49.3	11.2	
	2017년	42.7	57.3	5.8	31.8	54.4	8.0	
2017년	연령별	13~18세	42.4	57.6	4.8	28.7	57.7	8.8
		19~24세	42.9	57.1	6.6	34.3	51.7	7.4
	성별	남	43.0	57.0	6.9	32.2	53.3	7.6
		여	42.4	57.6	4.5	31.5	55.6	8.4
	지역별	대도시	45.0	55.0	6.1	30.3	54.3	9.4
		중소도시	40.6	59.4	6.0	34.1	53.5	6.4
		농산어촌	41.4	58.6	4.7	30.6	56.5	8.2

주: '도움 정도'는 '경험 있음' 응답자를 기준으로 합이 100이 되도록 산출한 결과임.

자료: 여성가족부(2011, 2014,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3) 상담교사의 상담

청소년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상담교사의 상담' 경험의 경우, 2017년 '경험 있음'이 67.4%로 2011년 60.5%, 2014년 67.0%보다 약간 증가하였다. '상담교사의 상담'을 경험한 학생 중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은 2011년 58.8%, 2014년과 2017년은 60.2%로 약간 증가하였다. 이는 진로교육에서 상담교사의 상담은 여전히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 상담교사의 상담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3~18세 청소년이 63.6%로 19~24세 청소년 57.7%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른 상담교사의 상담 경험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표 2-2-22〉 진로교육 경험 : 상담교사의 상담

(단위 : %)

구분		경험 없음	경험 있음	경험 있음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연도별	2011년	39.5	60.5	10.5	30.7	50.1	8.7	
	2014년	33.0	67.0	9.5	30.4	49.9	10.3	
	2017년	32.6	67.4	4.9	34.9	53.3	6.9	
2017년	연령별	13~18세	34.6	65.4	4.8	31.7	55.3	8.3
		19~24세	31.0	69.0	5.0	37.3	51.9	5.8
	성별	남	33.0	67.0	4.7	35.5	53.8	6.0
		여	32.1	67.9	5.1	34.2	52.8	7.8
	지역별	대도시	32.6	67.4	4.5	35.7	52.9	6.9
		중소도시	32.4	67.6	5.2	36.0	52.7	6.1
농산어촌		33.0	67.0	5.4	30.4	55.8	8.5	

주 : '도움 정도'는 '경험 있음' 응답자를 기준으로 합이 100이 되도록 산출한 결과임.

자료 : 여성가족부(2011, 2014,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4) 진로관련 검사

청소년들의 진로교육에 대한 '진로관련 검사' 경험의 경우, 2017년 '경험 있음'이 67.0%로 2011년 73.9%, 2014년 80.8%보다 다소 감소하였다. '진로관련 검사'를 경험한 학생 중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은 2011년 57.5%에서 2014년 60.5%로 증가하였다가 2017년에는 59.1%로 감소하였다. 이는 진로관련 검사가 청소년들에게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진로탐색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연령별로 보면 진로관련 검사의 경험이 있는 학생 중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률은 13~18세 청소년이 63.7%로 19~24세 청소년 55.7% 보다 더 높게 나타나 연령별 차이를 고려하여 진로관련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성별로 진로관련 검사가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률은 여자 청소년이 60.9%로 남자 청소년 57.6%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로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2-2-23〉 진로교육 경험 : 진로관련 검사

(단위 : %)

구분		경험 없음	경험 있음					
				전혀 도움 안 됨	별로 도움 안 됨	약간 도움 됨	매우 도움 됨	
연도별	2011년	26.1	73.9	10.9	31.6	50.5	7.0	
	2014년	19.2	80.8	8.8	30.7	50.1	10.4	
	2017년	33.0	67.0	6.3	34.5	52.8	6.3	
2017년	연령별	13~18세	34.7	65.3	6.2	30.1	55.5	8.2
		19~24세	31.7	68.3	6.5	37.8	50.8	4.9
	성별	남	32.7	67.3	6.6	35.9	51.9	5.7
		여	33.4	66.6	6.1	33.0	53.8	7.1
	지역별	대도시	34.4	65.6	6.2	35.3	51.8	6.6
		중소도시	31.8	68.2	6.8	35.5	52.1	5.5
농산어촌		32.2	67.8	5.5	30.3	56.8	7.4	

주 : '도움 정도'는 '경험 있음' 응답자를 기준으로 합이 100이 되도록 산출한 결과임.

자료 : 여성가족부(2011, 2014,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3. 미디어환경

미디어환경은 청소년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 이용하는 서비스 유형, 스마트폰, 매체별 중요도, 온라인 미디어 이용률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활용된 자료는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인터넷이용실태조사'이다.

#### 가. 인터넷

##### 1) 인터넷 이용 빈도



2019년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빈도를 살펴보면, 10대 청소년의 96.9%는 하루에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청소년의 하루 1회 이상 인터넷 이용 빈도는 2015년과 2017년에는 전년보다 증가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20대의 경우, 2019년 98.6%가 인터넷을 하루에 1회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청소년의 하루 1회 이상 인터넷 이용 빈도는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6년에는 소폭 감소하였고, 2017년에 다시 소폭 증가하였다가 2018년부터 다시 감소하였다. 인터넷 이용 빈도를 집계한 모든 연도에서 20대의 하루 1회 이상 인터넷 이용 빈도가 10대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인터넷의 주 평균 이용시간을 보면, 2019년 10대 청소년은 17.6시간으로, 2011년 13.2시간, 2012년과 2013년 14.1시간, 2014년 14.4시간, 2015년 14.5시간, 2016년 15.4시간, 2017년 16.9시간과 비교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8년 17.8시간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하였다. 2011년과 비교하면 주 평균 이용시간이 4.4시간이나 증가한 것이다. 20대의 경우에도 2011년 20.4시간, 2012년 21.7시간, 2013년 20.3시간으로 전년대비 감소했다가 2014년 20.5시간, 2015년 21.0시간, 2016년 22.8시간, 2017년 23.6시간, 2018년 24.2시간, 2019년 24.3으로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주 평균 이용시간은 10대 청소년보다 20대가 6.7시간이 더 많았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표 2-2-24〉 인터넷 이용 빈도 및 주당 평균 이용시간

(단위 : %, 시간)

구분	인터넷 이용 빈도				주 평균 이용시간	
	하루에 1회 이상	일주일에 1회 이상	한 달에 1회 이상	한 달에 1회 미만		
2011년	10대	97.8	0.2	0.1	0.0	13.2
	20대	98.5	1.5	-	0.0	20.4
2012년	10대	97.6	2.4	0.0	0.0	14.1
	20대	98.5	1.4	0.0	0.0	21.7
2013년	10대	95.8	4.1	0.0	0.0	14.1
	20대	99.3	0.7	0.0	-	20.3
2014년	10대	95.2	4.7	0.1	-	14.4
	20대	99.3	0.7	0.0	-	20.5

구분	인터넷 이용 빈도				주 평균 이용시간	
	하루에 1회 이상	일주일에 1회 이상	한 달에 1회 이상	한 달에 1회 미만		
2015년	10대	96.6	3.3	0.1	0.1	14.5
	20대	99.8	0.2	-	-	21.0
2016년	10대	93.9	5.6	0.3	0.2	15.4
	20대	99.6	0.4	0.0	-	22.8
2017년	10대	98.1	0.9	1.0	-	16.9
	20대	100.0	-	0.0	-	23.6
2018년	10대	98.1	1.2	0.7	-	17.8
	20대	99.9	0.1	0.0	-	24.2
2019년	10대	96.9	2.6	0.5	0.0	17.6
	20대	98.6	0.9	0.4	0.0	24.3

자료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2017, 2018, 2019).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 미래창조과학부·한국인터넷진흥원(2013, 2014, 2015, 2016). 인터넷이용실태조사.  
 3)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2011, 2012). 인터넷이용실태조사.

## 2) 인터넷 이용 용도

2019년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용도를 살펴보면, 10대 청소년은 여가활동이 99.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커뮤니케이션 98.6%, 자료정보검색 96.0%, 교육학습 83.5%, 홈페이지 운영 69.9% 등의 순이었다. 반면, 20대 청소년은 커뮤니케이션과 자료정보검색이 10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여가활동 99.7%, 홈페이지 운영 91.8%, 교육학습 70.2%, 구직활동 60.8% 등의 순이었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주로 커뮤니케이션, 자료정보검색, 여가활동, 교육학습 등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0대와 20대 청소년은 인터넷 이용 용도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10대 청소년이 20대보다 교육학습을 위하여 인터넷을 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20대가 10대 청소년보다 인터넷을 다양한 용도로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특히 20대는 직업직장과 같은 구직활동과 홈페이지 운영을 10대 청소년보다 훨씬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은 현재 자신에게 필요한 대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10대와 20대 모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인터넷 이용 용도는 감소하다가 2014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대는 2015년, 2017년, 2018년, 2019년에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응답률이 100%였다. 홈페이지 운영은 10대와 20대

모두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5년부터는 증가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교육학습의 경우, 2011년에는 이용 비율이 높다가 2013년에는 급감했으며, 2014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다가 2016년에 급증하였고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10대의 경우에는 2018년보다 2019년에 소폭 감소한 반면, 20대는 2018년보다 2019년에 소폭 증가하였다. 물론 2011~2012년과 비교할 정도는 아니지만 점차 인터넷을 교육학습용으로 사용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2-25〉 인터넷 이용 용도(복수응답)

(단위: %)

구분	자료정보 검색	여가 활동	커뮤니 케이션	거래 활동	교육 학습	커뮤니티	SW 다운로드/ 업그레이드	홈페이지 운영	구직 활동 (직업직장)	파일공유 서비스	기타	
2011년	10대	90.7	98.0	96.6	58.9	92.3	56.3	8.2	71.5	2.8	25.3	-
	20대	99.8	98.3	99.6	91.5	77.6	72.8	19.4	75.2	28.5	48.9	-
2012년	10대	91.4	98.0	96.3	58.5	91.2	55.0	9.4	71.3	2.9	25.2	-
	20대	99.8	98.3	99.6	91.1	75.9	71.7	20.7	74.7	28.2	48.0	-
2013년	10대	93.7	97.2	91.9	28.6	56.9	18.1	11.6	45.2	4.3	7.0	-
	20대	99.8	97.6	81.4	62.1	28.7	30.8	22.1	67.3	27.0	14.1	-
2014년	10대	91.0	93.3	94.4	32.0	59.2	-	14.0	-	4.2	8.6	-
	20대	99.8	95.0	99.8	86.2	43.0	-	22.6	-	29.3	18.7	-
2015년	10대	85.3	96.7	95.7	-	58.7	-	-	48.5	6.5	-	-
	20대	99.6	97.4	100.0	-	50.6	-	-	70.3	33.8	-	-
2016년	10대	88.4	97.5	95.1	-	72.4	-	-	51.5	7.9	-	-
	20대	99.8	98.5	99.9	-	60.4	-	-	74.7	42.2	-	-
2017년	10대	92.6	98.9	97.1	-	73.6	-	-	53.8	7.8	-	-
	20대	100.0	99.4	100.0	-	64.3	-	-	78.2	51.3	-	-
2018년	10대	95.6	99.5	98.2	-	83.8	-	-	70.1	7.7	-	-
	20대	100.0	99.7	100.0	-	65.5	-	-	90.9	59.8	-	-
2019년	10대	96.0	99.5	98.6	-	83.5	-	-	69.9	8.9	-	27.3
	20대	100.0	99.7	100.0	-	70.2	-	-	91.8	60.8	-	91.0

자료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2017, 2018, 2019).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 미래창조과학부·한국인터넷진흥원(2013, 2014, 2015, 2016). 인터넷이용실태조사.

3)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2011, 2012). 인터넷이용실태조사.

## 나. 인터넷 서비스 이용

청소년의 2019년 인터넷 서비스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이메일은 대학생이 91.9%, 고등학생 60.4%, 중학생 48.6%, 초등학생 28.0%이고, 인스턴트 메신저는 대학생 99.7%, 고등학생 99.4%, 중학생 99.2%, 초등학생 80.6%이었으며, SNS 이용은 대학생이 88.7%, 고등학생 77.9%, 중학생 70.0%, 초등학생 26.8%로 집계되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주목할 것은 청소년들이 인터넷 서비스 중 인스턴트 메신저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것이다. 인스턴트 메신저의 경우 초등학생의 이용률이 80.6%에 달하며 중학생부터는 99%를 넘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간의 차이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인스턴트 메신저의 수준보다는 낮지만, SNS 역시 초등학생이 26.8%에 달하며 중학생부터 70%를 넘는 청소년이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26〉 인터넷 서비스 이용률<sup>1)</sup>(복수응답)

(단위: %)

구분	이메일	인스턴트 메신저 <sup>2)</sup>	SNS 이용 <sup>3)</sup>	인터넷 쇼핑 <sup>4)</sup>	인터넷 बैं킹 <sup>4)</sup>
초등학생	28.0	80.6	26.8	46.7	5.3
중 학생	48.6	99.2	70.0	52.2	11.3
고등학생	60.4	99.4	77.9	70.3	31.8
대학생	91.9	99.7	88.7	96.7	79.9

주: 1) 최근 1년 이용자.

2) 컴퓨터, 스마트폰 등으로 온라인상에서 개인 간 실시간으로 메시지, 사진 등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카카오톡, 라인, 네이버온, 페이스북 메신저, 구글 행아웃 등이 포함.

3) 나이, 학력 등 개인정보 및 사진, 친구목록 등이 프로필 페이지에 제공되어 이를 기반으로 인맥형성, 교류하는 서비스(페이스북, 카카오톡 스토리,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

4) 인터넷 쇼핑과 인터넷 बैं킹은 12세 이상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2019). 인터넷이용실태조사.

## 다. 스마트폰

### 1) 스마트폰 이용 빈도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빈도를 보면, 2019년 10대 청소년의 경우 '매일'이 88.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주일에 5~6일' 7.6%였다. 20대는 '매일'이 97.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주일에 5~6일' 1.1%였다. 이것은 대부분의 청소년이 매일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일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는 청소년의 경우 10대보다는 20대에서 더 많이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 10대 청소년은 2015년 매일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는 비율이 82.4%였는데 2018년에는 91.4%로 9.0%p 증가하였지만 2019년에 88.6%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반면, 20대는 2015년 89.3%에서 2018년 94.2%로 4.9%p 증가하였으며, 2019년 97.7%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스마트폰을 전혀 안 보거나 이용 안 한다는 비율의 경우 10대 청소년은 2015년 10.3%에서 2019년 1.7%로 8.6%p 감소한 반면, 20대는 2015년 6.3%에서 2019년 0.0%로 6.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27〉 스마트폰 이용 빈도

(단위 : %)

구분	매일	1주일에 5~6일	1주일에 3~4일	1주일에 1~2일	한 달에 1~3일	2~3달에 1~2일 이하	전혀 안 봄/ 이용 안함
2015년	10대	82.4	5.7	1.0	0.7	0.0	10.3
	20대	89.3	2.8	0.4	0.8	0.4	6.3
2016년	10대	87.6	4.4	1.2	0.0	0.0	6.7
	20대	94.0	2.4	1.9	0.2	0.0	1.5
2017년	10대	89.2	1.8	1.1	1.2	3.6	3.2
	20대	95.2	1.8	0.5	1.6	0.4	0.2
2018년	10대	91.4	4.7	0.1	1.0	0.1	3.7
	20대	94.2	2.6	0.2	1.2	0.2	1.6
2019년	10대	88.6	7.6	1.1	1.1	0.0	1.7
	20대	97.7	1.1	1.0	0.0	0.1	0.0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2015, 2016, 2017, 2018, 2019).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 2) 스마트폰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음성통화 제외)

음성통화를 제외한 스마트폰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2019년 10대 청소년의 경우, '2시간 이상'이 67.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2시간 미만' 22.5%, '1시간 미만' 9.8%의 순이었다. 20대의

경우, '2시간 이상' 69.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2시간' 21.1%, '1시간 미만' 9.6%의 순이었다. 하루에 '2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비율을 보면 10대의 경우 2013년 31.3%에서 2019년 67.7%로 36.4%p가 증가했다. 20대의 경우도 2013년 24.7%에서 2019년 69.4%로 44.7%p 증가했으며, 증가폭이 10대 청소년에 비하면 크다.

음성통화를 제외한 스마트폰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2019년 10대 청소년은 154.7분이고, 20대는 176.9분으로 나타나 10대 청소년보다 20대가 스마트폰을 22.2분 더 사용했다. 2013년을 제외하고는 20대 청소년이 10대 청소년보다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을 보면, 2013년 10대 청소년의 경우 133.9분, 2015년 124.4분, 2016년 132.5분, 2017년 132.4분, 2018년 140.8분으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2019년에는 전년보다 13.9분 다시 증가하였다. 20대는 2013년 123.9분, 2015년 128.6분, 2016년 149.7분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7년에는 141.1분으로 감소한 후 2018년 156.3분으로 다시 증가하였으며 2019년에는 전년보다 20.6분 증가하였다.

〈표 2-2-28〉 스마트폰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음성통화 제외)

(단위 : %)

구분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평균(분)
2013년	10대	19.8	47.9	31.3	133.9
	20대	20.7	54.6	24.7	123.9
2015년	10대	28.2	25.1	46.6	124.4
	20대	23.2	27.0	49.7	128.6
2016년	10대	20.6	25.9	53.5	132.5
	20대	15.9	25.8	58.3	149.7
2017년	10대	13.9	31.7	54.5	132.4
	20대	9.4	28.7	61.9	141.1
2018년	10대	13.1	24.5	62.2	140.8
	20대	9.8	25.1	65.2	156.3
2019년	10대	9.8	22.5	67.7	154.7
	20대	9.6	21.1	69.4	176.9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2013, 2015, 2016, 2017, 2018, 2019).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 3) 스마트폰 기능별 중요도

2019년 청소년이 생각하는 스마트폰 기능별 중요도를 보면, 10대 청소년은 커뮤니케이션이 87.0%(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대를 합함)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보검색 정보전달이 76.9%, 미디어 콘텐츠 시청 76.5%의 순이었다. 20대는 10대와 달리 정보검색 정보전달이 87.0%(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대를 합함)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커뮤니케이션 85.3%, 미디어 콘텐츠 시청 76.6%의 순이었다. 이것은 스마트폰 기능별 중요도에 대해 연령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0대에게는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이 중요한 반면에 20대에게는 정보검색 정보전달의 기능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29〉 스마트폰 기능별 중요도

(단위 : %)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무응답
정보검색 정보전달	10대	1.4	3.5	18.1	38.6	38.3	-
	20대	1.0	1.8	10.2	35.0	52.0	-
미디어 콘텐츠 시청	10대	1.3	2.6	19.6	36.7	39.8	-
	20대	1.3	4.5	17.6	35.9	40.7	-
커뮤니케이션	10대	1.3	1.2	6.9	31.8	58.7	-
	20대	0.7	2.4	11.6	28.5	56.8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2019).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 라. 매체 중요도

2019년 청소년의 매체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상생활에서 10대는 스마트폰을 87.0%로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했으며, 그 다음 PC/노트북 6.4%, TV 5.0%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20대 역시 스마트폰이 87.4%로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했으며, 그 다음 TV 7.3%, PC/노트북 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해·재난과 같은 비상상황 발생 시에도 10대는 92.3%가 스마트폰을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했으며, 그 다음으로 TV 5.2%, 태블릿PC 1.4%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20대는 스마트폰이 86.4%로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했고, TV 8.5%, 태블릿PC 2.4%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라디오, 신문은 0.0~1.8%로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것은 비상상황 발생 시 청소년들에게 활자매체나 라디오는 덜 중요한 반면에 전자매체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2-30〉 필수 매체 인식

(단위 : %)

구분		TV	라디오	신문	잡지	PC / 노트북	태블릿 PC	스마트폰	서적	기타
일상생활시	10대	5.0	-	-	-	6.4	0.8	87.0	-	-
	20대	7.3	-	-	-	4.1	1.3	87.4	-	-
비상상황 발생시	10대	5.2	0.1	0.0	-	0.1	1.4	92.3	-	-
	20대	8.5	1.8	0.5	-	0.4	2.4	86.4	-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2019).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 마. 온라인 미디어 이용률

인터넷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2019년 온라인 미디어 이용률을 보면 다음과 같다. 6~19세는 2019년 영화 관람이 84.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신문 읽기 62.2%, TV 시청 37.2%, 잡지·서적 읽기 19.2%, 라디오 청취 10.3%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과 비교해 볼 때, 2019년 영화 관람이 6.2%p 증가하였지만 다른 온라인 미디어 이용률이 2.4~19.5%p 감소하였고, 특히 TV시청은 19.5%p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20대는 2019년 신문 읽기가 93.0%로 영화 관람 92.9%보다 약간 많았고, TV 시청 57.3%, 잡지·서적 읽기 38.2%, 라디오 청취 24.3%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과 2019년을 비교해 볼 때, 6~19세와 유사하게 영화 관람이 3.4%p 증가하였지만 다른 온라인 미디어 이용률이 0.6~10.9%p 감소하였고, 특히 TV 시청이 10.9%p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표 2-2-31〉 미디어·인터넷 매체 이용률

(단위 : %)

구분		TV 시청	신문 읽기	라디오 청취	잡지·서적 읽기	영화 관람	
연령	6~19세	2016년	40.6	61.5	12.6	24.3	77.0
		2017년	47.9	66.8	14.2	26.2	81.5
		2018년	56.7	71.3	12.7	25.4	78.7
		2019년	37.2	62.2	10.3	19.2	84.9
	20대	2016년	69.2	97.5	29.3	47.6	90.0
		2017년	71.2	99.2	32.2	50.6	92.6
		2018년	68.2	93.6	26.1	41.4	89.5
		2019년	57.3	93.0	24.3	38.2	92.9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2019).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제5부

제6부

제7부

제8부

제9부

제10부

부록

## 제3부 요약

제3부에서는 ‘청소년 권리·참여’에 대해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권리 및 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청소년 권리증진 정책, 청소년 참여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국내에서 개최하는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관련 행사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정부는 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권고 등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청소년의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1년 개소한 청소년희망센터는 청소년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청소년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기구로서, 청소년 권리교육 실시, 청소년 권리교육 강사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UN이나 EU 등 국제사회에서는 청소년 참여를 주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청소년이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 참여기구를 지속적으로 운영·지원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청소년 인권을 확립하기 위함이다.

대표적인 청소년 참여기구로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가 있다. 2020년 기준,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234개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운영위원회는 331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특별회의는 500여 명의 청소년이 참여하고 있다. 2020년에는 청소년 참여포탈을 통한 정책제안공모를 추진하여 관심 있는 청소년은 누구나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정책제안 활동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청소년 관련 대표적인 행사로는 ‘청소년의 달 기념식’,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성년의 날 기념행사’, ‘전국청소년지도자대회’, ‘청소년푸른성장대상’ 등이 추진되고 있다.

제3부

# 청소년 권리·참여

제1장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의 형성

제2장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

제3장 청소년 주요 행사

3

## 제1장

##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의 형성

## 1.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의 형성

1991년 우리나라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여 협약 당사국이 됨에 따라 국내 청소년정책은 권리보장의 관점에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 이후 협약에 명시된 비차별 원칙,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 등을 기본이념으로 삼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확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청소년정책위원회 도입,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설치 등 아동·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또한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8~2002년)」과 이를 발전적으로 계승한 「제3차 청소년육성5개년기본계획(2003~2007년)」을 계기로 ‘청소년 인권신장과 자율·참여’가 주요 정책이념이 되는 정책 패러다임의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시민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청소년정책 참여기구가 만들어지고 청소년이 정책에 직접 참여·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다음으로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2012)」에서는 ‘시민역량증진 및 인성교육 강화’라는 중점과제 내의 세부추진 과제로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이 추진되었고,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청소년참여 활성화’,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 ‘청소년의 권리증진 기반 조성’이라는 3대 중점과제를 추진하였다. 2018년에 수립된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이라는 목표 하에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과제들을 설정하였다.

그간 정부는 청소년들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자 청소년 참여기구의 운영을 활성화 하였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 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청소년의 생존·보호·발달·참여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아동·청소년의 기본생활보장은 물론 청소년의 권리·참여, 안전·보호, 교육 및 여가 보장 등에 관한 포괄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제2장

##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

## 1. 청소년 권리증진 정책

## 가. 유엔아동권리협약

1989년 11월 ‘유엔총회’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RC)’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에 아동권리협약, 2004년 9월에 2개의 선택의정서(①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 ② 아동매매, 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의 금지)를 비준하였다. 동 협약은 세계인권선언에서 아동기에는 특별한 돌봄과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국제연합의 선언을 상기하며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쳐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보장하는 가운데 어떤 환경과 조건에 관계없이 아동의 생존권이 존중되고 그들의 잠재력이 최대한 개발되도록 지지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기본이념은 차별의 금지(제2조),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제3조), 생명 존중(제6조), 아동의견 존중(제12조) 등이다.

동 협약 제44조제1항에 따라 협약에 비준한 국가는 협약이 발효한 후 2년 이내에 이행상황에 대한 최초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에는 5년마다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제1차 및 제2차 국가보고서를 제출(1994. 8월, 2000. 5월)하였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각 보고서에 대한 권고문을 공표(1996. 2월, 2003. 5월)하였다. 이후 위원회는 자체심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제3·4차부터 통합국가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제3·4차 통합국가보고서를 제출(2008. 12월)하였고, 협약 제44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추가정보 요청에 대해 제3·4차 추가보고서를 제출(2011. 7월)하였으며 위원회는 권고문을 공표(2012년)하였다. 제5·6차 통합국가보고서는 제3·4차 권고사항 이행결과를 협약 조항별로 작성하여 제출(2017. 12월)하였으며, 이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권고)가 2019년 9월에 진행되었다.

제1차 최초 국가보고서 심의(1996년)에서 「제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1992~1996년)」에 아동을 위한 국가 행동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으나, 비준 시 유보한 조항에

대한 철회 및 협약에 대한 적극적 홍보 등을 권고하였다. 제2차 국가보고서 심의(2003년)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1997년), 「청소년 보호법」 제정(199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2001년) 등 아동권리의 향상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아동권리협약 일부조항 유보 유지, 다양한 부처에서 운영되는 아동관련 정책 및 제도 등을 조정할 상설중앙기구 미설치, 정책수립단계에서의 시민사회와의 협력 부족, 아동권리협약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미흡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정부는 「어린이보호·육성 종합계획(2002년)」, 「아동안전 종합대책(2003년)」, 「제3차 청소년육성 기본계획(2003~2007년)」 등 아동 관련 종합대책 수립, 청소년 복지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정(2004년),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설치 및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한 「아동복지법」 개정(2004~2007년) 등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정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아동정책의 기본방향,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한편, 아동권리 침해사태의 실질적 조사와 제도개선을 위한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를 설치·운영(보건복지부, 2006~2014년) 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청소년 인권 모니터링사업을 수행하여 아동권리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 또한,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와 홍보가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동과 관련된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교재 등을 개발하여 배포하였다. 「아동복지법」 개정(2004년)을 통해 ‘어린이주간(5. 1.~5. 7.)’을 제정·선포하고, ‘대한민국아동총회’ 및 ‘아동권리포럼’을 개최하여 아동권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등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홍보 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제3·4차 통합국가보고서 심의(2012년)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및 아동학대 현장 출동 시 아동보호를 강화한 「아동복지법」 개정(2011년),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및 ‘장애인권리협약’ 비준(2006년, 2008년), ‘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2010년) 등을 높이 평가하였으나, 유보조항 철회를 위한 노력, 교과 과정 내 아동권리 및 인권 관련 교육 확대,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등을 권고하였다.

한편, 2002년 유엔총회는 협약에 따른 두 개의 선택의정서[제1선택의정서(‘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및 제2선택의정서(‘아동매매, 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의 금지에 관한 선택의정서’)]를 채택함에 따라 제2차 국가보고서 심의(2003년)에서 제1 및 제2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2004년 9월에 두 의정서를 비준하였으며, 제1선택의정서 제8조제1항 및 제2선택의정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각 선택의정서 이행에 대한 제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2007. 4월), 심의(2008. 6월) 받았다.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심의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현역병 지원 입대 연령을 기존의 17세에서 18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병역법」 개정(2004년)과 18세 미만의 아동을 무력분쟁에 참여하게 하는 근거조항을 삭제한 공군규정 개정(2005년)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무력분쟁 지역으로부터 온 망명 및 난민 아동을 접하는 자 뿐만 아니라 아동 관련 모든 전문가 대상 협약 및 선택의정서 인식 제고 및 교육 개발 등을 권고하였다.

‘아동매매, 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의 금지에 관한 선택의정서’ 심의에서는 아동에 대한 상업적 성(性)착취와 성범죄 행위로부터 아동보호 수준을 제고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0년)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4년) 등 성보호 관련 법률의 제·개정, 혼인 가능 연령을 18세로 높인 민법 개정, 청소년 유해환경 종합대책 추진 등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체계적인 자료 수집 및 분석 체계 구축, 경찰·판사·검사 등 선택의정서 이행 관련 국내 모든 전문가를 위한 교육 교재 개발을 위한 지원, 아동권리협약의 입양허가제 유보조항 철회 및 헤이그협약(1993년) 비준 등을 권고하였다.

제5·6차 통합국가보고서는 이러한 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고자 제3·4차 추가보고서 제출 이후 아동·청소년정책의 추진성과와 진전 상황 등을 포함하여 2017년 12월에 제출되었다. 국내·외 입양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입양특례법」 전부개정(2011. 8월), 입양허가 절차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2012. 2월) 등 입양제도를 보완하여 2017년 8월에 입양허가제 유보조항을 철회하였다. 또한, 협약의 기본원칙인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제3조)’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고자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1. 7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 1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014. 5월) 등 아동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하였다. 협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 홍보 포스터 및 소책자 등을 제작하여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아동 관련 시설에 배포(2016년)하였으며, 협약의 정신을 반영한 ‘아동권리헌장’을 제정(2016년)하였다.

제5·6차 통합국가보고서 심의 전 협약 제44조제4항에 따라 국가보고서 및 조항별 변경 사항 및 추가 이행 현황 등에 대한 추가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19년 9월에 진행된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석하여 우리 정부의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관심과 진전을 효과적으로 보여주었다. 주요 권고사항으로는 아동예산 확대, 차별금지법 제정, 체벌 금지 등과 관련한 법적조치가 제기되었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온라인 성매매 아동 보호, 청소년 건강권·근로권·참정권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질의가 이루어졌다. 2020년 2월에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6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따른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국·영문본을 소관부처에 배포하였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17

## 나. 청소년희망센터 운영

### 1) 추진배경

청소년 권리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국제사회의 권고에 따라 2008년 정부는 지역아동·청소년 권리센터 4개소를 시범운영하여 운영모델을 마련하였으며, 2011년 5월 중앙 차원의 청소년 권리 전담기구로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차 위탁을 결정하였다. 이후 2012년 1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2차 위탁, 2013년 1월, 2013~2014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3차 위탁, 2015년 2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차 위탁, 2016년 1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5차 위탁을 결정하였다. 청소년 권리침해 및 권리보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청소년의 권리 수준이 국제사회에 비해 낮다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 희망센터는 아동권리에 대한 협약을 홍보·교육하였다. 또한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증진 기반 조성, 권리 보호 강화 등의 중점과제를 수행할 기관의 필요성 증대로 2017년 1월 청소년희망센터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고유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 2) 사업근거(법령상근거)

「청소년 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제8조의2(교육 및 홍보)에 근거하여 설립·운영 중이다.

### 3) 사업목적

청소년 권리보호·증진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수행체계를 마련하여 청소년 유관기관 종사자 대상 청소년 권리교육, 청소년 대상 권리교육, 청소년 권리교육 강사 양성, 권리교육 매뉴얼 개발·보급 등의 체계적 추진, 청소년 권리 침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4) 주요 사업내용

센터의 주요 사업은 크게 7가지로, 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유관기관 종사자 대상 권리교육, ② 학교 밖·가출 청소년 및 일반 청소년 대상 권리교육, ③ 청소년 권리교육 강사양성(기초·심화·보수교육), ④ 청소년 권리교육 프로그램 및 이러닝 콘텐츠 개발·보급, ⑤ 청소년 권리교육 신청기관과 권리강사 매칭 시스템을 활용한 연계지원, ⑥ 권리침해 유형별 검색 DB시스템 운영, ⑦ 청소년 권리교육 사업 홍보이다. 더불어 2020년에는 청소년 인권증진 및 보호의 일환으로 기관 유형별 청소년 인권친화 선도기관 사업을 시범 운영 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051-662-3096

## 2. 청소년 참여 활성화 정책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참여기구인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를 운영·지원하고,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방면에서 청소년의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 및 내실화 하고자 노력해왔다.

특히,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에 관한 UN총회 특별세션’과 ‘UN 세계청소년포럼’, 그리고 ‘UN 세계청소년장관회의’에서 채택한 ‘리스본 선언’ 등을 통해 확인된 청소년 사회참여의 가치를 정책에 반영하여 정책수요자인 청소년이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한국형 ‘청소년참여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UN에서는 각 정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효율적이고 획기적인 정책들을 홍보하고 격려하고자 ‘공공행정상(Public Service Awards: UN PSA)’을 시상하고 있다. 위와 같은 노력의 결실에 따라

2012년 6월 ‘공공행정상’의 정책결정 참여부문에서 한국은 청소년참여기구 중심의 청소년정책으로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통해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이 체계화·활성화 되는 가운데, 기관·단체·학계 등 현장의 지지와 추진동력을 확보하여 청소년정책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 가. 청소년참여위원회

### 1) 목적 및 기능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참여기구이다. 정부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통해 청소년정책의 형성·집행·평가과정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청소년 친화적 정책을 구현하고 청소년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1998년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에서 ‘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 분야의 세부사업으로 제시되면서 시작되었다. 동 계획에 따라 1998년 11월 ‘문화관광부’ 내에 청소년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2012년 2월에는 기본적 권리로서 청소년 참여권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있던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근거법령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이관하였으며, 이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운영 의무가 법제화되었다(「청소년 기본법」 2017. 12. 12. 개정, 2018. 6. 13. 시행).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운영주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정기·임시회의를 통한 청소년정책 모니터링, 청소년 의견 제안과 정책자문, 각종 토론회·워크숍 개최 및 리더십 훈련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을 개발하고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청소년의 권리신장과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의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 2) 운영 현황

2020년 9월 기준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여성가족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총 234개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청소년자치위원회’, ‘차세대위원회’ 등의 명칭으로도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별 운영규모는 10~30명 내외이며, 공개모집, 기관추천, 청소년 선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구성된 4,400여 명의 청소년이 2020년 현재 활동하고 있다. 2020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예산은 17개 시·도에서 각 1천만 원(국비 5백만 원, 지방비 5백만 원), 216개

시·군·구에서 각 2백 80만 원(국비 1백 40만 원, 지방비 1백 40만 원)을 지원받고 있다.

〈표 3-2-1〉 연도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현황(국고미지원 포함)

(단위: 개)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운영 개소	197	204	216	221	230	239	239

자료: 여성가족부(2020).

〈표 3-2-2〉 2020년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지원 현황(중앙참여위원회 제외)

(단위: 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4	17	9	10	6	6	6	1	32	19	9	16	15	23	24	20	1

자료: 여성가족부(2020).

## 나. 청소년운영위원회

### 1) 목적 및 기능

전국의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등에서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시설의 사업,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1998년도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의 정책기조가 청소년의 자율·참여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2000년도부터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사업 지침 권장에 의해 구성되었다. 이후 「청소년활동 진흥법」(2004. 2. 9. 제정, 2005. 2. 10. 시행)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확대 설치가 더욱 가속화되었다.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의견과 욕구를 반영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현재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심의·평가 등을 통해 시설 운영전반에 참여함은 물론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고, 청소년 대표로서 각종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행사에 참가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2) 운영 현황

청소년운영위원회는 10인에서 20인 이내의 청소년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청소년 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3조). 2020년 현재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전국 331개소에서 청소년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수련시설의 전용공간 확보 및 환경 개선,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관련 정책 제안·참여·평가, 홍보활동 등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참여 청소년들의 리더십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3년부터 전국 청소년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매년 5개소씩 우수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선발하고, 그 운영 결과와 성과를 전국 청소년운영위원회가 공유하고 있다.

〈표 3-2-3〉 2020년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

(단위: 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45	15	10	13	7	11	8	64	34	17	15	18	16	15	17	24	2	331

자료: 여성가족부(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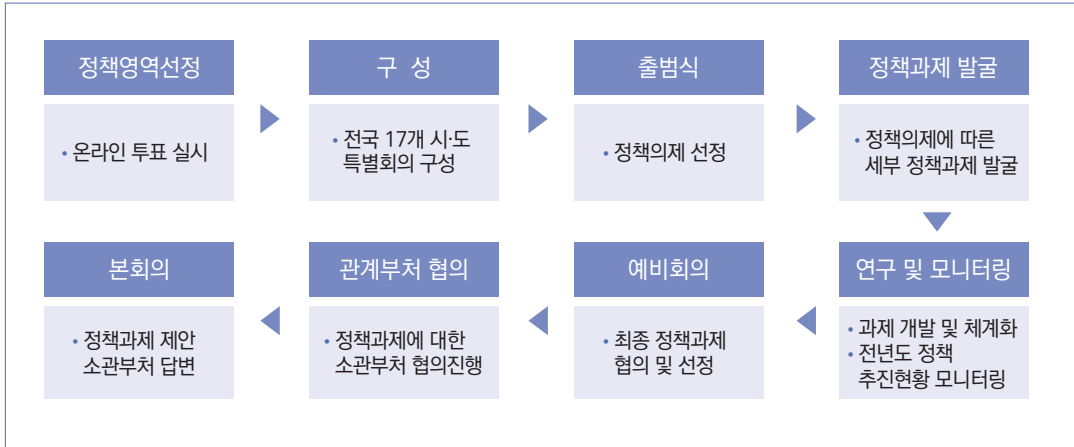
## 다. 청소년특별회의

### 1) 목적 및 기능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 기본법」 제12조에 의하여 17개 시·도 청소년과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가 토론과 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제안하여 정책화하는 전국 규모의 청소년참여기구이다.

2004년 시범사업을 거친 후 2005년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규정이 마련되면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매년 선정된 정책의제에 따라 청소년 의견수렴과 토론, 워크숍, 캠페인 등을 통해 정책과제를 발굴한 후 본회의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정부에 보고·제안한다.

[그림 3-2-1] 청소년특별회의 추진 절차



자료 : 여성가족부(2020).

## 2) 운영 현황

2020년에는 청소년위원 등 500여 명이 참여하여 5~10월까지 예비회의, 본회의를 통한 논의 및 온라인 정책제안 활동을 거쳐 선정된 5개 영역 33개의 정책과제를 본회의에서 보고하였다. 2005년부터 2019년까지 15년간 520건의 정책과제를 제안한 결과 약 88.7%인, 461건의 정책과제가 정부의 청소년정책에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4〉 연도별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및 과제 제안 현황

연도	정책의제 및 과제	비고
2004 (시범)	• 청소년 인권·참여(13개 과제 제안) - 시범사업 : 청소년특별회의 연 1회 개최 정례화	-
2005	• 청소년참여기반 확대 -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참여 등 6개 영역 35개 과제 제안	31개 수용 88.6%
2006	• 청소년 성장의 사회지원망 조성 -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확대 등 5개 영역 37개 과제 제안	33개 수용 89.2%
2007	•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안 - 청소년자원봉사·체험활동의 다양화 등 18개 과제 제안	15개 수용 83.3%
2008	• 청소년의 복지와 권익이 보장되는 사회 - 리틀맘에 대한 정책 마련 등 6개 영역 35개 과제 제안	29개 수용 82.9%

연도	정책의제 및 과제	비고
2009	• 청소년,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는 사회 만들기 -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등 4개 영역 20개 과제 제안	14개 수용 70.0%
2010	• 자기 주도적 역량개발, 존중받는 청소년 - 체험활동을 통한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인프라 확대 등 3개 영역 53개 과제 제안	49개 수용 92.5%
2011	• 우리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 - 유해매체로부터의 청소년 성보호 등 3개 영역 41개 과제 제안	36개 수용 87.8%
2012	• 자유로운 주말, 스스로 만들어가는 청소년활동 - 청소년 체험활동 여건조성 등 3개 영역 30개 과제(89개 세부과제) 제안	81개 수용 91.0%
2013	• 꿈을 향한 두드림, 끼를 찾는 청소년 - 진로체험활동 등 3개 영역 29개 과제 제안	28개 수용 96.6%
2014	• 안전한 미래,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로 - 청소년 참여로 만드는 안전 등 4개 영역 31개 과제 제안	28개 수용 90.3%
2015	• 청소년의 역사이해, 미래를 향한 발걸음 - 역사교육 질적 강화 및 역사 인재양성 등 3개 분야 23개 과제 제안	20개 수용 87.0%
2016	• 틀림이 아닌 다름, 소수를 사수하라 -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활성화 등 4개 분야 29개 과제 제안	28개 수용 96.6%
2017	• 청소년, 진로라는 미로에서 꿈의 날개를 펼치다. -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등 3개 분야 30개 과제 제안	24개 수용 80.0%
2018	• 참여하는 청소년, 변화의 울림이 되다. - 청소년 참정권 확대 등 3개 분야 22개 과제 제안	20개 수용 90.9%
2019	• 인권, 양성평등, 학교밖청소년 지원, 안전, 경제활동 - 청소년 기초 노동 지원 프로그램 등 5개 분야 28개 과제 제안	25개 수용 89.9%
2020	• 스스로 서는 청소년, 세상의 중심에서 미래를 외치다 - '자립' 정책영역의 취업, 정보, 보호, 경제 등 5개 분야 33개 과제 제안	32개 수용 96.9%

자료 : 여성가족부(2020).

2020년에는 청소년참여포털<sup>1)</sup>을 통한 온라인 정책제안공모를 추진하여 관심 있는 청소년은 누구나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정책제안활동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참여활동 관련 온라인 기반 강화를 통해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1) 청소년참여포털 홈페이지: [www.youth.go.kr/ywith](http://www.youth.go.kr/ywith)

## 라.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참여분야)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참여분야)’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청소년이 직접 기획·실천하는 사업이다. 2007년부터 시작된 동 사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구성원 관계 개선, 지역사회 변화·개선, 청소년 권익 개선 등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활동을 제안 받고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한다.

2012년부터 참여·활동·보호 분야별로 운영되던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합함에 따라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내 ‘참여분야’로 운영해오고 있다. 2020년에는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하여 47개 참여프로그램이 선정되어 활동하였다.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02-2100-6236, 6233, 6232

## 마.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증’ 발급제도는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을 통해 수송시설, 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혜택을 제공받게 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보장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2004년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청소년 우대 및 청소년증 발급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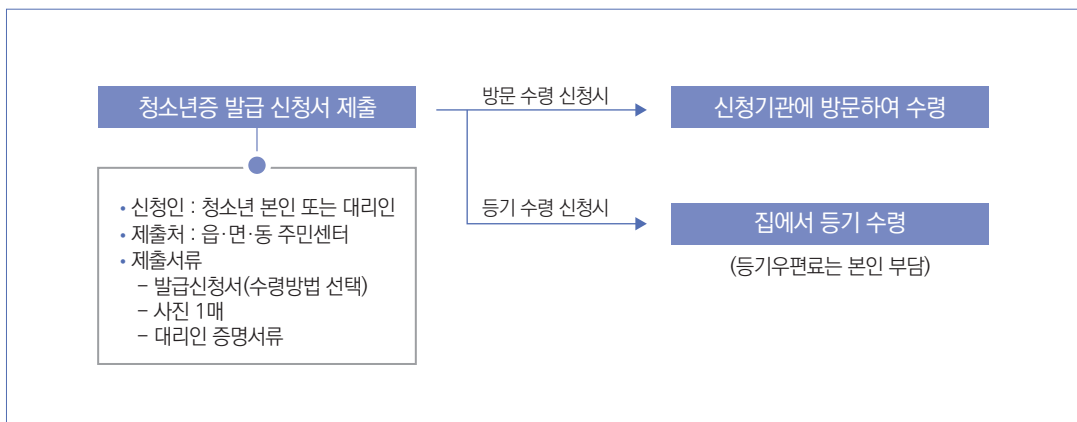
청소년증 발급대상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며,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군·구청장’이 발급한다. 2020년 현재, 청소년증은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와 함께 사진 1매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신분 확인 후 발급되며, 발급기간은 4주 정도 소요된다.

2008년부터는 이용 청소년의 편의 증진을 위해 ‘청소년증 발급 진행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하여 접수 및 배송 직후에 발급 진행 상황을 문자메시지(SMS)로 안내하고 있다. 2011년에는 청소년증 재발급 시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의 편의를 증대하였다. 2014년에는 청소년증 신규 발급 신청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청소년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청소년증을 등기우편으로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7년에는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을 발급하여 대중교통 시설 및 편의점 등 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 결제 및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18년에는 온라인에서

청소년증의 분실 및 분실철회 신고와 더불어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편하였다.

청소년증을 소지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문화시설 등의 시설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일부 할인받을 수 있으며, 기타 민간이 운영하는 일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청소년증은 위의 경제적인 혜택 외에도 대학입시·검정고시·각종 경시대회, 병원 등에서 신분확인 시 활용이 가능하다.

[그림 3-2-2] 청소년증 발급 절차



자료 : 여성가족부(2020).

<표 3-2-5> 연도별 청소년증 발급 현황

(단위 : 건)

연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3 (시범)	515	436	-	-	-	-	66	-	-	-	13	-	-	-	-	-	-	-
2004	11,848	1,515	381	181	751	282	103	86	-	4,381	148	648	311	1,266	244	521	983	47
2005	14,120	1,781	672	214	353	61	287	105	-	1,966	85	995	4,275	450	175	1,597	677	427
2006	12,478	4,355	971	580	640	110	304	220	-	2,894	341	350	368	164	141	486	418	136
2007	24,455	6,975	1,724	1,754	1,676	318	607	640	-	6,243	428	479	855	498	390	810	893	165
2008	30,265	8,251	2,198	1,905	2,464	416	853	844	-	7,477	566	614	720	1,027	499	1,048	1,165	218



연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9	33,656	8,480	2,492	2,212	2,216	509	917	897	-	8,863	835	845	765	1,066	616	1,229	1,440	274
2010	36,244	8,949	2,399	2,069	2,527	576	944	950	-	9,892	908	913	889	1,226	624	1,369	1,738	271
2011	40,898	9,992	2,868	2,304	2,642	813	885	1,060	-	11,007	1,071	1,129	1,205	1,437	718	1,438	2,008	321
2012	43,543	10,633	2,944	2,216	2,916	1,025	1,044	1,180	32	11,232	1,173	1,206	1,244	1,506	896	1,663	2,326	307
2013	49,438	10,624	3,202	2,573	3,012	1,215	1,446	1,590	110	12,555	1,773	1,362	1,733	1,776	1,130	1,935	2,906	496
2014	50,663	9,779	3,174	3,006	3,126	1,561	1,447	1,243	99	12,737	1,704	1,306	1,701	1,942	1,362	2,334	3,640	502
2015	93,536	9,619	3,899	3,406	3,828	1,899	2,403	2,490	473	24,187	3,585	2,519	3,488	3,407	4,143	14,179	8,253	1,758
2016	104,391	8,037	5,746	2,515	2,822	1,539	1,439	1,130	1,402	36,829	5,531	1,385	4,736	4,229	5,453	10,283	10,034	1,281
2017	188,562	13,609	11,890	8,616	5,180	6,037	4,646	3,791	2,460	63,327	9,626	3,631	9,181	9,203	7,248	12,676	14,134	3,307
2018	165,408	11,395	6,432	9,225	4,001	8,891	5,913	4,125	3,381	34,855	8,921	2,648	6,290	11,406	11,769	17,885	15,475	2,796
2019	142,502	13,122	11,704	10,514	4,683	4,399	4,887	1,964	2,918	38,722	4,840	3,276	4,808	8,428	5,272	12,220	8,781	1,964

자료 : 1) 한국조폐공사(2016).  
 2) 여성가족부(2020).

## 제3장

## 청소년 주요 행사

## 1. 청소년의 달 행사

청소년의 능동적·자주적 의식을 고취하고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국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정하고 있다(「청소년 기본법」 제16조).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연계하여 청소년의 달 주제와 관련된 행사를 5월 중에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념식에서는 청소년의 건강하고 바른 성장을 위한 제도 형성에 기여한 청소년과 청소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온 유공자를 발굴·시상하고 있다.

〈표 3-3-1〉 청소년의 달 기념 유공자 시상 현황

(단위: 명)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표창	계
2	3	7	11	70	94

자료: 여성가족부(2020).

## 가. 청소년의 달 기념식

‘청소년의 달 기념식’은 청소년의 달의 의미를 공유하고 청소년정책 발전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표 3-3-2〉 2020년 ‘청소년의 달 기념식’ 주요 행사내용

행사명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청소년의 달 기념식	5. 29.(금), AW컨벤션센터	청소년 육성 및 보호유공자 포상

자료: 여성가족부(2020).

중앙행정기관 외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 청소년단체 등에서도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제고와 미래 청소년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02-2100-6234

## 나.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2005년부터 개최된 박람회는 2008년부터 행사 장소를 서울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전국 단위의 행사로 진행하고 있으며, 2008년 광주, 2009년 대구, 2010년 부산, 2011년 대전, 2012년 서울, 2013년 인천, 2014년 경기, 2015년 경북, 2016년 경남, 2017년 전남, 2018년 전북, 2019년 경기에서 개최하였으며, 2020년에는 12월에 부산에서 온라인 박람회가 개최되었다.

2020년 박람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최초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새로운 100년, 이제는 청소년이다’라는 주제로 공식행사, 강연, 체험, 대회, 전시, 특별, 지역특화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운영하였다. 특히, 가상공간에서 구성된 3D 전시관 운영, 컴퓨터와 모바일 모두 쉽게 관람가능한 UI 적용,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유튜브, SNS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최초로 시도된 비대면 박람회임에도 정식 개최기간 동안 약 16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성과를 냈다.

〈표 3-3-3〉 2020년 '대한민국청소년 온라인 박람회' 행사개요 및 구성

구분	내 용			
일시	2020년 12월 10일(목) ~ 12월 12일(토), 3일간			
장소	부산 벅스코			
주제	새로운 100년, 이제는 청소년이다!			
주최	여성가족부, 부산광역시			
주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후원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행사 구성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막식 : 12. 10.(목) 14:00, 부산 벅스코</li> <li>* 박람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등을 통해 송출</li> </ul>			
	구분	12월 10일(목)	12월 11일(금)	12월 12일(토)
	10:00~11:00	1호특강	1호특강	고3특강
	11:00~12:00	부산 관광 안내(10')	청소년 골든벨	부산 관광 안내(10')
		글로벌 특강(20')		글로벌 특강(20')
		온라인 홈트(10')		온라인 홈트(10')
	12:00~13:00	고3특강	온라인 홈트(20')	부산 관광 안내(10')
			보이는 라디오(30')	온라인 홈트(10')
	13:00~14:00	개막식	청소년 원탁 토론회	청소년e스포츠대회
부산 관광 안내(10')				
글로벌 특강(20')				
14:00~15:00	보이는 라디오 청소년토크콘서트(30')	온라인 홈트(10')		
15:00~16:00	부산 관광 안내(10')	또래특강	또래특강	
	글로벌 특강(20')			
	온라인 홈트(10')			
16:00~17:00	고3특강	고3특강	폐막식	

자료 : 여성가족부(2020).

〈표 3-3-4〉 역대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현황

구분	기간	장소	주제	주최	주관	후원
제1회	2005. 5. 21. ~ 5. 22.	서울무역전시장 (서울)	“청소년,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청소년위원회	한국청소년 진흥센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개발원 등
제2회	2006. 5. 19. ~ 5. 21.	서울무역전시장 (서울)	“대한민국 청소년을 세계의 주역으로”	국가청소년 위원회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교육인적자원부,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청소년개발원 등
제3회	2007. 6. 1. ~ 6. 3.	코엑스 컨벤션홀 (서울)	“청소년 미래비전”	국가청소년 위원회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산업자원부, 노동부, KTF, LG전자, 내셔널지오그래픽, 알파
제4회	2008. 5. 29. ~ 6. 1.	김대중 컨벤션센터 (광주)	“희망/기회/성취의 빛”	보건복지 가족부, 광주광역시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지식경제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제5회	2009. 5. 28. ~ 5. 31.	EXCO전시 컨벤션센터 (대구)	“대한민국 청소년 세계를 디자인하다.”	보건복지 가족부, 대구광역시	한국청소년 진흥센터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제6회	2010. 5. 27. ~ 5. 31.	부산 BEXCO (부산)	“청소년의 꿈을 찾아! 대한민국의 희망을 찾아!”	여성가족부, 부산광역시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교육청
제7회	2011. 5. 26. ~ 5. 28.	대전 컨벤션센터 (대전)	“웃어라, 청소년! 빛나라, 내일아!”	여성가족부, 대전광역시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지식경제부
제8회	2012. 5. 24. ~ 5. 26.	SETEC (서울)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함께 만들어요.”	여성가족부, 서울특별시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서울특별시립 청소년활동 진흥센터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법제처,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제9회	2013. 5. 23. ~ 5. 25.	송도컨벤시아 (인천)	“건강한 청소년, 함께 하는 열린 세상”	여성가족부, 인천광역시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센터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에너지관리공단
제10회	2014. 10. 23. ~ 10. 25.	KINTEX (경기)	“꿈을 만나 행복을 만들다.”	여성가족부, 경기도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경기도청소년 활동진흥센터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분	기간	장소	주제	주최	주관	후원
제11회	2015. 5. 21. ~ 5. 23.	구미고 (경북)	"나는 국가대표다.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여성가족부, 경상북도, 구미시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경상북도 청소년진흥원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민안전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청, 경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2회	2016. 5. 12. ~ 5. 14.	창원 CECO (경남)	"꿈꾸는대로 미래를 디자인 하라"	여성가족부, 경상남도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경상남도 청소년종합 지원본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민안전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제13회	2017. 5. 25. ~ 5. 27.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 (전남)	"꿈꾸는대로 미래를 디자인 하라"	여성가족부, 전라남도, 여주시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전라남도 미래재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민안전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통계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제14회	2018. 5. 24. ~ 5. 26.	군산새만금 컨벤션센터 (전북)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여성가족부, 전라북도, 군산시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전라북도 청소년활동 진흥센터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구분	기간	장소	주제	주최	주관	후원
제15회	2019. 5. 23. ~ 5. 25.	수원 컨벤션센터 (경기)	"2019 다시 청소년이다!"	여성가족부, 경기도, 수원시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센터, 수원시 청소년재단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제16회	2020. 12. 10. ~ 12. 12.	부산 벅스코 (부산)	새로운 100년, 이제는 청소년이다!	여성가족부, 부산시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부산청소년 활동진흥센터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 여성가족부(2020).

## 다. 성년의 날

‘성년의 날’은 법정기념일로서 ‘성년’(만 19세)이 되는 청소년들에게 사회구성원으로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부여하고, 성인으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정되었다. 1973년 매년 4월 20일을 ‘성년의 날’로 제정하였으며, 1975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정하게 됨에 따라 5월 6일로 변경되었고, 1984년부터는 ‘5월 셋째 월요일’로 변경하여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8211호).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오프라인 행사를 온라인 행사로 대체하여 5월 4일부터 성년의 날인 5월 20일까지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성년을 맞이한 청소년(2001년생)을 대상으로 30초 영상 공모전, 온라인 참여 프로그램, 성년의 날 인증샷, 설문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성년 됨을 스스로 축하하며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성장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표 3-3-5〉 '성년의 날' 기념행사 현황

구분	기간	장소	내용	주최	주관	인원
2012	2012. 5. 21.	한국프레스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모전 시상식</li> <li>• 성년다짐발표 및 서명식</li> <li>• 특별강연(조벽 교수)</li> </ul>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100여 명
2013	2013. 5. 20.	광화문 광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대사(주니엘) 팬사인회</li> <li>• 성년다짐발표 및 서명식</li> <li>• 성년축하 뮤지컬</li> <li>• 멘토강연(강남구 작가)</li> </ul>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100여 명
2014	2014. 5. 18. ~5. 19.	국제청소년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박 2일 성년캠프</li> <li>• 내 인생 설계하기</li> <li>• 버킷리스트 작성</li> <li>• 공연(세로토닌 드림스쿨)</li> <li>• 특별강연(이시형 박사)</li> </ul>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90여 명
2015	2015. 5. 18.	하이서울 유스호스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년을 맞는 청소년이 말하다</li> <li>• 성년다짐발표</li> <li>• 열정을 깨워라(퍼포먼스)</li> <li>• 떡케이크 커팅식</li> <li>• 특별강연 및 공연</li> </ul>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100여 명
2016	2016. 5. 16.	KT스퀘어 드림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포그래픽 전시</li> <li>• 성년의 날 명함 만들기</li> <li>• 성년다짐발표 및 서명식</li> <li>• Beautiful Balance(퍼포먼스)</li> <li>• 특별강연(안영일) 및 공연</li> </ul>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120여 명
2017	2017. 5. 15.	AW컨벤션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 하나의 나, 사인 만들기</li> <li>• 성년다짐발표</li> <li>• 슬로건 리본 커팅(퍼포먼스)</li> <li>• 공연(진보라, 허진호)</li> <li>• 특별강연(최인아, 김수영)</li> </ul>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100여 명
2018	2018. 5. 21.	백범김구기념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토존</li> <li>• 버킷리스트 캘리그래피</li> <li>• 공모전 시상식</li> <li>• 성년선서</li> <li>• 축하세리머니</li> <li>• 성년인터뷰</li> <li>• 공연(오브로젝트)</li> <li>• 특별강연(강상균, 김수현)</li> </ul>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120여 명



구분	기간	장소	내용	주최	주관	인원
2019	2019. 5. 20.	백범김구기념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토존 및 공모전 전시존</li> <li>• 1분 캐리커처</li> <li>• 직접 써보는 캘리그래피</li> <li>• 성년 체험활동 부스</li> <li>• 버킷리스트 공모전 시상 및 발표</li> <li>• 성년선서</li> <li>• 축하 세리머니(스탠실 그래피티)</li> <li>• 특별강연(김수영 작가)</li> <li>• 축하공연(리얼 플레이어즈)</li> </ul>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115명
2020	2020. 5. 4. ~5. 20.	온라인 개최 (SNS 페이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초 영상 공모전</li> <li>• 스무 살, 추억의 순간 사진 공모전</li> <li>• 직접 써보는 캘리그래피</li> <li>• 캐리커처 응모전</li> <li>• 인증샷 이벤트</li> <li>• 한 줄 일기 다짐 이벤트</li> <li>• 스타 축하영상 메시지(가수 홍경민)</li> </ul>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378명

자료 : 여성가족부(2020).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02-2100-6232

## 2. 전국청소년지도자대회

‘전국청소년지도자대회’는 현장의 청소년지도자들이 청소년정책의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교류와 화합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지도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2005년 실시 이래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2020년에는 ‘청소년과 함께하는 지도자, 청소년이 희망이다!’를 주제로 9월 24일 개최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는 수상자 포함 소규모 인원만 참석하고, 전국의 청소년 지도자들은 SNS를 통한 생중계와 실시간 채팅 화면을 통해 올해의 청소년지도자 시상 및 교류의 시간 등을 함께하였다.

〈표 3-3-6〉 유공자 포상 현황

(단위: 명)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 표창	계
1	2	9	12

자료: 여성가족부(2020).

〈표 3-3-7〉 역대 '전국청소년지도자대회' 현황

구분	기간	장소	주관	참여인원	주제	주요 프로그램
제1회	2005. 9. 26. ~ 27.	올림픽파크텔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1,000여 명	청소년지도자의 삶과 도전 그리고 희망	기념식, 위원장과 대화, 콜로키움, 청소년지도자의 밤 등
제2회	2006. 12. 8. ~ 9.	국립중앙 청소년수련원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700여 명	청소년지도자! 희망을 이끄는 사람들	개회식, 배워봅시다, 청소년지도자의 밤 및 교류회, 한마음 체육대회
제3회	2007. 9. 16. ~ 17.	국립중앙 청소년수련원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등 4개 협의기구 공동주관)	1,500여 명	꿈과 희망을 여는 사람들, 우리는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지도자의 날 전야제 (축하공연, 기념식, 지도자 경연대회), 교류회, 청소년지도자 체육대회(대동제)
제4회	2008. 12. 19. ~ 20.	국립중앙 청소년수련원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1,000여 명	아동·청소년 지도자가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소통의 장(단합, 민속 공연), 만남의 장(지도자 비전 공유), 화합의 장(지도자 친선 교류), 도약의 장(명량 운동회 등)
제5회	2009. 8. 28. ~ 29.	국립중앙 청소년수련원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750여 명	꿈 + 미래, 행복 공감 지도자대회	주제발표 및 토론, 아동청소년서비스 및 프로그램 발전방안 기념식, 우수 운영사례 경진 대회, 단합대회
제6회	2010. 10. 19.	올림픽파크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원	2,000여 명	만남+소통+공감 = 청소년지도자의 행복	창의적 체험활동 발표, 분야별 우수사례 발표,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정·보완 소개, 기념식, 올해의 지도자상 시상, 결의문 낭독 등

구분	기간	장소	주관	참여인원	주제	주요 프로그램
제7회	2011. 9. 27.	서울교육 문화회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원	1,000여 명	청소년의 꿈! 지도자의 열정! 희망찬 대한민국!	청소년정책에 대한 주제 강연, 기념식(주제영상, 비전선언, 지도자의 다짐, CI 선포), 열린토론회, 상호교류의 밤 등
제8회	2012. 9. 21. ~ 22.	국립중앙 청소년수련원	한국청소년 수련시설협회 (7개 기관 후원·협력)	700여 명	꿈의 날개! 열정의 비상! 함께 만드는 희망 대한민국!	우수사례 발표, 주제 강연, 기념식(올해의 지도자상 시상, 주제·축하영상) 지도자 상호교류의 장, 한마음 어울림마당 등
제9회	2013. 9. 27. ~ 28.	국립중앙 청소년수련원	한국청소년 수련시설협회 (7개 기관 후원·협력)	700여 명	청소년의 꿈과 행복!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힐링페스티벌, 정책강연, 기념식(올해의 지도자상 시상, 주제 축하영상), 축하공연, 화합 및 교류의 장, 한마음 어울림마당 등
제10회	2014. 9. 24.	AW컨벤션 센터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7개 기관 후원·협력)	700여 명	꿈과 희망을 이끄는 청소년지도자들의 비상(飛上)	소통의 장(포토존, 기 수상자와의 만남, 정책강연), 격려의 정(올해의 청소년지도자 상 시상, 기념 퍼포먼스, 구호제창), 화합의 장 등
제11회	2015. 9. 24.	AW컨벤션 센터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7개 기관 후원·협력)	700여 명	대한민국 청소년의 꿈과 끼! 청소년지도자가 함께 합니다.	식전행사(청소년활동 전시, 토크콘서트 등), 본행사 [오프닝공연, 주제영상 상영, 시상식, 축하공연 등], 식후행사(특강, 교류 및 화합의 시간, 만찬 등)
제12회	2016. 11. 17. ~ 18.	국립중앙 청소년수련원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8개 기관 후원·협력)	700여 명	청소년 희망의 별! 빛나는 청소년 지도자!	식전행사(포토존 히스토리전시), 본행사(오프닝공연, 주제영상, 시상식, 축하공연 등), 식후행사(생생토크, 만찬)
제13회	2017. 9. 14. ~ 15.	천안상록리조트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8개 기관 후원·협력)	700여 명	지도자의 행복! 청소년의 희망으로~	식전행사(사랑의 책 나눔), 본행사(오프닝공연, 축하영상, 시상식, 퍼포먼스 등), 식후행사 (교류 및 화합의 시간 등)

구분	기간	장소	주관	참여인원	주제	주요 프로그램
제14회	2018. 9. 14.	AW컨벤션 센터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8개 기관 후원·협력)	530여 명	청소년과 함께하는 우리, 청소년과 함께 만드는 미래	식전행사(포토존, 감동계단,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존), 본행사(오프닝 공연, 청소년지도사 윤리현장 선언, 청소년 유공 지도자 시상식, 청소년이 말한다, 청소년지도자 답변, 청소년지도자 발언대, 퀴즈대회, 만찬)
제15회	2019. 10. 11.	AW 컨벤션 센터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8개 기관 후원·협력)	510여 명	청소년에게 용기를, 청소년지도자에게 보람을! (부제 : 다시 청소년이다!)	식전행사(참여형 포토존 "컬러링 Wall", 플라워 포토존, 디지털 캐리커처, 캘리그라피, 사전영상공모전 유튜브 부스, 지도자 소통존&힐링존) 본 행사(오프닝 공연, 디지털 식수 세리머니, 올해의 청소년지도자상 시상식) 식후행사(공감토크쇼, 퀴즈&FUN, 만찬 및 교류의 시간)
제16회	2020. 9. 24.	AW 컨벤션 센터 (SNS 생중계 및 실시간 채팅)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현장 : 20명 온라인 : 380여 명	청소년과 함께하는 지도자, 청소년이 희망이다!	사전행사(SNS 릴레이 챌린지 응원 영상 업로드, 엽서 공모전, 퀴즈 이벤트, 방방곡곡 이벤트) 본 행사(사전 온라인 이벤트 영상 상영, 올해의 청소년 지도자상 시상식, 엽서 공모전 선정작 낭독, 재드밴드 공연)

자료 : 여성가족부(2020).

### 3. 청소년푸른성장대상

여성가족부는 사회 각 분야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온 개인·단체 및 바른 성장으로 또래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시상함으로써 그 공적을 널리 알리고 청소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청소년푸른성장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성인 부문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현저한 업적을 5년 이상 쌓은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추천하며, 청소년 부문은 1년 6개월 이상 스스로 노력하여 빠르게 성장하거나 다양한 참여·봉사활동으로 주위에 도움을 주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청소년 개인 또는 동아리이면 누구나 추천 가능하다.

수상자에게는 총 5천만 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되며, 2020년에는 성인 개인 500만 원, 성인 단체 1,000만 원, 청소년 개인 100만 원, 청소년동아리 20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숨은 공로자를 발굴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청소년 분야에서 활동하는 개인, 기관·단체 및 건강한 성장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 및 청소년동아리 누구나 수상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있다.

〈표 3-3-8〉 연도별 ‘청소년푸른성장대상’ 개최 현황

연도	주최	주관	시상 부문	상금	위원장	시상식		
						일자	장소	참석자
2009	보건복지가족부, 문화방송, 중앙일보	푸른성장 대상 위원회	5개 부문 (활동, 복지, 정책, 학술, 미디어)	각 10백만 원	박완서 (서울대 명예문학 박사)	11. 30.(월) 16:00	대한상공회의소	250여 명
2010	여성가족부, 문화방송, 중앙일보	푸른성장 대상 위원회	4개 부문 (활동, 복지, 보호, 청소년)	개인 10백만 원, 단체 15백만 원, 청소년 상품권(20만 원), 동아리 1백만 원	이경숙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12. 3.(금) 15:00	MBC 여의도 공개홀	250여 명
2011	여성가족부, 문화방송, 중앙일보	푸른성장 대상 위원회	-	개인 10백만 원, 단체 15백만 원, 청소년 상품권(50만 원), 동아리 1백만 원	유인촌 (극단 유시어터 대표)	11. 25.(금) 15:00	MBC 여의도 공개홀	250여 명

연도	주최	주관	시상 부문	상금	위원장	시상식		
						일자	장소	참석자
2012	여성가족부, 문화방송, 중앙일보	푸른성장 대상 위원회	-	개인 10백만 원, 단체 10백만 원, 청소년 상품권(50만 원), 동아리 1백만 원	최불암 (어린이재단 전국 후원회 회장)	11. 16.(금) 14:00	MBC 여의도 공개홀	250여 명
2013	여성가족부, 문화방송, 중앙일보	푸른성장 대상 위원회	-	개인 10백만 원, 단체 10백만 원, 청소년 상품권(50만 원), 동아리 1백만 원	이원복 (덕성여대 석좌교수)	12. 6.(금) 14:00	MBC 드림 센터 공개홀	250여 명
2014	여성가족부, 문화방송, 중앙일보	푸른성장 대상 위원회	-	개인 10백만 원, 단체 10백만 원, 청소년 50만 원, 동아리 1백만 원	나승일 (서울대 교수)	12. 18.(목) 14:00	MBC 상암동 공개홀	250여 명
2015	여성가족부, 문화방송, 중앙일보	푸른성장 대상 위원회	-	개인 10백만 원, 단체 10백만 원, 청소년 50만 원, 동아리 1백만 원	나승일 (서울대 교수)	12. 3.(목) 14:00	MBC 상암동 공개홀	250여 명
2016	여성가족부, 문화방송, 중앙일보	푸른성장 대상 위원회	-	개인 5백만 원, 단체 5백만 원, 청소년 1백만 원, 동아리 150만 원	배규한 (백석대 교수)	12. 15.(목) 14:00	MBC 골든 마우스홀	250여 명
2017	여성가족부	푸른성장 대상 위원회	-	개인 5백만 원, 단체 10백만 원, 청소년 1백만 원, 동아리 150만 원	최영희 (사단법인 탁틴내일 이사장)	12. 15.(금) 14:00	AW컨벤션 센터	200여 명
2018	여성가족부	푸른성장 대상 위원회	-	개인 15백만 원, 단체 20백만 원, 청소년 150만 원, 동아리 150만 원	최영희 (사단법인 탁틴내일 이사장)	12. 12.(수) 15:00	대림미술관 디라운지	100여 명
2019	여성가족부	푸른성장 대상 위원회	-	개인 10백만 원, 단체 10백만 원, 청소년 1백만 원, 동아리 2백만 원	김동일 (서울대학교 교수)	12. 4.(수) 14:00	AW컨벤션 센터	100여 명
2020	여성가족부	푸른성장 대상 위원회	-	개인 5백만 원, 단체 10백만 원, 청소년 1백만 원, 동아리 2백만 원	김동일 (서울대학교 교수)	12. 14.(월)	홈페이지 안내	-

자료 : 여성가족부(2020).



## 제4부 요약

‘제4부 청소년활동’에서는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자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및 정책에 대해 다루고 있다.

청소년활동은 청소년 프로그램·사업의 개발·보급 및 평가, 청소년의 수련활동 및 문화·예술체험 활성화,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지원, 청소년의 국제교류 등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은 청소년의 여유시간 활용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활동·참여·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2020년에는 청소년권의 개선, 성평등 의식제고, 진로역량 개발 및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활동 등 90개 활동프로그램이 선정되어 추진되었다.

청소년문화활동은 청소년의 상시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청소년 건전 문화를 형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청소년문화활동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사업’과 ‘청소년어울림마당’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한편, 글로벌·다문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청소년의 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2006년부터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 12월 현재까지 인증된 수련 활동은 2020년 12월 현재까지 인증된 수련 활동은 10,470건에 이르며, 3,299건의 인증 수련활동이 유지되고 있다.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도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참가자가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제도이다. 신고제도를 통해 수련활동 운영 전반에 대한 안전 요소를 점검할 수 있고, 범죄 경력자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청소년지도자의 참여를 막을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청소년자원봉사활동 및 청소년교류활동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의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진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7년에는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환경문제 등을 고민해보고, 그 해결 방안으로 봉사활동을 스스로 기획하여 실행하는 청소년 자기주도형 봉사활동 시범사업을 4개 시·도에서 운영하였고, 2018년에는 17개 시·도로 전국 확대하였으며, 2020년에는 2,064명의 청소년이 자기주도형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함양을 위해 실시되는 청소년 교류활동의 경우,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으로 해외 파견·초청이 어려워짐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교류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국가 간 청소년교류의 경우 일본과 브루나이 현지 청소년과 우리 청소년 간 온라인 교류를 실시하였고, 해외자원봉사의 경우 국내에서 해외 청소년을 위해 교육봉사활동 콘텐츠를 제작하여 공유하였다. 청소년 국제교류의 실질적인 효과를 고려한 국내 기반 국제교류를 위하여 총 13개 대학의 국내체류 유학생과 한국대학생의 교류 활동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민간 청소년단체가 개최하는 국제청소년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제4부

# 청소년활동

제1장 청소년활동 지원

제2장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제3장 청소년 교류활동

# 4

## 제1장

## 청소년활동 지원

## 1.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활동분야)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활동분야)’은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을 유도하고, 우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발굴·확산을 통하여 청소년의 균형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소년의 잠재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진로역량 개발, 민주시민의식 제고, 문화·예술체험활동 활성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2012년부터 활동·참여·보호 분야별로 운영되던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합함에 따라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내 ‘활동분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20년에는 성평등 의식제고, 진로역량 개발, 문화감수성 제고 등 38개 활동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표 4-1-1〉 2020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공모지원 현황

(단위: 개, 천 원)

분야	소주제	선정 프로그램 수	지원 금액
활동	성평등 의식 제고	7	65,100
	진로역량 개발	22	246,300
	문화감수성 제고	9	104,700

자료 : 여성가족부(2020).

## 2. 청소년문화활동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청소년문화활동은 청소년이 예술·스포츠·동아리·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의미한다. 청소년문화활동은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수성 증진을 통하여 입시위주의 환경 속에서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청소년문화활동은 청소년들의 상시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형성하는 데 목적을 둔다. 청소년문화활동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청소년동아리활동’과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사업이 있다.

### 가. 청소년동아리활동

청소년동아리활동은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스포츠·과학 등 다양한 취미활동을 통해 건강한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특기·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자율적 활동이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시·도별 청소년 시설 및 각급 학교(초·중·고 등)의 동아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인근 청소년 수련시설과 연계해 우수 청소년동아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2,500개의 청소년동아리를 선정·지원하고 있다.

〈표 4-1-2〉 전국 청소년동아리 지원 현황

(단위: 개)

구분	동아리 지원 수	구분	동아리 지원 수
서울	440	강원	158
부산	139	충북	76
대구	122	충남	97
인천	93	전북	114
광주	69	전남	74
대전	115	경북	160
울산	49	경남	145

구분	동아리 지원 수	구분	동아리 지원 수
세종	14	제주	101
경기	534	합계	2,500

자료 : 여성가족부(2020).

## 나. 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어울림마당은 청소년이 생활권 주변에서 문화적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놀이 체험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어울림마당은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기획·진행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표현의 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모니터링을 통해 청소년 눈높이에서 청소년들의 욕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청소년어울림마당은 2004년과 2005년에 8개 광역시·도에서 운영되었으나, 2006년부터 11개 시·도로 확대되었고 5개 시·도가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2008년도에는 16개 시·도, 90개 시·군·구로 청소년어울림마당이 확대·실시되었으며, 2011년부터는 16개 시·도 대표 어울림마당과 110개 시·군·구 어울림마당이 지원·운영되고 있다.

〈표 4-1-3〉 전국 시·도별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현황(2011~2020)

(단위 : 개)

구분	어울림마당 지원 수		구분	어울림마당 지원 수	
	대표 어울림마당	시·군·구 어울림마당		대표 어울림마당	시·군·구 어울림마당
서울	1	11	강원	1	6
부산	1	6	충북	1	6
대구	1	7	충남	1	6
인천	1	4	전북	1	7
광주	1	4	전남	1	6
대전	1	4	경북	1	8
울산	1	2	경남	1	11
세종	-	1	제주	1	1
경기	1	20	합계	16	110

자료 : 여성가족부(2020).

###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 가. 추진배경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5조 내지 제38조에 따라 시행된 제도로써, 청소년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인증된 수련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 기록을 유지·관리·제공하는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 인증제도이다.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는 글로벌·다문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청소년의 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제도로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문화적 역량을 개발·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활동 기반 확립과 학교 교육과 연계한 활동 지원의 확대 요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04년 2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5조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200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인증으로 양질의 활동기회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수요자인 청소년의 욕구가 반영된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유용성’, ‘공공성’, ‘안정성’을 강조한다. 또한, 인증 받은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실적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자기계발과 진로탐색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나. 인증제 추진 현황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는 2006년 3월부터 시작되어, 당해 연도에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 15인을 위촉하고, 인증심사원 192명을 선발하여, 5월 인증접수를 시작으로 79건의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였다.

2007년에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인증제도 운영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인증기준과 인증심사 절차의 간소화, 국제청소년활동 인증기준 개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업무의 효율적 연계 운영을 추진하였다. 또한 인증심사원 91명을 추가 선발하여 283명의 인증심사원 인력풀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인증심사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8년에는 인증제 운영규정과 인증심사원 운영규정을 통합·개정하여 제도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인증 받은 활동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연구 기획과 만족도 조사를 시작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제도 홍보와 사후관리 등을 위해 학부모 참관단(32명)을 구성하여 시범·운영하였다.

2009년에는 제2기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가 출범하고, 인증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찾아가는 간담회, 설문조사, 현장전문가 회의 등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학생생활기록부에 인증수련활동 참여기록을 등재하기로 결정하는 등 학교교육정책과 인증제도와 연계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청소년관련 학과를 설치한 9개 대학과 대입 시 가산점 반영을 하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지역 내 인증수련활동을 모니터링하는 학부모참관단(107명)을 운영하고, 인증수련활동 참여청소년 700명을 대상으로 한 활동영역별 효과성 측정 연구를 통해 인증수련활동의 질적 수준 향상과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2010년에는 참여 청소년의 확대를 위한 중·단기 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6개 대학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입학 시 청소년수련활동 참여기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MOU 체결 대학: 15개교). 인증심의 317건 중 250건이 인증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으며 70건의 이행여부 확인을 실시하여 인증프로그램의 신뢰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1년에는 인증제 활성화 방안 연구 등 제도개선연구와 함께 정부부처 주관 활동프로그램 인증이 추진되었으며 인증심사원 연수와 인증제 담당자 직무연수를 연계 운영하여 인증제 담당자의 역량향상을 도모하였다. 또한 인증수련활동 효과성 지표 추가 개발 연구(건강보전활동, 자기개발 활동 영역)를 통한 각 영역별 역량 강화와 2개 지방자치단체(도청, 교육청) 및 11개 대학과 업무 협약 체결을 한 결과, 인증수련활동기록을 이용하여 대학교에 입학한 사례가 나타나 인증제가 내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2년에는 인증심사원 41명을 추가로 선발하여 전문심사원을 활용한 지역별 프로그램개발 워크숍을 운영하고, 인증신청 및 사후관리에 관련된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인증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지역 내 인증수련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홍보하는 청소년·학부모 모니터단(216명)을 구성·운영하고 인증제 홍보동영상 제작, SNS 개설, 웹메일 발송 등 다양한 홍보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인증수련활동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행여부 자체 점검(시범운영)을 시행하였다.

2013년에는 제3기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가 출범하였고, 국가제도로서의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참여대상의 확대·다변화를 통한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운영담당자교육이 시작되었고, 인증기준을 공통기준 14개에서 6개로 통·폐합하여 인증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여 심사대상을 현실화 하였으며 수시점검 도입, 변경항목 세분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였다.

2014년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개정(2014. 7. 22.)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에 대한 인증을 의무화하고 모든 인증 신청 프로그램에는 안전 관련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등 인증프로그램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되었다. 또한 청소년활동현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청소년 등 제도 수혜자의 인지도 개선을 위하여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연계한 인증신청 및 사후관리, 인증제 설명회를 통한 교육을 정례화하고, 다양한 인증제도의 참여 대상자별 다각적 홍보를 실시하였다.

2015년에는 인증위원회의 구성과 안전전문가의 위촉에 관한 사항이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2015. 2. 3.)시 신설되어 신규로 안전전문가 2인, 법조인 1인을 위촉하도록 하였다. 사전에 인증을 받아야하는 활동(의무인증)에 대한 현장심사 및 이행확인을 강화하였으며 지역의 인증제 지원 및 안전관련 업무를 담당할 상근심사원 20명을 선발하여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배치하였다.

2016년에는 인증제도의 전문성 강화와 참여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의 결과로 청소년 수련활동인증제 운영규정을 인증제 운영규정과 인증심사원 운영규정으로 분리하였다. 이는 심사원 전문성 강화, 사후관리체계 명확화, 현장 편의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9개 분야에 걸친 자문위원을 위촉(10명)하였고, 인증제 시행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인증마크를 선포하였으며, 2015년 5,000호 인증에 이어 1년 만에 6,000호 인증을 달성하는 등 양적으로도 성장하였다.

2017년에는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학교단체 숙박형 활동유형을 신설, 별도의 인증기준과 사후관리체계를 도입하였다. 또한 개별단위 프로그램의 인증 도입, 지도자 배치기준의 현실화, 수시 점검 확대 운영 등 안전한 활동 환경을 기반으로 한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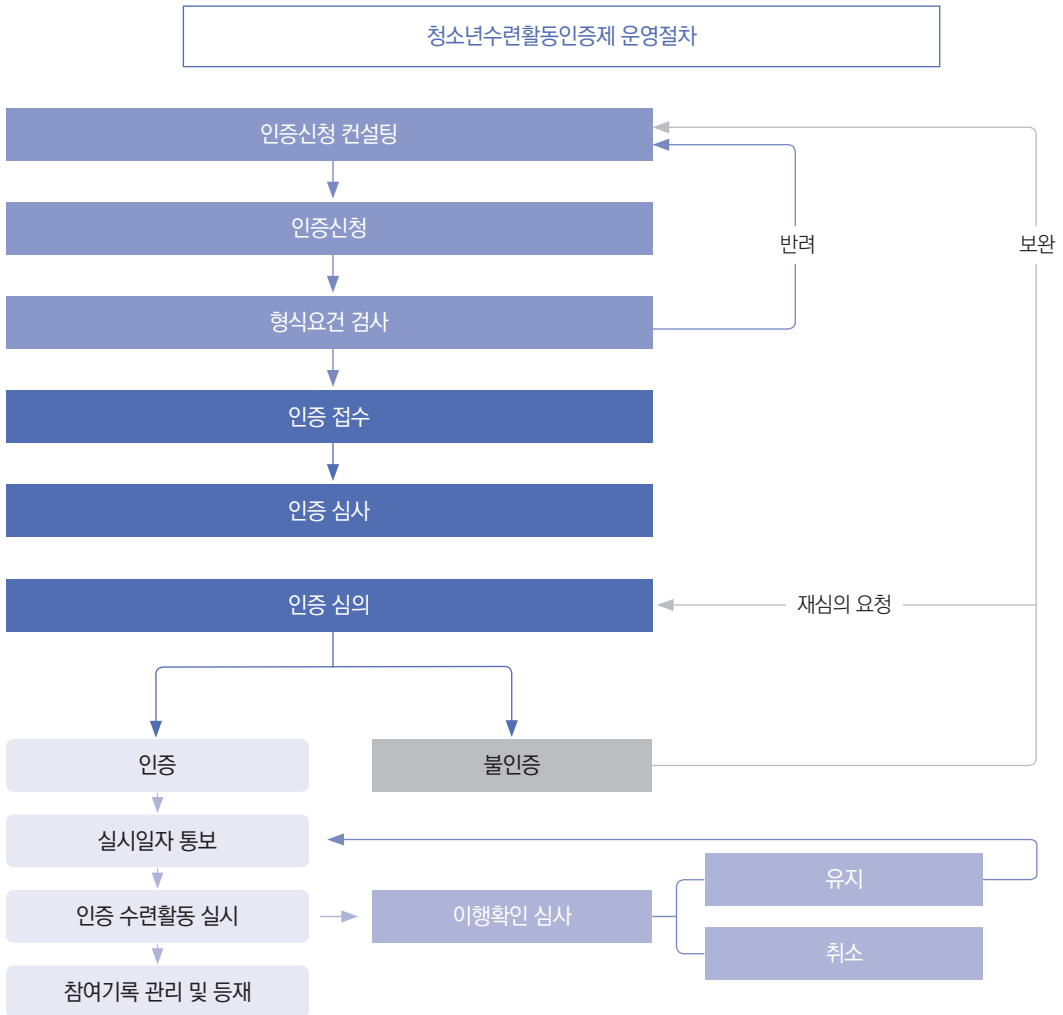
2018년에는 집라인, 래프팅 등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과 드론 등 안전 고려 활동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등 프로그램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인증신청자의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간편 인증신청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에서 제출되는 중복 서류를 최소화하고, 기존 제출하였던 31개의 증빙서류를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반영 및 같음 등을 통해 19개로 행정서류를 간소화하였다.

2019년에는 참여 학부모와 교사가 직접 참여하는 현장점검단을 운영하여 수요자가 제도를 인지하고 필요성을 느끼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보급형 프로그램을 현장에

개발 및 보급하고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인증신청자가 신청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0년에는 비대면방식 청소년활동 인증기준을 개발하여 청소년활동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시대변화에 맞게 청소년활동의 혁신을 도모하였으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등의 사유로 인해 인증수련활동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기관에 대하여 인증수련활동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림 4-1-1]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절차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0).



## 다. 인증기준 및 인증수련활동 현황

수련활동 인증신청은 상시적으로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접수된 청소년수련 활동은 1개 프로그램 당 2명의 인증심사원이 심사를 하고, 인증위원회가 최종심의를 하게 된다. 인증기준은 국내 청소년활동과 국제 청소년활동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영역별 인증기준은 공통기준과 개별기준 및 특별기준을 갖는다. 공통기준은 활동 프로그램, 지도력, 활동환경 등 3가지 영역, 개별기준은 숙박형과 이동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프로그램과 학교단체 숙박형 활동, 비대면방식 청소년 활동은 특별기준을 추가로 적용한다.

〈표 4-1-4〉 청소년수련활동 인증기준

영역/유형		인증기준	확인요소	
공통 기준	1. 활동 프로그램	1. 프로그램 구성	9	
		2. 프로그램 자원운영		
	2. 지도력	3. 지도자 전문성 확보계획	8	
4. 지도자 역할 및 배치				
3. 활동환경		5. 공간과 설비의 확보 및 관리	7	
		6. 안전관리 계획		
개별 기준	활동 유형	숙박형 1. 숙박관리, 2. 안전관리인력확보, 3. 영양관리자 자격	5	
		이동형 1. 숙박관리, 2. 안전관리인력확보, 3. 영양관리자 자격 4. 휴식관리, 5. 이동관리	7	
특별 기준	위험도가 높은 활동		1. 전문지도자의 배치 2. 공간과 설비, 안전관리	4
	학교단체 숙박형		1. 학교단체 숙박형 활동 관리	3
	비대면방식 실시간 쌍방향		1. 실시간 쌍방향 활동 운영 및 관리	5
	비대면방식 콘텐츠 활용 중심		1. 콘텐츠 활용 중심 활동 운영 및 관리	6
	비대면방식 과제수행 중심		1. 과제수행 중심 활동 운영 및 관리	5

주 : 1) 프로그램: 청소년의 발달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의 기획 여부와 내용 구성, 평가·환류체계의 포함 유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자원의 적정성 등을 확인.

2) 지도력: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에 적합한 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여부, 프로그램 내용 및 청소년 참여 인원 수 대비 지도자 배치 수의 적정성, 안전고려활동 운영 시 유자격자 등 배치 여부를 확인.

3) 활동환경: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적합한 활동환경이 제공될 수 있는 가를 공간과 설비, 사용여건, 보험 가입 등으로 확인.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0).

〈표 4-1-5〉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활동유형 구분

활동유형	내용
기본형	전체 프로그램 운영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서, 실시한 날에 끝나거나 1일 1시간 이상의 각 회기로 숙박 없이 수일에 걸쳐 이루어지는 활동
숙박형	숙박에 적합한 장소에서 일정기간 숙박하며 이루어지는 활동
이동형	활동 내용에 따라 선정된 활동장을 이동하여 숙박하며 이루어지는 활동
학교단체 숙박형	학교의 장이 참가를 승인한 활동으로 숙박에 적합한 장소에서 일정기간 숙박하며 이루어지는 활동 * 개별 단위프로그램 : 학교단체 숙박형 활동을 구성하는 각각의 프로그램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0).

현재까지 인증된 수련활동은 10,470건이며, 이 중 27건은 인증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통해 취소되고, 7,096건은 인증유효기간이 종료되었으며, 48건은 철회되어 2020년 12월 말까지 총 3,299건의 인증 수련활동이 유지되고 있다.

〈표 4-1-6〉 연도별 인증제 운영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인증신청	132	352	508	348	340	329	276	1,291	2,895	2,026	1,317	1,517	2,095	1,555	1,494	16,475
인증	79	284	443	255	265	242	212	778	1,558	1,301	824	764	1,299	1,056	1,110	10,470
유지	79	359	802	1,057	1,297	1,382	1,314	1,702	2,971	3,743	4,146	4,159	3,725	3,113	3,299	3,299
종료	-	-	-	-	52	191	339	231	277	527	406	764	1,733	1,652	924	7,096
철회	-	5	4	12	3	-	3	11	10	-	-	-	-	-	-	48
취소	4	-	-	-	-	-	-	1	3	2	-	1	-	16	-	27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0).

〈표 4-1-7〉 기관 유형별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계
국가, 지방자치단체	-	1	3	1	1	1	3	-	1	8	23	6	5	1	1	55
공공기관	5	17	13	4	6	4	2	8	31	27	22	28	51	26	22	266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계
학교/교육청	-	-	-	3	2	3	2	4	14	38	7	3	7	1	3	87
청소년수련관 (특화시설)	20	165	273	139	175	120	85	127	215	185	149	128	162	160	319	2,422
청소년수련원	24	33	37	31	18	56	29	337	499	461	206	279	586	533	454	3,583
청소년문화의 집	9	44	76	38	38	33	66	40	86	75	113	98	124	182	207	1,229
야영장, 유스호스텔	-	2	1	7	1	6	6	94	147	31	21	47	59	32	29	483
청소년보호 복지시설	1	16	20	17	9	6	3	8	11	5	14	11	4	4	5	134
청소년단체	11	4	13	10	6	4	2	14	44	7	4	4	0	3	1	127
일반	9	2	7	5	9	9	14	146	510	464	265	160	301	105	65	2,071
컨소시엄	-	-	-	-	-	-	-	-	-	-	-	-	-	9	4	13
합계	79	284	443	255	265	242	212	778	1,558	1,301	824	764	1,299	1,056	1,110	10,470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0).

〈표 4-1-8〉 인증수련활동 보유기관별 운영 현황

(단위 : 개소, 건)

구분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교육청	청소년수련시설						복지 시설	청소년 단체	일반	컨소 시엄	합계
			수련관	수련원	문화 의집	야영장	특화 시설	유스 호스텔					
보유기관	32	5	160	116	214	6	7	18	10	6	127	9	710
유지건수	72	9	618	1,520	511	25	12	88	18	7	410	9	3,299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0).

## 4.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도

### 가. 추진배경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도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참가자가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제도이다.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13년 11월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제도'로 도입되어 2014년 7월부터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도'로 신고 대상과 활동을 변경하여 운영 중이다.

신고제도를 통해 수련활동의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활동 운영 전반에 관한 안전 요소를 점검하게 되고 범죄 경력자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지도자의 참여를 막을 수 있으며, 안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보다 안전한 수련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신고 수리된 활동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sup>1)</sup> 등에 공개함으로써 청소년, 학부모 등 정보가 필요한 모든 사람이 쉽게 수련활동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여 활동 선택과 참여 결정에 도움을 주었다.

### 나. 신고제 관련 주체 및 요건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신고 서류를 갖추어 참가자 모집 14일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다만, 「청소년활동 진흥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서 지도·감독 등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나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와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활동이 아닌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1)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홈페이지: [www.youth.go.kr](http://www.youth.go.kr)

〈표 4-1-9〉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관련 주제 및 요건

구분	적용대상 요건	
신고수리 주체	• 수련활동 주최자 소재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소년정책 담당부서)	
신고 주체	•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 ※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지도·감독을 받는 시설·기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수련시설협회 등) ※ 법률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경우(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이나 영리 단체)	
신고 기한	• 참가자 모집 14일 전	
신고대상 참가자 연령	• 19세 미만의 청소년(9~18세) ※ 19세 미만 청소년과 다른 연령대를 포함하여 청소년수련활동으로 기획하고, 모집 예정인 경우에도 신고 대상	
신고대상 활동범위	숙박형	• 이동숙박형, 고정숙박형 등 숙박하는 수련활동
	비숙박형 중 일부	•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인 수련활동 •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해당 활동)

자료 : 여성가족부(2020).

## 다. 신고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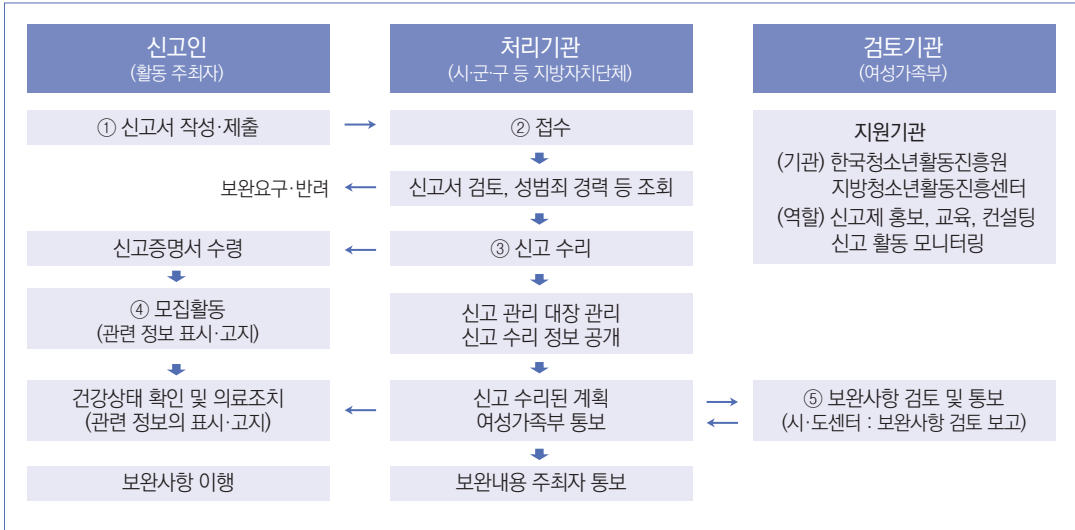
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참가자 모집 14일 전에 운영계획서, 주최자·운영자·보조자 명단, 세부내역서, 보험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추어 주최자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소관과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는 청소년활동 업무지원서비스<sup>2)</sup>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해당 처리기관에서 구비서류의 요건을 점검하고, 주최자 등의 결격사유를 조회한 후 신고 수리 시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미비할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하며, 보완되지 않은 경우 반려한다. 신고 수리 후 처리기관 관할 지자체에서는 신고 수리된 계획을 여성가족부에 통보하고, 계획을 검토한 여성가족부는 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 처리기관에 보완사항을 통보하며, 처리기관은 주최기관에 지적된 보완사항을 통보한다.

활동 주최자는 신고 수리 사항 중 안전점검, 보험가입, 수련활동 인증에 관한 사항을 모집활동 및 계약 시 인쇄물,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표시·고지하여야 하고, 참가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활동을 실시하기 전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활동 시작 3일 전까지 그 사유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청소년활동 업무지원서비스 홈페이지: www.youth.go.kr

[그림 4-1-2]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수리 절차



자료 : 여성가족부(2020).

## 라. 신고 현황

2020년 12월까지 신고 수리된 청소년수련활동은 경기도가 4,998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강원도가 2,382건으로 집계되었다. 시설 유형별로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순으로 수련활동 신고 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및 방치참여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의 운영중지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활동이 전반적으로 감소됨에 따라 신고현황이 줄어든 현상이 나타났다.

〈표 4-1-10〉 지역별 신고 수리 현황

(단위: 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서울	42	357	308	409	405	396	363	33	2,313
부산	5	123	132	236	300	308	294	48	1,446
대구	4	54	37	53	63	79	80	9	379
인천	8	128	175	144	136	156	160	66	973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광주	3	29	36	45	57	86	82	47	385
대전	4	84	84	98	112	114	97	1	594
울산	4	29	28	24	32	22	22	2	163
세종	-	2	5	2	4	5	3	-	21
경기	40	540	782	814	979	927	844	72	4,998
강원	15	130	283	378	479	490	491	116	2,382
충북	1	57	243	340	339	324	423	102	1,829
충남	25	184	306	289	329	344	346	71	1,894
전북	10	233	343	384	326	311	230	114	1,951
전남	6	86	162	212	284	358	361	110	1,579
경북	3	185	233	220	192	175	223	87	1,318
경남	7	233	444	344	300	299	183	15	1,825
제주	3	25	87	61	67	76	81	19	419
전체	180	2,479	3,688	4,053	4,404	4,470	4,283	912	24,469

자료 : 여성가족부(2020).

〈표 4-1-11〉 시설 유형별 신고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청소년수련관	61	654	742	853	859	863	788	129	4,949
청소년수련원	33	970	2,080	2,237	2,539	2,598	2,482	675	13,614
청소년문화의집	21	237	249	257	298	333	357	52	1,804
청소년특화시설	-	25	30	29	38	40	40	7	209
청소년야영장	1	11	22	36	38	13	24	-	145
유스호텔	14	173	216	270	288	239	238	25	1,463
기타 (영리법인, 단체 등)	50	409	349	371	344	384	354	24	2,285
전체	180	2,479	3,688	4,053	4,404	4,470	4,283	912	24,469

자료 : 여성가족부(2020).

☎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02-2100-6262

## 5.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 가. 제도 안내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The Duke of Edinburgh’s International Award, Korea)’(이하 국제포상제)는 1956년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부군인 에딘버러 공작에 의해 시작되어 현재 130여 개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다. 국제포상제를 총괄하는 ‘국제포상재단(International Award Foundation)’에는 ‘국가사무국(National Award Operator)’과 ‘독립운영기관 (Independent Award Center)’이 속해 있다.

국제포상제는 비경쟁성, 개별성, 균형성, 성취지향성, 자발성, 지속성 등의 10가지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며, 참여 청소년이 자기 주도성과 도전정신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시킬 수 있는 습관을 가질 수 있게 한다.

국제포상제에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의 연령은 만 14세부터 만 24세까지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포상활동은 봉사, 자기개발, 신체 단련, 탐험 4가지 활동이며 각 활동별 주어진 최소 활동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금장 활동의 경우 4가지 활동과 더불어 추가로 합숙활동을 해야 한다. 포상단계는 동장(6개월), 은장(6~12개월), 금장(12~18개월)으로 활동영역 모두 포상활동별 최소 활동 기간을 충족하고 성취목표를 달성해야 포상을 받을 수 있다.

〈표 4-1-12〉 포상 단계별 최소 활동 기간

구분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탐험	합숙
금장 16세 이상	12개월 48시간 이상	12개월 48시간 이상	12개월 48시간 이상	3박 4일	4박 5일 ※ 금장 단계에 한함
	은장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로 6개월 수행				
은장 15세 이상	6개월 24시간 이상	6개월 24시간 이상	6개월 24시간 이상	2박 3일	-
	동장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로 6개월 수행				
동장 14세 이상	3개월 12시간 이상	3개월 12시간 이상	3개월 12시간 이상	1박 2일	-
	참가자는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로 3개월 수행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0).



## 나. 포상제 추진 현황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이하 “국제포상제”)는 2008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국제포상협회(The Duke of Edinburgh’s International Award Association)에서 국제포상제 독립운영기관 라이선스를 취득(2008.5.)하며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포상제 운영을 확대한 결과 2009년 호주에서 개최된 총회를 통해 임시회원(Provisional Membership) 자격을 획득하였다(2009.10).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2012년 정회원 자격 승급을 앞두고 국제포상재단(The Duke of Edinburgh’s International Award Foundation)의 신규 라이선스 체계 도입을 위한 시범운영사업에 참여하여 2013년 개정된 정관에 의한 세계 최초 정식라이선스(Full Licence/Full Membership)체결 국가가 되어 대한민국의 국가사무국으로서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2013.6). 또한 2014년 국제금장총회 및 국제위원회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동 제도의 국내 참가자 확대 계기를 마련하고 한국사무국의 위상을 고취시켰다.

국제포상제는 포상 자체보다는 포상활동 과정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포상 활동에서 도전에 대한 실패는 없으며 언제든지 다시 시작하여 도전가능하고 포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참여 청소년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도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표 4-1-13〉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운영 현황

(단위: 명, 개소)

구분	참가청소년	포상청소년	포상담당관	운영기관
2008년	352	-	162	15
2009년	2,139	398	1,198	209
2010년	4,169	457	1,830	518
2011년	3,692	663	1,569	738
2012년	4,398	587	1,787	952
2013년	3,823	582	1,048	1,091
2014년	1,498	497	1,197	1,035
2015년	2,226	409	567	1,146
2016년	1,996	588	528	1,241

구분	참가청소년	포상청소년	포상담당관	운영기관
2017년	2,021	803	778	1,338
2018년	1,896	845	336	1,059
2019년	1,343	434	290	939
2020년	615	265	403	908
누적계	30,168	6,528	11,693	-

주 : 1) 2008년 시범사업 시행으로 7월부터 청소년 참여가 이루어졌으며, 포상을 받기 위한 가장 낮은 단계인 '동장'은 평균 7~8개월 소요되어 2008년에는 포상 청소년이 없음.

2) 운영기관은 매년 취소·철회한 기관 수가 반영된 누적계 수치임.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0).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정책사업2부 02-330-2874

## 6.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 가. 제도 현황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Korea Achievement Award)’는 2008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The Duke of Edinburgh’s International Award, Korea)를 모태로 2010년부터 연구되었으며, 2011년부터 3년 간 현장적용을 위한 단계별 시범운영을 진행하여 2014년부터 정식운영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는 17개 전국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10개 중앙운영사무국(주요 청소년단체 및 종교단체로 구성)에서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는 성취 지향적 활동, 단계적 활동, 스스로 하는 활동, 다양한 활동, 재능의 발견 및 개발의 기회, 경쟁이 없는 활동,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한 활동, 즐길 수 있는 활동이라는 8가지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참여 청소년들이 스스로 정한 목표를 성취해가며 숨겨진 끼를 발견하고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는 만 9~13세 청소년(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2학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포상활동은 봉사, 자기개발, 신체 단련, 탐험 4가지 활동이며 주어진 최소 활동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포상단계는 동장(4개월), 은장(4~8개월), 금장(6~12개월)으로 4가지 활동영역 모두 포상활동별 최소 활동 기간을 충족하고 성취목표를 달성해야 포상을 받을 수 있다.

〈표 4-1-14〉 포상 단계별 최소 활동 기간

구분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탐험
금장 12세 이상	6개월 24시간(회) 이상	6개월 24시간(회) 이상	6개월 24시간(회) 이상	2박 3일
	은장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로 6개월(24회) 수행			
은장 9세 이상	4개월 16시간(회) 이상	4개월 16시간(회) 이상	4개월 16시간(회) 이상	1박 2일
	동장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로 4개월(16회) 수행			
동장 9세 이상	2개월 8시간(회) 이상	2개월 8시간(회) 이상	2개월 8시간(회) 이상	1일(5시간)
	참가자는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로 2개월(8회) 수행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0).

## 나. 포상제 추진 현황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한국의 저연령 청소년(만 9~13세)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성취포상제 개발 연구를 진행하여 2011년 11개 기관에서 시범운영하였고,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2020년 현재 광역사무국 17개, 중앙운영사무국 9개, 운영기관 565개에서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한국사무국은 2014년 정식 운영 이후 가족형 포상제, 챌린지형 포상제, 자유학기제·학년제 연계 운영 등 신규 포상제 모형을 개발하여 저연령 청소년의 포상제 활동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다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포상지도자의 불필요한 업무 소모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한편, 청소년이 포상제 4가지 활동 영역에 모두 참여하고 각 단계에 맞는 활동 횟수를 충족하면 일련의 심사를 통해 포상활동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포상 심사는 청소년의 목표와 활동에 대해 높고 낮음, 옳고 그름으로 평가하지 않으며 청소년이 스스로 세운 목표에 도전하여 목표를 성취하였는지, 계획을 세운 대로 활동하였는지 등 활동 과정으로 청소년의 포상 여부를 판단한다.

〈표 4-1-15〉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운영 현황

(단위: 명, 개소)

구분	참가청소년	포상청소년	포상담당관	운영기관
2011년	190	84	31	11
2012년	581	321	108	50
2013년	1,062	560	250	81
2014년	1,291	551	450	155
2015년	1,428	901	405	240
2016년	2,510	1,595	646	346
2017년	3,263	2,019	868	445
2018년	3,147	1,368	443	484
2019년	3,562	1,667	213	522
2020년	1,719	1,252	542	565
연도별 누적계	18,753	10,961	3,956	-

주 : 1) 2014년부터 정식 운영됨에 따라 포상담당관 누적계는 2014년 이후 위촉된 포상담당관만 반영한 수치임.

2) 운영기관은 매년 취소·철회한 기관 수가 반영된 누적계 수치임.

3) 참가청소년 및 포상청소년은 자유학기·년제 연계 운영, 신규 영역 모형 참가자 등이 포함된 수치임.

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0).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사업부 02-330-2873

## 7. 지역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

### 가. 운영 현황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국가 정책에 따라 1996년 청소년자원봉사센터로 출범하였으며, 당시 학교교육정책에 자원봉사활동이 도입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자원봉사의 지원과 활성화를 전담하는 조직으로서 단일하고 명확한 과업을 수행하였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제정을 통해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에 관한 법적근거(「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가 마련되었으며, 2006년도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개편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과 각 지방에서 ‘청소년활동의 진흥’이라는 포괄적인 과업이 강조되었고, 국가(중앙)-지방(시·도)-지역(시·군·구)으로 이어지는 청소년정책의 전달체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정책기구로서의 조직과 기능도 확대되었다. 또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지역의 청소년활동정책 전달 중심기관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며 역할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표 4-1-16〉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현황

센터명칭	운영기관
서울특별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한국청소년연맹
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부산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
대구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가천미추홀청소년봉사단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광주흥사단
대전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대전광역시청소년교회연합회
울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울산흥사단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한국청소년진흥재단 세종지부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재]대건청소년회
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한국천주교살레시오수녀회
충청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전라북도청소년단체협의회
전라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경상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경상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재]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재]성지문화재단

자료 : 여성가족부(2020).

## 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역할과 주요 기능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청소년 정책 전달 체계상의 정책기관으로,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주요 기능은 청소년활동 현장역량 증진 지원, 청소년활동 정책개발 및 실행 지원, 청소년정보자원 관리 및 서비스, 청소년활동 정책수행 인프라 관리 등이다.

〈표 4-1-17〉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주요 기능

업무영역	주요 업무	주요 업무 개요
청소년활동 현장 역량증진 지원	청소년지도자 교육 훈련	교육훈련 등 현장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업무
	청소년활동 기관운영 지원	현장의 청소년활동 운영에 필요한 정보·프로그램·예산 등을 지원하는 업무
청소년활동 정책개발 및 실행 지원	정책개발 및 제도화 지원	국가 및 지방의 청소년 관련 정책의 개발 및 제도화를 지원하는 업무
	정책사업 실행 지원	국가 및 지자체의 청소년 관련 정책사업의 실행을 지원하는 업무
청소년 정보자원 관리 및 서비스	청소년 정보 수집 관리 및 제공	지역 내 청소년과 관련된 정보·자료를 조사·분석·수집·관리하여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청소년활동 인지도 제고	청소년활동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는 업무
청소년활동 정책수행 인프라 관리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전문화	센터의 조직과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업무
	청소년활동 네트워크 구축	중앙-시·도-시·군·구의 정책네트워크와 현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업무

자료 : 여성가족부(2020).

## 제2장

## 청소년자원봉사활동

## 1. 청소년자원봉사활동 도입 배경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물질만능주의와 치열한 입시 위주 교육에 매몰된 청소년들의 인성을 함양하고,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향상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직업에 대한 탐색 및 준비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 및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95년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5·31 교육개혁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청소년들로 하여금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체험활동 및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

## 2.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추진 현황

가.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http://dovol.youth.go.kr>) 개발·운영

청소년봉사활동 관리시스템(CS버전)은 2005년 청소년자원봉사활동 관리를 위해 구축되었으며, 이로 인해 시·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지역별 봉사활동 기관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과 실적 등을 보다 쉽게 관리·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청소년들 또한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봉사활동 신청 및 경력 관리, 봉사활동 확인서 출력 등의 기능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08년에는 사용자 편의성 확대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청소년봉사활동 관리시스템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지역별로 운영·관리되었던 시스템(CS버전)에서 통합 시스템(WEB버전)으로 개편하였다. 또한, 기존 청소년봉사활동 관리시스템에서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로 발전시켜 청소년 봉사활동관리의 안정성, 편리성, 정보 제공 확대 등을 도모하였다. 2012년에는 여성가족부 청소년통합정보시스템과 통합 작업을 추진하여 기존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dovol.youth.go.kr](http://dovol.youth.go.kr))를 개편하였으며,

정부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해 이용자의 편리성을 증대하자는 정부3.0의 일환으로 2014년 7월부터 여성가족부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Dovol)와 안전행정부 자원봉사 통합관리시스템(1365나눔포털)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Dovol-1365나눔포털 간의 자원봉사 실적 연계는 물론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를 통하여 학생생활기록부에 봉사활동 실적을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7년에는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youth.go.kr)와 통합하여, 청소년자원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청소년국제교류, 자유학기제 연계 체험활동 등 타 청소년 활동 정보와의 연계도 강화하였다.

## 나.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현황

청소년자원봉사는 개인, 가족, 동아리·단체 등의 유형으로 활동에 참여하며, 일손 돕기·환경미화·취약계층 활동 보조 등의 노력봉사, 학습 지도·멘토링·공부방 운영 지원 등의 교육봉사, 지역행사 운영·보조, 캠페인 활동 등의 문화봉사, 청소년들의 다양한 재능을 활용한 재능봉사 활동 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인증터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증터전'이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포털(youth.go.kr)에 봉사활동 실적을 등록·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인증한 기관을 의미한다. 현재 활동 인증터전으로는 청소년기관 및 단체,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문화·예술시설 및 단체, 체육·관광시설 및 단체, 의료보호시설 및 단체, 기업체(사회공헌재단 등) 등의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청소년자원봉사의 안전한 봉사활동 환경 보장과 자발적 봉사참여 촉진을 위해 자원봉사 상해보험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자원봉사 포털(1365나눔포털, VMS) 간 종합보험 통합 제공 추진을 통해 자원봉사 상해보험 수혜 대상자를 크게 확대<sup>3)</sup>하였다.

한편, 2017년부터 청소년 자기주도형 봉사활동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자기주도형 봉사활동은 청소년이 지역사회 문제나 변화가 필요한 주제를 스스로 조사·분석하고,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의미한다.

3) Dovol 회원 중 봉사활동에 1회 이상 참가한 청소년(약 9만 명) →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전체 회원(약 27만 명).



기존 봉사활동이 봉사시설 및 기관의 담당자(성인)가 계획한 봉사활동에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반면, 자기주도형 봉사활동은 참여 청소년들이 스스로 활동의 목적과 수단, 실행방법을 기획하고 실행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2017년에는 자기주도형 봉사활동 시범사업으로 4개 시·도(대전, 경기, 광주, 전남)에서 27개 팀이 참여하였으며, 자기주도형 봉사활동 매뉴얼(청소년용, 지도자용)이 개발·보급되었다. 2018년에는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운영하여 총 930명, 2019년에는 총 1,393명, 2020년에는 총 2,064명의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문제 등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보고 봉사활동을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자기주도형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표 4-2-1〉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 등록(가입) 터전 수(누적)

(단위: 개소)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가입 터전 수	8,620	9,014	9,541	9,249	8,336	8,464	8,509	8,544	8,661

자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0).

〈표 4-2-2〉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 연간 프로그램 제공 수

(단위: 개)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프로그램 수	171,032	185,429	281,847	303,408	313,387	447,905	506,822	419,119	362,144

자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0).

〈표 4-2-3〉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실인원 및 지속 참여인원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실인원(명)	275,981	277,908	241,287	231,887	250,024	275,163	260,770	271,727	279,743
10시간(명)	86,529	91,223	73,936	74,293	84,110	99,289	97,907	99,425	105,347
비율(%)	31.35	32.82	30.64	32.04	33.64	36.08	37.55	36.59	37.65

자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0).

## 제3장

## 청소년 교류활동

## 1. 청소년 국제교류

## 가. 국가 간 청소년 교류

국가 간 청소년 교류는 상대국 청소년 담당 부처와의 약정 등에 의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청소년 기관 및 시설 방문, 양국 청소년 간의 토론, 가정방문, 역사·문화 유적지 답사, 산업 시설 견학 등을 통해 청소년관련 정보와 경험 등을 교환하고 각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19년에는 총 319명(10개국 파견 149명, 초청 170명)이 국가 간 청소년 교류활동에 참여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해외 파견 및 초청이 불가능하여 일본, 브루나이 현지 청소년과 비대면 교류를 실시하여 온라인을 통한 각국 문화소개 및 공동 과제 수행, 토론회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표 4-3-1〉 청소년 교류 약정체결국 현황(36개국)

구분	청소년 교류 약정체결국
동북아시아(3개국)	중국, 일본, 몽골
남아시아·태평양(8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유럽(12개국)	러시아, 프랑스, 체코, 폴란드, 핀란드, 헝가리, 그리스, 터키, 스페인, 불가리아, 아제르바이잔, 슬로바키아
중남미(4개국)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중동·아프리카(9개국)	사우디, 이스라엘, 이집트, 수단, 모로코, 튀니지, 카메룬,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자료 : 여성가족부(2020).

〈표 4-3-2〉 국가 간 청소년 교류 약정체결 및 교류 현황

교류약정국 (주관기관)	시행 근거 (약정체결 연도)	최초 시행년도	교류인원 및 기간	2019년 교류인원		
				초청	파견	총인원
말레이시아 (청소년체육부)	한말문화협정('65) 한말 청소년 교류 약정('92. 4.) 지도자 15명 추가-공공행정처	'79	30명, 10일간 (15명씩 2회, 각 10일간)	768명	765명	1,533명
사우디 (체육청)	양국정부합동위원회 합의('81)	'81	10명, 10일간	344명	333명	677명
일본 (내각부)	정상회담 공동선언('84)	'87	30명, 15일간	952명	1,044명	1,996명
중국 (중화전국청년연합회)	양국수교시 교류합의('92) 청소년교류양해각서('98)	'93	40명, 10일간	714명	751명	1,465명
헝가리 (인적자원부)	청소년협력약정서('92)	'93	10명, 10일간	25명	57명	82명
러시아 (교육부)	청소년협력계획서('95)	'94	20명, 10일간	235명	225명	460명
필리핀 (교육문화체육부)	청소년교류 협력계획서('95)	'96	10명, 10일간	140명	171명	311명
모로코 (청소년체육부)	청소년교류약정서('94)	'96	16명, 10일간	233명	263명	496명
핀란드 (교육부)	청소년협력협약각서('96) ( '05 갱신)	'96	3명, 6일간	58명	87명	145명
칠레 (청소년처)	청소년협력약정서('96)	'98	20명, 10일간	43명	72명	115명
베트남 (청소년위원회)	청소년교류약정서('99) 재약정 체결('04), ('17)	'99	파견 20명, 10일간 초청 30명, 10일간	592명	416명	1,008명
몽골 (노동사회보장부)	사전합의 의거 교류시행('00) 청소년분야 협력약정서('01)	'00	10명, 10일간	214명	204명	418명
멕시코 (청소년원)	청소년협력약정서('00) 재약정 체결('08)	'01	12명, 10일간	182명	197명	379명
이스라엘 (청소년교류협회)	청소년협력약정서('02)	'02	10명, 10일간	148명	157명	305명
프랑스 (청소년체육부)	청소년협력약정서('02)	-	10명, 10일간	2명	0명	2명

교류약정국 (주관기관)	시행 근거 (약정체결 연도)	최초 시행년도	교류인원 및 기간	2019년 교류인원		
				초청	파견	총인원
체코 (교육청소년체육부)	청소년협력약정서('03)	'03	10명, 10일간	40명	40명	80명
수단 (청소년체육부)	청소년·체육협력약정서('04)	'05	10명, 10일간	82명	106명	188명
폴란드 (교육체육부)	청소년·체육교류양해각서('04)	'05	10명, 10일간	90명	90명	180명
인도 (청소년체육부)	청소년교류약정서('05)	'06	35명, 10일간	285명	238명	523명
파키스탄 (경제부)	문화교류계획서('05)	'06	10명, 10일간	39명	9명	48명
이집트 (청소년부)	청소년교류 양해각서('05)	'06	10명, 10일간	87명	100명	187명
그리스 (교육종교부)	청소년분야 양해각서('06)	'06	3명, 6일간	10명	8명	18명
터키 (청소년체육부)	2005~2008년도 문화 및 과학 교류계획서('05)	'07	20명, 10일간	168명	142명	310명
스페인 (청소년청)	청소년분야 협력약정('07)	'07	3명, 10~15일간	3명	3명	6명
아제르바이잔 (청소년체육부)	청소년분야 협력양해각서('07)	'07	10명, 10일간	116명	117명	233명
불가리아 (청소년체육청)	청소년분야 협력약정('07)	'07	6명, 7일간	57명	76명	133명
튀니지 (청소년체육부)	정부간문화협정근거('69) 청소년분야 협력약정('09)	'10	10명, 10일간	76명	55명	131명
싱가폴 (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분야 양해각서('09)	'09	10명, 7일간(격년제)	30명	30명	60명
인도네시아 (청소년체육부)	문화협정근거('00) 청소년분야 협력약정('09)	'10	35명, 10일간	198명	176명	374명
브루나이 (문화청소년체육부)	청소년분야 협력약정('10)	'11	10명, 10일간	89명	90명	179명
카메룬 (외교부)	청소년분야 협력약정('11)	-	10명, 10일간	0명	0명	0명

교류약정국 (주관기관)	시행 근거 (약정체결 연도)	최초 시행년도	교류인원 및 기간	2019년 교류인원		
				초청	파견	총인원
콜롬비아 (교육부)	청소년분야 협력 양해각서('13)	'13	10명, 10일간	0명	20명	20명
UAE (청소년체육청)	청소년분야 협력약정('14)	'15	10명, 기간명시없음	39명	41명	80명
카타르 (문화체육부)	청소년분야 협력약정('14)	'15	12명 이내, 7일 이내	22명	47명	69명
슬로바키아 (교육연구과학체육부)	청소년분야 협력양해각서('17)	'18	10명, 10일간	6명	7명	13명
아르헨티나 (사회개발부)	청소년분야 협력양해각서('17)	-	10명, 10일간	0명	0명	0명
36개국				6,087명	6,137명	12,224명

자료 : 여성가족부(2020).

## 나. 한·중 청소년 교류

2003년 7월 한·중 양국 정상 간의 청소년 교류 합의에 따라 2004년부터 우리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한·중 청소년교류가 시작되었다. 2012년부터 수교 20주년을 맞이하여 한·중 양국 청소년 500명씩 교류하였다. 2016년 하반기 중국 측 사정으로 한·중 청소년 교류는 중단되었으나, 2018년 8월 한·중 청소년교류 재개를 위한 협력 약정이 체결되었으며 2018년 하반기부터 초청·파견 사업을 재개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출입국 제한 등으로 추진되지 못했다.

〈표 4-3-3〉 한·중 청소년 교류 현황

구분	초청				파견			총계
	1차	2차	3차	계	1차	2차	계	
2004년	198명 (7. 21.~7. 30.)	189명 (11. 1.~11. 10.)	100명 (11. 17.~11. 26.)	487명	-	-	-	487명
2005년	192명 (7. 6.~7. 15.)	100명 (9. 7.~9. 16.)	191명 (11. 15.~11. 24.)	483명	-	-	-	483명

구분	초청				파견			총계
	1차	2차	3차	계	1차	2차	계	
2006년	96명 (5. 24.~6. 2.)	193명 (7. 5.~7. 14.)	200명 (11. 1.~11. 10.)	489명	98명 (4. 12.~4. 21.)		98명	587명
2007년	200명 (4. 7.~4. 16.)	100명 (6. 13.~6. 22.)	191명 (11. 1.~11. 10.)	491명	97명 (7. 3.~7. 12.)		97명	588명
2008년	154명 (8. 18.~8. 27.)	100명 (10. 29.~11. 7.)	150명 (11. 5.~11. 14.)	404명	95명 (7. 22.~7. 31.)		95명	499명
2009년	196명 (7. 8.~7. 17.)	99명 (9. 16.~9. 25.)	185명 (11. 11.~11. 20.)	480명	96명 (5. 13.~5. 22.)	99명 (8. 3.~8. 12.)	195명	675명
2010년	192명 (6. 2.~6. 11.)	100명 (10. 13.~10. 22.)	187명 (11. 11.~11. 20.)	479명	192명 (5. 11.~5. 20.)	190명 (9. 7.~9. 16.)	382명	861명
2011년	191명 (6. 15.~6. 24.)	98명 (9. 21.~9. 30.)	193명 (10. 26.~11. 4.)	482명	197명 (5. 17.~5. 26.)		197명	679명
2012년	94명 (5. 9.~5. 16.)	200명 (6. 13.~6. 20.)	190명 (10. 21.~10. 28.)	484명	199명 (4. 13.~4. 20.)	293명 (8. 8.~8. 15.)	492명	976명
2013년	195명 (5. 21.~5. 28.)	100명 (7. 17.~7. 24.)	189명 (10. 23.~10. 30.)	484명	198명 (6. 13.~6. 20.)	287명 (9. 4.~9. 11.)	485명	969명
2014년	192명 (5. 8.~5. 15.)	99명 (9. 22.~9. 29.)	188명 (10. 22.~10. 29.)	479명	197명 (6. 4.~6. 11.)	297명 (9. 11.~9. 18.)	494명	973명
2015년	191명 (5. 14.~5. 21.)	98명 (9. 8.~9. 15.)	185명 (10. 22.~10. 29.)	474명	197명 (6. 4.~6. 11.)	294명 (9. 10.~9. 17.)	491명	965명
2016년	184명 (6. 23.~6. 30.)	-	-	184명	199명 (5. 25.~6. 1.)	-	199명	383명
2018년	97명 (10. 23.~10. 27.)	-	-	97명	100명 (11. 20.~11. 24.)	-	100명	197명
2019년	98명 (7. 1.~7. 6.)	-	-	98명	99명 (9. 1.~9. 6.)	-	99명	197명

자료 : 여성가족부(2020).

## 다. 국제청소년리더 교류 지원

2017년에는 한·중 청소년 교류의 실질적이고 파급적인 효과를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발전 모델 개발 및 교류 기반 구축을 위하여 국내체류 중국유학생과 한국청소년 간 교류시범사업을 신규 추진하였다. 대학과 민관협력을 통하여 국내 총 10개 대학 내 1,000여 명의 한·중 청소년 상호교류 활동을 지원하였다. 각 대학에서는 특성화된 주제를 선택하여 오리엔테이션, 특강, 멘토링, 교류 활동, 지역, 문화, 역사, 스포츠, 생태 등 탐방, 팀별 결과 발표 등 다양한 청소년교류활동을 실시하고, 여성가족부에서는 대학별로 전문가 컨설팅, 현장 방문, 사업성과 정리, 결과 보고 등의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다. 2018년에는 지원 대상을 다국가 유학생으로 확대하여 34개국 유학생, 2019년에는 41개국 유학생이 한국 청소년과 교류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소규모 팀별 활동을 통해 교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실질적, 심층적 교류 효과를 추구하고, 참여 대학 간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여 교류 발전 모델을 개발 및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표 4-3-4〉 국제청소년리더 교류 지원 사업 프로그램 현황(2020년)

구분	대학명	주제	주요 프로그램
1	강남대학교	깨끗한 환경 속 함께 사는 우리, '코로나 시대 작은 변화 챌린지'	코로나로 인한 환경, 지역사회의 문제탐구 및 개선방안 모색, 팀별 프로젝트 활동, SNS 챌린지 운영
2	강원대학교	코로나 시대의 변화대응 How to Cope With COVID-19 Life Changes	4가지 주제(경제, 민주주의, 비즈니스 환경, 환경) 관련 특강, TED 강연 콘테스트 운영
3	건양대학교	같이 나누고, 가치를 나누는 'Nonsan Story'	지역(논산) 청소년 대상 지식 나눔 활동
4	계명문화대학교	지역전통에서 답을 묻다! 글로벌 지역문화 교류프로그램	지역(대구, 경북)문화 교류 활동 (온라인 탐방, 농촌·전통문화 체험, 전통음식 만들기 등)
5	군산대학교	어서와 전북은 처음이지	팀별 지역(전북)문화 탐방을 통한 지역과 세계화의 발전방향 모색
6	백석대학교	한·아세안 국가 문화 이해 및 체득을 통한 글로벌 리더십 역량 강화	한·아세안 국가 문화 이해 및 탐구 팀별 프로젝트 후 결과물 공유(2박3일 캠프 운영)
7	상명대학교	공공외교를 통한 한국·베트남 관계의 증진과 청소년의 역할	공공외교를 통한 한국과 베트남 관계증진 방안 탐구 팀별 프로젝트, UCC제작 등
8	전북대학교	아세안 청소년 간의 상호 국가에 대한 이해도 향상	아세안 청소년 간의 상호 국가에 대한 이해도 증진 팀별 미션활동(캠퍼스 투어, 친구 삶 체험, 지역탐방)

구분	대학명	주제	주요 프로그램
9	한국영상대학교	같이의 가치-세종 & KUMA	팀별 지역(세종) 탐방 후 영상 제작
10	한국외국어대학교	어서와 Ontact K-Culture는 처음이지?	언택트 시대의 한국과 자국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 온라인 강의, 문화체험활동, 온라인 발표회
11	한서대학교	안전여행 - 할로 예산, 신차오 서산	팀별 지역(충남) 랜선 여행 프로그램 개발 및 전시
12	호산대학교	랜선 교류 챌린지(Challenge)	주제별 브이로그 촬영 (일상 공유, 맛집 & 홈쿡, 학과 생활 공유 등)
13	호서대학교	Hello ~ Korea! 벤처로 꿈꾸다	벤처창업을 주제로 한 진로개발 및 상호교류활동 기관 탐방, 조별 작품전시 및 홍보, 모의 창업경진대회

자료 : 여성가족부(2020).

## 라.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

'2020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은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후속조치로 청소년 인적교류 확대를 위해 청소년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 기간 동안 각국 청소년들은 온택트 방식으로 한·아세안의 동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청소년의 역할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각국의 경험과 사례를 나누는 등 한·아세안의 협력 방안에 대한 견해를 공유하였다. 2020년에 처음 개최된 행사에 총 110명(11개국 각10명)이 국가를 대표하여 참여하였다.

〈표 4-3-5〉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

행사명	일시	행사 취지	참석인원	주관기관
2020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	11. 25.~11. 27. (온라인)	아세안 국가와의 청소년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한·아세안 협력 공감대 형성 및 글로벌 역량 강화	한·아세안 청소년 110명	한국청소년단체 협의회

자료 : 여성가족부(2020).



## 2.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

2005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제회의 및 행사 파견과 해외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구성 및 실시되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여 세계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청소년을 세계의 주역으로, 국제회의·행사참가단’과 ‘꿈과 사람 속으로, 대한민국 청소년 해외 자원봉사단’ 등 2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4-3-6〉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 현황

연번	프로그램명	내용
1	국제회의·행사 참가단 (2008~)	주제: 청소년을 세계의 주역으로
		다양한 국제회의·행사 등에 청소년들을 파견 * UN총회 제3위원회 파견 등
2	해외자원봉사단 (2005~)	주제: 꿈과 사람속으로
		청소년들의 해외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자아실현과 글로벌 역량 강화

자료 : 여성가족부(2020).

### 가. “청소년을 세계의 주역으로”, 국제회의·행사 참가단

청소년들이 국제회의 및 행사 등 다양한 해외 활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국제적인 능력을 배양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파견대상자를 선발한다. 2019년에는 3개 회의에 10명의 대표단을 파견하였다. 2020년에는 UN총회 제3위원회에서 실시한 비공식 온라인 토의에 청소년 대표가 참가하였으며,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그 외 대부분의 국제회의는 취소되었다.

## 나. “꿈과 사람 속으로”, 대한민국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청소년들의 자아실현과 글로벌 역량강화 및 세계 시민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의 아동, 청소년, 지역주민 등을 위하여 방학 기간을 활용해 대한민국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을 파견하고 있다. 2019년에는 아시아 5개국에 7개 팀, 139명의 봉사단을 10일 내외로 파견하였다.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국내에서 해외 청소년을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 아시아 4개국(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청소년을 위해 교육봉사활동 콘텐츠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현지 청소년과 비대면으로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02-2100-6254, 6256

## 3. 민간단체 주관 청소년국제행사 지원

민간에서 개최하는 국제청소년행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20년에는 ‘스카우트 세계디지털야영대회’ 프로그램 개최를 지원하였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스카우트연맹은 기존 야영대회를 온라인으로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표 4-3-7〉 2020년 청소년 국제행사 개최 지원

행사명	일시	행사 취지	참석인원	주관기관
스카우트 세계디지털야영대회	10. 15.~11. 15. (온라인)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활동 지원 및 전세계 청소년과 소통하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 강화	국내·외 청소년 약 5,000명	한국스카우트연맹

자료 : 여성가족부(2020).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02-2100-6254, 6257

#### 4.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25th World Scout Jamboree)」 개최 지원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5만 명 이상이 참여하여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우애를 다지는 세계 청소년 야영 행사다. 1920년 영국 런던 올림픽아 스타디움에서 34개국 8,000명의 스카우트들이 참가한 “제1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시초가 되어 이후 4년마다 개최하는 정규행사로 이어져 오고 있다.

잼버리(Jamboree)는 북미 인디언의 ‘즐거운 놀이’, ‘유쾌한 잔치’라는 뜻을 지닌 말로서, 스카우트의 창시자인 ‘베이든 포우엘경’이 제1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Jamboree’라고 명명한 것이 유래가 되었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올림픽과 같이 4년마다 개최국을 결정하며, 대회를 유치한 국가는 3년마다 개최되는 세계스카우트총회에서 스카우트 회원국(1개국당 6표 투표)의 투표로 선정된다. 2019년까지 24회의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개최되었으며, 2023년에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대한민국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표 4-3-8〉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역대 개최 현황

구분	로고	개최 기간	개최 장소	참가국	참가	주제	비고
1회		'20. 07. 30.~08. 08.	영국 런던	34	8,000명	Develop world peace	실내에서 실시
2회		'24. 08. 10.~08. 17.	덴마크 코펜하겐	32	4,549명	World citizenship	첫 야외잼버리
3회		'29. 07. 31.~08.13.	영국 버킨헤드	69	32,000명	Coming of age	
4회		'33. 08. 02.~08. 15.	헝가리 고돌로	33	25,792명	Face new adventures	
5회		'37. 07. 30.~08. 14.	네덜란드 보겔란젠	54	28,750명	Lead happy lives	

구분	로고	개최 기간	개최 장소	참가국	참가	주제	비고
6회		'47. 08. 09.~08. 18.	프랑스 무와송	71	24,152명	Jamboree of peace	프랑스 대통령참가
7회		'51. 08. 03.~08.14.	오스트리아 배드이설	61	12,884명	Jamboree of simplicity	
8회		'55. 08. 18.~08. 28.	캐나다 나이아가라	71	11,139명	New horizons	비유럽 최초 잼버리
9회		'57. 08. 01.~08. 12.	영국 서튼파크	80	30,000명	50th anniversary of scouting	
10회		'59. 07. 17.~07. 27.	필리핀 마킬링	44	12,203명	Building Tomorrow Today	아시아 최초
11회		'63. 07. 31.~08. 10.	그리스 마라톤	89	14,000명	Higher and wider	
12회		'67. 08. 01.~08. 09.	미국 아이다호	105	12,011명	For Friendship	
13회		'71. 08. 04.~08. 14.	일본 아사기리	87	23,758명	For Understanding	
14회		'75. 07. 24.~08. 07.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91	17,259명	Five Fingers, One Hand	
15회		'83. 07. 04.~07. 16.	캐나다 알버타	106	14,752명	The Spirit Lives On	
16회		'87. 12. 28. ~'88. 01. 08.	호주 남웨일즈	84	14,434명	Bringing the World Together	
17회		'91. 08. 08.~08. 16.	대한민국 강원도	133	19,081명	Many Lands, One World	지구촌개발 프로그램 시작

구분	로고	개최 기간	개최 장소	참가국	참가	주제	비고
18회		'95. 08. 01.~08. 11.	네덜란드 드론티	166	28,960명	Future is Now	
19회		'98. 12. 26. ~'99. 01. 08.	칠레 피카킨	157	31,000명	Building Peace Together	
20회		'02. 12. 27. ~'03. 01. 11.	태국 사타힙	147	24,000명	Share our world, Share our culture	문화체험 프로그램 시작
21회		'07. 07. 27.~08. 08.	영국 챔스포드	162	37,868명	One World, One Promise	영국연맹 창립 100주년
22회		'11. 07. 27.~08. 08.	스웨덴	146	40,061명	Simply Scouting	
23회		'15. 07. 28.~08. 07.	일본 야마구치	155	33,628명	和(화 : A spirit of unity)	평화프로그램
24회		'19. 07. 22.~08. 02.	미국 버지니아	124	41,559명	Unlock a new world	미국연맹 창립 100주년
25회		2023. 08.	대한민국 새만금	171	5만 여명	Draw your Dream	준비 중

자료 : 여성가족부(2020).

우리나라는 한국스카우트연맹 창립 100주년(2022년)을 기념하여 2016년 1월 세계스카우트연맹 사무국에 유치 의향서를 제출한 뒤 세계 6개 대륙 145개 국가를 돌며 유치활동을 펼치면서, 폴란드(그단스크)와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여성가족부는 2016년 7월 정부 국제행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세계스카우트잼버리(2023년)에 대한 국제행사 정부 지원 결정을 받고, 외교부와 협력하여 재외공관 등을 통해 160여개 회원국 대상 유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지원하였다. 2017년 2월에는 정·관계 주요 인사와 민간기업, 청소년정책 관계자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2023년 세계잼버리 대한민국 유치위원회'(위원장 이주영, 前 국회부의장)가 만들어져 회원국 방문 등 유치활동, 온라인 홍보, 지역별 스카우트총회 대표단

구성·파견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유치에 큰 기여를 했다.

여성가족부, 외교부 및 재외공관,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성공적인 민관 협력으로 유치활동을 벌인 결과 2017년 8월 16일 제41차 세계스카우트총회(바쿠, 아제르바이잔)에서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대한민국 유치가 최종 확정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영국, 미국, 일본 등에 이어 세계잼버리를 2회 이상 개최하는 세계 여섯 번째 국가가 되었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Draw your Dream!’을 주제로 청소년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잼버리를 만들어가고, 잼버리를 통해 자신의 꿈을 크게 그려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엠블럼은 스카우트 대원들이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지붕 아래 함께 모여 즐겁게 축제의 캠프를 벌이는 모습을 한국의 기와와 텐트의 모양으로 형상화하였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즐거운 축제의 모습을 경쾌하게 표현하였다.

[그림 4-3-1] 2023년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엠블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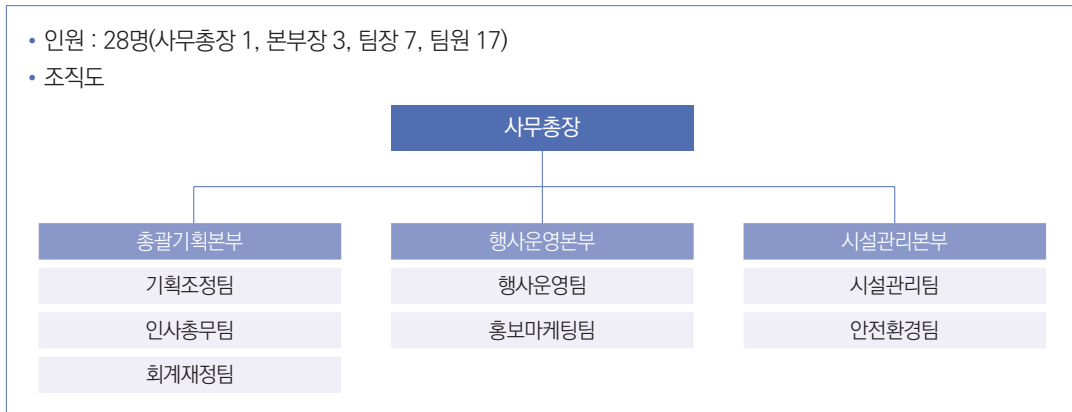


여성가족부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2018년에 조직위원회 설립 등 추진체계 구축·정부 차원의 예산 및 행정 지원 등을 담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2019년에는 관련 시설, 안전, 기금 등 필요사항을 규정한 새만금세계잼버리법 시행령을 제정·시행하였다.

또한, 2020년 7월 2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공동 조직위원장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김윤덕 국회의원)가 공식출범하였다. 이후 조직위원회는 2020년 7월 13일 재단법인 설립 등기 완료를 거쳐 실질적 사무집행기관인 조직위원회 사무국을 2020년 7월 20일 개소하고 본격적인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준비에 들어가게

되었다. 사무국은 시기별로 단계적 조직 개편 및 인력 확대 등 탄력적 직제 개편을 통해 차질 없이 행사준비를 해나갈 계획이다.

〈표 4-3-9〉 조직위 사무국 구성(1단계 : '20.7.-)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미래의 주역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세계 청소년들과의 교류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전 세계 5만 여명의 스카우트 대원(청소년)과 지도자의 한국 방문은 국내 관광자원 및 문화자원 등과 연계되어 경제적 효과와 함께 고용창출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클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개최지인 새만금 지역의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표 4-3-10〉 2023년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요

- 기간 : 2023. 8월 중(12일간)
- 장소 : 전라북도 새만금
- 주제 : Draw your Dream
- 참가대상 : 만14~17세 스카우트 청소년
- 참가규모 : 170여개국 5만여 명(국외 4만 여명, 국내 1만 여명)
- 주요내용 : 개·폐영식, 과정활동(야영, 수상활동, 문화체험 등), 한국의 밤, 국제의 밤 등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02-2100-6468

## 제5부 요약

제5부에서는 '청소년 복지'에 대해 다룬다. 정부 차원의 복지 지원이 요구되는 청소년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의 다양한 상담·복지 서비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상대아동빈곤율)은 2019년 10.6%로 최근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아동빈곤율에 따른 2019년 빈곤아동 수는 전 가구 기준으로는 약 84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한부모가구 비중은 2019년 7.3%로, 한부모가구 수는 약 153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자녀 수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에는 264,626명으로 나타났다.

대상별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 5월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에 219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를 지정·설치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상담·교육·취업·자립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가출청소년 지원을 위해 '청소년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 중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학업, 자립, 법률, 상담, 활동 등의 영역에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돌봄취약계층가정 청소년들에게는 '방과후아카데미'를 통해 종합적인 학습·복지·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아동 보호, 학습지도, 정서지원, 지역사회 연계 등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막고자 하는 정부 차원의 대표적인 복지사업으로는 '드림스타트', '디딤씨앗 통장(CDA)' 사업 등이 있다. 이밖에도 아동학대 예방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는 'e 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아동학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소년기는 급격한 성장과 변화가 나타나는 과도기적 발달단계로 불안정한 심리적 특성을 보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위험에 대처하고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설치하고, 17개 시·도와 212개 시·군·구에 236개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가족갈등, 또래와의 갈등, 학업 문제 등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예방 및 문제발생 이후 대응 등을 위한 '지역사회통합 청소년지원 체계(청소년안전망)', '청소년상담 1388',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또래상담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제5부

# 청소년 복지

제1장 대상별 청소년 현황

제2장 대상별 청소년 지원

제3장 청소년 상담·복지활동

제4장 청소년의 건강

5

## 제1장

## 대상별 청소년 현황

## 1. 아동빈곤율 현황

본 백서에서 2016년까지는 아동빈곤율<sup>1)</sup>을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기존 절대빈곤율을 산출하기 위해 활용하던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선'은 2014년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2015년 제도변경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산정하지 않게 되었다. 한편, 상대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등에서 국가비교를 위해 주로 사용하는 개념으로, 전체 아동 수 대비 중위소득의 40%, 50%, 60% 미만의 소득을 가진 가구에 속한 아동의 비율을 말한다. 여기서는 가처분소득의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하였다.

2020년 청소년 백서부터 아동빈곤율과 관련하여 절대빈곤율은 제외하고, 상대아동빈곤율만 제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기존 상대아동빈곤율의 출처였던 '가계동향조사'가 2017년도부터 연간 자료가 아닌 분기별 자료로 변경됨에 따라, 2017년도 아동의 상대적 빈곤율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따르게 되었다. 가계동향조사는 1인 가구와 전 가구를 나누어 제시하고, 농어가(농업 및 어업 종사 가구) 가구를 제외했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전 가구 대상에 농업, 임업 및 어업이 포함되어 있어 가계동향조사의 수치와는 차이가 있다. 본 장에서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토대로 아동의 상대적 빈곤율을 제시하였다.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상대아동빈곤율은 2011년 16.4%에서 2014년 16.5%까지 소폭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5년 16.0%, 2016년 15.2%, 2017년 14.2%, 2018년 12.3, 2019년 10.6%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상대아동빈곤율에 따른 빈곤아동 수는 아동 인구 수 감소 및 빈곤율 감소로 인하여 2011년 162만 명에서 2019년 약 84만 명으로 약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아동빈곤율 계측에서 아동 연령기준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라 0세에서 18세 미만으로 정의하였음.

〈표 5-1-1〉 연도별 아동빈곤율 현황

(단위 : %, 명)

구분/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아동의 상대 빈곤율	16.4	16.8	16.4	16.5	16.0	15.2	14.2	12.3	10.6
아동 인구 수	9,921,012	9,691,876	9,431,699	9,186,841	8,961,805	8,736,051	8,480,447	8,176,335	7,928,907
빈곤 아동 수	1,627,046	1,628,235	1,546,799	1,515,829	1,433,889	1,327,880	1,204,223	1,005,689	840,464

주 : 빈곤 아동 수는 아동빈곤율을 이용하여 추계함(상대빈곤: 가처분소득 중위소득 50% 기준).

농업, 임업 및 어업 종사 가구 포함.

\*\*\* 아동 인구 수는 만 0~17세 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을 포함함.

자료 : 1) 이현주, 박형준, 이정운(2019). 2019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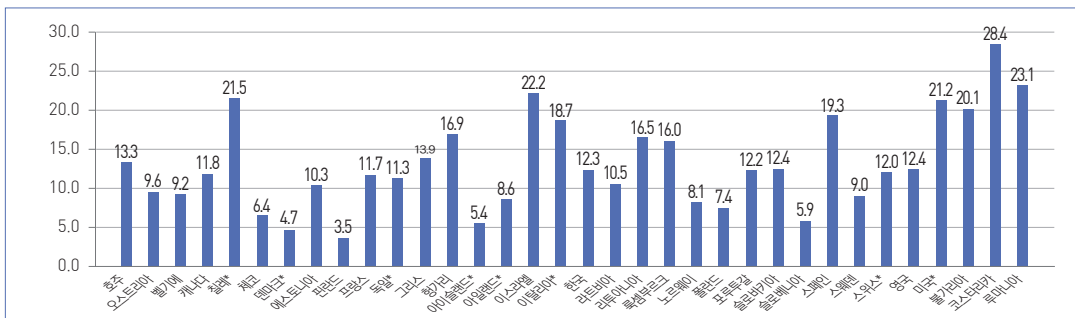
2) 통계청(각 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연령계층별)

3) 아동 인구 현황. e-나라지표. 주민등록 인구통계([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53](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3053))에서 2020년 12월 27일에 인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빈곤수준을 국제수준에서 파악하기 위하여 OECD 국가들 및 신흥국들과 비교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상대빈곤기준은 중위소득의 50%로 상대적 빈곤 기준이 사용되었으며, 국가별로 아동 인구의 빈곤수준을 제시하였다.

최근 년도 수치 기준, 아동 상대빈곤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핀란드로 3.5%였고, 그 다음은 덴마크로 4.7%였다. 한국은 포르투갈(12.2%)의 뒤를 이어 12.3%로 나타났다. 집계된 국가 중 아동 상대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코스타리카(28.4%)였으며, 루마니아(23.1%), 이스라엘(22.2%), 칠레(21.5%), 미국(21.2%), 불가리아(20.1%)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들 국가의 아동 5명 중 1명은 빈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5-1-1〉 아동빈곤율 국제 비교(2018년, 중위소득 50%)



주 : 1) 국가별 아동 상대빈곤율은 동일가구 가처분 소득을 적용. 빈곤임계값은 각 국가에서 평균 가처분 소득은 50%로 설정(수치는 기본적으로 2018년 수치이며, \*로 표시한 칠레,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위스, 미국은 2017년 자료를 활용)하였음. 최근 년도 수치가 집계되지 않은 나라들은 제시되지 않음.

자료 : OECD(n.d.).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66670#>)에서 2020년 12월 27일에 인출함.

## 2. 한부모가구 현황

한부모가구는 일반가구 중에서 한부(모)와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가구를 의미한다. 전체 가구 중 한부모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장래가구추계에 의하면, 2008년에는 9.0%, 약 151만 가구로 나타났는데, 2011년에는 9.3%, 약 160만 가구로 증가하였으며, 2014년에는 10.5%, 약 197만 가구로 확인되었다. 2015년부터는 당해년도 인구총조사를 바탕으로 별거가구 등을 제외하고 혼인관계가 없는 한부모가구 수를 보다 정확히 집계하기 시작하며, 2015년의 한부모가구 수는 전체가구 중 8.2%에 해당하는 약 161만 가구로 감소하였다. 이후 한부모가구 비율은 2016년 7.8%로 약 154만 가구, 2017년 7.6%로 약 153만 가구, 2018년 7.6% 약 154만 가구로 감소하였다. 2019년에는 7.5%에 해당하는 약 153만 가구가 한부모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가족형태가 늘어남에 따라 한부모가구의 비율은 변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한부모가구의 경제적 자립, 자녀 양육 및 교육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

〈표 5-1-2〉 연도별 한부모가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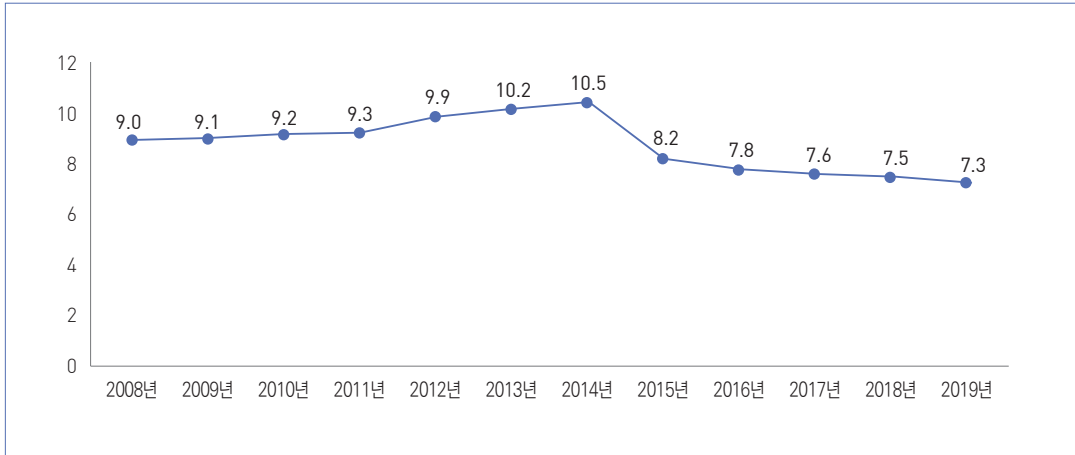
(단위: 천 가구, %)

연도	전체가구(A)	한부모가구(B)	한부모가구비율(B/A×100)
2008	16,791	1,509	9.0
2009	17,052	1,551	9.1
2010	17,339	1,594	9.2
2011	17,687	1,639	9.3
2012	18,119	1,796	9.9
2013	18,388	1,880	10.2
2014	18,705	1,970	10.5
2015	19,561	1,608	8.2
2016	19,838	1,540	7.8
2017	20,168	1,533	7.6
2018	20,500	1,539	7.5
2019	20,891	1,529	7.3

자료 : 통계청(2020). 장래가구추계/인구총조사.

[그림 5-1-2] 한부모가구 비율 추이

(단위 : %)



자료 : 통계청(2020), 장래가구추계/인구총조사.

### 3. 다문화가족 및 아동 현황

우리사회에서 다문화가족과 다문화아동·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문화가족이란 광의의 개념으로는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가족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문화가족의 형태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가족,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가족, 이주민 가족(노동자, 유학생) 등이 있다. 다문화가족을 협의의 개념으로 살펴보면,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가족만을 의미한다. 2008년에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는 다문화가족을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법에 기초하여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 교육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실태조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립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 수는 2007년에는 44,258명이었는데 2009년에는 107,689명으로 2배 가량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약 3배 증가한 121,935명으로 파악되었다. 이후 다문화가족 자녀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5년에는 197,550명으로 소폭 감소하였는데, 다시 2017년부터 222,455명, 2018년 237,705명, 2019년 264,626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2019년 현재 만 6세 이하는 117,045명(44.2%)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만 7~12세 이하는 104,064명(39.3%)이고, 중학생에 해당하는 만 13~15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수는 26,524명(10.0%)이며, 고등학생 연령대인 만 16~18세 이하 아동은 16,993명(6.4%)으로 만 6세 이하에 속하는 자녀 수의 비율은 소폭 감소하고 만 7세 이상 18세 범위에 있는 자녀 수의 비율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3〉 다문화가족 자녀 수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

연도	연령별 현황				
	계	만 6세 이하	만 7~12세	만 13~15세	만 16~18세
2007	44,258(100.0)	26,445(59.8)	14,392(32.5)	2,080(4.7)	1,341(3.0)
2008	58,007(100.0)	33,140(57.1)	18,691(32.2)	3,672(6.3)	2,504(4.3)
2009	107,689(100.0)	64,040(59.5)	28,922(26.9)	8,082(7.5)	6,645(6.2)
2010	121,935(100.0)	75,776(62.1)	30,587(25.1)	8,688(7.1)	6,884(5.6)
2011	151,154(100.0)	93,537(61.9)	37,590(24.9)	12,392(8.2)	7,635(5.1)
2012	168,583(100.0)	104,694(62.1)	40,235(23.9)	15,038(8.9)	8,616(5.1)
2013	191,328(100.0)	116,696(61.0)	45,156(23.6)	18,395(9.6)	1,1081(5.8)
2014	204,204(100.0)	121,310(59.4)	49,929(24.5)	19,499(9.5)	1,3466(6.6)
2015	197,550(100.0)	116,068(58.8)	61,625(31.2)	12,567(6.4)	7,290(3.7)
2016	201,333(100.0)	113,506(56.4)	56,768(28.2)	17,453(8.7)	13,606(6.8)
2017	222,455(100.0)	115,085(51.7)	81,826(36.8)	15,753(7.1)	9,791(4.4)
2018	237,705(100.0)	114,125(48.1)	92,368(38.9)	19,164(8.1)	11,849(4.9)
2019	264,626(100.0)	117,045(44.2)	104,064(39.3)	26,524(10.0)	16,993(6.4)

자료 : 행정안전부(2020). 201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부 또는 모의 국적별 다문화가족의 자녀 수를 살펴보면, 베트남 출신 부모의 자녀가 88,476명(33.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중국 출신 부모의 자녀가 49,286명(18.6%)이었다. 중국 출신 한국계 부모의 자녀는 세 번째로 많은 41,149명(15.5%), 필리핀 출신 부모의 자녀는 24,502명(9.3%)으로 네 번째로 많았다. 이들 네 국가 출신 부모의 자녀가 전체 다문화가족 자녀의 76.8%를 차지하였다.

(표 5-1-4) 부모는 모의 국적별 다문화가족 자녀 수 현황

(단위 : 명, (%))

연도	합계	중국 (한국계)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몽골	태국	미국	러시아	대만	기타
2008	58,007 (100.0)	16,681 (28.8)	10,889 (18.8)	8,194 (14.1)	6,378 (11.0)	6,508 (11.2)	-	816 (1.4)	870 (1.5)	2,406 (4.1)	303 (0.5)	1,515 (2.6)	3,447 (5.9)
2009	107,689 (100.0)	18,669 (17.3)	35,932 (33.4)	22,491 (20.9)	10,687 (9.9)	6,838 (6.3)	-	1,681 (1.6)	1,563 (1.5)	683 (0.6)	736 (0.7)	770 (0.7)	7,639 (7.1)
2010	121,935 (100.0)	31,404 (25.8)	29,800 (24.4)	27,517 (22.6)	11,926 (9.8)	5,734 (4.7)	2,554 (2.1)	1,807 (1.5)	1,711 (1.4)	821 (0.7)	766 (0.6)	1,129 (0.9)	6,766 (5.5)
2011	151,154 (100.0)	33,186 (22.0)	34,852 (23.1)	34,256 (22.7)	13,937 (9.2)	14,510 (9.6)	3,565 (2.4)	2,250 (1.5)	2,082 (1.4)	1,207 (0.8)	1,090 (0.7)	1,191 (0.8)	9,028 (6.0)
2012	168,583 (100.0)	39,278 (23.3)	33,231 (19.7)	41,238 (24.5)	15,820 (9.4)	16,237 (9.6)	4,690 (2.8)	2,468 (1.5)	2,427 (1.4)	1,422 (0.8)	1,139 (0.7)	1,615 (1.0)	9,018 (5.3)
2013	191,328 (100.0)	42,294 (22.1)	37,084 (19.4)	49,458 (25.8)	18,020 (9.4)	17,806 (9.3)	5,961 (3.1)	2,802 (1.5)	2,663 (1.4)	1,697 (0.9)	1,289 (0.7)	1,758 (0.9)	10,496 (5.5)
2014	204,204 (100.0)	43,890 (21.5)	38,824 (19.0)	54,737 (26.8)	19,568 (9.6)	18,185 (8.9)	6,777 (3.3)	2,952 (1.4)	2,767 (1.4)	1,855 (0.9)	1,319 (0.6)	1,892 (0.9)	11,438 (5.6)
2015	197,550 (100.0)	35,439 (17.9)	40,351 (20.4)	57,464 (29.1)	19,918 (10.1)	7,773 (3.9)	7,016 (3.6)	2,771 (1.4)	2,254 (1.1)	6,140 (3.1)	1,017 (0.5)	2,877 (1.5)	14,530 (7.4)
2016	201,333 (100.0)	36,610 (18.2)	37,963 (18.9)	56,468 (28.0)	20,146 (10.0)	9,485 (4.7)	6,909 (3.4)	2,719 (1.4)	2,543 (1.3)	5,874 (2.9)	1,058 (0.5)	2,522 (1.3)	19,036 (9.5)
2017	222,455 (100.0)	38,090 (17.1)	43,197 (19.4)	71,864 (32.3)	22,270 (10.0)	6,886 (3.1)	9,448 (4.2)	3,132 (1.4)	2,609 (1.2)	4,899 (2.2)	997 (0.4)	2,995 (1.3)	16,068 (7.2)
2018	237,506 (100.0)	39,642 (16.7)	44,016 (18.5)	77,218 (32.5)	22,873 (9.6)	6,930 (2.9)	10,037 (4.2)	3,212 (1.4)	2,875 (1.2)	5,581 (2.3)	1,034 (0.4)	3,081 (1.3)	21,007 (8.8)
2019	264,626 (100.0)	41,149 (15.5)	49,286 (18.6)	88,476 (33.4)	24,502 (9.3)	7,858 (3.0)	10,850 (4.1)	3,607 (1.4)	3,944 (1.5)	8,417 (3.2)	1,304 (0.5)	3,543 (1.3)	21,690 (8.2)

주 : 캄보디아는 2009년 이전에는 '기타'에 포함되었지만 2010년부터 별도로 분류되었음.

자료 : 행정안전부(2020), 201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다문화 초·중·고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다문화 학생 수는 총 137,225명으로 전체 학생(5,461,614명)의 2.51%를 차지하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전체 초등학생 중 국제결혼가정 및 외국인가정의 아동 비율이 1.9%, 전체 중학생 중 국제결혼가정 및 외국인가정의 아동 비율이 0.4%, 전체 고등학생 중 국제결혼가정 및 외국인가정의 아동 비율이 0.2%로 나타났다. 학령기 아동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다문화학생 수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다문화학생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5-1-5〉 연도별 다문화학생 현황

(단위 : 명, %)

인원 수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다문화학생 수(A)		67,806	82,536	99,186	109,387	122,212
전체 학생 수(B)		6,333,570	6,137,374	5,931,646	5,773,998	5,633,725	5,461,614
다문화학생 비율(A/B×100)		1.07	1.34	1.67	1.89	2.17	2.51%

자료 : 교육부(2020). 2020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표 5-1-6〉 2019년 학교급별 다문화학생 수 현황

(단위 : 명, %)

구분	유형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	계
		국내출생자녀	중도입국자녀	외국인가정자녀	
학교급	초	83,620	5,163	15,175	103,958(75.8)
	중	15,906	2,153	3,688	21,747(15.8)
	고	8,543	1,381	1,596	11,520(8.4)
합계		108,069	8,697	20,459	137,225(100.0)

자료 : 교육부(2020). 2020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 4.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권익을 증진시킬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아동 안전 및 건강 지원,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및 자립지원, 방과후돌봄 서비스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보호대상아동 수는 2009년까지는 한국사회의 경제상황 등으로 인해 매년 1만 명 이상



발생하였다.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인원은 2002년에 22,341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로 점차 감소하였고, 2010년 이래로 1만 명 아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8년에는 4,538명으로 1998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가, 2019년에는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4,612명으로 확인되었다. 보호대상아동 수의 감소는 아동 인구 수 감소의 영향과도 연관이 있다.

2019년에 신규로 발생한 보호대상아동 수는 총 4,612명이었고, 이 중 565명은 귀가 및 연고자에 인도되었다.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한 원인은 학대(1,484명), 부모의 이혼 등(736명), 비행·가출·부랑 아동(473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2019년 미아로 인한 발생 수는 8명으로, 최초로 한 자리 수에 달했으며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5-1-7〉 연도별 보호대상아동 현황 및 발생원인

(단위: 명)

연도	총 아동 발생 수	귀가 및 연고자 인도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									
			계	유기 <sup>1)</sup>	미혼부모·혼외자	미아	비행·가출·부랑	학대	부모 빈곤, 실직	부모 사망	부모 질병	부모 이혼 등
1998년	15,499	4,699	10,800	1,654	5,451	286	3,409					
1999년	16,247	7,247	9,000	1,432	4,284	216	3,068					
2000년	15,936	6,851	9,085	1,270	4,190	152	1,757	1,716				
2001년	21,816	11,230	10,586	717	4,897	98	728	4,146				
2002년	22,341	12,284	10,057	634	4,337	74	749	4,263				
2003년	21,882	11,660	10,222	628	4,457	79	595	4,463				
2004년	20,357	10,964	9,393	481	4,004	62	581	4,265				
2005년	18,468	9,048	9,420	429	2,638	63	1,413	4,877				
2006년	16,008	6,974	9,034	230	3,022	55	802	4,925				
2007년	11,394	2,533	8,861	305	2,417	37	748	5,354				
2008년	11,672	2,388	9,284	202	2,349	151	706	891	1,036	732	274	2,943
2009년	10,500	1,472	9,028	222	3,070	35	707	1,051	710	763	230	2,240
2010년	9,960	1,370	8,590	191	2,804	210	772	1,037	586	772	203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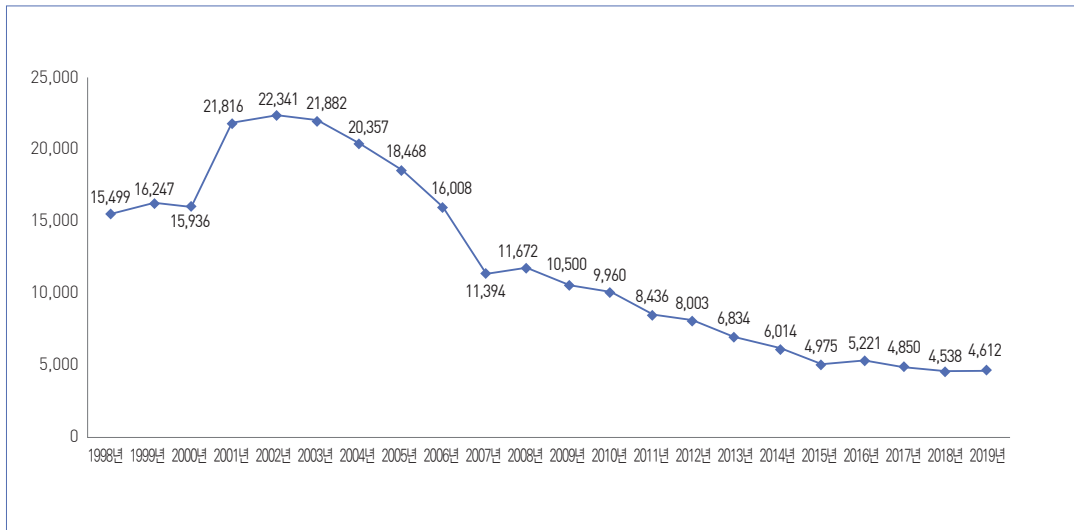
연도	총 아동 발생 수	귀가 및 연고자 인도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원인									
			계	유기 <sup>1)</sup>	미혼부모·혼외자	미아	비행·가출·부랑	학대	부모 빈곤, 실직	부모 사망	부모 질병	부모 이혼 등
2011년	8,436	953	7,483	218	2,515	81	741	1,125	418	536	154	1,695
2012년	8,003	1,077	6,926	235	1,989	50	708	1,122	448	533	166	1,675
2013년	6,834	814	6,020	285	1,534	21	512	1,117	338	545	133	1,535
2014년	6,014	1,020	4,994	282	1,226	13	508	1,105	308	450	65	1,037
2015년	4,975	472	4,503	321	930	26	360	1,094	279	301	122	1,070
2016년	5,221	638	4,583	264	855	11	314	1,532	290	286	126	905
2017년	4,850	725	4,125	261	847	12	227	1,442	223	279	87	747
2018년	4,538	620	3,918	320	623	18	231	1,415	198	284	92	737
2019년	4,612	565	4,047	237	464	8	473	1,484	265	297	83	736

주 : 1) 2017년부터 '기아'가 '유기'로 변경되었음.

자료 : 보건복지부(2020). 연도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및 조치 현황.

[그림 5-1-3] 연도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수 추이

(단위 : 명)



자료 : 보건복지부(2020). 2019년 연도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및 조치 현황.

보호대상아동의 보호형태는 크게 시설보호와 가정보호로 구분된다. 시설보호에는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장애아동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가 있고, 가정보호는 ‘소년·소녀가정’, ‘입양’, ‘가정위탁’, ‘입양전 위탁’ 보호가 있다. 2019년 보호대상아동 보호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시설입소 중에서는 아동양육시설 등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1,70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대비 약 4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동생활가정(그룹홈)으로 배치된 아동은 625명으로 2008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일정 수를 유지하고 있었다. 가정보호는 가정위탁이 1,003명으로 가장 많았고, 입양은 104명이었다. 입양된 아동은 2016년 243명, 2017년 285명, 2018년 174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로 인해 과거의 주된 아동보호 형태 역시 변화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국가가 원가정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원가정 보호를 할 수 없는 경우 가정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대안 양육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가정과 유사한 형태의 가정위탁이나, 시설에서 보호하더라도 대규모 시설에서의 보호가 아닌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소규모 보호가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우리나라도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로 가정위탁과 공동생활가정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동시에 입양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입양의 절차와 결정에 대한 국가 책임과 국내·외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관리도 법 개정을 통해 강화하고 있다.

〈표 5-1-8〉 보호대상아동 보호 현황

(단위: 명)

연도	조치내용									
	계	시설입소				가정보호				
		소계	양육 시설 등	일시 보호 시설	장애 아동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소계	소년 소녀 가정	입양	가정 위탁
1998년	10,800	5,141	4,948	132	61	5,659	518	1,741	3,400	-
1999년	9,000	4,702	4,579	78	45	4,298	572	1,776	1,950	-
2000년	9,085	4,481	4,332	64	85	4,604	564	1,755	2,285	-
2001년	10,586	4,774	4,671	41	62	5,812	874	1,848	3,090	-
2002년	10,057	4,663	4,547	57	59	5,394	673	2,544	2,177	-
2003년	10,222	4,824	4,747	42	35	5,398	500	2,506	2,392	-

연도	조치내용										
	계	시설입소					가정보호				
		소계	양육 시설 등	일시 보호 시설	장애 아동 시설	공동 생활 가정	소계	소년 소녀 가정	입양	가정 위탁	입양전 위탁
2004년	9,393	4,782	4,680	38	64	4,611	299	2,100	2,212	-	
2005년	9,420	4,818	4,769	48	1	4,602	407	1,873	2,322	-	
2006년	9,034	4,366	4,313	53	-	4,668	308	1,259	3,101	-	
2007년	8,861	3,245	3,189	39	17	5,616	247	1,991	3,378	-	
2008년	9,284	4,964	2,997	1,261	39	667	4,320	178	1,304	2,838	-
2009년	9,028	4,767	2,406	1,640	35	686	4,261	213	1,314	2,734	-
2010년	8,590	4,842	2,445	1,751	23	623	3,748	231	1,393	2,124	-
2011년	7,483	3,752	2,246	862	32	612	3,731	128	1,253	2,350	-
2012년	6,926	3,748	2,272	676	25	775	3,178	117	772	2,289	-
2013년	6,020	3,257	1,731	801	39	686	2,763	20	478	1,749	516
2014년	4,994	2,900	1,818	566	10	506	2,094	13	393	1,300	388
2015년	4,503	2,682	1,412	799	13	458	1,821	-	239	1,206	376
2016년	4,583	2,887	1,736	548	11	592	1,696	6	243	1,022	425
2017년	4,125	2,421	1,467	310	19	625	1,704	2	285	994	423
2018년	3,918	2,449	1,300	494	7	648	1,469	1,	174	937	357
2019년	4,047	2,739	1,707	401	6	625	1,308	5	104	1,003	196

자료 : 보건복지부(2020). 연도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및 조치 현황.

## 제2장

## 대상별 청소년 지원

##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 가. 추진배경 및 연혁

매년 5만여 명의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도 2019년 기준 24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스스로 진로를 찾고 직업을 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좌절을 경험하고 있으며, 여러 사회적 기회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에게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체계적인 자립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취약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 동기 강화, 기초적인 자립 기술 습득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립지원프로그램(꿈드림)이 운영되었고, 특히, 검정고시 지원 및 학습클리닉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업을 지속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해밀)을 2009년부터 운영하였다. 2014년 5월 28일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15년 5월 29일 법률 시행에 따라 전국 219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센터)<sup>2)</sup>가 지정·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표 5-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연혁

연도	추진내용
2007	•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운영
2012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학업중단숙려제 연계, 숙려제 상담 및 자퇴 후 학업복귀 서비스 지원
2013	•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마련(교육부 공동, 2013. 11.)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법정(法定) 명칭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나, 꿈드림은 ‘꿈=드림(Dream)’, ‘꿈을 드림’이라는 중의적인 표현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드리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

연도	추진내용
2014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14. 5. 28.)
2015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15. 5. 29.) • 「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책」 마련(2015. 5. 12.) • 전국 199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설치 • 「201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실시
2016	• 전국 202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설치 •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 강화 대책」 마련(2016. 6. 14.)
2017	• 학교 밖 청소년 전문 직업훈련 기관 '내일이룸학교' 운영(구 취업사관학교)
2018	• 전국 206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설치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내(內) 자유공간 9개소 추가 설치(전체 52개소 설치) •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실시
2019	• 전국 214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설치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마련(2019. 11. 21.)
2020	• 전국 219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정·설치

자료 : 여성가족부(2020).

##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개요

### 1) 꿈드림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현황

2020년 꿈드림센터는 전국 219개소(시·도 센터 16개소, 시·군·구 센터 203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전담인력은 시·도 센터에 5명씩, 시·군·구 센터에 2~4명씩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

〈표 5-2-2〉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운영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소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219	26	17	9	9	6	3	5	1	31	12	13	16	10	22	15	21	3
시·도	16	1	1	1	1	1	1	1	-	1	1	1	1	1	1	1	1	1
시·군·구	203	25	16	8	8	5	2	4	1	30	11	12	15	9	21	14	20	2

자료 : 여성가족부(2019).

## 2) 사업목표 및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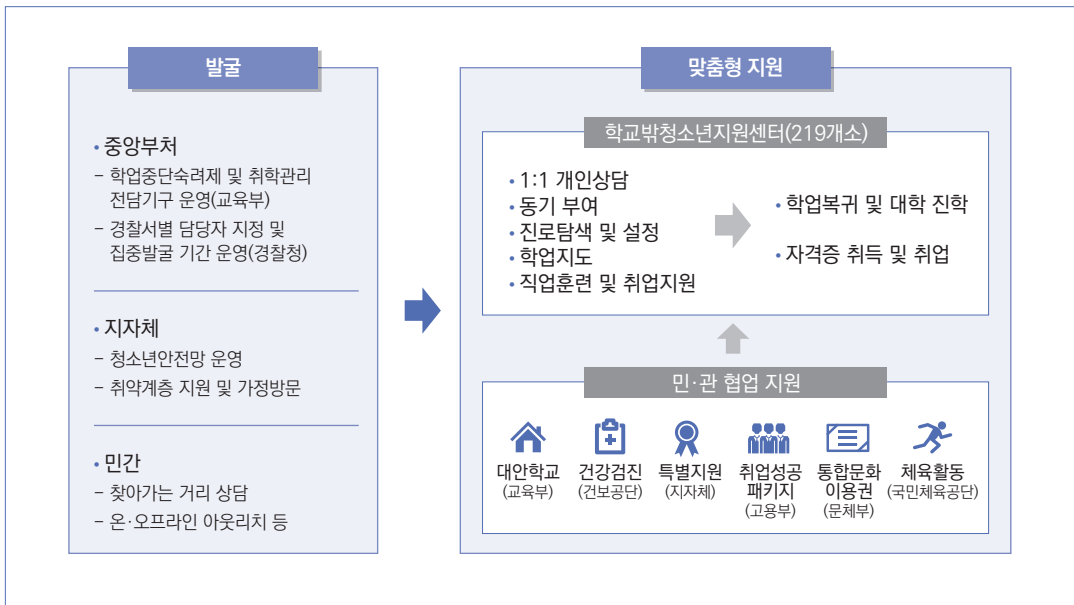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목표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상담·교육·취업·자립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서비스 지원 대상은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으로, 초·중학교 및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및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이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3)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연계

꿈드림센터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 강화 대책(2015. 8. 27.)」을 토대로 학교, 경찰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의 연계기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연계하고 있으며, 그 수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그림 5-2-1]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연계 체계



자료 : 여성가족부(2020).

〈표 5-2-3〉 학교 밖 청소년 연계 인원

(단위: 명)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연계 인원	36,468	55,909	68,459	70,684	47,358

자료: 여성가족부(2020).

####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비스

꿈드림센터에서는 연계된 청소년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서비스의 종류는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이 있다.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업형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학습동아리’, ‘멘토링’, ‘검정고시’, ‘대학입시설명회’ 등 학력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업형 청소년에게는 ‘직업역량강화사업’이나 ‘진로교육활동’ 또는 ‘직장 체험’ 등의 체험을 통해 진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 학교 밖 청소년 전문직업훈련기관인 ‘내일이룸학교’에 연계하거나,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프로그램에 연계하여 직업훈련 및 취업을 지원한다. 내일이룸학교에서는 전문직업훈련과 함께 상담, 검정고시 등 학력취득, 자격증 준비, 인성·교양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자유공간 지원’, ‘문화 활동 지원’, ‘봉사 기회 제공’ 등 자립준비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며, 꿈드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에게는 개별적으로 자신의 목표를 성취할 때까지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2016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제도를 도입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사업은 건강관리에 취약한 학교 밖 청소년을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 (영·유아, 일반, 생애, 암 검진 등) 체계에 포함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추진하며, 학교 밖 청소년의 질병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생애전환기 연령(10대)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근거로 9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이 우선 적용 대상이며, 다만 19세 학교 밖 청소년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나,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림 5-2-2]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

영·유아(0~5세)	학동기(6~18세)	성인기(19~64세)	노년기(65세~)
영유아 건강검진 ※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취학 학동기 ※ 초1, 초4, 중1, 고1 학생 건강검사  비취학 학동기 [9~18세 학교 밖 청소년] (19세 청소년은 국가건강검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검진 가능)	일반검진 및 암검진	일반 건강검진 및 암검진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만 66세 이상])

자료 : 여성가족부(2020).

검진항목으로는 상담 및 진찰, 신체계측, 혈액검사, 간염검사(B형 및 C형), 결핵검진, 구강검사 등이 있으며, 검진비용은 전액 국가 지원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가까운 꿈드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후 가까운 학교 밖 청소년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으면 된다.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2100-6319

## 2. 가출 청소년 지원

최근 사회적 문제인 가족 간의 갈등과 가족해체의 가속화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거리생활을 하면서 건강악화는 물론 절도·폭행·성매매 등의 범죄 및 비행 문제를 일으키거나 범죄 대상이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실정에 이르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가출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6개월 이상의 장기가출과 반복적인 가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호, 상담, 교육문화 활동을 지원하여 비행과 이탈을 예방하고, 가정 복귀 및 사회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 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 가. 정책의 변화

1991년에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되고 1992년 최초로 ‘청소년쉼터’가 설치되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청소년 선도 예방활동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였고, ‘참여정부’에서는 ‘가출 청소년 쉼터 확대’가 대선공약으로 추진되었다. 2004년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제정(2005년 2월 시행)됨으로써 청소년쉼터의 법적인 설치근거가 마련되었다. 초기에는 한 가지 유형의 쉼터로 운영되다가 가출 청소년의 상황 및 요구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서비스 내용을 차별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4년에 ‘일시쉼터(드롭인센터)’를 설치하기 시작하였고, 2005년부터는 중장기적인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어 중장기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표 5-2-4〉 청소년쉼터의 발전단계

구분	내용
1. 도입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1년 「청소년 기본법」 제정(1993. 1. 1. 시행)</li> <li>• 1992년 최초의 청소년쉼터 설치·운영</li> <li>• 1998년 5개 광역시별 청소년쉼터 설치·운영</li> </ul>
2. 확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4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정(2005. 2. 10. 시행)</li> <li>• 2004년 일시쉼터(드롭인센터) 설치·운영</li> <li>• 2005년 중장기쉼터 설치·운영</li> </ul>

구분	내용
3. 성숙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6년부터 정체성,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시행</li> <li>• 2012년 청소년쉼터 신고제 도입</li> <li>• 2012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전부개정(2012. 8. 2. 시행), 청소년복지시설에 관한 조항 정비</li> </ul>

자료 : 여성가족부(2020).

## 나. 사업내용 및 규모

청소년쉼터는 가출 청소년의 생활보호뿐만 아니라 상담, 자립역량 강화, 고충처리, 문화 활동 프로그램 기회제공 등을 통해 가출 청소년들의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시설의 전문화 및 차별화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시, 단기 및 중·장기 쉼터로 특성화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쉼터는 가출 청소년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로서 쉼터의 활동범위에는 가출 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가출 청소년의 상담·선도·수련활동, 가출 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지원활동,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 관리 등이 포함된다. 가출 등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과 개입, 가정 및 사회복귀를 위한 청소년쉼터는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지원되고 있다. 2020년도에는 전국 청소년쉼터 133개소의 운영을 지원한다.

〈표 5-2-5〉 연도별 청소년쉼터 운영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일시			단기			중장기			총계
	고정형	이동형	계	남	여	계	남	여	계	
2010년	8	2	10	24	25	49	10	14	24	83
2011년	8	2	10	24	24	48	10	15	25	83
2012년	8	5	13	25	24	49	11	19	30	92
2013년	15	6	21	26	24	50	11	21	32	103
2014년	16	6	22	26	24	50	16	21	37	109
2015년	18	8	26	26	26	52	17	24	41	119
2016년	18	10	28	26	25	51	18	22	40	119

구분	일시			단기			중장기			총계
	고정형	이동형	계	남	여	계	남	여	계	
2017년	20	10	30	27	26	53	18	22	40	123
2018년	19	11	30	30	32	62	18	20	38	130
2019년	18	13	31	30	33	63	19	21	40	134
2020년	19	13	32	30	31	61	19	21	40	133

자료 : 여성가족부(2020).

## 다. 청소년쉼터 종류 및 유형별 기능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쉼터의 종류는 일시쉼터·단기쉼터·중장기쉼터가 있고 그 유형별 기능은 아래 <표 5-2-6>과 같다. 청소년쉼터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곳은 1992년 설립된 ‘서울YMCA 쉼터’이고, 2004년에 가출청소년의 긴급 보호를 위하여 일시보호시설인 ‘일시쉼터(드롭인센터)’를 서울과 인천, 대전에 각각 설립하였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020년 현재 일시쉼터 32개소, 단기쉼터 61개소, 중장기쉼터 40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표 5-2-6> 쉼터의 종류 및 기능

구분	일시쉼터(32개소)	단기쉼터(61개소)	중장기쉼터(40개소)
기간	24시간 ~ 7일 이내 일시보호	3개월 이내 단기보호 (최장 9개월까지 연장 가능)	3년 이내 중장기보호 (필요시 1년 연장 가능)
이용대상	가출·거리배회·노숙 청소년	가출 청소년	가출 청소년
주요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출 청소년 조기구조·발견, 단기·중장기 청소년 쉼터와 연결</li> <li>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li> <li>먹거리, 음료수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출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치료 서비스 및 예방활동</li> <li>의식주 및 의료 등 보호 서비스 제공</li> <li>가정 및 사회복귀 대상 청소년 분류, 전문기관 연계·의뢰 서비스 제공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장기간 안정적인 보호서비스 제공</li> </ul>
위치	이동형(차량), 고정형(청소년유동지역)	주요 도심별	주택가
지향점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개입	보호, 가정 및 사회복귀	자립지원

자료 : 여성가족부(2020).

## 라.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내실화

청소년쉼터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쉼터를 일시-단기-중장기 유형으로 특성화하고, 쉼터유형별로 운영모형 및 목표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5년부터는 ‘청소년쉼터 서비스 표준 매뉴얼’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복지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으로(2017. 2. 4. 시행) 사회복지시설에 편입됨에 따라 공공요금(전기, 가스, 수도 등)의 감면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안전관리 인력 확보 등 시설안전 의무를 강화하였다.

청소년쉼터 시설 운영인력 외에도 가출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긴급구조·초기개입을 통한 신속한 가정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거리상담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108명이 거리상담 전문요원으로 활동하며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을 쉼터로 연계하고 있다. 또한 위기청소년이 24시간 생활하는 청소년쉼터의 특성상 야간 시간대 연계 의뢰 및 자해 등 응급상황발생이 잦아 야간보호상담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131명이 활동하고 있다.

〈표 5-2-7〉 연도별 청소년쉼터 입소 현황

(단위: 명)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입소청소년	9,350	11,657	11,764	15,242	24,079	25,012	30,329	31,197	32,109	32,402

자료: 여성가족부(2020).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9

## 3.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 가. 추진배경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6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부 여성청소년이 보건위생물품 대신 인체에 유해한 대체용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사회 문제화 되면서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사업이 시작되었다.

2016년 9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를 통한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현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며 2018년부터 여성가족부로 사업이 이관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시·군·구를 통해 위생물품 지원을 지속하였으며, 2019년부터는 여성청소년이 선호하는 보건위생물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원 방식을 도입하였다.

〈표 5-2-8〉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대상 및 내용

구분	2016년 9월 ~ 2017년	2018년 ~ 2020년 현재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원자격	- 중위소득 40% 이하(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연령	만 11세 ~ 만 18세 여성청소년	만 11세 ~ 만 18세 여성청소년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모바일* 신청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앱·어플
지원방법	- 2016년~2017년 : 현물 지급	- 2018년 : 현물 지급 - 2019년 ~ : 보건위생물품 전자바우처 지원
지원금액	-	- 2019년 : 연 최대 126천원 - 2020년 : 연 최대 132천원

자료 : 여성가족부(2020).

## 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개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은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 본인이 청소년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방문,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복지로 앱(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후 바우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호자 또는 청소년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sup>3)</sup>를 발급받아야 하며 국민행복카드사별 가맹점에서 원하는 보건위생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3) 국민행복카드는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바우처카드임.

[그림 5-2-3]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절차



자료 : 여성가족부(2020).

☎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2100-6232

## 4.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 특별지원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위기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에서 제외된 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시·군·구를 통한 전달체계를 활용하며,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교원,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등이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소득 조사,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표 5-2-9〉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

구분	내용
지원대상	만 9세 이상~만 18세 이하 위기청소년(「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초과 만 24세 이하 청소년 포함)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72% 이하인 자 (단, 생활지원 및 건강지원은 중위소득 65% 이하인 자)
사업내용	생활, 건강, 학업, 자립, 법률, 상담, 활동지원 등 (월 10만원 이내~연 350만원 이내 지원)

자료 : 여성가족부(2020).

〈표 5-2-10〉 특별지원 종류 및 지원내용

지원 종류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생활지원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비용 지원	월 50만 원 이내
건강지원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비용 지원	연 200만 원 내외
학업지원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 지원	월 15만 원 이내(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 원 이내(검정고시)
자립지원	취업을 위한 지식·기술·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비 지원	월 36만 원 이내
법률지원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연 350만 원 이내
상담지원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사회적 측면의 상담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월 20만 원 이내 (심리검사비 연 25만 원 별도)
활동지원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비용	월 10만 원 이내
그 밖의 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자료 : 여성가족부(2020).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2100-6318

## 5.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이주배경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적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의미한다. 남북 분단이라는 정치·사회적 특수성과 다문화가정의 증가 등으로 이주배경청소년(북한이탈·중도입국·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2년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전부 개정으로 이주배경청소년을 지원하는 ‘이주배경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표 5-2-11〉 이주배경청소년 현황

(단위: 명)

북한이탈청소년 <sup>1)</sup>	중도입국청소년 <sup>2)</sup>	외국인주민 자녀 <sup>3)</sup>
1,100	10,668	237,506
통일부('19. 12월)	법무부('19. 6월)	행정안전부('19. 11월)

주 : 1) 북한이탈청소년 : 거주자 연령 기준으로 18세 이하인 자.

2) 중도입국청소년 : 결혼이민자의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중 외국인등록·귀화한 미성년자.

3) 외국인주민 자녀 :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자녀.

북한이탈청소년은 입국과정에서의 심리·정서적 상흔과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대부분 입국초기부터 남한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 학습 공백, 동급생보다 많은 나이, 교육시스템의 차이 등으로 학교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북한이탈청소년의 입국초기 사회적응 및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이주배경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하나원 교육생에게 ‘비교문화체험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 청소년이 하나원 퇴소 후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생활정보를 공유하는 ‘동기야! 놀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대면·찾아가는 상담 등 통합 상담 및 사례관리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어 통역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문화청소년의 증가와 함께 청소년의 사회 부적응 현상도 발생하고 있는데, 다수의 다문화 청소년이 외모의 차이, 한국어 소통 능력의 부족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도입국 청소년은 이주자로서의 어려움과 청소년기의 정체성 혼란 등을 동시에 겪게 되며, 외국인근로자 가정의 청소년은 신분상의 불안정(미등록, 단기비자 등)으로 정규학교 입학에 어려움을 겪거나 학교생활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은 가정의 불화나 해체 등 이주배경에서 파생된 새로운 어려움에 당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북한이탈·중도입국·다문화 등 이주배경청소년의 입국초기 적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을 위한 기초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인 ‘레인보우스쿨’이 있다. ‘레인보우스쿨’에서는 한국어 교육, 사회문화 체험, 특기적성 활동, 생활정보(편·입학) 등을 제공하며, 2020년 기준 전국 13개 시·도에서 23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진로탐색과정 ‘무지개 잡(job)아라’ 및 직업교육과정 ‘내-일을 잡아라’ 프로그램을 각각 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다문화감수성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반청소년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소통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주배경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이 함께하는 ‘이주배경청소년 통합캠프’, ‘1:1 멘토링’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2100-6316

## 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개요 및 특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 후 홀로 방치되기 쉬운 저소득·맞벌이·한부모 등 돌봄취약계층 청소년(초 4학년~중 3학년)에게 체험활동·학습지원·급식·상담 등 종합적인 교육·복지·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 청소년의 학습 및 체험활동 기회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더불어 가정의 사교육비 및 양육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지원하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수련시설 등에 체험공간을 마련하여 방학 기간 포함 연중 1일 4시간 이상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005년 ‘방과후 청소년 생활지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46개소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하여 2006년부터(100개소) 전국 단위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역특성과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2008년에는 농산어촌형을, 2011년에는 장애형과 다문화형 등 신규 운영모형을 개발·운영하는 한편, 2016년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이었던 기존의 참여대상을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하였고, 2020년에는 기존의 취약계층 중심 사업에서 보편적 복지서비스로 확장하기 위하여 한부모·다문화가정 등의 청소년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폐지하였다.

최근에는 양적 성장과 더불어 사업의 질적 성장을 위하여 프로그램의 내용적 측면에서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라 청소년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창의융합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2018년 10개소 시범운영, 2019년 전국 확대), 청소년이 자기주도적으로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진로정보연계 및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진로체험형 방과후아카데미'를 개발하여 운영(2019년 9개소 시범운영, 2020년 전국 확대)하였고, 성평등, 다양성·다문화 감수성 등 제고를 위하여 민주시민의식 역량 개발 프로그램도 확대·운영하고 있다.

〈표 5-2-1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돌봄 취약계층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방과후 보충학습·체험활동·급식·건강관리·상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전인적인 성장 지원, 가정의 사교육비 및 양육부담 완화								
사업대상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초4 ~ 중2(2015년까지), 초4 ~ 중3(2016년부터)								
	구분	2005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개소수(개소)	46	200	200	244	250	250	260	280
	인원(명)	2,350	8,200	8,091	9,490	9,745	9,773	10,742	11,584
시행주체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운영								
설치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공공시설 등								
사업기간	2020. 1. ~ 12월 (1일 4시간, 방학 포함 연중 실시)								
사업규모	304개소 운영(2020년 12월 말 기준)								
지원 예산	개소 당 평균 1.6억 원(국비지원율 : 서울 30%, 지방 50%)								

자료 : 여성가족부(2020).

## 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현황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 말 전국 30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시·도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2-13〉 지역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현황

(단위 : 명, 개소수)

시도	이용대상			운영개소수			
	계	초등학생	중학생	계	초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중학생
서울	885	580	305	23	12	5	6
부산	680	400	280	17	9	6	2
대구	620	460	160	16	10	2	4
인천	400	160	240	10	4	6	0
광주	340	210	130	9	5	3	1
대전	275	200	75	8	5	2	1
울산	240	0	240	6	0	6	0
세종	120	40	80	3	1	2	0
경기	2,165	1,170	995	53	21	15	17
강원	830	430	400	23	10	9	4
충북	520	440	80	13	9	4	0
충남	875	265	610	22	6	15	1
전북	890	300	590	22	5	12	5
전남	1,240	470	770	31	7	16	8
경북	690	410	280	17	7	4	6
경남	965	665	300	22	10	2	10
제주	360	240	120	9	4	1	4
계	12,095	6,440	5,655	304	125	110	69

주 : 304개소의 2020년 계획인원 기준임.

자료 : 여성가족부(2020).

## 7. 지역아동센터 운영

### 가. 지역아동센터 일반 현황

#### 1) 지역아동센터의 개념

정부에서는 방임될 우려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2004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지역아동센터(구, 공부방)’를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전면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아동복지이용시설로서, 18세 미만의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 2)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신체·인지·사회성 발달을 목적으로 보호, 교육, 문화, 정서지원, 지역사회연계 서비스 영역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호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이 안전한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급식,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안전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교육프로그램은 아동에게 기초학습지도, 학교생활관리,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문화프로그램에는 공연관람, 견학, 캠프 등이 포함된다. 정서지원프로그램으로는 아동과 부모상담 등을 통해 아동정서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은 지역네트워크를 통해 아동을 지역 전문기관과 연계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내 아동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연계 기능을 수행한다.

〈표 5-2-14〉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영역

서비스 영역	세부프로그램
보호	일상생활관리, 위생건강관리, 급식지도, 생활안전지도, 안전귀가지도 등
교육	숙제지도, 교과학습지도, 예체능활동, 적성교육, 인성·사회성 교육, 자치회의 및 동아리 활동 등
문화	관람·견학, 캠프·여행, 행사 등
정서지원	상담(연고자, 아동상담, 정서지원 프로그램), 가족지원(보호자 교육, 가정방문 등)
지역사회연계	홍보,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자원 연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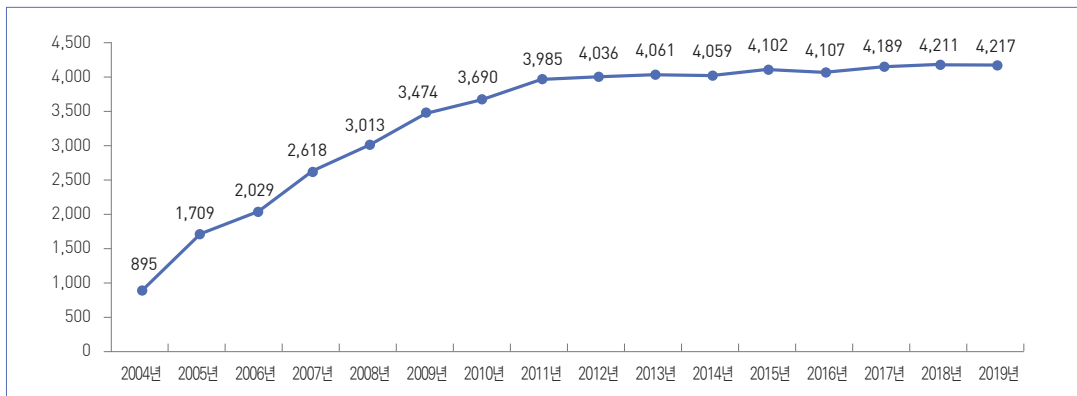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2020). 2020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안내.

### 3)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및 이용 현황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인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방과 후 나홀로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안전한 보호, 학습지도, 지역사회 연계 등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895개소에서 2011년까지 3,985개소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12년 4,036개소에서 매년 소폭 증가하여 2019년 4,217개소로 확인되었다. 시·도별 개소수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793개소로 가장 많고, 서울 454개소, 전남 377개소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5-2-4]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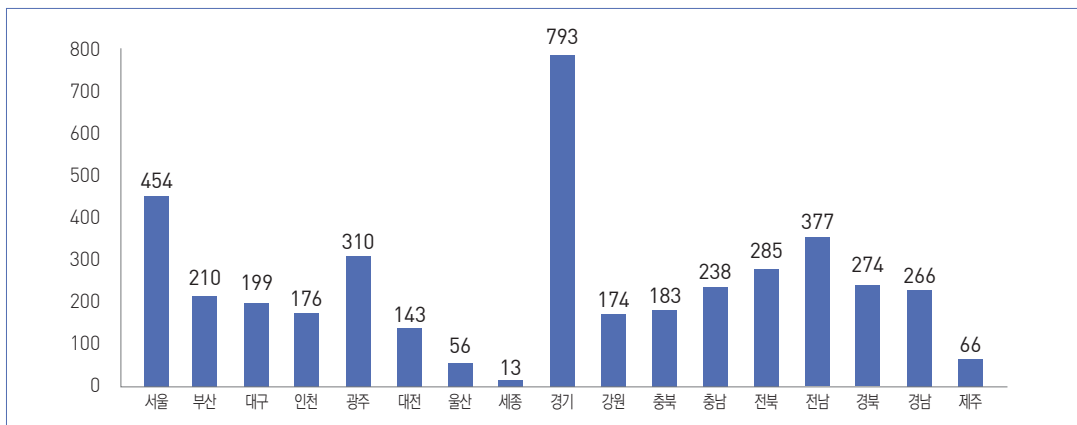
(단위 : 개소)



자료 : 보건복지부(2020). 2019년 12월 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

[그림 5-2-5]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수

(단위 :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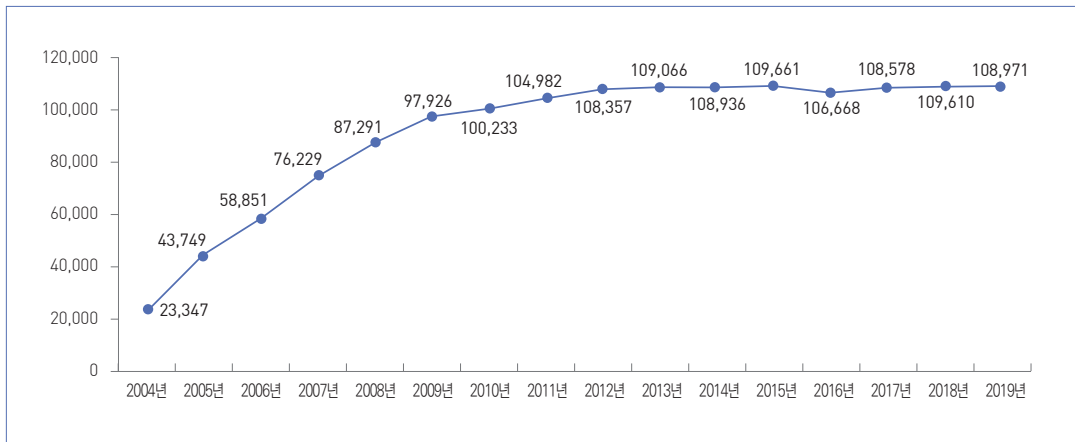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2020). 2019년 12월 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

#### 4)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자 증가

지역아동센터의 증가와 더불어 이용아동 수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수는 2004년 법제화 당시 23,347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108,971명으로 약 5배 가량 증가하였다. 2019년 기준 학년별 이용 아동 현황은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44,094명,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43,681명, 중학생 15,531명, 고등학생 3,443명, 미취학 아동 2,146명, 학교 밖 청소년 76명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다문화·탈북아동 등 특별관리 아동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기준, 장애아동 2,703명, 다문화가정 아동 20,609명, 탈북아동 461명으로 전체 아동 중 21.8%를 차지하고 있다. 가정형태별 이용 아동 현황은 양부모 가정이 68.1%, 모자 가정이 16.8%, 부자 가정이 11.5%, 조손 가정이 2.7%, 소년소녀가장이 0.2%, 기타 0.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5-2-6]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현황

(단위: 명)



자료: 보건복지부(2020).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2019년 12월 말 기준).

#### 나. 지역아동센터 예산 지원 현황

지역아동센터의 긍정적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시설 증가에 따라 정부지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지원 대상의 지속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적정운영비 지원에 대한 단계적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9년에는 4,135개 시설에 대해 월평균 529만 원을 지원하였다.

〈표 5-2-15〉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지원 규모 및 운영 현황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편성 개소(개소)	2,088	2,788	2,946	3,260	3,500	3,742	3,989	4,113	4,113	4,113	4,124	4,135
지원 단가 (만원/월, 개소)	220	상:220 하:320	320	370	395	420	433	443	458	473	516	529

자료 : 보건복지부(2020): 보건복지백서.

2007년부터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인 아동복지교사 운영을 통해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지원 아동복지교사는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질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아동복지교사는 아동지도, 기초영어, 독서지도, 예체능활동, 지역사회복지사 분야로 운영된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역량강화를 위해 2009년부터 평가를 실시하였고, 3년마다(1기: 2012~2014년, 2기: 2015~2017년, 3기: 2018~2020년) 의무적으로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여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044-202-3376

## 8. 드림스타트 사업(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드림스타트(Dream Start)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함으로써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건강·복지·보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부모에게는 자녀 양육지도, 직업훈련·고용촉진서비스를 제공해 가족기능 회복, 양육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

드림스타트는 아동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하여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복지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07년 희망스타트라는 이름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도입되었다. 이후 2008년 드림스타트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지원 대상은 0세(임산부)부터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으로, 복지욕구조사와 및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을 통해서 대상 아동을 선정한다. 단, 만 12세 이상의



아동이라도 초등학교 재학생인 경우 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가정 및 차상위 계층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을 우선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아동 발달수준 및 양육환경 사정을 실시하여 위기개입, 집중사례관리, 일반사례관리 등급으로 판정된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 가. 드림스타트 수행체계

드림스타트 사업은 지역사회 복지자원 네트워크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전반적 삶의 다양한 욕구에 적합한 보건·복지·교육·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개인별·가구별 욕구조사 및 사례관리를 통해 아동 생활 전반에 필요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드림스타트 사업의 특징이다.

〈표 5-2-16〉 드림스타트 서비스 유형 및 서비스별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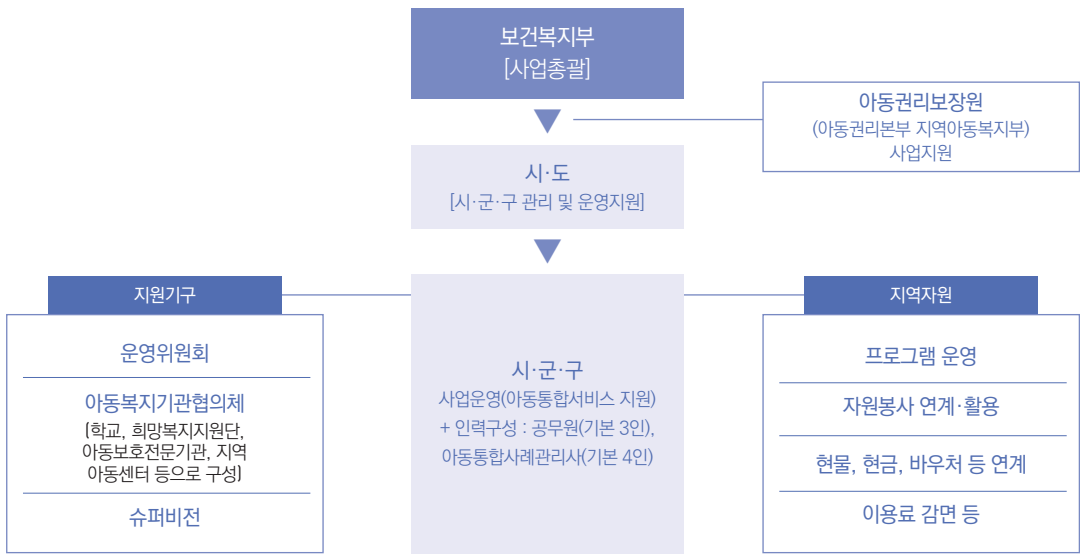
서비스 영역	서비스 내용
신체/건강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강검진 및 예방(신체 및 건강검진, 예방접종, 치과검진 및 관련교육, 건강교육, 클리닉, 응급처치 및 영양 관련 교육 등)</li> <li>건강관리(질병관련 치료지원 등)</li> </ul>
인지/언어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초학습(기초학력검사, 기초학력배양, 독서지도, 경제교육 등)</li> <li>학습지원(교구재활용학습, 공부방, 도서관운영, 보충학습, 예체능, 학습지 지원 등)</li> </ul>
정서/행동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정서(사회성발달, 정서발달, 아동권리교육, 아동학대 예방, 성폭력 예방, 다문화관련 교육, 진로지도 등)</li> <li>심리행동(심리상담 및 치료, 인터넷 중독 상담 및 치료)</li> <li>보호(돌봄기관 연계, 야간 보호 및 교육 등), 문화체험</li> </ul>
부모 및 가족, 임신부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모교육(상담 및 교육, 자녀발달, 양육, 자조모임 등)</li> <li>양육지원(다문화가정지원, 취미, 여가, 안전 및 건강지원 등) 및 산전산후관리 등</li> </ul>

자료 : 보건복지부(2020).

이러한 제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공공·민간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 드림스타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공공전달체계를 통해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보건복지부가 정책결정, 재정지원 등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는 드림스타트 수행기구를

만들어 3인의 전담 공무원과 4~7인 이상의 아동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아동통합사례관리사)을 배치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공간이나 서비스는 기존 지역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편 시·군·구 드림스타트 설치·운영 지원, 전담인력 교육, 운영모델 연구·개발, 사업평가, 후원 개발 및 홍보 등의 아동 통합서비스 실무 지원을 위해 2019년 8월부터 아동권리보장원에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림 5-2-7]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체계



자료 : 보건복지부(2020).

## 나.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확대

드림스타트는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2008년부터 본격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먼저 드림스타트 사업을 실시하는 시·군·구가 2007년 16개에서 2008년에는 32개, 2009년에는 75개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101개, 2011년에는 131개, 2012년에는 181개, 2013년에는 211개, 2014년에는 220개, 그리고 2015년에는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고, 서비스 수혜 아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드림스타트 사업의 지원대상도 2007년 3,700여 명에서 2019년에는 15만 6,439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5-2-17〉 드림스타트 설치 현황 및 사례관리 아동 수

(단위 : 개소, 억원, 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설치지역	16	32	75	101	131	181	211	220	229	229	229	229	229
증가수	-	16	43	26	30	50	30	9	9	-	-	-	-
사업예산	50	98	225	301	372	462	576	632	658	668	668	677	551
아동 수	3,769	9,901	26,208	32,641	44,651	65,724	95,133	107,127	125,562	134,853	144,289	150,052	156,439
가구 수	2,465	6,516	17,141	21,699	29,332	42,387	61,630	66,551	80,102	86,681	93,298	97,739	102,4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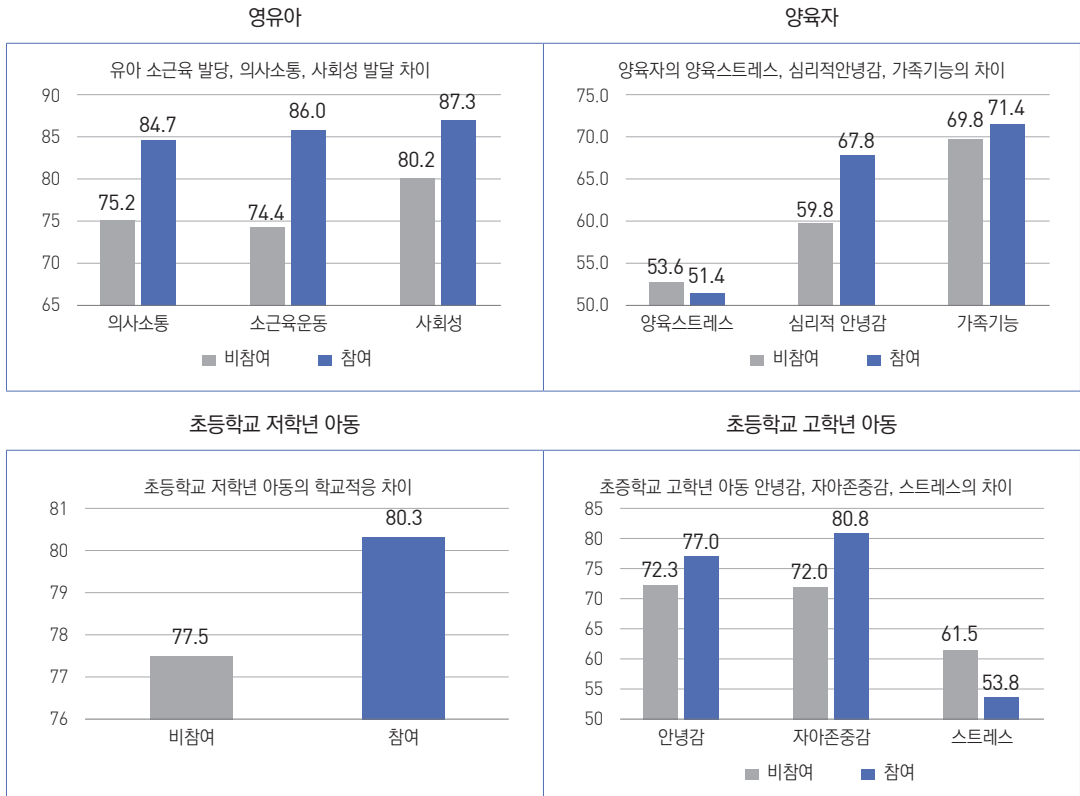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2020).

## 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내실화

드림스타트 사업은 이러한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사업의 핵심기능인 사례관리 체계의 내실화를 통해 아동 통합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 아동 및 부모들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2019년 드림스타트 사업만족도 조사(9~10월)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4개년간 아동 및 양육자의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아동 및 양육자 모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이용으로 만족도가 향상되고 있으며 애착관계 증대 등 가족기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유아의 경우는 근육 운동 발달과 의사소통, 사회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고, 학령기 아동의 경우는 문제행동, 건강증진행위, 학습습관 등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었다. 특히, 아동이 어릴수록 서비스 수혜에 대한 효과가 다른 연령대보다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모들의 양육 스트레스가 줄고, 가족기능 제고로 화목한 가정 형성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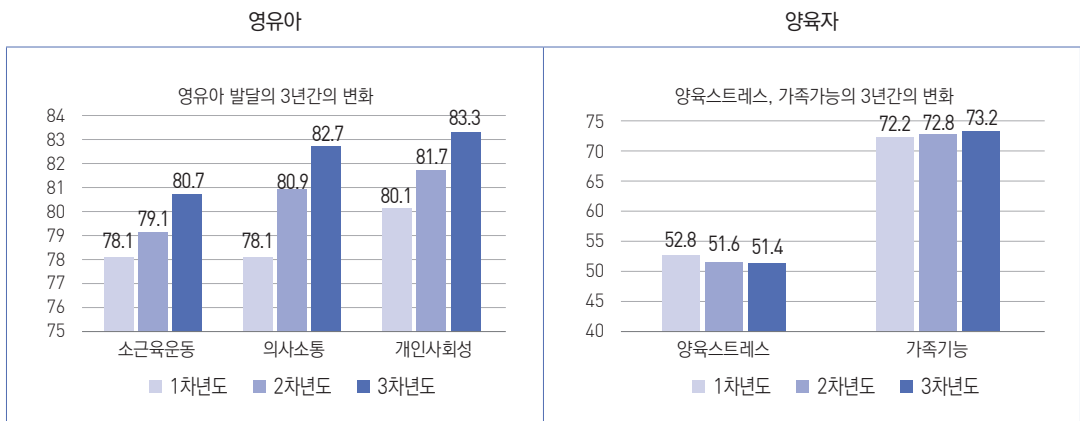
- 2017년 드림스타트사업 지역 중 99개 시·군·구의 아동 및 주 양육자 2,856명을 대상으로 효과성 검증을 실시
- 조사대상 : 229개 시·군·구 드림스타트 아동 3,559명, 양육자 3,474명
- 조사내용 : 고객만족, 성과, 서비스 충성도, 서비스 만족 등 양육자 21문항, 아동 20문항

[그림 5-2-8] 드림스타트 참여 여부에 따른 아동 발달 차이(횡단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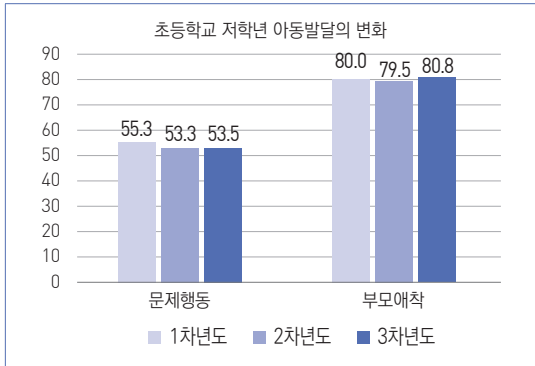


자료 :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2019), 드림스타트 사업효과성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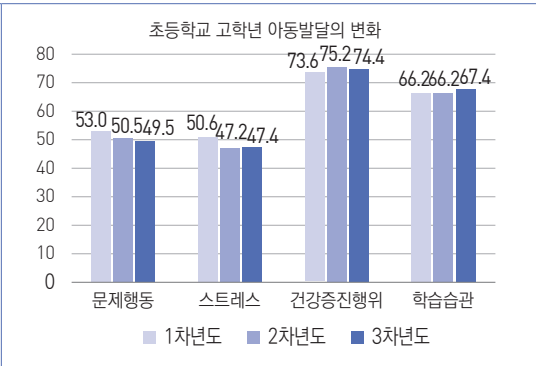
[그림 5-2-9] 드림스타트 개입을 통한 아동과 가족의 변화(종단분석 결과)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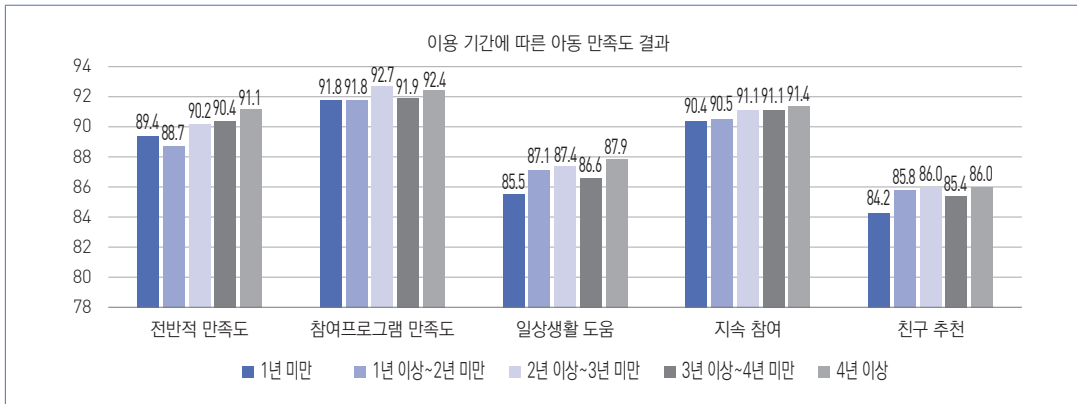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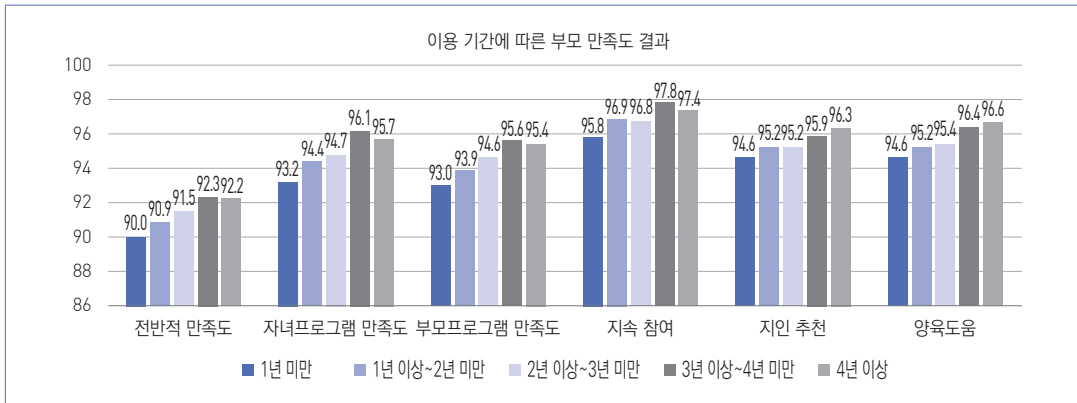
자료 :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2017). 드림스타트 사업효과성 연구.

[그림 5-2-10] 서비스 기간에 따른 만족도

아동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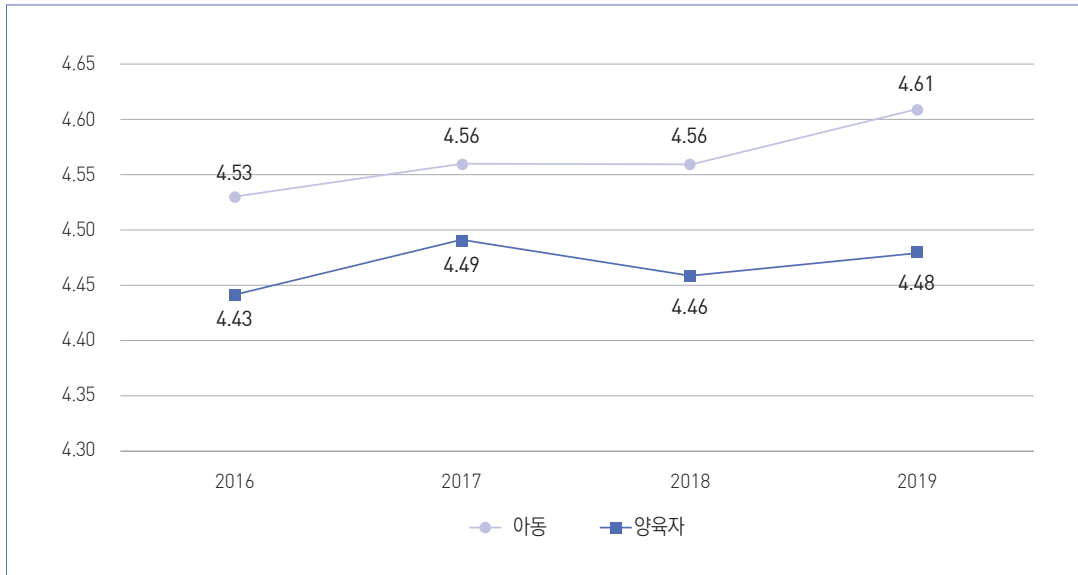


부모 만족도



자료 :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2017). 드림스타트 사업효과성 연구.

[그림 5-2-11] 최근 4개년('16~'19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자료 :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2019), 드림스타트 사업만족도 조사.

통합형 사례관리란, 서비스의 통합과 전달체계의 통합을 뜻한다. 먼저 서비스의 통합은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필요한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의 총 3개 영역에 대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달체계의 통합이란, 민간과 공공 영역의 전달체계의 통합으로 민간전문인력(아동통합사례관리사/보건, 복지, 보육 전문가)과 전담 공무원이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성적인 고위험 대상자의 경우, 개별조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자원 및 전문성의 한계에 부딪힐 수 있으며, 또한 각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사례관리가 필수적이다.

맞춤형 사례관리란 단순히 서비스를 모아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수혜적 복지 개념을 지양하고, 아동 및 가정의 상태에 따라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드림스타트 사업에서는 대상 아동과 가정을 선정할 때, 우선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 사정을 실시하여 대상을 선별하고, 선별된 시점에서부터 위기개입, 집중사례관리, 일반사례 관리, 비사례관리 대상으로 사례관리 등급을 구분하여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또 동 등급에 따라 재사정 주기 및 사례회의(사례점검) 주기를 정하여 대상자의 양육환경, 제공되는 서비스의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적절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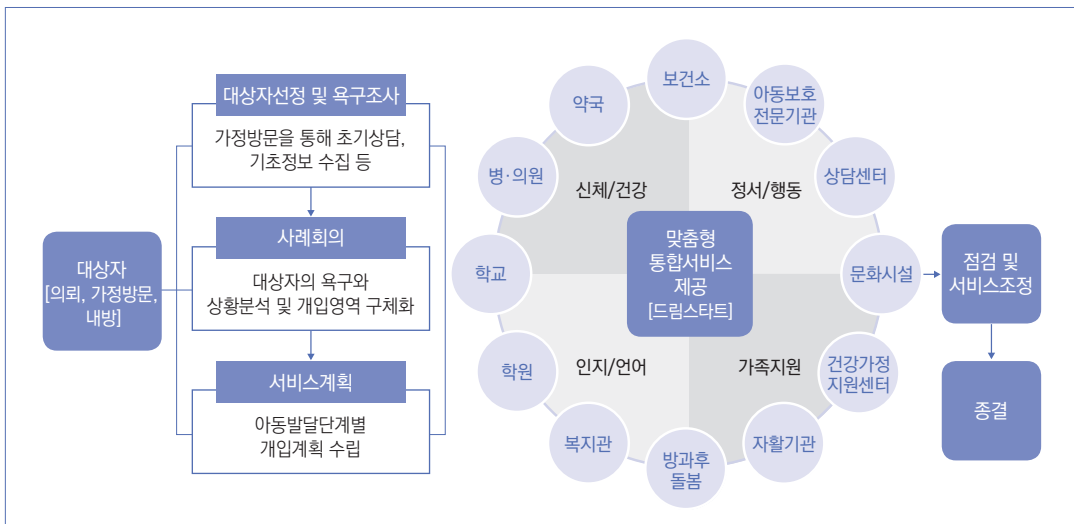
〈표 5-2-18〉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의 특징

특징	내용
예방적 사례관리	• 문제가 심각해진 뒤의 사후치료와 개입보다는,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예방과 보호의 사례관리를 지향
통합적 사례관리	• 서비스의 통합 : 신체·건강/인지·언어/정서·행동서비스 • 방법론의 통합 : 개별실천, 집단실천, 가족실천, 지역 사회실천 • 민간과 공공의 전달체계의 통합
맞춤형 사례관리	• 일률적이고 정형화된 서비스제공이 아니라, 아동 및 가족별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자료 : 보건복지부(2020).

드림스타트 사업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단계는 다음과 같이 체계화되었다. 시·군·구에 드림스타트가 설치되면, 드림스타트에서는 아동육구와 인프라 조사, 가정방문 인테이크(가정방문 인테이크는 통합서비스 제공 전 단계로서 개별아동과 가구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조사)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건강·보육·복지 등 세 분야의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들에 대한 건강검진, 예방접종, 치과치료, 심리치료 등을 제공하고,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아동들에 대하여는 방과 후 교실을 연계하거나 지역 학원들과 연계하여 학력 보충 기회 등을 제공한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핵심적인 전략 중의 하나는 ‘지역자원의 효율적인 연계’로, 드림스타트가 위치한 지역의 보건소, 복지관, 문화시설, 보육시설, 학원 등을 자원기관으로 활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례관리 절차 및 지역자원 연계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 5-2-12〉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절차 및 지역자원 연계도



자료 : 보건복지부(2020).

## 9. 디딤씨앗 통장(CDA)사업

최근 양극화 심화에 따른 빈곤층 증가, 가족해체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 아동들의 증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로 미래 성장 동력인 아동들에게까지 '빈곤의 대물림'이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의지 함양을 위하여 2007년 4월부터 '아동발달지원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 CDA)'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친근감을 갖도록 2009년 1월부터 '디딤씨앗 통장'이라는 대국민 브랜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디딤씨앗통장은 도움이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공동생활가정·장애인시설 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들에게 단순히 개인 용돈이나 물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만 18세 이후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초기비용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산형성 지원 제도이다. 보호대상아동은 만 0~17세까지,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만 12~17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아동의 저축액만큼 정부가 매칭금액을 적립하여 저축액이 두 배가 되도록 한다. 정부지원금액은 2016년까지 월 최대 3만 원 한도였으나 2017년부터 4만 원, 2020년에는 5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2011년부터 저소득 가구 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이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디딤씨앗통장으로 모아진 저축은 '학자금', '취업훈련', '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디딤씨앗통장이 기존의 기부와 다른 것은 일반 후원자의 나눔 실천에 국가가 함께 동참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반 후원자가 아동의 디딤씨앗통장에 매월 5만 원을 후원하면 국가에서 추가로 5만 원을 적립하여 총 10만 원이 아이들의 디딤씨앗통장에 적립된다. 즉, 기부한 후원금이 두 배가 되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희망 주머니' 역할을 하게 된다. 디딤씨앗통장은 단순히 자립을 위해 저축액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동들에게 목표와 계획에 맞게 돈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제교육 효과도 있으며, 아동 스스로도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사회 진출을 위한 목표 설정 및 경제적 자립 의지를 함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아동이 매월 10만 원(아동 5만 원, 국가 5만 원)을 만 0~17세까지 적립 시 2,160만 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9년 12월 말 기준, 월평균 8만 6천 원을 저축하고 있다.



〈표 5-2-19〉 연도별 디딤씨앗 통장 저축 현황

연도	지원아동 수*(명)	월평균 적립금(원)	월평균 매칭금(원)	적립금 누계(억 원)		
				아동	정부	계
2009	32,197	28,186	23,426	258	223	481
2010	34,608	29,416	22,535	377	308	685
2011	41,180	30,903	23,175	510	409	919
2012	46,703	31,792	24,057	670	527	1,197
2013	51,670	35,172	25,356	854	660	1,514
2014	56,479	36,601	26,006	1,063	808	1,871
2015	61,000	38,247	26,559	1,297	970	2,267
2016	70,417	39,196	26,485	1,564	1,151	2,715
2017	71,457	42,416	31,224	1,876	1,381	3,257
2018	81,412	46,970	32,538	2,244	1,636	3,880
2019	80,770	52,515	33,688	2,665	1,906	4,570

주 : \* 만기(18세) 후 통장보유 아동 제외, 연도말 기준.

자료 : 보건복지부(2019).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044-202-3436

## 10. 가정보호 및 시설보호사업

### 가. 아동복지시설 보호사업

정부는 보호대상아동이 가정과 같은 쾌적한 환경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후된 아동시설부터 기능보강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아동시설의 다기능화와 함께 가정 단위의 형태로 전환하여 가정 친화적 생활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2012. 8. 5.)을 통해 보육사 배치기준을 아동의 연령에 따른 기준으로 강화하여 보육사 배치를 확대하였다.

또한, 건강하고 건전한 아동 양육을 위해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임상심리상담원, 사무원, 영양사의 배치기준도 강화하였고, 자격증 기준도 사회복지사 2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아동 1인당 공간을 넓히고(3.3㎡ → 6.6㎡), 침실 1개의 정원도 현행 6인에서 3인 이하로 축소하였다.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중 사회부적응이나 정서불안 장애가 있는 아동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제행동 개선 프로그램을 2012년부터 시범적으로 시작(6억 원, 약 600명) 하였으며, 2020년에는 문제아동과 아동의 원가족 및 주양육자까지 그 대상을 확대(16억 원)하였다.

〈표 5-2-20〉 연도별 아동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도	계(현원)		양육시설		직업훈련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일시보호시설		종합시설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2008	285	17,992	242	16,706	2	69	10	477	12	257	14	341	5	142
2009	280	17,586	239	16,239	2	65	11	514	12	262	13	368	3	138
2010	280	17,119	238	15,787	2	69	11	495	12	235	14	402	3	131
2011	280	16,275	242	15,313	1	32	10	455	12	249	12	113	3	113
2012	281	15,916	243	14,700	-	-	11	497	12	256	12	335	3	128
2013	281	15,239	243	14,038	-	-	11	486	13	250	11	359	3	106
2014	278	14,630	242	13,437	-	-	10	481	12	252	11	336	3	124
2015	281	14,001	243	12,821	-	-	11	447	12	243	12	350	3	140
2016	281	13,689	243	12,448	-	-	11	485	12	230	12	356	3	170
2017	280	12,789	242	11,665	-	-	11	497	12	221	12	279	3	127
2018	279	12,193	241	11,100	-	-	11	447	12	227	12	272	3	147
2019	281	11,665	240	10,585	-	-	12	469	13	218	13	275	3	118

자료 : 보건복지부(2020). 아동복지시설현황.

시설아동을 중심으로 보호대상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자립지원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아동의 자립의지·자립기술 능력을 향상시킬뿐만 아니라 퇴소 후 실제적인 지원과 사후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으로 2008~2010년 3년간 전국 13개 시설(양육시설 11개소,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2개소)에서 4~24세의 자립연장 아동까지 자립지원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운영하였다. 이를 토대로 '자립지원표준화 프로그램(Ready?)

Action!)’을 개발하여 2011년부터 전체 아동복지시설에서 운영하고 있고, 2012년부터는 그 대상을 그룹홈, 가정 위탁아동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안(2012. 8. 5. 시행)에 자립지원 및 아동자립지원계획 수립, 전담기구설치, 자립지원추진협의회 구성의 제도화 기틀을 마련하였다. 현재 아동복지시설 생활(퇴소) 아동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자립지원서비스에는 자립지원정착금 지급, 전세자금 우선지원, 영구임대·주택 우선 분양, 자립지원시설 거주, 폴리텍 대학 입학 우선기회 부여, 뉴스타트 프로젝트/인턴십 프로그램 지원 등이 있다.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044-202-3437

## 나. 가정위탁 지원

가정위탁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정 기간 동안 가정에서 보호하는 것으로 2005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2011년 「아동복지법」을 전부 개정(2012. 8. 5. 시행)하여 가정위탁 희망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시·군·구에도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정위탁 제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2019년 말 8,359세대, 10,384명 아동이 가정위탁으로 보호되고 있다.

〈표 5-2-21〉 연도별 가정위탁 보호 현황

(단위 : 세대, 명)

연도	계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일반위탁가정	
	세대 수	아동 수	세대 수	아동 수	세대 수	아동 수	세대 수	아동 수
2007	11,622	16,200	6,975	10,112	3,651	4,850	996	1,238
2008	11,914	16,454	7,488	10,709	3,436	4,519	990	1,226
2009	12,170	16,608	7,809	10,947	3,438	4,503	923	1,158
2010	12,120	16,359	7,849	10,865	3,365	4,371	906	1,123
2011	11,630	15,486	7,463	10,205	3,351	4,260	816	1,021
2012	11,030	14,502	7,230	9,732	3,037	3,831	763	939
2013	11,173	14,584	7,352	9,829	3,068	3,803	753	952

연도	계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일반위탁가정	
	세대 수	아동 수	세대 수	아동 수	세대 수	아동 수	세대 수	아동 수
2014	11,077	14,385	7,162	9,550	3,089	3,816	826	1,019
2015	10,706	13,728	6,944	9,127	2,927	3,556	835	1,045
2016	10,197	12,896	6,642	8,578	2,773	3,348	782	970
2017	9,575	11,983	6,207	7,950	2,605	3,100	763	933
2018	8,955	11,141	5,831	7,426	2,357	2,801	767	914
2019	8,359	10,384	5,442	6,905	2,167	2,572	750	907

자료 : 보건복지부(2019). 가정위탁보호아동현황.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2003년부터 전국에 17개소의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2004년 7월 중앙가정위탁센터를 설치하여 지방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지원하고,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전문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가정위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가정에 양육보조금(연령별 월 30~50만 원 이상 권고)을 지원하고 있고, 2012년부터 위탁이 종결될 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에 준하여 자립정착금, 대학진학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권고하여 위탁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주거 및 세제혜택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일반위탁가정에 대해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 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위탁아동 1인당 150만 원의 과세공제 혜택을 위탁 부모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위탁 아동의 질병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위탁부모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의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2008년 당시 1인당 기준 100,000원의 상해 보험료가 2020년에는 68,500원으로 단가는 낮아졌지만, 담보내용은 확대(15개)되어 비용효율성 측면에서 내실을 기하고 있다.

또한 2010년 1월부터 입양·가정위탁 아동 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서 심리정서 검사·치료비를 월 20만 원 이내(심리검사비 20만 원)로 증액하였으며, 치료기관 선정 시 상담사 요건 기준에서 '한국미술치료학회'를 추가하여 심리치료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진료비 청구 부분에서 심리치료 지원사업과 관련한 교통비를 별도로 청구(월 2만 원 이내, 택시 이용 시 월 4만 원 이내)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여 이용의 편의성을 높였다.

## 다. 소년·소녀가정 아동 보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 중 부모의 사망, 질병 등 가정의 결함으로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이끌어 가는 가정을 소년·소녀가정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2019년 말 기준 전국에 10세대, 17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들에게 생계·의료보호 및 교육보호를 실시하고 있으며, 양육보조금(월 20만 원 이상 권고)을 지원함으로써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피복비, 영양급식비 및 학용품비·교통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인사와의 결연을 통해 정서적인 측면에서 생활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립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소년·소녀가정은 가까운 이웃에 거주하는 아동위원, 종교인, 지역여성지도자, 공무원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상시 의논하여 해결하도록 지원하고, 후견인, 결연 기관 담당자, 담당 공무원 등이 수시로 방문·면담하여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소년·소녀가정은 시설보호나 가정위탁에 비해 외부의 위협에 노출되어있는 보호형태이므로, 가능한 한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보호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044-202-3436

## 라.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

아동공동생활가정은 5~7인의 아동으로 가구를 구성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정서적인 안정과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형태로, 1997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04년 1월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로 편입되었다. 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 의해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가정위탁과 아동공동생활가정에 우선 배치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공동생활가정 수는 2018년 558개에서 2019년 578개로 확대되었고, 보호아동의 수도 2018년 2,872명에서 2019년 2,949명으로 증가하였다. 정부에서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표 5-2-22〉 연도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도	시설		보호인원
	신고시설	지원시설	
2009	397	290	1,993
2010	416	348	2,127
2011	460	348	2,241
2012	489	416	2,438
2013	480	416	2,481
2014	476	416	2,588
2015	480	448	2,636
2016	510	448	2,758
2017	533	448	2,811
2018	558	464	2,872
2019	578	482	2,949

자료 : 보건복지부(2019). 2019년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044-202-3437

## 마. 입양

아동이 단순한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고,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는 등 정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입양에 관한 법적·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11년 8월에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입양 절차 전반에 아동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전부 개정하고, 「입양특례법」으로 법명을 변경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이 원가정에서 우선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입양숙려제」를 도입하여, 친생부모가 아동의 출생 후 일주일 이후부터 입양동의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양부모 자격심사 강화와 가정법원 입양허가제 도입 등을 통해 입양아동의 권익보호를 강화하였다. 성인이 된 입양자들이 친가족 찾기 등을 위해 본인의 입양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양정보공개청구권도 법적으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입양특례법」은 2012년 8월부터 시행되었다.

## 1) 입양제도의 개선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따라 요보호아동의 국내·외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로 성립된다. 이에 따라 입양 성립요건이 입양신고(국외 입양은 복지부 이주허가)에서 법원의 입양허가로 강화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입양된 아동에게는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법적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입양아동의 법적 지위가 강화되었다.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 경력이 있는 자는 양부모 자격을 제한하고, 양부모가 될 자는 입양 성립 전 입양기관으로부터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입양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양부모 자격심사를 강화하였다.

친생부모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원가정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친생부모가 아동의 출생 후 1주일이 지나야 입양 동의를 할 수 있게 하여 숙려기간을 두었다. 한편, 입양 동의 전 입양기관은 친생부모가 직접 양육 시 양육정보 및 정부지원 내용, 입양의 효력 등에 대해 충분한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2007년부터 시행해 온 국내 입양 우선추진제의 법적근거를 신설 하였는데, 국내 입양 우선 추진제는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아동이 입양 의뢰된 때부터 5개월 간 국내 입양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다.

입양아동과 양부모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지원을 위해 사후관리 기간을 연장(6개월 → 1년) 하였으며 입양아동과 양부모 간 상호적응 관찰, 아동양육 정보 제공, 입양가정에 수시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시하였다. 입양기관은 입양성립 후 1년 동안 4회 이상 가정조사를 실시하고, 이 중 2회 이상 가정방문을 실시한다. 또한 입양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에게 입양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업무의 효율 및 입양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아동 및 그 친생부모, 양부모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가지도록 하였다.

## 2) 국내 입양 활성화

요보호아동의 친가정 복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지만, 귀가조치가 어려운 경우 국내 입양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국내 입양이 어려울 경우 국외 입양조치 되도록 2007년부터 국내 입양 우선 추진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국내 입양이 국외 입양을 앞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정부는 국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양가정에 대한 다양한 경제적·제도적

지원을 시행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국내 입양 중 장애아동 입양비율이 매우 낮으며, 장애아동 양육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크고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1996년부터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과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법」 개정(2003. 2. 9.)을 통해 입양아동에게 의료급여 1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입양절차 추진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17세 미만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2010년부터는 입양아동에 대한 심리치료도 지원하고 있다.

〈표 5-2-23〉 국내·외 입양 현황

(단위: 명,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국내	1,306 (51.1)	1,314 (53.9)	1,462 (59.1)	1,548 (62.8)	1,125 (59.8)	686 (74.4)	637 (54.4)	683 (64.6)	546 (62.0)	465 (53.9)	378 (55.5)	387 (55.0)
국외	1,250 (48.9)	1,125 (46.1)	1,013 (40.9)	916 (37.2)	755 (40.2)	236 (25.6)	535 (45.6)	374 (35.4)	334 (38.0)	398 (46.1)	303 (44.5)	317 (45.0)
계	2,556 (100.0)	2,439 (100.0)	2,475 (100.0)	2,464 (100.0)	1,880 (100.0)	922 (100.0)	1,172 (100.0)	1,057 (100.0)	880 (100.0)	863 (100.0)	681 (100.0)	704 (100.0)

자료 : 1) 보건복지부(2020).

2) e-나라지표(<http://index.go.kr>).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은 기존에 모든 대상자에 대해 1인당 월 55만 1천 원을 지원하였으나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차등지원제도 도입으로 2010년 중증 장애아동의 양육보조금이 월 57만 원으로, 2011년 중증 장애아동의 입양양육수당이 월 62만 7천 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또한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는 기존 연 252만 원에서 2011년 26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2012년부터 정부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1인당 지원액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심리치료 지원한도를 월 16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13세 미만 입양아동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2020년 17세 미만까지 확대되었다.

〈표 5-2-24〉 국내 입양가정 지원제도 현황

지원 내용	지원액
입양비용 지원(2007년~)	100~270만 원
양육수당(2007년~)	[만 17세 전까지] 월 15만 원/월



지원 내용		지원액
의료급여(2005년~)		(만 18세 전까지) 의료급여 1종
심리치료지원(2010년~)		(만 18세 전까지) 월 20만 원 한도/월
장애아동 (만 18세 전까지)	장애아동 양육보조금(1996년~)	월 627천 원, 월 551천 원
	의료비(1996년~)	연간 260만 원 한도

자료 : 보건복지부(2020), 아동분야 사업안내.

이밖에도 정부는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2의 출산’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입양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해 공개입양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 11월부터 입양한 공무원에 대해 20일의 입양휴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민간기업 근로자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요보호아동의 발생 예방에서부터 국내 보호 인프라 확충 등 국내가정 보호, 입양 후 사후관리 및 국민인식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홍보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요보호아동 입양 관련 국내보호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아동정책복지과 044-202-3413

## 11. 아동 급식 지원

정부는 부모의 실직 등으로 인한 경제적 빈곤 또는 부모의 질병, 사망, 가출 등 가족기능의 결손으로 발생하는 결식우려 아동에 대해 2000년 10월부터 아동급식을 실시하여 아동 건전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아동급식은 사회복지관, 민간 및 종교단체 급식소와 연계하여 교육 및 복지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제공되고 있으며, 2001년 11월부터는 국무조정실의 급식지원 확대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취학아동에 대해 조·석식, 미취학아동에 대해서는 조·중·석식을 제공하고 있다. 2005년에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업 주체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다.

2000년 사업 시작 이후 1만 5천여 명의 결식 또는 결식우려 아동에 대하여 급식을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2004년부터 방학 중, 토요일·공휴일 중식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하여 급식을 실시하게 되면서 여름방학에는 3만 9천 명에 대하여 방학 중 급식을 실시하였다. 겨울방학에는 급식지원 대상을 결식우려 아동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으로 확대하는 적극적 급식지원으로 추진방향을 전환함에 따라 학기 중 급식이 필요한 모든 아동들에게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27만여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이 지원되었다.

결식아동의 누락방지를 위해 2008년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급식 결정권한을 부여하여 지역사회에서 결식을 하는 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하였으며, 2009년에는 방학 중 급식지원 대상자조사 및 선정 주체를 담임교사를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결식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2005년 지방이양 이후 분권교부세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비로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군·구에 설치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 지원방법, 급식단가, 소요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하고 있다.

급식지원 대상자는 연중 조사하되, 전화, 서면 및 방문조사, 교사·통장·이장·반장·이웃주민·자원봉사자 등을 통해 개인별로 조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계별로 실시하고 급식지원 대상자 조사·선정(방문조사 또는 전화상담 등)시 아동의 심리적 상처 등 낙인(stigma) 방지에 유의하고 있다. 2019년 1월부터는 지리적 여건 및 방문신청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온라인(복지로)으로 아동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여 국민의 접근 편의성을 강화하였다. 아동 급식 전달 방법은 지역실정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단체급식소 급식과 인근지역의 일반음식점 급식을 적극 개발하도록 하였고, 지역의 도시락업체를 통해 도시락 배달이 불가하고, 지역여건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부식지원과 식품만 교환이 가능한 식품권 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급식 전달 방법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급식지원 대상의 확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원봉사 활성화 등 인적자원과 종교·시민단체 등의 급식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 물적 자원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이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였다. 2020년에는 아동 급식 단가를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여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표 5-2-25〉 연도별 아동 급식 지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지원 대상자	235,202	214,009	257,276	271,606	415,519	476,444	485,811	471,961	438,042	416,092	381,838	350,109	332,865	317,234	357,127	330,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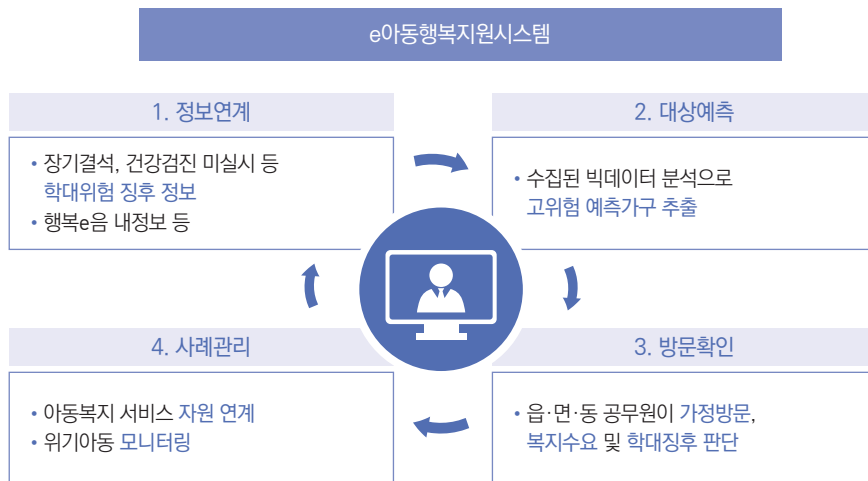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2020).

## 12. 보호대상아동 조기 발견·지원(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여러 차례에 걸쳐 다각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지속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은폐된 공간에서 의사표현이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후에야 발견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호가 필요한 가정을 선제적으로 예측 및 발굴하기 위하여 2018년 3월부터 사회보장서비스 제공을 위해 축적된 각종 정보들을 활용 및 가공하여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개통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으며 해당 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연계 또한 가능하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장기결석 여부’, ‘영유아 건강검진·예방접종 실시여부’, ‘병원기록’ 등의 정보를 모아 일정 수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추정하여 각 읍·면·동으로 자동 통지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읍·면·동으로 확인이 요구되는 아동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면, 읍·면·동 공무원은 해당 아동의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양육환경을 확인한다. 확인 결과에 따라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드림스타트 등과 같은 서비스 제공기관에 연계하며,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계 조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기아동가구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서비스 연계 조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그림 5-2-13]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추진 체계



자료 : 사회보장정보원(2018).

2018년 3월부터 시행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위기의심 아동으로 추정된 아동의 수를 살펴보면 2018년 1차부터 3차까지 55,363명, 2019년 1차부터 3차까지 68,771명이며, 2018년 4차는 만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로 대체하여 29,084명이었다. 2020년은 위기의심 아동으로 추정된 아동이 1차에 20,860명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방문조사를 중단하였으며, 다시 개시한 3차의 경우 18,891명이었다. 해당 아동에 대한 현장조사 확인율은 2018년 86.3%, 2019년 91.7%이며, 2020년은 중단한 1차를 제외한 3차의 현장조사 확인율은 100%로 나타났다.

〈표 5-2-26〉 위기의심 아동 현황

(단위 : 명, %)

구분	진행기간	전체	현장조사 완료	확인율
'18년 1차	3. 19. ~ 6. 1.	21,991	19,888	90.4
'18년 2차	6. 25. ~ 9. 14.	18,602	15,155	81.5
'18년 3차	10. 24. ~ 12. 28.	14,770	12,727	86.2
'19년 1차	1. 1. ~ 3. 29.	22,747	18,989	83.5
'19년 2차	4. 5. ~ 6. 28.	24,443	21,757	89.0
'19년 3차	7. 3. ~ 9. 30.	21,581	19,869	92.1
'19년 4차 (만3세 전수조사)	10. 1. ~ 1. 17.	29,084	29,084	100
'20년 1차	1. 6. ~ 3. 31.	20,861	6,483	31.1
'20년 3차	7. 1. ~ 11. 20.	18,891	18,891	100
계		192,970	162,843	84.4

주 : 2020년 11월 26일 기준 현황임.

자료 : 한국사회보장정보원(2020).

다음으로 현장조사 완료 현황을 살펴보면, 빈집,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대상 가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비대상)은 6,675명, 현장확인을 완료한 아동은 151,078명이었다. 이 중에서 현장조사 결과, 사례관리 또는 드림스타트 사업으로의 연계가 필요한 가정의 아동(서비스연계대상)은 4,966명이었으며 대상아동이 위기 또는 학대피해아동으로 나타나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서로 신고가 필요한 아동(위기아동 신고대상)의 수는 121명으로 확인되었다.

〈표 5-2-27〉 현장조사 완료 현황

(단위: 명)

현장조사 완료						
구분	계	비대상	현장확인	소계	서비스 연계대상	
					서비스 연계대상	위기아동 신고대상
'18년 1차	19,888	1,571	17,125	1,192	1,169	23
'18년 2차	15,155	1,103	13,394	658	651	7
'18년 3차	12,727	604	11,596	527	513	14
'19년 1차	18,989	563	17,725	701	696	5
'19년 2차	21,757	1,276	19,756	725	712	13
'19년 3차	19,869	1,385	17,805	679	673	6
'19년 4차 (만3세 전수조사)	29,084	0	28,871	213	185	28
'20년 1차	6,483	173	6,410	170	170	0
'20년 3차	18,891	0	18,669	222	197	25
계	162,843	6,675	151,078	5,087	4,966	121

주: 1) 2020년 11월 26일 기준 현황임.

2) 비대상: 빈집, 장기입원 등 대상가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현장확인: 아동의 가정 및 생활환경이 양호하여 서비스연계,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

4) 서비스연계대상: 현장조사 결과 사례관리 또는 드림스타트 사업 연계가 필요한 가정.

5) 위기아동 신고대상: 대상아동이 위기, 학대피해아동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신고가 필요한 경우.

자료: 한국사회보장정보원(2020).

## 제3장

## 청소년 상담·복지활동

## 1. 상담서비스

## 가. 청소년상담서비스 배경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성장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과도기적 발달단계로 기본적으로 불안정하고 변화무쌍한 심리적 특성을 지닌다.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빈번하게 경험하는 청소년의 심리적 고통과 문제를 방지할 경우 성인기에 악화된 형태로 나타나 개인과 사회에 파괴적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특히 한국 사회 내 청소년들은 최근 급변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가족갈등, 또래와의 갈등, 학업 문제, 사회적 압력 등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다양한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어려움들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데 큰 몫을 차지하고 있으며,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예방과 개입 및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육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당시 체육부)'가 청소년상담정책의 일환으로 1990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한 '청소년종합상담실(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여 2020년 현재 17개 시·도와 212개 시·군·구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또한 1990년에 설치된 체육부 청소년종합상담실은 1993년에 '청소년대화의 광장(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법인화됨으로써 중앙지도 차원의 상담시설과 지역 중심의 상담지원을 위한 기관설치 및 운영의 기본 틀은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실과 시·군·구 청소년상담실, 그리고 '한국청소년상담원(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과 학부모 및 지도자 대상의 제반 상담 서비스 제공과 각종 교육 및 연수, 학술 및 연구 활동, 각종 매체상담 서비스 제공 등 지역사회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양한 심리상담 서비스의 개발과 함께 이러한 서비스의 직·간접 제공에 힘써왔다. 그러던 중 2005년 '국가청소년위원회' 발족과 함께 '청소년보호위원회' 중심으로 추진된 기존의 보호 업무와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청소년 육성업무가 통합되어 운영되는 등 청소년정책

환경의 일대 변혁이 단행되면서, 기존 청소년상담 기관의 위상과 역할 및 조직에 있어 큰 변화가 일어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종합상담실은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그 역할과 기능이 새롭게 확대되었다. 또한 2012년 8월 2일부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라 한국청소년상담원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는 청소년 전문상담 뿐만 아니라 청소년 학업중단·취약계층·인터넷 중독 등 청소년 상담복지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기능이 확대되어 온 것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 급속한 문화적 변동, 전통적 가치관과 가정기능의 붕괴 등 사회·문화적인 변화로 인해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고통은 심화되었으나 이를 예방하고 개입할 수 있는 가정과 학교 등의 1차적 사회안전망 기능은 오히려 약화되었고, 이로 인해 정신건강문제(우울증, 자살위험), 가출, 폭력피해(성·가정·학교),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학교 밖 청소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위기청소년들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의 청소년상담 활동에 위기청소년 대상 지원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를 구축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청소년상담 활동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 기존 활동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청소년 문제해결 및 예방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상담기법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 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교육 연수 및 상담 실적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제도를 통해 많은 청소년상담 전문 인력을 배출하였다. 또한 청소년상담사를 대상으로 전문 영역별 보수교육을 통해 실제 청소년 상담업무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일선에서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그밖에 지속적인 또래상담지도자 양성교육과 활성화 대회를 개최하여 또래상담자 네트워크의 안정적 운영을 꾀하였으며, 품성계발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전국적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자료 및 지침서를 개발함으로써 질적으로 향상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 외에도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에 대한 과의존을 예방·해소하기 위한 상담사의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고품질의 양성교육을 지원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지도를 위한 꿈드림 프로그램 활용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위기상태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좀 더 질 높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상담사업은 전문상담의 시범적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으며,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사이버상담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체계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는 청소년상담 중추기관으로서 지속적인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상담복지 전문기관 관계자 회의를 통해 상담복지 전문기관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표 5-3-1〉 2019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주요 교육연수 실적

(단위: 명)

구분		수료인원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3,303
또래상담지도자 및 전문지도자		7,030
품성계발지도자 및 전문지도자		1,188
부모교육지도자 및 전문지도자		766
센터직원 직무연수		725
센터직원 이력화 직무연수		18,236
사업별 직무 연수	인터넷·스마트폰중독 대응 상담전문인력 양성교육	1,420
	꿈드림센터 전문인력 양성과정	1,005
	자살예방교육 지도자	306
총계		33,979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20).



## 다. 시·도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현황과 실적

### 1)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황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12년 8월 2일 전부개정 시행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시·도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광역자치단체의 청소년상담전문기관으로서 지역의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청소년전화 1388’ 운영,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운영, 찾아가는 상담 전문가인 청소년동반자 운영,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사업,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심리상담 및 놀이치료, 포래상담사업, 학부모상담자원봉사회 운영, 청소년상담관련 심리교육, 지도자 양성, 학부모의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정보제공과 자문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990년에 대구, 광주에 최초로 ‘청소년종합상담실’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1991년도에 부산(현재 진구), 대전(현재 동구), 충북(청주), 1992년도에 인천(현재 남구), 전북(전주), 1993년도에 경기(수원), 강원(춘천), 경남(창원), 1994년도에 충남(천안), 전남(순천, 현재 무안), 경북(안동), 1995년도에는 제주(제주), 1997년도에 서울(중구), 1999년 울산(중구)에 설치되었다. 이후 2006년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변경되었다가 2012년 8월부터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다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20년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다.

### 2)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황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생활권 중심의 실질적인 청소년상담체제를 구축하고자 2020년 기준 212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대부분 시·도 및 시·군·구의 지방비로 운영재원을 지원받고 있다. 지역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초자치단체수 대비 설치비율은 전국 93.5%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물리적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상담서비스를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상담과 지역사회 내 전문 인력 활용 등의 통합적이고 문제영역별 전문화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5-3-2〉 2020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현황

(단위: 개소(개), %)

지역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도	17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시·군·구	219	24	15	8	9	5	2	5	0	32	12	12	15	14	22	21	21	2
계	236	25	16	9	10	6	3	6	1	33	13	13	16	15	23	22	22	3
설치율	93.5	96.2	94.1	100.0	81.8	100.0	50.0	83.3	100.0	100.0	68.4	100.0	100.0	100.0	100.0	91.7	100.0	100.0

주: 설치율은 지방자치단체 수 대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비율.

자료: 여성가족부(2020).

### 3)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활동

2019년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안전망 서비스지원 실적은 6,456,858건으로 2018년 이용건수(6,121,586건)보다 5.4%p만큼 증가하였다. 성별로는 남자 3,019,376건(46.7%), 여자 3,437,482건(53.3%)으로 남자 이용자보다 여자 이용자가 더 많았다.

2019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안전망 서비스 유형별 추세를 살펴보면, ‘개별지원서비스’가 30.4%(1,964,491건)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집단프로그램’ 23.6%(1,525,209건), ‘그룹지원서비스’ 20.4%(1,314,917건), ‘개인상담’ 13.3%(859,13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과 성인이용자를 비교하면 ‘청소년’이 82.2%(5,309,162건), ‘성인’이 15.7%(1,012,597건)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 이용자 중 ‘초등학생’ 28.3%(1,826,300건), ‘중학생’ 26.0%(1,676,132건), ‘고등학생’ 21.0%(1,353,914건), ‘대학생’ 3.0%(192,726건), ‘근로청소년’ 0.4%(23,808건), ‘무직청소년’ 3.7%(236,282건)로 초등학생 이용자가 가장 많았다. 성인 이용자는 ‘학부모’가 9.8%(630,1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지도자’가 5.9%(382,434건), ‘기타’가 2.1%(135,099건)이었다.

〈표 5-3-3〉 2019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상별 상담실적

(단위: 건)

구분	대상별										
	초	중	고	대	근로 청소년	무직 청소년	학부모	청소년 지도자	기타	소계	
개인상담	257,209	238,350	186,644	26,782	4,056	41,161	84,416	18,780	1,740	859,138	
집단프로그램	712,642	429,560	270,659	13,066	424	7,222	51,080	32,564	7,992	1,525,209	
전화상담	17,063	39,292	64,482	30,386	2,562	24,120	99,440	92,980	72,304	442,629	
심리 검사	개별	27,554	34,869	24,317	2,873	362	3,916	8,309	458	214	102,872
	집단	22,971	32,710	24,544	2,060	22	639	3,273	1,569	990	88,778
사이버 상담	메일	2,404	12,972	12,747	3,410	27	1,793	807	183	1,962	36,305
	채팅	3,975	10,686	25,881	13,934	1,213	10,908	1,225	669	5,264	73,755
사업수행 프로그램	16,154	13,604	13,705	470	67	727	739	829	321	46,616	
지원 서비스	개별	401,007	471,001	393,663	55,711	11,405	123,358	330,643	164,114	13,589	1,964,491
	그룹	364,997	392,451	336,898	43,953	3,650	22,325	50,018	70,009	30,616	1,314,917
기타상담	324	637	374	81	20	113	213	279	107	2,148	
합계	1,826,300	1,676,132	1,353,914	192,726	23,808	236,282	630,163	382,434	135,099	6,456,858	

주: 기타는 부모 및 가족을 제외한 교사, 지역사회 보호자 등을 의미함.

자료: 청소년안전망 통계시스템(2019).

2019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자의 문제유형별 상담실적을 볼 때 ‘대인관계’ 27.4% (1,408,054건)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정신건강’ 16.1%(826,767건), ‘학업·진로 문제’ 13.4%(690,481건), ‘일탈·비행’ 11.4%(584,748건), ‘컴퓨터·인터넷 사용’ 8.6% (443,856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과 마찬가지로 ‘대인관계(전년도 26.3%)’, ‘정신건강(전년도 14.6%)’, ‘학업·진로 문제(전년도 16.6%)’에서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문제를 호소하는 청소년의 경우, 또래와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친구관계 고민’이 82.5%로 가장 많았고, ‘따돌림 및 왕따’ 6.4%, ‘이성교제’ 1.5%, ‘교사와의 관계’ 1.4%, ‘어른과의 관계’ 1.0% 순이었다. 정신건강 문제의 세부유형 빈도를 살펴보면, ‘우울·위축 문제’가 32.9%로 가장 많았고, ‘자살관련 문제’가 16.8%, ‘강박·불안 문제’가 14.5%, ‘자해 문제’ 9.5%, ‘충동(분노) 조절 문제’ 7.0% 등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겪는 학업 및 진로의 세부유형

빈도를 살펴보면, '진로정보탐색' 40.2%, '학교생활부적응' 15.1%, '학업흥미·학업 동기 부족' 14.9%, '시험불안·학업스트레스' 6.4%, '진로의식부족' 6.3%, '학습능력 부족' 5.2% 순이었다. 그밖에 일탈 및 비행 문제의 세부유형 빈도를 살펴보면, '학교폭력' 44.4%, '금품갈취·절도·도박' 15.9%, '음주·흡연·약물오남용' 7.8%, '가출' 6.1%, '비행친구와 어울림' 5.4%, '학교 외의 폭력' 5.1%, '늦은 귀가·잡은 외박' 1.4% 순이었다.

〈표 5-3-4〉 2019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문제유형별 상담실적

(단위: 건)

구분	가족	일탈 및 비행	학업/진로	성	성격	대인 관계	정신 건강	생활 습관/외모	컴퓨터/정보 인터넷 사용	정보 제공	법률 정보	활동	기타	합계	
개인 상담	85,264	95,881	117,452	13,550	85,059	211,067	172,443	7,964	63,738	3,304	176	2,809	431	859,138	
집단 상담	42,822	218,677	179,211	24,173	51,533	610,451	164,020	3,562	164,684	17,362	2,170	46,101	443	1,525,209	
전화 상담	30,195	30,876	37,054	10,887	15,572	60,751	51,455	3,267	19,051	149,197	1,144	4,260	28,920	442,629	
심리 검사	개별	8,611	10,054	15,313	1,232	10,467	19,753	19,326	530	17,046	409	17	46	68	102,872
	집단	2,046	3,483	38,708	0	18,500	10,127	7,965	16	6,852	374	0	707	0	88,778
사이버 상담	메일	2,925	956	8,142	2,022	1,374	11,018	5,474	1,670	273	2,217	109	59	66	36,305
	채팅	8,116	1,302	9,790	2,585	3,521	16,477	19,838	1,297	562	3,310	223	548	6,186	73,755
사업수행 프로그램	965	7,339	7,720	323	1,959	14,473	1,597	163	8,876	1,021	5	2,175	0	46,616	
자원서비스 (개별)	202,633	216,031	276,739	28,449	152,749	453,370	384,325	18,716	162,682	51,764	894	15,215	924	1,964,491	
기타 상담	225	149	352	28	143	567	324	23	92	197	3	33	12	2,148	
총합계	383,802	584,748	690,481	83,249	340,877	1,408,054	826,767	37,208	443,856	229,155	4,741	71,953	37,050	5,141,9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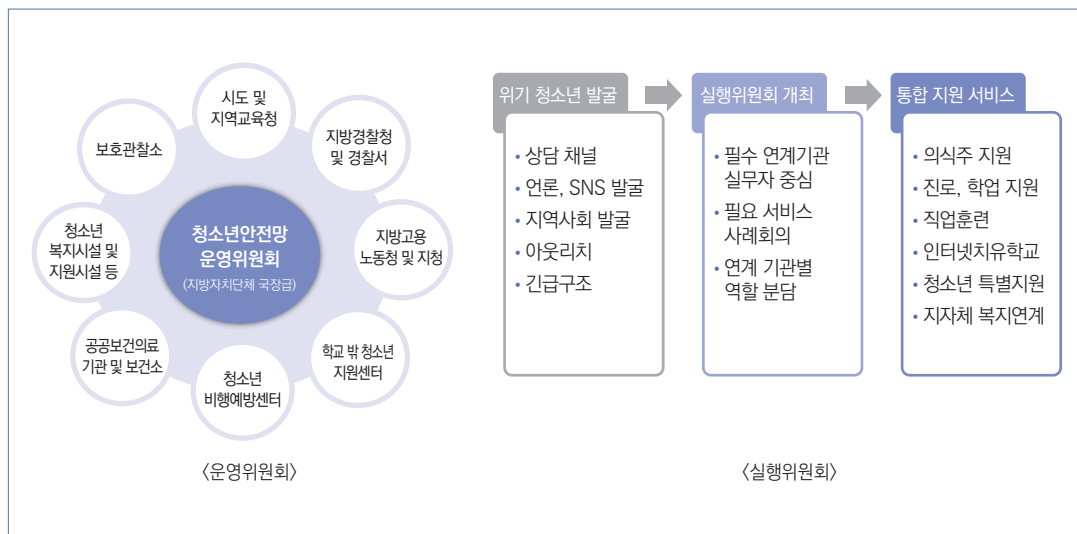
주 : 집단지원서비스의 경우, 문제유형별 상담실적을 따로 산출하지 않음.

자료 : 청소년안전망 통계시스템(2019).

##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지속적인 이혼율 상승 및 경기침체로 인한 가장의 실직 등으로 가정해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통적 가족 기능 약화에 따라 경제적·심리적으로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청소년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서비스 제공 기관은 지역별로 인프라의 편차가 있거나 상호협력체계가 부재하여 대상자 조기발견과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개별화된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정신건강문제’, ‘가출’, ‘폭력피해’,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의료·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그림 5-3-1]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체제도



자료 : 여성가족부(2019).

청소년안전망 사업은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위기청소년에 대한 전화상담, 구조, 보호, 치료, 자립, 학습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안전망 사업은 2019년 전국 17개 시·도 및 212개 시·군·구의 236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168,377명의 위기청소년에게 3,279,408회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연계하였다. 더불어 청소년안전망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연계망의 범위를 민간사회로 확대하여 가출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PC방, 노래방, 찜질방 등의 업소를 주축으로 위기청소년의 발견·긴급구조 및 보호서비스 등을 제공해왔고, 점차적으로 의료, 법률, 자활 등의 전문분야에서도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위기청소년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1388청소년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1388 청소년지원단'은 민간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담당하며 청소년안전망의 민·관 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청소년안전망 서비스 이용 실인원은 구체적으로 남자 청소년이 49.0%(82,548명)이며 여자 청소년이 51.0%(85,829명)로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이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5〉 연도별 청소년안전망 서비스 이용인원

(단위: 명)

연도	남자	여자	합계
2008	40,977	40,025	81,002
2009	47,825	50,195	98,020
2010	67,035	61,391	128,426
2011	77,836	67,540	145,376
2012	78,900	70,407	149,307
2013	94,901	88,427	183,328
2014	122,681	119,549	242,230
2015	113,482	111,310	224,792
2016	95,783	90,553	186,336
2017	90,779	87,349	178,128
2018	85,388	87,610	172,998
2019	82,548	85,829	168,377

자료 : 청소년안전망 통계시스템(2019).

청소년안전망을 통해 청소년에게 지원된 서비스를 살펴보면, 전체 3,279,408건으로 2018년 대비 10.0% 증가하였다. 서비스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담 및 정서적 지원이 59.3%로 가장 많이 지원된 서비스로 나타났고, 기초생활 및 경제적 지원이 19.5%,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1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3-6〉 연도별 청소년안전망 지원서비스 이용건수

(단위: 건)

연도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사회적 보호	기초생활 및 경제적 지원	교육 및 학업지원	자활 지원	의료 지원	법률자문 및 권리구제 지원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합계
2008	286,069	30,497	80,857	10,740	2,754	5,759	1,362	16,243	434,281
2009	504,540	43,517	109,428	18,210	3,387	5,431	1,283	29,793	715,589
2010	882,001	62,456	225,721	84,535	11,544	6,254	1,728	129,255	1,403,494
2011	1,102,858	64,147	237,072	146,621	18,565	8,513	4,981	191,135	1,773,892
2012	1,094,027	67,300	228,533	172,502	15,486	6,872	1,409	189,707	1,775,836
2013	1,207,143	53,946	255,286	101,809	15,475	5,036	3,749	278,829	1,921,273
2014	1,249,266	68,958	246,078	99,013	20,317	14,391	2,487	180,879	1,881,389
2015	1,288,115	61,151	311,197	80,118	20,703	4,966	1,803	232,547	2,000,600
2016	1,363,329	80,908	352,116	105,745	9,231	9,322	1,644	400,269	2,322,564
2017	1,566,866	71,396	417,669	84,188	18,138	11,404	1,986	388,194	2,559,841
2018	1,802,537	100,715	531,865	103,778	12,023	13,170	3,413	413,958	2,981,459
2019	1,943,644	93,958	638,904	88,982	32,939	17,373	3,259	460,349	3,279,408

자료 : 청소년안전망 통계시스템(2019).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3, 6277

### 3. 청소년상담 1388

2005년 4월 27일, 국가청소년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청소년 긴급전화 1388, 가출청소년 상담전화 1588-0924,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상담전화 및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상담전화 등을 1388로 통합하고, 청소년의 생활환경 변화와 발맞춰 모바일(2007년)과 사이버(2011년) 등의 상담매체를 추가하여 청소년안전망의 관문으로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상담 1388’은 청소년은 물론, 학부모, 교사 등 일반 국민 누구나 청소년을 위하여 이용하는 상담채널로서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원봉사 및 수련활동 정보제공, 인터넷 중독치료 등 청소년관련 모든 문제에 대해 365일 24시간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상담 1388 서비스 제공 수는 2005년 9월 통합 이후 20,777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6년도 98,466건으로 증가하였고, 이후 모바일과 사이버상담을 합하여 2019년에는 902,294건으로 증가하였다. 2020년은 17개 시·도 및 212개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국 236개 센터에서 청소년전화 1388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바일은 문자와 카카오톡, 사이버는 인터넷 채팅 및 게시판상담 등을 통하여 청소년상담 1388을 운영하고 있다.

〈표 5-3-7〉 2019년 청소년상담 1388 주요 실적

(단위: 건)

구분	실적		증감	
	2018년(A)	2019년(B)	B-A	%
청소년상담 1388 이용실적(상담건수)	877,937	902,294	24,357	2.8

자료: 청소년안전망 통계시스템(2019).

한편, 청소년상담 1388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폰 앱(APP), 카카오톡 배너, 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추진했으며, 인기드라마의 배우를 활용하여 제작한 홍보영상을 페이스북, 트위터, 편의점 등의 다양한 시설 및 매체를 통하여 송출하는 등 전략적인 홍보를 전개하였다.

〈표 5-3-8〉 연도별 청소년상담 1388 호소문제 유형별 이용건수

(단위: 건)

연도	가족	일탈/ 비행	학업/ 진로	성	성격	대인 관계	정신 건강	생활 습관/ 외모	인터넷 사용	근로	정보 제공	법률 정보	활동	기타	합계
2011	48,469	48,361	96,925	27,368	18,999	107,020	36,643	18,257	20,275	-	184,264	1,500	7,512	69,638	685,231
2012	45,703	41,610	58,147	25,361	17,816	103,236	46,021	12,361	17,727	-	224,768	1,763	8,215	72,327	675,055
2013	45,618	37,308	81,103	29,451	19,000	105,574	49,615	11,513	17,624	-	251,748	1,969	6,463	71,895	728,881
2014	59,072	37,885	93,708	30,060	21,691	135,286	60,135	12,742	19,788	9,715	188,712	806	6,549	75,132	751,2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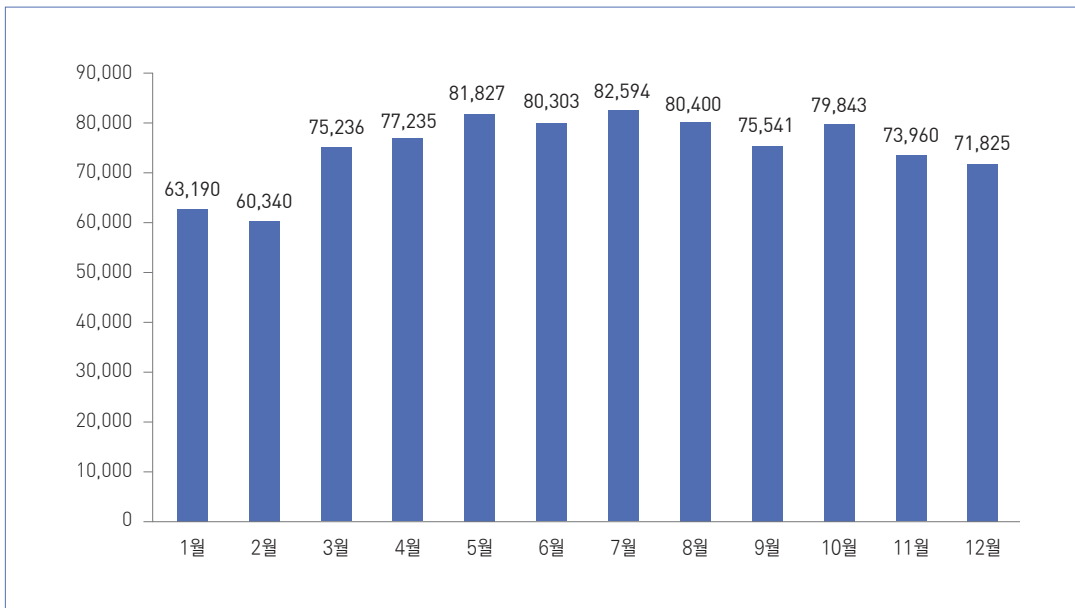
연도	가족	일탈/비행	학업/진로	성	성격	대인관계	정신건강	생활습관/외모	인터넷사용	근로	정보제공	법률정보	활동	기타	합계
2015	109,623	32,777	89,934	31,802	27,064	140,437	77,126	18,161	24,259	6,372	135,926	1,480	11,351	66,185	772,497
2016	126,701	38,408	98,222	29,200	29,003	145,958	92,597	15,829	17,451	4,936	143,386	1,786	11,041	78,930	833,448
2017	94,470	39,471	101,340	29,649	29,583	157,171	117,590	16,403	22,480	6,541	167,616	2,268	17,011	61,077	862,670
2018	101,372	41,120	98,797	30,528	27,032	157,056	150,229	15,658	19,529	16,216	151,800	2,174	12,257	54,169	877,937
2019	81,745	38,745	110,739	25,683	36,166	149,686	162,986	16,135	23,957	25,697	164,510	1,853	10,227	54,165	902,294

주 : 상담유형 중 근로는 2014년부터 별도 집계함.

자료 : 여성가족부(2020).

[그림 5-3-2] 2019년 청소년상담 1388 월별 이용실적

(단위 : 건)



자료 : 청소년안전망 통계시스템(2019).

## 4.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위기청소년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더라도 상담에 대한 동기가 낮아 상담이나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자격과 경험을 갖춘 청소년상담전문가가 상담 및 심리, 정서적 지지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청소년의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지원하는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 후반,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위기청소년의 문제해결을 돕고 위기요인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현장중심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계에 힘쓰고 유기적인 관계형성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동반자(Youth Companions)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였다. 청소년 동반자들은 위기청소년에게 각종 상담, 심리·정서적 지지, 자활 지원, 학습·진로 지도, 문화체험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05년도에 4개 시·도(서울·경기·광주·경남)에서 시범운영을 통해 청소년동반자 223명이 활동하였고, 2008년도에는 16개 시·도로 확대되어 운영되면서 청소년동반자도 470명으로 증가하였다. 2019년에는 1,313명의 청소년동반자가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배치되어 활동함에 따라 43,246명의 청소년이 지원받았다.

이와 같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해 보다 많은 고위기 청소년들이 개인 특성과 필요에 따른 수준 높은 상담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표 5-3-9〉 연도별 청소년동반자 사업 운영 현황

(단위: 명)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청소년동반자 수	470	1,270	880	880	980	985	1,000	1,044	1,066	1,146	1,261	1,313
수혜 청소년 수	14,510	24,515	25,675	26,324	31,226	31,190	33,471	34,775	35,710	38,456	41,392	43,246

자료 : 여성가족부(2019).

## 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

### 가. 또래상담 사업 개요

또래상담 사업은 교우관계 증진을 목적으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개발된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994년부터 개시되었다. 청소년 교육 및 상담 현장에서 효과를 인정받은 또래상담은 2012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2012. 2. 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학교폭력 예방 또래상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2020년 현재 전국 7,117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표 5-3-10〉 2020년 또래상담 사업 실적

구분	또래상담 운영학교	또래상담 지도교사	또래상담자
2020년	7,117개교	3,041명	301,359명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20).

### 나. 또래상담 사업 추진현황

1994년에 처음 시작된 또래상담 사업은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보급되어 오다가 2012년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등 범정부차원의 학교폭력 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로 확대되었다.

또래상담의 취지는 학교에서 함께 생활하는 또래상담자의 활동을 통한 학교폭력 조기 발견 및 예방에 있으며, 교사나 부모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발견하고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래상담 지도자 및 또래상담자 양성을 위해 지도자 지침서 제작 및 또래상담 홈페이지<sup>4)</sup>를 운영하여 관련 정보를 현장과 공유하고 있으며, 또래상담자용 스마트수첩을 개발하여 또래상담자 스스로 상담활동을 쉽고 효율적으로 기록·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4) 또래상담 홈페이지: <http://www.peer.or.kr/>.

확산으로 인해 집합교육이 원활하지 않아 지도교사 양성체계를 온라인으로 확대하였으며, 또래상담자 양성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와 또래상담자 대상 비대면 활동 안내 매뉴얼을 신규 개발 및 보급하였다. 또한 온라인 또래상담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 다. 또래상담 교육 프로그램 및 사업 효과

또래상담은 일정시간 이상의 상담훈련을 받은 청소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를 조력하는 상담활동으로, 또래상담 동아리를 통해 서로 돕고 배려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청소년 자치활동이다. 또래상담자는 학교 내에서 따돌림, 학교폭력 등 어려움을 겪는 친구를 발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조력활동이 가능하도록 훈련받는다. 또래상담 교육 프로그램은 12시간 과정의 기본교육 및 이를 이수한 또래상담자들을 대상으로 8시간 과정의 심화교육이 운영되고 있다.

또래상담 사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또래상담자 및 내담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있다. 2020년 또래상담자를 대상으로 공감, 의사소통, 이타성, 리더십, 학교폭력 인지능력, 학교폭력 대처능력을 살펴본 결과 모든 영역에서 프로그램 실시 전(81.159점)의 점수 대비 실시 후(85.949점)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또래상담자에게 상담을 받은 내담자를 대상으로 또래관계 만족도, 학교생활 적응능력 등 학교생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역시 프로그램 실시 전의 점수(73.69점)보다 실시 후의 점수(77.20점)가 높게 나타나 참여자 모두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11〉 2020년 또래상담 사업 효과분석(또래상담자 역량)

(단위: 점)

구분		사전(A)	사후(B)	변화량(B-A)
하위 요인	공감능력	83.628	88.805	5.178
	의사소통능력	79.687	85.202	5.515
	이타성	80.166	85.527	5.362
	리더십	79.496	84.576	5.080
	학교폭력 인지능력	81.480	84.901	3.420

구분		사전(A)	사후(B)	변화량(B-A)
하위 요인	학교폭력 대처능력	82.499	86.684	4.184
전체		81.159	85.949	4.790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20).

〈표 5-3-12〉 2020년 또래상담 사업 효과분석(내담자 학교생활 만족도)

(단위 : 점)

문항	사전(A)	사후(B)	변화량(B-A)
또래관계 만족도	73.07	76.15	3.08
학교생활 적응능력	74.3	78.25	3.95
전체	73.69	77.20	3.52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20).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제5부

제6부

제7부

제8부

제9부

제10부

부록

## 제 4 장

## 청소년의 건강

## 1. 청소년의 체격과 체력

2019년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만 6~17세)의 체격검사 결과, 17세의 평균 신장은 남학생이 173.8cm, 여학생이 161.2cm로 2018년 남학생 173.6cm, 여학생 160.9cm와 비교할 때, 남학생은 0.2cm, 여학생은 0.3cm만큼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17세 청소년의 평균 신장을 10년 전인 2009년과 비교하면 남학생은 동일하며, 여학생 0.1cm만큼 증가하였다. 2019년 연령별 체격의 성차를 살펴보면, 6~9세까지는 대체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신장이 약 1cm 이상 크지만, 10세부터 11세까지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평균 신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12세가 되면서부터 다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평균 신장이 커지기 시작하여 15세가 되면 11cm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1〉 성별·연령별 신장의 추이

(단위: cm)

측정 연도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0	120.1	118.9	125.8	124.9	131.3	130.1	136.6	136.0	141.9	142.3	148.1	149.2
2005	120.6	119.3	126.5	125.3	132.0	131.0	137.3	137.1	143.0	143.7	149.1	150.3
2006	121.7	120.2	127.1	125.8	132.6	131.5	138.7	138.3	143.5	144.4	150.0	150.9
2007	121.6	120.4	127.4	126.1	132.9	131.8	138.6	138.4	143.7	144.7	150.4	151.1
2008	122.0	120.7	127.4	126.2	133.1	131.7	138.7	138.5	143.5	144.6	150.2	151.0
2009	121.9	120.6	127.7	126.2	133.0	132.0	138.3	138.0	143.9	144.7	150.5	151.0
2010	121.8	120.6	127.7	126.4	133.1	132.0	138.4	138.1	144.0	144.6	150.2	151.2
2011	121.7	120.5	127.8	126.4	133.5	132.3	138.7	138.4	143.9	144.8	150.4	151.1

연도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12	121.6	120.2	127.8	126.5	133.4	132.3	139.1	138.5	144.1	144.9	150.6	151.1
2013	120.6	119.6	125.5	124.4	131.7	130.4	137.1	136.6	142.7	143.2	148.8	149.5
2014	120.5	119.4	125.9	124.5	131.6	130.3	137.1	136.4	142.5	142.7	148.9	149.8
2015	120.5	119.6	125.7	124.5	131.5	130.5	137.1	136.5	142.9	142.9	148.9	149.8
2016	120.5	119.3	125.7	124.5	131.8	130.2	137.4	136.6	142.7	143.1	149.2	150.1
2017	120.4	119.3	125.7	124.6	131.6	130.6	137.1	136.5	142.9	143.3	149.5	150.1
2018	120.9	119.8	125.7	124.6	131.7	130.5	137.4	136.6	143.0	143.2	149.6	150.0
2019	121.1	119.3	126.0	124.6	132.0	130.6	137.8	136.6	143.1	143.6	149.7	150.0
연도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0	154.9	154.4	161.8	157.3	167.2	158.9	170.4	159.5	172.2	160.2	173.0	160.5
2005	156.4	154.9	163.2	157.9	168.5	159.3	171.6	160.2	172.8	160.7	173.6	161.0
2006	158.1	156.1	164.2	158.2	168.7	159.5	171.8	160.4	173.0	160.7	173.9	161.1
2007	158.3	156.1	164.2	158.3	169.2	159.7	172.0	160.4	173.1	160.7	173.9	160.9
2008	158.1	155.9	164.3	158.4	169.1	159.7	172.0	160.5	173.3	160.8	173.9	161.2
2009	157.8	155.7	164.3	158.0	169.1	159.6	171.9	160.4	173.2	160.7	173.8	161.1
2010	157.9	155.5	164.2	158.2	168.9	159.6	171.8	160.6	173.0	160.7	173.7	160.9
2011	158.2	155.8	164.6	158.1	168.9	159.5	171.8	160.3	173.1	160.7	173.7	161.1
2012	158.2	155.7	164.3	158.0	168.7	159.3	171.8	160.2	172.9	160.6	173.6	160.9
2013	156.3	154.8	163.0	157.6	167.9	159.2	171.2	160.0	172.6	160.5	173.2	160.8
2014	156.4	155.1	163.4	157.7	168.1	159.5	171.3	160.2	172.7	160.5	173.4	160.9
2015	156.6	155.4	163.7	158.1	168.4	159.4	171.5	160.4	172.7	160.5	173.4	160.8
2016	157.2	155.3	164.0	158.4	168.9	159.7	171.6	160.3	172.8	160.6	173.5	160.8
2017	157.3	155.5	164.2	158.4	168.7	159.8	171.8	160.5	172.9	160.6	173.3	160.7
2018	157.2	155.5	164.3	158.4	169.1	159.9	171.8	160.8	173.1	160.9	173.6	160.9
2019	157.2	155.6	164.7	158.5	169.3	160.1	172.2	161.0	173.3	161.3	173.8	161.2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제5부  
제6부  
제7부  
제8부  
제9부  
제10부  
부록

2019년 우리나라 청소년의 체중은 17세 남학생 평균 71.0kg, 여학생은 57.8kg로 2018년 남학생 평균 70.8kg에 비해 0.2kg만큼 증가하였으며, 여학생은 평균 57.3kg에 비하여 0.5kg 증가하였다. 2019년 기준 17세 남학생과 여학생의 체중은 평균 13.2kg 차이가 있었고, 10년 전인 2009년에는 남학생은 68.1kg, 여학생은 56.0kg으로 평균 12.1kg 차이가 있었다. 2019년 남학생과 여학생의 체중은 2009년 남학생과 여학생보다 각각 2.9kg, 1.8kg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2〉 성별·연령별 체중의 추이

(단위 : kg)

연도	6세		7세		8세		9세		10세		11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0	23.3	22.4	26.4	25.4	29.9	28.5	33.6	32.2	37.8	36.3	42.0	41.8
2005	24.0	22.9	27.3	26.0	31.0	29.4	34.8	33.4	39.4	38.1	44.5	43.6
2006	24.5	23.2	27.7	26.4	31.6	29.7	35.8	34.0	39.8	38.6	44.7	43.7
2007	24.4	23.3	27.9	26.4	31.7	29.9	35.9	34.2	40.2	38.9	45.1	44.0
2008	24.7	23.5	27.9	26.4	31.9	29.9	36.0	34.3	40.1	38.6	45.5	44.0
2009	24.7	23.5	28.2	26.6	31.7	30.0	35.9	33.9	40.6	38.8	45.9	44.0
2010	24.9	23.7	28.4	26.9	32.1	30.3	35.9	34.2	41.1	39.2	46.1	44.4
2011	24.8	23.6	28.5	26.8	32.4	30.5	36.3	34.3	40.6	39.4	46.0	44.4
2012	24.7	23.5	28.4	26.8	32.4	30.4	37.0	34.9	41.0	39.6	46.2	44.2
2013	24.3	23.4	27.1	26.1	31.4	29.4	35.4	33.5	40.2	38.4	45.0	43.2
2014	24.1	23.1	27.2	25.7	30.9	29.1	35.3	33.0	39.7	37.8	45.1	43.6
2015	24.1	23.2	26.9	25.8	31.0	29.4	35.3	33.2	40.2	37.8	44.7	43.5
2016	24.2	22.9	27.1	25.7	31.4	29.0	35.6	33.1	40.3	38.0	45.9	43.6
2017	24.2	23.1	27.2	25.8	31.4	29.8	35.7	33.4	40.7	38.3	46.2	44.0
2018	24.4	23.6	27.4	26.1	31.9	29.6	36.0	33.5	41.0	38.6	47.0	43.8
2019	24.8	23.3	27.6	26.1	32.0	29.7	36.6	33.8	41.2	38.8	46.8	44.3



연도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0	47.4	46.7	52.9	49.9	57.7	52.5	60.8	53.3	63.2	54.2	65.3	54.9
2005	50.2	47.8	55.7	51.0	61.0	53.1	64.1	54.4	66.1	55.2	68.1	56.1
2006	50.7	48.0	56.6	51.2	60.5	52.9	64.3	54.2	66.5	54.8	68.2	55.4
2007	50.9	48.1	56.7	51.4	61.1	53.2	64.0	54.0	66.3	54.8	68.3	55.4
2008	50.8	48.1	56.7	51.5	61.4	53.3	63.8	53.8	65.8	54.4	67.7	55.1
2009	51.9	48.0	57.0	51.2	61.5	53.3	64.2	54.3	66.5	55.2	68.1	56.0
2010	51.7	48.2	57.2	51.5	61.5	53.2	64.7	54.9	66.6	55.5	68.1	55.6
2011	52.0	48.6	57.7	51.8	61.6	53.6	64.5	54.8	66.5	55.7	68.3	56.2
2012	51.7	48.7	57.6	51.7	61.6	53.7	64.9	55.1	66.6	55.9	68.4	56.2
2013	50.5	48.4	56.1	51.7	60.8	53.6	64.7	55.3	66.5	56.3	68.2	56.0
2014	50.4	48.2	56.3	51.6	60.7	53.9	64.5	55.4	67.0	56.1	68.1	56.7
2015	50.6	48.2	56.8	51.7	61.3	53.9	64.8	55.4	67.3	56.5	68.9	56.9
2016	52.0	48.4	57.6	52.0	62.4	53.9	65.4	55.6	68.1	56.8	69.6	57.1
2017	52.2	48.4	57.8	51.9	62.3	54.4	66.0	55.7	68.4	57.0	70.2	57.6
2018	52.4	49.1	58.6	52.3	63.3	54.8	66.6	56.4	68.8	56.8	70.8	57.3
2019	52.7	48.8	58.8	52.5	63.7	54.7	67.4	56.4	69.6	57.5	71.0	57.8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2019년도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50m 달리기 기록은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9.3초, 여학생 9.9초이고, 중학교 3학년 남학생 7.9초, 여학생 9.7초이며,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7.8초, 여학생 9.9초이다. 50m 달리기의 경우 남학생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기록이 단축되는 경향이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기록에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래달리기 및 걷기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의 기록은 5분 33초, 여학생 6분 8초, 중학교 3학년 남학생 8분 19초, 여학생 7분 48초이며,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은 8분 10초, 여학생은 8분 8초로 나타났다.

2019년 제자리멀리뛰기 기록은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163.7cm, 여학생 144.5cm, 중학교 3학년의 경우 남학생 200.2m, 여학생 150.1cm,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214.2cm, 여학생 151.2cm이다.

2019년 윗몸일으키기(2011-윗몸말아올리기) 기록은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71.7회, 여학생 54.3회, 중학교 3학년은 남학생 82.9회, 여학생 44.7회,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69.3회, 여학생 35.1회이다.

2019년 앞아윗몸앞으로굽히기 기록은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7.4cm, 여학생 13.5cm, 중학교 3학년의 경우 남학생 9.8cm, 여학생 16.1cm,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11.6cm, 여학생 16.4cm이다.

〈표 5-4-3〉 성별·연령별 50m달리기의 추이

(단위: 초)

연도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2	9.8	10.3	9.4	10.2	8.8	10.0	8.4	10.0	8.0	10.0	7.8	9.9	7.7	9.9	7.7	10.1
2007	9.9	10.5	9.5	10.3	8.8	10.1	8.4	10.2	8.1	10.3	7.9	10.1	7.8	10.1	8.1	10.4
2008	9.9	10.4	9.5	10.4	8.9	9.9	8.4	10.1	8.1	10.1	7.9	10.2	8.0	10.1	8.0	10.3
2009	10.0	10.5	9.6	10.4	8.7	9.9	8.4	9.9	8.1	9.9	7.8	9.9	7.7	9.9	7.7	10.1
2010	10.1	10.5	9.7	10.4	8.9	10.0	8.5	10.1	8.2	10.1	7.8	9.9	7.7	9.9	7.9	10.1
2011	9.9	10.3	9.5	10.2	8.9	10.0	8.4	10.0	8.1	10.0	7.9	10.0	7.9	10.1	7.9	10.2
2012	9.7	10.2	9.3	10.0	8.8	9.9	8.4	9.9	8.0	9.9	7.9	9.9	7.8	10.0	7.9	10.1
2013	9.6	10.1	9.2	9.9	8.7	9.7	8.3	9.8	8.0	9.8	7.8	9.8	7.8	9.9	7.8	9.9
2014	9.6	10.1	9.2	9.9	8.7	9.7	8.3	9.8	8.0	9.8	7.8	9.7	7.7	9.8	7.8	9.9
2015	9.6	10.0	9.2	9.8	8.6	9.6	8.2	9.7	7.9	9.7	7.8	9.7	7.7	9.7	7.8	9.9
2016	9.7	10.1	9.3	9.8	8.6	9.6	8.2	9.6	7.9	9.6	7.7	9.6	7.7	9.7	7.7	9.8
2017	9.7	10.1	9.3	9.9	8.7	9.6	8.2	9.7	7.9	9.7	7.8	9.6	7.7	9.8	7.8	9.9
2018	9.7	10.1	9.3	9.9	8.7	9.6	8.2	9.7	7.9	9.7	7.7	9.6	7.7	9.8	7.8	9.9
2019	9.8	10.1	9.3	9.9	8.7	9.6	8.2	9.7	7.9	9.7	7.8	9.6	7.7	9.7	7.8	9.9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표 5-4-4〉 성별·연령별 오래달리기 및 걷기의 추이

(단위 : 분, 초)

연도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2	6:02	6:04	5:05	6:03	9:03	7:05	8:05	7:05	8:03	7:05	8:00	7:05	7:05	7:05	7:06	8:01
2007	6:27	7:06	6:15	6:57	9:49	8:26	9:20	8:36	9:07	8:36	8:29	8:14	8:20	8:19	8:37	8:36
2008	6:26	6:55	6:14	7:00	9:43	8:30	9:17	8:22	8:54	8:26	8:28	8:07	8:20	8:17	8:40	8:42
2009	6:29	6:56	6:15	7:00	9:34	8:20	9:20	8:36	8:44	8:22	8:23	8:03	8:15	8:08	8:19	8:23
2010	6:31	6:59	6:15	6:57	9:57	8:44	9:31	8:44	9:06	8:41	8:07	8:01	7:97	7:91	8:21	8:24
2011	6:10	6:40	5:54	6:39	9:36	8:33	9:13	8:35	8:46	8:26	8:26	8:08	8:18	8:11	8:20	8:21
2012	5:54	6:24	5:37	6:19	9:13	8:15	8:53	8:17	8:29	8:11	8:18	8:08	8:10	8:08	8:10	8:14
2013	5:47	6:14	5:29	6:10	8:57	7:58	8:40	8:02	8:17	7:54	8:07	7:53	7:59	7:52	7:58	7:58
2014	5:40	6:06	5:23	6:00	8:47	7:42	8:31	7:49	8:13	7:45	8:00	7:47	7:54	7:49	7:54	7:56
2015	5:40	6:04	5:21	5:57	8:46	7:40	8:27	7:43	8:10	7:42	8:01	7:44	7:55	7:46	7:55	7:53
2016	5:44	6:07	5:26	5:58	8:56	7:41	8:29	7:41	8:11	7:40	8:02	7:44	7:58	7:48	7:59	7:54
2017	5:45	6:07	5:27	6:01	8:53	7:43	8:29	7:44	8:09	7:43	8:02	7:48	7:59	7:55	8:04	8:04
2018	5:50	6:14	5:32	6:06	9:05	7:48	8:40	7:50	8:19	7:49	8:05	7:50	8:04	8:01	8:05	8:10
2019	5:51	6:15	5:33	6:08	9:07	7:50	8:42	7:54	8:19	7:48	8:06	7:51	8:04	7:57	8:10	8:08

주 : 초등학교 1,000m, 중·고 여자 1,200m, 중·고 남자 1,600m.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표 5-4-5〉 성별·연령별 제자리멀리뛰기의 추이

(단위 : cm)

연도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2	153.4	138.3	165.2	144.6	144.6	153.6	203.0	157.1	214.7	158.6	226.9	165.2	231.4	164.8	236.7	164.8
2007	151.8	136.0	163.9	139.8	139.8	149.9	195.8	151.7	207.5	153.9	216.9	156.9	223.4	159.4	222.8	155.4
2008	155.0	140.4	163.7	141.3	141.3	148.3	196.9	151.5	209.2	155.3	219.3	156.4	224.4	156.6	226.2	157.2
2009	151.2	134.5	161.6	137.9	137.9	151.1	199.3	153.9	210.1	155.3	217.8	156.5	222.9	158.5	226.6	158.4
2010	148.5	132.6	157.8	135.9	135.9	140.7	186.6	142.4	197.5	144.6	219.5	155.6	223.4	156.8	226.0	156.6

연도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11	150.3	134.6	159.7	138.8	138.8	140.8	186.8	142.2	196.7	143.7	205.0	147.6	209.5	147.8	211.8	147.5
2012	152.9	136.7	162.7	140.9	140.9	143.6	188.9	144.3	199.1	146.1	205.9	148.4	211.1	149.2	215.0	149.6
2013	155.7	138.8	165.2	143.0	143.0	144.3	190.0	145.4	200.8	148.1	208.1	150.8	214.1	152.5	217.8	153.0
2014	154.9	138.4	165.0	142.6	177.1	145.2	188.2	145.6	198.6	147.9	207.4	150.2	213.3	150.8	16.6	152.2
2015	156.8	140.8	166.6	144.9	181.1	148.4	192.9	149.1	201.7	150.2	209.9	152.6	215.4	153.2	218.5	153.7
2016	156.3	141.4	166.9	146.2	180.7	149.0	193.4	151.0	202.8	152.4	209.8	152.8	214.0	153.8	216.7	154.9
2017	155.3	140.4	165.9	145.4	179.7	148.3	192.1	150.0	202.1	150.7	209.5	152.8	213.7	152.9	216.0	153.3
2018	154.8	140.0	166.0	145.9	178.6	147.2	191.2	148.8	201.4	150.2	209.7	152.7	213.6	152.5	216.0	152.5
2019	153.2	139.2	163.7	144.5	178.2	147.7	190.6	149.0	200.2	150.1	208.1	151.7	212.8	152.2	214.2	151.2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표 5-4-6〉 성별·연령별 읽몸일으키기의 추이(2011-읽몸말아올리기)

(단위 : 회)

연도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2	32.2	24.5	34.9	26.3	27.7	26.4	40.5	27.7	43.2	29.2	45.6	30.1	47.0	31.0	49.4	32.2
2007	31.9	24.1	35.7	26.1	26.2	26.4	40.1	26.2	42.9	27.0	44.6	28.0	46.0	29.1	44.5	28.6
2008	31.9	25.3	35.8	25.8	27.6	26.4	40.8	27.6	43.0	28.3	45.6	29.2	47.1	29.9	44.4	29.3
2009	48.4	-	56.3	-	28.4	27.1	41.0	28.4	43.6	28.9	45.5	29.9	47.1	30.8	46.6	29.9
2010	49.7	39.0	55.9	38.9	33.0	32.6	58.2	33.0	59.2	33.0	45.6	30.9	47.0	31.2	45.6	30.3
2011	56.1	43.8	62.3	43.8	35.3	37.0	63.9	35.3	63.5	35.6	57.6	31.3	58.1	32.1	52.5	31.3
2012	62.2	49.0	69.8	50.1	38.6	40.2	65.2	38.6	67.4	38.0	61.4	32.6	60.1	33.0	56.4	32.8
2013	65.3	50.9	73.3	53.8	43.7	44.0	73.2	43.7	71.5	40.6	68.2	35.2	69.6	36.7	63.7	34.3
2014	69.7	55.4	76.2	56.0	75.7	47.9	77.7	46.2	79.2	45.5	68.8	35.9	68.3	36.3	64.9	35.9
2015	67.7	54.6	75.7	56.6	78.0	47.9	81.8	47.8	79.7	46.0	69.6	37.0	71.3	36.9	66.3	36.3

연도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16	66.9	54.5	74.1	56.5	80.1	48.7	82.2	48.0	82.9	46.1	72.7	36.4	70.9	36.9	68.5	35.5
2017	65.6	53.5	73.1	56.4	79.3	48.4	83.3	48.6	83.2	45.6	76.0	37.0	73.0	36.3	69.2	36.3
2018	64.5	51.8	73.3	55.1	80.0	48.2	82.7	47.0	84.1	44.8	73.2	36.9	74.0	36.2	67.9	35.1
2019	64.5	52.7	71.7	54.3	79.9	48.5	82.9	47.1	82.9	44.7	75.3	36.9	74.2	36.7	69.3	35.1

주 : 2011년부터 뒷몸말아올리기로 개정.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표 5-4-7〉 성별·연령별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의 추이

(단위 : cm)

연도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02	8.4	11.6	8.1	12.1	9.2	14.0	10.7	14.8	12.6	16.1	14.7	17.2	16.1	16.1	17.5	17.4
2007	8.2	12.0	8.2	12.8	9.0	14.4	9.9	14.9	11.2	15.6	12.4	16.5	13.4	13.4	13.8	16.1
2008	8.8	12.5	7.9	12.3	8.8	14.2	9.7	14.9	11.1	16.0	12.5	16.3	12.8	12.8	13.1	16.0
2009	7.7	12.0	7.5	12.8	9.0	14.7	10.2	15.6	11.4	16.3	12.4	17.3	14.5	14.5	13.4	16.7
2010	7.5	11.9	7.0	12.6	7.6	13.7	8.6	14.4	9.8	15.1	12.8	17.3	13.0	13.0	13.7	16.9
2011	7.8	12.4	7.3	13.1	7.5	13.7	8.5	14.4	9.6	15.1	11.0	15.8	11.7	11.7	11.9	15.9
2012	8.1	12.5	7.7	13.3	7.8	14.0	8.7	14.7	9.8	15.4	10.9	15.9	11.6	11.6	12.0	16.1
2013	8.6	13.0	8.3	13.8	8.4	14.5	9.1	15.1	10.1	15.8	11.2	16.2	11.7	11.7	12.2	16.5
2014	8.7	13.2	8.5	14.2	8.6	15.0	9.5	15.8	10.3	16.5	11.3	16.7	11.8	16.7	12.2	16.8
2015	8.6	13.4	8.4	14.6	8.7	15.4	9.5	16.1	10.5	16.8	11.4	17.0	11.9	17.0	12.1	16.7
2016	8.2	13.1	8.0	14.3	8.5	15.4	9.5	16.2	10.5	16.8	11.5	17.1	11.9	17.0	12.0	16.9
2017	8.0	13.0	7.8	14.1	8.3	15.1	9.3	15.9	10.4	16.5	11.5	16.9	11.9	16.9	11.9	16.8
2018	8.0	12.8	7.8	14.0	8.1	14.9	9.0	15.7	10.2	16.5	11.4	16.9	11.8	16.7	11.8	16.6
2019	7.6	12.5	7.4	13.5	7.8	14.6	8.7	15.4	9.8	16.1	11.1	16.6	11.6	16.6	11.6	16.4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 2. 청소년의 영양

아동·청소년의 연령층별로 영양섭취기준에 대한 평균 섭취비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연령층이 대부분의 영양소에 대해 권장섭취량에 근접하게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칼슘과 칼륨은 모든 연령층에서, 비타민A는 1~2세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섭취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12~18세 청소년의 비타민A 섭취량은 권장섭취량의 5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C의 경우 6~11세(84.9%), 12~18세(66.1%), 19~29세(52.5%) 청소년에게서 섭취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반면, 나트륨에 대한 섭취는 권장섭취량의 164.8%(12~18세), 172.1%(19~29세)로 과다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8〉 영양소별 영양섭취기준에 대한 섭취 비율

(단위: %)

영양소 \ 연령	1~2세	3~5세	6~11세	12~18세	19~29세
에너지	114.1	94.4	96.6	95.9	89.7
단백질	264.0	228.6	179.9	145.1	131.9
칼슘	90.5	76.3	65.6	63.7	66.5
인	151.7	136.4	112.7	94.7	153.5
나트륨	0.0	0.0	130.7	164.8	172.1
칼륨	75.5	72.7	69.5	70.3	70.2
철	105.6	114.4	91.4	79.8	102.8
비타민A	103.1	92.7	67.4	52.3	52.7
티아민	161.8	182.9	138.1	122.1	119.6
리보플라빈	205.6	199.7	148.8	133.6	127.5
나이아신	114.2	111.0	96.2	88.5	96.6
비타민C	132.5	136.6	84.9	66.1	52.5

주 :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2015); 에너지, 필요추정량; 나트륨, 목표섭취량; 칼륨, 충분섭취량; 그 외 영양소, 권장섭취량.

자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9), 2018 국민건강통계.

다음은 영양소별로 섭취량이 영양섭취기준 미만인 대상자 분율을 연령층별로 비교한 결과이다. 칼슘, 비타민 A, 비타민 C의 섭취량은 전 연령층에서 평균 필요량보다 적게 섭취한 사람이 약 40% 이상이었다. 특히, 칼슘의 경우 6세 이상부터 29세 이하까지 70% 이상이 영양섭취기준 미만 섭취자인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칼슘에 대한 섭취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비타민 A 다음으로는 칼슘과 비타민C 섭취가 부족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9〉 영양소별 영양섭취기준 미만 섭취자 분율

(단위 : %)

영양소 \ 연령	1~2세	3~5세	6~11세	12~18세	19~29세
에너지	10.6	22.0	25.0	35.2	38.1
단백질	1.8	1.3	5.1	16.4	23.4
지방	38.0	12.7	8.6	10.2	13.4
칼슘	47.4	59.3	70.8	73.9	70.3
인	10.8	12.5	33.2	44.5	15.2
철	22.1	29.2	39.7	60.6	46.5
비타민A	42.6	44.9	64.4	77.7	81.2
티아민	10.7	6.7	16.2	36.5	34.9
리보플라빈	8.8	6.3	16.0	27.8	29.3
나이아신	13.0	19.1	35.7	49.8	44.8
비타민C	46.8	42.4	59.2	74.4	77.6

주 :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2015); 에너지, 필요추정량의 75%; 지방, 지방에너지저장비율의 하한선; 그 외 영양소, 평균필요량.

자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9), 2018 국민건강통계.

영양섭취부족 대상자 분율은 12~18세 17.6%, 19~29세에 16.2%로 다른 연령층보다 높았고, 12~18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남자보다 여자의 영양섭취부족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에너지/지방 과잉섭취자의 분율은 6~11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남자의 비율이 같거나 높게 나타났으며 12~18세의 경우에는 영양섭취부족자의 분율에 이어 에너지/지방 과잉섭취자의 분율도 높게 나타나 영양 부족과 과잉 섭취에 대한 관리가 모두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5-4-10〉 영양섭취부족자 및 에너지/지방과잉섭취자 비율

(단위: %)

연령	구분	영양섭취부족자 비율 <sup>1)</sup>			에너지/지방과잉섭취자 비율 <sup>2)</sup>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1~2세		5.3	3.8	6.7	1.3	2.5	0.2
3~5세		3.8	3.0	4.9	2.0	2.7	1.0
6~11세		8.4	8.3	8.5	4.9	4.3	5.5
12~18세		17.6	18.3	16.9	7.3	7.3	7.3
19~29세		16.2	10.2	23.1	7.3	8.0	6.5

주 : 1)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sup>3)</sup>의 75% 미만이면서 칼슘, 철, 비타민 A,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이 평균필요량<sup>3)</sup> 미만인 비율.

2)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sup>3)</sup>의 125% 이상이면서 지방 섭취량이 지방에너지적정비율<sup>3)</sup>의 상한선을 초과한 비율.

3) 201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2015).

자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9). 2018 국민건강통계.

아침식사 결식률은 19~29세는 50.1%, 12~18세는 37.4%로 다른 연령층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6~11세(15.0%), 3~5세(8.1%), 1~2세(5.5%) 순으로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6~11세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남자(15.6%)가 여자(14.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여자의 아침식사 결식률이 모두 남자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5-4-11〉 아침식사 결식률

(단위: %)

구분	연령	1~2세	3~5세	6~11세	12~18세	19~29세
전체		5.5	8.1	15.0	37.4	50.1
남자		3.1	7.4	15.6	31.2	46.4
여자		7.7	9.0	14.4	44.0	54.4

주 : 조사 1일전 아침식사를 결식한 비율.

자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9). 2018 국민건강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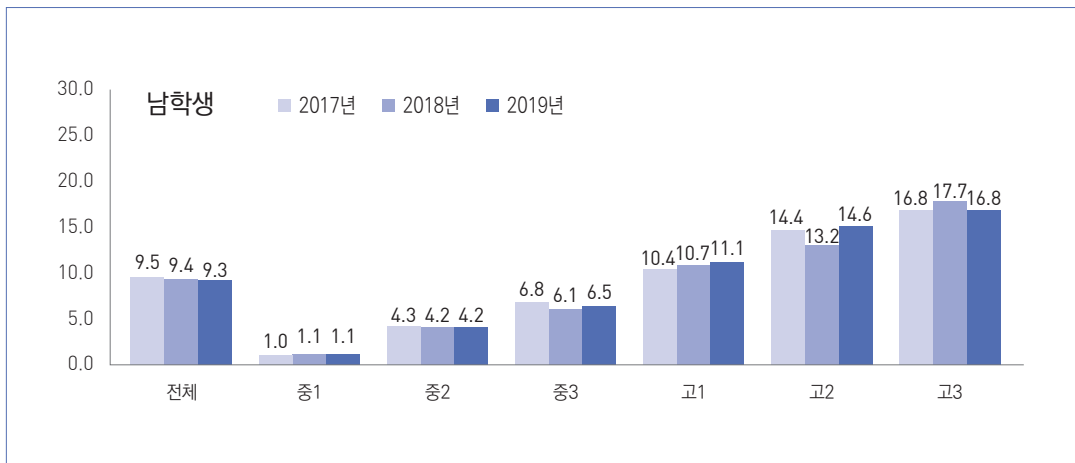
### 3.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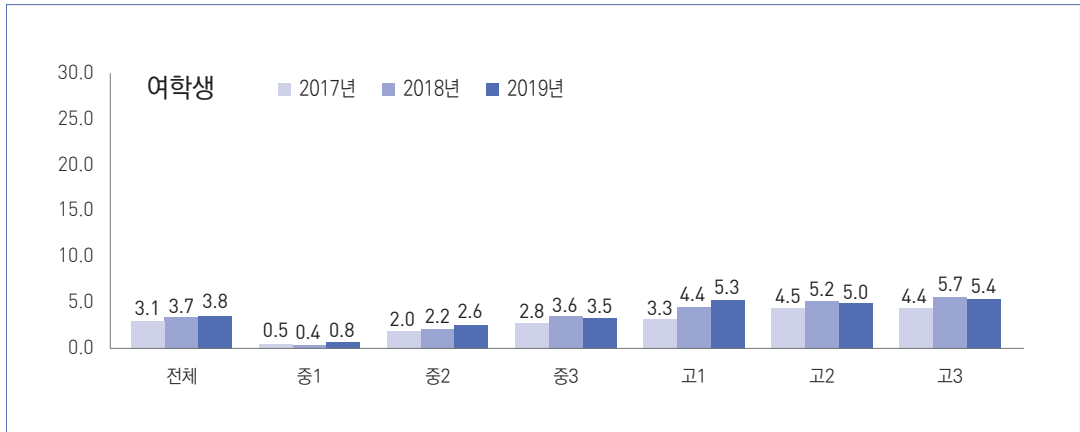
2019년 청소년의 현재 흡연율은 남학생은 9.3%, 여학생은 3.8%로 나타나 남학생의 현재 흡연율이 여학생의 현재 흡연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현재 흡연율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여학생의 현재 흡연율은 2017년 3.1%, 2018년 3.7%, 2019년 3.8%로 나타나 남학생과 반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청소년의 처음 흡연 경험 연령은 13.2세, 매일 흡연 시작 연령은 14.1세로 나타났고, 남학생의 경우 처음 흡연 경험 연령은 13.1세, 여학생은 13.6세이며 매일 흡연 시작 연령은 남학생 14.1세, 여학생 14.1세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9년 주 1일 이상 가정 내 간접흡연 노출률은 남학생 29.3%, 여학생 34.3%로 나타났다.

[그림 5-4-1] 학년별 현재 흡연율

(단위 : %)





주 :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비율.

자료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20). 제15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표 5-4-12〉 흡연 관련 지표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처음 흡연 경험 연령(세) <sup>1)</sup>	12.9	12.8	13.1	13.0	12.8	13.5	13.2	13.1	13.6
매일 흡연 시작 연령(세) <sup>2)</sup>	13.8	13.8	13.7	13.9	13.9	14.0	14.1	14.1	14.1
주 1일 이상 가정 내 간접흡연 노출률(%) <sup>3)</sup>	27.9	27.3	28.4	32.9	31.1	23.0	31.7	29.3	34.3

주 : 1) 평생 흡연 경험자 중에서 처음으로 담배를 한 두 모금 피워본 연령의 평균.

2) 최근 30일 동안 매일 흡연자 중에서 담배를 매일 피우기 시작한 연령의 평균.

3) 최근 7일 동안 학생의 집안에서 다른 사람(가족이나 손님 등)이 피운 담배 연기 냄새를 맡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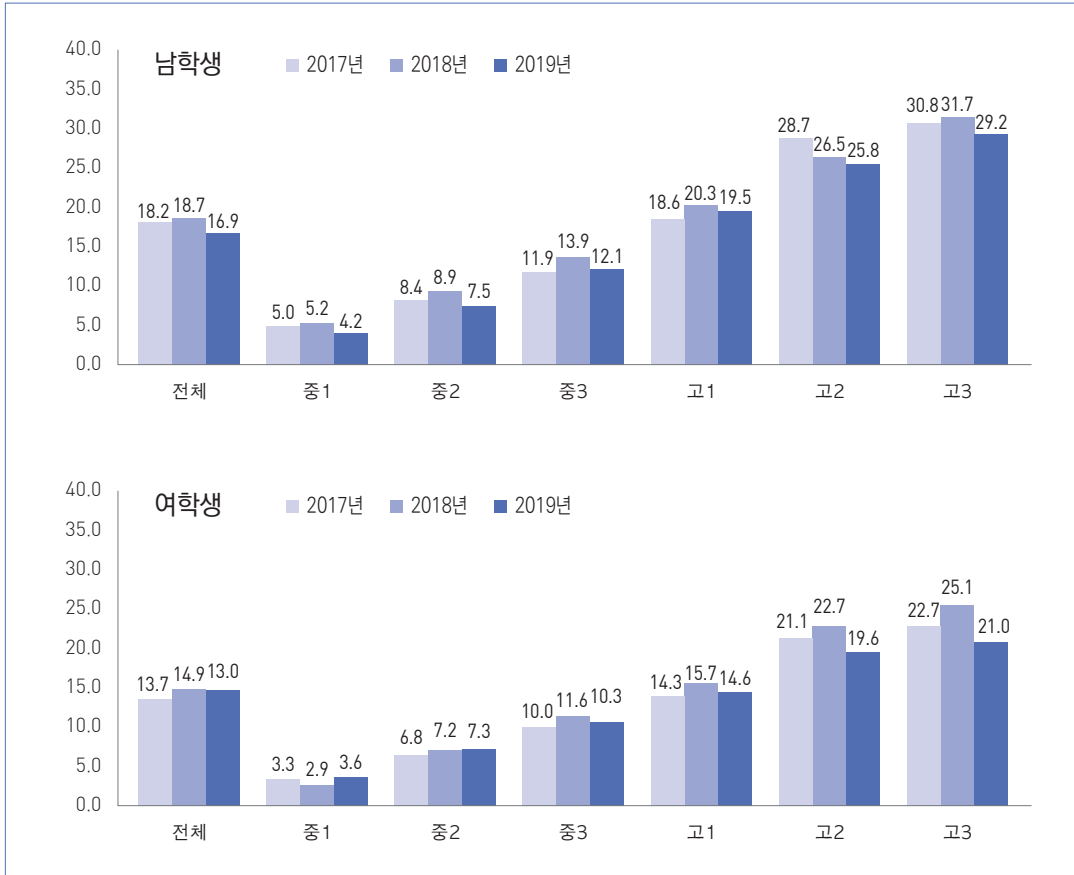
\* '19년도 설문문항 변경.

자료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20). 제15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2019년 청소년의 현재 음주율은 남학생 16.9%, 여학생 13.0%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고학년일수록 현재 음주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학년별 현재 음주율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 학년에서 2018년 대비 2019년 현재 음주율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2018년 대비 2019년 현재 음주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청소년의 처음 음주 경험 연령은 남학생 12.9세, 여학생 13.5세로, 남녀 학생 간 차이는 0.6세였다. 위험음주율은 남학생이 8.2%로 여학생의 위험음주율(7.5%)보다 높았으며,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전년대비 위험음주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4-2] 학년별 현재 음주율



주 :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자료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20). 제15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표 5-4-13> 음주 관련 지표

(단위 :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처음 음주 경험 연령(세) <sup>1)</sup>	13.2	12.9	13.5	13.3	13.0	13.7	13.2	12.9	13.5
위험음주율 <sup>2)</sup>	8.2	8.8	7.6	8.9	9.1	8.6	7.8	8.2	7.5

주 : 1) 평생 음주 경험자 중에서 처음으로 1잔 이상 술을 마신 연령의 평균.

2) 최근 30일 동안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 이상(남자 소주 5잔 이상, 여자 소주 3잔 이상)인 사람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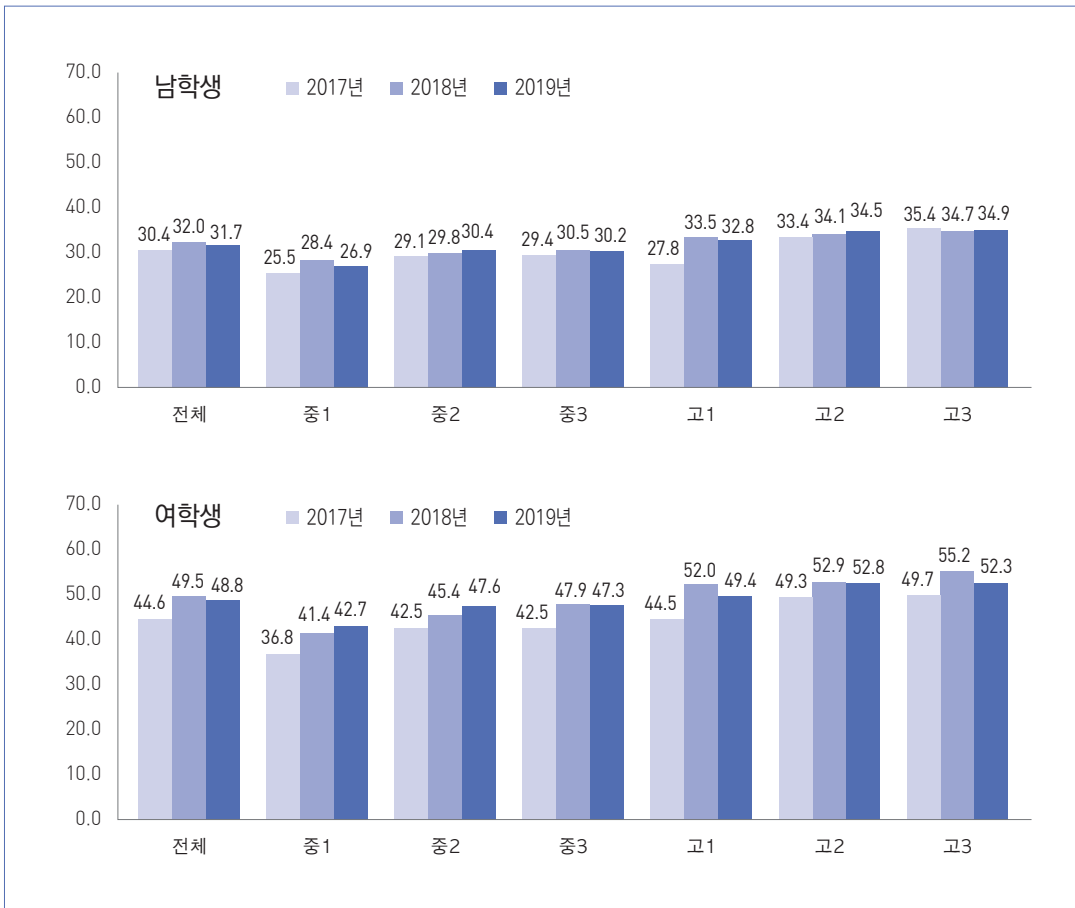
자료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20). 제15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 4. 청소년의 정신건강

2019년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남학생 31.7%, 여학생 48.8%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스트레스 인지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도별로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 추이를 살펴보면, 남녀 학생 모두 2017년에 비해서는 2018년에 스트레스 인지율이 증가했다가, 2019년에는 2018년에 비해 남녀 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4-3] 학년별 스트레스 인지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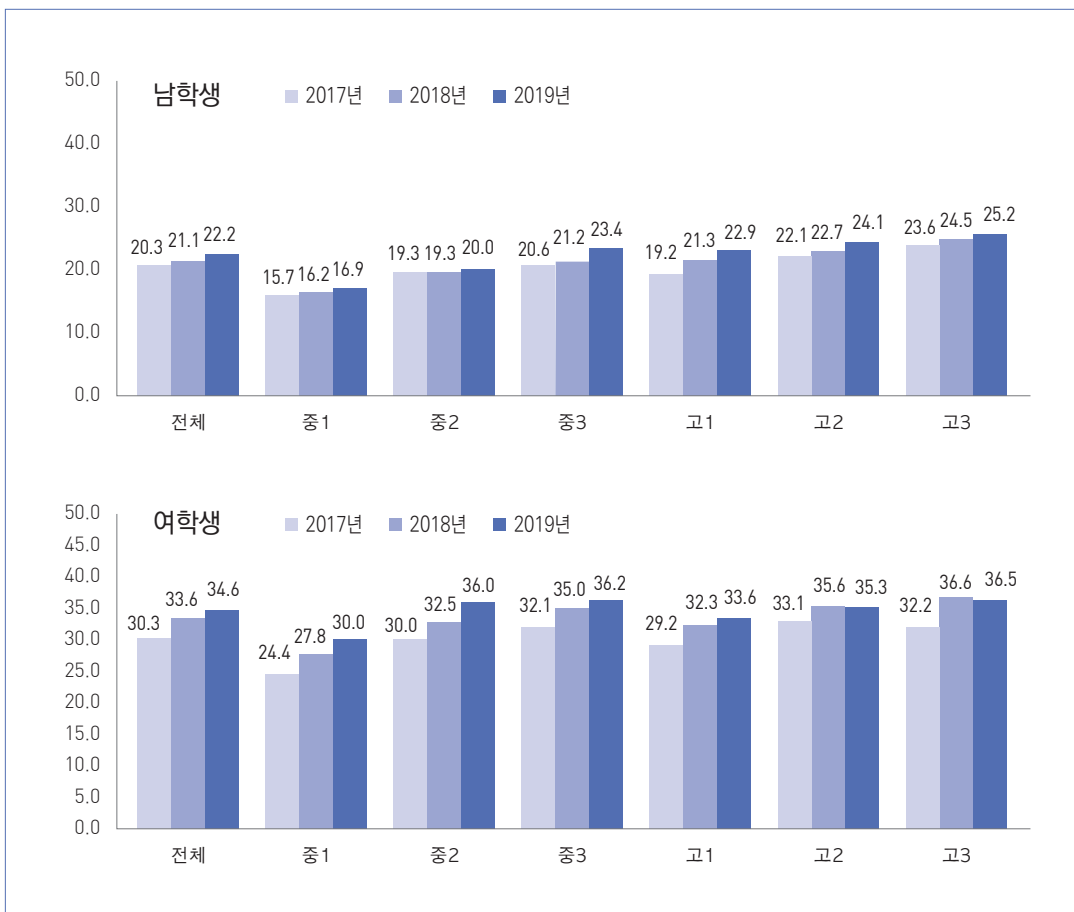
주 :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사람의 비율.

자료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20). 제15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2019년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은 남학생 22.2%, 여학생 34.6%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다.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우울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에 우울감이 소폭 낮아지고, 고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시 우울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은 남학생 및 여학생 모두 2018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4-4] 학년별 우울감 경험률

(단위 : %)



주 :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자료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20). 제15차(2019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 제6부 요약

6부는 '청소년의 안전과 보호'에 대해 다룬다. 정부에서는 안전한 청소년 활동을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을 각 분야별 안전점검 전문 공공기관과 연계·협력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2005년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오고 있으며, 기존 학교폭력 대책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17. 12. 22.) 및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대책」(18. 8. 31.)을 발표하였다. 2019년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통해 학교의 교육적 해결역량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을 발표(2019.1.30.)하였다. 2020년에는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제4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를 수립(2020. 1. 15.)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아동학대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전국에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9년에는 아동학대예방사업 등 아동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 및 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청소년 약물관련 제도 및 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약물예방에 관한 국제적 표준에 적합한 제도와 법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궁극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에 대한 사회적 관리 및 강화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여성가족부는 사이버 역기능 해소를 위해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대응의 일환으로 2020년 전국 230여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심각한 수준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의 치유를 돕기 위해 전국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161개 치료협력병원과의 연계를 통해 치료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상정보 고지제도와 관련하여 2018년 7월부터는 우편고지 된 고지정보에 성범죄자의 실제거주지 등이 사실과 다르게 잘못 기재된 경우 누구든지 정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정청구의 처리절차를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를 받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자나 보호기관의 장이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피해 대응요령'을 인포그래픽과 카툰(Cartoon) 형식으로 제작하여 우편고지서와 함께 동봉·발송하고 있으며, '성범죄자 알림e' 및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0년에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나고 우편고지가 비용 대비 효과가 저조하다는 의견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를 도입하였다. 전자고지는 아동·청소년을 세대원으로 둔 세대의 세대주의 스마트폰으로 발송되며 세대주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고지정보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데, 2018년 7월 17일부터는 대학, 학생상담 지원시설,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가, 2018년 9월 14일부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 등이 취업제한기관으로 추가되었으며, 2020년 5월 27일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이 취업제한기관으로 추가되었다.

# 청소년의 안전과 보호

제1장 청소년 안전

제2장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제3장 청소년의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제4장 사이버 역기능 해소를 위한 대응체계 마련

제5장 성범죄로부터 청소년 보호

## 제1장

## 청소년 안전

## 1.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위생점검

## 가. 도입 배경 및 경과

청소년수련시설 내 건축, 토목, 기계, 소방, 전기, 가스, 위생 등 총 7개 분야별로 안전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은 안전한 수련활동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18조의3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다. 2006년부터 ‘청소년수련관·청소년 문화의집·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야영장·특화시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2014년 7월 22일부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년 주기로 점검이 실시되고 있다. 2018년부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2017. 3. 21.)에 따라 위생 분야에 대한 점검이 추가 되었다.

## 나.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위생점검 추진 현황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위생점검의 전문성 강화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각 분야별 점검은 해당 분야 전문 공공기관과 연계 협력하여 운영되고 있다. 건축, 토목, 기계 분야는 ‘한국시설 안전공단’에서, 소방분야는 ‘한국소방안전원’, 전기분야는 ‘한국전기안전공사’, 가스분야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위생분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각각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각 분야별 점검등급과 안전점검 주요내용 및 평가기준은 <표 6-1-1>~<표 6-1-3>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위생점검 결과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정책사업 추진 시에도 반영된다.



〈표 6-1-1〉 분야별 점검등급 구분

점검분야	등급 구분	비고
건축·토목	A, B, C, D, E(5등급)	D, E 등급 : 부적합 처리
기계	A, B, C, D, E(5등급)	D, E 등급 : 부적합 처리
소방	A, B, C, D, E(5등급)	D, E 등급 : 부적합 처리
전기	A, B, C, D, E(5등급)	D, E 등급 : 부적합 처리
가스	적합, 부적합(2등급)	부적합 등급 : 부적합 처리
위생	적합, 부적합(2등급)	부적합 등급 : 부적합 처리

자료 : 여성가족부(2020).

〈표 6-1-2〉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주요 내용

분야	주요 점검 내용
공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야별 자체안전점검 수행여부 확인 및 검토</li> <li>• 분야별 설비 및 각종 구비서류 현황</li> <li>• 시설 환경(쾌적성 등)</li> <li>• 비상연락망 구축 등 안전관리 계획</li> <li>• 보험가입여부 확인</li> </ul>
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계도서 및 유지관리 대장 작성·비치 여부 및 상태</li> <li>• 건축물 내·외부 균열</li> <li>• 주요 부재 변형 상태(기울기, 처짐)</li> <li>• 콘크리트 부재 결함 상태(철근 부식 노출, 콘크리트 파손)</li> <li>• 철골 부재 결함 상태(철골 부식, 내화 피복 상태)</li> <li>• 마감재 결함 및 미끄럼 방지 상태(복도, 욕실, 계단 등)</li> <li>• 배수 상태(지붕, 욕실, 주방)</li> <li>• 증축 시 접합부 결함 상태</li> <li>• 누수 여부(지붕, 외벽, 욕실, 주방, 수영장 등)</li> <li>• 비상구 통로 관리 상태</li> <li>• 각종 안전 난간 상태</li> <li>• 방화 벽체, 각종 안전 표지판 등 부착 상태 등</li> </ul>
토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축·옹벽 전도 및 토사 안전성</li> <li>• 담장 전도 여부</li> <li>• 파고라·벤치·담장 시설 등 결함 상태</li> <li>• 단지 내 포장 및 배수 상태</li> <li>• 부속시설 안전 상태(천막, 각종 수련시설) 등</li> </ul>
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냉·난방설비 상태</li> <li>• 반송설비 상태</li> <li>• 위생설비 상태</li> </ul>

분야	주요 점검 내용
소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관리 및 위험물 관리상태</li> <li>•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상태</li> <li>• 소화활동설비 및 피난활동설비 상태</li> <li>• 감지기 및 소방펌프 상태</li> </ul>
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절연저항, 누전차단기, 개폐기, 인입구 배선, 옥내내선 상태</li> </ul>
가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기보관실, 정압실, 압력조정기, 가스계량기 등에 대한 가스안전공사 및 공급자 점검 상태</li> </ul>
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환경, 개인위생, 사용원료, 공정관리, 보관 등에 대한 위생 점검</li> </ul>

자료 : 여성가족부(2020).

〈표 6-1-3〉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평가기준

분야	평가기준
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등급) 문제점이 없거나 극히 경미한 최상의 상태</li> <li>• (B등급) 경미한 문제점이 있으나, 양호한 상태</li> <li>• (C등급) 문제점이 있으나, 간단한 보수·보강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보통의 상태</li> <li>• (D등급) 주요 부재에 발생된 노후화 정도가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태로 사용제한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상태</li> <li>• (E등급) 주요 부재의 노후화 정도가 심각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 금지하고 긴급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li> </ul>
토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등급)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li> <li>• (B등급) 결함이 경미하게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li> <li>• (C등급) 보통의 손상,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li> <li>• (D등급)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li> <li>• (E등급)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li> </ul>
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등급)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li> <li>• (B등급) 결함이 경미하게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li> <li>• (C등급) 보통의 손상,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li> <li>• (D등급)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li> <li>• (E등급)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li> </ul>
소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등급)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li> <li>• (B등급) 결함이 경미하게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li> <li>• (C등급) 보통의 손상,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li> <li>• (D등급)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li> <li>• (E등급)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li> </ul>

분야	평가기준
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등급] 전기설비의 상태가 양호하여 일상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상태</li> <li>• [B등급] 전기설비의 상태가 양호하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태</li> <li>• [C등급] 시설물의 사용에는 지장이 없으나 위해요소가 일정 부분 존재</li> <li>• [D등급] 점검항목 중 부적합사항이 발생하여 즉시 개보수 또는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li> <li>• [E등급] 점검항목 중 부적합사항 3개 이상 발생으로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는 상태</li> </ul>
가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 합] 결함이 없는 양호한 상태</li> <li>• [부적합] 용기보관실, 정압기, 압력조정기, 기화장치, 가스계량기, 매물배관, 입상관, 중간밸브, 노출배관(호스포함), 연소기, 가스누출, 경보차단장치, 기밀시험(누출검사) 등에 결함이 발생한 상태</li> </ul>
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 합] 결함이 없는 양호한 상태</li> <li>• [부적합] 급식 시설환경, 개인위생, 사용원료, 공정관리, 보관 등에 결함이 발생한 상태</li> </ul>

자료 : 여성가족부(2020).

#### 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 결과

2020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서 수행하였으며, 2014년부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2020년 청소년수련시설 각 분야별 안전점검 결과는 <표 6-1-4>와 같고, 여성가족부 및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홈페이지<sup>1)</sup>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6-1-4> 2020년 분야별 점검 결과

##### ◎ 건축, 토목, 기계, 소방, 전기 가스 분야

분야	항목	계*	적합			부적합	
			A	B	C	D	E
건축	개소	214	92	119	3	-	-
	백분율	100%	43.0%	55.6%	1.4%	-	-

1)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홈페이지: www.youth.go.kr

분야	항목	계*	적합			부적합	
			A	B	C	D	E
토목	개소	214	165	41	8	-	-
	백분율	100%	77.1%	19.2%	3.7%	-	-
기계	개소	214	140	73	1	-	-
	백분율	100%	65.4%	34.1%	0.5%	-	-
소방	개소	210	188	15	4	-	-
	백분율	100%	89.5%	7.1%	1.8%	-	-
전기	개소	218	116	91	8	-	-
	백분율	100%	53.2%	41.8%	3.7%	-	-
가스**	개소	174	174			-	
	백분율	100%	100%			-	

주 : \*코로나19로 인한 점검시기의 차이로 분양별 점검 개소수 상이.

\*\* (가스) 가스설비 설치시설 대상.

자료 : 여성가족부(2020).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02-2100-6262

##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정책을 수립·시행하였으며,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에 필요한 법·제도적 기초가 마련되었다. 2005년 정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1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2005~2009)」을 수립·시행하였고, 2007년 2월에 '5대 폭력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의 2년간 성과와 문제점, 저해 요인을 심층 분석하여 중점 과제 15개를 선정·추진하였다. 「제1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이 2009년 종료됨에 따라 「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2010~2014)」을 수립·시행하였다.

이후 학교폭력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불러일으킨 ‘2011년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이 발생하고 집단 따돌림, 학생들의 자살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2012년 2월 6일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2012. 2. 6.)하였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은 7대 영역 54개 과제로 구성되었으며,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 하에 철저히 대응’하고 ‘학교·가정·사회의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수립되었다. 학교 현장에서는 그간 학생·교사·학부모가 협력하여 학교폭력을 해결하고 학생들의 배려·공감 능력 향상 등 인성 교육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중대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학교폭력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2013년 정부는 학교폭력을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유통과 함께 4대 악으로 규정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2013. 7. 23.)하였다.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은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근원적인 해법은 현장에 있다는 판단 하에 2012년부터 도입된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결과를 분석하고 기존 대책의 성과를 토대로 사후 대응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맞추었다. 동 계획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어울림’)을 개발·보급하는 등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고,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집단따돌림 등 학교폭력 유형별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각 학교별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학교폭력 유형별·학교급별 대응을 강화하였다.

이후 정부는 2014년 12월에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5~2019)」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5~2019)」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비전으로 삼고, ‘학교폭력 및 학생 위험 제로 환경 조성’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 목표 하에 전반적인 학교문화 개선, 학교폭력 대상별·유형별·시기별 맞춤형 대응 강화, 학교폭력에 대한 단위학교의 실효성 있는 자율적 예방 활동 활성화 등이 포함된 5대 영역, 16개 추진과제가 설정되어 추진되었다.

한편 2015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전반적으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중·고등학생 피해응답률에 비해 높았으며,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 및 피해자 수가 증가하는 등 초등학교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졌다. 이에 교육부는 4대 중점 추진과제와 12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된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2015. 8. 7.)하였다. 또한, 2017년에 잇따른 중대한 학교폭력 사안이

연이어 발생하고 2018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기존 학교폭력 대책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2017. 12. 22.) 및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대책」(2018. 8. 31.)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2011년 이후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를 강화하기 위해 단위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사안을 심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였으나, 모든 학교폭력 사안을 단위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가해학생 간 소송이 증가하고 학교의 교육역량이 소진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학교폭력사안을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통해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해결하여 학교의 교육적 해결역량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을 발표(2019.1.30.)하였다. 2020년에는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를 수립(2020. 1. 15.)하고,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학교문화 조성, 학교의 신뢰 제고,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5대 영역에 걸쳐 14개 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 가.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2013)

2013년, 학교폭력 문제 해결의 근원적인 해법은 현장에 있다는 판단 하에 2012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201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토대로 2013년 7월 23일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이 마련되었다.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비전으로 삼고 단위학교의 자율적 예방활동 활성화와 피해학생 보호·지원 강화, 가해학생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표 6-1-5>와 같이 5개 영역, 20개 중점과제로 구성되었다.

〈표 6-1-5〉 「7.23 현장 중심 학교폭력 대책」

영역	추진과제
학교 현장의 다양한 자율적 예방 활동 지원 강화	1. “어울림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예방교육 내실화 2. 학교의 자율적인 예방활동 활성화 3. 학교의 자율적인 예방활동 적극 지원 및 유도 4.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과정 및 대안교육 활성화
학교폭력 유형별·지역별·학교급별 맞춤형 대응 강화	5. 언어문화 개선을 통한 언어폭력 예방 6. 사이버폭력 신고 및 예방교육 활성화 7. 처벌보다는 관계회복에 역점을 둔 집단 따돌림 해소 8. 성폭력 예방 및 피해학생 치유·보호 강화 9.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폭력서클 대응 강화 10. 지역별·학교급별 맞춤형 대책 수립·추진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강화	11. 학교폭력 진단 및 관리 강화 12.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지원 강화 13. 가해학생 선도 및 조치 강화 14.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 여건 등 조성
학교역량 제고 및 은폐·축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15. 학교역량 강화 및 지원 확대 16. 은폐·축소 및 부적절 대처 관리·감독 강화
안전한 학교환경 및 전 사회적 대응 강화	17. 학교폭력 신고 시스템 개선 18. 학교안전 인프라 확충 및 운영 내실화 19. 지역사회의 예방 및 근절 활동 확산 20. 학교폭력대책 추진체계 재정비

자료 : 교육부(2013).

2013년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5대 영역별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현장의 자율적 예방활동 지원을 강화하였다. 즉, 국가 수준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인 ‘어울림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단위학교의 체험형 예방교육을 체계화하고 내실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연극 및 뮤지컬 등 감성 중심의 문화 체험형 예방교육을 활성화하였다. 또한, ‘포래상담’, ‘포래조정’, ‘학생자치법정’ 등 포래활동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이 중심이 되는 자율적인 학교폭력 문제 해결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였고,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우수학교(일명 ‘꿈키움 학교’) 3,000개교를 선정·육성하였다.

둘째, 학교폭력 유형별 맞춤형 대응을 추진하였다. 언어폭력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 ‘육설 퇴치 아이디어 공모전’ 등 언어문화 개선 활동을 확대하였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사이버폭력 발생 시, 학교전담경찰관을 대화방에 초대하여 즉시 폭력상황에 개입·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청소년 대상 ‘스마트폰 유해정보 차단 웹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상설 ‘인터넷 치유학교 설치 및 유관기관(상담복지센터)과 연계’하여 ‘인터넷 중독 전담

전문상담사'를 양성·배치하였다.

셋째,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를 내실화하였다. 시·도별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전담 지원기관'을 구축함은 물론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자살 위험,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상담, 치료연계, 사례관리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 '학생 정신건강 지역협력 사업'을 시행하였다. 또한 가해학생을 위한 가족 단위의 다양한 특별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위(Wee) 프로젝트'를 확대하였다.

넷째, 현장의 학교폭력 대처 역량을 제고하고 은폐·축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전국 교육장 및 학교장 대상 연수 실시를 강화하였으며, 학교폭력 은폐·축소 등 관련 민원을 즉시 신고하여 신속·공정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학교폭력 민원신문고' 및 '학교폭력특별점검단'을 운영하였다.

다섯째,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및 전 사회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 전화'를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하였고, CCTV와 학생보호인력을 확대하며 학생보호인력의 범죄경력 조회를 의무화하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경찰-학교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교사와 전담경찰관 간 정례 협의체계'를 구축하였다.

## 나.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5~2019)

학교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하에 2012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및 2013년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이 수립되고 시행됨으로써 2012년 이후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낮아지고,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 센터' 신고 및 처리 건수도 줄어드는 등 학교폭력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 및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의 배치가 확대되고, 대다수 학교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하게 되었다. 한편, 학교별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어울림')등을 통한 예방교육 운영시간이 증가하였고 학생 참여·활동 중심 프로그램이 확대되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학교문화를 조성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위(Wee)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치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실시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적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추진상의 한계점도 일부 발견되었다. 먼저, 학교폭력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학교 현장 문화를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학교폭력이 언제든지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학교폭력 안전 인프라의 양적 확충에 상응하는 질적 제고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즉, CCTV 설치 대수(설치율)는 2013년 141,790대(10.5%)에서 2014년 164,282대(25.5%)로 양적인 확충은 이루어졌으나, 고화질 CCTV 비율이 여전히 낮고, 실시간 관제에 필요한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이 부족하였다. 아울러 학교폭력을 신고한 학생 중 ‘신고효과를 봤다’는 학생은 36%에 불과하여 신고 후 처리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재심기관이 달라 상호 모순된 결정이 나오는 사례가 있는 등 혼선이 초래되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아울러 학교폭력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가정·사회에 걸친 전반적인 폭력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이에 2014년 12월에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2015년부터 시행된 「제3차 기본계획」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5대 영역, 16개 추진과제로 구성하였다.

〈표 6-1-6〉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15~2019)」

영역	추진과제
인성교육 중심 학교폭력 예방 강화	1. 인성 함양을 통한 학교폭력 사전 예방 2. 또래활동을 통한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 3. 체험중심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4. 폭력유형 및 추세에 따른 대응 강화
학교폭력 대응 안전인프라 확충	5. 학교폭력 위해요인 지속적 해소 6. 학생보호인력 확충 7. 학교 밖 안전관리 강화
공정한 사안처리 및 학교 역량 강화	8. 학교폭력 조기 감지·신고 체계 강화 9. 사안처리의 공정성 확보 10. 학교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 강화
피해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	11.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지원 내실화 12. 가해학생 맞춤형 교육 및 선도 강화 13. 관계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전 사회적 대응체제 구축	14. 가정의 역할 및 교육기능 강화 15. 지역사회 역할 및 책무성 강화 16. 대국민 인식제고 및 전 사회적 대응체제 구축

자료 : 교육부(2014).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의 5대 영역별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본적인 학교 문화의 변화를 위해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였다. 주요교과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7대 안전교육 표준(안)에 폭력·신변 안전교육을 포함하였다

둘째, 학교폭력 안전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학교에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적용을 확대하고 학교의 신·개축 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의무화하였으며, 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학교전담경찰관 및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을 확충하였다.

셋째, 공정한 사안처리 및 학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다. 담임교사의 확인, 학교폭력 실태조사 실시, 117 신고·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학교폭력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 위촉을 확대하는 한편,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 은폐·축소 등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였다.

넷째, 피해학생 보호·치유를 위해 위(Wee) 프로젝트를 통해 피해학생 상담을 강화하고, 치료비 지원대상 기관 및 치료비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피해학생 통합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였다. 또한 가해학생 특별교육 지원기관을 확대하였으며,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유형·수준에 따라 맞춤형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다섯째, 전 사회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가정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 교육을 확대하였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지역협의회 운영 활성화 및 학교별 학교폭력 정보공시, 지역사회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책무성을 강화하였다.

## 다.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201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제1차~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및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이 수립·추진되어 학교폭력 발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초등학생 피해 응답률이 중·고등학생 피해 응답률에 비해 높고, 초등학교 자치위원회 심의 건수 및 피해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2015. 8. 7.) 하였다.

동 대책에서는 중·고등학생에 비해 초등학생의 학교폭력이 더 많은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초등학생은 뇌의 감정조절기관이 발달하는 시기로 감정이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고,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해 유해매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또한 가정적 요인(맞벌이·한부모 가족 증가, 아동학대 등)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초등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미흡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대책」은 4대 영역, 12개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추진되었다.

〈표 6-1-7〉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

영역	추진과제
1. 정신 의학적 지원 강화	1. 위기 의심학생 조기감지 2. 고위기 학생 선별 및 지원 3. 고위기 학생 치료 지원
2. 유해매체 노출 대책	4.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조치 5.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위험군 상담 및 치유 6. 유해요인 예방교육 지원 강화
3. 가정의 역할 제고	7. 가족관계 회복 및 부모역할 교육 확대 8. 학부모 소통 활성화 및 체험형 치유 강화
4. 학교의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9. 학교폭력 유형별 예방교육 추진 10. 초등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예방교육 강화 11. 담임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역량 강화 12. 초등학교 상담 역량 강화

자료 : 교육부(2015).

## 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지원 방안」 (2015)

2014년 4월 초등학교에서 한 남성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초등학교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사건을 비롯해 본드 흡입 남성의 돌봄교실 침입 사건, 학교 부적응 학생의 방화사건, 학교 인근 성범죄자 증가 등 학생과 학교의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이슈들이 다수 발생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5개 영역 11개 과제로 구성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지원 방안」을 마련(2015. 10. 16.)하였다.

〈표 6-1-8〉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지원 방안」

영역	추진과제
1. 학생보호인력 확충 및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움터지킴이 등 학생보호인력 확충 및 내실화</li> <li>• 학교전담경찰관 지원 체계 구축</li> </ul>
2. 안전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출입자 통제 및 관리 강화</li> <li>• CCTV 성능 개선 및 관제 강화</li> <li>•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한 선편드 점진적 확대</li> </ul>
3. 학생안전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안심알리미 보급 확대 및 기능 개선</li> <li>• 스마트폰 보유 학생을 위한 앱서비스 확충</li> </ul>
4. 안전 인식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장의 책무성 강화</li> <li>•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li> </ul>
5. 부적응 학생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적응 학생 조기 감지·진단 기능 강화</li> <li>• 학교-Wee센터-전문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체계 구축</li> </ul>

자료 : 교육부(2015).

## 마.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 및 보완 대책(2017~2018)

2017년과 2018년에 잇따라 강력한 청소년 폭력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에 엄정 대처하고, 동시에 피해자 지원과 가해학생 선도·교육,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2017. 12. 22.)과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2018. 8. 31.)을 발표하였다.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에는 다음과 같이 6대 영역에서 24개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표 6-1-9〉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

영역	추진과제
청소년 폭력 엄정대처 및 선도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li> <li>• 범죄예방교육 프로그램 연계 강화</li> <li>•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대상 청소년 집중관리</li> <li>• 소년범 관리환경 개선을 통한 재범 예방</li> </ul>
청소년 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학생 등을 위한 전국단위 전담지원 기관 확충</li> <li>• 성폭력·가정폭력 피해학생 전학관련 지침 마련</li> <li>• 마을번호사와 청소년 폭력 사안처리 연계 강화</li> <li>• 병원형/가정형 Wee센터 체제 구축</li> <li>• 청소년 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종합지원 강화</li> </ul>

영역	추진과제
기관 간 정보공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관찰소와 경찰간 정보 공유</li> <li>• 신속한 가해자 정보 공유</li> <li>• 자살 위기상황 신속 개입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li> </ul>
학교폭력 대응체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적 관계회복 중심의 학교폭력예방법 등 개정 추진</li> <li>• 학교폭력 피해자 특별교육 내실화</li> <li>• ‘가칭’ 학생 상담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li> <li>• 전문상담교사 자격기준 강화</li> <li>• 학교폭력 실태조사 체계 정비 및 심층분석 방안 도입</li> </ul>
청소년폭력 예방 및 문화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성교육 기반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li> <li>• 체험형 청소년 폭력 예방교육 강화</li> <li>• 모든 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 강화</li> <li>•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li> <li>• 청소년 유해물에 대한 관리 강화</li> <li>• 사이버상의 2차 피해 대응 강화</li> </ul>
민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관 협동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li> </ul>

자료 : 교육부(2018).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폭력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선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10~13세)과 촉법소년의 범죄 증가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법무부와 협력하여 현재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형법·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또한 법무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부 위(Wee) 프로젝트,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협력하여 범죄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였다.

둘째, 청소년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2018년 기준 1곳인 전국 단위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을 확대하고 가정형 위(Wee)센터 확충, 병원형 위(Wee)센터 모델 추가개발 등 위(Wee)프로젝트 내실화도 진행하며, 범피해자지원센터와 청소년안전망(CYS-Net)을 기반으로 청소년 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셋째,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법무부와 경찰 중심으로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에 대한 경찰과 보호관찰소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였으며, 경찰과 학교가 가해자의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서 자살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였다.

넷째, 학교폭력 대응체제를 정비하였다. 경미한 학교폭력은 전담기구의 확인을 거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경미한 가해학생 조치에 한하여 학생부에 미기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할 경우 징계를 강화하고 학교장 중심으로 교육적 관계회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가해학생·보호자 특별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 치유·상담을 위한 전문상담교사 임용과정을 내실화하였다.

다섯째, 청소년 폭력 예방 및 문화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체험·활동 중심의 청소년 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였으며, 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는 것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칭) 청소년 정책 모니터링단’을 구축하여 민간기관이 청소년들의 참여와 함께 정부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협업관계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 바.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

정부는 2011년 이후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를 강화하기 위해 단위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사안을 심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였으나, 모든 학교폭력 사안을 단위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가해학생 간 소송이 증가하고 학교의 교육역량이 소진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학생·학부모·교원·민간전문가로 정책숙려제 참여단을 구성하고 토론을 거쳐,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을 발표(2019.1.30.)하였다. 첫째, 중대한 학교폭력은 엄중하게 대처하고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기로 하였다. 둘째,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한 교육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학교장 자체해결제는 피해학생, 학부모 모두 위원회 개최를 원치 않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이 교육적 해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학교폭력 사안 은폐·축소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교육적 해결을 한 경우에도 피해학생, 학부모가 잘못된 정보에 의해 판단하였거나 새로운 피해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였다. 셋째,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해 전국단위 피해학생 보호 전담기관을 추가 신설하기로 하였다.

## 사.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이 2019년에 종료됨에 따라 2020년에는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를 수립(2020. 1. 15.)하고, 이에 따라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학교문화 조성, 학교의 신뢰 제고,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5대 영역에 걸쳐 14개 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표 6-1-10〉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영역	추진과제
학교공동체 역량 제고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강화	1. 학교·학급 단위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2. 학생 참여·체험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확대 3. 학교폭력 유형·추세 대응 예방활동 강화 4. 전 사회적 협력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문화 조성
학교폭력에 대한 공정하고 교육적인 대응강화	5. 학교폭력 조기 감지 및 대응체계 강화 6. 학교의 교육적 해결역량 제고 7. 사안처리의 공정성·전문성 확보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시스템 강화	8. 피해학생 맞춤형 보호·지원체계 강화 9. 사후지원 강화 및 학교 안팎 협력체계 구축
가해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	10. 가해학생 교육·선도 내실화 11.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대처
전사회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생태계 구축	12. 가정의 교육적 역할 강화 13. 지역사회 역할 및 책무성 강화 14. 전사회적 대응체계 강화 및 대국민 인식제고

첫째, 학교공동체 역량 제고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단위학교에서 교과수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생활동지 등의 형태로 개발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교과연계 어울림’)을 확대한다. 또한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등 정서적 폭력의 비중 증가와 초등학생 학교폭력 경험 증가 등 학교폭력 추세변화를 고려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를 지원한다.

둘째, 학교폭력에 대한 공정하고 교육적인 대응을 강화한다. 2019년 9월부터 시행된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활성화하고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또한 2020년 3월부터 운영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안착을 지원하고 심의의 공정성·전문성 신장을 위한 심의위원 연수를 실시한다.



셋째, 피해학생 보호·치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피해학생 지원기관을 내실화하여, 피해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피해학생 지원기관 이용만족도를 조사하여 기관 운영을 평가하는 환류체계를 구축하는 등 피해학생 요구를 반영하여 보호 및 치유 체계를 보완한다.

넷째,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대처하고 가해학생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학생 교육을 강화한다. 소년법 적용사건 수준의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우범소년 송치제도와 통고제를 적극 활용한다. 또한, ‘가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특별교육기관의 질 관리를 강화하여 학교폭력 재발방지 효과를 높인다.

다섯째, 전사회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생태계를 구축한다.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부모교육에 참여하도록 교육이수 유도방안을 마련하고,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의 실질적 학교폭력 예방활동 확대를 추진한다.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044-203-6975

### 3. 아동학대 대책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지원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학대의 예방 및 대응정책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실행된 것은 2000년 「아동복지법」의 개정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도입 이후부터이다. 「아동복지법」은 1961년 「아동복지법」으로 제정된 후 20년 동안 특별한 수정 없이 존속되어오다가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1991년에는 「UN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아동권리의 4대 원칙인 “무차별의 원칙,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의 원칙, 아동참여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국제법상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후, 「UN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국가보고서 제출 이후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라는 UN의 권고를 받았으며, 1996년 OECD가입 시에도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화롭고 체계화된 안전수단을 강구”하라는 권고를 받는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아동보호체계 확립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정부는 2000년 「아동복지법」을 전면 개정하여 11개의 아동학대 관련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아동학대의 개념을 정의함과 동시에 신고의무, 긴급전화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처럼 공식적으로 도입된 아동보호체계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왔으며, 아동보호에 있어서 공적책임성의 부재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12년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아동학대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으며, 아동학대를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신고 및 처벌을 통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점진적으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다. 2019년 5월, 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발표를 통해 학대아동보호에 대한 공적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학대아동보호 인프라 확충과 함께 학대조사 업무를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020년에 수립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에서도 2022년까지 중앙·시·도·시·군·구 단위의 공적 아동보호체계 인프라 구축 완료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아동학대 전담인력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배치하였다.

## 가. 아동학대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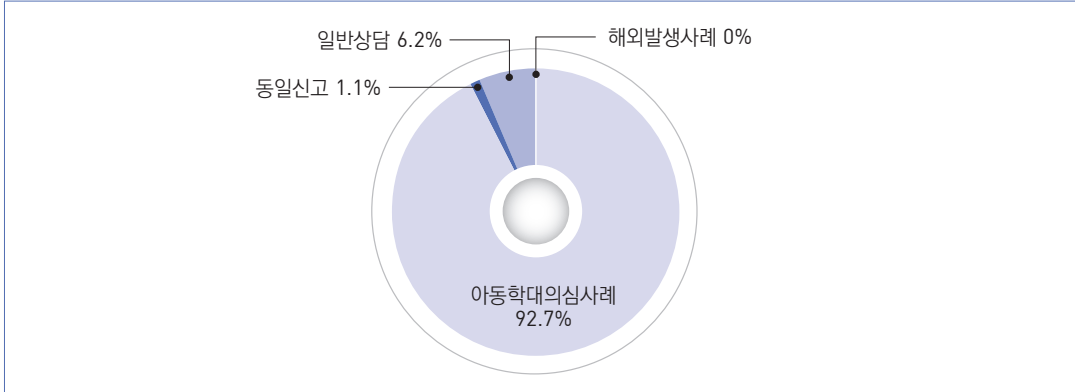
### 1) 아동학대 사례유형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서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매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sup>2)</sup>를 발간하고, 아동학대발생현황 및 추이를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은 아동학대를 발견하여 보호한 수치로서 2019년 3.81%로 나타났으며, 전년도 대비 0.83%p 증가하였다. 2019년 12월 기준, 전국 67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로 접수된 사례는 총 41,389건으로 전년대비 약 13.7%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중에서 ‘응급 아동학대 의심사례’(1,460건) 및 ‘아동학대 의심사례’(36,920건)는 총 38,380건으로 전체 신고 접수의 92.7%를 차지했으며, ‘일반상담’은 2,560건(6.2%), ‘동일 신고’는 449건(1.1%), 그리고 ‘해외발생 사례’는 0건(0.0%)으로 나타났다.

2) 2001~2017년까지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018년 통계부터는 ‘아동학대 주요통계’로 명칭을 변경하여 발간함.

[그림 6-1-1] 신고접수건수 비율(2019)



주 : 아동학대현황보고서 폐간, 2018년도부터 '아동학대 주요통계'로 발간.

자료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총 30,045건으로 2018년보다 5,441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학대보호 건수가 전년에 비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고, 이후 매해 전년대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아동학대 신고전화가 112로 통합되었고, 신고의무가 강화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및 처벌규정의 강화에 따른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세부유형별로 아동학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으로 구분되며, 여러 유형의 학대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중복학대'로 분류될 수 있다. 2019년 아동학대 세부 유형별 분석 결과, 중복학대가 14,476건(48.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정서학대(25.4%), 신체학대(13.9%), 방임(9.6%), 성학대(2.9%) 순으로 나타났다. 중복학대는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38.6%)을 보였다.

〈표 6-1-11〉 연도별 아동학대 발생 현황(2002~2019)

(단위 : 건, %)

연도	계	아동학대 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유기)	중복학대
2002	2,478(100.0)	254(10.3)	184( 7.4)	65(2.6)	1,026(41.4)	949(38.3)
2003	2,921(100.0)	347(11.9)	207( 7.1)	134(4.6)	1,078(36.9)	1,155(39.5)
2004	3,891(100.0)	364( 9.4)	350( 9.0)	177(4.5)	1,492(38.3)	1,508(38.8)
2005	4,633(100.0)	423( 9.1)	512(11.1)	206(4.4)	1,782(38.5)	1,710(36.9)

연도	계	아동학대 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유기)	중복학대
2006	5,202(100.0)	439( 8.4)	604(11.6)	249(4.8)	2,111(40.6)	1,799(34.6)
2007	5,581(100.0)	473( 8.5)	589(10.6)	266(4.8)	2,166(38.8)	2,087(37.4)
2008	5,578(100.0)	422( 7.6)	683(12.2)	284(5.1)	2,294(41.1)	1,895(34.0)
2009	5,685(100.0)	338( 5.9)	778(13.7)	274(4.8)	2,054(36.1)	2,241(39.4)
2010	5,657(100.0)	348( 6.2)	773(13.7)	258(4.6)	1,884(33.3)	2,394(42.3)
2011	6,058(100.0)	466( 7.7)	909(15.0)	226(3.7)	1,836(30.3)	2,621(43.3)
2012	6,403(100.0)	461( 7.2)	936(14.6)	278(4.3)	1,713(26.8)	3,015(47.1)
2013	6,796(100.0)	753(11.1)	1,101(16.2)	242(3.6)	1,778(26.2)	2,922(43.0)
2014	10,027(100.0)	1,453(14.5)	1,582(15.8)	308(3.1)	1,870 (18.6)	4,814(48.0)
2015	11,715(100.0)	1,884(16.1)	2,046(17.5)	428(3.7)	2,010(17.2)	5,347(45.6)
2016	18,700(100.0)	2,715(14.5)	3,588(19.2)	493(2.6)	2,924 (15.6)	8,980(48.0)
2017	22,367(100.0)	3,285(14.7)	4,728(21.1)	692(3.1)	2,787(12.5)	10,875(48.6)
2018	24,604(100.0)	3,436(14.0)	5,862(23.8)	910(3.7)	2,604(10.6)	11,792(47.9)
2019	30,045(100.0)	4,179(13.9)	7,622(25.4)	883(2.9)	2,885(9.6)	14,476(48.2)

자료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주요통계(각 년도).

## 2) 아동학대행위자, 학대 발생장소, 학대후 조치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는 2001년 학대피해아동현황 통계가 집계된 이래 현재까지 부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부모의 비중은 2011년 83.2%에서 2019년 75.6%로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부·모의 동거인, 유치원 및 초·중·고교 직원, 학원·교습소 종사자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청소년관련시설 종사자, 위탁부·모, 아이돌보미 등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발생은 2011년 8.0%에서 2019년 16.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학대행위자는 친인척으로, 연차별로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 비중은 2011년 5.8%에서 2019년 4.4%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 아동학대 발생장소는 2019년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77.5%(23,270건)가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학교 7.6%(2,277건), 어린이집·유치원 등 아동보육기관이 5.1%(1,510건)로 나타났다. 집 근처나 길가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683건(2.3%)이었다.

〈표 6-1-12〉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2011~2019)

(단위 : 건, (%))

연도	관계	부모	친인척	대리양육자	타인	파악불가	기타	계
2011		5,039 (83.2)	349 (5.8)	482 (8.0)	92 (1.5)	1 (0.2)	95 (2.4)	6,058 (100.0)
2012		5,370 (83.9)	435 (6.8)	397 (6.2)	108 (1.7)	23 (0.4)	70 (1.1)	6,403 (100.0)
2013		5,454 (80.3)	351 (5.2)	786 (11.6)	85 (1.3)	35 (0.5)	85 (1.3)	6,796 (100.0)
2014		8,207 (81.8)	559 (5.6)	990 (9.9)	124 (1.2)	18 (0.2)	129 (1.3)	10,027 (100.0)
2015		14,369 (81.4)	812 (4.6)	2,007 (11.4)	213 (1.2)	26 (0.1)	235 (1.3)	17,662 (100.0)
2016		15,048 (80.5)	795 (4.3)	2,173 (11.6)	201 (1.1)	29 (0.2)	454 (2.4)	18,700 (100.0)
2017		17,177 (76.8)	1,067 (4.8)	3,343 (14.9)	294 (1.3)	45 (0.2)	441 (2.0)	22,367 (100.0)
2018		18,919 (76.9)	1,114 (4.5)	3,906 (15.9)	360 (1.5)	-	305 (1.2)	24,604 (100.0)
2019		22,700 (75.6)	1,332 (4.4)	4,986 (16.6)	663 (2.2)	-	364 (1.2)	30,045 (100.0)

주 : 대리양육자에는 부모의 동거인, 유치원 교직원, 초중고교 직원,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보육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기타시설 종사자, 위탁부, 위탁모, 베이비시터 등이 포함됨.

자료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주요통계(각 년도).

아동학대사례 상황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아동학대사례 30,045건 중 당해에 종결된 사례 수는 10,529건(35%), 서비스 지원 등 개입을 진행 중인 사례는 19,516(65%)로 나타났다. 2019년에 발생한 아동학대사례 30,045건의 피해아동 상황<sup>3)</sup>을 살펴보면, 원가정보호가 유지된 사례가 25,206건으로 전체의 83.9%였으며, 일시적 분리조치 후 가정으로 복귀한 사례는 989건(3.3%)이었다. 분리조치는 3,669건(12.2%)으로, 이 중 분리조치 유지가 2,110건(7%)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이 사망한 경우는 60건(0.2%)으로, 전년대비 28건(0.1%p) 증가하였다.

3) 피해아동의 상황은 아동의 초기조치와 최종조치를 포함한 전체 상황을 의미함(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9, p.34).

〈표 6-1-13〉 피해아동 상황(2019)

구분		발생수(건)	발생비율(%)
원가정보호 유지		25,206	83.9
가정복귀	원가정보호~가정복귀	109	0.4
	분리조치~가정복귀	844	2.8
	기타~가정복귀	36	0.1
	[소계]	989	3.3
분리조치	분리조치 유지	2,110	7.0
	원가정보호~분리조치	524	1.7
	분리조치~분리조치	1,029	3.4
	기타~분리조치	6	0.0
	[소계]	3,669	12.2
기타		121	0.4
사망		60	0.2
계		24,604	100.0

자료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 나. 아동학대 예방 대책

### 1) 아동방임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정부에서는 2006년 4월부터 ‘보건소 아동보호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방문간호서비스’에 ‘아동보호서비스’를 연계한 것으로, 학대 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2006년 시범사업은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이 방문건수 대비 16.5%로 나타나는 등 사업성과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2007년 전국 16개 지역에서 보건·복지·교육 통합서비스를 실시하는 ‘희망스타트’ 사업을 착수했다. 2008년 희망스타트 사업은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저소득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2016년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대되었다.

##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급증하고 있는 아동학대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 시행되었다.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강화 및 현장출동,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와 보호처분,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특히 아동학대 처벌 및 보호절차를 대폭 강화하였다. 개정 특례법에는 과거 「형법」에만 있었던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 및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부모는 검사의 청구로 친권을 상실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신고의무자 관련 규정을 강화하였다. 신고의무자제도(Mandatory Reporting)의 강화는 신고 및 조사를 기초로 하는 아동보호체계의 중요한 작동기제로 간주된다. 2000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금지 및 신변보호와 관련한 일련의 법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2015년부터 의료인 직군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교육 및 강사양성 사업추진, 신고 직군의 지속적 확대 등을 통해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2020년에는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20.10.1 시행)되어 신고의무자 범위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유치원은 유치원의 장과 종사자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학교의 장과 종사자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2019년 기준, 아동학대 의심사례 가운데 23%(8,836건)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사례로, 2001년 (686건)에 비해 신고의무자의 신고건수는 약 1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동 법의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사법처리 신청권을 부여하게 되었다.

## 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정부는 2000년 1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0년 10월에 전국 16개 시·도에 17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였으며, 2001년 10월에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체계를 갖추었다. 2004년부터는 지역 기관 23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2004년에는 복권기금을 확보하여 아동학대의 예방부터 치료·보호 및 가정 복귀까지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보호종합센터’ 기능을 부과하여 시·도별 1개소씩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2014년 2월 28일에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이 발표되고, 9월 28일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대폭 강화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는 등 국가아동학대 대응체계가 구축되었다. 뿐만 아니라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법무부가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을 마련하였고, 별도로 운영되어온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범죄 신고 전화인 112로 통합하였으며, 신고접수 당시 아동의 안전에 위험이 의심되는 응급아동학대 신고인 경우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동행하여 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7년 경찰 단독 또는 동행으로 아동학대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사례는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2019년 기준, 아동학대범죄현장에서 상담원이나 경찰이 피해아동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응급조치 1,309건 중, 상담원이 응급조치를 실시한 건수는 868건(66.3%), 경찰이 응급조치를 실시한 건수는 441건(33.7%)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응급조치 중 가장 많은 조치를 취한 내용은 상담원과 경찰 모두 3호(피해아동 보호시설 인도)로, 각각 824건(84.5%)과 336건(49.0%)이었다.

〈표 6-1-14〉 아동학대 응급조치 현황(2019)

(단위 : 건, %)

구분	건수	비율	조치내용				
			1호	2호	3호	4호	계(중복집계)
상담원	868	66.3	23(2.4)	67(6.9)	824(84.5)	61(6.3)	975(100.0)
경찰	441	33.7	137(20.0)	168(24.5)	336(49.0)	45(6.6)	686(100.0)
계	1,309	100.0	160(9.6)	235(14.1)	1,160(69.8)	106(6.4)	1,661(100.0)

자료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9년 기준 전국에 67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46조를 근거로 수행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주요 업무는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 라. 아동권리보장원 설치·운영

「아동복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2019년 7월에 출범한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을 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업무이며 관련 사항은 동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다.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이 수행하는 업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 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포함한다.

## 4. 아동실종예방 및 실종가족 지원

아동에게 있어 부모와 떨어져 격리되는 경험은 극도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평생 지워지지 않는 심리적 충격으로 남게 된다. 부모 또한 아동이 실종되면 모든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아동을 찾는 일에만 전념하게 된다. 아동의 실종은 부모로 하여금 실종아동에 대한 죄책감과 우울증, 경제적 어려움 등과 같은 고통을 겪게 하여 최악의 경우 가정의 해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실종아동 문제를 개인의 문제 또는 실종아동 가족의 책임으로만 전가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2003년 이전의 실종아동 찾기 체계는 경찰의 초동조치 미흡, 보호시설의 아동카드 송부누락 및 지연, 미신고시설 관리부실, 관련



법률의 부재, 일반 국민들의 인식 부족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2004년 개구리소년들(1991년 실종)의 유골 발견, 2004년 부천초등생, 포천여중생 실종사건 등으로 인해 실종아동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국가 차원의 실종아동 찾기 체계 구축 및 예방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 5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 제정되었다. 동 법은 아동과 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하고, 신속한 가정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2008년에는 「실종아동법」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법률을 개정·시행하였다. 정신병원에서 환자의 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거나 신상카드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종아동 등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신의료기관의 장도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등을 보호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신상카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아동의 출생신고를 접수한 경우, 아동의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확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관계 공무원이 정신병원이나 보호시설을 방문하는 때에는 실종아동의 가족을 동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실종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유전정보의 보존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다. 장기실종아동의 발견을 위해 유전자 분석 제도<sup>4)</sup>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2020년 4월 기준, 37,461명의 유전자를 채취하였고, 장기실종아동 617명이 가족과 다시 만났다. 유전자 분석 제도는 2020년 1월 1일부터 해외까지 확대하여 14개국 34개 재외공관을 통해 해외 한인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등록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sup>5)</sup>를 2004년부터 운영 중이며, 2020년 4월까지 총 453만 명이 사전등록을 하였다.

2011년 8월에는 실종·유괴경보(엠버경보), 실종신고를 경찰청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4년 7월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을 빨리 찾도록 하였으며, 실종아동의 조기발견지침을 마련하였다. 2017년까지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된 실종아동전문기관은 중앙입양원이 이어받았으며, 2019년 아동권리보장원이 중앙입양원을 비롯한 주요 아동정책 중앙기관을 통합하였으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현재 아동권리보장원 산하에 실종아동전문센터를 설치하여 실종아동DB 구축 및 운영, 실종예방, 실종가족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담당하고,

4) 무연고 아동 등과 실종자 가족 유전자 대조로 가족을 찾는 사업.

5) 실종 시 활용하기 위해 아동 등의 지문·사진 등과 보호자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

경찰청은 실종아동 등의 발견과 관련한 역할을 담당한다.

「실종아동법」 제·개정에 따른 주요한 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2013년 6월 「실종아동법」 개정에 따라 실종아동의 대상연령이 만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상의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아인·정신장애인과 「치매관리법」 상의 치매환자는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실종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을 보호 및 지원하도록 하였다. 둘째, 실종업무를 전담할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2020년 개정을 통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실종아동 업무를 담당하고, 실종 치매환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실종 아동·장애인·치매환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실종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종가족 지원 등 실종예방 및 가족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규정하였다. 넷째, 보호시설의 장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장의 신상카드 제출을 의무화하고, 시설보호 대상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등의 자료를 전산화하여 실종아동 찾기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경찰의 수색·수사를 의무화하여 경찰의 초동수사 및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미신고보호행위를 금지하여 개인의 불법 입양이나 미신고시설 등의 불법 보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일곱째, 보호시설에 대한 경찰의 현장 조사권한을 명시화하여 시설에서 거부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전자검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전자 검사를 통해 실종아동 등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는 경로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법적 변화와 함께 정부 차원의 실종아동 예방 및 대응 종합정책을 살펴보면, 2006년 11월 「실종아동 및 실종 장애인 찾아주기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하였으며 동 대책에 따라 신고의무자,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의무 불이행자 및 불법양육자의 처벌규정에 관한 홍보도 병행하여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다. 2008년 4월에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범정부차원의 아동범죄 예방 및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아동·여성보호 종합대책」을 추진하였다. 동 대책에서는 첫째,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놀이터, 공원, 학교주변 및 아동범죄 다발지역 등 아동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전개·지원하였다. 둘째, 시·도별 ‘실종 아동·장애인 일시보호센터’를 지정(2010. 6. 8., 60개소)하여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및 장애인 발생 시 우선적으로 일시보호센터에 보호조치하고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실종여부를 확인하는 등 실종아동 등에 대한 보호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가족 또는 경찰서에서 이들을 찾아 전국을 헤매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셋째, 실종아동 등의 조기발견을 위해

경찰청의 실종신고 자료와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신상카드 자료 간 전산연계 구축을 추진하였다. 넷째,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종·유괴 예방교육을 의무화(「아동복지법」 개정, 2008. 12. 14. 시행)하고, 실종예방 인형극 순회 교육을 연중 실시하며, 연령별·대상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실종예방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였다. 다섯째, 유괴예방 3단계 구호 100만인에게 알리기, 실종예방 공익광고 송출, 어린이안전 특별생방송 방영 등 온라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어린이날(5월 5일)’, ‘실종아동의 날(5월 25일)’을 기념하여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찾아주기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였다. 여섯째, 실종가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부모활동비·전단제작지원비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해줌으로써 실종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다.

실종아동 보호·지원 추진체계는 보건복지부-경찰청-지자체-보호시설 또는 정신의료기관 등-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의 역할 분담을 통해 이루어진다. 먼저 보건복지부 산하 실종아동 전문기관에서는 정책을 수립하고, 무연고 아동 등 신상카드 DB를 구축하고, 실종예방·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한다. 경찰청에서는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수색 및 수사, 유전자 검사 대상물 채취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자체에서는 경찰관에게 실종 아동 등을 발견하여 신고하고 신상카드 작성 및 제출 여부를 지도한다. 보호시설 등은 경찰관서에 실종아동 등을 발견 신고하고, 신상카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조기발견지침에 따라 즉시 경보 발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표 6-1-15〉 실종아동 보호·지원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실종아동전문기관)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국번없이 182)	지방자치단체	보호시설 또는 정신의료기관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책 수립</li> <li>무연고아동 등 신상카드 DB 구축</li> <li>실태조사, 연구</li> <li>실종예방·교육 및 홍보</li> <li>실종아동 등의 가족 지원</li> <li>실종아동 등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침 고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종신고 접수</li> <li>수색 및 수사</li> <li>유전자검사대상물 채취</li> <li>관계장소 출입·조사</li> <li>실종아동 등 조기 발견 지침이 준수되도록 교육·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찰관서에 실종아동 등 발견 신고 ※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센터 [국번없이 182]</li> <li>신상카드 작성·제출 여부 지도</li> <li>관계장소 출입·조사</li> <li>위반사항 과태료 부과·징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찰관서에 실종아동 등 발견 신고 ※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국번없이 182]</li> <li>신상카드 작성·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종아동 등이 신고되는 경우 조기 발견 지침에 따라 즉시 경보 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 등의 조치</li> <li>시설 종사자에게 실종아동 등 조기 발견 지침에 관한 교육·훈련 연 1회 실시</li> <li>경찰관서에 교육실적 보고</li> </ul>

자료 : 보건복지부·경찰청·아동권리보장원 보도자료. (2020.5.22). 너를 그런 길 에서 우리 다시 만나!~. p.11에서 발췌.

일반아동의 실종 발생 건수는 2011년에는 28,099명에서 2017년 19,956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 왔으나, 2018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전년대비 약 2천 명 이상 증가한 21,980명이었다. 2019년에는 약간 감소한 21,551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중 21,452명, 약 99.5% 이상이 보호자에게 인계되었고, 99명이 미발견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발견사례 건수는 2017년 5건, 2018년 10건, 2019년 99건으로 최근 연도에 가까울수록 미발견 건수가 높으나 지속적인 추적과 발견 활동으로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및 치매환자는 연령을 불문하고 실종자 통계를 집계하고 있다.

〈표 6-1-16〉 실종 일반아동 발생 및 가족복귀 현황(2011~2019)

(단위: 건)

연도	발생건수	발견건수(보호자인계)	미발견건수
2011	28,099	28,096	3
2012	27,295	27,292	3
2013	23,089	23,087	2
2014	21,591	21,589	2
2015	19,428	19,427	1
2016	19,870	19,865	5
2017	19,956	19,951	5
2018	21,980	21,970	10
2019	21,551	21,452	99

주 : 1) 2013년 6월 4일, 실종아동법 개정으로 실종아동의 범위가 실종 당시 14세 미만에서 실종 당시 18세 미만으로 확대되어 2011~2012년 통계자료는 개정법을 적용하여 산출.

2) 미발견 현황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임.

자료 : 1) 경찰청(내부행정자료), 각 년도.

2) 통계청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1610&stts\\_cd=161001&freq=Y](https://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1610&stts_cd=161001&freq=Y)에서 2020년 12월 7일 인출.

한편,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에서는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실종아동 정보 전자등록 및 연계를 통해 실종아동 찾기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심리상담·치료 프로그램 권역별 운영,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 사례관리 미등록자 등록 권유·안내 등의 추진을 통해 맞춤형 실종아동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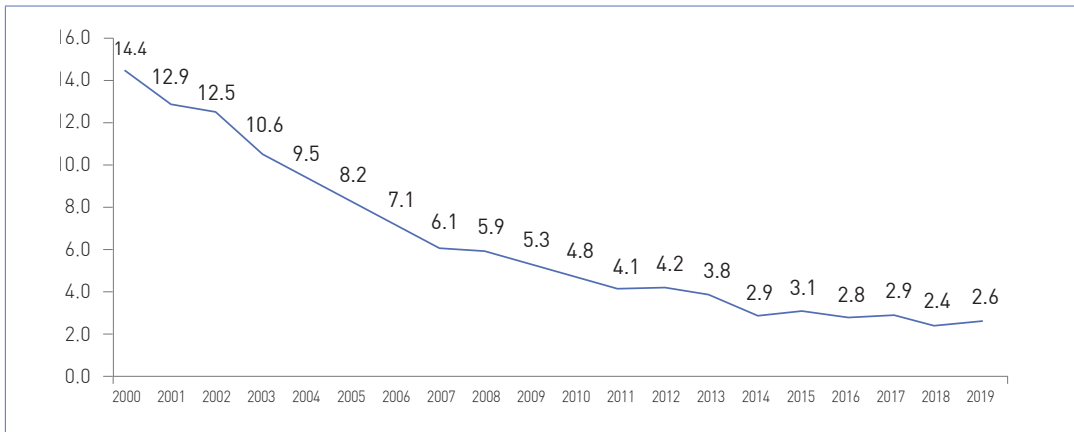
## 5. 청소년 안전사고 예방

### 가.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현황

어린이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2003년을 '어린이 안전원년'으로 선포(2003. 5. 5.)하고, 2003년 6월부터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 향후 5년간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매년 10%씩 낮추어 절반 수준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어린이 사고사망 2001년 1,269명 → 2007년 538명). 그리고 OECD 회원국 최하위에서 중위권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을 추진하였으며, 추진상황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과제를 조정해 나갔다. 「어린이 안전종합대책」과 각종 안전대책의 효과로 아동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 2.6명으로 나타났다.

[그림 6-1-2] 아동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0~14세)

(단위 : 명/아동 10만 명당)



주 : 안전사고는 사망원인분류 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해당하며, 운수사고, 낙상(추락), 불의의 익사 및 익수,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유독성 물질 중독 및 노출, 기타 외인 등을 포함하며, 고의적 자해(자살)나 가해(타살)는 제외함.

자료 : 통계청, 아동 십만명당 안전사고사망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10005](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10005)에서 2020년 12월 7일 인출.

유형별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8년의 경우 총 안전사고 사망 아동 수는 전년대비 33명 감소한 163명이었고, 사망원인으로는 교통사고가 전년대비 21명 감소하였지만 54명으로 사망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8년의 익사 및 추락사는 각각 18명,

28명으로 익사는 2017년보다 6명 감소하였고, 추락사는 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화재에 따른 사망은 8명, 중독으로 인한 사망자는 4명으로 나타났다. 질식을 포함한 기타 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는 51명으로 전년대비 11명 감소하였다.

〈표 6-1-17〉 연도별·유형별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현황

(단위: 명)

연도	계	교통사고	익사	추락	질식	화재	중독	기타
1998	1,664	805	326	115	161	64	21	172
1999	1,524	726	306	152	131	88	21	100
2000	1,417	728	306	155	78	41	13	96
2001	1,269	616	236	138	102	76	7	94
2002	1,210	594	198	134	114	55	6	109
2003	1,016	497	156	108	96	70	4	85
2004	891	374	183	88	90	46	7	103
2005	756	337	156	67	72	25	4	95
2006	645	318	78	58	69	42	5	75
2007	538	259	78	58	70	7	4	62
2008	508	214	78	50	67	19	2	78
2009	440	201	62	39	47	10	5	76
2010	386	194	44	41	-	15	3	89
2011	322	137	50	37	-	15	1	82
2012	326	131	53	36	-	14	1	91
2013	287	121	41	37	-	15	2	71
2014	215	80	36	31	-	5	2	61
2015	225	103	28	28	-	10	-	56
2016	196	87	19	28	-	5	1	56
2017	196	75	24	26	-	7	2	62
2018	163	54	18	28	-	8	4	51

주: 1) 1년 동안 안전사고로 사망한 14세 이하 아동의 수(외부요인에 의한 사망)에서 자살·타살·질병 제외.  
2) 2010년부터 질식사고는 기타로 집계.

자료: 통계청(2019). 사망원인통계. 14세 이하 아동에 대한 안전사고 사망자 유형별 현황.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2711&board\\_cd=INDX\\_001](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2711&board_cd=INDX_001)에서 2020년 12월 7일 인출.

아동 10만 명당 비의도적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2005년에는 OECD 국가 평균 5.5명을 넘어서는 8.1명이었으나 2015년에는 2.8명으로 감소하여 OECD 국가 평균(3.1명)보다 낮았다. 그러나 주요 선진 국가들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표 6-1-18〉 아동 안전사고 사망자 수 국제 비교(2015년 또는 최근연도)

(단위 : 명/아동 10만 명당)

국 가	OECD 평균	한국	스웨덴	영국	독일	일본
2005	5.5	8.1	2.0	3.5	3.5	4.8
2015	3.1	2.8	2.0	2.0	1.9	2.7

주 : WHO Mortality Database(2018. 4. 추출).

자료 : 통계청 보도자료(2018. 5. 3.),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 1996~2016년.

## 나. 아동안전종합계획 등의 주요내용

아동은 미래 국가 경쟁력의 초석이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결정짓는 척도이다. 그러므로 어린이의 안전 문제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우선적인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18년부터 합계출산율은 1명 이하로 내려가 2019년에는 전년보다 감소한 0.91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 저출산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아동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키워내는 일은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부담해야 할 사회적 책무라고 할 수 있다.

아동안전사고는 성인에 비해 사망 및 중상의 비율이 높고, 인격발달과 정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사고로 인한 가족의 위기와 해체를 막기 위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결국 국가 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우리나라의 아동안전문제는 단지 피할 수 없는 일로 간주되거나, 부모들이 알아서 예방하여야 할 일로 여겨지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또한, 아동안전 관련 정책 또한 소관 분야별로 각 부처에서 분산적으로 추진되어 체계적·종합적인 정책 개발이 부족하였다.

하지만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된 「제1차 어린이안전종합대책」의 추진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10만 명당)는 2002년 12.5명에 비해 2007년 6.1명으로 감소하였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2009년 「제2차 어린이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2016년에는 2020년까지 어린이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선진국 수준인 2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 국민안전처,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 9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본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을 집중적으로 감축해 나가기 위해 어린이 카시트 착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의 다양한 교통안전 대책이 포함되었다. 둘째, 학교 주변 교통 및 유해환경 등을 집중 단속하고, 안전 점검을 엄격하게 하는 등 놀이시설을 비롯한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셋째, 어린이 안전체험교육 활성화 및 수상안전교육 확대를 포함하는 어린이 안전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어린이 안전수준을 평가하고 환류하는 것이다. 이러한 종합대책을 통해서 아동의 안전정책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선진국 수준의 아동을 위한 안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의 부처별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 상황은 반기별로 점검하고 관계부처의 협력을 도모해 왔다. 이 중에서 특히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안전교육 콘텐츠, 안전체험시설, 안전교육 강사 확보 등에 주력하였다.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를 마련하여 연령별 및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2018년 5월,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에서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5개 분야 14개 과제에 대해 ‘어린이 안전 대책’을 발표하였다. 교통, 제품, 식품, 생활공간, 안전을 포괄하는 안전대책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공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 학원가·놀이공원 주변까지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확대, 키즈카페 안전 통합관리 강화, 체험중심 안전교육 확대 등이다.

구체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매년 300여개 확대하여 2022년까지 18,155개소로 지정, 보도와 통행로의 설치, 학교주변 CCTV를 2022년까지 10,949개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사용량이 제한된 화장품 원료의 함량 표시 의무화, 영유아용 보존제, 색소 등의 사용금지 원료 어린이용으로 확대 등 사용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어린이 화장품 관리를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 확대 및 위생 관리 강화, 키즈카페 통합관리 운영지침 마련 및 관계부처 합동 점검,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어린이 안전대책」의 추진과제를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수행하여 아동이 더욱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표 6-1-19〉 「어린이 안전대책」 추진과제

분야	과제
교통안전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사고 감축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강화
	어린이 교통안전용품 보급 및 교육·홍보 강화
제품안전	위해 어린이제품의 관리 및 감시 강화
	어린이용품 환경유해물질 관리 강화
식품안전	어린이 식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기반 개선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기준 강화
	어린이 이용시설의 위생 점검 강화
생활공간	학교주변 안전사고 예방 강화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안전교육	어린이 안전체험교육 활성화
	어린이 맞춤형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교직원 등의 안전교육 역량 강화

자료 : 소비자정책동향 제90호(2018. 5. 31.) p.14.

한편 제1차에서 제3차까지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 추락, 익사사고 등 주요 어린이 안전사고에 관한 정책을 포함하였다. 여기에는 아동안전 관련기관 간 업무 협조체계 강화,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확대, 아동 안전체험 행사 개최, 아동 안전교육 관련 온·오프라인 콘텐츠 보완·개발 등 사회 전반의 아동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등의 내용이 지속적으로 포함되었다.

또한, 안전 통계의 주요지표인 ‘통계청’의 ‘사망통계’와 ‘질병관리본부’의 ‘손상관리정보’, ‘한국소비자원’의 ‘위해정보시스템’ 간 협력방안을 강구하였으며, 각 부처별·기관별 어린이 안전관련 통계를 통계청의 통계자료에 반영하도록 추진하였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되었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아동·청소년 생활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연령대(만 5세 이하)와 사고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 부모교육 실시, 가정 안전꾸러미를 배포하는 등 생활안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에서 안전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에서는 아동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물놀이, 가정, 학교, 승강기 및 자동계단, 놀이 안전 등 생활안전분야 추가로 아동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포함하였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등·하굣길을 동행하고, 등·하교 상황, 학교 결석여부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워킹스쿨버스 (Walking School Bus)’를 확산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와 차도 분리시설’ 및 ‘도로부속물’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어린이 보호 장구 개발지원 및 표준화, 저소득층 무상대여 등 어린이 보호 장구 착용률 제고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또한,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등·하굣길 안전 강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안전한 청소년수련활동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위생 점검 및 종합평가를 지속 실시하고, 안전체험교실 및 안전체험관 확충을 제시하였다. 또한 청소년지도사 양성 및 교육 과정에 안전 관련 교육과정 이수율 의무화하여 체험활동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밖에도 복지·문화시설 및 기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체험처에 수련활동과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청소년지도사의 배치 확대를 제시하였다.

## 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아동정책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아동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주요 추진과제를 수립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시행·관리하는 중장기 관점의 계획이다.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2015~2019)」에서는 안전한 삶 영역을 설정하고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국민안전 마스터플랜 수립 등 체계적 정책대응 상황을 고려해 아동기 안전 위해요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발달주기별 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예방투자를 확대하고, 가정·학교에서의 생활안전을 강조하였다. 생활안전에 있어서는 가정·학교(돌봄기관 포함) 등 아동의 주된 생활공간에서 위해요인을 줄이고, 도로 등 이동공간에서의 안전확보 방안 마련을 제시하였다. 특히 아동기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습관 내면화를 도모하였다. 안전체험관 등 아동안전관리 인프라를 확충하고, 어린이 활동공간의 안전을 확보하며,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발달주기별 안전 취약분야에 대한 예방투자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안전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에서는 생활 속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대폭 개선 및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 보호구역에 신호등 및 무인교통단속장비를 2022년까지 설치하고, 보호구역 식별 용이성 강화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기준 보완 등 표준모델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또한 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 현재는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4대 지역에 대해 시행 중이나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할 예정이다.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통행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맞춤형 교통안전 기준을 신설(2020년, 교통안전법령 개정)하고 지자체 이행사항을 점검·관리(2021년~)할 예정이다. 2021년에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시설을 확대하여 안전의무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5개 법률에 규정된 6종 시설이나 향후 11개 법률에 규정된 18종 시설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리고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서 법규 위반 처벌수준을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로 상향조정하여 통학버스 안전의무 준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안전교육대상을 운영자와 운전자에서 동승보호자까지 추가 확대하고, 안전운행기록 작성을 의무화하여 매분기 시설 감독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유치원 구성원, 학부모 등이 협력하여 유아의 건강·안전에 관한 사항을 점검·개선하는 모델인 「학부모안심유치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초등학교, 키즈카페 등 어린이 주요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강화, 어린이 먹거리 안전·위생관리 강화, 아동 사용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확립도 제시되었다.

## 제2장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 1. 청소년 유해약물예방 기반 구축

청소년유해약물은 「주세법」에 의한 주류,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 「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환각물질 등이며, 이 외에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것을 말한다.

약물중독은 약성 약물에서 강성 약물로 전이되는 것이 보편적이고, 한번 사용하게 되면 습관성과 의존성 및 중독성과 내성이 강하여 중단하기 힘든데, 특히 청소년의 약물사용은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성인기까지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청소년의 일탈행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존의 청소년 약물예방 대책은 「청소년 보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지만, 주류나 담배의 유통규제 제도의 한계 등으로 청소년의 흡연·음주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기존의 청소년 약물 관련 제도 및 법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현행 정책과 제도에 대한 효과적·효율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예컨대 청소년 약물 중 빈번한 사용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음주 및 흡연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약물예방에 관한 국제적 표준에 적합한 제도와 법안 마련 등이 그것이다. 이는 기존의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규제 위주의 보호정책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보호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노력들은 궁극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에 대한 사회적 관리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 가.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 실태

2019년도 청소년 흡연율은 6.7%로, 2015년 7.8%, 2016년 6.3%였다가 2017년은 6.4%, 2018년 6.7%로, 최근에는 감소하는 정도가 주춤한 추세이다. 2019년 기준 남자 청소년의 흡연율은 9.3%,

여자 청소년 흡연율은 3.8%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최초 흡연 시작연령은 평균 만 13.2세로 나타났다.

〈표 6-2-1〉 청소년 현재 흡연율, 평생 흡연 경험률 및 처음 흡연 연령

(단위 : %, 세)

구분		현재 흡연율	평생 흡연 경험률	처음 흡연 연령
2015년		7.8	17.4	12.7
2016년		6.3	14.8	12.7
2017년		6.4	13.7	12.9
2018년		6.7	14.9	13.0
2019년		6.7	12.7	13.2
성별	남성	9.3	17.5	13.1
	여성	3.8	12.3	13.6

주 : 1) 현재 흡연율 :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비율.

2) 평생 흡연 경험률 : 평생 동안 담배를 한 두 모금이라도 피운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

자료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각 년도.

청소년 음주의 경우, 2019년도 현재 음주율은 15.0%, 평생 음주 경험률은 39.4%로 2016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청소년의 최초 음주 시작연령은 2019년 13.2세로 나타났다.

〈표 6-2-2〉 청소년 현재 음주율, 평생 음주 경험률 및 처음 음주 연령

(단위 : %, 세)

구분		현재 음주율	평생 음주 경험률	처음 음주 연령
2015년		16.7	40.8	13.1
2016년		15.0	38.8	13.2
2017년		16.1	40.2	13.2
2018년		16.9	42.3	13.3
2019년		15.0	39.4	13.2
성별	남성	16.9	43.0	12.9
	여성	13.0	35.5	13.5

주 : 1) 현재 음주율 :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2) 평생 음주 경험률 : 평생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셔본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자료 :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각 년도.

## 나. 청소년 흡연·음주예방 기반 구축

### 1) 청소년 흡연·음주예방 기반 구축

2005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회원국에 음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고, 「국제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에서는 회원국에 담배의 광고, 판촉 및 후원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미국은 2006년 12월 연방의회에서 「청소년음주예방법」 제정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상황을 살펴보면, 청소년 흡연·음주 환경 규제내용이 각 개별법에 분산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도 존재한다. 즉, 청소년 흡연규제는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음주는 「주세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세법」은 주류소매(면허)제도를 시행하는 선진국과 달리 면허 없이도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주류가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흡연·음주예방을 위한 기존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류·담배의 청소년 대리구매 및 무상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술·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 피해 청소년 치료재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시행(2012. 9. 16.)하였다.

또한, 술·담배 판매업자에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와 담배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업소에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시행(2015. 3. 25.)하였다. 이에 따라 술·담배 판매영업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내용을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곳 또는 담배자동판매기 앞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주류 및 담배 판매 시 신분증 확인 등 청소년보호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부과 등 선의의 피해를 입는 영세사업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에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으로 인해 술, 담배를 판매한 경우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시행(2016. 3. 2.)하였다.

2017년 10월에는 켈런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있도록 니코틴 용액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전자담배 기기장치류)에 대해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결정 고시하였고, 12월에는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기능성 제품으로 흡연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담배형태의 흡입제류를 추가로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결정 고시하였다. 한편 계속 감소 추세였던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률이 2018년에 2.7%로 다시 증가하였고, 성인 사용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10월에는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하여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였는데 주요내용으로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중단을 위한 권고문을 작성·배포하여 청소년과 교사·학부모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청소년 대상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 2) 청소년 흡연예방 대책 추진

최근 들어 청소년 흡연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율은 세계 청소년들의 흡연율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청소년 유해약물로 지정된 담배에 대한 청소년 대상 불법판매 모니터링과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편의점산업협회 등 관련 업계와의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 BIS(버스안내정보시스템)를 활용한 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스스로 이성적인 판단을 통하여 흡연을 자제하고, 흡연은 좋지 못한 사회적 행동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흡연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다.

〈표 6-2-3〉 관계부처의 청소년 흡연예방 정책 주요 내용

관계부처	추진과제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대상 담배 불법판매 모니터링 강화 및 유통업자 종사자 교육</li> <li>· 시·군·구 및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협력하여 신분증 확인 캠페인 전개</li> <li>·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 교육 및 다양한 홍보 실시(여름휴가철, 수능전·후 등 계기별)</li> <li>·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3~2015)」 추진</li> <li>·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6~2018)」 추진</li> <li>·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9~2021)」 추진</li> </ul>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운영</li> <li>· 보건소 금연상담 및 금연치료프로그램(금연교실, 금연지도자 교육,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 등) 제공</li> <li>· 매스미디어 홍보(언론매체, 인터넷, 금연월간지, 스티커 등)</li> </ul>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흡연 실태에 대한 주기적 파악</li> <li>· 전국 초·중·고등학교 대상 흡연·음주예방 교육 실시(금연학교 운영)</li> <li>· 학생건강정보센터를 통한 유해약물에 대한 정보 제공</li> </ul>

관계부처	추진과제
문화체육관광부	• 청소년 관람가 영화 속의 흡연장면 노출문제 개선(영상물등급분류위원회 운영규정 보완)
기획재정부	• 「담배사업법」 제정·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인터넷상의 청소년 유해악물 유통 규제 방안(인터넷상의 청소년 유해악물 유통 심의 강화 및 기준 보완)
경찰청	•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슈퍼 등 단속 강화
방송통신위원회	• TV방송 3사(KBS, MBC, SBS)의 드라마 흡연 장면 노출문제 개선
지방자치단체	• 담배판매 업소 특별계도 및 단속

자료 : 여성가족부(2020).

### 3) 청소년 음주예방 대책 추진

그동안 우리 사회 특유의 관대한 음주문화의 영향 등으로 사회 전반에서 음주로 인한 수 조 원대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였고, 음주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은 채 청소년들은 기성세대들의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해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침해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주류협회, 주류관련 유통업체 등에 청소년신분증 확인 교육 동영상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였고, 청소년 음주예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매체를 통한 일방적인 홍보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 흡연·음주예방 UCC공모전을 실시하였다. 또한 ‘하계휴가지 청소년 흡연·음주예방 캠페인’, ‘애니메이션 제작 홍보’, ‘학교 스쿨터치 및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광고’, ‘흡연·음주예방 카드뉴스 온라인 홍보’ 등 청소년 음주예방을 위해 연중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였다.

〈표 6-2-4〉 관계부처의 청소년 음주예방 정책 주요 내용

관계부처	대책 추진과제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구 및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협력하여 신분증 확인 등 캠페인 전개</li> <li>• 청소년 대상 음주예방 교육 및 다양한 홍보 실시(방학, 수능 전·후 등 계기별)</li> <li>•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3~2015)」 추진</li> <li>• 「제2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6~2018)」 추진</li> <li>•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9~2021)」 추진</li> </ul>



관계부처	대책 추진과제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주폐해 감소 및 예방을 위한 국민의식 제고</li> <li>• 생애집단별 교육 및 홍보(학생과 비행청소년, 또래 지도자와 교사, 주류 판매업자 대상 교육)</li> <li>• 정신건강검진사업을 통한 조기발견과 음주폐해 예방(학교와 연계해 방과 후 예방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중학생과 초등학생까지 적용)</li> <li>• 주류 판매자의 자정노력 강화(클린판매점 선정 및 운영)</li> <li>• 절주 상담실 운영</li> <li>• 알코올상담센터를 통한 지역협력체계 구축</li> </ul>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들의 음주율 증가 및 저연령화 문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학생의 체계적 음주예방 교육(정규수업, 학교장 재량시간 활용)</li> <li>- 학생 음주예방 교육을 위한 지도능력 배양과 인식제고</li> <li>- 전문지도자 과정 운영</li> </ul> </li> </ul>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기청소년(소년원)들의 음주율 증가 문제 관련: 갱생프로그램에 최소한의 음주예방 교육 반영</li> </ul>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관람가 영화 속의 음주장면 노출문제 개선: 영상물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 보완</li> </ul>
과학기술정보통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상의 청소년 유해 주류 유통물 규제 방안: 인터넷상의 주류 유통물 심의 강화 및 기준보완</li> </ul>
대검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관련 범죄 수사 시 “피의자 원표”에 음주여부 조사항목 신설</li> </ul>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슈퍼 등 단속 강화</li> </ul>
방송통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V방송 3사(KBS, MBC, SBS)의 드라마 음주장면 노출문제 개선</li> </ul>
지방자치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류판매 업소 특별계도 단속</li> </ul>

자료 : 1) 여성가족부(2019).

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 청소년 흡연·음주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299

##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정화활동

다양한 유흥문화의 발달로 인해 우리나라의 청소년 유해업소 및 신·변종 유해업소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증가 추세는 아래의 <표 6-2-5>와 같다.

〈표 6-2-5〉 청소년 유해업소의 수

(단위: 개소)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854,868	875,329	892,092	930,531	951,189	963,979	985,732	984,843

자료: 행정안전부 새올행정 시스템(2020).

도시지역에서의 청소년 유해업소의 난립은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의하면 유해업소에 대한 청소년의 이용률은 코인노래방 81.9%, PC방 71.6%, 짬뽕방 35.3%, 전자오락실 34.6%, VR체험카페 15.5%, 술집(소주방, 호프집 등) 3.9%에 달한다.

특히, 학교주변의 청소년 유해환경이 확산되고 있고, 주거지역 인근에도 유해업소가 난립하고 있어서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을 통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지정 및 신도시 건설시 청소년 유해환경 격리·구획화 등을 통해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을 규제하고 있다. 즉, 기존 시가지에 청소년 유해시설과 주거지, 학교, 학원 등이 혼재되어 입지하면서 청소년에게 교육적·정신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이 만들어짐에 따라 유해환경에 대한 체계적·계획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인 ‘레드존(RED ZONE)’을 설정하였다.

2016년 11월 9일, 헌법재판소는 2015년 부산, 서울에서 제기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의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 8)에 대한(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 위헌소원에 대해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3-52호〉 제3호 영업형태의 가항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이 불확실한 개념으로 예측하기 곤란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함에 따라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마사지업소 및 피부미용실 등도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되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33곳, ‘통행제한구역’ 19곳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신도시 건설시 청소년 유해환경 격리·구획화 추진 등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를 위한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년)」에 신도시 개발 도시계획 수립 시 유해업소 접촉이 최소화되도록 청소년 유해업소 격리·구획화 사업의 시범도입(국토교통부)을 적극 추진하였다. 또한, 2010년에는 화성·동탄 2신도시 실시계획에 중심상업용지 등 4개 구역에 한하여 위탁시설, 숙박시설, 청소년 유해업소 건축을 허용하는 ‘레드존’을 지정, 격리·구획화 하도록

반영하고 시범 실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격리·구획화 사업의 시범실시 결과에 대한 분석과 함께 사업 주관부처 및 시행자 간의 지속적인 업무협조 체계 유지를 통하여 추후 신도시 개발 시에도 청소년 유해환경 격리·구획화 사업을 적극 확대·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표 6-2-6〉 2020년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

(단위 : 개소)

년도	총계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무도학원 (무도장)	이용업, 목욕장	숙박업	노래연습장	비디오 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업	복합 영상물 제공업	게임제공업계				
												인터넷 게임시설 제공업	게임 제공업	청소년 게임장	복합유통 게임 제공업	일반 게임장
'18년	948,293	28,317	13,570	638,919	147,255	921	24,181	27,301	34,019	690	27	21,337	257	6,778	2,471	2,250
'19년	985,732	28,036	13,519	657,825	165,962	858	24,053	27,108	33,862	639	24	21,594	254	6,817	2,696	2,485
'20년	984,843	26,975	12,776	658,451	175,484	772	23,155	26,118	31,212	530	19	18,589	250	5,797	2,619	2,096

- 주 : 1) 출입·고용금지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무도학원, 무도장, 비디오감상실, 기타(비디오물 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소극장업).  
 2) 고용금지업소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이용업, 숙박업, 게임제공업을 지칭(일반음식점의 경우 소주방, 호프, 카페 등이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에 해당되며, 숙박업의 경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은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  
 3) 2020년 12월 말 기준 자료.

자료 : 행정안전부 새올행정 시스템(2020).

### 가.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범 단속실적

「학교보건법」상 절대·상대 정화구역의 지정·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정거리를 벗어난 사각지대에는 여전히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하는 업소들이 유혹에 취약한 청소년들을 퇴폐향락으로 이끌고 있다. 경찰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범을 2019년 8,399명 단속하였다.

여성가족부에서는 2010년 11월 키스방 등 신·변종 업소의 불건전서비스 광고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2011년 7월 해당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고시하였다. 2012년 9월에는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소극장업을 ‘청소년 출입·고용업소’로, 청소년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 게임시설제공업을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였다. 2014년 3월에는 「한국마사회법」의 장외발매소 및 「경륜·경정법」의 장외매장을 경기 개최일에 한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였고, 2015년

3월에는 술·담배 판매업자에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와 담배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업소에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술·담배 판매영업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내용을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곳 또는 담배자동판매기 앞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표 6-2-7〉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범 단속실적

(단위 : 명)

연도	위반내용					조치	
	총계	유해업소 출입·고용	유해약물 등 판매	청소년이용 유해행위	유해매체물	구속	불구속
2014	8,393	870	6,933	401	189	5	8,388
2015	9,268	327	8,364	392	185	0	9,268
2016	9,313	412	8,444	371	86	1	9,312
2017	9,750	360	8,927	393	70	2	9,748
2018	9,567	276	8,800	420	71	3	9,564
2019	8,399	299	7,617	463	20	21	8,378
2020년 10월 말 기준	5,502	125	4,957	384	36	9	5,493

자료 : 경찰청(2020).

## 나.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정화 활동

최근 변화가 등 학교 주변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해환경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룸카페, 멀티방, 등 신·변종 업소가 청소년의 탈선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이에 부응하는 단속 및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유해업소 업종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의 청소년 보호의식을 제고하였으며, 기존 유해업소 및 신·변종유해업소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행위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점검·단속을 실시하고, 전국 251개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역사회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 1)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운영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보호법」 제31조 및 각 지자체 조례에 의거하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

1999년 7월 1일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한 미성년자출입제한 구역 67개 구역이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상권변동 및 도시재정비 사업 등으로 그 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2019년 12월 말 기준 총 53개 구역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표 6-2-8〉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계	53	35	18
서울	8	5	3
부산	4	2	2
대구	1	1	0
인천	2	1	1
광주	2	1	1
대전	3	3	0
울산	0	0	0
세종	0	0	0
경기	7	5	2
강원	5	5	0
충북	1	1	0
충남	2	2	0
전북	8	4	4
전남	2	1	1

구분	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
경북	5	3	2
경남	3	1	2
제주	0	0	0

주 : 1) 통행금지구역 : 유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지역(24시간 통행금지).

2) 통행제한구역 :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한 지역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약물 등 판매·대여 등 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지역 (일정시간 통행제한).

자료 : 여성가족부(2019).

## 2) 청소년 유해업소 격리·구획화

여성가족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수도권 신도시 등 각종 신도시에서의 청소년 유해업소 난립을 막기 위하여, 신도시 계획 시 지구단위 계획 등을 통해 주거지 및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청소년 유해업소를 제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특정용도제한구역을 설치하며, 도시의 건전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락시설을 집단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청소년보호를 위한 MOU를 체결하여 신도시에 적용 가능한 청소년 유해업소 격리·구획화 모델을 제시하고, 주거지나 학교위생 정화구역에서 청소년 유해업소의 격리·구획화를 추진하여 왔으며, 지난 2010년 6월 29일 화성·동탄2 신도시 개발계획에 청소년 유해업소 격리·구획화가 반영되었다.

## 3) 학교주변의 교육환경 보호

‘교육환경 보호구역(구, 학교교육환경정화구역)’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학교 및 학교 주변에 교육환경위생에 지장이 있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한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쾌적하고 명량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부’에서 지정하고 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를 근거로 하여 설정되는데, 교육감이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고시해야 한다.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구분되는데,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을 의미하고, 상대보호구역은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의미한다.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종래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학교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추진되어 왔다. 정부는 학교 주변 학생의 안전 및 정서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업소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2016년 2월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존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변경하여 관리하고 있다.

2020년 6월을 기준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현황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적법 해제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은 총 220개소로 나타났는데, 그중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수가 116개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신변종업소가 66개소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적법 해제시설 30,489개소 중에서는 유흥·단란주점이 약 32.9%(10,026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9〉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대기/수질/악취/소음 진동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폐기물처리시설 (폐수 중말, 가축분뇨, 분뇨)	0	1	2	4	1	0	0	5	0	0	57	9	0	1	36	0	0	116
가축사체처리장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화장시설, 봉안시설, 도축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가축시장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제한상영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전화방, 화상방	1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2
성기구취급업소	1	1	0	0	2	1	0	0	3	0	0	0	1	0	0	0	0	9
신변종업소	18	21	0	0	0	3	0	0	24	0	0	0	0	0	0	0	0	66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1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폐기물수집장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총포, 화약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감염병 격리소 등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담배자동판매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복합유통게임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1
미니게임기	0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당구장	1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2
무도학원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사행행위장 등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노래연습장	4	3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8
비디오감상실업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유흥·단란주점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숙박업, 호텔업	1	0	1	0	0	0	0	0	0	0	0	0	0	0	1	0	0	3
만화가게	7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8
사고대비물질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계	35	28	4	6	4	4	0	5	27	0	58	9	1	2	37	0	0	220

주 : 2020년 6월 기준 자료.

자료 : 교육부(2020).

〈표 6-2-10〉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적법 해제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대기/수질/약취/소음·진동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 가족분뇨, 분뇨)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가족사체처리장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화장시설, 보안시설, 도축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1
가축시장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제한상영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전화방, 화상방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성기구취급업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신변중업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69	108	13	47	0	10	4	1	44	7	9	9	21	10	10	20	6	388
폐기물수집장소	0	3	0	0	0	0	4	0	11	0	0	0	4	1	1	0	0	24
총포, 화학류	0	0	0	0	0	0	0	0	0	0	0	0	1	1	0	0	0	2
감염병 격리소 등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1
담배자동판매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복합유통게임	620	101	121	139	223	132	10	2	415	82	64	157	323	78	77	151	11	2,706
미니게임기	0	0	0	0	0	0	0	0	4	0	0	0	2	1	1	0	0	8
당구장	639	97	64	235	89	56	51	9	402	71	78	112	123	79	62	150	25	2,342
무도학원	2	3	8	0	1	4	0	0	10	1	3	0	4	3	2	1	2	44
사행행위장 등	1	0	0	0	0	0	0	0	6	0	0	0	0	0	0	0	0	7
노래연습장	1,981	605	508	559	158	402	246	14	1,881	223	280	324	305	231	475	509	71	8,772
비디오감상실업	42	3	7	3	0	3	0	0	7	2	2	2	5	3	7	0	0	86
유흥·단란주점	1,600	1,322	390	558	63	95	330	15	1,645	364	254	387	345	540	659	1,023	436	10,026
숙박업, 호텔업	1,062	633	257	249	66	153	148	6	698	325	228	429	232	295	489	433	211	5,914
만화가게	11	9	2	3	3	6	2	0	23	3	2	3	56	5	2	27	3	160
사고대비물질	0	0	0	0	0	0	1	0	0	1	3	0	0	0	2	1	0	8
계	6,027	2,884	1,370	1,793	603	861	796	47	5,147	1,079	923	1,423	1,421	1,247	1,788	2,315	765	30,489

주 : 2020년 6월 기준 자료.

자료 : 교육부(2020).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제5부

제6부

제7부

제8부

제9부

제10부

부록

#### 4)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1993년 '한국청소년학회'의 '청소년유해환경고발센터' 개설·운영을 시작으로 민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활동이 자율적으로 추진되었다. 1994년에는 서울YM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운영되었고, 1995년부터 1996년까지는 서울 등 6대 도시에 6개 시민단체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이 보급되었다. 1997년에 제정·시행된 「청소년 보호법」 상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비로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활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2020년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서 236개의 감시단(총 19,087명)이 활동하고 있다.

〈표 6-2-11〉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 현황

(단위 : 개, 명)

시·도	합계		시민단체감시단	
	단체 수	단원 수	단체 수	단원 수
합계	236	19,087	236	19,087
서울	49	7,588	49	7,588
부산	16	1,477	16	1,477
대구	6	470	6	470
인천	6	172	6	172
광주	5	371	5	371
대전	5	323	5	323
울산	7	402	7	402
세종	2	431	2	431
경기	59	4,480	59	4,480
강원	12	476	12	476
충북	5	164	5	164
충남	17	1,243	17	1,243
전북	8	310	8	310

시·도	합계		시민단체감시단	
	단체 수	단원 수	단체 수	단원 수
전남	14	537	14	537
경북	8	114	8	114
경남	12	370	12	370
제주	5	159	5	159

주 : 2020년 12월 말 기준 자료.

자료 : 여성가족부(2020).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제5부

제6부

제7부

제8부

제9부

제10부

부록

## 제3장

## 청소년의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 1.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사회적 감시체계 강화

여성가족부에서는 매체물 등에 대한 청소년유해성 심의·결정 및 고시를 통하여 유해매체물이 청소년들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는 한편, 인터넷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고발조치·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요청 등 시정조치를 강화하였다.

또한, 방송·통신의 경계 붕괴, 스마트폰의 보급 확산 등 매체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시의적, 실효적 규제정책 마련을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 작업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사회적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가. 법·제도 개선

1997년에 제정된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제도를 통하여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유해한 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매체환경의 급속한 발달과 변화로부터 청소년보호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추세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이 국가지속발전가능성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를 명문화하고, 규제·처벌 위주의 정책에서 보호·교육 지원 등의 사전 예방적 보호조치와 인터넷 중독 등 매체역기능으로 인한 청소년 피해 지원에 대한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가정 및 사회에서 효율적인 청소년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나. 매체물 심의기관 현황

우리나라의 매체물 심의기관은 각 정부기관 산하의 유관기관 및 매체별로 분리되어 있는 다원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인쇄매체의 경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방송 및 통신매체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영화 및 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심의 및 등급분류 기능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심의기관이 심의를 요청한 매체물이나 심의를 받지 않고 유통되는 매체물의 심의 및 등급분류, 음반 및 음악파일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매체물 심의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국가 주도의 연령등급제를 채택하고 있다. 현행 연령등급제는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 유해매체물제도와 문화 관련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등급분류 제도가 병행되고 있으며, 심의 및 등급분류 기능을 수행하는 각종 심의기관의 법적 성격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표 6-3-1〉 매체물 심의기관 현황

심의기관	담당 매체	소관부처·법률	심의형태
청소년보호위원회	음반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법」	사후심의
간행물윤리위원회	간행물	문화체육관광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사후심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비디오	문화체육관광부, 「영화비디오법」	사전등급분류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법」	사전등급분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통신물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법」	사후심의
	방송 프로그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사전자율/사후심의 병행

자료 : 여성가족부(2020).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제9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등에 따라 소관 매체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에서 제출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보 고시를 의뢰하고 있다.

[그림 6-3-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절차도



자료 : 여성가족부(2020).

<표 6-3-2>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별 결정·고시 현황

(단위 : 건)

연도	고시횟수	간행물윤리위원회							영상물 등급위원회		게임물 관리위원회		청소년 보호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계		
		도서	정기간행물	만화단행	만화잡지	광고	전자출판	영화	비디오물	게임물	애니메이션	무위험	비위험	방송프로그램								통신분야						
														영화	드라마	다큐	만화	음악	버라이어티	데이터방송	인포테인먼트	스포츠	기타	PC통신	전기통신			
97	14	59	105	1,994	29	11	0	102	444	0	0	0	0	1,688	0	1	19	9	0	0	0	0	0	8	607	0	5,076	
98	43	173	416	1,140	52	0	0	151	762	0	0	0	0	808	30	12	52	14	0	0	0	0	0	0	0	755	0	4,365
99	45	304	388	1,501	14	1	0	71	428	0	4	0	0	271	2	5	2	0	0	0	0	0	0	4	61	31	3,087	
00	28	366	699	1,227	0	0	0	0	0	0	0	0	0	158	0	9	4	0	0	0	0	0	0	67	53	10	2,593	
01	42	289	983	1,387	1	0	0	0	0	0	0	0	0	597	58	5	99	451	0	0	0	0	0	962	7	41	4,880	

연도	고시횟수	간행물윤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계				
		도서	정기간행물	만화간행물	만화잡지	광고	전자출판	영화	비디오매체				게임매체	이벤트	뮤직비디오	방송프로그램									통신분야			
																영화	드라마	다큐	만화	애니	버라이어티	데일리방송	인포테인먼트		스포츠	기타	PC통신	전기통신
02	51	259	1,098	1,492	8	0	0	0	0	0	0	0	0	0	0	1,399	33	1	114	19	0	0	0	0	189	435	836	5,883
03	66	611	1,220	1,802	131	0	0	0	0	0	0	0	0	0	0	2,623	145	0	3	510	0	0	0	0	284	0	3,510	10,839
04	62	371	528	1,810	269	2	0	0	0	0	0	0	0	0	0	202	67	2	0	0	0	0	0	0	0	0	7,641	10,892
05	35	324	307	1,413	191	0	0	0	0	0	0	0	0	0	0	1,067	237	0	15	2	0	0	0	0	179	0	17,115	20,850
06	45	351	324	1,347	72	0	0	0	0	0	0	4	0	0	0	2,794	207	0	29	3	0	0	0	0	480	0	18,715	24,326
07	63	414	377	1,867	46	0	0	0	0	0	0	344	0	0	0	6,316	190	0	151	1	0	0	0	0	840	0	16,044	26,590
08	45	433	264	1,653	48	0	584	0	0	0	0	651	0	0	0	1,041	1,059	0	142	0	0	0	0	0	626	0	884	7,385
09	48	809	223	1,756	229	0	658	0	0	0	0	941	0	0	0	2,557	1,462	0	436	0	0	0	0	0	3,109	0	227	12,407
10	36	822	276	2,066	188	0	1,131	0	0	0	0	991	0	0	0	1,041	902	0	459	0	491	0	63	3	412	0	280	9,125
11	51	874	404	2,882	16	0	1,031	0	0	0	0	671	171	0	0	1,628	1,706	0	340	0	3,350	0	177	52	217	0	351	13,870
12	62	844	445	3,037	0	0	1,075	0	0	0	0	1,049	101	0	0	2,218	2,077	0	555	0	4,424	2	0	0	61	0	448	16,336
13	32	766	425	2,196	0	0	834	0	0	0	0	1,000	0	0	0	1,215	984	0	544	0	2,134	0	0	0	64	0	390	10,552
14	35	824	518	1,840	0	0	926	0	0	0	0	1,140	0	0	0	969	795	0	1015	0	1,880	0	0	0	0	0	263	10,170
15	58	783	504	2,095	0	0	821	0	0	0	0	2,033	0	0	0	2,243	793	0	549	0	3,442	0	0	0	0	0	138	13,401
16	50	626	436	1,786	0	0	563	0	0	0	0	804	0	0	0	1,282	379	0	398	0	3,459	0	0	0	0	0	142	9,875
17	43	525	457	1,821	0	0	660	0	0	0	0	1,078	0	0	0	489	272	4	280	0	1,590	0	0	0	0	0	70	7,246
18	50	465	394	1,564	0	0	887	0	0	0	0	975	0	0	0	845	673	17	821	0	3,729	0	0	0	2	0	93	10,445
19	41	352	412	1,504	0	0	960	0	0	0	0	833	0	0	0	860	810	11	351	0	1,469	0	0	1	0	0	105	7,668
20	46	260	376	1,544	0	0	954	0	0	0	0	1,038	0	0	0	2,092	444	4	530	0	1,426	0	0	0	0	0	72	8,470
계	1,091	11,904	11,579	42,723	1,294	14	11,084	324	1,634	0	0	13,556	272	0	0	36,403	13,325	71	6,908	1,009	27,394	2	240	56	7,504	1,918	67,333	
심의기관별 총합계			78,599					1,958	0			13,828							92,912						69,322			256,619

주 : 2020년 12월 30일 기준 자료.

자료 : 여성가족부(2020).

### 다. 음반의 청소년 유해성 심의

음반 심의제도는 그 근거가 되었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2006. 11.) 되면서 주로 청소년 유해성에 대한 심의임을 고려하여 청소년 유해성 심의·결정 업무를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하여 추진하였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음반·음악파일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가사 등을 모니터링하여 청소년 유해성 심의, 유통 차단 등 청소년의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매년 음반·음악파일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 30일까지 유해결정 곡은 총 13,556곡(국내 5,725곡, 외국 7,831곡)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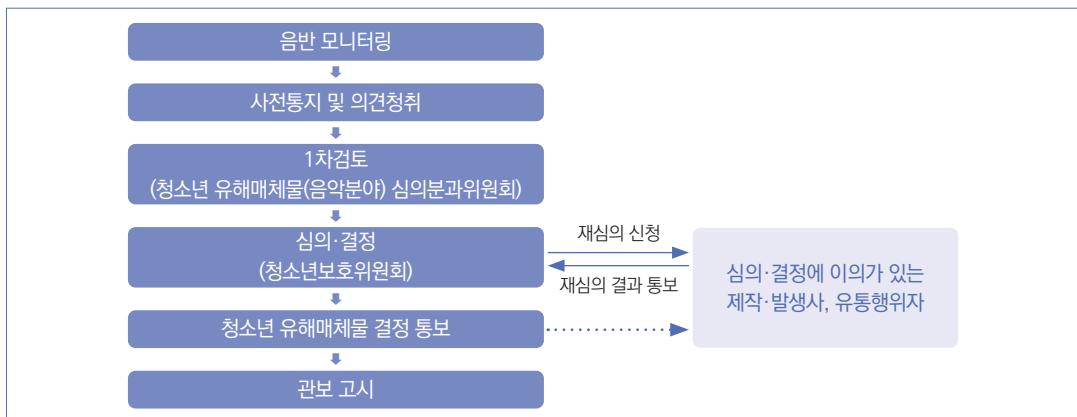
〈표 6-3-3〉 청소년 유해음반 결정·고시 현황

(단위: 건)

구분	총계	2006년 이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13,556	8	344	651	941	991	671	1,049	1,000	1,140	2,033	804	1,078	975	833	1,038
국내곡	5,725	4	151	228	445	427	253	361	382	438	566	399	475	311	400	885
국외곡	7,831	4	193	423	496	564	418	688	618	702	1,467	405	603	664	433	153

자료 : 여성가족부(2020).

[그림 6-3-2]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 청구 절차



자료 : 여성가족부(2020).



## 2. 청소년보호를 위한 업계자율정화 지원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및 게임 이용이 늘어나면서 건강한 매체이용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규범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이버 세계에서의 행동은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가정과 학교에서만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대두된 바, 업계자율정화활동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 가. 청소년보호를 위한 업계자율정화시스템의 구축

업계의 자율정화활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청소년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소비자인 청소년에게 건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제정 및 운영하는 교육, 모니터링, 감독 등 내부정화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율정화시스템은 기업 혹은 사업자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최대한의 정책을 추진한다는 규약이며, 청소년 대상 서비스 제공 시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보호하려는 기업 혹은 사업자의 노력을 확보한다는 목적과 함께,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이미지 개선과 사회공헌을 실현하려는 기업 혹은 사업자의 자율의지를 내포한다. 또한, 법위반 행위 예방 및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청소년 유해정보의 유통차단과 청소년 보호법 준수에 노력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건강한 매체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사업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사이버 공간 및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 나. 청소년보호책임자 교육 실시

여성가족부에서는 건강한 매체환경을 조성하고 사이버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소년과 학부모에 대한 교육과 함께 인터넷사업자 및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에 대한 인식과

자율정화 의지를 제고하고자 2007년부터 인터넷·게임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협회를 통한 관련사업자 집합교육과 사업자의 신청에 따른 사업장 방문을 통해 포털사이트, 게임 사이트, 인터넷쇼핑몰, 홈쇼핑 등 온라인 분야의 청소년보호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업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 교육은 각 사업체에서 청소년보호를 담당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개발자, 프로그래머 등 모든 분야의 직원들이 참여하여 「청소년 보호법」 해설, 유해매체물의 심의 절차 기준, 고시제도 등의 강의를 청취함으로써 청소년보호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청소년보호 의식 고취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 다. 사업자의 자율정화 지원

여성가족부에서는 사이버 상에서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보호를 위한 업계자율정화를 강화하고자 노력을 전개하였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들은 사업자의 자율적인 규제를 지원하고, 불법 및 청소년 유해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협의를 다양하게 실시하였다.

그간 사업자의 자발적인 정화활동으로 추진된 고객센터 및 모니터링 기능 강화, 게임업계의 자율규약선언, 이동통신사의 청소년 대상 성인서비스 중단, 인터넷신문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청소년 보호정책과 더불어, 여성가족부는 인터넷신문의 유해성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업계의 자율적인 개선활동을 유도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등 자율정화를 지원하였다.

이 밖에도 자율규제단체 등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자 여성가족부는 자율규약 제·개정 및 자율심의 방법 등에 대한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2016. 1.) 하였다. 이러한 자율정화 활동은 앞으로도 법이나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사이버 상에서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안전한 활동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으로, 청소년 유해정보를 차단하여 청소년을 유해매체물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 제 4 장

## 사이버 역기능 해소를 위한 대응체계 마련

## 1.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대응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학업성적·사회성 저하, 가정불화, 건강 악화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피해 해소를 위한 단계적·체계적 대응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 가.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대응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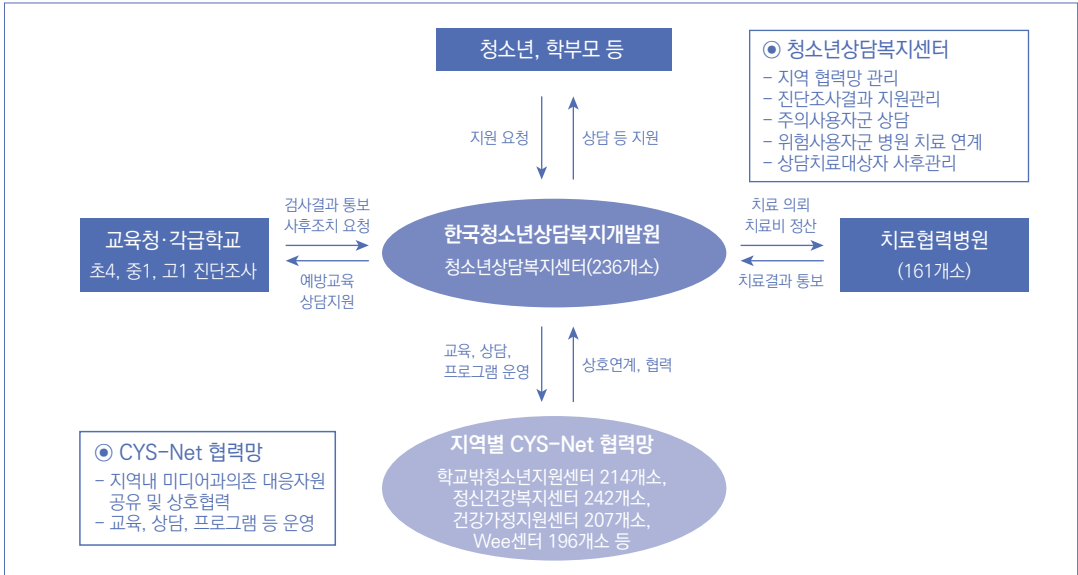
여성가족부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대응정책은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한 매체 환경을 조성해주는 정책의 주요한 분야로서, 이를 위한 상호보완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첫째, 잠재적인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예방적 상담 활성화를 위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중심으로 전국 230여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둘째, 심각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의 치유를 돕기 위해 전국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161개 치료협력 병원 연계를 통한 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치료 기반 확대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17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허브로 하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대응 지역 협력망을 구축하여 지자체, 교육청, 정신건강증진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단체, 학부모단체 등 지역의 다양한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지역협력망을 통하여 지역 내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대응 기관 간 연계·협력은 물론, 지역 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단조사를 실시하여 조기 발굴 및 상담·치료 등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관련 교육 및 상담실적은 청소년안전망 종합정보망과 연계하여 지역별 과의존 해소 서비스지원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그림 6-4-1] 여성가족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정책 추진 체계도



자료 : 여성가족부(2020).

## 2. 청소년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실시 및 효과

### 가. 제도 도입 배경

과도한 인터넷게임 이용은 학습시간을 침해하고 수면부족을 야기하는 등 청소년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약화시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일명 ‘셋다운제’)’를 도입하였다. 동 제도는 UN아동권리협약에서 권장하는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수면권, 건강권)를 실현하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밝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게임으로 인한 중독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게임이용문화를 형성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9 게임과몰입 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초등학교 4~6학년,

중·고등학교) 전체 응답자의 게임행동 유형 비율은 과몰입군 0.5%, 과몰입위험군 2.4%, 게임선용군 20.5%, 일반사용자군 53.7%, 비사용자군 22.9%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게임행동 유형 비율은 과몰입군의 경우 남자 0.6%, 여자 0.3%로, 과몰입위험군에서는 남자 3.5%, 여자 1.2%로 나타났다. 게임선용군은 남자 29.8%, 여자 10.9%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게임행동 유형 비율은 과몰입군의 경우 초등학교 0.4%, 중학교 0.5%, 고등학교 0.4%로 나타났고, 과몰입위험군의 경우 초등학교 2.6%, 중학교 2.8%, 고등학교 1.8%로 나타났다.

## 나. 제도 추진 현황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 의해 인터넷게임 제공자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0~6시) 내에 인터넷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2011년 5월 19일 개정, 2011년 11월 20일 시행).

이 제도는 PC온라인 게임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하고 스마트폰·태블릿 PC 등 청소년들에 대한 보급률이 낮은 기기를 통해 진행되는 인터넷게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용을 2년간 유예하였다. 이후, 법 규정에 의해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 제한대상 게임물 범위의 적절성 여부를 매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제도 적용대상 게임물 범위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용 대상 게임물 범위를 고시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실시와 관련하여 법제도 이행여부 점검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 취지에 따라 섯다운제를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하여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를 통해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다. 제도 효과 분석

매년 실시되는 ‘게임 과몰입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게임 과몰입 위험군 이상 (과몰입군+과몰입 위험군)이 '11년 6.5%에서 제도 도입 이후인 '12년은 2.0%로 4.5%p(69.2%) 감소하였으며, '13년 1.9%, '14년 2.2%, '15년 2.5%, '16년 2.5%, '17년 2.6%, '18년 1.8%, '19년 2.9%로 낮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도입·실시 후 만 9~14세 청소년의 경우 게임이용 시간대가 밤 10시에서 아침 6시인 경우가 2011년 10.2%에서 2012년 1.5%로 8.7%p(85.3%) 감소하는 등 청소년의 게임이용 주 시간대가 심야시간 이전으로 앞당겨져 수면권과 건강권 확보가 가능해지는 정책적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2013 게임이용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섯다운제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들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0에 가까운 이용시간을 보여 제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 2010~2013년 게임이용자실태조사를 분석한 ‘게임시장의 규제가 산업생태계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에서는 섯다운제 시행이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이용시간대를 앞당겨 청소년 수면권 확보의 관점에서는 일정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산업연구원, 2013).

또한, ‘2019년도 게임이용자 실태조사(10~65세 대상)’에 따르면 섯다운제의 명칭과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게임이용자 중 64.1%(강화 27.5%+현행유지 36.6%)는 적용 시간대, 69%(강화 31.5%+현행유지 37.5%)는 적용 연령대가 강화·유지 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여 게임 과의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라. 세계 동향

세계보건기구(WHO)는 게임중독(게임장애)을 의학적 치료와 장기간의 관찰이 필요한 정신질환으로 판단(2017.12.)하여 2019년 5월 총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국제질병분류 개정안(ICD-11)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게임산업육성책을 펼쳐오던 중국은 2018년 미성년자의 총 게임 이용시간 제한, 온라인게임 총량제 등 게임규제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발표(2018. 8. 30.)한데 이어, 2019년 11월에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 심야시간(22~08시) 인터넷 게임 제공 제한, 평일 하루 90분(휴일 3시간) 게임 접속 허용, 실명 인증 도입, 청소년 게임아이템 구매 제한 등을 내용으로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중독 방지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 제5장

## 성범죄로부터 청소년 보호

## 1.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사회복귀 지원

## 가.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검사가 성매수 대상 청소년에게 교육과정 또는 상담과정 이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국에 위기청소년교육센터를 지정하여 교육 및 상담·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사업을 수행 중이며, 법적 근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것으로, 그 목적은 성매매 피해청소년에 대한 치료·재활교육 강화로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복귀 지원에 두고 있다.

운영 대상은 검찰에서 대상 청소년 교육상담과정 이수결정이 통보되거나 경찰에서 발견사실이 통보된 청소년, 성매매로 수감명령을 부과 받은 청소년, 청소년지원시설, 대안학교, 사이버 또래상담 등 청소년 관련시설 등에서 연계된 성매매 피해 노출 청소년이다. 운영 내용은 교육상담원과 전문 강사가 3박 4일/4박 5일(40시간) 동안 숙식을 함께 하며 심리치료,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 성교육, 문화 활동, 진로탐색 등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수료 후 의료·법률·학업·자립·자활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다. 현재 1개의 중앙센터 및 10개의 권역별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표 6-5-1〉 교육과정 및 운영기관

교육과정	교육대상	운영기관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의 교육상담이수 결정 통보자</li> <li>• 경찰의 대상청소년 발견 통보자</li> <li>• 성매매피해상담소, 아웃리치 등을 통해 연계된 청소년</li> <li>• 지적 장애를 가진 성매매 피해청소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대여성인권센터(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li> <li>• (사)인권희망 강강술래(인천위기청소년교육센터)</li> <li>•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경기위기청소년교육센터)</li> <li>• 춘천길잡이의집(강원위기청소년교육센터)</li> <li>• 성공회 대전 나눔의집(대전위기청소년교육센터)</li> <li>• 부산광역시 청소년 종합지원센터(부산위기청소년교육센터)</li> <li>• 광주YWCA(광주위기청소년교육센터)</li> <li>•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전북위기청소년교육센터)</li> <li>• 대구여성회(대구위기청소년교육센터)</li> <li>• 평화의 샘(평화위기청소년센터)</li> </ul>
중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대상자 지역센터 연계 및 총괄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여성인권진흥원</li> </ul>

자료 : 여성가족부(2020). 2020년도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사업안내.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서비스 목표는 청소년들이 ‘미래 가능성과 주체성을 가진’ 존재로서, 다양한 접근을 통하여 ‘청소년 자신의 가치와 존재의 발견’을 도울 수 있도록 하며,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진로계획을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탈성매매를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배양하는 동시에, 미래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성과 주체성을 함양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교육프로그램은 40시간 교육으로 구성되는데, 크게 ‘사전검사(OT)’, ‘심리검사(MMPI 등)’, ‘심리치유 프로그램(동작치료, 미술치료)’, ‘성주체성 향상 프로그램(성교육, 건강검진, 섹슈얼리티)’,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개인브랜드 가치 높이기, 롤모델 만나기, MBTI)’, ‘사회통합 프로그램(자원봉사 활동, 진로 프로그램, 학교탐방, 직업체험, 미래설계 등)’, ‘성매매 바로알기(생존자 증언 등)’, ‘수료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6-5-2〉 교육프로그램 구성

분야	프로그램
심리검사 프로그램	MMPI 등 심리검사 및 상담, MBTI, NEO 등 성격검사 및 해석상담, 자기이해, 문장완성 검사 등
심리치유 프로그램	미술치료, 푸드아트테라피, 놀이치료, 연극치료,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등
의료지원 프로그램	건강검진, 치료 및 상담, 의료(보건)교육 등
법률지원 프로그램	법교육, 인권교육, 법률상담 등
진로지원 프로그램	진로 및 직업탐색, 미래설계, 직업체험, 검정고시, 자격증 및 취업준비, 대학 및 기업탐방, 자원봉사활동 등
관계형성 프로그램	아이스브레이킹, 레크레이션, 문화예술, 스포츠, 친목활동 등



분야	프로그램
성주체성 프로그램	섹슈얼리티, 성교육, 성교육장 체험 등
탈성매매 프로그램	성매매 바로알기, 탈성매매 여성과의 만남, 100분 토론, 위기상황 대처활동 등

자료 : 여성가족부(2020). 2020년도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사업안내.

〈표 6-5-3〉 지역센터별 교육 실시 현황

(단위 : 명)

연도	비장애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적 장애	계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전북		
2015	34	40	39	43	42	24	38	34	40	35	369
2016	35	40	39	49	34	36	39	30	39	36	377
2017	39	39	44	52	37	40	40	38	34	34	397
2018	37	34	34	43	36	34	35	25	33	25	336
2019	32	33	34	37	34	34	34	21	35	25	319
2020	19	17	11	39	20	21	23	1	2	2	155

자료 : 여성가족부(2020).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02-2100-6446

## 2.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도

### 가. 신상정보 공개제도 목적과 의의

아동과 성인 대상 성범죄자는 사회 환경의 변화로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다.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등의 성범죄는 그 행위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줌과 동시에 지속적인 후유증을 남긴다는 점에서 성범죄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는 2000년 7월 1일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이 최초로 제정·시행되면서 시작되었다. 2006년 6월 30일에 개정·시행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가 도입되었고, 2008년 2월 4일에 다시 법을 개정·시행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2010년 1월 1일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경찰서 열람 방식에서 인터넷 공개하는 방식으로 개정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아동과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20년간 등록관리 되고 있으며 법원에서 공개 명령을 선고 받은 자는 10년 이내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성범죄자 등록·열람제도는 미국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법이 만들어져 시행되었다. 미국은 1994년 「제이콥웨터링법(The Jacob Wetterling Act)」을 만들어 성범죄자 등록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96년 「메간법(The Megan's Act)」을 만들어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또한 2006년에 「아담월쉬 아동 보호 및 안전법(The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을 제정하여 일반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미국 내 성폭력전과자들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각 주(State)별 운영 방식을 전국적으로 통일된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이를 통해 ‘드루 소딘 국가 성범죄자 공개 웹사이트(Dru Sjodin National Sex Offender Public Website)’를 만들어 성범죄자의 신상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등 성범죄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강화해 왔다.

## 나. 신상정보 공개제도

2010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공개대상자 결정은 법원이 하게 되었다. 법원은 아동과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공개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③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공개기간은 징역·금고 3년 초과인 경우 10년, 징역·금고 3년 이하인 경우 5년이다. 아동과 성인 대상 성범죄로 공개 명령을 받은 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기간은 공개기간에서 제외된다. 공개 정보의 내용은 ‘성명’, ‘나이’, ‘사진’,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범죄 전과사실(전과 및 횡수)’,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이다. 신상 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 공개되며 미성년자도 열람할 수 있다. 공개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2016년에는 성범죄 예방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범죄자 식별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성범죄자의 사진(4장) 중 전신사진을 정면·좌측·우측 사진보다 크기를 확대하여 일반 국민들이 성범죄자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국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하여 성범죄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지속적으로 홍보·보급하여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성범죄 예방효과를 제고하였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국민들이 여름철 피서지, 놀이터나 공원 등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위치를 기반으로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알림기능을 활용하여 이동 중 어느 지역에 있더라도 자신의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를 음성과 메시지로 제공받고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0년에는 성범죄자 ‘조두순’과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구법상 신상정보 등록·열람 대상자의 주소지 공개 범위를 ‘읍·면·동’까지만 공개하도록 하는 부칙을 개정하여 현행 공개제도와 동일하게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였다.

## 다. 신상정보 고지제도

2011년 1월 1일부터 법원으로부터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동일지역(읍·면·동)의 세대주(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자) 등에게 우편으로 송부한다. 고지대상자 결정은 법원이 한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고지정보를 공개 명령기간 동안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 어린이집·유치원의 원장, 초·중·고등학교의 장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 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공개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제4호에 한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③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고지기간은 공개 명령 기간 동안이며, 고지정보의 내용은 성명, 나이, 사진, 주소 및 실제거주지(상세주소 포함),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범죄 전과사실(전과 및 횡수),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이다. 고지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된다.

또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고지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변경정보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실제 주소지 읍·면·동 행정구역에 지역주민 중 아동·청소년을 세대원으로 둔 세대, 어린이집·유치원의 원장, 초·중·고등학교의 장, 읍·면·동 주민센터의 장 등을 대상으로 고지정보서를 송부한다.

2018년 7월부터는 고지정보에 성범죄자의 실제거주지 등이 사실과 다르게 잘못 기재된 경우 누구든지 정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정청구의 처리절차를 마련하였다.

2020년에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나고 우편고지가 비용 대비 효과성이 저조하다는 의견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를 도입하였다. 전자고지는 아동·청소년을 세대원으로 둔 세대의 세대주의 스마트폰으로 발송되며 세대주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고지정보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전자고지를 일정시간 내에 열람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재송부된다. 또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아동·청소년 보호 기관은 기존대로 우편으로 고지된다.

한편,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를 받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자나 보호기관의 장이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피해 대응요령’을 인포그래픽과 카툰 형식으로 제작하여 고지정보서와 함께 동봉·발송하고 있으며, 성범죄자 알림e 및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라. 신상정보 공개대상자 현황

아동과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등록이 완료된 자는 2020년 11월 30일 기준으로 92,957명(법무부)이고, 공개 명령이 선고되어 '성범죄자 알림e'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되고 있는 사람은 4,215명이다.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4, 6410, 6415

## 3.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 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6. 6. 30. 시행)에 따라 성범죄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성범죄자의 접근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으로 유치원, 학교, 학원, 교습소,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쉼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체육시설이 처음 도입되었으며, 2008년 2월 4일에는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만 해당), 2010년 1월 1일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10년 4월 15일에는 개인과외교습자, 2012년 8월 2일에는 의료기관의 의료인, 가정방문 학습지교사, 2013년 6월 19일에는 경비업 법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활동기획업소, 청소년게임제공업,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 연습장업, 2016년 11월 30일에는 위탁 교육기관이 추가되었다. 2018년 7월 17일부터는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2018년 9월 14일부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따른 유아교육진흥원 등의 기관이 추가되었으며, 2020년 5월 27일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이 취업제한기관으로 추가되었다.

그리고 최초 도입 당시에는 취업제한기간이 5년이었으나 2008년 2월 4일부터 10년으로 확대되었고, 2010년 4월 15일부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서 성인대상 성범죄자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교육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경찰서에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 취업하려는 자(취업중인 자 포함)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해당 경찰서는 조회대상자의 성범죄경력 유무를 확인하여 조회를 요청한 기관장에게 회신하도록 하고 있다. 2015년 1월부터는 경찰청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도 온라인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및 회신서 출력이 가능하다. 또한 2016년 11월 30일부터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취업자 및 취업예정자 본인이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도 가능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이 연 1회 이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을 하도록 법제화되었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위헌결정에 따른 법 개정으로 2018년 7월 17일부터 법원이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최대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이 종사자에 대해 성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서 취업제한자로 규정된 자가 법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면 해당자에 대해 해임을 요구하고 시설을 운영 중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폐쇄를 요구한 경우에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의 장이 해임요구를 거부하거나 1개월이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 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 의무제도

유치원, 학교, 체육단체 등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 대상기관으로는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및 교습소,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청소년보호·재활센터, 대학,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체육단체가 해당되며 2021년 6월 9일부터는 위탁교육기관·시설, 학생상담지원시설, 제주국제학교, 통합서비스수행기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가 추가될 예정이다.

아울러, 여성가족부에서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종사자에 대해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2017년 19,021명, 2018년 19,612명, 2019년 19,929명, 2020년 8,48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4

## 4.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운영

### 가.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립목적 및 의의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으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설치·운영한다. 2007년부터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청소년 스스로 자기 주도적, 실천적 체험학습을 통해 올바른 성지식을 습득하게 하도록 하여 건강한 성정체성을 지닌 개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 나. 추진배경 및 경과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정보를 주로 성인물, 음란성 게임, 미디어 또는 포래를 통해 얻고 있는데 반해, 기존 학교의 성교육은 이론 중심의 단편적인 지식 전달 위주로 진행되어 그 효과성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따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멀티미디어와 다양한 설치물을 활용한 참여형 성교육이 실시되어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한정된 지역에서만 교육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하였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효과적인 성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2006년 7월, 청소년정책자문위원회 성문화분과위원회는 전국에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국가청소년위원회에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전국 16개 시·도에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7년 국가청소년위원회 소관 정부예산안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었다.

2007년 4월, 민간 성교육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립추진단은 표준 콘텐츠 및 운영매뉴얼을 개발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콘텐츠를 갖춘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운영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2010년 4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인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11년에는 45인승 버스를 개조하여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주요 콘텐츠를 탑재하여 농·산·어촌 등 교육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 등에 찾아가는 성교육이 가능한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2개소를 신규로 도입하였으며, 2014년에 9개소, 2015년에 9개소, 2016년에 10개소를 운영하였다. 2018년에는 탁틴내일 고정형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노후화로 인해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로 시설 운영 형태를 변경하여 총 11개소의 이동형성문화센터를 운영하였다.

## 다.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역할과 사업내용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목적은 아동·청소년이 다양한 도구와 매체를 활용한 자기 주도적 참여를 통해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정립 지원 및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등 대상별로 특화된 성교육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발달단계별 성인지적 인권통합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육하고 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사업은 ① 체험관 및 이동형 교육장을 활용한 아동·청소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② 학교에서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한 성교육 ③ 관내 학교, 아동복지시설, 지역주민 등 지역사회 내 교육 및 홍보활동 ④ 학교관리자 및 성교육 담당교사 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⑤ 농·산·어촌 지역 아동청소년 및 지역주민에게 찾아가는 성교육 실시 등이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성교육을 위해 2007년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표준 프로그램인 'SAY' 매뉴얼을 개발하였고, 이후 변화된 상황에 맞게 매뉴얼을 리뉴얼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아동·청소년의 발달 단계별 특성 등을 반영한 전문적 교육 프로그램인 'SAY2'를 개발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다. 또한 2019년에는 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의 특성을 반영한 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교육 실적은 아래와 같다.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집합 교육 제한으로 전년대비 실적이 감소하였다.

〈표 6-5-4〉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 실적

(단위: 명)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교육인원	1,550,447	1,989,951	1,823,194	2,154,440	2,235,751	2,297,277	2,475,441	1,031,000

주: 2020년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 실적은 2020년 12월 기준으로 조사하였음.

자료: 여성가족부(2020).

## 라.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현황

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07년에 전국 16개 시·도 단위에 21개소가 신규로 설치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2020년 12월 현재 고정형 47개소와 이동형 11개소로, 총 5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표 6-5-5〉 청소년성문화센터 지역별 설치 현황

(단위: 개)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고정형	47	7	3	2	2	2	2	1	6	3	2	2	4	4	3	2	2
이동형	11	1	2	-	-	-	-	-	3	1	1	1	-	-	1	1	-

자료: 여성가족부(2020).

〈표 6-5-6〉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현황

(단위: 개)

구분	고정형	이동형	기관명
서울	7	1	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광진구),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송파구), 탁틴내일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서대문구),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영등포구), 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도봉구), 드림센터(강남구), 서울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중랑구), 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동작구)
부산	3	2	부산청소년성문화센터(사상구), 늘함께청소년성문화센터(동래구), 탄생의신비관청소년성문화센터(금정구), 탄생의신비관이동형( I , II ), 청소년성문화센터(금정구)
인천	2	-	인천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남구), 부평구 청소년성문화센터(부평구)
대전	2	-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중구), 대전서부청소년성문화센터(서구)
대구	2	-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달서구),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남구)
광주	2	-	광주청소년성문화센터(북구), 광주광산구청소년성문화센터(광산구)
울산	1	-	울산청소년성문화센터(남구)
경기	6	3	경기청소년성문화센터 탁틴 와~(안산시), 경기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소행성'(안산시), 경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말공달공'(파주시), 경기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큰키나무'(파주시), 용인시청소년성문화센터(용인시), 화성시청소년성문화센터(화성시),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부천시), 안양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안양시), 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수원시)
강원	3	1	강원청소년성문화센터(춘천시), 강원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춘천시), 시소!강릉청소년성문화센터(강릉시),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원주시)
충북	2	1	충북청소년성문화센터(청주시), 충북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청주시), 충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충주시)
충남	2	1	충남청소년성문화센터(천안시), 홍성청소년성문화센터(홍성군), 충남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예산군)
전북	4	-	전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전주시), 군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군산시), 정읍시청소년성문화센터(정읍시),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익산시)
전남	4	-	목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목포시), 여수시청소년성문화센터(여수시), 전남청소년성문화센터(완도군), 순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순천시)
경북	3	1	경북청소년성문화센터(김천시), 포항청소년성문화센터(포항시), 경북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안동시), 경북북부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안동시)
경남	2	1	경남청소년성문화센터(사천시), 창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창원시), 경남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창원시)
제주	2	-	서귀포시청소년성문화센터(서귀포시), 제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제주시)

자료 : 여성가족부(2020. 12).

## 5.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실시

### 가. 성 인권교육 실시 목적 및 의의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은 아동·청소년에게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예방교육을 제공토록 의무화 되어 있는데, 이를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통칭한다. 2011년 2개 시·도에 대하여 시범사업으로 처음 실시되었으며, 점차 사업 실시 지역이 확대되어 왔다. 2012년부터는 ① 학교 성 인권교육, ②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으로 나누어 실시되고 있다. ‘학교 성 인권교육’은 현재 8개 시·도에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은 시범실시를 거쳐 2015년에 전국 17개 시·도로 사업이 확대되었다. 또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교사용 교수·학습안 및 학생용 핸드북을 2013년에 제작하였고,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매뉴얼 제작도 2012~2013년에 걸쳐 완료하였다. 특히 학교 성 인권교육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대상별 맞춤형 교재 개발을 확대하여 2014~2015년에 걸쳐 유아용, 초등학교 저학년용, 중학생용, 고등학생용 4종도 추가 개발하여 총 5종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성 인권교육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온 각각의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인지적 인권의식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성 인권교육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성 인권교육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예방 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은 2015년에 전국으로 확대된 것처럼 현재 8개 지역에서 실시되는 ‘학교 성 인권교육’도 전국으로 확대 및 실시하여 학교에서의 폭력 예방교육을 통합적 관점에서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 나.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사업내용

성 인권교육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중앙지원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지역별로는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과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을 진행할 시·도별 지역 운영기관을 각각 8개소, 27개소를 선정하여 운영한다. 선정된 지역운영기관에서는 ‘성 인권교육의 실시’ 및 ‘교육만족도 조사’, ‘사업실적 제출’ 등의 업무를 추진하며 중앙지원기관은 ‘성 인권교육 사업의 실적관리’, ‘컨설팅’ 등 지역운영기관을 지원하게 된다.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은 서울, 부산,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8개 시·도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주로 초등 4~6학년)을 대상으로 성 인권 및 성평등, 관계와 소통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와 함께 아이들이 스스로 과제를 작성하고 발표도 하는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하며, 학교의 보건교사 또는 전문 강사가 수업을 진행한다. 보건교사가 중심이 되어 표준 프로그램에 따라 추진되지만 보건교사 미배치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특성화 사업으로 운영되는데, 이 경우 한 학급당 인원이 35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표준교안은 2013년 개발된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교수·학습안’ 및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핸드북’을 활용한다. 해당 학교 보건교사 등이 체험형 교육을 포함한 연 15차시 내외를 기준으로 운영한다.

〈표 6-5-7〉 학교에서의 성 인권교육 실적 현황

(단위: 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실인원	22,339	14,244	15,496	15,198	15,365	14,466
연인원	240,343	148,472	167,651	155,228	156,899	80,516

자료: 여성가족부(2020).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은 자기 보호 및 인지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등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성 인권교육으로 실시된다. 지정된 특수학교 및 통합학급의 초등 4~6학년, 중·고등학교 지적·시각·청각·중복 장애아동·청소년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세부 추진방법은 장애 유형별로 마련된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매뉴얼’에 따라 교육기자재를 이용하여 수업이 실시된다.

〈표 6-5-8〉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교육 실적 현황

(단위: 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실인원	2,504	2,700	2,799	2,824	2,859	2,853
연인원	24,154	25,574	26,661	26,503	27,879	20,555

자료 : 여성가족부(2020).

성 인권 교육은 어린시기부터 참여형태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인권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 및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제7부 요약

제7부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교육'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학교교육의 전반적인 현황과 청소년의 학업성취도 및 학교생활 만족도를 살펴보았으며, 교육복지정책의 주요 내용도 함께 제시하였다.

2020년 현재,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학령인구는 약 782만 명으로 1980년 약 1,440만 명으로 정점에 이른 이후부터 저출산 현상의 지속화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970년 이후로 초·중·고등학교에서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2020년 기준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중·고등학교 각각 14.2명, 11.8명, 10.1명으로 나타났다. 2020년 현재, 대안교육 학교는 총 42개교이고, 학생 수는 4,440명, 교원 수는 804명으로 대안학교의 학생 수와 교원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학교급별 진학률은 2019년도 졸업자를 기준으로 초등학교 졸업자의 중학교 과정 진학률은 100.0%, 중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과정 진학률은 99.7%로 나타나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하고 있다. 한편,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은 2010년(75.4%)부터 2017년(69.7%)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2018년도부터 소폭 증가하여 2019년 72.5%로 확인되었다. 2019학년도 학업중단율은 초등학교는 0.7%, 중학교는 0.8%, 고등학교는 1.8%로 나타났으며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의 예산은 2020년을 기준으로 약 76조 9,957억 원으로 2020년 전체 정부 예산의 18.0%에 해당하는 예산액이다.

다음으로 2020년 기준 청소년의 학업성취도는 중학교 3학년의 경우 '보통학력 이상' 학생의 비율은 국어교과 82.8%, 수학교과 61.3%, 영어교과 72.7%로 나타났고, 고등학교 2학년은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은 국어교과 77.5%, 수학교과 65.5%, 영어교과 78.8%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학생들의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 만족도', '교육내용 만족도', 그리고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는 모두 전체 학생의 50% 이상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방과후학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산어촌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탈북학생 등에 대해서는 대상별 맞춤형 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7부

# 청소년의 교육

제1장 학교교육 현황

제2장 학업성취도 및 학교생활 만족도

제3장 교육복지정책

7

## 제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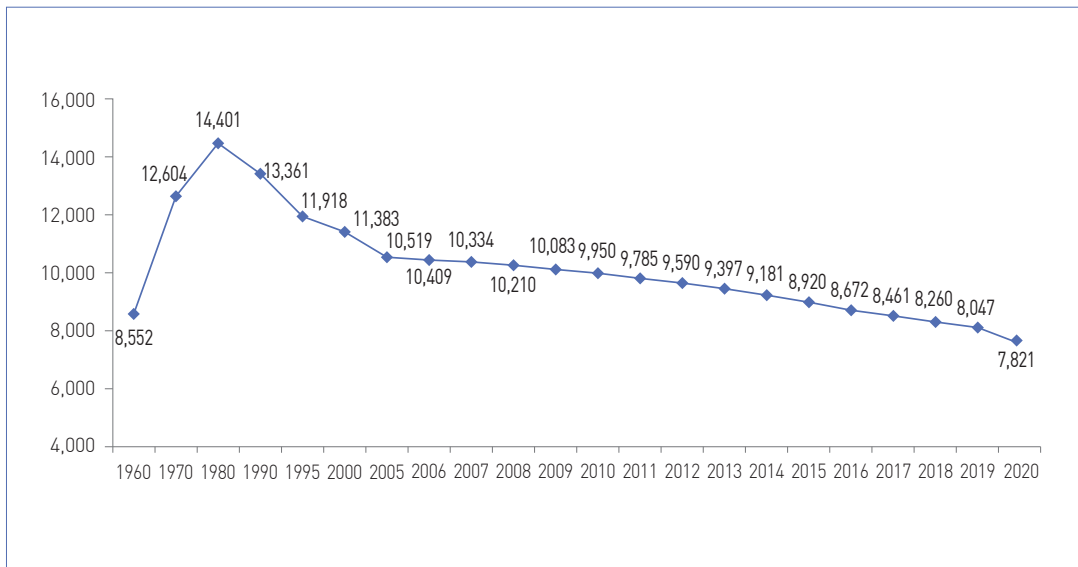
## 학교교육 현황

## 1. 학령인구

2020년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해당하는 학령인구(6~21세)는 7,821천 명이다. 2020년을 기준으로 연령대별 학령인구를 살펴보면, 6~11세(초등학교)가 2,717천 명, 12~14세(중학교)가 1,358천 명, 15~17세(고등학교)가 1,382천 명, 18~21세(대학교)는 2,364천 명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학령인구는 1980년 1만 4,401천 명을 정점으로 이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저출산 현상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7-1-1] 연도별 학령인구

(단위 : 천 명)



주 : 6~21세 기준.

자료 : 통계청(2002). 장래인구추계.



〈표 7-1-1〉 연도별 학령인구

(단위: 천 명)

연도	계 (6~21세)	학교급별			
		6~11세 (초등학교)	12~14세 (중학교)	15~17세 (고등학교)	18~21세 (대학교)
1960	8,552	3,629	1,566	1,417	1,941
1970	12,604	5,711	2,574	2,101	2,218
1980	14,401	5,499	2,599	2,671	3,632
1990	13,361	4,786	2,317	2,595	3,663
1995	11,918	3,901	2,443	2,349	3,225
2000	11,383	4,073	1,869	2,166	3,275
2005	10,519	4,018	2,064	1,841	2,596
2006	10,409	3,919	2,104	1,888	2,497
2007	10,334	3,808	2,095	1,966	2,465
2008	10,210	3,631	2,070	2,039	2,471
2009	10,083	3,446	2,034	2,089	2,514
2010	9,950	3,280	1,985	2,084	2,601
2011	9,785	3,109	1,914	2,062	2,700
2012	9,590	2,926	1,867	2,028	2,769
2013	9,397	2,783	1,818	1,985	2,811
2014	9,181	2,751	1,719	1,912	2,799
2015	8,920	2,720	1,578	1,868	2,755
2016	8,672	2,688	1,458	1,816	2,710
2017	8,461	2,719	1,385	1,715	2,642
2018	8,260	2,757	1,340	1,574	2,589
2019	8,047	2,765	1,318	1,454	2,511
2020	7,821	2,717	1,358	1,382	2,364

주 : 학령인구 수는 원자료 값의 백의자리에서 각각 반올림하였으므로 학령인구 합계는 학교급별 학령인구 수의 합계와 불일치 할 수 있음.

자료 : 통계청(2020). 장래인구추계.

## 2. 학생 인구 및 학교 수

2020년 학교급별 재학생 수는 초등학생이 2,693,716명, 중학생은 1,315,846명, 고등학생은 1,337,312명이다. 고등학교 학생 수의 경우 고등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고 학생 수는 958,108명, 특성화고 학생 수는 212,294명이며, 특수목적고 학생 수는 64,493명, 자율고 학생 수는 102,417명이다.

초등학교 재학생 수는 1980년 565만여 명에서 1990년 486만여 명, 2000년 402만여 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부터 2016년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7년에는 약 267만 명, 2018년에는 약 271만 명, 2019년에는 약 275만 명으로 소폭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다시 269만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학교 재학생의 경우에는 1980년 247만여 명에서 2000년 186만여 명으로 감소하였다가 2010년에 접어들면서 약 197만 명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29만여 명이 되었다가, 2020년에 132만여 명으로 소폭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고등학교 재학생 수는 1980년 169만여 명에서 1990년 228만여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00년에는 약 207만 명, 2010년에는 196만여 명으로 2000년 대비 2010년에는 고등학교 재학생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고등학교 재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고등학교 유형별로 재학생 수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면, 일반고 재학생 수는 2011년 143만여 명에서 2020년 96만여 명으로 감소하였으며, 특성화고 재학생 수는 2011년 34만여 명에서 2020년 21만여 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목고의 경우에는 2011년 6만 3천여 명에서 2020년 6만 4천여 명으로 소폭 증감을 반복하였다. 자율고의 경우에는 2011년 11만 3천여 명에서 2013년 15만여 명으로 증가했다가,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10만 2천여 명으로 확인되었다.

2020년 기준 4년제 일반대학 학생 수는 1,964,358명이고, 전문대 학생 수는 621,509명, 대학원생은 320,595명이다. 대학생 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재학생 수는 1980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였으나 2015년부터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접어들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 대학생 수(2,130,046명)는 1980년(402,979명)에 비해 약 5배

증가하였고, 1990년(1,040,166명)에 비해 약 2배 증가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 재학생의 경우, 1980년 16만 5천여 명에서 2000년 91만 3천여 명으로 약 5배 증가하였으나,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62만 1천여 명으로 확인되었다.

〈표 7-1-2〉 학교급별 학생 수

(단위 : 명)

구분	성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교육대학	전문대학
				계	일반계고	전문계고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				
1980	계	5,658,002	2,471,997	1,696,792	932,605	764,187	-	-	-	-	402,979	33,939	9,425	165,051
	여	2,745,382	1,161,351	722,394	400,316	322,078	-	-	-	-	90,534	5,786	7,723	39,883
1990	계	4,868,520	2,275,751	2,283,806	1,473,155	810,651	-	-	-	-	1,040,166	86,911	15,960	323,825
	여	2,362,050	1,103,222	1,073,179	645,092	428,087	-	-	-	-	296,129	19,560	10,290	119,345
2000	계	4,019,991	1,860,539	2,071,468	1,324,482	746,986	-	-	-	-	1,665,398	229,437	20,907	913,273
	여	1,890,575	888,709	993,328	627,279	366,049	-	-	-	-	596,389	80,072	15,032	339,233
2010	계	3,299,094	1,974,798	1,962,356	1,496,227	466,129	-	-	-	-	2,028,841	316,633	21,618	767,087
	여	1,575,200	937,760	918,719	707,996	210,723	-	-	-	-	778,186	152,367	14,712	304,846
2011	계	3,132,477	1,910,572	1,943,798	-	-	1,425,882	340,227	63,727	113,962	2,065,451	329,933	20,241	776,738
	여	1,497,652	910,783	910,258	-	-	690,453	147,455	33,679	38,671	802,075	158,523	13,765	310,247
2012	계	2,951,995	1,849,094	1,920,087	-	-	1,381,130	330,797	64,468	143,692	2,103,958	329,544	18,789	769,888
	여	1,413,356	883,808	904,153	-	-	673,361	144,386	34,417	51,989	821,875	159,032	12,751	307,350
2013	계	2,784,000	1,804,189	1,893,303	-	-	1,356,070	320,374	67,099	149,760	2,120,296	329,822	17,500	757,721
	여	1,335,941	859,506	900,713	-	-	668,341	143,309	34,977	54,086	835,703	158,952	11,828	303,169
2014	계	2,728,509	1,717,911	1,839,372	-	-	1,314,073	313,449	66,928	144,922	2,130,046	330,872	16,566	740,801
	여	1,312,526	819,331	878,843	-	-	651,989	139,212	35,185	52,457	846,971	159,894	11,201	296,987
2015	계	2,714,610	1,585,951	1,788,266	-	-	1,278,008	302,021	67,529	140,708	2,113,293	333,478	15,967	720,466
	여	1,310,066	756,033	856,046	-	-	636,169	133,335	34,953	51,589	848,423	162,374	10,892	290,941

구분	성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교육대학	전문대학	
				계	일반계고	전문계고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
2016	계	2,672,843	1,457,490	1,752,457	-	-	1,256,108	290,632	67,607	138,110	2,084,807	332,768	15,903	697,214
	여	1,292,430	696,393	836,508	-	-	625,300	125,966	34,823	50,419	846,344	163,179	10,970	284,738
2017	계	2,674,227	1,381,334	1,669,699	-	-	1,193,562	274,281	67,960	133,896	2,050,619	326,315	15,839	677,721
	여	1,294,670	661,045	797,705	-	-	595,811	118,237	34,932	48,725	839,929	162,008	10,988	278,246
2018	계	2,711,385	1,334,288	1,538,576	-	-	1,096,331	252,260	66,693	123,292	2,030,033	322,232	15,788	659,232
	여	1,315,080	640,686	733,769	-	-	546,101	108,561	33,939	45,168	841,808	161,393	10,948	273,328
2019	계	2,747,219	1,294,559	1,411,027	-	-	1,001,756	230,098	65,244	113,929	1,988,458	319,240	15,697	643,762
	여	1,334,340	623,115	673,802	-	-	499,335	99,758	32,645	42,064	834,052	161,381	10,726	271,283
2020	계	2,693,716	1,315,846	1,337,312	-	-	958,108	212,294	64,493	102,417	1,964,358	320,595	15,626	621,509
	여	1,309,376	635,421	639,232	-	-	477,366	93,023	31,867	36,976	830,456	164,151	10,476	267,409

주 : 1) 2011년부터 고등학교 유형이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로 분류됨.

2) 대학은 4년제 일반대학임.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2020년 현재, 학교급별 학교 수는 초등학교 6,120개교, 중학교 3,223개교, 고등학교 2,367개교이다. 고등학교의 경우 고등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고 1,573개교, 특성화고 489개교, 특목고 160개교, 자율고 145개교이다. 2020년 초등학교 수는 1980년 6,487개교보다 367개교가 줄어들었지만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학교는 1980년 2,100개교보다 1,123개교가 늘어났으며, 고등학교의 수 역시 1980년 1,353개교보다 1,014개교 늘었고 중·고등학교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고등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1년 이후 일반고는 그 수가 2014년까지 줄어들다가 2015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20년은 전년 대비 18개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의 경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499개교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7년부터 소폭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목고의 경우 2011년 120개교에서 2020년 160개교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자율고의 경우에는 2011년 109개교에서 2016년 159개교로 증가하였다가 2019년에는 154개교, 2020년에는 145개교로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대학은 1980년에 96개교에서 2020년 191개교로 약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대학원은 1980년 121개교에서 2020년 1,169개교로 약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교육대학은 1980년 11개교에서

2020년 10개교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대학은 2005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부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7-1-3〉 학교급별 학교 수

(단위: 개교)

구분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교육 대학	전문 대학
			계	일반 계고	전문 계고	일반고	특성 화고	특목고	자율고				
1980	6,487	2,100	1,353	748	605	-	-	-	-	96	121	11	128
1990	6,335	2,474	1,683	1,096	587	-	-	-	-	118	298	11	117
1995	5,772	2,683	1,830	1,068	762	-	-	-	-	142	421	11	145
2000	5,267	2,731	1,957	1,193	764	-	-	-	-	172	829	11	158
2005	5,646	2,935	2,095	1,382	713	-	-	-	-	184	1,051	11	158
2006	5,733	2,999	2,144	1,437	707	-	-	-	-	186	1,051	11	152
2007	5,756	3,032	2,159	1,457	702	-	-	-	-	186	1,042	11	148
2008	5,813	3,077	2,190	1,493	697	-	-	-	-	185	1,055	10	147
2009	5,829	3,106	2,225	1,534	691	-	-	-	-	188	1,115	10	146
2010	5,854	3,130	2,253	1,561	692	-	-	-	-	179	1,138	10	145
2011	5,882	3,153	2,282	-	-	1,554	499	120	109	183	1,167	10	147
2012	5,895	3,162	2,303	-	-	1,529	499	128	147	189	1,177	10	142
2013	5,913	3,173	2,322	-	-	1,525	494	138	165	188	1,200	10	140
2014	5,934	3,186	2,326	-	-	1,520	499	143	164	189	1,209	10	139
2015	5,978	3,204	2,344	-	-	1,537	498	148	161	189	1,197	10	138
2016	6,001	3,209	2,353	-	-	1,545	497	152	159	189	1,195	10	138
2017	6,040	3,213	2,360	-	-	1,556	491	155	158	189	1,153	10	138
2018	6,064	3,214	2,358	-	-	1,556	490	157	155	191	1,198	10	137
2019	6,087	3,214	2,356	-	-	1,555	489	158	154	191	1,183	10	137
2020	6,120	3,223	2,367	-	-	1,573	489	160	145	191	1,169	10	136

주 : 2011년부터 고등학교 유형이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로 분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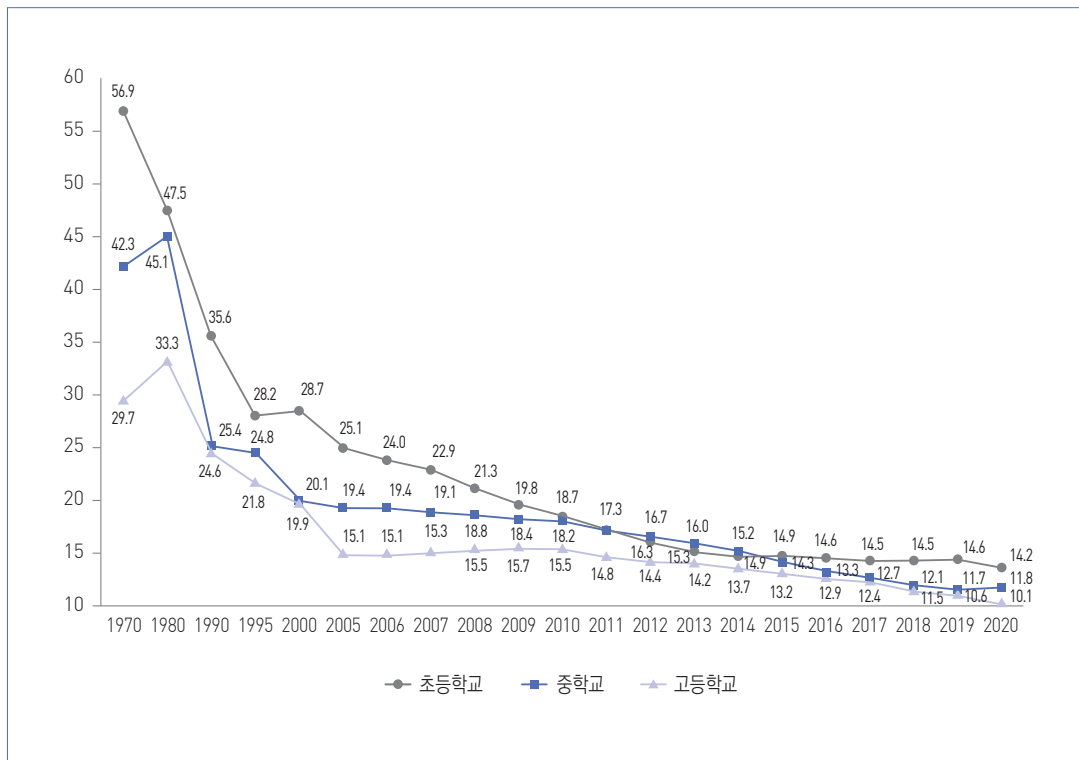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학교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 중 하나로 재적학생 수를 교원 수로 나누어 산출한 것이다. 학교급별로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살펴보면, 2020년 현재 초등학교는 14.2명, 중학교 11.8명, 고등학교 10.1명이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970년 이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급에서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2020년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00년 대비 초등학교 14.5명, 중학교 8.3명, 고등학교 9.8명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고등학교의 경우 고등학교 유형별로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살펴보면, 자율고 11.1명, 일반고 10.7, 특성화고 8.4명, 특목고 8.0명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7-1-2] 교원 1인당 학생 수

(단위: 명)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표 7-1-4〉 교원 1인당 학생 수

(단위: 명)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일반계고	전문계고	일반고	특성학교	특목고	자율고
1970	56.9	42.3	29.7	32.0	27.5	-	-	-	-
1980	47.5	45.1	33.3	33.9	32.6	-	-	-	-
1990	35.6	25.4	24.6	25.4	23.4	-	-	-	-
1995	28.2	24.8	21.8	22.1	21.4	-	-	-	-
2000	28.7	20.1	19.9	20.9	18.2	-	-	-	-
2005	25.1	19.4	15.1	15.9	13.5	-	-	-	-
2006	24.0	19.4	15.1	15.8	13.5	-	-	-	-
2007	22.9	19.1	15.3	16.1	13.5	-	-	-	-
2008	21.3	18.8	15.5	16.4	13.4	-	-	-	-
2009	19.8	18.4	15.7	16.7	13.3	-	-	-	-
2010	18.7	18.2	15.5	16.5	13.1	-	-	-	-
2011	17.3	17.3	14.8	-	-	15.8	11.0	12.5	15.2
2012	16.3	16.7	14.4	-	-	15.4	10.3	12.1	14.6
2013	15.3	16.0	14.2	-	-	15.2	10.0	12.0	14.3
2014	14.9	15.2	13.7	-	-	14.6	11.6	9.7	13.7
2015	14.9	14.3	13.2	-	-	14.1	11.4	9.3	13.7
2016	14.6	13.3	12.9	-	-	13.7	11.0	9.1	13.5
2017	14.5	12.7	12.4	-	-	13.1	10.6	8.9	13.2
2018	14.5	12.1	11.5	-	-	12.1	9.8	8.6	12.4
2019	14.6	11.7	10.6	-	-	11.1	9.1	8.3	11.5
2020	14.2	11.8	10.1	-	-	10.7	8.4	8.0	11.1

주: 1) 교원 1인당 학생 수 = 학생 수/교원 수.

2) 교원은 정규교원(교장, 교감, 수석교사, 보직교사, 교사, 특수교사, 전문상담·사서·실기·보건·영양교사) 및 기간제교원 포함(휴직교원 포함/강사 및 퇴직교원 제외).

3) 2011년부터 고등학교 유형이 일반고, 특성학교, 특목고, 자율고로 분류됨.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제5부

제6부

제7부

제8부

제9부

제10부

부록

### 3. 조기유학 현황

2019학년도(2019. 3. 1.~2020. 2. 29.) 조기유학 현황을 살펴보면, 해외 교육기관에서 수학할 목적으로 출국한 초·중등 학생 수는 총 8,961명으로 2018학년도 9,077명보다 116명 감소한 수치이다.

조기 유학생 현황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4,693명(52.4%), 중학생 2,752명(30.7%), 고등학생 1,516명(16.9%)으로 나타나 초등학생의 조기유학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조기 유학생은 2006학년도 이후부터 2016학년도까지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8학년도까지 소폭 증가하였고, 2019학년도 다시 소폭 감소한 양상을 보였다.

〈표 7-1-5〉 연도별·학교급별 유학 현황

(단위: 명)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2005	8,148	6,670	5,582	20,400
2006	13,814	9,246	6,451	29,511
2007	12,341	9,201	6,126	27,668
2008	12,531	8,888	5,930	27,349
2009	8,369	5,723	4,026	18,118
2010	8,794	5,870	4,077	18,741
2011	7,477	5,468	3,570	16,515
2012	6,061	4,977	3,302	14,340
2013	5,154	4,377	2,843	12,374
2014	4,455	3,729	2,723	10,907
2015	4,271	3,226	2,428	9,925
2016	3,796	2,700	2,247	8,743
2017	4,103	2,761	2,028	8,892
2018	4,399	2,893	1,785	9,077
2019	4,693	2,752	1,516	8,961

주: 1) 연도는 학년도를 의미하며 2019학년도의 경우 2020년도에 조사된 자료임. 2019학년도(2020년도) 자료기준일은 2019. 3. 1.~2020. 2. 29임.

2) 고등학교에는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학교, 자율고가 포함됨.

3) 해외이주 및 부모의 해외파견으로 인한 동행은 제외하였음.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 4. 대안교육 학교

2020년 현재, 대안교육 학교는 고등학교는 25개교, 중학교는 17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2020년 대안교육 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고등학생 2,717명, 중학생 1,723명으로 총 4,440명이었으며 2020년 대안교육 학교의 교원 수는 804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대안교육 학교의 수는 증감이 없이 동일한 수준을 보인 반면, 대안교육 학교의 학생 수 및 교원 수는 모두 다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1-6〉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 현황

(단위 : 개교, 명)

연도	계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	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	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
2007	29	2,823	392	8	669	86	21	2,154	306
2008	29	2,984	419	8	766	95	21	2,218	324
2009	29	3,410	416	8	974	94	21	2,436	322
2010	32	3,565	465	9	1,007	109	23	2,558	356
2011	33	3,829	519	10	1,101	131	23	2,728	388
2012	34	4,034	564	10	1,145	141	24	2,889	423
2013	34	4,060	573	10	1,131	142	24	2,929	431
2014	36	4,115	623	12	1,265	183	24	2,850	440
2015	38	4,179	660	13	1,381	210	25	2,798	450
2016	38	4,241	649	13	1,381	197	25	2,860	452
2017	39	4,244	660	14	1,409	212	25	2,835	448
2018	43	4,424	749	17	1,594	258	26	2,830	491
2019	43	4,438	786	17	1,671	286	26	2,767	500
2020	43	4,440	804	17	1,723	299	25	2,717	505

주 : 1) 조사기준일: 해당 연도별 4월 1일.

2) 학교 수는 폐교 제외, 휴교 포함됨.

3) 교원 수는 기간제 교원 및 휴직자 포함. 시간강사 및 퇴직자 제외.

자료 : 1) 교육부(2020). 2020년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중고등학교 현황.

2) 학교알리미(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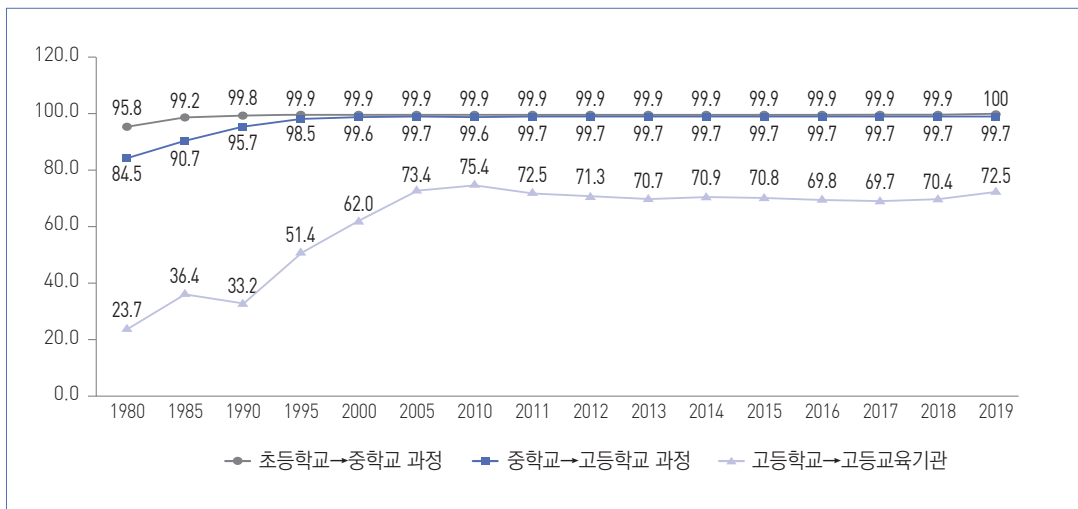
## 5. 진학률

2019년도 졸업자 기준(2020년도 진학자), 초등학교 졸업자의 중학교 과정 진학률은 100.0%이며, 중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과정 진학률은 99.7%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72.5%로, 2010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도부터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1990년의 33.2%와 비교했을 때 2019년도 졸업자의 진학률은 39.3%p 증가한 것으로 이는 과거에 비해 고등교육의 기회가 크게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고등학교 유형별로 대학 진학률을 살펴보면, 일반계고는 2005년(88.3%) 이후 2010년(81.5%)까지 감소하는 경향인 반면, 전문계고는 2005년(67.6%)부터 2010년(71.1%)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1년 이후에는 일반고와 자율고의 진학률은 2015년까지 증가하다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9년 일반고와 자율고의 진학률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와 특목고 학생들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2016년까지 공통적으로 감소하였다. 2019년의 경우에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2018년 42.5% 대비 2.3%p 증가하였고, 특목고의 진학률은 2018년 57.5% 대비 0.6%p 증가한 58.1%로 나타났다.

[그림 7-1-3] 학교급별 진학률

(단위 : %)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표 7-1-7〉 학교급별 진학률

(단위 : %)

연도	초등학교 → 중학교 과정	중학교 → 고등학교 과정	고등학교 → 고등교육기관						
	계	계	계	일반계고	전문계고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
1980	95.8	84.5	23.7	39.2	5.0	-	-	-	-
1985	99.2	90.7	36.4	53.8	9.9	-	-	-	-
1990	99.8	95.7	33.2	47.2	6.3	-	-	-	-
1995	99.9	98.5	51.4	72.8	17.2	-	-	-	-
2000	99.9	99.6	62.0	83.9	42.0	-	-	-	-
2005	99.9	99.7	73.4	88.3	67.6	-	-	-	-
2010	99.9	99.6	75.4	81.5	71.1	-	-	-	-
2011	99.9	99.7	72.5	-	-	75.8	61.0	67.4	69.3
2012	99.9	99.7	71.3	-	-	76.6	50.0	64.2	72.6
2013	99.9	99.7	70.7	-	-	77.7	41.7	60.0	74.7
2014	99.9	99.7	70.9	-	-	78.7	37.9	59.6	75.7
2015	99.9	99.7	70.8	-	-	78.9	36.1	58.4	75.8
2016	99.9	99.7	69.8	-	-	78.0	35.0	55.9	74.9
2017	99.9	99.7	69.7	-	-	77.6	35.9	57.6	72.6
2018	99.9	99.7	70.4	-	-	77.0	42.5	57.5	71.7
2019	100.0	99.7	72.5	-	-	79.4	44.8	58.1	74.3

주 : 1) 진학률(%) = (해당연도 졸업자 중 진학자/해당연도 졸업자) × 100.

2) 2011년 고등학교 유형이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로 개정되어 기존 유형 졸업자는 2013년까지 발생함. 2014년 이후 개정된 고등학교 유형 졸업자임.

3) 고등교육기관 진학자는 전문대학,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진학자 포함(2005년부터 국외진학자 포함).

4) 중학교 과정 : 중학교 및 중학교 과정의 기타학교.

5) 고등학교 과정 :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기타학교.

6) 대학 진학자 기준 : 2010년까지 대학 합격자 기준이었으나, 2011년부터 등록자 기준으로 변경됨.

7)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면 100이 넘으므로 절사하였음.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 6. 학업중단율

2019학년도 학업중단율을 살펴보면, 고등학교는 1.8%, 중학교는 0.8%, 초등학교는 0.7%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자의 개념은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의무교육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유예 및 면제자를 학업중단자로 정의하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자퇴와 퇴학한 자를 학업중단자로 보고 있다.

학업중단율은 2000학년도 이후 초등학교는 소폭 상승하여 최근 0.7%를 보이고 있고, 중학교는 최근 0.7~0.8% 내외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2007학년도부터 2012학년도까지 1.8% 내외를 유지하다가 이후 증감을 반복하였고 2019학년도 다시 1.8%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7-1-8〉 학교급별 학업중단율

(단위: %)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980	0.1	1.2	2.5
1985	0.0	1.1	3.0
1990	0.0	1.0	1.9
1995	0.0	1.0	2.5
2000	0.4	1.0	2.5
2005	0.5	0.8	1.3
2006	0.6	0.9	1.6
2007	0.5	1.0	1.8
2008	0.5	1.0	1.8
2009	0.3	0.8	1.8
2010	0.6	1.0	2.0
2011	0.6	0.9	1.9
2012	0.6	0.9	1.8
2013	0.6	0.8	1.6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4	0.6	0.7	1.4
2015	0.5	0.6	1.3
2016	0.6	0.6	1.4
2017	0.6	0.7	1.5
2018	0.7	0.7	1.6
2019	0.7	0.8	1.8

주 : 1) 연도는 학년도임.

2) 학업중단율(%) = 학업중단자 수 / 전년도 재적학생 수 × 100.

3) 학업중단자란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자퇴, 퇴학한 자들을 말하며,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업중단자는 유예 및 면제자로 정의함.

4) 2010학년도부터 인정유학, 해외이주, 파견동행이 학업중단자에 포함됨.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 7. 교육재정

### 가. 중앙정부 예산 대비 교육부 예산

2020년도 교육부 예산은 약 76조 9,957억 원으로 1980년의 약 1조 992억 원, 1990년의 약 5조 624억 원에 이어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2020년 전체 정부 예산 중 교육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8.0%로 2005년 이후 2016년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7년 18.2%로 증가한 이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표 7-1-9〉 연도별 중앙정부 예산 대비 교육부 예산

(단위 : 천 원, %)

연도	정부 예산	교육부 예산	비율
1970	446,273,301	78,478,212	17.6
1980	5,804,061,441	1,099,159,170	18.9
1990	22,689,432,968	5,062,431,258	22.3

연도	정부 예산	교육부 예산	비율
2000	93,937,057,000	19,172,027,920	20.4
2001	102,528,518,000	20,034,364,710	19.5
2002	113,898,884,000	22,278,357,817	19.6
2003	120,477,623,000	24,404,401,310	20.3
2004	126,991,802,000	26,399,680,082	20.8
2005	134,370,378,000	27,982,002,000	20.8
2006	144,807,610,439	29,127,258,513	20.1
2007	200,951,945,139	31,044,747,984	15.4
2008	219,940,529,553	35,897,425,012	16.3
2009	247,953,607,658	41,215,064,889	16.6
2010	255,334,387,481	41,741,895,353	16.3
2011	264,092,862,471	45,116,643,669	17.1
2012	282,687,336,883	49,644,828,392	17.6
2013	298,405,676,810	50,303,968,503	16.9
2014	309,692,464,444	50,835,376,904	16.4
2015	322,787,071,554	51,224,093,676	15.9
2016	330,671,628,374	52,082,779,330	15.8
2017	339,661,568,102	61,832,103,743	18.2
2018	368,646,277,167	68,549,213,485	18.6
2019	399,769,097,900	74,947,793,000	18.7
2020	427,109,369,739	76,995,734,000	18.0

주 : 1) 정부 예산(~2004) = 일반회계 +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

2) 정부 예산(2005~) = 일반회계 + 특별회계.

3) 교육부 예산 = 일반회계 + 특별회계(본예산 기준).

4) 2009~2012년 (구)교육과학기술부 예산.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 나. GDP 대비 교육재정

2019년도 교육부 예산<sup>1)</sup> 중 교육 분야 예산은 약 70조 원이며 이 중 유아 및 초·중등 교육예산이 약 59조 원(84.5%)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다음으로 고등교육예산은 약 10조 원으로 교육예산의 약 14.4%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GDP 대비 교육예산을 살펴보면, 2010년과 2011년은 2.9%, 2012년 3.1%, 2013년 3.3%, 2014년 3.2%, 2015년과 2016년은 3.0%, 2017년은 3.1%, 2018년은 3.4%, 2019년은 3.1% 수준으로 나타난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GDP 대비 교육예산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후 2016년까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소폭 증가하였다가, 2019년 다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1-10〉 GDP 대비 교육재정

(단위: 조 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교육	유아 및 초·중등	35.5	38.6	41.2	41.1	39.6	41.4	47.1	53.7	59.4
	고등교육	4.7	6.0	7.6	8.7	9.0	9.3	9.3	9.5	10.1
	평생·직업교육	0.6	0.6	0.7	0.5	0.6	0.6	0.7	0.6	0.7
	교육일반	0.1	0.1	0.1	0.1	0.1	0.1	0.1	0.1	0.1
	소계	40.9	45.2	49.6	50.4	49.2	51.4	57.2	63.9	70.3
GDP 규모	1,388.9	1,440.1	1,500.8	1,562.9	1,658.0	1,740.8	1,835.7	1,893.5	1,919.0	
GDP 대비 비율	2.9%	3.1%	3.3%	3.2%	3.0%	3.0%	3.1%	3.4%	3.1%	

주 : 1) 위 값은 반올림한 값으로 소계와 각 값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GDP 규모의 기준년도는 2015년임.

자료 : 1) 교육부(2019). 2019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2) 통계청(2020).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36](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36))에서 2020년 11월 26일 인출.

1) 교육부 예산은 분야(부문)별로 교육분야(유아 및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와 사회복지분야(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공적연금)로 구분함.

## 다. 국가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중

OECD가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0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7년 기준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OECD 국가 평균 4.0% 보다 0.1%p 높은 5.0% 수준이다.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구성 비율은 3.9%로 OECD 국가 전체 평균인 4.2% 보다 0.3%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민간재원 비율은 OECD 국가 전체 평균인 0.6% 보다 0.5%p 높은 1.1%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7-1-11〉 국가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2017)

(단위: %)

구분	OECD 평균	한국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GDP 대비 공교육비	4.9	5.0	6.1	5.2	4.2	6.3	4.0
정부재원	4.2	3.9	m	4.6	m	4.7	m
민간재원	0.6	1.1	m	0.5	m	1.5	m

주: 1) 위 값은 반올림한 값으로 소계와 각 값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 정부부담=(정부에서 교육기관에 직접 지출한 총액+정부가 가계/학생에게 지원한 납입금+기타민간이전금)/GDP×100.

3) 민간부담=(민간부담금(등록금 등)+기타 민간 교육부담금(학교법인 등)-정부가 가계/학생에게 지원한 납입금 및 기타민간이전금)/GDP×100.

4) GDP대비 공교육비 = (정부부담 금액 + 민간부담 금액 + 해외부담 금액)/GDP×100.

5) m은 해당 국가에서 자료가 수집되지 않거나 무응답한 경우를 의미함.

자료: OECD(2020), 2020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EAG).

## 라. 사교육 참여율 및 월평균 사교육비

2019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2.1만 원으로 2018년 대비 3.0만 원(10.3%p) 증가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전년보다 2.7만 원(10.3%p) 증가하였고, 중학교의 경우에도 전년대비 2.6만 원(8.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6.5만 원으로 전년대비 4.4만 원(13.7%p) 증가하였다. 고등학교 유형 가운데 일반고의 경우에는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42.5만 원으로 전년대비 4.9만 원(13.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평균 74.8%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대비 2.7%p 증가한 수치이고,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83.5%로 초·중·고 학교급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사교육 참여율은 71.4%로 나타났고, 고등학교는 61.0%로 전년대비 4.3%p 증가하였다. 일반고는 67.9%로 2018년 65.2% 대비 4.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12〉 학교급별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구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만원, %)					사교육 참여율(%)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년대비 증감률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25.6	27.2	29.1	32.1	10.3	67.8	71.2	72.8	74.8	2.7
초등학교	24.1	25.3	26.3	29.0	10.3	80.0	82.7	82.5	83.5	1.2
중학교	27.5	29.1	31.2	33.8	8.3	63.8	67.4	69.6	71.4	2.6
고등학교	26.2	28.5	32.1	36.5	13.7	52.4	55.9	58.5	61.0	4.3
일반고	30.4	33.2	37.6	42.5	13.0	58.8	62.2	65.2	67.9	4.1

자료 : 통계청(2020),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 제2장

## 학업성취도 및 학교생활 만족도

1. 청소년의 학업성취도<sup>2)</sup>

우리나라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크게 네 가지의 목적을 갖는다. 첫째, 우리나라 학생들의 교과별 학업성취의 추이를 파악하여 교육과정의 교육목표도달 정도와 함께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학업성취도와 교육맥락변인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원인을 탐색하고 학생, 교사, 학교의 구성 요인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여 보정 교육으로 연계하기 위함이다. 넷째, 질 높은 평가 도구의 개발을 통하여 단위 학교의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하고 평가 방법을 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서민희 외, 2020).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1998년 국가수준 교육성취도 평가 기본 계획 수립 이후 지속적으로 변화·발전되어 왔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학생 전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일정 크기의 표본을 추출하여 시행하다가, 2009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2010년도에 평가대상 중 고등학교 1학년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전환되었으며, 평가범위는 동일하게 고1 전 과정을 유지하였다. 2012년부터는 특성화 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학생들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대신 ‘직업 기초 능력평가’를 시행하며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제외되었다. 2013년부터는 초등학생들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201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학교 3학년과 일반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2학년의 평가 교과 중 국어, 수학, 영어는 전수평가를 실시하였고, 중학교 3학년의 경우 사회와 과학 교과는 표집학교만 시행되었다. 이후 2017년에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제안사항을 반영하여 국·영·수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표본을

2) 청소년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내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학교급별(중학교, 고등학교)로 작성한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보고서(서민희 외, 2020)를 정리·요약한 것임.

통해 얻어진 모집단에 대한 추정치라는 점을 주의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준거참조평가 (criterion-referenced assessment)로 학생의 성취는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과 이에 도달하지 못한 ‘기초학력 미달’의 성취수준으로 구분된다(서민희 외, 2020).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교의 국·영·수 학업성취 학생 비율로 평균을 계산할 경우, 2019년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72.3%로 2016년 77.7% 이후 2017년 75.0%로 감소하고 2018년에 69.8%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2.5%p 증가한 수치이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국어교과의 경우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은 2016년 90.1%, 2017년 84.8%, 2018년 81.3%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9년에는 82.8%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학력’ 학생 비율의 경우에는 2016년 7.9%, 2017년 12.6%, 2018년 14.3%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19년에는 13.0%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의 경우에는 2016년 2.0%에서 2017년 2.6%, 2018년 4.4%까지 증가하였다가 2019년에는 4.1%수준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교과의 경우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은 2016년 68.3%, 2017년 67.6%, 2018년 62.3%, 2019년 61.3%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수학교과 ‘기초학력’ 학생 비율의 경우에는 2016년 26.8%에서 2017년 25.3%로 소폭 감소하다가 2018년과 2019년에는 26%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2016년 4.9%에서 2017년 7.1%로 2.2%p 증가하였으며, 2018년에는 11.1%로, 2017년 대비 3.0%p가 증가하였으며, 2019년에는 소폭 증가한 11.8%로 나타났다.

영어교과의 경우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은 2016년 74.7%에서 2017년 72.6%로 감소하고, 2018년 65.7%로, 2017년 대비 6.9%p 감소하였다가 2019년에는 72.7%로 2017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기초학력’ 학생 비율의 경우에는 2016년 18.7% 수준에서 2017년 20.7%, 2018년 23.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9년 21.3%로 소폭 감소하였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의 경우에는 2016년 3.6%에서 2017년 4.3%, 2018년 6.9% 수준까지 증가하였다가 2019년에는 소폭 감소하여 6.4% 수준을 보였다. 2019년 기준, 성별에 따라서는 ‘보통학력 이상’ 학생비율은 국어, 수학, 영어교과 모두에서 여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초학력’ 학생 비율은 국어, 영어교과에서는 남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수학 교과에서는 여학생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의 경우에는 남학생의 비율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표 7-2-1〉 중학교 3학년 성취수준별 비율

(단위: %)

과목	성취수준	연도											
		2016			2017			2018			2019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국어	보통학력 이상	90.1	86.2	94.2	84.8	79.8	90.5	81.3	75.6	87.4	82.8	76.6	89.6
	기초학력	7.9	10.8	4.8	12.6	16.2	8.5	14.3	17.9	10.4	13.0	17.1	8.5
	기초학력 미달	2.0	3.0	0.9	2.6	4.0	1.0	4.4	6.5	2.2	4.1	6.2	1.9
수학	보통학력 이상	68.3	67.5	69.2	67.6	66.5	68.8	62.3	62.2	62.5	61.3	60.3	62.5
	기초학력	26.8	26.6	27.0	25.3	25.3	25.2	26.6	25.3	28.0	26.9	26.2	27.8
	기초학력 미달	4.9	5.9	3.8	7.1	8.2	6.0	11.1	12.5	9.5	11.8	13.6	9.7
영어	보통학력 이상	74.7	69.7	80.2	72.6	68.1	77.6	65.7	60.4	71.6	72.7	67.4	78.3
	기초학력	21.3	24.5	17.8	24.2	27.5	20.5	28.9	32.4	25.2	24.1	27.9	20.0
	기초학력 미달	4.0	5.8	2.0	3.2	4.4	1.9	5.3	7.2	3.3	3.3	4.7	1.7
평균	보통학력 이상	77.7	74.5	81.2	75.0	71.5	79.0	69.8	66.1	73.8	72.3	68.1	76.8
	기초학력	18.7	20.6	16.5	20.7	23.0	18.1	23.3	25.2	21.2	21.3	23.7	18.8
	기초학력 미달	3.6	4.9	2.2	4.3	5.5	3.0	6.9	8.7	5.0	6.4	8.2	4.4

주: 평균은 국어, 수학, 영어의 평균. '보통학력 이상'은 '우수학력'+'보통학력'을 의미함.

자료: 김희경 외(2019). 201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중학교.

서민희 외(2020).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중학교.

고등학교의 2019년 국·영·수 학업성취 학생 비율의 평균은,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73.9%로 2018년 77.4% 보다 3.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국어교과의 경우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은 77.5%로 전년대비 4.1%p 감소하였다. '기초학력' 학생 비율은 18.5%로 전년대비 3.5%p 증가하였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전년대비 0.6%p 증가하였다.

수학교과의 경우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은 65.5%로 2018년 대비 4.9%p 감소하였고, '기초학력' 학생 비율은 2019년 25.5%로 전년대비 6.3%p 증가하였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의 경우는 2019년 9.0%로 전년대비 1.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교과의 경우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은 2016년 86.0%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에는 78.8%로 나타났고, ‘기초학력’ 학생 비율은 2016년 8.9%, 2017년 14.4%, 2018년 13.4%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9년 17.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2016년 5.1%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 3.6%로 감소하였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은 국어와 영어교과에서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수학교과에서는 남학생의 비율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학력’ 학생 비율은 국어와 영어교과에서 남학생의 비율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수학교과에서는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의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교과 전 과목에서 남학생의 비율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2〉 고등학교 2학년 성취수준별 비율

(단위 : %)

과목	성취수준	연도											
		2016			2017			2018			2019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국어	보통학력 이상	84.0	78.6	89.7	75.2	67.9	82.9	81.6	76.0	87.5	77.5	71.4	84.0
	기초학력	12.8	16.6	8.7	19.8	24.9	14.4	15.0	18.9	10.9	18.5	22.8	14.0
	기초학력 미달	3.2	4.8	1.5	5.0	7.2	2.7	3.4	5.2	1.5	4.0	5.8	2.0
수학	보통학력 이상	78.2	77.4	79.1	75.8	74.2	77.4	70.4	71.2	69.5	65.5	66.8	64.0
	기초학력	16.5	16.8	16.3	14.3	14.0	14.7	19.2	17.1	21.5	25.5	23.6	27.6
	기초학력 미달	5.3	5.9	4.6	9.9	11.8	7.9	10.4	11.7	9.0	9.0	9.6	8.4
영어	보통학력 이상	86.0	82.0	90.1	81.5	77.3	86.0	80.3	75.4	85.6	78.8	75.5	82.3
	기초학력	8.9	10.6	7.1	14.4	17.1	11.5	13.4	15.7	11.1	17.6	19.5	15.5
	기초학력 미달	5.1	7.3	2.9	4.1	5.6	2.5	6.2	8.9	3.3	3.6	5.0	2.1
평균	보통학력 이상	82.7	79.3	86.3	77.5	73.1	82.1	77.4	74.2	80.9	73.9	71.2	76.8
	기초학력	12.7	14.7	10.7	16.2	18.7	13.5	15.9	17.2	14.5	20.5	22.0	19.0
	기초학력 미달	4.5	6.0	3.0	6.3	8.2	4.4	6.7	8.6	4.3	5.5	6.8	4.2

주 : 평균은 국어, 수학, 영어의 평균. ‘보통학력 이상’은 ‘우수학력’+‘보통학력’을 의미함.

자료 : 김희경 외(2019). 201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 고등학교.

서민희 외(2020).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 고등학교.

지역규모에 따른 성취수준별 비율을 살펴보면, 중학교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의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국어, 수학, 영어 과목의 전체 평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읍면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9년을 기준으로 대도시의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은 평균 84.9%였으며, 중소도시는 82.2%, 읍면지역은 79.6%였다. 대도시와 읍면지역 간 '보통학력 이상' 학생의 비율 격차는 2016년 9.6%p, 2017년 10.4%p, 2018년 7.9%p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9년에는 9.3%p로 격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과목별로는 2019년 국어교과의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은 대도시 84.9%, 중소도시 82.2%, 읍면지역 79.6%이었다. 수학교과와 국어교과의 경우는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대도시 64.9%, 중소도시 61.4%, 읍면지역 51.9%였으며, 영어교과의 경우에는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대도시 75.4%, 중소도시 72.4%, 읍면지역 66.0%였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2019년 기준으로 대도시는 5.8%, 중소도시 6.4%, 읍면지역 7.9%로 나타났다. 과목별로는 국어교과는 대도시 3.8%, 중소도시 4.2%, 읍면지역 4.9%였으며, 수학교과는 대도시 10.3%, 중소도시 11.9%, 읍면지역 15.2%, 영어교과는 대도시 3.4%, 중소도시 3.1%, 읍면지역 3.6%로 나타났다.

〈표 7-2-3〉 중학교 3학년 지역규모별 성취수준별 비율

(단위 : %)

과목	성취수준	연도											
		2016			2017			2018			2019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국어	보통학력 이상	90.9	90.0	87.9	86.2	84.9	81.5	82.5	80.8	79.7	84.9	82.2	79.6
	기초학력	7.1	8.1	9.8	11.1	13.0	15.3	13.2	14.8	16.1	11.3	13.6	15.5
	기초학력 미달	2.0	2.0	2.3	2.7	2.2	3.2	4.4	4.5	4.3	3.8	4.2	4.9
수학	보통학력 이상	72.6	67.5	58.0	71.9	67.1	57.8	66.9	60.3	55.7	64.9	61.4	51.9
	기초학력	23.2	27.4	35.7	21.6	25.4	34.5	22.9	28.4	31.6	24.8	26.8	33.0
	기초학력 미달	4.2	5.1	6.3	6.5	7.5	7.7	10.3	11.3	12.7	10.3	11.9	15.2
영어	보통학력 이상	78.2	74.0	67.0	76.4	72.0	64.2	70.1	63.5	60.4	75.4	72.4	66.0
	기초학력	18.2	21.8	28.3	20.7	24.7	32.0	24.6	31.0	34.4	21.2	24.4	30.5
	기초학력 미달	3.6	4.2	4.7	2.9	3.3	3.8	5.3	5.4	5.2	3.4	3.1	3.6

과목	성취수준	연도											
		2016			2017			2018			2019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평균	보통학력 이상	80.6	77.2	71.0	78.2	74.7	67.8	73.2	68.2	65.3	75.1	72.0	65.8
	기초학력	16.2	19.1	24.6	17.8	21.0	27.3	20.2	24.7	27.4	19.1	21.6	26.3
	기초학력 미달	3.3	3.8	4.4	4.0	4.3	4.9	6.7	7.1	7.4	5.8	6.4	7.9

주 : 평균은 국어, 수학, 영어의 평균. '보통학력 이상'은 '우수학력'+ '보통학력'을 의미함.

자료 : 김희경 외(2019). 201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 중학교.

서민희 외(2020).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 중학교.

고등학교 2학년의 지역규모에 따른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도 평균적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2018년과 2019년에는 평균적으로 중소도시, 읍면지역, 대도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9년을 기준으로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은 대도시 75.3%, 중소도시 73.8%, 읍면지역 70.4%였으며, 과목별로는 국어교과의 경우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은 대도시 77.7%, 중소도시 78.1%, 읍면지역 74.9%였으며, 수학교과는 대도시 68.2%, 중소도시 64.5%, 읍면지역 61.1%, 영어교과는 대도시 80.0%, 중소도시 78.9%, 읍면지역 75.3%로 나타났다. 한편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의 경우에는 2019년 기준으로, 대도시 5.0%, 중소도시 6.1%, 읍면지역이 5.1%로 나타났다. 과목별로는 국어교과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대도시 3.9%, 중소도시 4.3%, 읍면지역 3.1%로 나타났고, 수학교과의 경우에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대도시 7.6%, 중소도시 10.1%, 읍면지역은 9.3%, 영어교과의 경우에는 대도시 3.6%, 중소도시 3.9%, 읍면지역 3.0%로 나타났다.

<표 7-2-4> 고등학교 2학년 지역규모별 성취수준별 비율

(단위 : %)

과목	성취수준	연도											
		2016			2017			2018			2019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국어	보통학력 이상	85.1	83.8	81.6	77.2	75.3	68.7	82.5	81.6	78.8	77.7	78.1	74.9
	기초학력	11.4	13.3	15.2	17.7	20.4	24.2	13.4	15.4	18.1	18.4	17.5	22.0
	기초학력 미달	3.5	2.9	3.2	5.1	4.3	7.1	4.0	2.9	3.2	3.9	4.3	3.1

과목	성취수준	연도											
		2016			2017			2018			2019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수학	보통학력 이상	80.5	76.5	76.4	78.4	75.1	70.4	73.4	69.7	64.4	68.2	64.5	61.1
	기초학력	14.8	17.9	17.9	12.6	15.3	16.4	17.2	19.7	23.1	24.2	25.3	29.6
	기초학력 미달	4.7	5.6	5.8	9.0	9.6	13.2	9.4	10.7	12.5	7.6	10.1	9.3
영어	보통학력 이상	87.7	85.2	83.2	83.9	81.3	75.2	83.6	79.5	74.2	80.0	78.9	75.3
	기초학력	7.6	9.5	11.2	12.4	14.9	18.5	10.9	13.9	19.0	16.5	17.2	21.6
	기초학력 미달	4.7	5.4	5.7	3.7	3.8	6.3	5.5	6.6	6.8	3.6	3.9	3.0
평균	보통학력 이상	84.4	81.8	80.4	79.8	77.2	71.4	79.8	76.9	72.5	75.3	73.8	70.4
	기초학력	11.3	13.6	14.8	14.2	16.9	19.7	13.8	16.3	20.1	19.7	20.0	24.4
	기초학력 미달	4.3	4.6	4.9	5.9	5.9	8.9	6.3	6.7	7.5	5.0	6.1	5.1

주 : 평균은 국어, 수학, 영어의 평균. '보통학력 이상'은 '우수학력'+ '보통학력'을 의미함.

자료 : 김희경 외(2019). 201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 고등학교.

서민희 외(2020).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 고등학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044-415-2162

## 2. 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도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이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4년 49.7%로 나타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59.3%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 만족도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4년 47.7%, 2016년 48.6%, 2018년 53.1%, 2020년 57.2% 수준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교육방법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의 경우에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4년 44.0%에서 2016년에는 42.9%로 소폭 감소하였다가 2018년에는 44.7%, 2020년에는 48.9%로 전년 대비 4.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우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2014년 69.5%, 2016년에 68.8%, 2018년 76.6%, 2020년 73.3%로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4년 50.8%, 2016년 53.1%, 2018년 61.1%, 2020년 64.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교 시설 및 설비 만족도의 경우에도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4년 38.7%, 2016년 41.0%, 2018년 47.4%, 2020년 55.7%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학교 주변 환경 만족도를 보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14년 37.5%, 2016년 39.8%로 소폭 증가하다가 2018년에는 47.1%, 2020년에는 55.1%로 전년대비 8.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전반적인 학교생활, 교육내용, 교사와의 관계, 학교시설 및 설비, 학교주변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방법에 대한 만족도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소폭 감소하였다가 2018년부터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우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년도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중 2020년 기준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항목은 교우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5〉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단위: %)

구분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전반적인 학교생활	49.7	43.8	6.4	52.3	41.8	6.0	58.0	37.3	4.6	59.3	36.2	4.5
교육 내용	47.7	42.5	9.8	48.6	42.3	9.1	53.1	38.7	8.2	57.2	34.7	8.2
교육 방법	44.0	41.6	14.4	42.9	43.3	13.8	44.7	41.9	13.4	48.9	35.9	15.2
교우 관계	69.5	26.8	4.6	68.8	27.1	4.1	76.6	21.3	2.0	73.3	23.7	3.0
교사와의 관계	50.8	42.1	7.1	53.1	40.4	6.5	61.1	34.0	4.9	64.8	31.6	3.6
학교시설 및 설비	38.7	43.3	18.0	41.0	43.1	15.9	47.4	40.8	11.9	55.7	35.2	9.1
학교주변 환경	37.5	44.7	17.7	39.8	42.8	17.4	47.1	41.9	11.0	55.1	35.7	9.2

주 : 1) 통계청 "사회조사"의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2012~2016년까지는 13세 이상 재학생을 조사하였고, 2018년부터는 중·고등학교 재학생이 조사대상임.

2) 만족은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합산한 것이고, 불만족은 '약간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합한 것임.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 제3장

## 교육복지정책

##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 가. 추진 배경 및 경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취약한 여건에 있는 학생에게 교육, 복지, 문화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예컨대 학습 결손 학생에게는 보충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습 결손을 치유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문화적 욕구 결핍을 느끼는 학생에게는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성취 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삶의 질적 수준까지 제고하는 것이다. 즉,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핵심 원리는 교육 취약 계층 학생의 개별 여건을 진단하여 그에 맞게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사업의 기본방향으로 인해 사업 운영 과정에 있어서도 시·도교육청, 학교, 지역사회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설계된 것이 큰 특징이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2011년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으로, 우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의 경과를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은 2003년에 서울, 부산 2곳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교육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일종의 시범사업 형태로 출발하였다. 시범 사업 2년 후인 2005년부터는 공모제를 도입하고, 사업대상지역을 광역시로 확대하는 등 총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6년에는 인구 25만 명 이상의 중소 도시로 사업 대상지를 확대하여 16개 시·도에 걸친 총 30개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8년 말에는 모든 시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2010년까지 전국의 534개 초·중·고에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2010년 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2011년에 지방 이양 사업으로 전환하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개칭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재원의 성격은 특별교부금에서 보통 교부금으로

변경되었으며, 사업 대상은 기존의 지역 단위에서 개별 학교로 변경되었다.

2011년 교육복지우선사업으로 전환된 후 1,356교(초 670·중 681·고 5)가 지원을 받았으며, 2012년 이후로는 매년 1,800여 개교 이상이 지원을 받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20년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 예산이 약 1,377억 원으로 총 3,690개교(사업학교 1,762교, 연계학교 1,928교)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다.

## 나. 추진 체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추진 체계는 크게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교육부에서는 교육복지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정책연구 및 정책자문, 사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연수 등을 위해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가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사업학교 선정기준, 학교별 예산 배부 기준 등이 포함된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시·도의 기본 계획에 따라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에 배포하기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관기관과의 연계를 활성화한다. 또한 자체적으로 교육청 내 담당자 연수, 우수사례 발굴, 사업평가 및 성과관리 등을 실시하여 시·도의 자체적인 교육 복지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다.

교육지원청은 지역 단위에서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관내 사업학교를 대상으로 교육 복지 프로그램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학교의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지원청 내 담당부서에 프로젝트 조정자와 같은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일선 현장인 단위 학교에서는 교육 복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교원 이외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한다. 배치된 교육복지사는 교내 담임교사, 부장교사 등과 협력하여 지원 대상 학생을 발굴하게 된다. 지원 대상 학생에게는 학생 개인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학습, 문화체험, 심리치료 등)이 제공된다. 또한 교육복지사와 담임교사의 판단을 통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외적으로 현물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도 한다.

한편,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이외에도 각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연구 지원을 위한 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단위의 사업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사업 현장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 관련 담당자 연수, 자체 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교육복지협의회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 사업 운영 방안을 논의하며, 교육지원청 단위의 교육복지 협의회, 학교 단위의 교육복지위원회를 설치한다.

## 다. 사업 내용 및 효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대상 학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 중 사업학교의 장이 상담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학생에게 필요에 맞는 학습, 문화체험, 심리치료, 복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추진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사업학교 선정, 사업대상학생 선정 등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며,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학교에서 교육복지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 형태로 운영되는데, 특기적성 프로그램과 같은 기존의 프로그램, 개별 학생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현물 서비스로 분류된다. 우선 학교는 지원 대상 학생에게 특기적성, 체험활동,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과 같은 기존의 일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개별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맞춤형 프로그램의 예시로 학습결손 학생을 위한 1:1 보충학습 프로그램,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이 있다. 다만 특정 학생에게 프로그램이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경우, 학생이 노출될 수 있어 필요한 경우 일반학생도 함께 참여하여 그룹 활동의 형태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 학생에게는 프로그램 참여 비용의 전부가 지원되나, 일반학생에게는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참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사업 시행 초기에는 일부 학교에서 특별 프로그램 안내의 편의성을 위하여 학습영역, 문화영역, 정서·심리 발달영역, 복지 프로그램 영역 등으로 구분 지은 경우가 있었으나, 복지 프로그램 영역을 임의로 구분 짓게 되면 학생 개개인의 수요 파악에 충실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별 학생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이라는 기본적인 사업 방향이 구현될 수 있도록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운영방식을 개선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일반 프로그램, 맞춤형 프로그램 이외에도 사업학교의 장은 의·식·주, 보건, 위생, 건강 등 학생의 기본적인 욕구 개선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현물서비스를 직접 지원할 수 있다. 단, 현금 지원은 불가하다. 예컨대 담임교사와 교육복지사가 사업대상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여 쌀을 전달할 수 있으며, 교육복지사가 학생을 데리고 치과에 동행해서 치과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사업 효과성에 관해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은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도, 수업태도, 학업 효능감, 사회성, 자존감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지적, 정의적, 사회적 측면 등 다양한 교육적 효과에 긍정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송지훈 외, 2018). 실제, ‘한국교육개발원’의 2015년 연구(교육복지 콘서트)에 따르면, 많은 시·도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생의 학습태도, 기초학력, 자아존중감 등이 향상되었으며, ‘서울시교육청’의 자체조사(2016년도 운영성과) 결과 교육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중·고 학생의 무단결석 비율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2014년 연구에서도 사업학교의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역량(수업참여, 독서, 진로설계)이 비 사업학교의 저소득층 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부수적으로 사업학교 내부의 교육 복지 체계가 강화되었다. 2012년 한국교육개발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업 실시 이후 사업학교(초·중학교)의 교육 복지 전담부서 설치율은 9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교내 교육복지위원회 설치율은 두 학교급 모두 98% 이상으로 학교 자체의 교육 복지 체계가 매우 발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학습, 문화, 심리, 의료 등 다양한 방면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수업료, 급식비 지원 등으로 이루어지던 교육복지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라. 향후 발전방향

교육 취약 계층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꾸준히 사업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기존 사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취약계층 학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복지사가 미배치된 학교의 취약계층 학생을 발굴·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Wee 프로젝트, 두드림학교 등 다양한 유사 성격의 사업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학생 개개인이 처한 중첩적 복지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개별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타 사업과의 연계 및 학교 안·밖의 자원 연계·조정을 통한 개별 학생 사례관리 중심의 맞춤형 지원으로의 방향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044-203-6521

## 2. 방과후학교

### 가. 방과후학교 개요

#### 1) 개념 및 추진 근거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 활동으로, 학교 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교육활동이다(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2020).

방과후학교의 운영은 수요자 선택 중심, 수익자 부담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모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생의 수요 조사를 토대로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개설·운영되며, 학생의 선택에 의한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어려운 여건의 학생들에게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형태로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방과후학교는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3-7호 및 제2015-74호)을 근거로 학생·학부모의 교육 요구와 수요가 있을 시 방과후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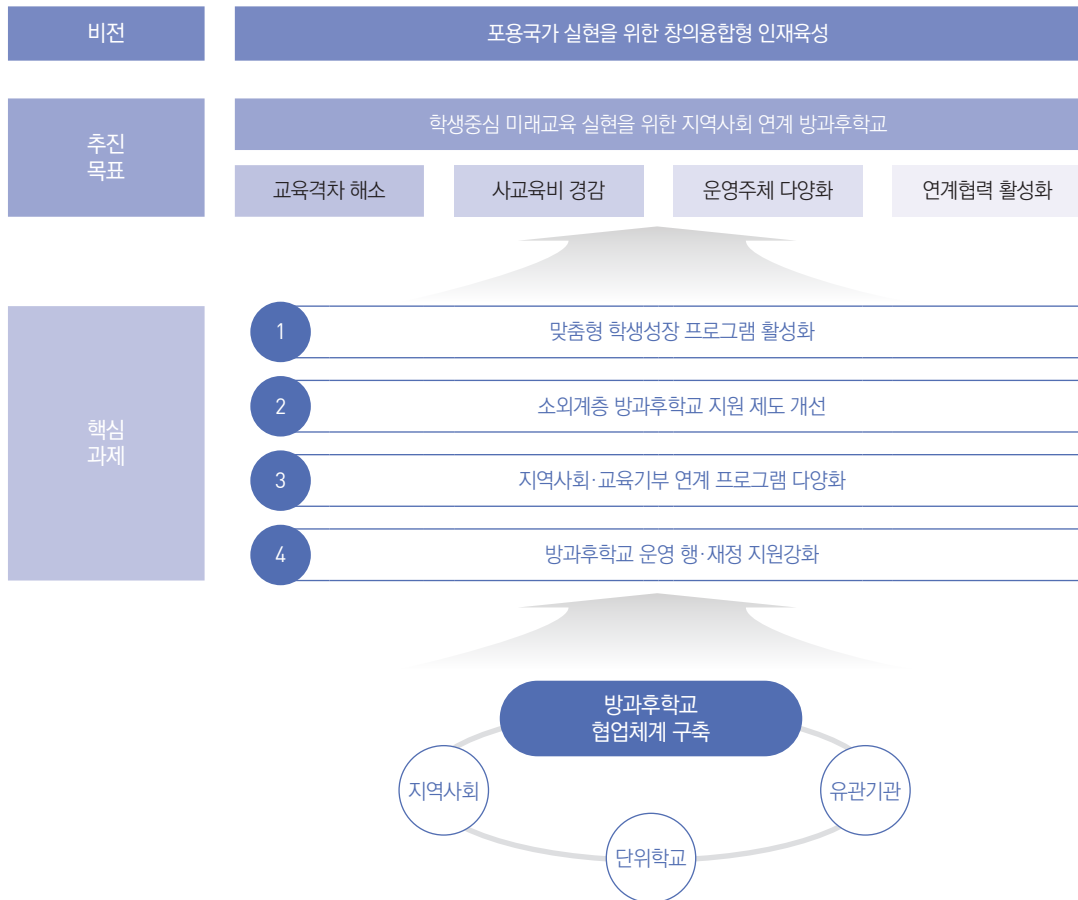
#### 2) 비전 및 목표

2019년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 발표 이후 방과후학교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학생 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방과후학교

운영”을 추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방과후학교는 도시 저소득층과 농어촌 소재 학생에 대한 방과후학교 수강지원 확대를 통한 교육격차 완화,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 확대 및 교과외 심화·보충 등 다양한 사교육 수요 흡수 노력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지역사회·교육기부 연계를 통한 운영주체의 다양화 및 연계협력 활성화를 세부 추진 목표로 두었다.

방과후학교는 특히 학교-지역사회 연계 교육생태계 구축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학생성장 프로그램 활성화,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및 소외계층 방과후학교 지원 강화, 지역사회·교육기부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다양화, 방과후학교 운영 행·재정 지원 강화를 주요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추진하고 있다.

[그림 7-3-1] 방과후학교 비전·목표·전략



자료 : 2020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



### 3) 방과후학교 운영 체제

방과후학교정책의 주요 추진 주체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단위학교이며, 행정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도 참여한다.

각 운영 주체별 역할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시·도교육청에 방과후학교 사업 예산을 지원하며, 관련 정책의 총괄 조정 및 관리 역할을 담당한다. 2008년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방과후학교 사업이 지방 사무로 이양되면서 시·도교육청의 역할은 확대되었는데,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자체 예산을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한다. 단위학교는 학부모 및 학생 만족도 조사를 토대로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는 주요 주체이다. 방과후학교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학교장과 방과후학교 업무담당 부장교사 또는 담당교사에 의해 운영된다. 또한 단위학교는 학교운영비(방과후학교 사업 지원 예산) 또는 수용비 범위 내에서 방과후학교 업무 지원을 위한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와 보조 인력을 계약 또는 위촉할 수 있다.

## 나. 방과후학교 정책 변천

방과후학교 정책의 전신은 1995년 5월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제안된 ‘특기·적성교육’이며, 1996년 2월 ‘방과후 교육활동’이란 명칭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였다. 1998년 10월 ‘교육비전 2002’에 입시 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의 탈피를 통한 학생 개개인의 소질계발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1999년 2월 방과후 교육활동의 명칭을 ‘특기·적성 교육 활동’으로 변경하여 입시 중심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의 연차적 폐지를 목표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발굴하고, 취미와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동아리 중심의 학생 문화를 만들고자 하였다. 2004년 공교육의 사교육 흡수, 경쟁력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외부강사 활용,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등 방과후학교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었으며, 특기적성, 보충 수업 등 다양한 방과후 활동의 명칭을 ‘방과후학교’로 명명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에 학교에서 방과 후 교과, 특기적성, 보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였다.

2006년에는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제도’ 도입, ‘대학생 멘토링’ 지원, ‘초등 방과후 보육’ 지원 등의 방과후학교 지원 정책이 시행되었으며, 2007년 전국 확산을 위해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였다. 2008년 학교자율화 추진에 따라 방과후학교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였으며, 방과후학교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차원에서 2009년 제1회 '방과후학교 대상'을 개최하였다. 2011년 발표된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 방안에는 대학의 사회적 기업 설립과 방과후학교 우선위탁 장려 등을 통한 대학 주도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담고 있다. 이어 2016년 5월에는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질 높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완화, 초등 돌봄교실 강화, 방과후학교 지원 강화 등 다양한 방법과 영역 확대를 통하여 방과후학교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2019년 11월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다양한 방과후학교 운영 방식을 제안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의 핵심과제와 그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는 <표 7-3-1>과 같다.

<표 7-3-1>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

핵심과제	세부추진과제
1. 맞춤형 학생성장 프로그램 활성화	1. 학교급 및 학생발달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설 유도 2.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체제 구축·지원 3. 프로그램 운영의 질 제고 및 관리 강화
2. 소외계층 방과후학교 지원 제도 개선	1.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 및 제도 개선 2. 차별화된 방과후학교 소외계층 지원 강화 3. 소외지역 중심 초·중·고 단계 문화·예술 콘텐츠 지원 확대
3. 지역사회·교육기부 연계 프로그램 다양화	1. 지역사회 연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2. 방과후학교 운영 주체 간 연계 시스템 강화 3. 교육기부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원 확대
4. 방과후학교 운영 행·재정 지원 강화	1.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역할 강화 2. 교직원의 업무부담 감소 및 업무 편의성 제고 3. 방과후학교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강화 4. 시·도교육청의 책무성 강화

자료 : 교육부(2019).

## 다. 취약계층의 지원 확대

### 1)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취약계층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가정 학생들에게 연간 60만 원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유수강권을 지급받는 학생 수와 연간 지원액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이후부터 2019년까지 지원 학생 수는 증감을 반복한 한편, 연간 지원액은 지역마다 편차는 있으나 60만 원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3-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지원금액 (백만원)	115,210	127,116	141,021	176,581	289,188	340,745	371,960	173,790	346,116	323,876	336,968	157,437
지원학생 수 (명)	320,374	353,445	392,070	482,070	602,480	567,907	622,933	362,062	721,077	698,761	624,015	601,652
연간지원액 (만원)	30	30	36	36	48	60	60	60	60	60	60	60

자료 : 교육부,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각 년도.

### 2)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농산어촌 학교 운영비를 도시보다 많이 지원하는 등 농산어촌 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과 수강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표 7-3-3〉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현황

(단위 : 억 원, 개)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지원금액	528	382	421	515	657	973	975	782	923	876	915	742	789
지원 학급 수	14,645	14,605	16,210	17,162	46,948	46,323	46,401	46,508	46,660	47,513	46,952	47,377	47,833

자료 : 교육부,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각 년도.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044-203-6413

### 3. 농산어촌 지역 교육

#### 가. 농산어촌 지역 교육환경적 특성

##### 1) 학생 수의 지속적 감소

전국적으로 초·중등 학생 수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농산어촌 지역 역시 큰 폭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다. 읍지역의 경우 2005년 67만 명을 정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 55만 명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면지역의 경우 2000년 57만 명을 기록한 이후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 32만 명 수준까지 낮아졌다. 도서벽지 지역은 가장 급격한 감소 추세를 나타내서 학생 수가 2000년 9.4만 명에서 2019년 3.4만 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읍지역은 전국 수준보다 감소 비율이 낮은 수준인 반면에 면지역과 도서벽지에서의 현저한 학생 수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이에 따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읍지역에서의 학생 수 감소 완화추세에 힘입어 전국 학생 수에서 농산어촌 지역 학생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이후 미세하나마 조금 높아졌다.

〈표 7-3-4〉 2000년 이후 초·중등 학생 수 감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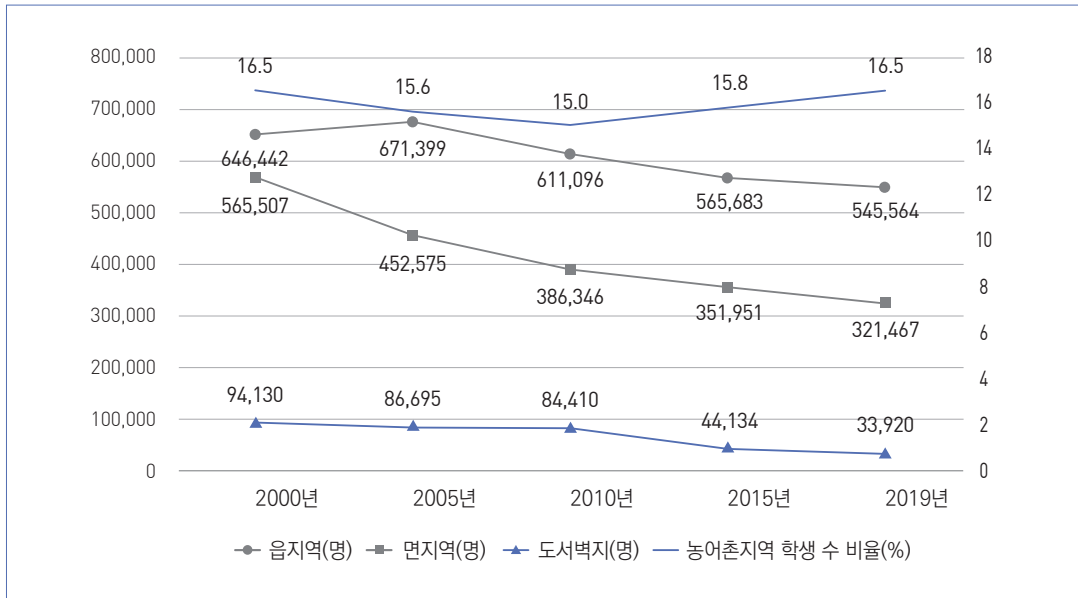
(단위 : 명, %)

행정구역별	연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9년	
전국(A)	7,931,600(18,632)	7,782,671(10,066)	7,227,693(5,535)	6,085,508(3,319)	5,449,485(3,320)	
농 산 어 촌	계(B)	1,306,079(17,662)	1,210,669(9,546)	1,081,852(4,958)	961,768(3,013)	900,951(2,681)
	읍지역	646,442(1,173)	671,399(729)	611,096(359)	565,683(310)	545,564(612)
	면지역	565,507(7,118)	452,575(4,113)	386,346(1,959)	351,951(1,082)	321,467(928)
	도서벽지	94,130(9,371)	86,695(4,704)	84,410(2,640)	44,134(1,621)	33,920(1,141)
구성비(B/A)	16.5	15.6	15.0	15.8	16.5	

주 : 폐교 및 휴교는 현황에 포함하지 않음. ( ) 안의 수치는 분교 현황이며, 본교 현황에는 포함하지 않음.

자료 : 교육통계서비스(kess.kedi.re.kr),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 공시자료.

[그림 7-3-2] 농어촌 지역 학생 수 변화(본교기준)



## 2) 코로나19 사태와 학생등교 중단조치

2020학년도에는 코로나19 사태가 불특정 지역 또는 전국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모든 유·초·중·고 개학이 연기되고, 학생들의 등교를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코로나 사태의 확산추세 속에서 결국 초등학교는 4월 16일부터, 중·고등학교는 4월 9일부터 온라인 개학을 통하여 원격수업을 실시하고, 대학수학능력 시험도 당초 11월 19일에서 12월 3일로 2주 연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교육부는 2020년 4월 7일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원활한 원격수업 운영을 위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을 개정하고, 단위학교별 처리 원칙과 방법을 담은 원격수업 시 출결, 평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기재 지침을 마련하여 발표하였고, 4월 25일에는 등교 및 하교를 포함한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교직원 및 학교, 학원등 교육계 전반에 걸친 코로나19 예방지침을 발표하였다.

코로나 사태의 완화 추이에 따라 5월 13일부터 고3부터 순차적인 등교를 시작하였으나 이태원 감염확산으로 등교수업을 1주일 연기하고, 5월 27일 1단계 등교수업 개시에 따른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 방안을 발표하였다. 시도교육청의 자율에 따라서 방학 전까지 등교수업을 추진하였으나 등교 중단 사태가 반복되고 결국 2학기를 맞이하였으나 학생들의 전면 등교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분 등교 상태로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게 되었다.

〈표 7-3-5〉 학교별 등교수업 시기

단계	일정	등교대상			비고
		고등학생	중학생	유·초등학생	
우선단계	5.20.(수)	고3			*당초계획 *이태원감염 확산으로 1주일 연기
1단계	5.27.(수)	고2	중3	초1, 2+유치원	
2단계	6.3.(수)	고1	중2	초3~4	
3단계	6.8.(월)		중1	초5~6	

이에 따라 학교현장의 교육과정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속출했고, 특히 학생들이 수업집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예체능 교육, 각종 실험·실습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또한, 현장체험, 소풍, 수학여행, 축제 등 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각종 교육활동 등을 중단하거나 원격활동으로 대체하는 상황을 빚었다.

다행인 점은 코로나 환자 수의 급속한 증가 추세 속에서도 학생과 교직원의 감염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는데, 질병관리본부의 자료(2020. 10. 22. 0시 기준)에 따르면 전국의 환자 수는 25,543명이고 그중 학생은 645명으로 2.53%, 교직원은 133명으로 0.52%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은 일반인이나 학생 모두 감염 비율이 도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10월 22일 현재 전체 확진자 25,543명 중 수도권이 11,748명(45.99%)이고, 부산·대구·광주·대전등 광역시가 8,658명(33.9%)으로 수도권과 광역시 환자를 합치면 감염비율이 80%에 육박하고 있다. 농산어촌 지역의 감염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도시지역은 인구 밀집화 현상과 협소한 공간적 제약 등이 있는 반면에 농산어촌 지역은 소규모 학생, 넓은 자연 공간 및 학습 공간 등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이는 농산어촌 학교의 장점이기도 하다. 학생등교를 시작한 이후에도 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함에 따라 도시지역의 경우 등교 중단 조치가 반복적으로 취해졌으나 농산어촌 학교는 소인수 학교의 장점을 살려 학생등교가 이루어져 왔고, 제한적이거나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교육부는 10월 11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및 1단계 조치에 따라 모든 학교들이 기존의 지침대로 전교생의 2/3 이내에서 등교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지역별, 학교별 여건에 맞게 조정하며,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의 경우 전면 등교가능 방침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교총, 학부모 단체 등을 중심으로 1학년의 등교를 늘려 달라는 요구가 있어, 초등학교 1학년은 1주에 3일 이상 등교를

하도록 권고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예를 들면 초등학교의 경우 오전/오후반 혹은 오전/오후 학년제 등을 실시하는 것도 적극 권장했다.

〈표 7-3-6〉 학생 등교수업 조정 현황

시도	시군구	등교수업 조정 학교 수 현황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특수 학교	각종	기타	계
서울	서울	651	574	384	311	28	8	-	1,956
인천	인천	305	214	114	106	5	2	1	747
광주	광주	285	154	90	62	5	-	-	596
대전	대전	-	2	1	-	-	-	-	3
세종	세종	-	1	-	-	-	-	-	1
경기	경기	1,834	1,172	592	456	17	7	-	4,078
강원	원주시	68	45	23	15	2	-	-	153
	춘천시	-	1	1	-	1	-	-	3
	그 외	2	2	2	4	-	1	-	11
충북	옥천군	14	12	4	2	-	1	-	32
	청주시	105	82	42	37	4	-	-	271
	충주시	4	1	2	-	2	-	-	9
	그 외	-	-	-	-	1	-	-	1
충남	보령시	-	-	1	-	-	-	-	1
	그 외	1	2	1	-	-	-	-	4
전북	전북	-	-	-	-	1	-	-	1
전남	순천시	57	42	42	15	1	-	-	137
	그 외	1	1	1	-	-	-	-	3
경북	경북	1	1	-	-	-	1	-	3
경남	경남	-	1	-	-	-	-	-	1
제주	서귀포시	17	17	5	2	-	-	-	41
합계		3,345	2,324	1,286	1,110	67	19	1	8,052

주 : 2020년 9월 1일 기준 자료.

자료 : 교육부(2020).

## 나. 농산어촌 교육 지원

농산어촌 교육 재정지원 사업으로 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과 도서벽지 화상교실 구축 및 운영사업을 추진하였다.<sup>3)</sup> 현장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여러 제약 속에서 사업을 추진하였다.

### 1) 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그동안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여건을 부정적인 차원에서만 파악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았으나, 농산어촌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도시학교를 뒤따라가는 것보다 도시학교에서 찾기 어려운 농산어촌 학교의 강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농산어촌 학교의 강점으로는 청정 자연환경과의 근접성,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식품 생산의 기지이자, 면면히 지켜오고 있는 전통 문화 등 도시와 대비되는 농산어촌 교육자원의 특색이 있다. 또한, 도시 학교에 비해 학교에 대한 신뢰감과 의존성이 높고, 학력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는 점, 학교 구성원 간 긴밀한 인간관계가 상존하며, 가정·학교·지역사회의 교육적 연계가 강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농산어촌 학교는 소규모 학교로서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의 개별화가 가능하다는 점, 학생들의 학교활동 참여 및 상호 협동적 학습 기회가 많다는 점, 학교 구성원 간, 특히 교직원과 학생 간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 학생 수 대비 학습 환경 및 공간이 충분하다는 점, 학교운영의 탈 관료화, 인간화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농산어촌 학교는 교육력 향상을 위해 극복해야 할 여러 취약점이 있다. 농산어촌은 도시와 비교하여 사회적 고립성, 문화적 지체성, 경제적 빈곤성, 공공서비스 질의 낙후성 등 교육환경으로서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인구구조의 고령화, 우수학생의 도시로의 이탈 지속화, 결손 가정 학생의 증가와 학습집단의 이질화, 교사들의 근무의욕 저하와 자녀 교육 문제로 학교소재 지역 거주 기피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농산어촌 학교는 소규모 학교로서 학습자의 경쟁의식 등 상호 발전을 자극하는 심리적 학습환경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 인간관계의 고정화 등으로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 도모에 취약하다는 점, 다양한 교과 개설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특별 교실의 확충에 한계가 있다는 점, 다방면의 재능을 가진 교원 확보가 곤란하다는 점, 교사 의존성이 과다하고, 교사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점 등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

3) 상세한 내용은 임연기 외(2020), 2019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실적 및 운영사례. 공주대학교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농산어촌 학교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사업을 추진하였다. 주요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과 농산어촌의 가치를 반영한 교육과정 특성화, 둘째, 농산어촌 학교의 소규모화에 따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와 학교, 학교와 지역 간의 연계 협력 활동 강화, 셋째,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규모화 위협요인에 공동으로 대응 등이다.

아울러 그간의 단위학교 중심 농산어촌 학교 특색사업은 학교별로 성과 차원에서 편차가 크고,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이나 지역사회 연계, 마을 교육공동체 운영 등 사업의 확산성 차원에서 한계가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하여 단위학교 수준에서 독자적으로 특색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농산어촌 여러 소규모학교의 육성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통합적 지원체제를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어 교육지원청형 사업을 2019년도부터 시행하였다.

농어촌 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은 2018년 단위학교 사업으로 출발하였으며, 2019년에는 단위학교형과 교육지원청형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다. 각 유형별 사업목적은 다음과 같다.

〈표 7-3-7〉 농어촌 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단위학교형	교육지원청형
단위학교 수준에서 농촌학교의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특색 프로그램 운영 지원	교육지원청 수준에서 관내 작은 학교 간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지역연계 공동 프로그램 운영 등의 지원

2018년도에는 읍·면·도서벽지 소재 초·중·고등학교 281교를 지원하였으며, 2019년부터는 단위학교형을 83개로 축소하고 교육지원청 사업을 추가하여 11개 교육지원청을 지원하였다. 2020년에는 교육지원청형 9개, 단위학교형 65교로 축소 지원하였다.

〈표 7-3-8〉 농어촌 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지원 현황

구분	부산	인천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단위학교	2018년	2	4	4	1	44	30	18	32	24	42	36	38	6	281
	2019년	2	4	4	2	10	0	12	5	15	6	10	10	3	83
	2020년	0	6	3	0	0	0	16	9	0	5	6	12	8	65



구분		부산	인천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교육 지원청	2019년	0	1	0	0	1	0	1	1	2	1	1	1	2	11
	2020년	0	1	0	0	1	0	1	1	2	1	1	1	0	9

자료 : 교육부(2020).

## 2) 도서벽지 화상교실 구축·운영 사업

본 사업의 목적은 첫째, 학생 수 급감으로 복식학급, 상치교사 운영 등 교육여건이 열악한 도서·벽지 소재 학교를 대상으로 화상교실 구축 및 지원, 둘째, 복식학급 및 상치교사 문제 등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교사의 업무경감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 학습능력 향상 도모, 셋째, 도서·벽지 극소규모 학교의 새로운 교육과정운영 모델 창출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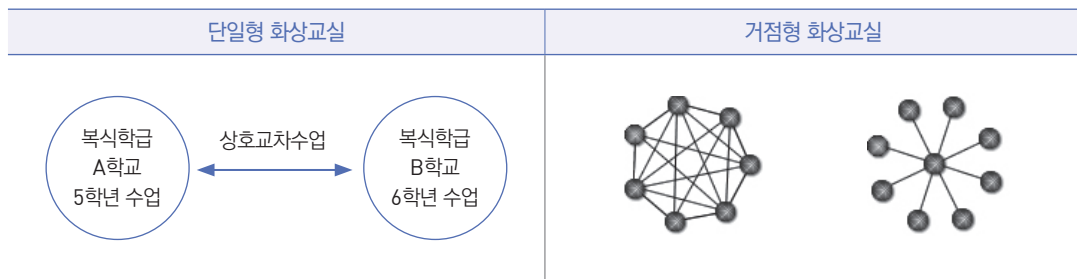
화상교실 운영 유형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단일형(1 : 1) 화상교실은 복식학급을 운영하는 2개의 학교가 각기 다른 학년의 수업을 교차하여 상호 공유 운영할 수 있도록 화상교실을 구축한다.

둘째, 복수형(N : N) 화상교실은 복식학급을 운영하는 3~5개 학교가 복식학급 수업을 교차 공유할 수 있도록 화상교실을 구축한다. 다수의 도서벽지 소규모학교를 화상교실로 연계하여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셋째, 거점형(1 : N) 화상교실은 중심학교 수업을 2~4개 학교가 공유한다. 중점학교(본교)에서 운영하는 수업을 도서·벽지학교(분교)가 화상으로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참여한다.

[그림 7-3-3] 도서벽지 화상교실 운영 유형(단일형, 거점형)



도서·벽지 학교가 많은 인천, 전남, 경북 등 3개 시·도교육청 관내 도서·벽지학교를 지원하였다(16+1학교<sup>4)</sup>). 2019년 화상교실 운영학교는 아래와 같다(인천: 4교, 전남: 6교, 경북: 6교). 2010년에는 안좌초등학교를 대신하여 청계남초, 해남고가 가거도 초등학교 연결학교로 참여하였다.

〈표 7-3-9〉 2019년 화상교실 운영학교 현황

지역	학교 수	학교명	연결 학교
인천	4	인천 남구 용현남초등학교	인천 응진 용현남초(자월분교)
		인천 중구 송도중학교	인천 응진 연평중학교
전남	7	전남 진도 의신초등학교	전남 진도 의신초(접도분교, 모도분교)
		전남 신안 가거도초등학교	2019: 안좌초등학교/ 2020: 청계남초, 해남고
		전남 신안 안좌중학교	전남 고흥 대서중학교
경북	6	경북 칠곡 북삼초등학교	북삼초 오평분교
		경북 울진 삼근초등학교	삼근초 옥방분교
		경북 봉화 봉성초등학교	경북 예천 감천초등학교

2019년 화상교실 구축 이후 2학기에 정규교과에서 8개 교과목, 17개 학교, 21개 강좌를 운영하였다. 아울러 11개 비교과유형, 14개 비교과활동을 운영하였다. 참여교사들로부터 화상교실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3-10〉 화상교실의 교육적 효과 조사 결과

교육적 효과	세부 내용	의견 수
전문교사로 인한 수업 만족도 제고	SW 전문교사에 의한 컴퓨터수업 가능(지역격차 해소 기여)	12
	원어민교사에 의한 영어수업으로 영어회화능력 신장 및 원어민에 대한 긍정적 태도 형성	
	전문교사 수업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향상	
의사소통·협업역량 향상	예체능 전문 수업 가능	10
	발표 및 토의토론수업으로 인한 의사소통 역량 향상	
	협력학습 및 프로젝트로 인한 협업경험	

4) 총 17교 가운데 16교는 화상교실 구축 지원 대상 학교이며, 1교(전남 안좌초등학교)는 기존에 구축된 화상교실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한 학교임.

교육적 효과	세부 내용	의견 수
체험학습 가능	과학관, 미술관 등 화상체험학습으로 인한 지역격차 해소	4
학습내용 심화	디지털교과서를 통한 내용이해 심화	2
	토의토론수업으로 인한 내용이해 심화	
심리상담 가능	개별/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 기여	1
동기유발	화상교실 수업이 주는 흥미 유발 효과	1
기타	교사의 수업운영 부담 해소에 기여	1

#### 다. 농산어촌 학교 코로나19 사태 대응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여 농산어촌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가장 주목한 점은 방역이나 학생들의 건강 보호는 물론 도시학생들이 학원 등에서 학력을 키우는 동안 농어촌 학생들은 손을 놓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었다. 따라서 정상적인 온라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의 질을 높여가는 원격운영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이 당면 과제였으나 긴급하게 추진한 원격수업은 시스템 불안정, PC 부족, 콘텐츠 부족 등 여러 측면에서 제약이 많았다. 다음의 언론보도를 보면 그 실상을 그대로 읽을 수 있다.

- “교실에 와이파이도 없는데”...원격수업 준비에 학교들 ‘진땀’
- 초등학교 교실에 웹캠 없는 데스크톱뿐...학교 간 디지털 격차 ‘확연’
- 학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학교 수업 대안으로 나온 ‘원격수업(온라인수업)’ 준비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쌍방향 수업을 하려면 매 교시 교사들이 각자 교실에 들어가 온라인에 접속해 수업해야 하는데, 교실 내 무선망이 없는 학교가 수도룩하기 때문이다. 학교 간 디지털 격차(디지털을 잘 활용하는 그룹과 그렇지 못한 그룹 간 발생하는 지식·소득 등의 격차)도 확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2020. 3. 29.〉에서

특히 초등 저학년일수록 교육 콘텐츠 부족과 장기간 긴급 돌봄에 따른 문제, 온라인 인프라 구축 문제점 등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청에서는 PC와 패드 등을 긴급히 보급하고 원격수업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온라인 개학 1주일 만에 전국 어디서나

원격수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지역별, 학교 급별 특색 있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원격수업은 역설적으로 학교에 가지 않아도 배움이 이어지고, 배움의 형태는 더욱 다양하게 펼쳐진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극복과 온라인 개학 준비를 위해 학생·학부모와의 상시 소통채널 운영, 원격수업을 위한 기반 구축,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지원 등, 모든 학교는 원격 수업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원격 수업을 위한 학습관리시스템(LMS)을 설정하고, 원격수업 교육과정과 수업운영 방식을 결정해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 내용을 재구성하기 위해 교원 대상 학습관리시스템 활용법 연수를 지원하였으며, 예비비를 지원해 원격 수업용 도구와 장비 구축을 완료하였다. 원격 수업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 통신료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지원이 필요한 모든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대여하며 통신료 역시 무료로 지원하였다.

원격수업은 실시간 쌍방향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수행중심수업, 기타 학교 여건에 따른 다양한 수업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습결손 부분은 등교수업 이후에 교사가 더 촘촘히 살펴봐야 하고, 학습클리닉 보조교사를 확대 배치하여 학습결손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온라인 개학 관련 질의응답 커뮤니티'를 개설,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원격 수업 등 다양한 질문 사항에 실시간으로 직접 응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또한 장애의 특성이나 보호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원격수업이 어려운 학생에게 감염예방수칙 준수와 함께 교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방문수업'을 진행하였다. 충남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 정보 소외계층,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원격수업 진행이 어려운 학생에게 학교와 학급 담임교사가 준비하는 원격수업 콘텐츠 및 과제 부여, 학습지와 학습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원격 수업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전교생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에서는 5월 20일부터 학교공간을 활용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어 방역 등 감염병 매뉴얼을 철저히 지키면서 안전하게 등교수업을 진행하였으며 모든 학교들이 6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등교개학을 진행하여 원격수업으로 위축되었던 여러 교육활동들을 전개하였다.<sup>5)</sup>

5) 공주대 중앙농어촌교육지원센터(2020.5)가 주최한 2020 제1차 농어촌 작은학교 희망포럼 자료집 「코로나시대 농어촌 교육지원청의 역할」 참조.

## 4. 다문화학생 교육

### 가. 다문화학생 현황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정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다양화되고 있다. 이주배경을 지닌 사회 구성원이 증가하면서 학교에도 다문화학생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다문화학생이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다. 2020년 다문화학생은 전년대비 7.4% 증가한 147,378명이다. 다문화가정의 6세 미만 유아 수를 고려하면 향후 초·중·고 학교에 재학하는 다문화학생 수와 전체 학생 중 다문화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7-3-11〉 최근 5년간 다문화학생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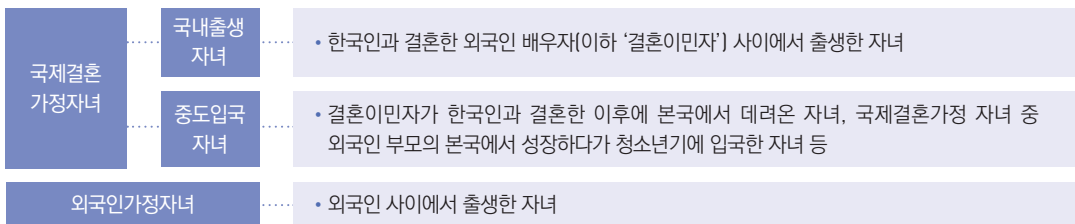
구분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다문화학생 수(A)	99,186	109,387	122,212	137,225	147,378
전체 학생 수(B)	5,890,949	5,733,132	5,592,792	5,461,614	5,355,483
다문화학생 비율 (A/B×100)	1.68%	1.91%	2.19%	2.51%	2.75%

주: 매년 4월 1일 기준.

자료: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초기 다문화교육 정책은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와 외국인 근로자 자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다문화가정 학생의 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2010년부터는 중도입국 자녀도 정책 대상에 포함되었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가 발표한 「다문화 학생 교육 선진화방안」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학생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그림 7-3-4] 다문화가정 학생 구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2).

이 분류에 따라 2020년 다문화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출생자녀가 77.2%, 중도입국자녀가 6.2%, 외국인가정자녀가 16.6% 정도이다. 학교급별로는 전체 다문화학생의 약 73.1%가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고, 약 18.2%가 중학교에, 약 8.7%가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초등학생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 중·고등학생 수가 전년대비 6,341명 증가하는 등 청소년기 다문화학생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7-3-12〉 다문화학생 유형별·학교급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19년				2020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국내출생	80,620	15,906	8,543	108,069	85,101	19,556	9,117	113,774
중도입국	5,163	2,153	1,381	8,697	5,088	2,488	1,575	9,151
외국인가정자녀	15,175	3,688	1,596	20,459	17,581	4,791	2,081	24,453
계	103,958	21,747	11,520	137,225	107,770	26,835	12,773	147,378
비율	75.76	15.85	8.39	100.00	73.12	18.21	8.67	100.00

주 : 매년 4월 1일 기준.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 나. 다문화학생을 위한 정책 추진 경과

학교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인 다문화학생 교육을 위해 2006년부터 교육부에서는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는 범교과 학습 주제로 ‘다문화교육’을 포함하여 교육과정을 통한 학교 내 다문화교육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2012년부터 한국어가 서툰 중도입국·외국인가정 자녀의 공교육 적응지원을 위해 일반 학교 내 특별학급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집중 교육하는 ‘한국어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어(KSL) 교육과정’을 도입(2012. 7.)함으로써 한국어를 한국어학급의 정규과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한국어(KSL) 교육과정의 보완 필요에 따라 한국어(KSL) 교육과정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내용 체계 및 문화교육 내용을 보완한 ‘개정 한국어(KSL) 교육과정’을 개정·고시하였다(’17. 7월 고시, ’19. 3월 적용).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기회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이외에도 임대차계약서 등 거주지 증명만으로도 초·중학교 입학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2008년, 2010년). 이에 더해 외국 학교를 다니다가 국내 학교에 편입학하려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학력 증빙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하여 학력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학력심의회위원회’를 통해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2013년). 뿐만 아니라, 다문화학생의 중학교 입학·전학·편입학 절차를 교육장 배정 방식으로 변경하여 다문화학생의 원활한 공교육 진입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권 보장을 도모하였다.(’20. 8. 15. 시행)

이 외에도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 감수성을 증진하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모든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는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우수사례 공모전 등을 추진하고 있다.

## 다. 2020년 주요 정책 내용

### 1)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내실화

교육부는 유치원 단계부터 조기에 개입하여 언어 및 기초학습 등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다문화 유아에게 동등한 출발점을 보장하기 위해 2015년부터 ‘다문화 유치원’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9년에는 사업 개편으로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로 사업명이 변경되었다.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일반 유아와 다문화 유아를 통합하여 교육하되, 필요할 경우 다문화 유아의 발달 단계 및 특성을 고려한 추가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다문화 유아 추가지도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언어발달지원 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교육 정책학교(유치원)는 2015년 5개 시·도 30개원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어, 2020년에는 전국 149개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OO 유치원 다문화가정 학부모) 학기 초에 제가 한국어를 잘 모르니까 아이에게 한국어를 잘 가르쳐줬으면 좋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유치원에서 도움을 주니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내년에도 계속 가르쳐주셨으면 좋겠어요.
- (OO 유치원 교사) 다문화 유치원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 학생들에게 언어 교육을 실시하니, 언어 발달도 좋아지고 기본생활습관과 사회성도 좋아졌어요.

다문화학생의 학교 적응과 기초학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문화학생 대학생 멘토링(4,000여 명)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생 멘토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다문화학생과 대학생을 1:1 매칭하여 진행되는데, 신청 다문화학생 중 저소득층, 기초학력 미달 학생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순위로 매칭한다. 2017년부터는 외국어에 능통한 대학생이 멘토가 되어 한국어 구사가 어려운 중도입국·외국인가정 학생의 부(모)국 언어로 직접 멘토링을 실시하는 ‘모국어 멘토링’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학생의 이중언어 학습을 장려하고 이중언어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전자책 형태의 이중언어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일본어·중국어·필리핀어·베트남어·러시아어·몽골어·태국어·캄보디아어·인도네시아어). 이와 함께 매년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도 개최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에는 제8회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가 개최되었다.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입상 다문화학생은 2018년 6월에 체결된 교육부-LG연암문화재단-한국외국어대학교 업무협약에 따라 ‘LG와 함께하는 사랑의 다문화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체 학급이 함께 다문화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원격영상으로 진로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어울림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 2) 중도입국·외국인학생 교육 사각지대 해소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학생도 「유엔아동권리협약」(우리나라 1991년 비준)에 따라 의무교육기회를 보장받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거주지 증명만으로도 국내학교에 편입학할 수 있다. 교육부에서는 다문화가정 학부모가 한국 교육제도, 입학절차, 교육기관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우리아이 학교 보내기’ 책자를 10개 언어로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법무부와 정보연계를 통해 중도입국·난민 자녀에게 국내학교 편·입학 안내를 연 2회 실시하고 있고, 2018년에는 보다 많은 학부모에게 교육제도 안내가 실시될 수 있도록 국문-외국어 양면 1매로 구성된 리플릿(13개 언어)을 추가로 제작하여 보급하였다.

일반 학교 내 특별학급 형태로 운영되는 ‘한국어학급’에서는 한국어가 서툰 중도입국 다문화가정 자녀 등이 정규 학교수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한국어학급은 2019년에 217교(총 326학급)가 참여하였고, 2020년에는 245교(총 372학급)로 더욱 확대되었다. 또한 중도입국자녀 등이 한국어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 편입학하는 경우에도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은 교육청(또는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해당 학교에 한국어 강사를 지원하거나, 인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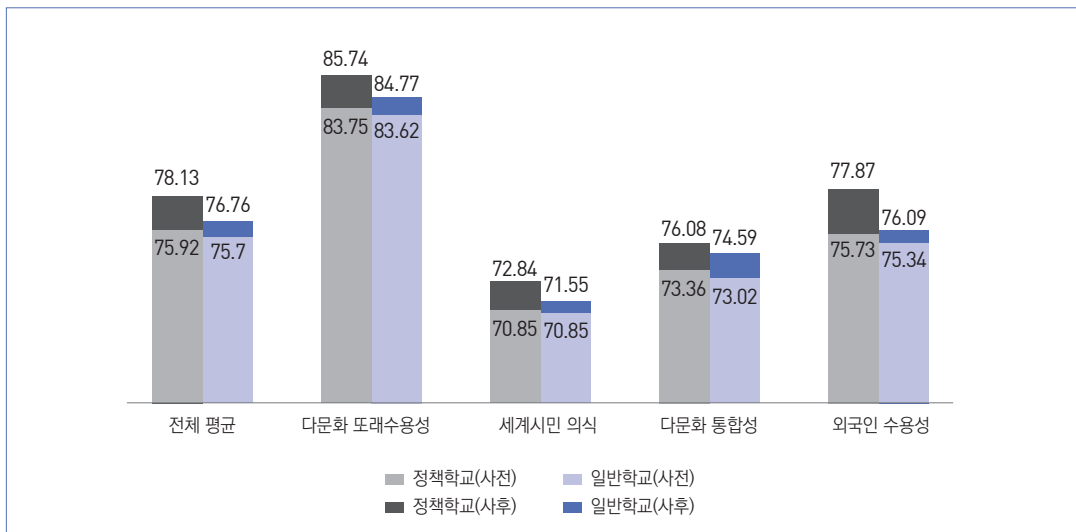
한국어학급에 있는 한국어 강사가 순회 지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3) 학교 구성원의 다문화교육 참여 확대

교육부는 다문화학생 교육지원을 통해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전체 학교 구성원이 다문화교육에 참여하여 학교현장의 다문화 감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지정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다문화 이해, 차별해소, 반(反)편견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는 기존 다문화 유치원, 다문화 중점학교, 예비학교로 운영되던 사업을 통합하여 개편한 것이다. 2018년부터는 각 학교에 우수한 다문화교육 교육과정 운영 사례가 효과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수업모델을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2019년 다문화교육정책학교 및 일반학교의 다문화 수용성을 조사한 결과, 다문화교육 정책학교가 일반학교보다 다문화 수용성 각 영역에서 뚜렷하게 증가하여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교과 및 비교과와 연계한 다문화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중앙 및 각 시·도에서 다문화교육 관련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현재 다문화교육정책학교는 2020년 661개교, 372개 학급이 운영되고 있다.

[그림 7-3-5] 2019년 다문화교육정책학교 및 일반학교 다문화 수용성 변화 비교

(단위: 점)



자료 : 교육부(2020).

다문화교육의 경우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의 다문화교육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개정되어 교원 대상 다문화 이해연수가 의무화되었다. 교육부는 중앙교육연수원 및 시·도별 교육연수원을 통해 기초 연수(15시간) 3개 과정, 심화연수(30시간) 1개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원들이 3년 동안 15시간 이상 다문화관련 연수를 이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더불어, 다문화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진학상담, 위기학생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진로진학상담교사와 전문상담교사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2018년 ‘다문화학생 진로·진학상담의 이해’ 교원 원격연수 콘텐츠를 개발·보급하였다.

현장에서 수업을 통해 다문화교육을 지도하거나 다문화학생을 지원한 교사, 현장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2009년부터 전국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을 진행하여 우수한 교육 자료를 현장에 안내하고 있으며, 2018년 제10회 공모전부터는 ‘다문화 상담사례’ 부문을 신설하여 다문화학생 정서·심리·진로상담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자 개편하였다.

#### 4) 다문화교육 추진체계 확립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다문화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중앙다문화교육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앙다문화교육센터는 다문화교육 관련 통계 수집 및 분석, 사업 성과의 평가, 시·도 다문화교육 지원, 관계자 워크숍 개최, 자료개발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역 여건에 맞는 다문화교육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교육부는 2015년부터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각 시·도 단위에서 해당 센터가 중심이 되어 지역 내 다양한 다문화교육 자원을 연계·활용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다문화교육 정책을 개발·추진하고, 그 결과를 관내 학교에 공유 및 확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2015년 5개 지역으로 시작하여, 2020년에는 17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모두 운영되고 있다.

## 5. 탈북학생 교육 지원

### 가. 탈북학생 개념 및 현황

탈북학생이란 북한 또는 중국 등에서 태어나 한국에 입국한 후 한국 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 이탈주민<sup>6)</sup>의 자녀이다. 최근에는 북한 외에 중국 등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한국 입국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통일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착 지원에 있어서는 제한적이지만, 교육부에서는 이들이 부모의 탈북과정 중 외국에서 태어나 학습 결손이 크므로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탈북학생 범주에 포함하여 교육지원을 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 늘어나면서 국내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원칙적으로 통일부 정착지원 및 교육부 탈북학생 교육지원 대상은 아니다.

〈표 7-3-13〉 탈북학생 지칭 용어 및 지원 비교

구분	탈북청소년	탈북학생		탈북가정 한국 출생 자녀
		북한 출생	제3국 출생	한국 출생
개념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집단을 포괄하는 용어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결정이 된 청소년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북한이탈주민으로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 후 국내에 입국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 한국 출생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지원 사업 참여 여부	학교 재학 시 가능	가능		원칙적으로 불가능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20). 2020 탈북학생 멘토링 매뉴얼. 재구성.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현황을 보면 1948년부터 1990년대 말까지 누적 집계로 1천여 명에 불과했으나, 2000년대 들어 한국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2010년 말 2만 명에

6)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으로 온 북한주민을 의미함. 법령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임.

이르렀고, 2020년 12월에는 잠정적 통계치로 33,752명에 달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탈북학생의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규모는 줄어들고 있지만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남한 입국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전체 탈북학생의 규모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표 7-3-14〉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

구분	~1998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남(명)	831	565	510	474	626	424	515	573	608	662	591
여(명)	116	478	632	811	1,272	960	1,513	1,981	2,195	2,252	1,811
합계(명)	947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2,914	2,402
여성비율	12.2%	45.8%	55.3%	63.1%	67.0%	69.4%	74.6%	77.6%	78.3%	77.3%	75.4%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잠정)	합계
남(명)	795	404	369	305	251	302	188	168	202	72	9,435
여(명)	1,911	1,098	1,145	1,092	1,024	1,116	939	969	845	157	24,317
합계(명)	2,706	1,502	1,514	1,397	1,275	1,418	1,127	1,137	1,047	229	33,752
여성비율	70.6%	73.1%	75.6%	78.2%	80.3%	78.7%	83.3%	85.2%	80.7%	68.6%	72.0%

자료 : 통일부(2020). 북한이탈주민통계.

〈표 7-3-15〉 북한이탈주민 지역별 거주 현황

구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북	경남	대구	충북	충남·세종
남(명)	2,195	2,678	771	262	223	243	139	252	349
여(명)	4,849	7,923	2,198	742	877	832	523	1,061	1,358
합계(명)	7,044	10,601	2,969	1,004	1,100	1,075	662	1,313	1,707
구분	광주	강원	대전	전남	전북	울산	제주	계	
남(명)	135	219	134	156	116	129	69	8,070	
여(명)	453	638	479	482	412	368	247	23,442	
합계(명)	588	857	613	638	528	497	316	31,512	

자료 : 통일부(2020). 북한이탈주민통계.

교육부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탈북학생의 재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탈북학생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0년 4월 조사 결과, 총 2,726명의 탈북청소년이 학교 안팎의 교육 기관에 재학하고 있다. 이 가운데 2,438명(전체의 89.4%)은 정규 초·중·고등학교 및 기타학교(특수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하고 있으며, 288명(전체의 10.6%)의 청소년이 정규학교가 아닌 전일제 대안교육시설에서 수학 중이다. 이 밖에 정규학교나 대안교육시설에서 수학하지 않고 사설 학원을 다니거나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탈북청소년이 일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탈북학생의 정규학교 급별 재학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재학생이 741명으로 약 30.4%를 차지하고 있고, 중학교 재학생은 782명(32.1%), 고등학교 재학생은 738명(30.3%), 기타학교 재학생은 176명(7.2%)으로 집계되었다.

〈표 7-3-16〉 탈북청소년 학교 유형별 재학 현황

(단위: 명)

구분	정규학교								대안교육시설 (전일제)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재학 현황	384	357	398	384	368	370	76	100	288	2,725
	741		782		738		176			
	2,437									

주: 1) 기타학교는 특수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등을 포함함.

2) 대안교육시설(전일제) 재학생 현황은 2020. 8. 기준임(통일부 제공).

자료: 한국교육개발원·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2020), 2020년 교육부 탈북학생 통계 현황.

지역별 탈북학생 재학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재학 중인 학생이 31.5%로 가장 많고, 서울이 21.2%, 인천 8.9%로 나타나 전체 학생의 61.6% 가량이 수도권 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표 7-3-17〉 지역별 탈북학생 재학 현황

(단위: 개교, 명, %)

구분	재학 학교 수	학생 수					비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계	
서울	213	152	137	162	68	519	21.2
부산	58	29	31	32	5	97	4.0
대구	35	25	15	14	0	54	2.2
인천	78	67	80	66	3	216	8.9
광주	51	15	20	29	0	64	2.6
대전	40	29	16	13	0	58	2.4
울산	29	20	16	8	0	44	1.8
세종	6	2	3	1	0	6	0.2
경기	318	220	254	228	63	765	31.5
강원	41	21	18	25	0	64	2.6
충북	59	42	35	20	2	99	4.0
충남	83	36	47	45	30	158	6.5
전북	35	11	17	13	0	41	1.7
전남	30	8	17	14	2	41	1.7
경북	67	23	32	26	1	82	3.4
경남	74	32	36	33	2	103	4.2
제주	20	9	8	9	0	26	1.1
계	1,237	741	782	738	176	2,437	100

주: 2020년 4월 기준 자료.

자료: 한국교육개발원·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2020), 2020년 교육부 탈북학생 통계 현황.

탈북학생 중에서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제3국 배경 학생의 규모는 2011년에는 36.2%에 불과했지만, 2020년은 62.8%로 증가했고,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재학 탈북학생의 순차적인 상급학교 진학에 따라 고등학교에 재학하게 될 제3국 출생 학생 비율도 당분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7-3-18〉 정규학교 재학 탈북학생 출생지별 재학 현황

(단위 : 명,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계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북한출생	193	21.2	268	29.5	364	40.1	82	9	907	37.2
중국 등 제3국 출생	548	35.8	514	33.6	374	24.4	94	6	1,530	62.8
계	741	30.4	782	32.1	738	30.3	176	7.2	2,437	100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2020), 2020년 교육부 탈북학생 통계 현황.

〈표 7-3-19〉 탈북학생 연도별 재학 현황

(단위 : 명, %)

구분	정규 학교				합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2005. 4	247(58.7)	131(31.1)	43(10.2)		421
2006. 4	248(52.3)	166(35.0)	60(12.7)		474
2007. 4	341(49.6)	232(33.8)	114(16.6)		687
2008. 4	495(51.2)	288(29.8)	183(19.0)		966
2009. 4	562(49.2)	305(26.7)	276(24.1)		1,143
2010. 4	773(54.5)	297(21.0)	347(24.5)		1,417
2011. 4	1,020(60.7)	288(17.1)	373(22.2)		1,681
2012. 4	1,204(60.4)	351(17.6)	437(21.9)		1,992
2013. 4	1,159(57.3)	478(23.6)	385(19.0)		2,022
2014. 4	1,128(51.7)	684(31.3)	371(17.0)		2,183
2015. 4	1,224(49.5)	824(33.3)	427(17.2)		2,475
2016. 4	1,143(45.4)	773(30.7)	601(23.9)		2,517
2017. 4	1,027(40.5)	726(28.6)	785(30.9)		2,538
2018. 4	932(36.7)	682(26.9)	751(29.6)	173(6.8)	2,538
2019. 4	877(34.6)	738(29.2)	752(29.7)	164(6.5)	2,531
2020. 4	741(30.4)	782(32.1)	738(30.3)	176(7.2)	2,437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2020), 2020년 교육부 탈북학생 통계 현황.

## 나. 탈북학생 배경·특성 이해

탈북학생들이 북한이나 제3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과정은 많은 위험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은둔 생활을 하다가 신분이 노출되어 중국의 공안에 잡히거나 심지어는 북한으로 송환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안한 생활을 겪은 경우 남한 입국 후에도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기도 한다. 일부 탈북학생은 탈북 과정에서 가족을 잃거나 북한에 남겨두고 온 경험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또한 부모와 장기간 떨어져 생활하다가 재결합한 경우 부모에게 친근함보다 불편함을 느끼며, 간혹 부모가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린 경우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심하게 겪기도 한다. 중국에서 출생한 학생들의 경우 한국어 구사능력이 미흡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탈북학생마다 북한에서의 교육 경험, 탈북과정에서의 교육 공백이나 심리적 상처, 복잡한 가정환경 등에 따라 개인적인 어려움이 다양하며 따라서 학습 수준이나 적응 양상도 천차만별이다. 이는 모든 탈북학생에게 적용되는 ‘일관된 특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탈북학생별 맞춤형 교육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탈북학생의 특성을 규정할 수는 없지만, 남북한 학교 교육의 차이, 탈북학생임을 드러내기 어려운 상황, 부모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 등에 의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 다. 탈북학생 교육의 목적 및 지원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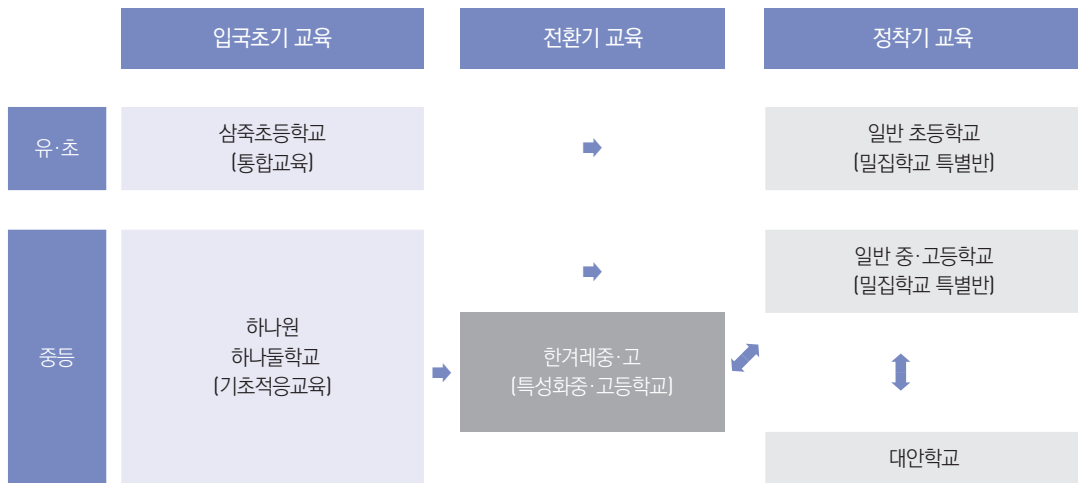
탈북학생 교육은 기본적으로 탈북학생을 우리 사회의 통합된 일원으로 적응·성장시키고 통일 미래의 맞춤형 인재로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즉, 탈북학생들이 한국에 들어온 입국 초기 단계부터 지역 사회 정착에 이르는 정착기 단계까지를 포괄하여 통합적인 교육을 통해 이들이 한국 사회에 원만하게 적응하고 한국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탈북학생의 학교 및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입국 초기 교육’, ‘전환기 교육’, ‘정착기 교육’ 순으로 교육경로를 단계별로 체계화하여 교육지원을 한다. 정규 학교의 교육을 기본 토대로 하는 가운데 대안교육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탈북학생이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및 통일부는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각종 교육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는 「탈북학생 교육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지역 단위의 유기적 연계를 토대로 학교 내 탈북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지역 기관과 연계하여 학교 밖 탈북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7-3-6] 탈북학생 단계별 교육지원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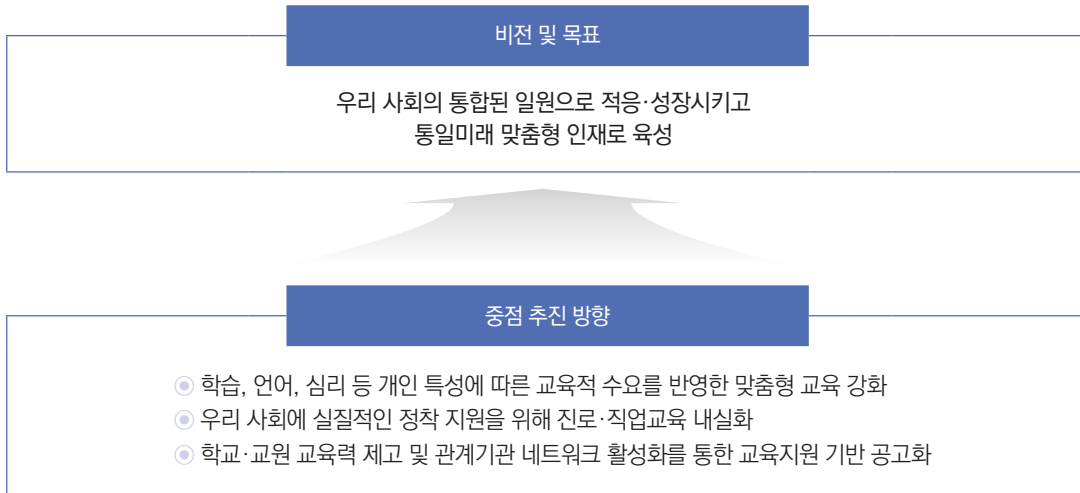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2020).

## 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현황

2020년 교육부에서 실시한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은 ① 맞춤형 교육 강화, ②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③ 교육지원 기반 공고화의 총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별 지원 개요는 다음과 같다.

[그림 7-3-7] 2020년 교육부 탈북학생 교육지원 목표 및 중점 추진 방향



추진 방향	주요 추진 과제	교육 단계
1. 맞춤형 교육 강화	① 삼죽초 맞춤형 교육 지원 제공 ② 한겨레중·고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③ 정착기 학교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	입국초기 전환기 정착기
2. 진로·직업 교육 내실화	① 하나원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강화 ② 한겨레중·고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③ 정착기 학교 진로·직업교육 기회 확대	입국초기 전환기 정착기
3. 교육지원 기반 공고화	① 입국 초기 - 전환기 교육기관 교육 지원 강화 ② 교원의 탈북학생 교육역량 강화 ③ 탈북학생 교육지원 네트워크 강화	입국초기 전환기 전 단계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2020).

## 1)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 영역은 하나원에서 시작하여 정규학교에 이르는 교육경로별 적응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강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세부 사업으로 첫째, 삼죽초 맞춤형 교육 지원 제공, 둘째, 한겨레중·고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셋째, 정착기 학교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 사업을 실시하였다.

각 사업별 개요를 살펴보면 첫째, 삼죽초(입국초기) 맞춤형 교육 사업은 입국 초기 하나원에서 생활하며 삼죽초등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는 탈북학생들에게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특별학급을 운영하여 학업과 사회적응을 지원한다. 즉, 제3국 은신, 부모와의 격리, 기타 탈북과정의 경험 등으로 인해 심리·정서적으로 불안한 탈북학생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삼죽초 재학 탈북학생의 학습, 체험활동 등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삼죽초등학교의 탈북학생들은 오전에는 일반학급에서 한국 학생들과 통합교육을 받고 오후에는 특별학급에서 맞춤형 교육을 받으면서 생활한다. 이와 함께 삼죽초에서는 중국 등 제3국 출생 학생들을 위해 이중언어 구사가 가능한 한국어 강사를 채용하여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한겨레중·고(전환기) 맞춤형 교육’ 사업은 한겨레중·고와 정착기 일반 학교간의 협력사업 실시, 한국어 교육 강화를 위해 이중언어 강사 및 전문심리상담사 배치 등의 사업이 진행되었다. 먼저 한겨레중·고 협력학교 운영 사업에서는 한겨레중·고등학교와 일반 중·고등학교가 참여하는 협력학교 운영을 통해 한겨레중·고등학교 학생의 정착기 학교 통합교육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한겨레중·고등학교 학생이 이후 정착기 정규학교로 이동할 경우 새로운 학교에 원활히 적응하는데 필요한 교육기회가 제공되었다. 또한 중국배경 탈북학생의 한겨레중·고등학교 입학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어 구사능력이 낮은 제3국 배경 학생이 원만하게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학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강사가 배치되었고, 입국초기 교육기관에서의 심리상담 결과와 연계하여 지속적인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심리상담사가 배치되었다.

‘정착기 학교 맞춤형 교육’ 사업에서는 정규학교를 중심으로 탈북학생이 정착지 학교에서 원만하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였다. 우선 정착기 초기에 탈북학생의 심리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전문기관과 연계한 심리상담 지원 사업이 실시되었다. 또한 탈북학생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교사(담임, 교과)의 실질적인 맞춤형 교육지원인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과 2년 이상 탈북학생의 생활영역 전반에 대한 멘토링을 지속하는 ‘성장 멘토링’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탈북학생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학습,

문화체험 등의 다양한 활동이 실시되었다. 또한 탈북학생 잠재역량강화 프로그램(HOPE) 운영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잠재능력을 갖추고 있는 탈북학생을 선발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와의 1:1 결연을 통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였다. 즉, 인문, 과학, 수학, 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의 잠재능력을 갖춘 탈북학생을 선발한 후 각 분야의 전문가(대학교수, 연극배우, 화가 등)와 연계하여 체계적인 지도를 실시하는 등 학생의 잠재 능력 계발 기회를 제공하였다.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을 위해 탈북학생 밀집지역의 초·중학교에서 탈북학생의 학습 부진을 보충하고 사회문화 적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탈북학생 밀집학교 특별반'을 운영하였다. 탈북학생 밀집지역 학교를 거점학교로 지정하여 학습, 진로, 상담 등의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토요거점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였다. '제3국 출생 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이중언어 강사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지원 등을 다문화사업 등과 연계하여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학생 및 학부모의 상호 교류를 통한 가정·학교·사회의 상호이해·협력 강화를 위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남북한 상호이해 교육' 사업도 실시하였다.

## 2) 탈북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탈북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에서는 탈북학생의 특성에 적합한 진로·직업교육을 위해 다양한 사업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원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 둘째, 한겨레중·고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셋째, 정착기 학교 진로·직업교육 사업을 추진하였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하나원 학부모 대상 진로교육에서는 입국초기 교육기관인 하나원 재원 학부모 대상으로 맞춤형 진로교육을 실시하였다. 즉, 남북한 학교제도 비교, 취·전·편입학 관련 행정 절차, 한국 학교에서 학부모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학부모의 학교교육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하나원 퇴소 후 자녀의 학교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정착기 학교 적응을 지원하였다. 둘째, 한겨레중·고등학교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전환기 교육 단계인 한겨레 중·고등학교의 고교 진학 및 졸업 후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직업 교육과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즉, 중장비, 바리스타, 피부미용 등의 다양한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진로설정을 지원하였다. 셋째, 정착기 학교 진로·직업교육에서는 정착기 단계 학생의 진로교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였다. 먼저 정착기 학교 진로·직업교육 캠프 운영에서는 정책연구학교, 교육연구회, 지역 하나센터 등과 연계하여 탈북학생의 희망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 직업교육 캠프를 실시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탈북학생의 흥미와 소질, 그리고 적성에 기반을 둔 체계적인 진로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다. 탈북학생 진로·진학 지도 경험이 부족한 일반 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탈북학생 전문가로 꾸려진 ‘찾아가는 진로·진학상담단’을 운영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일전담교육사 배치 등 탈북학생이 다수 재학 중인 학교 또는 시·도교육청 단위로 ‘정착기 학교 학부모 대상 자녀 진로교육’을 실시하여 지도교사와 학부모 간 상호 이해도 제고 및 소통을 강화하였다.

### 3) 탈북학생 교육 지원 기반 공고화

‘탈북학생 교육지원 기반 공고화’ 영역에서는 탈북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첫째, 입국초기 - 전환기 교육기관 교육지원 강화, 둘째, 교원의 탈북학생 교육역량 강화, 셋째, 탈북학생 교육지원 네트워크 강화 사업이 실시되었다. 먼저 ‘탈북학생 교육지원 기반 공고화’ 영역의 첫 번째 사업으로 입국초기 교육기관인 하나둘학교 재학 학생의 중등학교 취·편입학을 원활하게 하는데 필요한 학력심의를 하나원 퇴소 전에 실시하였다. 또한, 하나원 하나둘학교에 총 11명(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중국어 등)의 중등 교사와 하나원에 1명의 초등교사, 1명의 유치원 교사를 파견함으로써 하나원 재원 탈북학생들에게 교과학습 지도 및 진로진학 상담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실질적인 정착기 학교 적응 준비를 지원하였다. 하나둘학교 파견교사의 직무 전문성 제고와 정착기 학교 연계지도 강화를 위해 정례 연수 및 사례 공유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겨레 중·고 협의회를 운영하여 교육과정, 학교 운영, 학생 현황 등 자료공유 등의 연계·협력을 강화하였다.

둘째, 교원의 탈북학생 교육역량 강화 사업에서는 맞춤형 멘토링 연수와 원격 연수 지원, 탈북학생 밀집학교 워크숍, 우수사례 보급을 추진하였다. 멘토링 담당교원 전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멘토링 연수’를 통해 탈북학생 멘토링 역량 제고를 지원하였고,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의 실제(15차시)’ 원격 연수 콘텐츠를 개발(‘20.1)하여 일반 교원을 대상으로 원격 연수를 제공하였다. 5인 이상의 탈북학생이 재학하는 학교를 밀집학교로 지정하여 관리자, 담당 교원 대상 워크숍을 통해 탈북학생의 이해 및 관리자·교사 역할의 인식 제고, 맞춤형 교육지원 사례 공유, 입국초기교육기관 탐방 등으로 탈북학생 이해 및 지도역량을 제고하였다. 또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통한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탈북학생 우수사례 공모를 통해 우수사례집을 보급하고 있다.

셋째, 탈북학생 교육지원 네트워크 강화 사업에서는 탈북학생 교육지원 유관 기관 간의 협력 강화 및 정보 공유를 통한 탈북학생 교육의 내실화 및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교육자료 개발, 교원연수, 관계기관 협력 및 현장지원 등 탈북학생 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탈북청소년

교육지원센터)와 통일부(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정착사무소) 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상시 협의체를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탈북학생 교육지원 정책의 착근을 위해 필요한 체계적 협의를 추진하였다. 전문가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서는 탈북학생 교육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운영하였다.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에서는 탈북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교육지원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자료 개발, 교원 연수, 관계기관 협력 및 상시 현장지원 등의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는 전문기관 운영을 통해 탈북학생의 남한사회 적응 기반을 확대하는 동시에 통일 후 교육통합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전문기관을 운영하는 등 탈북학생 교육지원 기반의 공고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입체적으로 추진하였다.



## 제8부 요약

제8부는 '청소년의 노동'에 대해 다룬다. 청소년의 고용 및 취업 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의 고용 및 진로 관련 정책의 내용도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제활동참가율(2019년 기준)은 29.6%로 OECD 국가 평균(48.1%) 보다 낮으며 그리스, 이탈리아 등과 함께 최하위 국가군에 속한다. 이처럼 청소년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은 고등학교 졸업자 중 70%에 달하는 높은 대학진학률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 청소년의 실업률(2019년 기준)은 10.4%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1.3%p 낮은 편이지만, 경제활동참가율 또한 낮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고용률은 26.5%이며, 전체 취업자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취업자 비중은 5.4%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9.2%에서 2019년 12.5%로 줄어들고 있다. 한편 2020년 15~29세의 졸업자 및 중퇴자 중에서 임금근로자로 취업 중인 청(소)년 취업자가 첫 취업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10.0개월이 소요되어 2018년 10.7개월, 2017년 10.6개월에 비해 소폭 감소하여 학교-노동시장 이행기간이 다소 짧아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근로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12년 11월 「청소년 근로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2018년부터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등 부당처우를 당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해 현장에 근로현장 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을 수도권과 경상권, 전라권에서 실시하였고, 2019년에는 충청권까지 확대하였다. 한편,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2020년 1월, 전국 25개 지역 25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권의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총 229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였다. 위반사례로는 근로계약 미작성과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가장 많았으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감독관이 업주에게 시정 등의 조치를 하였다.

정부는 청소년근로 보호대책 외에 청소년의 창업지원과 고용촉진을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창업지원을 위해 '청년 전용 창업자금', '창업성공패키지', '청소년 창업 경진대회' 프로그램과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0년 창업지원사업 규모는 2019년 대비 29.8% 증가한 1조 4,517억 원으로 창업지원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8부

# 청소년 노동

제1장 청소년 고용 상황 및 노동조건

제2장 신규졸업자의 취업 상황

제3장 청소년의 고용·직업·진로정책

8

## 제1장

## 청소년 고용 상황 및 노동조건

## 1.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생산가능인구 규모는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인 에코붐 세대가 생산가능 연령대에 진입한 2010년대 전반기를 제외하면,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전체 생산가능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청소년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했다. 2019년 연평균 청소년 생산가능인구는 554만 3천 명으로 2018년보다 17만 4천 명 줄어든 규모이다. 2018년의 감소율인 -3.8%보다는 적지만 2019년에도 -3.0%로 빠르게 감소 중이다. 청소년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청소년 생산가능인구 규모 감소에서 기인한다.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규모는 2018년 167만 2천 명에서 3만 1천 명 감소한 164만 1천 명이다. 이는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18년 29.3%에서 2019년 29.6%로 0.3%p 상승한 결과이다. 생산가능 연령대에 진입한 청소년 중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의 비중은 늘었으나 인구 규모가 감소하였으므로 경제활동인구 규모도 감소하였다.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의 추이를 나타낸 <표 8-1-1>에서 보듯이 2019년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0년대보다 낮지만 2010년대 초반보다 높아졌다. 2006년까지 30%를 상회하였던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은 2007년부터 30%를 하회하게 되었으며 2009년에 25.1%로 저점을 찍고 회복하는 양상이다. 여자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자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크게 상회하지만 2019년에 그 격차는 다소 좁혀졌다.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의 성별 격차는 2018년에 9.3%p까지 커졌지만 2019년에는 6.9%p로 최근 10년간 가장 적다.

<표 8-1-1>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추이

(단위: 천명, %)

구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생산가능인구 <sup>1)</sup>	6,949	6,164	5,953	6,053	6,113	6,165	6,180	6,163	6,110	5,946	5,717	5,543
경제활동인구 <sup>1)</sup>	2,295	2,074	1,503	1,544	1,617	1,628	1,758	1,841	1,843	1,801	1,672	1,641

구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경제활동참가율 <sup>2)</sup>	33.0	33.7	25.2	25.5	26.5	26.4	28.5	29.9	30.2	30.3	29.3	29.6
남자	28.5	27.3	20.0	21.0	21.9	22.2	24.4	25.7	25.8	26.1	24.4	26.0
여자	37.0	39.2	30.1	29.8	30.7	30.3	32.3	33.8	34.3	34.3	33.7	32.9

주 : 1) 15~24세 이상 인구 중 군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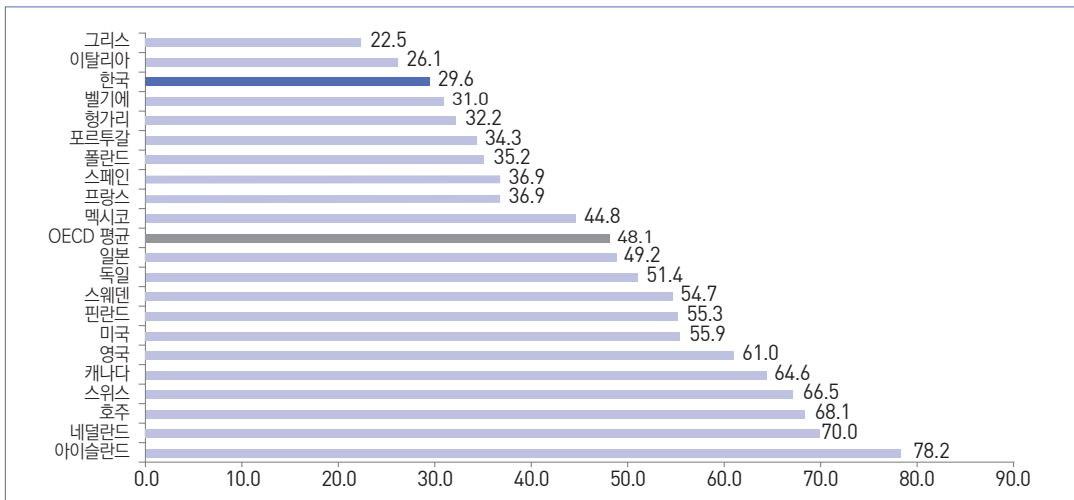
2)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 실업자) / 15세 이상 청소년 × 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년도.

OECD 회원 국가 중 한국의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은 하위권이다. 2019년에 OECD 평균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은 48.1%로 한국보다 18.5%p 높다. OECD 회원 국가 중에서 한국보다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국가는 그리스와 이탈리아뿐이다.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등 영미권의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을 5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모두 높으며, 청소년의 78.2%가 경제활동을 하는 아이슬란드와 70.0%를 기록한 네덜란드는 OECD 회원 국가 중 순위가 가장 높다. 이와 같이 낮은 한국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0% 전후 수준의 높은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및 낮은 직업교육훈련 등록률<sup>1)</sup>과 관계가 있다.

[그림 8-1-1] 2019년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 국제 비교

(단위 : %)



자료 : OECD Data(2020).

1) OECD 국가의 평균 직업교육훈련 등록률은 15~19세 36.7%, 20~24세 61.6%이며 한국은 각각 17.5%와 22.3% 수준이다. (OECD (2020), 「OECD at a Glance 2020: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국가별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상이하지만 주로 한국의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낮은 직업교육훈련 등록률은 <표 8-1-2>의 연령 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에서 15~19세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0% 미만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는 배경으로 작용한다. OECD 회원 국가 평균 직업교육훈련 등록자의 약 3분의 2는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한다. 그러나 한국의 낮은 15~19세 경제활동참가율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직업교육훈련이 잘 작동하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2019년에 15~19세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8년보다 0.1%p 상승한 8.3%이다.

20~24세 청소년 중 일부는 고등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나오지만 경제활동참가율은 50% 전후 수준이다. 20~24세 여자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자 청소년보다 높은 이유는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한 남자 청소년이 학업 중 병역의무 기간을 거치므로 졸업이 더 늦다는 데 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OECD 회원 국가와 달리 한국은 여성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남성 청소년보다 높다. 한국보다 남자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더 낮은 국가는 그리스뿐이지만 여자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 순위는 프랑스 바로 아래다. OECD 평균과 비교하여 한국의 남자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5.7%p 낮고 여자 청소년은 11.5%p 낮다.

<표 8-1-2> 연령 계층별·성별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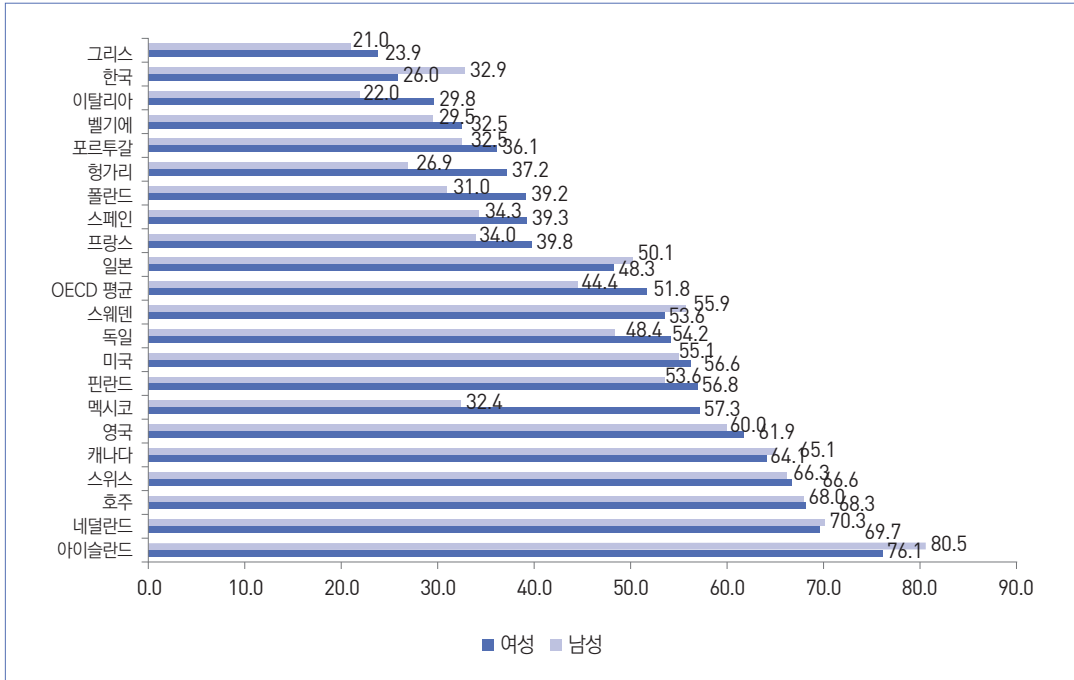
구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5~24세	33.0	33.7	25.2	25.5	26.5	26.4	28.5	29.9	30.2	30.3	29.3	29.6
남자	28.5	27.3	20.0	21.0	21.9	22.2	24.4	25.7	25.8	26.1	24.4	26.0
여자	37.0	39.2	30.1	29.8	30.7	30.3	32.3	33.8	34.3	34.3	33.7	32.9
15~19세	12.0	9.1	7.0	7.6	7.7	7.7	8.5	8.8	8.8	9.2	8.2	8.3
남자	11.6	8.1	5.5	6.3	6.3	6.6	7.5	7.7	8.1	8.5	7.2	7.6
여자	12.5	10.2	8.5	9.0	9.1	8.7	9.4	9.9	9.6	10.1	9.2	9.0
20~24세	57.9	57.3	48.9	47.9	49.0	47.6	49.9	51.6	51.6	50.6	48.9	48.7
남자	53.1	50.1	42.8	42.3	43.4	42.2	44.4	46.0	45.8	45.1	42.6	44.6
여자	61.2	62.6	53.5	52.3	53.5	52.2	54.5	56.3	56.6	55.3	54.1	52.1

주: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 실업자) / 15세 이상 청소년 × 1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년도.

[그림 8-1-2] 2019년 청소년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국제 비교

(단위 : %)



자료 : OECD Data(2020).

## 2. 청소년 비경제활동인구

2019년에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규모가 감소하였으나 생산가능인구 감소폭이 더 크므로 청소년 비경제활동인구도 감소하였다. 청소년 비경제활동인구는 2014년부터 계속 감소하였으며 2017년부터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가 함께 감소하였다. 청소년 비경제활동인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규교육기관 통학자(재학)의 감소가 가장 두드러진다. 청소년 비경제활동인구는 2018년보다 14만 3천 명 감소한 390만 2천 명인데 재학 인구의 감소폭이 14만 9천 명이다. 입시학원에 통학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진학을 준비하는 비경제활동인구도 2018년보다 9천 명 감소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취업을 위해 학원·기관에 통학하는 등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은 2018년보다 1만 5천 명 증가한 23만 2천 명이다. 취업준비생은 15~24세 청소년 비경제활동인구 중 재학 인구를 제외하고 5.9%로 비중이 가장 크다. 이들 중 다수는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을 희망한 잠재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다른 사유 없이 쉬었다고 응답한 청소년 비경제활동인구의 규모도 2018년보다 1만 5천 명 늘어난 20만 명이다. 육아 또는 가사 사유의 비경제활동인구 규모는 전년과 같다. 청소년 경제활동인구보다 비경제활동인구가 세 배 이상 더 감소한 결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상승하는 가운데 취업준비생과 '쉬었음' 인구가 늘고 육아 및 가사 인구의 비중이 늘었다는 점에서 2019년은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가 비교적 더 수월하지 않은 해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8-1-3〉 청소년(15~24세)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 상태별 현황 추이

(단위: 천 명, %)

연도	비경제활동인구		육아 및 가사		재학		입시 및 진학		취업준비생		쉬었음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2005	4,090	100	93	2.3	3,307	80.9	190	4.7	173	4.2	190	4.6
2010	4,451	100	78	1.8	3,726	83.7	211	4.7	194	4.4	152	3.4
2011	4,508	100	83	1.8	3,754	83.3	219	4.9	183	4.1	183	4.1
2012	4,496	100	79	1.8	3,770	83.8	193	4.3	177	3.9	184	4.1
2013	4,538	100	72	1.6	3,827	84.3	168	3.7	192	4.2	186	4.1
2014	4,422	100	67	1.5	3,735	84.5	162	3.7	192	4.4	169	3.8
2015	4,322	100	68	1.6	3,560	82.4	168	3.9	225	5.2	188	4.4
2016	4,268	100	67	1.6	3,532	82.8	191	4.5	213	5.0	159	3.7
2017	4,145	100	57	1.4	3,414	82.4	160	3.9	218	5.3	184	4.4
2018	4,044	100	49	1.2	3,321	82.1	162	4.0	217	5.4	188	4.6
2019	3,902	100	49	1.3	3,172	81.3	153	3.9	232	5.9	200	5.1

주: 1) 육아 및 가사: 육아, 가사 포함.

2) 재학: 정규교육기관 통학.

3) 입시 및 진학: 입시학원 통학, 진학준비 포함.

4) 취업준비생: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통학, 취업준비 포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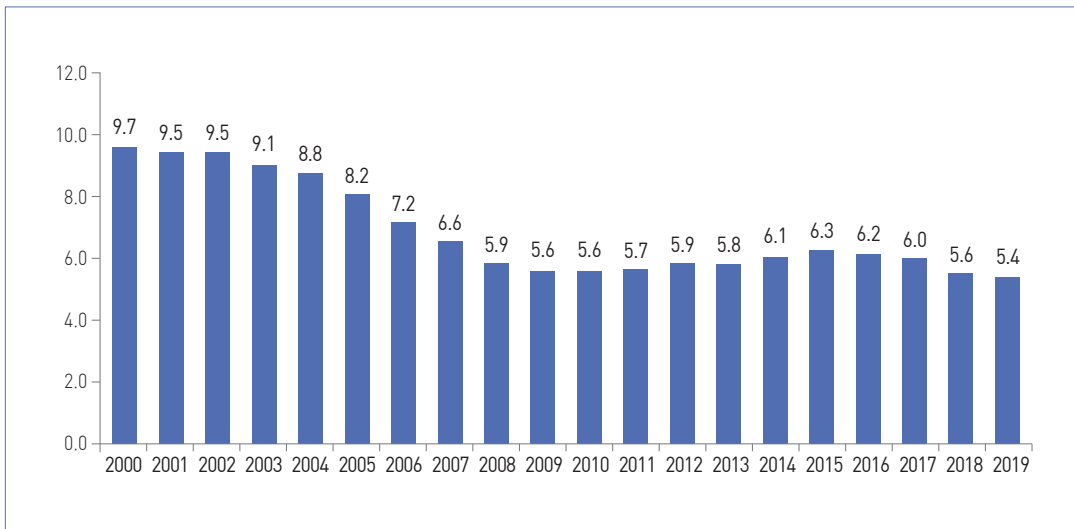
### 3. 청소년의 취업 현황

청소년 생산가능인구 규모의 축소가 지속되므로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해도 취업자 수는 감소한다. 2019년에 15~24세 청소년 취업자 수는 147만 명으로 2018년 보다 2만 6천 명 감소했다. 청소년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비중으로 계산되는 고용률은 26.5%이며 이는 2018년 26.2%보다 0.3%p 상승한 수치이다. 전체 취업자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5.6%에서 5.4%로 0.2%p 하락했다. 청소년 인구의 감소에서 비롯한 인구효과는 압도적이다.

15세 이상 전체 생산가능인구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9.2%에서 2019년 12.5%로 지속적으로 줄었다.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청소년 비중의 감소세에 비하면 취업자 중 청소년 비중의 감소세는 완만하다. 2000년에 취업자 중 청소년 비중은 9.7%였으나 2009년에 5.6%로 하락한 후에는 보합세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이후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청소년 비중이 감소하는 동안에도 취업자 중 비중이 유지된 이유는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의 상승폭이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그것보다 컸던 까닭이다.

[그림 8-1-3] 취업자 중 청소년 비중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년도.

연령 계층별·성별 청소년 취업자 추이를 나타낸 <표 8-1-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5~24세 전체 청소년 취업자 중에서 15~19세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8.9%에서 2010년에 15.2%로, 2019년에는 13.5%로 하락했다. <표 8-1-2>의 연령 계층별·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와 비교하면 최근 출생자의 인구 규모가 더 크게 축소된 결과로 해석된다. 20~24세 취업자의 비중은 반대로 늘었다. 이 연령대의 취업자 중 대략 여섯 명이 여자이며 전체 청소년 취업자 중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에 여자는 87.4%, 남자는 85.2%로 여자가 더 높다. 남자 청소년의 병역의무가 주된 사유이다.

<표 8-1-4> 연령 계층별·성별 청소년 취업자 추이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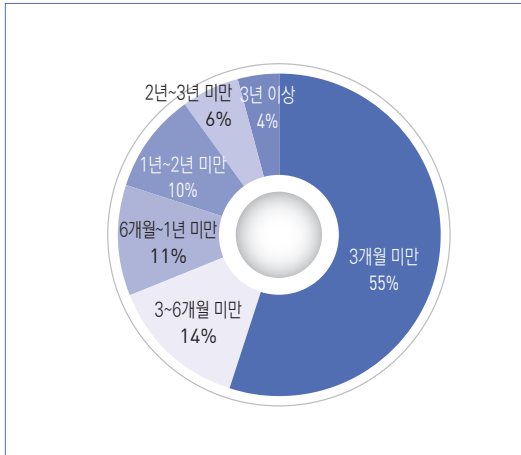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천명	구성비	천명	구성비	천명	구성비	천명	구성비	천명	구성비	천명	구성비	천명	구성비	천명	구성비
15~24세	2,046	100	1,864	100	1,356	100	1,647	100	1,646	100	1,615	100	1,496	100	1,470	100
남자	796	39	693	37.2	508	37	684	41.5	680	41.3	665	41.2	595	39.8	616	41.9
여자	1,251	61	1,171	62.8	849	63	963	58.5	965	58.7	950	58.8	901	60.2	854	58.1
15~19세	387	100	241	100	206	100	245	100	244	100	247	100	205	100	198	100
남자	188	48	110	45.4	82	40	110	44.8	113	46.3	114	46.3	91	44.3	91	45.9
여자	200	52	132	54.6	124	60	135	55.2	131	53.7	132	53.7	114	55.7	107	54.1
20~24세	1,659	100	1,623	100	1,150	100	1,402	100	1,402	100	1,368	100	1,292	100	1,272	100
남자	608	37	583	36	425	37	574	40.9	567	40.5	551	40.3	505	39.1	525	41.3
여자	1,051	63	1,039	64	725	63	828	59.1	834	59.5	817	59.7	787	60.9	747	58.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그림 8-1-4] 청소년 취업자의 첫 취업 소요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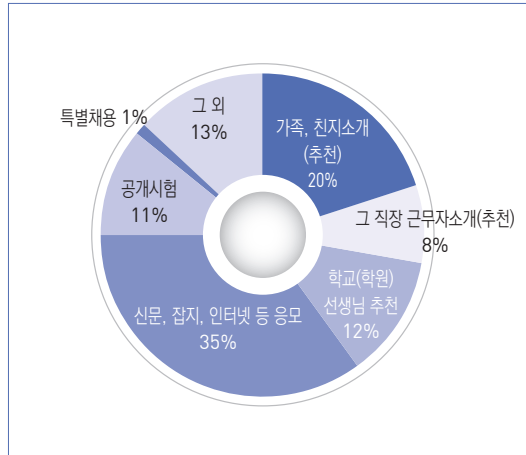
(단위 : %)



주 :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시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2020년 5월.

[그림 8-1-5] 청소년 취업자의 취업경로

(단위 : %)



주 :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시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2020년 5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2020년 5월 청년층 부가조사에서 조사 시점 기준 15~24세 청소년이 최종 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하고 임금근로자로 취업한 경우에 54.8%는 첫 일자리에 취업하기까지 소요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므로 평균적인 첫 취업 소요 기간은 6.2개월로, 연령 범위를 15~29세로 넓혔을 때의 10.0개월보다 짧다. 짧은 구직 기간은 노동시장의 매칭이 원활함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임시적인 일자리로 입직하였음을 신호하기도 한다. 첫 취업 소요 기간이 3~6개월 미만인 청소년의 비중은 13.8%, 6개월~1년 미만 11.5%, 1~2년 미만 9.5%, 2~3년 미만 6.0%, 3년 이상이 4.4%이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청소년 취업자의 취업 경로는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한 응모이며 34.6%를 차지한다. 가족과 친지나 취업한 직장의 근무자, 학교나 학원의 선생님 등의 추천을 '연고취업' 범주로 묶었을 때 비중은 39.5%이며 각각의 비중은 19.7%, 8.1%, 11.7%이다. 높은 연고취업 비중은 청소년 취업자의 짧은 취업 소요 기간을 설명한다.

## 4. 청소년의 실업 현황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은 2014년부터 계속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2019년 청소년 실업률은 10.4%로 2018년보다 0.1%p 하락하였으나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실업률 3.8%와 비교하면 여전히 매우 높다. 일자리 경험이 없어 숙련이 수준의 낮은 청소년이 노동시장 참여를 결정하여도 취업은 쉽지 않다. 연령 범위를 확대한 15~29세의 2019년 실업률 8.9%와 비교하면 저연령층인 청소년의 실업 확률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실업률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인 한국의 청소년 실업률은 OECD 회원 국가 중에서는 높은 편이 아니다. 한국의 청소년 실업률은 2019년의 평균 청소년 실업률 11.7%보다 약 1.3%p 낮다.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회원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그리스와 이탈리아의 청소년 실업률은 각각 35.2%와 29.2%로 순위가 역전되었다. 반면 청소년 실업률이 낮은 일본, 독일은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평균을 상회하며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은 아이슬란드, 네덜란드도 청소년 실업률이 낮은 편이다. 언뜻 보면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 간에 역의 관계가 성립하는 듯하지만 한국은 청소년의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모두 낮다.

〈표 8-1-5〉 연도별 청소년 실업률 추이

(단위 : 천명, %)

구분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실업자	249	211	146	149	146	152	176	194	197	186	176	171
남자	124	96	64	74	63	65	82	87	84	84	74	77
여자	125	115	83	75	82	87	94	107	113	102	102	94
실업률	10.8	10	9.7	9.7	9	9	10	10.5	10.7	10.3	10.5	10.4
남자	13.5	12	11.1	12	9.7	10	11.2	11.3	11	11.2	11.1	11.1
여자	9.1	9	8.9	8.1	8.5	9	9.2	10	10.5	9.7	10.1	9.9

주 : 1) 15~24세 이상 인구 중 군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은 제외.

2) 청소년 실업률 = 청소년 실업자 /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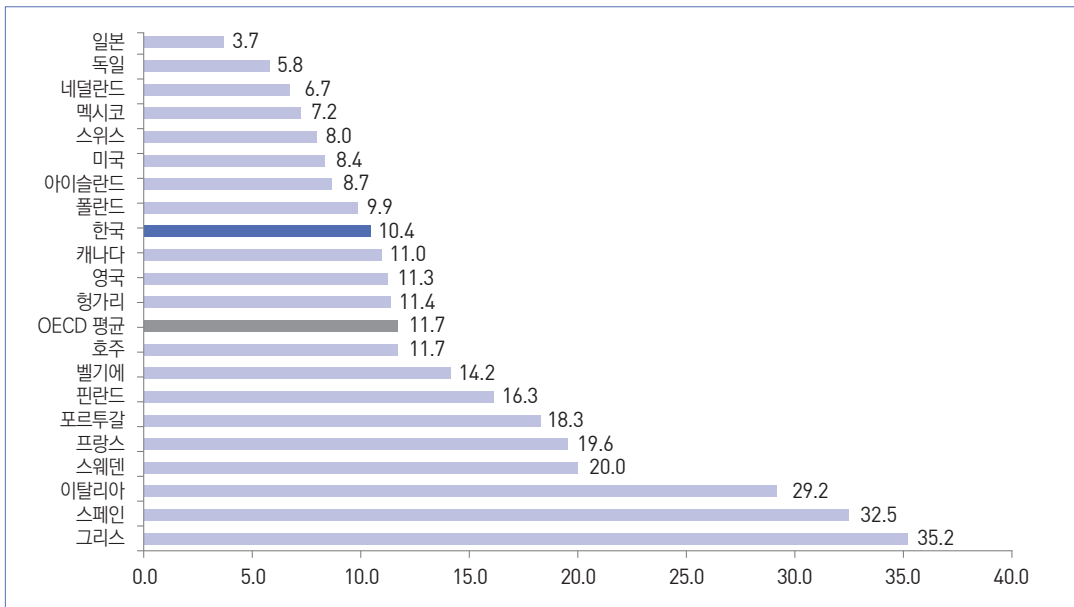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한국의 청소년 실업률은 여전히 OECD 회원 국가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다. 다소 부침은 있으나 2010년 9.7%에서 현재 10%대로 높아졌다. 성별로 구분하면 특히 남자 청소년의 실업률이 여자 청소년의 실업률보다 1%p 이상 높다. 다만 여자 청소년과 남자 청소년의 실업률 차이는 과거보다 작아졌다. 청소년 실업률의 성별 차이는 2000년에 4.4%p, 2005년에는 3.2%p였으나 2010년에는 2.2%p, 2019년에는 1.2%p로 줄었다. 청소년 실업률의 성별 차이가 줄어든 배경은 여자 청소년 실업률의 상승에 있다. 남자 청소년의 실업률은 2019년 11.1%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OECD 회원 국가 중에서 청소년 실업률이 높은 국가는 여자 청소년의 실업률이 남자보다 낮게 나타나는 점이 흥미롭다. 한국도 남자 청소년의 실업률이 여자 청소년보다 높지만 평균적으로 남자 청소년의 실업률이 여자보다 높다. 그러나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는 여자 청소년의 실업률이 남자보다 높고 포르투갈의 경우에는 청소년 실업률의 성별 차이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크다.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낮고 실업률은 높으며 특히 여자 청소년의 실업률이 높다는 사실이 유럽 남부 국가의 청소년 노동시장 현황으로 요약된다.

[그림 8-1-6] 2019년 청소년 실업률 국제 비교

(단위: %)



자료 : OECD Data(2020).

〈표 8-1-6〉 연령 계층별·성별 청소년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단위: 천명, %)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실업자	실업률
15~24세	249	11	211	10.2	146	10	194	10.5	197	10.7	186	10.3	176	10.5	171	10.4
남자	124	14	96	12.1	64	11	87	11.3	84	11	84	11.2	74	11.1	77	11.1
여자	125	9	115	8.9	83	9	107	10	113	10.5	102	9.7	102	10.1	94	9.9
15~19세	66	15	34	12.3	28	12	29	10.6	27	10	23	8.7	21	9.3	19	8.6
남자	34	15	16	13	15	15	13	10.4	14	10.9	12	9.8	11	10.4	11	10.8
여자	32	14	18	11.7	13	10	16	10.7	13	9.2	11	7.7	10	8.3	8	6.6
20~24세	183	10	177	9.8	119	9	165	10.5	170	10.8	163	10.6	155	10.7	153	10.7
남자	90	13	79	12	49	10	74	11.5	70	11	72	11.5	64	11.2	66	11.2
여자	93	8	97	8.6	70	9	90	9.8	100	10.7	91	10	91	10.4	87	10.4

주 : 1) 15~24세 이상 인구 중 군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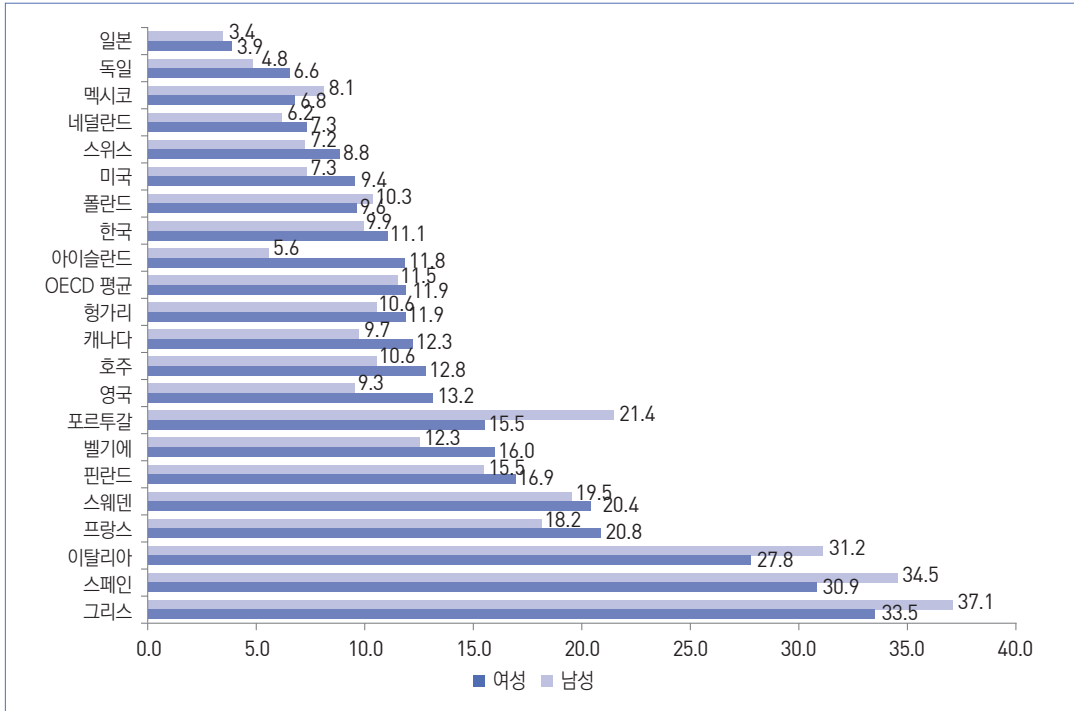
2) 청소년 실업률 = 청소년 실업자 /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 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년도.

연령 계층별 청소년 중 20~2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5~19세보다 네 배 이상 높지만 실업률의 차이는 훨씬 적다. 15~19세 청소년의 실업률은 2010년 약 12% 수준으로 20~24세 청소년 실업률을 크게 상회하였다. 2012년부터 15~19세 청소년의 실업률은 유지되거나 약간 감소한 반면 20~24세 청소년의 실업률은 상승하여 2016년부터 역전하였다. 이는 연령 계층별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와 상반된 경향이다. 청소년 실업률의 국제 비교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고 실업률이 높은 국가 집단의 존재는 한국의 20~24세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경향을 간과하기 어렵게 한다.

[그림 8-1-7] 2019년 청소년의 성별 실업률 국제 비교

(단위 : %)



자료 : OECD Data(2020).

## 5. 임금 및 노동시간

상용직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15~24세 청소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수준은 상승 추세이다. 20~24세 청소년의 정액급여와 초과급여를 합산한 월급여액은 2010년대에 계속 증가하였으며 2019년에는 2018년보다 5.1% 증가한 164만 1천 원이다. 15~19세 청소년의 월급여액도 2018년보다 3.3%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월 100만 원을 밑돈다. 2012년과 2014년, 그리고 2015년에는 15~19세 청소년의 평균 월급여액이 감소하였으며 20~24세의 평균 월급여액은 증가하였으나 실질 가치가 상승한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경향은 고용형태 중 높은 단시간 근로자 비중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은 2019년에 전체

근로자 중에서는 7.8%에 불과하지만 15~19세 청소년 중에서는 42.5%, 20~24세 청소년 중에서는 21.9%이다.

20~24세 청소년의 최종 학력에 따른 평균 월급여액은 2019년에 고등학교 졸업자 144만 2천 원, 전문대 졸업자 187만 5천 원, 대학교 이상 졸업자 205만 3천 원 순으로 높다. 최종 학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임금 수준이 높아지는 관계에서 변화는 없으나 격차에서 변화를 보인다. 2010년에 대졸 이상의 평균 월급여액 대비 고졸과 전문대졸의 평균 월급여액 비율은 각각 73.0%와 88.8%였으나 2019년에는 69.3%와 91.3%이다. 2019년까지 10년 간 월급여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고졸 3.3%, 전문대졸 4.4%, 대졸 이상 4.2%이다. 대졸 이상 학력자의 임금 수준은 꾸준히 상승하고 고졸과 전문대졸 학력자의 평균 월급여액은 감소한 해가 있다. 고졸 학력자의 상대 임금은 낮아졌고 전문대졸 학력자의 상대 임금은 높아졌다. 그러나 평균 수준에서 월급여액이 감소한 해가 존재한다는 점으로 미루어 불안정한 일자리의 비중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표 8-1-7〉 청소년 근로자의 연령 계층별 임금수준 추이: 정액 및 초과급여

(단위: 천 원, %)

구분	임금수준		증감률	
	15~19세	20~24세	15~19세	20~24세
2010	677	1,162	9.3	1.4
2011	785	1,255	15.9	8.0
2012	763	1,298	-2.7	3.4
2013	830	1,319	8.7	1.6
2014	797	1,357	-4.0	2.9
2015	773	1,372	-3.1	1.1
2016	850	1,429	10.1	4.2
2017	893	1,448	5.1	1.3
2018	955	1,562	7.0	7.9
2019	987	1,641	3.3	5.1

주 : 1) 임금수준은 월급여액(정액급여+초과급여)을 의미.

2) 고용형태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하고 계산.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 각 년도.

〈표 8-1-8〉 20대 청소년 근로자의 학력별 임금수준 추이: 정액 및 초과급여

(단위: 천 원, %)

구분	임금수준			증감률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2010	1,020	1,241	1,398	-0.7	2.1	2.6
2011	1,111	1,355	1,509	8.9	9.2	8.0
2012	1,121	1,429	1,573	0.9	5.4	4.2
2013	1,147	1,463	1,600	2.3	2.4	1.7
2014	1,196	1,503	1,618	4.3	2.7	1.1
2015	1,188	1,510	1,688	-0.7	0.4	4.3
2016	1,247	1,598	1,703	4.9	5.9	0.9
2017	1,276	1,594	1,773	2.3	-0.3	4.1
2018	1,377	1,708	1,898	8.0	7.2	7.0
2019	1,422	1,875	2,053	3.3	9.7	8.2

주: 1) 20~24세 이하 기준.

2) 임금수준은 월급여액(정액급여+초과급여)을 의미.

3) 고용형태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하고 계산.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 각년도.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매년 6월을 기준으로 조사하므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의 변화는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매년 6월은 총 30일이지만 법정 공휴일인 현충일과 평일 및 주말의 구성이 달라지기도 하고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가 있기도 하다. 따라서 사실상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에 변화가 없지만 조사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소 추이가 지속 되었다면 해석의 여지가 있다. 첫 번째는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형 근로의 확대이다. 연령 계층별로 15~19세 근로자의 단시간 비중은 2010년 51.6%에서 2019년 42.5%로 감소하였고 20~24세 중에서 비중은 같은 기간에 16.9%에서 21.9%로 늘었다. 따라서 〈표 8-1-9〉의 연령계층별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이 모두 감소하는 추세는 단지 단시간 비중 때문이 아니다. 두 번째는 노동일과 노동시간에 대한 사회적 규범의 변화이다. 청소년의 일자리는 근속기간이 길게 유지된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규범 변화를 비교적 민감하게 드러낸다. 단시간 비중의 증대가 근본 원인이 아니라면 사회적 규범 변화의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경기의 영향이다. 산업별로 청소년은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높는데 경기와 내수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으므로 고용 및 일자리에 영향이 즉각 투영된다.

2019년에 15~24세 청소년 근로자의 전체 근로일수는 2018년보다 0.3일 감소한 19.2일이고 근로시간은 4.0시간 감소한 152.4시간이다. 남자 청소년의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여자 청소년의 근로일수와 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남자 청소년의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여자 청소년보다 더 길다. 15~19세 남자 청소년은 20~24세 남자 청소년보다 더 적은 날, 더 짧은 시간 일하지만 2018년과 비교하여 더 많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더 적은 날, 더 짧은 시간 일하는 15~19세 여자 청소년은 2018년과 비교하여 20~24세 여자 청소년보다 감소폭이 적다.

〈표 8-1-9〉 연령 계층별·성별 청소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단위 : 일, 시간)

연도	연령별	전체		남자		여자	
		근로일수	근로시간	근로일수	근로시간	근로일수	근로시간
2010	전체	22.2	187.0	22.1	190.6	22.3	181.1
	15~19세	18.1	135.5	18.5	143.8	17.8	129.8
	20~24세	21.4	174.5	20.9	178.0	21.6	172.6
2011	전체	21.6	180.8	21.7	185.0	21.6	174.0
	15~19세	17.3	131.3	16.9	129.9	17.6	132.2
	20~24세	20.8	168.9	20.6	174.2	20.9	165.8
2012	전체	20.9	173.7	21.0	178.3	20.9	166.4
	15~19세	16.2	112.4	16.2	113.3	16.2	111.7
	20~24세	20.0	159.2	19.9	164.6	20.0	156.4
2013	전체	20.3	167.9	20.3	173.0	20.2	159.9
	15~19세	16.0	113.3	15.9	115.7	16.0	111.5
	20~24세	19.3	152.7	19.1	156.6	19.4	150.4
2014	전체	20.1	165.5	20.2	171.0	20.0	157.1
	15~19세	15.4	105.9	15.8	113.1	15.1	100.1
	20~24세	19.0	149.3	18.9	152.3	19.1	147.4
2015	전체	21.6	173.5	21.7	179.2	21.4	165.0
	15~19세	15.0	102.3	15.4	109.0	14.5	96.4
	20~24세	19.9	152.6	19.8	154.9	20.0	151.2



연도	연령별	전체		남자		여자	
		근로일수	근로시간	근로일수	근로시간	근로일수	근로시간
2016	전체	21.0	171.1	21.0	176.5	20.9	163.1
	15~19세	15.1	105.4	15.8	114.6	14.5	97.0
	20~24세	19.3	151.5	19.1	153.0	19.5	150.4
2017	전체	20.8	168.5	20.9	174.3	20.6	160.1
	15~19세	14.5	103.4	15.1	112.3	14.0	96.4
	20~24세	18.9	146.0	18.8	148.0	18.9	144.6
2018	전체	19.5	156.4	19.6	161.8	19.4	148.6
	15~19세	13.8	94.9	14.5	102.6	13.2	88.7
	20~24세	17.7	136.6	17.8	141.2	17.7	133.5
2019	전체	19.2	152.4	19.2	157.9	19.1	144.6
	15~19세	13.3	89.0	13.5	91.9	13.2	86.4
	20~24세	17.3	130.8	17.4	133.5	17.2	129.0

주 : 1) 근로일수 = 소정실근로일수 + 휴일실근로일수.

2) 근로시간 = 소정실근로시간 + 초과실근로시간.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 각 년도.

## 6. 청소년 아르바이트

통계청에서 조사한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2020년 청소년 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가 35만 2천 명으로 30.7%를 차지했으며, 지난 5년간 그 비중이 꾸준히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10명 중 약 3명이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비중 또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8-1-10〉 근로시간 형태별 청소년 근로자 수 현황

(단위: 천명, %)

근로시간 형태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전일제 근로	1,032 (79.1)	1,098 (79.1)	1,087 (77.5)	952 (73.7)	880 (71.2)	795 (69.3)
시간제 근로	272 (20.9)	289 (20.9)	316 (22.5)	340 (26.3)	355 (28.8)	352 (30.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원자료, 각 년도 5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학업생활과 직업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그 실태를 파악하는 자료는 많지 않다. 여성가족부는 2016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청소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하고자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2016년 조사는 15,646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매체, 행위, 약물, 업소, 근로보호 및 사회 인구학적 배경 등 총 6개 영역을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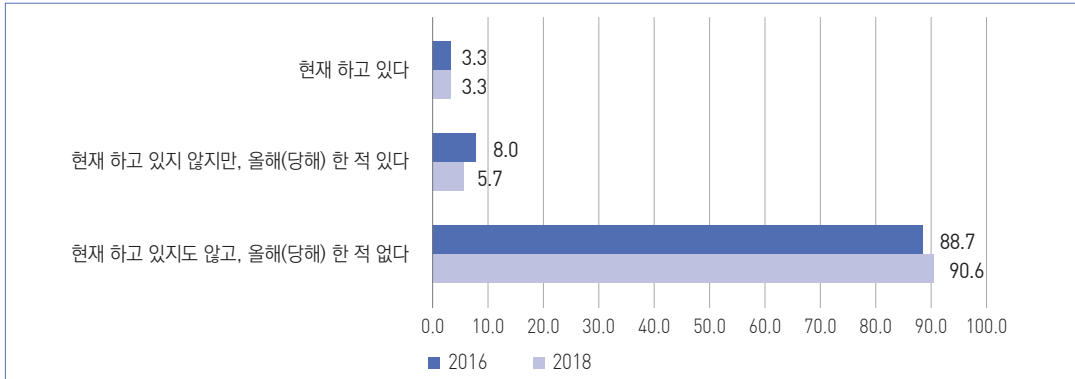
본 조사에 의하면 2016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한 적이 있는 청소년 비율은 11.3%로 나타났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 ‘부모님(보호자)께서 용돈을 주시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에는 돈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생활비를 벌어야 해서’ 및 ‘부모님(보호자)께서 용돈을 받을 형편이 아니라서’라는 응답도 3.8% 및 10.9%로 나타나, 가정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율도 1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한 해 동안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은 9.0%였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이유는 생활비나 용돈 마련 등 경제적 목적이 가장 컸다. ‘부모님께서 용돈을 주시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에는 돈이 부족해서(54.2%)’가 가장 높았으며, 여기에 ‘형편이 어려워 생활비를 번다거나 부모님께 용돈을 받을 형편이 아니어서(10.9%)’ 등을 포함하면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이유는 경제적 이유가 66.1%를 차지한다. 한편 경제적 이유보다는 ‘스스로 사회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도 전체 응답 청소년의 약 17.1%로 나타났다.

2016년과 비교하여 2018년에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였거나 현재 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2.3%p 근소하게 하락하였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이유의 분포도 약간씩 변화했다. 용돈을 받고 있지만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중은 2016년에도 과반 이상이었으나 4.2%p 더 상승하였고, 경제적 형편을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응답자 비중은 1.4%p 하락하였고, 사회 경험을 목적으로 선택한 응답자의 비중은 2.3%p 하락하였다.

[그림 8-1-8]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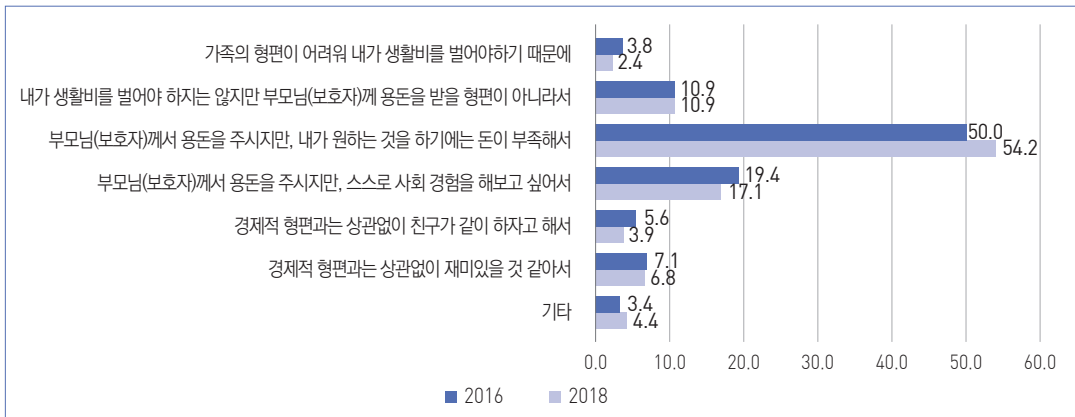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여성가족부,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원자료, 각 년도.

[그림 8-1-9]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이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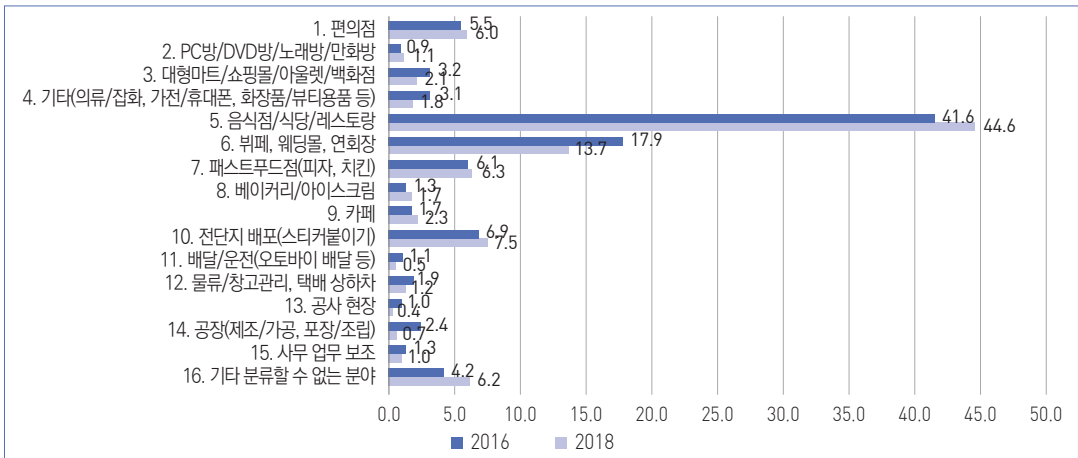
자료 : 여성가족부,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원자료, 각 년도.

청소년이 2016년에 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 업종은 ‘음식점·식당·레스토랑’이 41.6%로 가장 많았고, ‘뷔페·웨딩홀·연회장’이 17.9%로 그 뒤를 이었다.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정보를 획득하는 주된 경로는 ‘친구 또는 선후배의 소개’가 55.4%로 가장 많았고,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사이트’도 24.6%로 높게 나타났다. 2016년에 했던 아르바이트 중 일한 기간이 가장 길었던 아르바이트를 기준으로 근속 기간을 조사한 결과 1개월 미만이라는 응답이 51.5%(1주일 미만 35.6%, 7~14일 5.8%, 15일~1개월 미만 10.1%)였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일주일 평균 근로 일수는 2.8일이며, 하루 평균 근로 시간은 6.7시간이다. 아르바이트 급여 지급 기준에 대한 조사 결과,

시급으로 지급 받았다는 응답이 72.1%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2016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6,030원 미만으로 지급받은 비율은 25.8%에 달하였다. 아르바이트를 한 청소년들의 평균 시급은 6,574.8원이었다.

[그림 8-1-10] 청소년 아르바이트 업종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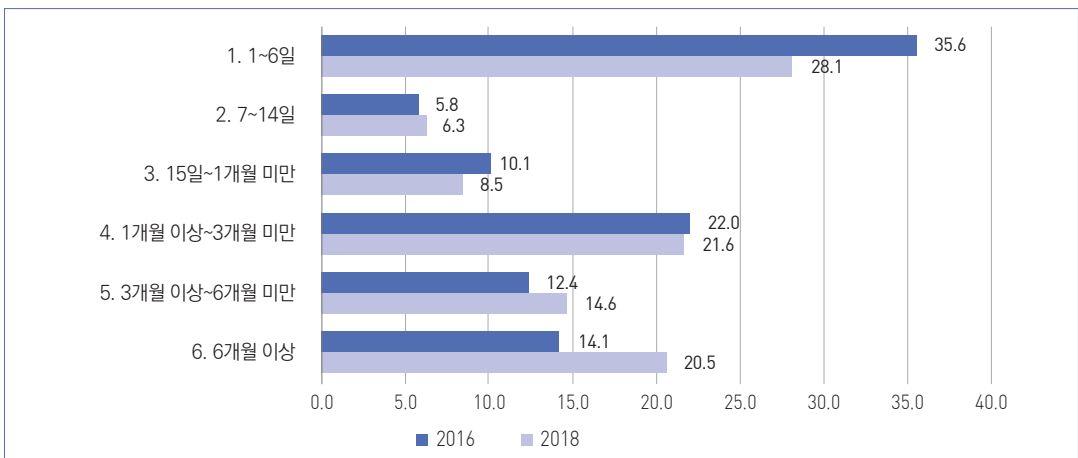


주 : 2018년 자료의 '모름/무응답' 값을 제외함.

자료 : 여성가족부,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원자료, 각년도.

[그림 8-1-11]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속기간 분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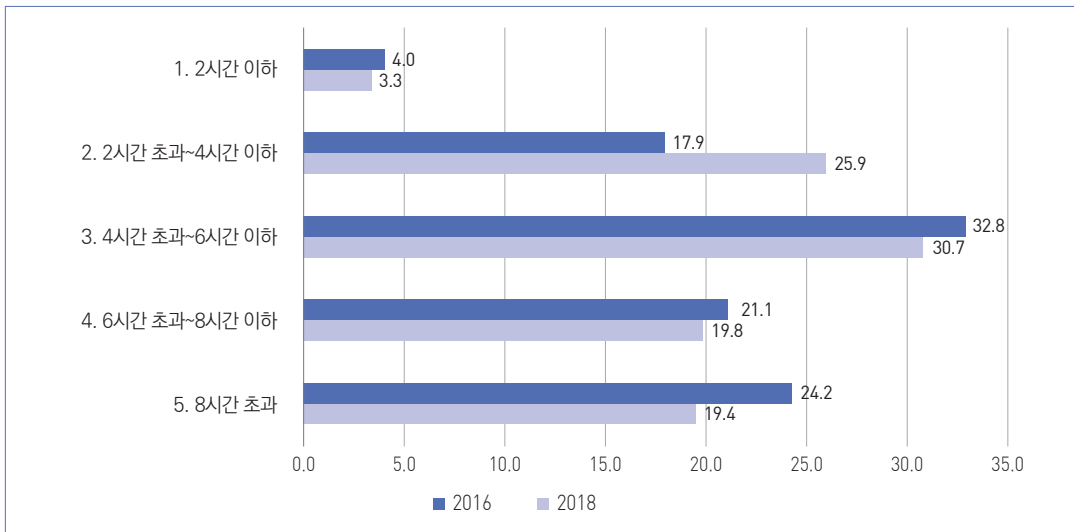
주 : 2018년 자료의 '모름/무응답' 값을 제외함.

자료 : 여성가족부,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원자료, 각년도.

2018년에도 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 업종은 ‘음식점·식당·레스토랑’으로 2016년보다 비중이 더 늘어난 44.6%로 가장 많았고, ‘뷔페·웨딩홀·연회장’이 13.7%로 그 뒤를 이었다. 2016년보다 비중이 약간 감소하였으나 주된 구직 경로는 여전히 주로 친구 또는 선후배 소개(54.2%)이며, 다음으로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사이트(26.2%), 부모님·형제·자매 등의 소개(13.8%) 순으로 아르바이트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평균 근무기간은 ‘1~6일’ 단기 아르바이트가 28.1%로 가장 많았지만, 비중은 2016년보다 7.5%p 감소하였고, ‘6개월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 비중이 20.5%로 늘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자의 주간 평균 근무일수는 2.7일로 주당 2일 이상~3일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5일 이상 근무하는 청소년은 16.3%정도이다. 하루 평균 아르바이트 근로시간은 6.2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급여 지급 기준은 시급으로 받았다는 응답이 2016년보다 5.8%p 감소한 66.3%이다.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급여 수준은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인 7,530원보다 320원 더 높은 평균 7,850원이었다.

[그림 8-1-12] 청소년 아르바이트 주간 근로시간 분포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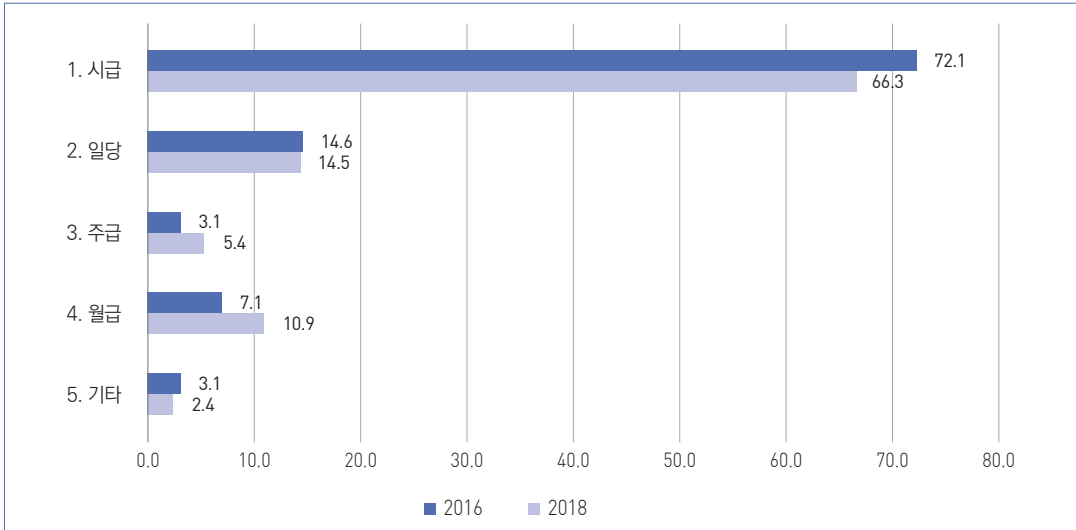


주 : 2018년 자료의 '모름/무응답' 값을 제외함.

자료 : 여성가족부,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원자료, 각 년도.

[그림 8-1-13] 청소년 아르바이트 급여기준 분포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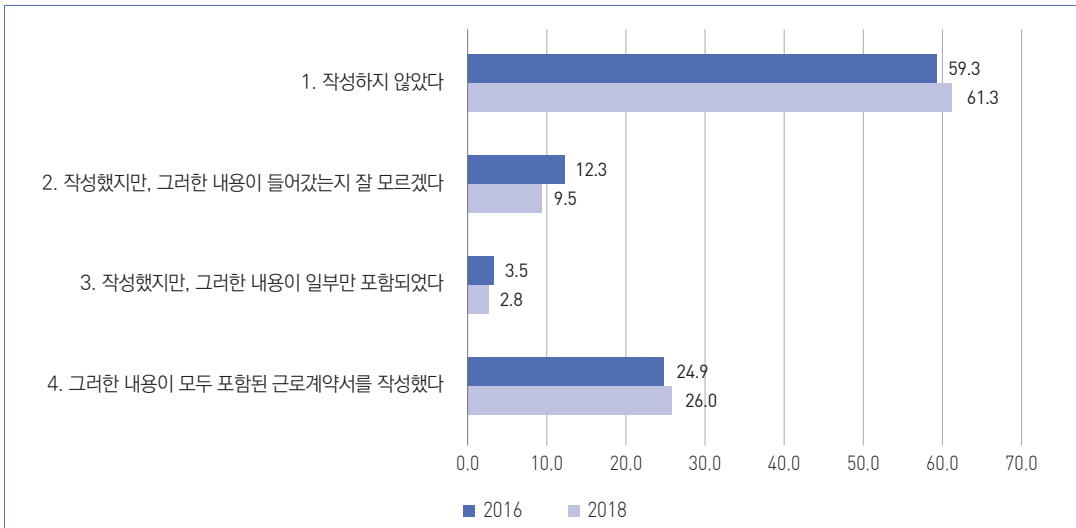


주 : 2018년 자료의 '모름/무응답' 값을 제외함.

자료 : 여성가족부,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원자료, 각 년도.

[그림 8-1-14]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단위 : %)



주 : 2018년 자료의 '모름/무응답' 값을 제외함.

자료 : 여성가족부,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원자료, 각 년도.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일자리 중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비중은 매우 낮다. 2016년에 비해 2018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은 2016년 59.3%에서 2018년 61.3%로 증가하였다. 2018년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르바이트 업무내용, 급여, 근로시간, 휴일 등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은 10명 중 3명 미만이다. 청소년의 66.3%가 시급으로 급여를 받고 있으나 시간당 급여 수준이 법정 최저임금인 7,530원 미만인 비중이 34.9%이다. 또한 임금을 못 받거나 약속된 금액보다 적게 받는 부당한 처우를 경험하기도 하고, 초과근무를 요구(17.7%)받고도 초과한 만큼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7.3%)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다양한 부당대우를 경험하고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청소년이 경험한 각종 부당한 처우에 대해<sup>2)</sup> 어떻게 대처했는지 조사한 결과, 2016년 조사에서는 ‘참고 계속 일했다’는 응답이 6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냥 일을 그만 두었다’는 응답이 21.1%로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8년에 ‘참고 계속 일했다’는 비중이 70.9%로 다소 올라갔으며, 그 다음으로 ‘일을 그만두었다(20.2%)’, ‘묻고 따졌다(8.4%)’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나 경찰 등에 신고한 경우는 1.0%에 불과했다. 부당한 처우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귀찮고 번거로워서(33.8%)’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몰라서(6.4%)’, ‘일자리를 잃게 될까봐(5.0%)’, ‘보복이 두려워서(3.1%)’ 응답도 있었다. 부당한 처우에 대한 항의나 신고가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지만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는 응답도 10.6%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일자리는 고용이 불안정하며 임금이나 복지 등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데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지급되는 경우 등 다양한 부당노동행위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노동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청소년들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부당처우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묻는 방법은 복수 응답이 가능.

## 제2장

## 신규졸업자의 취업 상황

## 1. 중학교 신규졸업자의 진로 상황

2020년도 한국의 중학교 신규 졸업자(2020년 2월 졸업자)는 445,526명이었으며, 대부분(99.7%)이 고등학교 및 기타학교로 진학하였다. 고등학교 진학률이 100%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진학자 중 중졸 취업 인구수는 20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1,454명은 무직 혹은 미상자이다. 한편 진학자 중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한 비율이 73.2%로 2019년에 비해 증가하였고,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자(70.9%)에 비해 여자(75.6%)의 일반계 고교진학률이 높았다.

〈표 8-2-1〉 2020년 중학교 신규 졸업자의 진로 상황

(단위 : 명, %)

구분	졸업자수		진학자												
			합계			일반고		특성학교		특목고		자율고		기타	
	계	여자	비율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총계	445,526	213,968	99.7	444,042	213,191	324,850	161,109	72,281	32,203	20,645	10,250	23,858	8,588	2,408	1,041
국립	1,394	670	99.9	1,393	669	864	430	259	118	57	36	201	84	12	1
공립	368,956	177,927	99.7	367,714	177,287	269,729	134,189	58,902	26,183	17,308	8,724	19,837	7,350	1,938	841
사립	75,176	35,371	99.7	74,935	35,235	54,257	26,490	13,120	5,902	3,280	1,490	3,820	1,154	458	199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20), 교육통계서비스 제공.



## 2. 고등학교 신규졸업자의 진로 상황

2020년도 한국의 비직업계고등학교 졸업자 수는 410,375명이었으며, 이 중 취업자는 6,352명으로 취업률은 7.5%이다.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자 수는 89,998명이었고 이 중 취업자는 24,938명, 취업률은 4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직업계고의 전체 진학률은 79.1%로 여자의 진학률(81.6%)이 남자의 진학률(76.7%)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업계고 진학률 또한 남자(40.0%)보다 여자(46.0%)가 높게 나타났으나, 마이스터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남자(5.3%)가 여자(4.9%)보다 진학률이 높았다. 비직업계 고등학교 중에서는 특성화고의 취업률이 13.0%로 가장 높았고, 직업계 고등학교 중에서는 마이스터고가 70.6%로 가장 높았다.

〈표 8-2-2〉 2020년 비직업계 고등학교 신규 졸업자의 진로 상황

(단위 : 명, %)

고등학교 유형	졸업자		진학자		진학률		취업자		취업률	무직미상	입대자	특수학교 전공과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총계	410,375	202,027	324,673	164,941	79.1	81.6	6,352	2,744	7.5	78,529	504	317
일반고	355,664	177,775	283,467	146,272	79.7	82.3	5,728	2,524	8.0	65,758	431	280
특수목적고	15,552	9,795	12,052	7,595	77.5	77.5	182	73	5.2	3,302	16	0
특성화고	1,333	642	1,041	527	78.1	82.1	37	14	13.0	242	8	5
자율고	37,826	13,815	28,113	10,547	74.3	76.3	405	133	4.2	9,227	49	32

주 : 취업률=취업자/(졸업자 수-진학자 수-입대자 수) × 100.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20), 교육통계서비스 제공.

〈표 8-2-3〉 2020년 직업계 고등학교 신규 졸업자의 진로 상황

(단위 : 명, %)

고등학교 유형	졸업자		진학자		진학률		취업자		취업률	미취업자		입대자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총계	89,998	37,372	38,215	17,190	42.5	46.0	24,938	10,151	49.7	24,290	9,676	1,585
특성화고 (직업교육)	79,503	34,246	35,195	15,777	44.3	46.1	20,785	9,245	48.2	21,483	8,905	1,176

고등학교 유형	졸업자		진학자		진학률		취업자		취업률	미취업자		입대자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마이스터고	5,666	812	297	40	5.2	4.9	3,510	607	70.6	1,417	152	394
일반고 직업반	4,829	2,314	2,723	1,373	56.4	59.3	643	299	30.8	1,390	619	15

주 : 취업률=취업자/(졸업자 수-진학자 수-입대자 수) × 100.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20), 교육통계서비스 제공.

### 3. 특수학교 신규졸업자의 취업 상황

2020년도 우리나라 특수학교 졸업자 수는 2,393명이었으며, 이 중 취업자는 111명, 취업률은 4.9%이었다. 특수학교에서 직업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비직업계고등학교(7.5%) 혹은 직업계고등학교(49.7%) 취업률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특수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여자(6.0%)의 취업률이 남자의 취업률(4.4%)보다 약간 높다.

〈표 8-2-4〉 2020년 특수학교(고등학교 과정) 신규 졸업자의 취업상황과 취업률

(단위 : 명, %)

장애유형	졸업자		진학자		취업자		무직자 및 미상		취업률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총계	2,393	820	131	51	111	46	678	241	4.9	6.0
시각장애	100	39	34	13	8	2	13	3	12.1	7.7
청각장애	99	39	32	13	11	6	16	8	16.4	23.1
지적장애	1,775	577	34	12	75	29	592	207	4.3	5.1
지체장애	273	125	14	6	12	7	53	23	4.6	5.9
정서·행동장애	146	40	17	7	5	2	4	0	3.9	6.1

주 : 취업률=취업자/(졸업자 수-진학자 수) × 100.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20), 교육통계서비스 제공자료.

#### 4.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 상황

고등교육기관 신규졸업자의 취업상황을 살펴보면, 201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2019년 2월 및 2018년 8월 졸업자)는 55만 354명으로, 2018년 대비 5,454명이 감소하였다. 취업대상자 48만 1,599명 중 32만 3,038명이 취업하여 취업률은 67.1%로 나타났다. 전문대 졸업자들의 취업률은 70.9%로 일반대학 졸업자의 취업률 63.3%보다 높았으며, 교육대학 및 산업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각각 63.8%, 71.5%로 나타났다. 2018년과 비교했을 때에는 전문대학의 취업률이 0.2%p가 감소하고, 일반 대학은 0.9%p 감소, 일반대학원 1.0%p가 증가하였다. 고등교육기관 남자 졸업자의 취업률이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성별 취업률 격차는 2018년 3.6%p에서 2019년 3.8%p로 소폭 벌어졌다.

〈표 8-2-5〉 2019년 졸업자의 취업상황과 취업률

(단위 : 명, %)

구분	졸업자	취업대상자	취업자	취업률
고등교육기관 전체	550,354	481,599	323,038	67.1
전문대학	166,521	146,922	104,159	70.9
대학	323,881	286,409	181,255	63.3
교육대학	3,824	3,667	2,338	63.8
산업대학	2,907	2,785	1,991	71.5
각종학교	525	434	242	55.8
기능대학	7,088	6,518	5,214	80.0
일반대학원	45,608	34,864	27,839	79.9

자료 : 교육부(2020), 201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보도자료.

〈표 8-2-6〉 2019년 성별·학제별 취업자 및 취업률

(단위: 명, %)

구분	고등교육기관 전체		전문대학		대학		일반대학원		
	취업자수	취업률	취업자수	취업률	취업자수	취업률	취업자수	취업률	
2019	합계	323,038	67.1	104,159	70.9	181,255	63.3	27,839	79.9
	남	161,982	69.0	45,014	69.9	94,082	66.0	16,365	84.7
	여	161,056	65.2	59,145	71.6	87,173	60.6	11,474	7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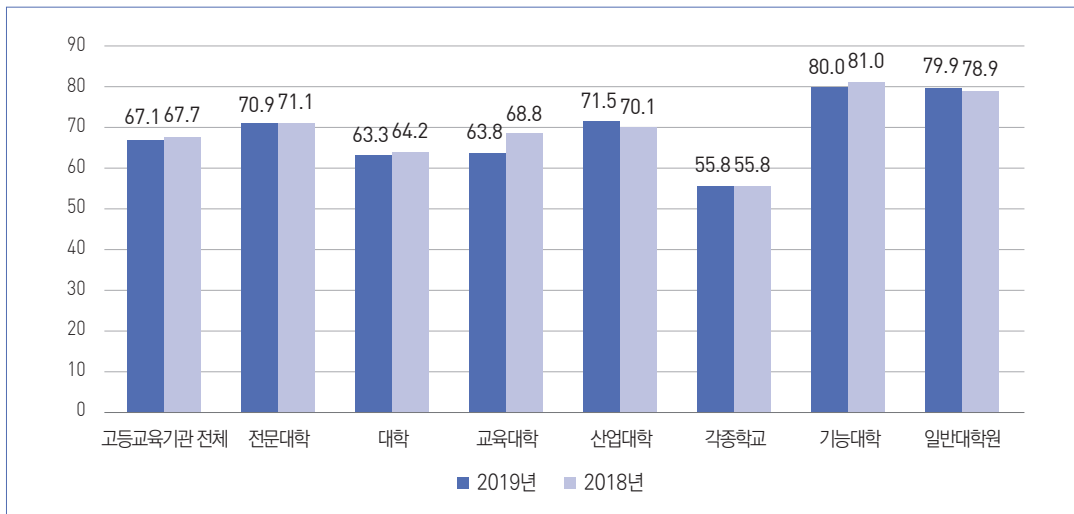
자료: 교육부(2020). 201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보도자료.

산업학교, 각종학교와 일반대학원을 제외하면 2019년도 학제별 취업률은 2018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교육대학의 취업률은 2018년보다 5.0%p가 감소하였다.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계열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2018년에 비해 0.6%p 감소하였다. 전체 계열 중 의약계열 졸업자의 취업률이 83.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공학계열(69.9%), 예체능계열(64.5%), 자연계열(63.8%), 사회계열(63.4%), 교육계열(62.7%) 인문계열(56.2%) 순으로 높았다. 의약계열과 예체능계열을 제외하면 모든 계열의 2018년도 취업률보다 2019년 취업률이 조금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2-1] 고등교육기관 학제별 취업률(2018년·2019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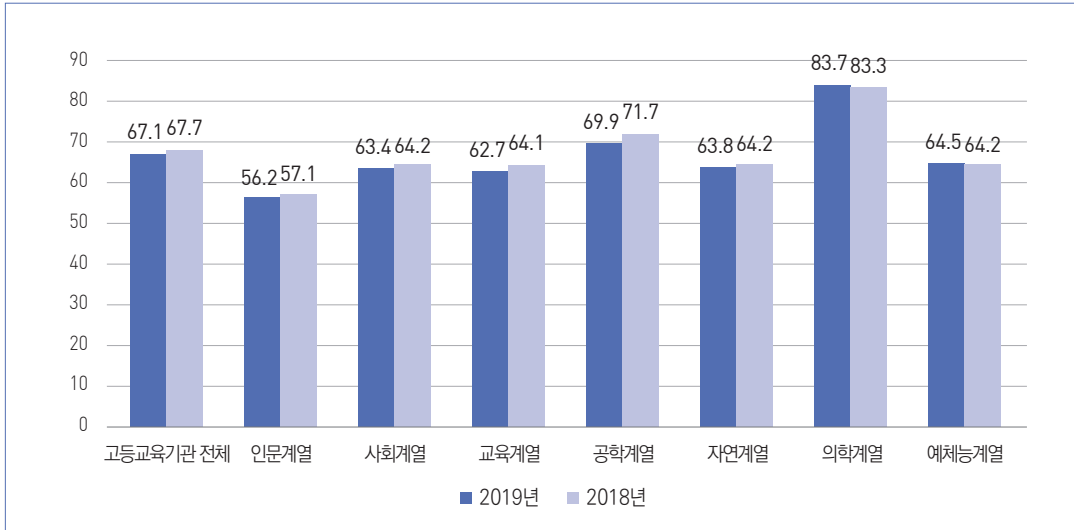
(단위: %)



자료: 교육부(2020). 201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보도자료.

[그림 8-2-2] 고등교육기관 계열별 취업률(2018년·2019년 비교)

(단위 : %)



자료 : 교육부(2020), 2019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보도자료.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제5부

제6부

제7부

제8부

제9부

제10부

부록

## 제3장

## 청소년의 고용·직업·진로정책

## 1. 청소년근로 보호대책

## 가. 청소년근로 보호대책

정부는 2005년 6월 20일 「청소년근로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다.

「청소년근로보호 종합대책」은 고용노동부·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여성가족부·경찰청 등 범정부적으로 마련한 종합적·체계적인 보호대책으로 청소년근로 보호를 위한 지도·점검의 강화방안, 교육 내실화를 통한 청소년근로 보호 인식의 제고방안,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추진 방안, 청소년 일자리 정보 제공 및 피해 구제 강화방안, 제도개선을 통한 연소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성과점검을 통한 평가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08년 6월 「연소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연소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피해사례 일제 신고기간 운영,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등을 통해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청소년 근로환경개선 종합대책(2012년 11월)」을 마련하고 청소년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였으며, 청소년 권리구제를 위한 다양한 신고체제 구축,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교육홍보실시, 사업주들의 법 준수 의식 확립 및 청소년들도 노동관계법을 인지하도록 하여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14년에는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방안(2014. 5.)」을 마련하였는데, 청소년 근로권익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위반제재를 강화하고 청소년의 근로권익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취업사이트 등에 제공하고, 또한 청소년이 손쉽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성가족부는 2013년부터 서울 및 수도권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사례에 대해 24시간 문자 상담(#1388) 서비스 제공 및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등의 부당처우 문제가 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해 현장에

근로현장도우미를 파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사업을 시범 실시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신규 사업으로 편성, 수도권 외에도 경상권, 전라권으로 서비스를 지원하였고, 2019년에는 충청권까지 확대하였다. 이 사업은 청소년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현장 도우미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주와 중재해결하고 있으며, 권익침해 사례 및 성희롱·폭언·폭행 등이 중재가 되지 않거나, 심각한 사안의 경우에는 노동관서나 경찰서로 신고 연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근로여건, 사유 등을 파악하여 건강·진로상담, 학업복귀, 직업교육,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구청 및 주민센터 등과 연계하고, 성희롱, 성폭력 등 젠더폭력에 대해서는 통합지원센터 등과 연계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2020년 10월 기준으로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중앙지원단 및 지역지원본부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상담 61,110건, 현장지원상담 570건으로 집계되었다.

#### 나. 청소년근로 보호를 위한 지도·점검 강화

정부는 「청소년 근로환경개선 종합대책」에 의거해 연중 4회 이상 감독을 실시하는 등 상시적으로 감독을 실시하고, 감독사업장의 10%는 확인감독을 실시하여 반복적인 법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법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방학시점에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하여 업체별 위반율을 발표함으로써 법 위반 예방 및 청소년 근로조건 개선효과를 꾀하였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합동점검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또한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와 청소년 리더들의 활동을 통하여 법 위반사업장을 상시 점검하고 홍보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2020년 1월, 전국 25개 지역 25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 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총 229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였다.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근로계약 미작성 및 근로조건명시 위반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최저임금 미고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휴게시간 미부여 등이었으며 이러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감독관이 업주에게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방안(2014. 5.)」에 의거해 18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근로가 제한되며,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 및 서면근로계약 교부의무 위반, 최저임금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제재강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근로자 등에 대한 서면근로계약 의무 위반 시 시정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치기준을 2014년

8월부터 강화하였다. 아울러 방학기간동안 실시되는 프랜차이즈 중심의 감독과 별개로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해 방학기간이 아닐 때도 PC방이나 주점 등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상시 계도활동을 실시하였다.

## 다. 교육 내실화를 통한 청소년근로 보호 인식 제고

정부는 「청소년근로보호 종합대책」을 통해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주, 각급학교 교사 및 학생 등에 대한 연소근로자 근로관련 노동관계법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중·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교육과 관련하여 진로상담 교사에 대해 청소년 근로 및 직업의식 교육을 실시하고, 교사연수과정 교육프로그램에 연소자 근로조건 및 피해사례별 구제방법 등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 외의 종합대책에서는 사례별 구제방법 지정, 직업교육 연구시범학교 워크숍 시 노동관계법 교육시간을 배정하거나 전문계 고교 CEO 연수 시 노동관계법 교육시간을 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 대상 연소자 근로조건에 대한 교육은 관련 교과와 재량·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하거나 전문계 고교 및 평생직업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건전한 직업의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향후 인문계 고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아르바이트 참여 비율이 높은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해 교육청과 지방고용노동청 간의 협업을 통해 ‘찾아가는 근로권익 특강’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밖에 중·고교생 대상 일터 현장체험 프로그램인 ‘잡 스쿨(Job School)’ 운영 시 학생에 대한 직업의식 및 법정근로조건 교육을 실시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청소년교실 운영 시 취업청소년을 위한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교실에는 경찰서장 등 경찰관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는 범죄예방교실과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성 순화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랑의 교실, 문제 학생을 대상으로 1:1 집중상담이 진행되는 상담교실 등이 있다. 한편, 연소자 다수 고용 사업주에 대한 교육은 다수고용업종 대표 간담회를 통하여 연소자 근로관련 법령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아르바이트 채용 시 반드시 근로계약을 작성하도록 지도하는 방안 등이 제안되었다.

2018년 여성가족부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노동인권 제고를 위하여 중·고등학교 외에도 청소년 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으로 근로권익 전문 강사를 파견, ‘찾아가는 노동권익 교육’을 실시·운영 중에 있으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법령, 부당처우 시 대처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2019년에는 아르바이트 청소년과 사업주가 작성하기 쉽고 보관이 용이한 모바일 근로계약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020년에는 학교별 모바일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운영하여 믿을 수 있는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근로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는 활동도 강화될 예정이다. 권익침해 유형별 노동법·사회보험·민사법 등 법률제도 및 구제절차, 행정서비스 등 관련 정보를 종합한 교육·홍보 콘텐츠를 개발해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모바일앱, 아르바이트 취업사이트(알바몬, 알바천국 등)를 통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라.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추진

「청소년근로보호 종합대책」에서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건전한 직업체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법정 근로조건 보호 캠페인을 실시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06년 10월부터 ‘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을 통해 유관기관, 연소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주 협회 등과 협약 체결, 온라인 사이트 운영, 지역 청소년단체와 공동 캠페인 전개, 팸플릿·포스터 제작·배포 등 중·고등학교 및 연소근로자 아르바이트 관련 법정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온라인 매체의 효율적 활용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였다. 2006년에 구축한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관련 싸이월드 타운 홈페이지에 이어, 2008년 3월에는 네이버 블로그를 개설하고 블로그 이웃맺기 이벤트, 오행시 콘테스트 등 각종 프로모션을 통해 청소년들이 노동관계법령 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2010년부터는 청소년 스스로가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정책프로슈머가 될 수 있도록 ‘1318 알자알자 청소년리더’를 선발하였고, 월별 홍보미션을 부여하여 청소년이 스스로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계된 노동관계법령에 관심을 갖고 정보를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소근로자의 아르바이트가 성행하는 여름방학 기간에는 청소년 리더와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감독관이 연계해 지역 밀착형 홍보를 전개하여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지역단위의 네트워크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알바십계명 홍보를 위한 ‘알·지·최·서·방 UCC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을 활용해 청소년 근로권에 대한 홍보를 펼치고 있다. 2013년에는 ‘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을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캠페인’으로 더욱 발전시켰다. 중·고·대학생을 ‘알바지킴이 청소년 리더(45개 팀 220명)’로 선발하여 또래 집단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를 전개하였으며, 블로그 개설 및 운영, 교내 홍보활동, 가두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그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게 함으로써 참여도와 홍보 효과를 높였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256개 단체, 1만 8천여 명 활동)을 활용하여 편의점, 카페, 일반음식점 등 청소년 고용이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길잡이 책자를 배포하여 업주의 청소년 근로자 보호의식을 제고하고, 노동관계법·청소년 보호법 제도 및 캠페인 활동을 상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단위 민·관 협업체계(경찰청, 지자체 등)를 구축하여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등에 대한 합동 점검·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 마. 청소년 일자리 정보 제공 및 피해 구제 강화

워크넷(Work-Net)에서는 청소년층의 진로·직업·진학·취업가이드, 직업심리검사, 청소년 직장 체험, 진로와 직업 관련 이러닝 학습 콘텐츠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0년부터 잡영(jobyoung)을 통해 청년 취업준비생을 위한 워크넷의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연소근로자들이 권리 구제방법을 몰라서 보호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를 감안하여 '1318 알바신고센터'를 2011년 도입하였다. 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던 알바신고센터를 대학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 추가로 설치하였다. 이는 1318 알바신고센터에 배치된 전담교사(생활지도교사 등)가 수집된 피해사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총 47개)의 전담 근로감독관에게 전달하면, 근로감독관은 센터와 긴밀히 연계하여 신속히 권리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12년 12월에는 모바일 앱(법 안 지키는 일터 신고해~앱) 및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1644-3119)를 구축하고, 전국노동관서에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48명)을 지정하는 등 청소년들이 실시간으로 상담과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구축하였다.

최근에도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은퇴 전문 인력을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로 위촉(반기별 130명)하고, 청소년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권역별 알바신고센터(10개소)를 지정·운영해 청소년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통하여 전국 공인노무사 131명을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으로 위촉하여 무료로 권리구제,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취업지원센터)에 제출된 현장실습 현황자료를 활용하여 각 지방고용청마다 현장실습 사업장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주기적으로 현장 실습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사업장은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보다 많은 청소년에 대한 근로권익침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중앙 및 4개 권역의 지역본부로 운영 중인 '청소년 근로보호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지방 청소년의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292, 6294

## 2. 청소년 창업지원 대책

주요 국가들이 창업 활성화를 강조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취업난에 따른 고학력 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이의 해결책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개척하는 창직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고용 없는 성장시대의 도래로 민간 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한계에 도달하였고, 따라서 창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둘째, 창업을 통해 국가 차원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대에 들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기업 활력 또한 저하되었는데, 기업가 정신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장한 창업기업의 등장은 창업기업에서의 일자리창출에 그치지 않고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때문에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창업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우수한 청년창업가 발굴양성'이나 '원활한 재도전 환경조성'을 추진과제로 명시하여 청년일자리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다. 그 결과, 현재는 창업교육에서부터 시설공간제공, 멘토링·컨설팅, 사업화지원, R&D, 판로·마케팅·해외진출, 행사·네트워크, 정책자금지원 등 다양한 유형의 창업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대표적인 청년창업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청년 전용 창업자금, 창업성공패키지, 창업보육센터가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 전용 창업자금은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조 5백억 원의 예산(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 포함)을 바탕으로 창업 초기 운영자금과 창업에 필요한 멘토링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청년전용 창업자금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가 대상이며,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기업당 1억 원 이내에서 6년간 지원한다. 일반창업기업지원과 달리 청년 전용 창업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직접대출로 운영하며 자금 신청, 접수와 함께 교육·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을 결정(융자상환금 조정형)한다. 창업기업자금은 2016년 10월말 기준 신청기업 12,920개사 중 9,299개사가 선정·지원되었다.

창업성공패키지(구, 청년창업사관학교)는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예비)청년 CEO들의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예비)창업 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창업 준비공간(개별·공동) 제공에서부터 전문 인력을 전담교수로 배치하여 진도관리 및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코칭, 기술사업화 및 전문지식 등 단계별 교육, 제품설계(CAE·역설계 등), 시제품제작 등 제품개발 관련 기술 및 장비 지원, 1년간 최대 1억 원 총사업비의 70%이내 사업비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사관학교 졸업기업에는 성장 촉진을 위한 신속 지원 프로그램(Fast-track)도 제공되어 창업과 관련한 제반 지원을 제공한다.

2014년 9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17개 지역의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창업자금에서부터 법률, 회계, 기술 등 창업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지원하는데, 지역주도로 선정된 특화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창업인턴제는 2014년 중소기업청이 청년창업가 발굴 및 양성의 일환으로 도입한 제도로 우수한 청년 예비 창업가가 유망 중소·중견기업에서 1년 이상 인턴으로 근무한 이후 벤처를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인턴참여자는 선배 창업가의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고 인턴채용기업은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형태로 인턴참여자와 인턴기업이 모두 'win-win'할 수 있는 창업플랫폼이다. 2014~2016년 동안 총 216명에게 지원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 창업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이 부족하거나 창업 절차를 모르는 경우에는 각 대학에 마련된 창업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은 (예비)창업기업에 사무 공간 제공 및 각종 경영·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학이나 연구소가 사업자로 지정받는데, 2016년 말 기준 266개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ion: BI)가 지정되어 있다. 창업보육센터는 이미 갖춰진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고 창업 관련 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사한 사업으로 아이디어는 있는데 어떻게 창업을 시작해야할지 모르는 1인 창조기업의 창업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사업 공간 제공, 창업과 경영에 필요한 전문가의 밀착상담 및 전문교육을 제공하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사업이 있다. 전국적으로 65개의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가 운영 중이며, 2016년 9월 말 기준 2,103개사에 경영자문 870건, 교육 4,885건을 지원하였다.

2015년 정부는 「창업지원사업 효율화방안(2015. 10. 14.)」을 발표하고, 복잡한 창업지원 사업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 바 있다. 유사 목적·방식의 사업들을 통합(99개 → 72개)하고 정부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K-스타트업'이라는 브랜드로 통합·연계해 수요자가 자신의 관심분야 지원 사업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8개 범주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다. K-스타트업<sup>3)</sup>은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교육, 창업기반시설 및 공간 등 창업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요 지원내용은 정부의 성장 단계별로 주요 지원 사업정보(창업교육, 시설·공간, 멘토링·컨설팅, 사업화, 정책자금, R&D, 판로·마케팅·해외진출, 행사·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창업사업의 '신청·접수, 협약, 사업비 정산' 등을 온라인에서 원스톱 서비스, 전국 12개 벤처·창업 입지정보, 창업기초·창업실전·창업특화 등 창업단계별 온라인 창업 강좌, (예비)창업자의 사업역량과 사업 아이টে에서 부족한 점을 스스로 진단 및 보완할 수 있는 창업역량 자가진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 청소년 기업가체험 프로그램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 대회는 청소년들이 도전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로 청소년들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다. 2019년에는 전국 212개 청소년 창업동아리 중 예선을 거친 66개 팀이 본선에 참가했으며, 초등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까지 대회 참가 범위를 확대하였다. 2020년에는 온라인으로 창업경진대회가 개최되었으며, 전국 113개 청소년 창업동아리 중 예선심사를 거쳐 20개 팀이 결선에 진출하였다. 이후 온라인 사업설명회와 인터뷰 등 결선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훈이 결정되었다.

한편, 창업교육 분야로는 청소년 비즈쿨, 창업 아카데미, 대학창업교육체계구축 등이 대표적 사업이다. 청소년 비즈쿨은 열정, 도전정신 등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모의 창업 등을 활용한 기업가정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2016년의 경우 448개교(초등학교 124개, 중학교 109개, 고등학교 202개, 특수학교 13개)에서 특강, 캠프 등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창업아카데미는 대학생 및 예비창업자에게 실전형 창업교육, 멘토링 지원, 네트워킹 조성 등 창업을 위한 기초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16년 창업 강좌 115개에 3천여 명이 참여하는 실적을 달성하였다. 스마트벤처 창업학교는 앱/웹, 콘텐츠, SW, 융합 등 유망 지식서비스 분야의 창업 및 사업화를 희망하는 만 39세 미만의 예비창업자(팀) 및 창업 3년 미만 기업에게 창업 아이টে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창업교육, 개발 멘토링 및 마케팅 등 창업 및 사업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의 경우 전국의 4개 창업학교에서 170개 창업팀을 지원하였다. 창업에 필요한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갖춘 창업전문가

3) K-스타트업 홈페이지: [www.K-startup.go.kr](http://www.K-startup.go.kr)



육성을 목표로 하는 창업 대학원은 2016년에 5개 대학원에 9억 원이 지원되었다. 또한, 대학의 풍부한 자원 극대화를 통해 교육, 네트워크, 연구개발을 통한 창업모델 도입·확산을 목표로 하는 대학기업가센터, 예비창업자 및 3년 이내 초기업을 대상으로 체험형 창업교육과 사업 아이템의 시장검증, 시제품 구체화 등 초기사업화를 지원하는 스마트 창작터도 중요한 지원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이 외에도 대학을 창업의 요람으로 육성하기 위한 ‘창업선도대학육성’, 성공 창업을 꿈꾸는 미래의 유망CEO 발굴과 전 국민 창업분위기 제고를 위한 ‘대한민국 창업리그’, 대학·연구소의 일정지역을 ‘신기술창업집적지역’으로 지정하여 공장 설치를 허용하고, 각종 특례제도 등을 통해 신기술창업을 촉진키 위한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제도’, 도심 내 벤처기업의 입주 공간 확보가 용이하도록 일정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여 세제감면 혜택 등을 부여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원제도’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갖추고 있다.

정부에서는 일자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과 관련한 2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 관련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아이템 발굴 및 초기 창업자금 지원을 통해 기상분야 창업 저변 확대 및 유망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 등이 있다. 2020년 신규 사업 중 학생 창업유망팀 300은 잠재력이 높은 전국의 학생(초·중·고·대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포함) 창업팀 300개를 선발하여 체계적 교육·멘토링을 통해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9년 창업진흥원에서 발표한 자료<sup>4)</sup>에 의하면 전체 창업자(2,030,987명) 중 20대 이하 및 30대의 비중은 15.7%를 차지했으며, 교육서비스업(26.4%) 및 전문·과학 기술업(16.8%) 등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 시 소요되는 자금 중 자기자금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 향후 창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금이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부 각 16개부처의 90개의 창업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한 바 있다. 전체 창업지원 예산규모는 1조 4,517억원으로 2019년 대비 29.8%가 증가하였으며 이 중 청년층을 타겟으로 한 사업에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창업성공패키지(청년 창업 사관학교)’, ‘창업성공패키지(글로벌창업사관학교)’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 ‘학생 창업유망팀 300’,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 등이 있다.

4) 전국 17개 시·도 중소기업 중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대상규모는 8,000개 기업체임.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에서 주관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청년 고용 창출과 지역정착 유도를 위해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창업 지원(임대료, 컨설팅 등) 고용 친화적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0년에는 사업개시일 기준 만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총 35,500백만 원을 약 4,500명에게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촉진과에서는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와 ‘창업성공패키지(글로벌창업사관학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일반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은 우수한 제조 창업 아이템 및 4차 산업분야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초기 창업자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 융복합 업종(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 등)의 만 39세 이하,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총 93,250백만 원, 1,035개사를 지원한다.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사업은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 CEO 중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으로 4차 산업혁명 분야 등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사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총 지원예산은 10,870백만 원이며, 50개사를 지원한다.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에서는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만 34세 이하의 1인 또는 팀단위 기상 기후분야 청년 예비 창업자에게 초기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시제품 개발은 팀당 80백만 원, 창업자금은 팀당 60백만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 교육일자리총괄과에서는 ‘학생 창업유망팀 300’ 사업으로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대학(원)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진대회를 통해 유망 창업팀을 선발하고 약 300개 팀에게 1,600백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 3. 청소년 고용촉진 대책

#### 가. 청년고용촉진 대책 수립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시기별 청년고용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종합대책, 부문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왔다. 2003년에는 일자리 창출, 산학협력, 해외 취업 등 장단기 대책을 종합한 「청년실업종합대책」이 수립되었고, 2005년에는 학교-노동시장 간 이행

원활화에 중점을 둔 「청년고용촉진대책」이 추가적으로 마련되었다. 2006년에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해외취업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해외취업촉진대책」을 발표하였다. 또한 고졸이하 학력 청년층의 실업자가 전체 청년실업자 중에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실업률도 전체 청년실업률보다 높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고졸 이하 청년층 고용촉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다.

2007년도에는 그간의 청년실업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검토하여 ‘청년고용 장려금사업’을 2010년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청년학생층에 대한 직업진로지도 서비스 강화, 학교의 취업지원 인프라 확대, 취약청년층을 위한 고용지원네트워크 구축 등의 방안을 추진하였다. 2008년에 들어서서 정부는 청년들의 취업무대를 국내노동시장에서 세계시장으로 확대하고, 청년들이 다양한 해외 경험을 쌓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과 국가성장을 주도할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산·학·관 협약을 통해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계획」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청년고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취업애로 청년층이 증가함에 따라 청년 친화적 일자리지원, 직업체험 확대, 청년고용 인프라 확충 등을 담은 「청년고용촉진대책」이 마련되어 시행되었다.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기불황으로 인해 청년고용 상황이 악화되자 청년실업 대책차원에서 「청년고용 추가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2009년 말 전반적인 경기회복으로 고용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안정적 일자리에 대한 실흘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자 「청년·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또한, 2010년 10월에는 향후 2년간 청년친화적 일자리 7만 개 이상 창출 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 내일 만들기 1차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으며, 2011년 5월에는 ‘2차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고용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간의 경계를 뛰어넘어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후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자기계발과 재도약 기회를 충분히 갖도록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2013년 10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하여 2014년 1월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공공기관 등에서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청년 미취업자를 정원의 3% 이상으로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였으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개정해 청년 나이를 만 34세로 상향조정해 30대 미취업자들의 취업기회 제한을 해소하였다. 청년고용지원정책 일환으로 ‘청년취업 인턴 제도’를 확대하기도 하였다. 2014년 4월에는 「일자리단계별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청년층의 조기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에 주력하며 양질의 일자리창출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경기활성화, 5대 유망서비스산업 규제개혁 등을 통해 보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5년 7월에는 인력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구조적인 대책과 아울러 단기간에 청년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년연장 등에 따른 단기 고용충격 완화, 현장중심의 인력양성 등 미스매치해소, 청년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라는 3가지 추진과제를 통해 2015~2017년간 20만개 이상의 청년일자리 기회창출을 목표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6년 4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일자리 발굴 및 채용연계, 중소기업 근속을 위한 경제적 지원(청년내일채움공제), 수요자 맞춤형 정보전달, 청년 눈높이에 맞는 진로지도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관련 정책이 포함되었다.

2018년 3월 정부는 1990년대 이후 청년고용 부진이 심화·고착화되고, 체감실업률도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청년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하였다.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청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통한 체감도를 제고하고, 민간부문 청년 일자리 수요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4대 분야 중점 추진과제 즉, 취업 청년 소득, 주거, 자산형성 및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 창업활성화,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즉시 취업·창업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 강화를 통해 에코세대가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2018~2021년까지 18~22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2021년까지 청년실업률을 8%대 이하로 안정화한다는 것이 목표이다. 청년의 소득, 주거, 자산형성을 돕고 청년을 고용한 사업체에 지원을 강화하며,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활혁신형 창업자에게 최대 1억 원의 오픈바우처를 지원하고, 쉽게 창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혁신모험펀드로 투자를 유도하고, 청년 창업기업에 5년간 법인, 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고 있다. 그리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2021년까지 7만 명 이상을 지원하고 현지진출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전교육 및 매칭서비스로 제대로 된 해외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며 해외 창업 청년도 지원한다.

정부는 청년에게 와 닿는 정책을 위해 청년대표, 전문가,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청년일자리대책 TF’가 주체가 되어 정책을 수립하고, 청년이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청년구직자 일자리 안전망’을 구축하여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청년센터를 통해 청년의 공정한 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청년대상 훈련을 확대하고 진로지원을 강화하여 청년의 직업능력개발을 확대하고, 취업성공패키지의 내실화·일자리 매칭 활성화를 통해 취업지원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것이다.

2019년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 대상의 주요 일자리 정책은 주로 15~34세 연령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기업 등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이다. 둘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자산형성 방식의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실제 사업을 신청한 청년의 근속률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만 18~34세)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하여 노동시장 진입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넷째, 온라인 및 오프라인 청년센터를 제공하여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청년이 보다 쉽게 정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또한 대학 내 진로지도를 통해 취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기업이 청년을 우선 채용한 후 현장훈련을 실시하는 일·학습 병행제, 청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세계 및 산업현장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및 노동시장으로의 조기진입을 유도하는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4월 정부는 정보통신업 및 전문·과학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청년일자리의 양과 질이 개선되었다고 발표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채용할 때 1인당 9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부터 2019년 1분기까지 38,330개 기업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활용하여 청년 181,659명을 추가로 채용했다. 2018년 1분기(예산 집행률: 1.5%) 대비 2019년 1분기(예산 집행률: 34.7%)의 중소·중견 기업의 제도 활용률이 높았다. 또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받지 않은 기간보다 평균 26.7% 더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한 청년의 1년 이상 근속률은 78.1%로 일반 중소기업 재직청년 근속률 48.4%보다 높아 일자리의 안정화에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2020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는 7월 1일부터 지침내용이 일부 수정되었다. 변경 전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모두 지원 대상으로 하였으나, 변경 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소규모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또한, 노동관계법 상습위반기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청년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인을 만들었다.

앞서 언급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약칭 청년고용법)은 청년고용의무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청년의 고용촉진을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다. 이 법은 한시법으로써 2018년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국회 논의를 거쳐 2023년 말까지로 유효기간이 연장됐다. 다만, 법에 포함된 청년고용의무제는 2021년 말까지만 연장됐다. 2019년 9월에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문 인력을 연간 고용 인원의 70% 이상 채용 시 청년고용 의무제 적용이 제외되는 요건을 50% 이상으로 완화했다. 연구원, 학교 등의 경쟁력 있는 연구 전문인력과 교원 인력 채용의 요구와 이 제도의

취지인 청년 고용 활성화 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2019년 2월 발표한 ‘2018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에 따르면 2018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기관 447개소의 82.1%인 367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다. 적용 대상기관의 2018년 전체 정원(37만3,416명) 가운데 신규로 고용된 청년은 2만5,676명으로 비율은 6.9%로 나타났다.

2020년 2월 20일 발표한 ‘2019년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이행비율’은 89.4%(442개소 중 395개소)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442개 적용대상기관의 2019년 청년 신규 고용 인원은 28,689명으로 2018년보다 11.7% 증가했다. 이는 공공기관 정원의 7.4%에 해당하며, 청년고용 의무제에 따른 청년 채용인원은 2016년 1.9만 명, 2017년 1.9만 명, 2018년 2.6만 명, 2019년 2.9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한 기관의 비율은 2018년 82.1%에서 7.3%p, 청년신규고용 비율은 2018년 6.9%에서 0.5%p 각각 높아졌다.

## 나. 직업탐색·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확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워크넷<sup>5)</sup>에서는 청소년들의 근로의욕을 향상하고 올바른 직업탐색 기회 제공 및 효율적인 취업지원을 위해 ‘청년직업지도(CAP+)프로그램’, ‘성취 프로그램’, ‘취업희망 프로그램’, ‘취업특강프로그램’, ‘고졸청년취업지원(Hi)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간략히 소개하면, ‘청년직업지도(CAP+) 프로그램’은 청년 취업준비생들이 자신의 직업흥미와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꿈을 설계해 나가는 가운데 합리적인 진로 및 직업 선택과 취업을 돕기 위해 개발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진로탐색과 기업탐색, 취업서류 준비, 실전 모의면접, 취업성공요소의 분석을 통한 취업준비행동 실천계획 수립 등을 통해 취업 준비를 지원한다. ‘성취 프로그램’은 구직의욕과 취업자신감이 낮은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직 효능감 제고 및 구직기술 습득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이다. ‘취업희망 프로그램’ 역시 구직자의 원만한 사회진출 및 적응지원을 위한 대인관계 향상 및 사회생활 적응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졸청년취업지원(Hi) 프로그램’은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고졸예정 취업준비생과 고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고졸청년층을 대상으로 개발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미래 삶을 고민해보고 일터와 채용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취업서류와 면접 요령, 그리고 취업과 직장적응을 위한 기초상식을 배울

5) 워크넷 홈페이지: <https://www.work.go.kr/empSpt/empSptPgm/youngJobGuide/intro.do>.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진로 및 직업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한국잡월드’를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과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직업관 및 근로의식 형성을 유도하여 자신에게 맞는 진로 및 직업 선택을 지원하고 있다.

## 다. 직업진로지도 내실화

고용노동부에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심리검사를 비롯한 직업진로지도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청소년들의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취업지원관, 직업상담원, 커리어코치 등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전국 고용센터와 워크넷을 통해 가장 최근에 표준화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개인의 능력과 흥미, 적성 등의 심리적인 특성들이 각 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수준 및 특성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하여 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고 만족할만한 직업들을 탐색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 검사는 한국고용정보원이 개발했다. 검사는 온라인과 지필검사 모두 받을 수 있고, 워크넷을 통한 온라인검사는 검사 실시 후 결과표를 즉각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에 대한 상담 요청도 가능하다. 검사대상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을 위한 검사들이 있으며, 적성, 흥미, 성격 등 다양한 심리특성을 파악하여 진로 및 직업선택에 도움을 주는 검사들이 있다. 워크넷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심리검사는 실시간 검사를 통해 워크넷의 방대한 직업정보 및 구직정보 탐색이 원스톱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용 직업심리검사 개요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직업심리검사 수검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조사는 청소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진로발달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향후 진로결정과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직업상담원 및 교사들로 하여금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진로지도를 가능하도록 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대학생 및 성인의 진로탐색지원을 위한 직업심리검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직업심리검사는 개인별 자기탐색 및 진로방향 설정에 유용한 도움을 주고 있다.

〈표 8-3-1〉 청소년용 직업심리검사 개요

검사명	대상	검사 목적
초등학생 진로인식검사	초등학교 5~6학년	초등학생의 진로발달 수준 측정 및 자기이해
청소년직업흥미검사	중2~고3	직업흥미에 적합한 학과/직업정보 제공
청소년적성검사(중학생)	중학생	학업적성 측정으로 적합 학업분야 추천
청소년 적성검사(고등학생)	고등학생	학업적성능력에 적합한 직업/학업분야 추천
청소년 진로발달검사	중2~고3	진로 성숙도 및 발달 수준을 측정하여 적합한 진로설계 지원
청소년 직업인성검사	중1~고2	성격의 5요인(민감성, 외향성, 개방성, 친화성, 성실성)을 기초로 성격 특성 측정
대학전공(학과) 흥미검사	고등학생	흥미에 적합한 전공계열 및 학과 추천
직업가치관검사	중3~고3	가치요인별 개인의 수준을 측정하여 현직자 특성과 비교, 적합한 직종 추천
고교계열흥미검사	고등학생	학업 흥미에 따른 적합 고교계열 안내 및 진로지도

자료 : 워크넷(<http://www.work.go.kr>).

〈표 8-3-2〉 대학생 및 성인 대상의 직업심리검사 개요

검사명	대상	검사 목적
직업가치관 검사	18세 이상	가치요인별 개인의 수준을 측정하여 적합한 직종 추천
직업선호도 검사(L형)	18세 이상	직업흥미, 성격, 생활경험과 같은 심리적 특성이해 및 이를 통한 직업탐색 및
직업선택 직업선호도 검사(S형)	18세 이상	직업흥미를 진단하고 이에 적합한 직업탐색 및 직업선택
성인용 직업적성 검사	18세 이상	적성에 따른 적합 직업탐색 및 추천
영업직무 기본역량 검사	18세 이상	영업직 직무수행관련 기초능력 진단 및 적합수준 제시
IT직무 기본역량 검사	18세 이상	IT직종 직무수행관련 기초능력 진단 및 적합수준 제시
대학생 진로준비도 검사	대학생	진로 및 취업과 관련된 진로발달 및 행동수준 파악을 통한 효율적인 취업준비 지원
구직준비도 검사	성인	구직활동과 관련한 특성을 측정하여 실직자에게 구직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창업적성 검사	성인	창업에의 소질여부를 확인하고 성공 가능한 최적의 업종을 추천
직업전환검사	성인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1년 이상 유지할 전환직종을 추천
이주민취업준비도검사	이주민	구직을 원하는 이주민의 취업준비도 진단을 통한 취업 상담 지원
중장년 직업역량검사	45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의 직업역량 평가를 통한 후기 경력개발 지원

자료 : 워크넷(<http://www.work.go.kr>).

청소년에게 효과적인 진로지도를 위하여 「진로와 직업」 교과서, 초·중·고·대·특성화고용 진로 지도프로그램(CDP), 사회과·과학과 진로탐색자료(중·고), 특성화고 취업지원로드맵, 대학교 취업지원로드맵, 직업카드, 직업동영상 활용매뉴얼, 사이버진로교육원 이러닝콘텐츠 등의 진로교육 자료와 진로지도기법이 개발·보급되고 있다. 「진로와 직업」 교과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용으로 2003년도에 개발·보급되었으며, 지속적으로 개정(초등학교 2007년 개정, 중학교 2011년 개정)되고 있으며, 고등학교 교과서는 2010년 개발 보급되어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진로지도 프로그램(CDP)은 초·중·고·특성화고·대학 등 각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한 학기용 자료로서 총 5종으로 개발·보급되었으며, 교사용 매뉴얼과 학습자용 워크북, 수업진행용 슬라이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성화고 및 대학교 졸업 예정자들의 효과적인 취업지원을 위해 학교급(특성화고/대학교)에 따라 학년별로 강조해야 할 구직역량과 이를 위한 활용자원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학교급별 취업지원 로드맵을 개발·보급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청소년 직업진로지도 및 교과통합형 진로지도를 위해 중·고등학교의 사회과·과학과 세부 과목들에 대해 단원별 진로지도를 위한 탐색자료집을 개발하여 보급했고, 학부모대상 진로특강 자료, 직업심리검사 해석을 위한 동영상과 슬라이드 등을 개발하여 단위학교로 보급하였다. 카드형태의 직업진로교육 매체인 ‘직업카드’ 역시 전국 고용센터와 학교에서 청소년 진로지도를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온라인 콘텐츠도 개발되어 청소년 워크넷 사이트에서 활용되고 있다. 직업 진로지도 접근성 강화를 위해 자기주도적 진로 학습이 가능한 사이버진로교육센터<sup>6)</sup>를 개원하여 이력서 작성과 면접 준비에 필요한 강좌 등 다양한 온라인 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진로지도·취업지원을 위해 학년별 진로·취업지원 표준모델을 개발하여 대학생들이 학년별로 특화된 취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진로지도를 체계화하고, 전담진로교수 매칭, 컨설턴트 연계, 진로실적 관련 교수평가제 도입 등 대학 내 교수·학사제도 또한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진로지도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였다. 아울러 대학 내 학생경력개발시스템과 워크넷을 연계하여 학생들이 맞춤형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직업심리검사결과와 관심 있는 직업과 직무, 자격, 훈련 정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미래의 산업구조 및 직업세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미래 산업 및 직업전망을 예측하고, 관련 정보를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맞춰 체험형 미래직업 탐색 프로그램(3D프린팅, 로봇, 드론 등), 「근로기준법」 강의, 일터 안전보건체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6) 사이버진로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www.work.go.kr/cyberedu/main.do>



4차 산업혁명으로 2020년까지 4대 유망분야 12개 신산업에서 총 17만 명(신규인력 9만 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신산업 고급직업훈련과정 Test-Bed를 구축하여 고학력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기업맞춤형 훈련으로 신산업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하이테크 과정을 만들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청년의 눈높이에 맞춘 신산업분야 학과·직종에 고급직업훈련과정을 개설하였다. 2017년 9개 학과에서 2018~2022년 총 40개 학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2017년부터 4차 산업혁명 관련 훈련분야, 즉 스마트 제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정보보안, 바이오, 핀테크, 무인이동체, 실감형 콘텐츠 등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제시하고 운영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선도훈련과정을 운영·지원하고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가진로교육연구본부 진로교육센터에서 또한 진로정보망 커리어넷(Career Net)<sup>7)</sup>을 운영함으로써, 진로심리검사(직업적성검사, 직업흥미검사, 직업가치관검사, 진로성숙도 검사 등) 및 진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 라. 직업정보의 수집 제공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은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지식기반 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직업세계에서 요구하는 직업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 시스템은 직업별 직무내용, 임금수준, 직업전망 및 직업과 관련된 학과(전공), 자격, 훈련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진로결정 및 취업 문제를 온라인으로 상담해주고 있다. 직업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종합적인 직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직업전망’, ‘한국직업사전’, ‘직종별 직업사전’, ‘진로진학 Q&A’ 등 초등학교에서 성인까지의 수요자 맞춤형 직업정보자료를 발간하여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보급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직업명이나 학과명 키워드만으로 관련 직업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 및 취업지원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직업동영상은 전 산업분야에 걸친 다양한 직업들을 선정, 해당 직업의 생생한 현장모습 및 인터뷰를 담고, 취업지원동영상은 구직자에게 필요한 면접기법, 이력서 작성 등의 구직기술과 직장생활 적응, 비즈니스 매너, 기업직무 등 직장생활과 관련한 유의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모든 자료는 각급 학교에 DVD로 배포되며, 방송 송출 및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들 매체를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기법이 소개된 직업동영상 활용 매뉴얼도 함께

7) 커리어넷 홈페이지: <https://www.career.go.kr/cnet/front/main/main.do>

제작·배포하고 있다.

이 밖에도 2011년부터 청소년들의 진로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 학과정보 동영상(캠퍼스 매거진)을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학과정보 동영상은 해당학과 졸업 후 진출할 수 있는 직업과 분야를 소개하고 취업을 위해 대학생활을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교수님과 학과 선배인 멘토들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고 있다. 최근에는 학과의 변화양상과 관련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소개하고 다양한 진로모색의 필요성과 새롭게 등장하거나 부각되는 진출 직업 및 분야를 소개해주는 데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앞서 언급한 커리어넷에서도 직업분류별, 적성유형별 직업 정보와 맞춤형 진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 직업의 연봉정보, 발전가능성, 고용평등성 지표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이 진로를 선택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다. 더불어 진로탐험대 신청, 공개상담 내용 공유를 통해 무료 진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 마.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취업지원 확대

취업지원서비스는 1987년 5월 텍스트 중심의 서비스제공으로 시작했으나 1996년 9월 국내·외 취업알선 서비스로 발전하였다. 이후 1998년 11월 인터넷 방식의 '워크넷(Work-Net)'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용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등의 취업 업무에 활용하는 한편 온라인을 통해 구인·구직자에게 직접 일자리정보, 직업정보 등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08년에는 정보화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보급에 맞춰 워크넷 시스템을 개편하여 청년층의 취업지원을 위한 온라인 고용정보서비스를 강화하였다. 이력서 작성과 구직신청, 채용정보 북마크, 알선요청, 직업상담 등의 개별 온라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맞춤 메일링 서비스'를 도입하여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직업·취업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워크넷에 '대기업채용정보' 항목을 신설하여 주요 대기업의 구인정보를 취합·제공하였고, '지역고용동향' 항목의 신설을 통해 고용지원센터 등에서 제작한 각종 지역단위 고용정보를 구인·구직자에게 제공하게 되었다. 그밖에 '구인·구직 동영상 서비스'를 실시하여 구직자 및 구인업체의 소개를 동영상으로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동영상 이력서 서비스를 도입하였고, '취업자료실' 항목을 별도로 제공하여 취업관련 뉴스와 가이드, 동영상, 직업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채용정보와 인재정보를 직종별, 지역·산업단지별, 역세권별, 대기업채용 정보, 단시간근로채용정보, 전공계열별, 청년인턴인재정보 등 특화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하였다. 2011년 7월부터는 민간취업포털과 지자체 일자리정보를 워크넷 한 곳에서 쉽고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통합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3.0 공공 데이터 개방과 관련하여 Open API 제공과 지역 워크넷, 정부지원 일자리, 시간선택제, 강소기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하였으며,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여 PC외에도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워크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워크넷을 통해 개인 구직자는 지역별, 역세권별, 직종별, 기업형태별 등 다양한 일자리정보를 비롯하여 온라인 구직신청, 이메일 입사지원, 맞춤형 서비스, 구직활동 내역 조회/출력, 메일링 서비스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구인기업은 지역별, 직종별, 전공계열별 등 다양한 인재정보를 비롯하여 온라인 구인신청, 인재정보관리, 맞춤형 서비스, 째하기, e-채용마당 등의 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직업심리검사, 직업·학과정보검색, 직업탐방, 진로상담 등 직업·진로 서비스와 Job Map, 일자리/인재 동향, 통계간행물/연구자료 등의 고용동향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한편, 청년실업문제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자, 산재되어 있는 범부처 취업지원 사업 정보를 모아 한 번에 청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청년 워크넷을 구축하여 2016년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 취업지원사업을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규모, 혜택, 지원조건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취업지원관련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추가 업로드하고 있으며, 청년고용정책참여단을 통한 취업지원사업 모니터링, 청년친화적 안내문으로 대체하는 등 콘텐츠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외에도 청년 친화 강소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메뉴구조 단순화, 검색기능 개선 등의 노력에 힘입어 청년 워크넷 1일 평균 방문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18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청년정책의 인지도를 높이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년정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청년센터<sup>8)</sup>를 구축했다. 맞춤형 정책 정보 검색과 정책 간 핵심정보를 비교해주고, 일자리·창업·주거 등 분야별로 수요에 따라 배치하여 카카오톡이나 전화를 기반으로 실시간 채팅 상담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온라인청년센터에서는 구직 활동할 때 공간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노동과 관련된 용어가 낯선 청년들을 위해 용어 풀이를 제공하는 등 다방면으로 청년에게 구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8)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https://www.youthcenter.go.kr/intro/centerIntro.do>

## 제9부 요약

제9부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 다룬다. 청소년 범죄의 발생 및 처분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청소년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교정하기 위해 추진되는 범정부차원의 정책 내용도 함께 다루었다. 최근 10년간 청소년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전체 범죄자 중 청소년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2016년과 2017년 일시적으로 그 비율이 증가하기는 하였는데, 이후 다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청소년인구 10만 명당 범죄자 발생건수, 즉 발생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이후 감소 추이에 있었으나, 2019년 780.5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2019년 청소년 범죄의 발생비는 재산범죄, 강력범죄(폭력), 교통범죄, 강력범죄(흉악)의 순으로 높았으며, 특히 지난 2010년 대비 강력범죄(흉악)가 28.2% 증가하였다.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운영하는 등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교육부 등 관련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수립·추진해 왔다. 학교폭력 유형별 현황은 2013년 폭행·상해(63.5%), 금품갈취(15.0%), 성폭력(6.1%) 순으로 나타났지만, 2013년 이후 강제추행, 카메라이용촬영 등 성폭력범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2014년 성폭력범죄 비율이 9.8%로 증가하였다. 2019년에는 폭행·상해(55.1%), 성폭력(22.5%), 금품갈취(9.8%) 순으로 순위가 바뀌며, 성폭력의 비율이 2013년 대비 16.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찰의 예방 대책 외에도 검찰에서는 ‘우범소년 결연사업’, ‘학교담당검사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법무부에서는 ‘청소년꿈키움센터’, ‘대안교실’, ‘청소년심리검사실’, ‘보호자특별교육’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교정교육 및 사회복귀지원은 소년원, 소년교도소, 보호관찰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기관에서는 각종 교과교육 및 취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비행청소년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돕고 있다.

제9부

# 청소년 범죄

제1장 청소년 범죄의 현황

제2장 청소년 범죄 예방활동

제3장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건처리

제4장 청소년 범죄에 대한 교정교육

9

## 제1장

## 청소년 범죄의 현황

## 1. 청소년 범죄의 동향

18세 이하 청소년 범죄자는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최근 10년간 전체 범죄자 대비 청소년 범죄자의 구성 비율을 보면, 2010년에는 5.8%이었다가 2016년 3.9%(76,000명)까지 감소하였다. 2017년 일시적으로 4.0%로 증가하였으나, 다시 감소하여 2019년에는 3.8%를 기록하였다. 청소년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청소년 범죄자의 비율도 줄어들고 있는 것인데, 이는 최근 우려와 달리 일반 범죄에 비하여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2019년 청소년 범죄자의 절대적인 숫자 자체는 소폭 증가하여 여전히 청소년 범죄에 대한 관심과 경계가 필요함은 부정할 수 없다.

〈표 9-1-1〉 연도별 청소년 범죄자 현황 및 구성비

(단위: 명, %)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범죄자	1,764,746	1,711,687	1,843,289	1,859,697	1,851,150	1,888,959	1,973,655	1,818,237	1,704,086	1,723,499
청소년 범죄자	101,596	100,032	104,780	88,731	77,594	71,035	76,000	72,759	66,142	66,247
구성비	5.8	5.8	5.7	4.8	4.2	3.8	3.9	4.0	3.9	3.8

주: 청소년 범죄자의 기준은 18세 이하이며, 이하 동일함.

자료: 대검찰청(2011~2020). 범죄분석.

2019년 청소년 범죄 발생비를 살펴보면, 재산범죄 327.6, 강력범죄(폭력) 219.4, 교통범죄 88.0, 강력범죄(흉악) 43.2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범죄의 발생비는 2010년부터 계속 증가하여 2012년 442.4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후 대체로 감소하여 2019년에는 327.6건 발생하여 2010년 대비 18.2% 감소하였다. 강력범죄(흉악)의 발생비는 2010년 33.7건에서 감소추이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에는 43.2건이었다. 이는 2010년 대비 28.2% 증가한 수치이다. 강력범죄(폭력)의 발생비는 2012년 310.0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9년 219.4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2010년 대비 12.4% 감소한 수치이다. 교통범죄의 발생비는 2019년 88.0건으로 2010년 대비 41.7% 감소하였다.

절대적인 발생비는 재산범죄가 가장 높고, 강력범죄(홍악)가 가장 낮지만, 최근 강력범죄(홍악)가 증가한 것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른 유형의 경우 지난 2010년 대비 모두 감소한 반면, 유독 강력범죄(홍악)만큼은 반대의 추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특히 강력범죄(홍악)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표 9-1-2〉 주요 범죄군별(청소년 범죄) 발생비 추이(2010~2019)

(단위 : 발생비, %)

연도	재산범죄		강력범죄(홍악)		강력범죄(폭력)		교통범죄	
	발생비	증감률	발생비	증감률	발생비	증감률	발생비	증감률
2010	400.7	-	33.7	-	250.5	-	150.9	-
2011	403.0	0.6	38.1	13.1	265.2	5.8	136.3	-9.7
2012	442.4	10.4	34.7	3.0	310.0	23.7	115.1	-23.7
2013	430.9	7.6	34.4	2.1	215.4	-14.0	96.2	-36.3
2014	367.4	-8.3	32.0	-5.0	196.0	-21.8	93.7	-37.9
2015	332.9	-16.9	28.2	-16.4	181.4	-27.6	89.4	-40.8
2016	352.9	-11.9	35.7	5.9	207.7	-17.1	99.4	-34.1
2017	319.3	-20.3	38.1	13.0	231.2	-7.7	105.8	-29.9
2018	300.6	-25.0	39.8	18.2	224.0	-10.6	86.7	-42.6
2019	327.6	-18.2	43.2	28.2	219.4	-12.4	88.0	-41.7

주 : 1) 재산범죄 :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

2) 강력범죄(홍악) :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3) 강력범죄(폭력) :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 폭력행위 등(손괴·강요·주거침입 등), 폭력행위 등(단체등의 구성·활동).

4) 청소년 범죄 발생비는 각 연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의 18세 이하 인원 수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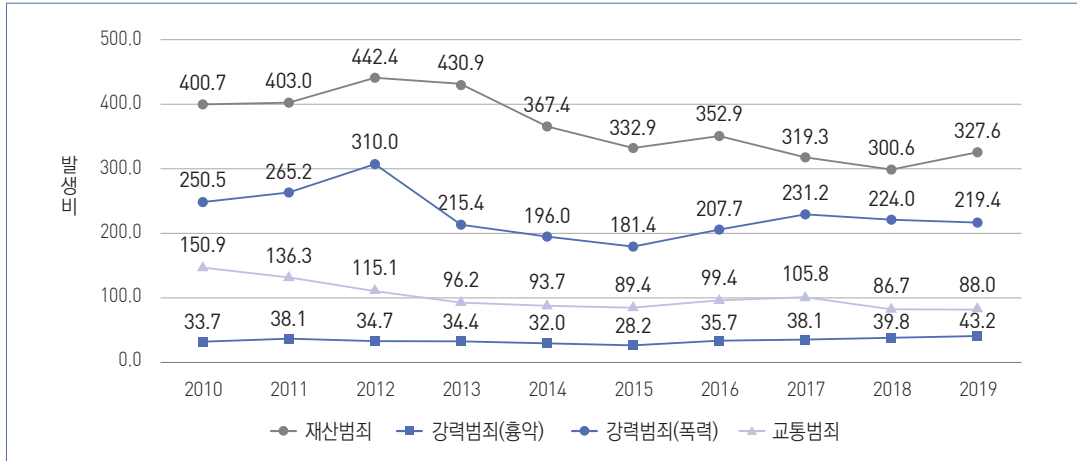
5) 발생비는 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범죄발생비를 나타내는 것임.

6) 증감률은 기준연도인 2010년 발생비 대비 변화율임.

자료 : 대검찰청(2020). 범죄분석.

[그림 9-1-1] 주요 범죄군별(청소년 범죄) 발생비 추이(2010-2019)

(단위 : 발생비, %)



자료 : 대검찰청(2020). 범죄분석.

2019년 전체 청소년 범죄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18세가 26.5%(17,578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이어 17세 21.6%, 16세 20.5%, 15세 17.7%, 14세 16.4%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청소년 범죄자의 연령추세를 볼 때 17~18세 청소년 범죄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표 9-1-3> 청소년 범죄의 연령별 현황(2009~2019)

(단위 : 명, (%))

연도 \ 연령	계	14세 미만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2009	113,022 (100.0)	1,989 (1.8)	15,431 (13.7)	24,657 (21.8)	26,153 (23.1)	23,307 (20.6)	21,485 (19.0)
2010	89,776 (100.0)	445 (0.5)	8,870 (9.9)	19,280 (21.5)	21,611 (24.1)	19,637 (21.9)	19,933 (22.2)
2011	83,068 (100.0)	360 (0.4)	5,189 (6.2)	17,084 (20.6)	21,815 (26.3)	19,936 (24.0)	18,684 (22.5)
2012	107,490 (100.0)	856 (0.8)	12,978 (12.1)	21,009 (19.5)	26,080 (24.3)	24,140 (22.5)	22,427 (20.9)
2013	91,633 (100.0)	471 (0.5)	11,338 (12.4)	16,645 (18.2)	20,463 (22.3)	21,208 (23.1)	21,508 (23.5)
2014	77,594 (100.0)	37 (0.0)	9,712 (12.5)	14,041 (18.1)	16,940 (21.8)	17,517 (22.6)	19,347 (24.9)

연도 \ 연령	계	14세 미만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2015	71,035 (100.0)	64 (0.1)	7 (0.0)	14,387 (20.3)	17,624 (24.8)	18,231 (25.7)	20,722 (29.2)
2016	76,000 (100.0)	84 (0.1)	7,530 (9.9)	13,789 (18.1)	17,589 (23.1)	17,607 (23.2)	19,401 (25.5)
2017	72,759 (100.0)	93 (0.1)	7,703 (10.6)	12,376 (17.0)	16,391 (22.5)	17,358 (23.9)	18,838 (25.9)
2018	66,142 (100.0)	-	8,321 (12.6)	11,595 (17.5)	13,306 (20.1)	15,513 (23.5)	17,407 (26.3)
2019	66,247 (100.0)	-	9,053 (16.4)	11,730 (17.7)	13,548 (20.5)	14,338 (21.6)	17,578 (26.5)

주 : 2018년 이후 14세 미만 통계에서 제외.

자료 : 대검찰청(2010~2020). 범죄분석.

최근 10년간 전과가 있는 청소년 범죄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전과를 가진 청소년 범죄자의 비율은 2009년 35.7%에서 2013년 46.1%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세로 나타나 2018년 33.7%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4범 이상 청소년 범죄자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2009년 8.8%에서 2018년 13.4%, 2019년 14.9%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는 청소년 범죄의 상습화가 심각한 수준에 있고, 향후 재범률이 높은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정교육과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9-1-4〉 청소년 범죄의 전과별 현황

(단위 : 명, %)

연도 \ 연령	계	소계 (미상 제외)	전과 없음	1범	2범	3범	4범 이상
2009	113,022	102,573 (100.0)	65,990 (64.3)	15,103 (14.7)	7,637 (7.4)	4,799 (4.7)	9,044 (8.8)
2010	89,776	82,368 (100.0)	50,830 (61.7)	12,091 (14.7)	6,546 (7.9)	4,070 (4.9)	8,831 (10.7)
2011	83,068	75,658 (100.0)	45,047 (59.5)	11,391 (15.1)	6,254 (8.3)	3,900 (5.2)	9,066 (12.0)
2012	107,490	96,728 (100.0)	56,527 (58.4)	14,403 (14.9)	7,669 (7.9)	5,001 (5.2)	13,128 (13.6)

연도	연령	계	소계 (미상 제외)	전과 없음	1범	2범	3범	4범 이상
2013		91,633	82,548 (100.0)	44,502 (53.9)	12,388 (15.0)	6,782 (8.2)	4,552 (5.5)	14,324 (17.4)
2014		77,594	70,648 (100.0)	40,996 (58.0)	9,853 (13.9)	5,244 (7.4)	3,429 (4.9)	11,126 (15.7)
2015		71,035	62,705 (100.0)	35,650 (56.9)	8,636 (13.8)	4,518 (7.2)	3,110 (5.0)	10,791 (17.2)
2016		76,000	67,433 (100.0)	41,173 (61.1)	8,444 (12.5)	4,493 (6.7)	2,978 (4.4)	10,345 (15.3)
2017		72,759	64,208 (100.0)	40,168 (62.6)	8,039 (12.5)	4,191 (6.5)	2,773 (4.3)	9,037 (14.1)
2018		66,142	66,135 (100.0)	43,827 (66.3)	7,164 (10.8)	3,705 (5.6)	2,554 (3.9)	8,885 (13.4)
2019		66,247	59,729 (100.0)	38,272 (32.4)	6,681 (10.1)	3,360 (5.1)	2,517 (3.8)	8,899 (14.9)

자료 : 대검찰청(2010~2020). 범죄분석.

2019년도 청소년 범죄의 남녀별 비율을 보면 남자가 82.2%, 여자가 17.8%로, 남자의 비율이 약 5배 정도 많다. 2010년 남자청소년의 범죄율이 80.7%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과 2015년 85.2%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다시 감소세를 보여 2018년 81.4%를 나타냈다. 2019년에는 그 비율이 소폭 증가하였다.

〈표 9-1-5〉 청소년 범죄의 성별 현황

(단위 : 명, %)

연도	구분	계 인원	남자		여자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09		113,022	93,509	82.7	19,513	17.3
2010		89,776	72,461	80.7	17,315	19.3
2011		83,068	68,742	82.8	14,326	17.2
2012		107,490	89,339	83.1	18,151	16.9
2013		91,633	76,767	83.8	14,866	16.2
2014		77,594	66,114	85.2	11,480	14.8



연도	구분	계 인원	남자		여자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015		71,035	60,534	85.2	10,501	14.8
2016		76,000	63,777	83.9	12,223	16.1
2017		72,759	60,264	82.8	12,495	17.2
2018		66,142	53,879	81.5	12,263	18.5
2019		66,243	54,437	82.2	11,806	17.8

자료 : 대검찰청(2010~2020). 범죄분석.

## 2. 청소년 마약사범류 동향

마약이란, 일반적으로 마약원료인 생약으로부터 추출되는 천연마약(양귀비, 아편, 헤로인, 코데인, 모르핀, 코카인 등)과 화학적으로 합성되는 합성마약으로 분류되고 있다. 전체 마약류사범과 청소년 마약류사범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2014년 이후 청소년 마약류사범이 100명을 넘는 것을 감안할 때, 청소년에게 마약류가 유통되는 경로를 차단하여 청소년의 마약류 중독을 막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9년 19세 이하 적발인원은 239명으로 전년대비(전년도 143명) 인원이 대폭 증가하는 등 그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표 9-1-6〉 청소년 마약류 사범 연령별 현황(2009~2019)

(단위 : 명, %)

연도	구분	전체 마약류 사범	청소년 마약류 사범	
			인원	비율
2009		11,875	82	0.7
2010		9,732	35	0.4
2011		9,174	41	0.4
2012		9,255	38	0.4
2013		9,764	58	0.6

연도	구분	전체 마약류 사범	청소년 마약류 사범	
			인원	비율
2014		9,984	102	1.0
2015		11,916	128	1.1
2016		14,214	121	0.9
2017		14,123	119	0.8
2018		12,613	143	1.1
2019		16,044	239	1.5

자료 : 대검찰청(2010~2020). 마약류범죄백서.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오·남용시 인체에 현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로써, ‘메스암페타민(속칭 히로뽕)’, ‘MDMA(엑스터시)’, ‘LSD(무색·무미·무취 환각제)’ 등을 가리킨다. 2019년 청소년 마약범죄 중 마약류의 종류를 살펴보면 대체로 향정신성의약품의 비중이 69.9%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대마의 비중은 28.9%로 대마로 인한 문제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마약류는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신체·정신발달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성인 이상으로 중독 예방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표 9-1-7〉 청소년 마약범죄의 마약류별 현황(2009-2019)

(단위 : 명, %)

연도	구분	전체	청소년 마약류			
			합계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마약
2009		11,875	82(100.0)	55(67.1)	25(30.5)	2(2.4)
2010		9,732	35(100.0)	16(45.7)	19(54.3)	-
2011		9,174	41(100.0)	34(82.9)	7(17.1)	-
2012		9,255	38(100.0)	26(68.4)	12(31.6)	-
2013		9,764	58(100.0)	39(67.2)	17(29.3)	2(3.4)
2014		9,742	102(100.0)	48(47.1)	54(52.9)	-
2015		11,916	128(100.0)	78(60.9)	50(39.1)	-
2016		14,214	121(100.0)	91(75.2)	28(23.1)	2(1.7)
2017		14,123	119(100.0)	70(58.8)	49(41.2)	-

연도	구분	전체	청소년 마약류			
			합계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마약
2018		12,613	143(100.0)	105(73.4)	36(25.2)	2(1.4)
2019		16,044	239(100.0)	167(69.9)	69(28.9)	3(1.2)

자료 : 대검찰청(2010~2020). 마약류 범죄백서.

### 3. 학생 범죄의 동향

전체 청소년 범죄자 대비 학생 범죄자의 구성 비율은 2010년 61.2%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75.1%를 기록하였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대응과 함께 여전히 학교 내에서의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9-1-8〉 연도별 학생 범죄 현황

(단위 : 명, %)

연도	전체범죄(A)	청소년 범죄		학생 범죄	
		인원(B)	구성비 (B/A×100)	인원(C)	구성비 (C/B×100)
2010	1,764,746	101,596	5.8	62,173	61.2
2011	1,711,687	100,032	5.8	57,672	57.7
2012	1,843,289	104,780	5.7	73,684	70.3
2013	1,859,697	88,731	4.8	60,438	68.1
2014	1,851,150	77,594	4.2	54,627	70.4
2015	1,888,959	71,035	3.8	57,672	81.2
2016	1,973,655	76,000	3.9	56,625	74.5
2017	1,818,237	72,759	4.0	55,074	75.7
2018	1,704,086	66,142	3.9	54,205	82.0
2019	1,723,499	66,247	3.8	49,726	75.1

자료 : 대검찰청(2010~2020). 범죄분석.

## 제2장

## 청소년 범죄 예방활동

## 1. 경찰의 예방활동

## 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활동

경찰은 2012년 6월 학교폭력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청소년상담 관련 학위, 자격증 소지자 및 소년업무 경력자 등 전문성을 갖춘 경찰관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담당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학교폭력의 예방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구체적으로 학교폭력 예방활동, 신고접수·처리, 보호·선도, 경·학 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먼저, 예방활동으로 학생·학부모·교사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진행하고, 학생보호인력과 연계하여 학교 내외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합동순찰을 실시하기도 한다. 이때 범죄예방교육은 학생들과의 소통을 중시하기 위해 가능한 한 학년별·반별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 중 학생들과의 전화번호 및 인터넷 메신저 교환, SNS계정 공유 등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메신저 및 SNS 활동은 학생들과의 친밀감을 높일 수 있어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 접수 및 상담을 진행하여 피해학생과의 멘토-멘티 지정, 2차 피해예방, 가해학생 선도 프로그램 연계 및 재비행 방지 등의 보호·선도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은 분쟁조정 과정에 참여하고, 생활지도교사와 핫라인을 구축하여 폭력 서클 정보 공유 및 해체·선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학교폭력 유형별 검거인원을 살펴보면, 2014년까지는 ‘폭행·상해’에 이어 ‘금품갈취’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5년 이후에는 ‘성폭력’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데에는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강제추행’, ‘카메라이용촬영’ 등 ‘성폭력범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것을 그 원인으로 찾아볼 수 있다. 2019년에는 1만 3,584명이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되었는데, 그중 성폭력은 무려 3,060명에 이른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카메라이용촬영 등의 범죄가 특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예방 교육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표 9-2-1〉 학교폭력 유형별 검거현황(2013~2019)

(단위 : 명)

연도	구분	전체	폭행·상해	금품갈취	성폭력	기타
2013		17,385	11,048	2,603	1,067	2,667
2014		13,268	8,974	1,582	1,295	1,417
2015		12,495	9,188	1,153	1,253	901
2016		12,805	9,396	1,161	1,364	884
2017		14,000	10,038	1,191	1,695	1,076
2018		13,367	7,935	1,377	2,529	1,526
2019		13,584	7,485	1,328	3,060	1,711

자료 : 경찰청(2014~2020). 경찰백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현황을 보면 불구속 비율이 높은 편이다. 2019년의 경우 학교폭력으로 입건된 가해학생 중 구속은 84명, 불구속은 9,233명이었다. 특히 사안에 따른 맞춤형 대응과 경미초범에 대한 즉심·훈방 등 선도조치로 인해 처리되는 비율은 2017년 14.9%에서 2018년 18.1%, 2019년 19.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9-2-2〉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현황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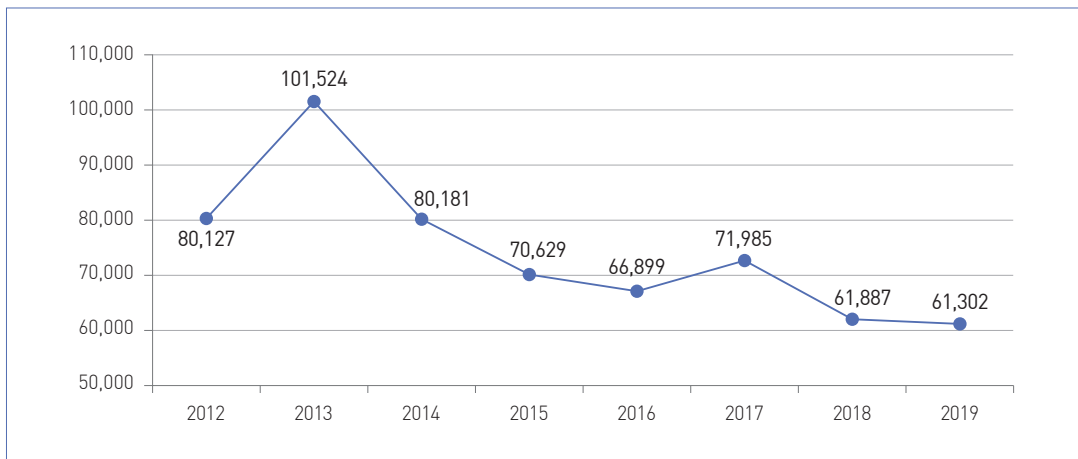
연도	구분	계	구속	불구속	소년부송치	즉심·훈방 등
2017		14,000(100.0)	61(0.4)	10,556(75.4)	1,296(9.3)	2,087(14.9)
2018		13,367(100.0)	86(0.6)	9,546(71.4)	1,319(9.9)	2,416(18.1)
2019		13,584(100.0)	84(0.6)	9,233(68.0)	1,587(11.7)	2,680(19.7)

자료 : 경찰청(2020). 경찰백서.

2012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던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117로 통합하고, 2012년 6월 18일에는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에 '117신고센터'를 개소하여 경찰·교육부·여성가족부 합동으로 24시간 신고접수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117채팅신고앱인 '117챗'을 개발하여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117신고센터로 접수된 사안에 대하여 콜백(call back)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2019년 학교폭력 신고·상담건수는 61,302건으로 전년대비 0.9% 감소하였다.

[그림 9-2-1] 학교폭력 신고 추이

(단위: 건)



자료: 경찰청(2020), 경찰백서.

2012년 6월부터 '학교전담경찰관제도'가 활성화되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신고접수와 사건처리는 물론이고, 가·피해학생 사후관리도 학교와 협력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전담해 왔다. 2019년에 전국 지역별로 1,138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이 1인당 10.9개교를 담당하고 있다. 2017년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6에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었고,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영역을 폭력사안 대응 및 위기청소년 집중관리 중심으로 전문화하였다. 학교전담경찰관은 주기적으로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 및 교사 면담을 실시하고 학교폭력 현황을 파악하며 117홍보 및 학교폭력 대응요령 등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사례 위주의 특별예방교육, 폭력사안 대응, 위기청소년 선도·관리에 집중하고 있으며, 학교는 학생 생활지도와 일반적 예방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 나. 유해환경 정화활동

정보통신산업의 발달로 인터넷 및 미디어에 폭력·음란성 매체물이 범람하고, 신종 풍속업소 등 유해업소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청소년 탈선과 이를 조장하는 유해환경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각종 음란·폭력성 매체물과 술,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을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유흥주점·비디오방 등 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범에 대하여 연 2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19년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범 총 8,399명을 적발하였다. 이 가운데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등 유해약물 단속 위반자가 7,617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성적퇴폐나 풍기문란 등 유해행위를 한 자는 463명,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시키거나 출입하게 한 자는 299명,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를 통해 판매·대여하거나 포장 표시한 자는 20명에 이르렀다.

〈표 9-2-3〉 연도별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범 단속 현황

(단위: 명)

연도	구분	계	단속내용				조치	
			유해업소	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행위	구속	불구속
2009		8,567	1,544	291	6,230	502	4	8,563
2010		8,154	1,351	442	5,882	479	10	8,144
2011		9,575	1,690	1,039	6,337	509	6	9,569
2012		14,067	1,414	870	11,158	625	46	14,021
2013		13,438	1,707	1,287	9,980	464	8	13,430
2014		8,348	870	189	6,888	401	5	8,343
2015		9,268	327	185	8,364	392	0	9,268
2016		9,313	412	86	8,444	371	1	9,312
2017		9,750	360	70	8,927	393	-	-
2018		9,567	276	71	8,800	420	-	-
2019		8,399	299	20	7,617	463	-	-

자료: 경찰청(2010~2020). 경찰백서.

## 다. 선도프로그램 운영

경찰은 소년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소년법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경찰청별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청소년단체와 협조하여 ‘사랑의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비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을 통하여 소년범죄 예방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성인이 되어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교육하고 있다. 2019년도에는 총 18,929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교실’ 선도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청소년 전문단체와 연계하는 ‘사랑의 교실’ 외에도 신경정신과 병원과 연계하여 실시되는 ‘표준선도프로그램’과 경찰관서 자체에서 개발하여 실시하는 ‘자체선도프로그램’이 있다. 2015년에는 21,789명에 대한 선도프로그램이 실시되었으나, 2019년에는 25,940명으로 참여인원이 대폭 증가하는 등 경찰에서의 선도프로그램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표 9-2-4〉 연도별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운영현황

(단위 : 개소, 명)

연도	구분 참여 인원	사랑의 교실		표준선도 프로그램		자체선도프로그램	
		운영단체	참여인원	운영병원	참여인원	운영관서	참여인원
2015	21,789	118	5,985	45	463	228	23,366
2016	20,105	126	5,861	52	254	235	15,341
2017	20,092	145	9,559	60	179	195	13,990
2018	25,714	183	12,508	51	214	185	10,354
2019	25,940	245	18,929	51	196	165	6,815

자료 : 경찰청(2016~2020). 경찰백서.

## 라. 명예경찰소년소녀단 운영

명예경찰소년소녀단은 경찰, 학교, 선도단체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스스로가 각종범죄 및 제반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봉사활동과 교통질서 등 기초질서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초등학교 4~6학년과 중학생 중에서 선발하는 제도이다. 1999년 10월 18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명예경찰 포돌이·포순이 소년단’을 발대한 것을 시작으로, 1999년 12월



3일 명예경찰소년단 전국 확대 및 육성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 전국학교로 선발대상을 확대하여 2016년 전국 1,327개교 15,883명의 명예경찰소년단이 활동하였다. 그러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2017년부터는 명예경찰소년단을 희망하는 경찰서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학교를 지정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명칭을 명예경찰소년소년단으로 개칭하여 2019년 265개 초·중학교를 중심으로 3,556명의 학생을 명예경찰소년소년단으로 선발하였다.

〈표 9-2-5〉 연도별 명예경찰소년소년단 현황

(단위 : 개교, 명)

연도	구분	실시학교	명예경찰소년소년단
2009		2,153	24,323
2010		1,719	20,053
2011		1,510	19,250
2012		1,422	16,935
2013		1,644	17,853
2014		1,520	17,395
2015		1,431	17,690
2016		1,327	15,883
2017		632	7,606
2018		444	5,648
2019		265	3,556

자료 : 경찰청(2010~2020). 경찰백서.

명예경찰소년소년단은 청소년의 주인의식 함양을 위해 따돌림을 당하거나 가정환경이 불우한 학생이나 저학년 어린이 등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들과 연대감 쌓기뿐만 아니라 기초질서 준수를 위한 교통캠페인, 경찰서 견학 및 112 순찰, 도보순찰 체험 등을 하고 있다. 또한 명예경찰이 학교 폭력에 대하여 지도교사 및 경찰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학교폭력 방지활동도 하고 있다.

## 마.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

경찰청은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선도·지원계획 및 발굴 강화계획을 수립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발굴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2019년 6,335명의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하였고, 이 중 6,576명에 대하여는 ‘청소년지원센터’ 등에 연계하였다.

〈표 9-2-6〉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현황(2017~2019)

(단위 : 명, 건)

구분	발견인원	연계조치건수						미연계
		계	지원센터	가정복귀	학교복귀	CYS-Net 등 기타 연계	선도 프로그램	
2017	8,737	7,129	5,158	-	412	876	683	1,608
2018	6,743	6,060	4,801	-	417	185	657	683
2019	6,335	6,576	5,640	-	170	281	485	-

자료 : 경찰청(2017~2020). 경찰백서.

## 2. 검찰의 예방활동

### 가. 우범소년 결연사업

‘우범소년 결연사업’은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95년 11월 1일부터 서울·부산·광주·제주지검 및 산하 지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던 중, 1995년 12월 6일 국무총리 주관 하에 ‘학교폭력근절대책 추진회의’에서 검찰 추진과제의 하나로 선정되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 동 사업은 법사랑위원이 교육기관 등의 협조 하에 우범소년과 결연을 맺고, 그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선도하여 정상적인 학업과 생업에 복귀시킴으로써 소년범죄나 비행을 사전에 방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결연대상자는 학교에서 퇴학·정학 등 징계처분을 받은 자와 폭력서클에 가입하거나 학교주변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 중심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결연대상자는 선도결연회의를 통하여 선정하며, 결연활동 중 소년이 소재불명이 되거나 선도에 불응하여 결연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원 소년부에 통고하도록 하고 있다.

2019년도 우범소년 결연사업 가운데 선도결연 회의 및 간담회는 1,976회 개최되었고, 법사랑위원 교육은 524회 실시되었다. 우범소년 중 결연 대상 4,461명을 선정하여 실제로 5,263명과 결연을 맺었다.

〈표 9-2-7〉 연도별 우범소년 결연사업 추진실적

(단위 : 회, 명)

연도	구분	선도결연 회의 및 간담회	결연대상 선정인원	결연인원	지역추진 대회	법사랑위원 교육
2009		2,030	6,970	6,389	512	997
2010		1,730	5,336	4,511	460	1,491
2011		1,721	3,546	3,545	386	1,857
2012		2,206	7,049	7,205	473	2,348
2013		2,221	5,332	7,101	465	1,271
2014		1,956	4,868	5,723	353	401
2015		2,581	5,050	6,032	342	602
2016		2,447	5,925	6,567	349	1,118
2017		2,718	6,129	7,169	372	654
2018		2,387	5,046	5,955	567	432
2019		1,976	4,461	5,263	751	524

자료 : 대검찰청(2010~2020). 검찰연감.

## 나. 학교담당검사제

학교담당검사제는 1995년 11월 27일 대통령의 학교주변 폭력근절지시에 따라, 같은 해 12월 6일 국무총리 주관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검찰의 3대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다. 이후 학원폭력 근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학원폭력방지 및 처리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여 1996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

학교담당검사제는 일정 지역 내의 수개의 중·고교에 대하여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유관기관이나 민간 봉사차원의 학원폭력 예방 및 단속활동과의 유기적인 지원·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예방·선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학교담당검사는 선도보호위원 및 교사선도위원, 학부모위원 등의 구성원들과 정기 및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원폭력 정보수집 및 예방선도 활동방안을 모색하고, 탈선 초기의 학생 상대 개별면담과 학부모 접촉을 통한 비행의 사전방지, 청소년 범죄 다발지역에 대한 합동순찰, 담당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한 담당검사의 선도강연 등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학교담당검사의 활동실적을 살펴보면, 합동순찰 횟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우범학생대상 면담이나 선도강연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학교담당검사는 2019년 8,431회 합동순찰을 실시하였고, 2,130건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5,587명의 우범학생과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1,595건의 선도강연을 하였다.

〈표 9-2-8〉 연도별 학교담당검사제 활동실적

(단위 : 회, 명)

연도	구분	합동순찰	간담회	우범학생 면담인원	선도강연
2009		5,651	2,063	10,576	1,466
2010		6,691	1,631	11,997	1,176
2011		6,125	1,667	8,971	879
2012		6,632	2,079	15,360	1,904
2013		8,537	1,917	12,750	1,377
2014		7,430	2,259	13,398	1,380
2015		7,464	2,120	8,752	1,501
2016		6,840	2,346	8,310	1,472
2017		8,040	2,387	7,762	1,645
2018		7,472	2,911	7,189	979
2019		8,431	2,130	5,587	1,595

자료 : 대검찰청(2010~2020). 검찰연감.

## 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통상의 기소유예 결정을 함에 있어서 계속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범법소년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은 민간 범죄예방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도 도입의 배경은 소년이 성년과 달리 인격형성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감수성이 예민하여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개선의 가능성도 많으므로 죄질이 다소 중하다 하더라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소년에 대하여는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 수용하기보다는 사회에서 덕망과 학식을 갖춘 법사랑위원에게 맡겨 선도·보호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초점이 있다.

1978년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소년에 대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처음 시행하였고, 1981년 1월 20일 법무부훈령 제88호 「소년선도보호지침」이 제정되어 전국에 확대 실시된 뒤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현재는 1996년 12월 27일 개정된 법무부훈령 제373호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소년선도보호 방법은 ‘접촉선도’, ‘원호선도’로 구분할 수 있다. ‘접촉선도’라 함은 귀주처가 있는 유예소년과 접촉을 갖고 상담·지도 등을 통해 소년의 반사회성을 교정하고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며, 정서를 순화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선도방법을 말한다. ‘원호선도’라 함은 귀주처가 없거나, 있더라도 귀주시키는 것이 부적당한 유예소년에 대하여 선도보호위원의 주거나 복지시설에서 기거하게 하고, 의·식·주를 제공하면서 접촉선도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1981년부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1981년 4,070명에 대하여 선도유예를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3,000명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다. 특히 단순기소유예에 비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검찰단계에서도 일정한 개입이 실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9-2-9〉 연도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실적

(단위 : 명, %)

연도	구분	소년범죄(A)	기소유예(B)	선도조건부 기소유예(C)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비율(C/B×100)
2009		113,022	57,951	7,104	12.3
2010		89,776	45,313	2,967	6.5
2011		83,068	41,720	1,363	3.3
2012		107,490	44,349	5,812	13.1

연도	구분	소년범죄(A)	기소유예(B)	선도조건부 기소유예(C)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비율(C/B×100)
2013		91,633	34,866	4,548	13.0
2014		77,594	28,759	3,473	12.1
2015		71,035	28,333	3,413	12.0
2016		76,000	26,558	3,409	12.8
2017		72,759	25,416	3,495	13.8
2018		66,142	20,237	3,031	15.0
2019		66,247	15,129	3,000	15.0

자료 : 1) 대검찰청(2010~2020). 검찰연감.

2) 대검찰청(2010~2020). 범죄분석.

기존 검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및 보호관찰소위탁조건부 기소 유예 이외 다양한 조건부 기소유예를 소년범에게 적용함으로써 선도 및 재범방지의 효과를 제고하고 있다. 그 종류를 살펴보면,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소년원에서 전문가를 통해 일정기간 ‘심리검사’, ‘정신교육’, ‘분노 조절 훈련교육’ 등을 받도록 함으로써 ‘재범방지’, ‘인성개발’ 등의 측면에서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소년분류심사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자원봉사 대학생이 범죄청소년과 1:1로 결연하여 상담·스포츠·문화활동·봉사활동 등의 일정한 프로그램을 거치면서 대상 청소년을 선도하는 ‘멘토 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청소년전문상담가로부터 전문적 상담을 받게 하는 조건으로 소년범을 기소유예 처분하여 청소년 비행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사회봉사활동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등이 있다.

2019년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중 절도가 1,18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타 614명, 폭력 539명, 교통사범 401명, 재산범죄 230명의 순이었다.

〈표 9-2-10〉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죄명별 현황(2013~2019)

(단위: 명)

연도	구분	계	폭력행위 등	절도	강도	강간	교통사범	재산범죄	기타
2013		4,548	1,015	2,068	12	32	424	345	652
2014		3,473	672	1,477	6	12	375	241	690

구분 연도	계	폭력행위 등	절도	강도	강간	교통사범	재산범죄	기타
2015	3,413	664	1,503	1	23	328	325	569
2016	3,409	521	1,314	3	39	368	353	811
2017	3,495	582	1,422	3	8	515	293	672
2018	3,031	571	1,220	2	16	397	217	608
2019	3,000	539	1,182	4	30	401	230	614

자료 : 대검찰청(2014~2020). 검찰연감.

2019년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중 16세 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17세, 18세, 15세, 14세 순으로 높았다.

〈표 9-2-1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연령별 현황(2013~2019)

(단위 : 명)

구분 연도	계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2013	4,548	649	928	1,122	1,081	607	161
2014	3,473	477	723	874	830	488	81
2015	3,413	341	671	866	780	534	221
2016	3,409	258	492	755	856	643	405
2017	3,495	334	662	877	893	585	144
2018	3,031	329	669	637	655	518	223
2019	3,000	285	541	674	645	573	282

자료 : 대검찰청(2014~2020). 검찰연감.

2007년 12월 21일, 「소년법」을 일부 개정하여 '검사결정전조사제도(「소년법」 제49조의2)'를 도입하여 검사 처분 전에 비행원인을 진단함으로써 비행소년에 대한 교육, 보호자 교육 등을 통해 비행인자를 사전에 제거하여 소년의 교화·개선에 가장 적합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13년 5월 8일부터 학교폭력 등 학생사건에 대한 '교사의견 청취제도'를 시행하여, 소년사건에 대한 검사 처분 전에 비행원인 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다양한 조건부기소유예 제도 등과 연계하여 소년의 교화·개선에 가장 적합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선도 또는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 등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소년법」 제49조의3).

## 라.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1995년 1월 5일, 「갱생보호법」을 폐지하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면서 동법 제15조제3호(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선도를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의 실시)에 근거하여 1995년 4월 15일 법무부훈령 제332호 보호관찰소선도위탁규정이 제정·시행된 이래, 현재는 개정된 법무부 훈령 제620호(2008. 6. 3.)에 따라 위탁·시행되고 있다.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제도는 선도보호위원회에 의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는 달리 보호관찰소의 장이 선도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보호관찰소장은 선도대상자를 담당할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 선도하도록 하고 있다.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방법은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선도교육·집단치료 또는 상담 등 적절한 지도를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도대상자의 가족, 이웃사람, 친구 등과 접촉할 수 있고, 선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학비 보조, 취학·취업 알선, 기타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은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데 반하여, 보호관찰소 위탁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은 소년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연령과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선도가 요구되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호관찰소에서는 2019년 1,845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을 실시하였고, 그 중 재범 등으로 위탁이 취소된 인원은 100명이었다.



〈표 9-2-12〉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현황

(단위: 명)

연도	구분	기소유예자 전체	선도위탁 상황			
			선도대상자	계속(연장포함)	해 제	취 소
2009		467,132	3,807	3,669	2,382	129
2010		363,106	4,411	4,038	1,915	163
2011		353,564	4,950	6,716	2,833	313
2012		348,146	4,976	7,423	2,912	408
2013		330,407	4,495	7,900	2,439	269
2014		324,748	5,112	4,360	2,638	255
2015		354,370	5,184	4,052	3,098	353
2016		368,001	4,419	2,776	2,087	253
2017		325,215	4,371	2,549	1,679	205
2018		266,032	2,519	2,011	1,162	112
2019		226,842	1,845	1,373	905	100

자료 : 대검찰청(2010~2020). 검찰연감.

### 3. 법무부의 예방활동

#### 가. 청소년꿈키움센터 운영

법무부는 2007년 7월 23일 부산, 광주, 대전, 청주, 창원, 안산 등 6개 지역에 ‘청소년비행 예방 센터’를 설치하고 전문 직원 56명을 배치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현재 17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sup>1)</sup> 기관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 및 교육대상자의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하고자 2013년 11월부터 대외명칭을 ‘청소년꿈키움센터’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1) 2020년 9월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가 설치되어, 2020년 말 현재 총 19개의 청소년꿈키움센터가 운영 중이다.

청소년꿈키움센터는 그동안 소년분류심사원과 대행소년원에서 담당하던 부적응학생(일반 학교에서 의뢰)과 초기단계의 비행 청소년(검찰 및 법원 등 사법기관에서 의뢰)에 대한 대안 교육과 비수용 범죄소년에 대한 비행진단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자교육, 일반학생 및 국민에 대한 법교육,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문제 전문가에 대한 전문교육, 각종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무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비행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표 9-2-13〉 청소년꿈키움센터의 주요 임무

구분	기관명	설립일	교육과정
청소년 꿈키움 센터	부산·대전	2007. 7.	청소년꿈키움센터 ※ 설립일 : 부산('07.7.), 대전('17.4.) - 상담조사 - 결정 전 조사 - 대안교육 - 보호자교육 - 청소년 심리상담  솔로몬로파크 ※ 설립일 : 대전('07.7.), 부산('16.7.) - 법교육 및 법문화 직무연수 -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안산	2007. 7.	- 상담조사 - 결정 전 조사 - 대안교육 - 보호자교육 - 청소년 심리상담
	창원·청주·광주	2007. 7.	
	대구·서울남부·서울북부·인천	2012. 6.	
	순천·전주·춘천	2013. 11.	
	부산동부·울산·수원	2014. 12.	
	제주	2016. 5.	

주 : 부산·대전센터는 청소년꿈키움센터와 솔로몬로파크 기능 병행.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범죄예방팀(2020).

청소년꿈키움센터는 2012년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으로 2013년 「현장중심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이 추진되면서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보호자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가족캠프,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주말 학교폭력 예방캠프, 학교폭력 예방 교원직무연수 등 학생, 보호자,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 나. 일반학교 부적응학생 등 대안교육 실시

2002년부터 지역사회 일반 청소년들의 비행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꿈키움센터는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근거하여 “중·고등학생 특별교육 이수기관”으로 지정받아 일반학교 부적응학생에 대한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안교육으로는 진로·성격 등 심리검사, 심성훈련, 체험교육 등 1~5일 과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대안교육 수료증을 수여하고 교육결과를 해당학교에 통보하여 학생 생활지도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학부모에게 적성검사 결과 등 자녀지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다. 기소유예 및 보호처분 대상자 등에 대한 대안교육 실시

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해당 지방검찰청과 협의를 통해 기소유예대상자, 선도유예자에 대한 체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비행성의 조기개선과 함께 재비행 방지에 노력을 기하고 있다. 교육은 비합숙 체험교육방식으로 심리검사, 심성훈련 등 1~5일 과정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또한 2008년부터 소년원법이 개정되면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제42조의2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대안교육명령을 받은 소년에 대해 1개월의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대안교육을 받는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대부분은 학교에서 학교폭력 등으로 의뢰되는 일반학생이고, 다음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대상자 비율도 높은 편이다. 2019년 총 48,698명이 대안교육을 받았으며, 이 중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인해 대안교육을 받은 인원은 41,557명이고, 검찰에서 기소유예되어 대안교육을 받은 인원이 4,608명, 법원에서 보호처분의 일환으로 대안교육을 받은 인원은 2,533명이다.

〈표 9-2-14〉 대안교육 실시 현황

(단위: 명)

연도	구분	계	학교폭력 가해학생 등	검찰 기소유예	법원 보호처분
2009		7,348	5,629	1,425	294
2010		12,862	11,396	1,124	342
2011		23,382	21,280	1,191	911
2012		30,122	26,814	2,034	1,274
2013		23,013	19,739	2,767	507
2014		23,630	18,359	4,993	278
2015		36,638	31,298	5,123	217
2016		49,317	43,305	5,757	255
2017		54,019	48,410	5,416	193
2018		50,635	45,180	4,365	1,090
2019		48,698	41,557	4,608	2,533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범죄예방팀(2020).

## 라. 청소년심리검사실 운영

1996년 2월부터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과 분류심사업무를 대행하는 4개 소년원에서 청소년 심리검사실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심리검사실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능·적성·성격 등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소질과 특성에 맞는 진로지도 지침을 제공, 가정·학교·사회단체 등에서 의뢰한 문제 청소년에 대해서도 비행 성향을 규명하여 구체적인 개선지침을 제시하는 등 청소년문제 전문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청소년심리검사실을 이용한 청소년은 2019년 12,322명이었다.

〈표 9-2-15〉 연도별 청소년심리검사실 운영 현황

(단위: 명)

연도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인원	5,256	6,438	7,973	9,445	9,377	10,020	11,046	12,473	12,933	10,868	12,322

자료: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범죄예방팀(2020).

## 마. 법교육

법교육은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한국법문화진흥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법무부는 2005년 3단계 5개년 법교육 추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초·중·고·대학생 및 일반인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법교육시설 및 법문화 체험관 조성, 법교육 교사 양성, 자원봉사자 교육 등을 하고 있다. 특히 2008년 3월 28일 「법교육 지원법」이 제정되어 대국민 법의식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법무부에서는 2019년 청각·시각 장애인을 위해 ‘쉽게 쓴 한국인의 법과 생활’을 수어영상도서로 개발하여, 수어영상 및 디지털 음성서비스를 국립장애인도서관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에서 지원하는 등 수요자별 맞춤형 법교재를 개발하였다. 또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법교육 유관단체와의 협력 및 민간 법교육도 지원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대전에 법 체험기관인 ‘솔로몬로파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부산 솔로몬로파크를 건립하였고, 2022년에는 광주에 솔로몬로파크를 준공하여 개소할 예정이다.

## 바. 보호자특별교육

2008년 6월 개정 「소년법」 시행으로 보호자특별교육명령이 신설됨에 따라, 법원 소년부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호자에게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소년법」 제32조의2 제3항). 보호자특별교육을 위하여 법무부는 청소년 이해, 자녀지도방법, 자녀-부모관계 회복 등에 관한 내용을 위주로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운영하고 있다. 보호자교육을 받은 대상자 수는 해마다 대체로 증가하고 있고 있다. 2019년의 경우 총 10,373명에 대한 보호자 교육이 실시되었고, 그중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경우는 3,840명, 자원에 의한 경우는 6,533명이었다.

〈표 9-2-16〉 연도별 보호자교육 실적

(단위: 명)

연도	구분	계	보호자특별교육명령(의무)	일반위탁소년 보호자(자원)
2009		5,465	455	5,010
2010		6,626	293	6,333
2011		7,498	483	7,015
2012		8,101	527	7,574
2013		8,246	1,038	7,208
2014		9,192	1,237	7,955
2015		8,964	1,432	7,532
2016		9,465	1,871	7,594
2017		9,777	2,111	7,666
2018		12,024	3,186	8,838
2019		10,373	3,840	6,533

주 : 청소년꿈기움센터 및 소년원의 보호자교육 실적.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2020).

## 제3장

##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건처리

소년범죄에 대하여는 일반 형사소송절차에 의한 형사처벌 이외에 비행소년의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 한 보호처분 등을 인정하고 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선도·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범죄소년에 대하여만 형사처벌을 하고, 개선 가능성이 있는 범죄소년에 대하여는 선도·보호 측면에서 교육적인 처우를 실시하고 있으며,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도 가능하다. 비행소년의 처리기관은 경찰, 검찰, 법원 등이 있다.

## 1. 경찰단계의 사건처리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가 발견되면, 경찰에서는 범죄내용과 신상 관계, 환경 등을 조사하여 가정법원 소년부에 보내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형사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2015년부터 청소년 범죄자 수가 점차 감소하여 2019년에 경찰이 검거한 청소년 범죄자 수는 66,204명이었다. 경찰에 검거된 청소년 범죄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력범이 19,699명, 절도범이 17,151명, 강력범이 2,367명이었다. 경찰에 검거된 청소년 강력범 가운데 강간범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9-3-1〉 청소년 범죄자 유형별 검거현황(2013~2019)

(단위: 명)

연도	구분	계	강력범				절도	폭력	특별범 등	
			소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2013		90,694	3,081	21	616	2,303	141	32,819	22,739	32,055
2014		78,794	2,630	33	414	2,026	157	26,209	20,082	29,873

연도	구분 계	강력범					절도	폭력	특별범범 등
		소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2015	80,321	2,392	18	448	1,830	96	26,100	20,144	31,685
2016	76,356	2,418	19	316	1,936	147	22,589	20,468	30,881
2017	72,752	2,312	17	243	1,933	119	20,032	21,996	28,412
2018	66,259	2,272	9	215	1,939	109	16,957	20,695	26,335
2019	66,204	2,367	19	361	1,888	99	17,151	19,699	26,987

자료 : 경찰청(2014~2020). 경찰백서.

경찰에 검거된 청소년 범죄자의 재범률을 살펴보면, 2013년 41.6%를 기록하였다가 이후 감소하여 2019년에는 32.4%(21,450명)를 차지하였고, 이는 전년대비 1.3%p 감소한 수치이다.

〈표 9-3-2〉 연도별 청소년 범죄자의 재범 현황

(단위 : 명, %)

연도	구분	검거인원	청소년 재범자	재범률
2013		90,694	37,752	41.6
2014		78,794	29,798	37.8
2015		80,321	28,979	36.1
2016		76,356	26,244	34.4
2017		72,752	24,008	33.0
2018		66,259	22,324	33.7
2019		66,204	21,450	32.4

자료 : 경찰청(2014~2020). 경찰백서.

‘소년법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란 청소년 범죄자의 조사과정에서 범죄심리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로, 가정·학교 환경 등 43개 비행촉발요인과 공격성·반사회성 등 344개 인성평가 항목을 심층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년법의 선도 및 재범가능성을 판단하여 전문적인 선도프로그램과 연결시켜 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2007년부터는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 운영 시, 가해학생 조사에 전문가 참여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전문가의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저위험군 학생은 사랑의 교실과 연계하여 경찰단계에서 선도 교육을 받도록 하고, 고위험군 학생은 재범방지를 위해 법원·검찰이 운영하는 선도프로그램을 연결해 주고 있다.

전문가 참여비율은 2009년 4.7%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전체 청소년 범죄자의 16.4%에 해당하는 10,847명이 전문가 참여조사를 받았다.

〈표 9-3-3〉 연도별 청소년 범죄 조사 시 전문가 참여제 운영 현황

구분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운영관서(개소)	60	70	100	120	137	180	251	252	254	254	255
전체소년범(명)	118,058	94,862	86,621	107,018	90,694	78,794	80,231	76,356	72,752	66,259	66,204
참여소년범(명)	5,507	7,172	7,639	10,258	11,548	8,968	10,401	15,312	11,879	10,501	10,847
참여비율(%)	4.7	7.6	8.8	9.6	12.7	11.4	13.0	20.1	16.3	15.8	16.4

주 : 경찰청의 전체소년범 수치와 검찰청의 전체소년범 수치가 다른 것은 검찰단계에서 촉법소년의 수치가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자료 : 경찰청(2010~2020). 경찰백서.

## 2. 검찰단계의 사건처리

검찰에서는 경찰에게 넘겨받은 청소년사건을 범죄혐의가 없거나 죄가 없거나 공소권이 없는 경우 불기소 처분을 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52조). 재범가능성이 희박하고 선도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기소유에 처분을 하고(「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이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소년법」 제49조 제1항).

최근 10년간 검찰의 청소년 범죄 처리내역을 보면, 청소년 범죄의 기소율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반면에 불기소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소년보호송치 비율은 2011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5년 32.5%이었으나 최근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청소년 범죄자 52,973명 중 소년보호송치 39.4%, 기소유에 28.6%, 구공판 9.1%,

구약식 4.1%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성인범죄와 비교했을 때 청소년 범죄의 경우 기소율이 낮은 반면에, 기소유예 등 불기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소년보호송치는 2009년 28.7%에서 2011년 36.8%까지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 후,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검찰단계에서 소년부송치율과 불기소처분율이 여전히 높다는 것은 검찰단계에서 청소년 범죄에 대하여 형사처벌 보다는 다이버전이나 보호처분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표 9-3-4〉 연도별 청소년 범죄 처리 현황

(단위: 명, (%))

연도	계	기 소			불 기 소					소년 보호 송치	가정 보호 송치	성매매 보호 송치	아동 보호 송치	참고인 중지	기소 중지
		소계	구공판	구약식	소계	혐의 없음	기소 유예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2009	113,022 (100.0)	7,795 (6.9)	3,929 (3.5)	3,866 (3.4)	71,100 (62.9)	4,684 (4.1)	56,715 (50.2)	1,184 (1.0)	8,517 (7.5)	32,453 (28.7)	37 (0.0)	16 (0.0)	-	86 (0.1)	1,535 (1.4)
2010	89,776 (100.0)	5,443 (6.1)	2,913 (3.2)	2,530 (2.8)	52,685 (58.7)	4,801 (5.3)	42,021 (46.8)	339 (0.4)	5,524 (6.2)	30,143 (33.6)	9 (0.0)	11 (0.0)	-	93 (0.1)	1,392 (1.6)
2011	83,060 (100.0)	4,691 (5.6)	3,025 (3.7)	1,666 (2.0)	46,224 (55.7)	4,151 (5.0)	36,582 (44.0)	272 (0.3)	5,219 (6.3)	30,587 (36.8)	10 (0.0)	7 (0.0)	-	86 (0.1)	1,455 (1.8)
2012	102,871 (100.0)	7,877 (7.7)	4,898 (4.8)	2,979 (2.9)	56,668 (55.1)	6,113 (5.9)	43,013 (41.8)	324 (0.3)	7,218 (7.0)	36,478 (35.5)	21 (0.0)	-	-	141 (0.1)	1,686 (1.6)
2013	88,062 (100.0)	8,758 (9.9)	5,293 (6.0)	3,465 (3.9)	47,486 (53.9)	5,925 (6.7)	34,914 (39.6)	202 (0.2)	6,445 (7.3)	29,641 (33.7)	35 (0.0)	2 (0.0)	-	108 (0.1)	2,032 (2.3)
2014	72,964 (100.0)	7,038 (9.6)	4,191 (5.7)	2,847 (3.9)	39,559 (54.2)	5,379 (7.4)	27,601 (37.8)	182 (0.2)	6,397 (8.8)	23,743 (32.5)	50 (0.1)	4 (0.0)	-	130 (0.2)	2,440 (3.3)
2015	56,050 (100.0)	6,252 (11.2)	4,034 (7.2)	2,218 (4.0)	30,198 (53.9)	4,518 (8.1)	19,623 (36.0)	105 (0.2)	5,952 (10.6)	18,216 (32.5)	119 (0.2)	-	-	54 (0.1)	1,211 (2.2)
2016	60,669 (100.0)	6,113 (10.1)	3,755 (6.2)	2,358 (3.9)	32,235 (53.1)	4,815 (7.9)	21,044 (34.7)	136 (0.2)	6,240 (10.3)	20,597 (33.9)	147 (0.2)	-	4 (0.0)	34 (0.1)	1,539 (2.5)
2017	58,218 (100.0)	5,833 (10.0)	3,449 (5.9)	2,384 (4.1)	31,371 (53.9)	4,636 (8.0)	20,108 (34.5)	121 (0.2)	6,506 (11.2)	20,578 (35.3)	136 (0.2)	-	2 (0.0)	29 (0.0)	269 (0.5)
2018	52,278 (100.0)	6,168 (11.8)	3,950 (7.6)	2,218 (4.2)	25,964 (49.7)	4,255 (8.1)	15,939 (30.5)	126 (0.2)	5,644 (10.8)	19,648 (37.6)	131 (0.3)	-	3 (0.0)	27 (0.1)	337 (0.6)
2019	52,973 (100.0)	6,498 (12.3)	4,308 (9.1)	2,190 (4.1)	25,102 (47.4)	4,729 (8.9)	15,129 (28.6)	114 (0.2)	5,130 (9.7)	20,885 (39.4)	177 (0.3)	-	4 (0.0)	26 (0.0)	281 (0.5)

자료: 대검찰청(2010~2020). 범죄분석.

### 3.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비행진단 및 처우

#### 가. 개요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위탁한 소년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자질과 비행원인을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어떠한 처분이 적합한가를 분류심사하는 법무부 소속기관이다. 1977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 처음 개원하였고, 이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에 설치되었다가 2007년 7월 소년보호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서울 소년분류심사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류심사원은 청소년비행 예방센터 등으로 전환되어 운영 중에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않은 부산·대구·광주·전주·대전·춘천·제주 등 7개 지역에서는 소년원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소년원이 설치되지 않은 인천·수원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위탁소년의 수용관리와 분류심사업무를 맡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소년의 개체적 원인 규명, 소년비행의 조기발견과 치료, 소년비행의 실증적 요인 규명, 청소년 비행 예방 및 재비행 방지를 목적으로 위탁소년의 요보호성 여부와 그 정도를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그 결과를 법원 소년부에 보내 조사·심리 시에 참고하도록 하며, 소년원·보호관찰소에 처우지침을 제공하고 보호자에게 사후지도 방법을 권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나. 위탁소년의 수용

위탁소년의 수용은 「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소년부의 위탁결정서에 의한다. 새로 수용된 위탁소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건강진단과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보호자에게 수용사실을 통지한다. 위탁소년은 성별, 연령, 비행의 질, 공범 및 질병 유무 등을 고려하여 분류·수용되고, 인권보호와 보건·위생, 비행의 감염방지에 적정을 기함과 동시에 소년들이 교육적 환경에서 안정감을 갖고 생활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년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법원소년부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009년 소년분류심사원의 신수용인원은 6,065명이었고, 이후 증감을 반복하여 2019년 4,955명을

기록하였다. 1일 평균 수용인원은 2009년 399명에서 2010년 419명, 2011년 456명, 2012년 464명, 2013년 471명으로 계속 증가하였다가 2014년 메르스의 여파 등으로 집단수용 자체 분위기로 인해 위탁인원이 422명으로 감소하였다.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9년 396명이 수용되었다.

〈표 9-3-5〉 연도별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소년 수용 현황

(단위: 명)

구분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신수용인원	6,065	6,295	6,682	6,582	6,711	5,909	6,178	5,408	5,909	5,703	4,955
1일 평균 수용인원	399	419	456	464	471	422	439	398	444	431	396

자료 : 소년보호종합교육관리시스템(TEAMS).

## 다. 처우·교육활동

위탁소년에 대해서는 성장기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알맞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급식관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차림표에 따라 급식하며 피복, 침구류, 세면용품, 학용품 등 생활용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소년원마다 의사와 간호사를 배치하여 위탁소년의 건강관리 및 질병을 치료하고, 시설 내 치료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부병원에 통원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면회는 위탁소년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허용하고 있다.

위탁소년의 교육은 언어·행동·예절·규범 등 기초적인 생활지도와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심리극·분노조절훈련·감수성훈련 등 다양한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체육활동·시청각교육·독서지도·레크리에이션 등 심성순화 교육과 기독교·천주교·불교·원불교 등 종교별 관계 인사를 초빙하여 신앙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지도층 인사를 소년보호위원으로 위촉하여 위탁 소년의 신상 및 진로문제에 관한 상담활동을 전개하고, 어머니회를 운영하여 무의탁소년 등 불우소년에 대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 라. 분류심사

분류심사관, 비행소년의 요보호성 여부와 그 정도를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교정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밝혀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여기에서 요보호성이란 소년의 성격과 행동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방지할 경우 범죄로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인을 말하며, 요보호성 여부의 판단이 분류심사에서 중요요소가 된다.

분류심사는 심사대상에 따라 ‘수용분류심사’와 ‘외래분류심사’, 실시방법에 따라 ‘일반분류심사’와 ‘특수분류심사’로 구분한다. ‘수용분류심사’는 법원 소년부에서 위탁한 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외래 분류심사’는 가정·학교·사회단체 등에서 의뢰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분류심사는 수용된 모든 소년을 대상으로 하되, 문제 또는 비행요인이 비교적 간단한 소년에 대하여 면접조사와 신체의학적 진찰, 표준화검사, 자기기록 및 행동관찰 등을 주로 실시하며, 일반분류심사를 한 결과 문제 또는 비행요인이 중대하고 복잡한 소년에 대하여 개별검사와 정신의학적 진단, 자료조회 및 현지조사 등의 특수분류심사를 추가하여 실시한다. 이와 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담당 분류심사관과 심리학·교육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분류심사위원회에서 재비행 위험성 정도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처우지침, 예후(豫後) 및 판정 종류 등을 기재한 분류심사 결과를 법원 소년부에 송부함으로써 심리자료로 제공하고, 보호처분 집행기관인 소년원·보호관찰소 또는 위탁소년의 보호자 등에게 지도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2019년에 수용된 소년 중 분류심사를 받은 소년은 4,755명이었다.

〈표 9-3-6〉 연도별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 인원 현황

(단위: 명)

구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5,723	6,007	5,435	6,357	5,543	5,804	5,116	5,614	5,385	4,755

자료: 법무부(2020), 법무연감.

## 마. 소년심판절차 개선

법무부는 청소년 비행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 구속송치 대상자 위주로 시행해 오던 분류심사

제도를 불구속 송치자를 포함한 모든 소년보호사건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보호소년 상담 조사제’와 ‘분류심사관 심리참여제도’를 대법원과 최종 협의를 거쳐 200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1) 보호소년 상담조사제 도입

2003년 7월에 새롭게 도입된 ‘보호소년 상담조사제’는 불구속 송치로 보호자 등에게 위탁되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원 소년부 판사 또는 가정법원 판사가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상청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주간에만 3~5일 출석하여 상담과 조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대상청소년의 성격과 행동 특징, 능력과 욕구 등 개인의 자질과 환경적 특성에 대한 조사와 비행원인 규명을 위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담당 소년부 판사에게 심리자료로 송부하는 한편, 보호자에게는 소년의 훈육과 지도지침으로 제공하고 아울러 소년의 비행성을 없애기 위한 ‘특별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시설수용에 대한 부담을 없애고, 모든 소년사건 대상자에 대하여 개인적인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 처우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판사의 소년사건 심리 시 심층적·과학적 판단에 기여하며, 상담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된 자료를 토대로 보호자에게 자녀의 지도방향 등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 제도는 대상청소년에게 집단상담, 봉사활동, 체험교육 등을 통한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상담조사제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과 7개의 대행소년원(부산·대구·광주·전주·대전·춘천·제주소년원)에서 2009년 5,627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9년 4,755명에 대해 실시하였다.

〈표 9-3-7〉 연도별 청소년 보호사건에 대한 조사 현황

(단위: 명)

연도	구분	합계	분류심사	상담조사	결정전 조사
2009		11,028	5,627	5,106	295
2010		11,421	5,723	5,301	397
2011		11,429	6,007	5,296	126
2012		10,590	5,435	5,148	7
2013		10,739	6,357	4,382	-
2014		9,804	5,543	4,261	-

연도 \ 구분	합계	분류심사	상담조사	결정전 조사
2015	9,924	5,805	4,119	-
2016	9,134	5,116	3,993	25
2017	11,222	5,614	4,179	1,429
2018	8,609	5,385	3,224	-
2019	7,176	4,755	2,421	-

주 : 상담조사 인원에는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꿈키움센터, 소년원의 실적이 포함됨.

자료 : 법무부(2020), 법무연감.

## 2) 분류심사관 심리참여제도

분류심사관 심리참여제도는 소년사건 심리과정에서 각 소년부판사가 분류심사결과 통지서에 의문이 있거나 그 보고서만으로는 소년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소년의 성행과 비행환경 등을 정확히 알고 있는 담당 분류심사관을 법정외에 참여시켜 직접 의견을 듣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대법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 사법참여 방안’의 일환이며, 소년분류심사원의 국가 후견자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소년법 이념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 4. 소년법원에서의 사건처리

소년법이나 법원 조직상 소년법원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소년법원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를 일컫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소년법원은 경찰, 검찰, 법원에서 보내온 소년사건에 대해 비행원인을 조사·심리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하고 있다.

현재 서울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수원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 대구가정법원, 부산가정법원, 울산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 외에, 의정부·춘천·청주·창원·전주·제주에 지방법원 소년부 등이 있다. 소년보호사건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전문 인력과 시설이 확보된 가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꾸준히 가정법원이 확대되어 왔다.

소년법원에서는 소년의 성격·환경·비행경위·재비행성 여부에 대한 조사관의 의견과 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관의 심사의견,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조언 등을 참고하여 소년의 보호처분을 결정한다.

2019년도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접수된 인원은 36,576명으로, 검사 송치된 인원이 23,511명(64.3%)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찰서장 송치가 10,460명(28.6%), 법원 송치가 876명(2.4%), 다른 법원 소년부에서 이송된 인원이 1,285명(3.5%)이었다. 보호자 등의 통고에 의해 접수된 인원도 매년 증가하여 2019년 444명(1.2%)을 차지하였다.

〈표 9-3-8〉 연도별 소년보호사건 접수 인원 및 접수구분 인원

(단위: 명, %)

연도	구분	계	법원 송치	검사 송치	경찰서장 송치	타법원 소년부에서 이송	보호자등에 의한 통고
2009		48,007 (100.0)	2,050 (4.3)	33,385 (69.5)	11,609 (24.2)	949 (2.0)	14 (0.0)
2010		44,200 (100.0)	2,212 (5.0)	31,715 (71.8)	9,213 (20.8)	1,026 (2.3)	34 (0.1)
2011		46,497 (100.0)	2,417 (5.2)	32,803 (70.5)	9,401 (20.2)	1,818 (3.9)	58 (0.1)
2012		53,536 (100.0)	2,848 (5.3)	36,133 (67.5)	12,799 (23.9)	1,588 (3.0)	168 (0.3)
2013		43,035 (100.0)	2,695 (6.3)	29,284 (68.0)	9,500 (22.1)	1,368 (3.2)	188 (0.4)
2014		34,165 (100.0)	1,610 (4.7)	24,110 (70.6)	7,104 (20.8)	1,146 (3.4)	195 (0.6)
2015		34,075 (100.0)	1,494 (4.4)	24,527 (72.0)	6,756 (19.8)	989 (2.9)	309 (0.9)
2016		33,738 (100.0)	1,357 (4.0)	24,319 (72.1)	6,788 (20.1)	915 (2.7)	359 (1.1)
2017		34,110 (100.0)	1,124 (3.3)	24,014 (70.4)	7,743 (22.7)	876 (2.6)	353 (1.0)
2018		33,301 (100.0)	954 (2.9)	22,578 (67.8)	8,335 (25.0)	1,027 (3.1)	407 (1.2)
2019		36,576 (100.0)	876 (2.4)	23,511 (64.3)	10,460 (28.6)	1,285 (3.5)	444 (1.2)

자료: 법원행정처(2010~2020). 사법연감.



소년법원의 판사는 검찰로부터 송부된 사건기록과 조사관의 조사의견을 종합하여 심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심리도 비공개로 진행한다. 최근 10년간 소년보호사건 처분현황을 살펴보면, 큰 차이는 없으나 보호처분 비율은 불처분이나 심리불개시에 비하여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9년 불처분결정률은 7.3%, 심리불개시율은 18.8%인 반면, 보호처분을 결정한 비율은 69.2%였다.

〈표 9-3-9〉 연도별 소년보호사건의 처분현황

(단위 : 명, (%))

연도	계	보호처분	불처분	심리불개시	타법원 이송	검사송치
2009	47,865 (100.0)	35,819 (74.8)	3,041 (6.4)	7,377 (15.4)	1,234 (2.6)	394 (0.8)
2010	45,090 (100.0)	32,416 (71.9)	3,105 (6.9)	7,338 (16.3)	1,840 (4.1)	391 (0.9)
2011	48,713 (100.0)	35,072 (72.0)	2,579 (5.3)	7,905 (16.2)	2,536 (5.2)	621 (1.3)
2012	50,771 (100.0)	36,150 (71.2)	2,278 (4.5)	9,209 (18.1)	2,441 (4.8)	693 (1.4)
2013	45,393 (100.0)	31,952 (70.4)	2,663 (5.9)	8,065 (17.8)	2,179 (4.8)	534 (1.2)
2014	34,600 (100.0)	24,529 (70.9)	2,543 (7.3)	5,669 (16.4)	1,403 (4.1)	456 (1.3)
2015	35,920 (100.0)	25,911 (72.1)	2,763 (7.7)	5,703 (15.9)	1,093 (3.0)	450 (1.3)
2016	33,142 (100.0)	23,526 (71.0)	2,650 (8.0)	5,547 (16.7)	1,106 (3.3)	313 (0.9)
2017	34,474 (100.0)	24,383 (70.7)	2,986 (8.7)	5,676 (16.5)	1,059 (3.1)	370 (1.1)
2018	34,276 (100.0)	24,494 (71.5)	2,805 (8.2)	5,590 (16.3)	305 (0.9)	1,082 (3.2)
2019	34,890 (100.0)	24,131 (69.2)	2,557 (7.3)	6,556 (18.8)	1,292 (3.7)	351 (1.0)

자료 : 법원행정처(2010~2020). 사법연감.

2007년 「소년법」 개정으로 현재 10가지의 보호처분이 운용되고 있다. 기존에 보호관찰과 병합되었던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이 독립처분으로 활용되고, 1개월 이내 소년원송치제도가 신설되었으며, 단기보호관찰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었다. 그러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10가지 보호처분 중 실제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것은 보호자감호위탁과 보호관찰, 소년원송치 등이다. 2019년 기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는 사건(34,890명) 중 보호처분을 받는 비율은 69.2%(24,131명)이다. 보호처분 가운데 50% 이상이 1호 보호자감호위탁과 보호관찰을 병과하는 형태로 받고 있고, 소년원 송치가 6.3% 정도에 이르고 있다. 2019년 소년법원에서 처리한 보호처분의 현황을 보면, 1, 2호 병합처분이 9.0%로 가장 높고, 1호 처분이 8.9%, 1, 2, 4호 병합처분의 비율이 8.2%로 나타났다.

〈표 9-3-10〉 소년보호사건처분의 유형별 현황(2013~2019)

(단위 : 명, (%))

구분(호)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31,952 [100.0]	24,529 [100.0]	25,911 [100.0]	23,526 [100.0]	24,383 [100.0]	24,494 [100.0]	34,890 [100.0]
1	3,822 [12.0]	2,960 [12.1]	3,771 [14.6]	3,142 [13.4]	3,135 [12.9]	3,104 [12.7]	3,103 [8.9]
1+2	3,522 [11.0]	2,420 [9.9]	2,609 [10.1]	2,554 [10.9]	2,504 [10.3]	2,963 [12.1]	3,143 [9.0]
1+2+3	646 [2.0]	445 [1.8]	581 [2.2]	557 [2.4]	727 [3.0]	776 [3.2]	574 [1.6]
1+2+4	4,020 [12.6]	3,163 [12.9]	3,696 [14.3]	3,255 [13.8]	3,025 [12.4]	3,022 [12.3]	2,844 [8.2]
1+2+5	1,496 [4.7]	1,026 [4.2]	803 [3.1]	1,009 [4.3]	969 [4.0]	886 [3.6]	1,048 [3.0]
1+2+3+4	1,557 [4.9]	1,160 [4.7]	1,627 [6.3]	1,272 [5.4]	1,393 [5.7]	1,262 [5.2]	838 [2.4]
1+2+3+5	1,901 [5.9]	1,541 [6.3]	1,571 [6.1]	1,413 [6.0]	1,519 [6.2]	1,238 [5.1]	1,269 [3.6]
1+3	1,297 [4.1]	982 [4.0]	1,133 [4.4]	851 [3.6]	851 [3.5]	754 [3.1]	759 [2.2]
1+3+4	1,868 [5.8]	1,844 [7.5]	1,832 [7.1]	1,194 [5.1]	1,086 [4.5]	958 [3.9]	915 [2.6]

구분(호)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3+5	1,843 (5.8)	1,535 (6.3)	1,082 (4.2)	891 (3.8)	802 (3.3)	754 (3.1)	847 (2.4)
1+4	2,746 (8.6)	2,354 (9.6)	2,299 (8.9)	1,923 (8.2)	1,508 (6.2)	1,447 (5.9)	1,517 (4.3)
1+5	900 (2.8)	742 (3.0)	647 (2.5)	522 (2.2)	505 (2.1)	443 (1.8)	627 (1.8)
2	107 (0.3)	70 (0.3)	16 (0.1)	59 (0.3)	159 (0.7)	274 (1.1)	187 (0.5)
3	125 (0.4)	92 (0.4)	49 (0.2)	87 (0.4)	67 (0.3)	175 (0.7)	200 (0.6)
4	91 (0.3)	63 (0.3)	40 (0.2)	154 (0.7)	270 (1.1)	279 (1.1)	231 (0.7)
4+6	22 (0.1)	39 (0.2)	46 (0.2)	33 (0.1)	41 (0.2)	32 (0.1)	52 (0.1)
5	41 (0.1)	32 (0.1)	19 (0.1)	27 (0.1)	80 (0.3)	81 (0.3)	109 (0.3)
5+6	1,150 (3.6)	834 (3.4)	883 (3.4)	1,063 (4.5)	986 (4.0)	1,229 (5.0)	1,440 (4.1)
5+8	1,879 (5.9)	1,257 (5.1)	1,316 (5.1)	1,012 (4.3)	1,099 (4.5)	1,194 (4.9)	1,036 (3.0)
6	13 (0.0)	9 (0.0)	2 (0.0)	5 (0.0)	7 (0.0)	5 (0.0)	5 (0.0)
7	149 (0.5)	183 (0.7)	141 (0.5)	105 (0.4)	198 (0.8)	230 (0.9)	269 (0.7)
8	3 (0.0)	-	5 (0.0)	3 (0.0)	-	9 (0.0)	25 (0.1)
9	1,153 (3.6)	812 (3.3)	794 (3.1)	770 (3.3)	972 (4.0)	842 (3.4)	821 (2.4)
10	1,252 (3.9)	813 (3.3)	866 (3.3)	770 (3.3)	756 (3.1)	779 (3.2)	780 (2.2)
병과 기타	349 (1.1)	153 (0.6)	83 (0.3)	855 (3.6)	1,724 (7.1)	1,758 (7.2)	1,429 (4.1)

자료 : 법원행정처(2014~2020). 사법연감.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제5부

제6부

제7부

제8부

제9부

제10부

부록

## 5. 형사법원에서의 사건처리

소년법원이 보호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이거나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형사법원으로 이송된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10년간 19세 미만 청소년의 제1심 소년형사사건의 재판현황을 살펴보면, 소년부송치 처분을 제외하고 2011년까지 집행유예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2012년부터는 부정기형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년형사사건에서 사형과 무기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거의 없고, 정기형도 매우 낮은 비율로 선고되고 있다.

2019년에 종국처리된 소년범 3,036명 중 사형이 선고된 예는 없었고, 무기형이 선고된 사례도 없었다. 부정기형이 712명(23.5%)으로 가장 높았고, 집행유예가 546명(18.0%), 기타 294명(9.7%) 순으로 나타났다.

〈표 9-3-11〉 연도별 제1심 소년형사사건 재판 현황

(단위 : 명, %)

구분 연도	계	사형	무기	정기형	부정기형	집행유예	벌금	선고 유예	무죄	소년부 송치	기타
2010	5,294 (100.0)	-	-	472 (8.9)	503 (9.5)	1,577 (29.8)	590 (11.1)	85 (1.6)	25 (0.5)	1,584 (29.9)	458 (8.7)
2011	3,499 (100.0)	-	-	14 (0.4)	492 (14.1)	610 (17.4)	133 (3.8)	24 (0.7)	10 (0.3)	1,958 (56.0)	258 (7.4)
2012	4,422 (100.0)	-	-	7 (0.2)	804 (18.2)	557 (12.6)	118 (2.7)	28 (0.6)	20 (0.5)	2,561 (57.9)	327 (7.4)
2013	4,126 (100.0)	-	-	3 (0.1)	676 (16.4)	407 (9.9)	15 (0.4)	3 (0.1)	12 (0.3)	2,689 (65.2)	321 (7.8)
2014	3,574 (100.0)	-	-	14 (0.4)	634 (17.7)	405 (11.3)	110 (3.1)	15 (0.4)	7 (0.2)	2,082 (58.3)	307 (8.6)
2015	3,516 (100.0)	-	-	7 (0.2)	630 (17.9)	440 (12.5)	102 (2.9)	18 (0.5)	18 (0.5)	1,981 (56.3)	320 (9.1)

구분 연도	계	사형	무기	정기형	부정기형	집행유예	벌금	선고 유예	무죄	소년부 송치	기타
2016	3,242 (100.0)	-	-	1 (0.0)	697 (21.5)	395 (12.2)	94 (2.9)	15 (0.5)	8 (0.2)	1,721 (53.1)	311 (9.6)
2017	2,716 (100.0)	-	1 (0.0)	4 (0.1)	502 (18.5)	386 (14.2)	109 (4.0)	20 (0.7)	19 (0.7)	1,428 (52.6)	247 (9.1)
2018	2,837 (100.0)	-	-	-	626 (22.1)	367 (12.9)	77 (2.7)	14 (0.5)	15 (0.5)	1,419 (50.0)	319 (11.2)
2019	3,036 (100.0)	-	-	4 (0.1)	712 (23.5)	546 (18.0)	78(집유2) [2.7](0.1)	4 (0.1)	10 (0.3)	1,386 (45.7)	294 (9.7)

자료 : 법원행정처(2010~2020). 사법연감.

## 제 4 장

## 청소년 범죄에 대한 교정교육

## 1. 소년원의 교정교육

## 가. 임무

소년원은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비행청소년을 수용·보호하면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과교육,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약물남용·발달장애·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가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에 대한 의료 및 재활교육과 심리치료·사회봉사활동 등 인성교육을 병행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1942년 처음 개원할 당시에는 교육보다 수용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나, 두 차례에 걸친 관계 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을 꾸준히 높여왔다.

1988년에는 소년원 학생이 학령기 청소년이란 점을 강조하여 소년원을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규 학교체제로 전환함으로써 학업연계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1999년에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직업능력배양과 안정된 사회정착을 위하여 교과교육 중심의 소년원 교육체제를 실용외국어와 컴퓨터 중심의 특성화교육체제로 혁신하였다.

1958년 공포된 「소년법」에 의하여 소년원에서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고, 교육과정을 마친 학생에게는 종전에 재학했던 학교의 학교장 명의의 졸업장을 주고, 중도에 출원하는 학생은 일반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시켜 학업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였다. 교육과정은 크게 일반 중·고등학교와 동일한 과정의 일반교육과정과 전체 교육시간의 70~80%를 실용외국어와 컴퓨터 등의 특성화 교과로 운영하는 특성화교육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영농, 축산, 원예로 시작된 소년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973년 안양소년원이 '법무부 제1공공 직업훈련소'로 지정되고, 뒤이어 1974년 서울소년원 등 전국의 9개 소년원이 '법무부 제2~10 공공직업훈련소'로 인가되면서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실시하게 되었다. 현재 서울·부산·광주·안양소년원에서 자동화용접, 카일렉트로닉스, 증장비, 건축환경설비, 제과제빵, 피부미용, 헤어

디자인, 사무자동화, 영상미디어 등 10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이 설치되어 있다.

도의 및 종교교육으로 출발한 소년원 인성교육은 2000년대 들어와서 국토순례, 야영훈련, 문화예술교육, 공연관람, 사회봉사활동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과 함께 학생 개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비행특성 등을 고려한 집단지도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6년에는 소년원 학생의 성행개선을 위하여 1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대구·춘천 소년원을 인성교육 전담소년원으로 개편하고, 2007년 이를 제주소년원으로 확대하여 현재 3개 소년원에서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담소년원 이외 소년원에서도 인성교육을 정규과정으로 편성·운영하고 있다. 또한 1999년 교육현장의 자료와 전문가의 임상경험을 토대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이라는 교재를 발간한 이래 2007년까지 총 30여 종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1996년 (구)대전소년원을 '약물남용원생 전담소년원'으로 지정·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보호소년 중 약물남용,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가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의료·재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부터는 대덕소년원이 법원으로부터 소년의료보호시설로 지정받으면서 「소년법」에 따라 병원, 요양소 위탁 처분을 받은 소년까지 수용하여 의료·재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9년 3월부터는 대덕소년원을 '대산학교'로 개교하고 8호 처분자의 경우 개방형 단기집중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 5월 대덕소년원을 대전소년원으로 직제상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9년 7월 1일부터는 청주소년원의 직제를 개정하여 여자소년원으로 개칭하고, 안양소년원에서 여자소년원생 중 8호, 9호 처분 대상자를 청주로 인수하였다. 소년원은 서울·부산·대구·광주·전주·대전·안양·청주·춘천·제주 등 전국에 10개가 설치되어 있다. 이와 같이 소년원에서는 과거의 수용 위주의 소극적인 정책에서 탈피하여 수요자의 요구와 시대적 흐름에 부합되는 적극적·개방적인 교육행정을 전개하고 있다.

2019년 증원된 감호전담인력 34명을 활용하여 주간 교육전담팀과 야간·휴일 수용전담팀(제4부제)을 별도 구성하여 운영하는 '교육·수용전담제'를 시행하였으며,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2018년 부산과 광주 2개 소년원에 우선 도입한 데 이어, 2019년 서울, 전주, 청주, 안양 4개 소년원에 확대 실시하여 전문화된 처우 제공 등으로 교정교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다.

〈표 9-4-1〉 소년원 학교 명칭 및 교육과정

구분	기관(학교명)	대상	교육과정
서울 경기 권	서울소년원 (고봉중·고등학교)	9호, 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고등학교 교과교육</li> <li>• 직업능력개발훈련(제과제빵, 사진영상, 한식조리, 헤어디자인)</li> <li>•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li> </ul>
	안양소년원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9호, 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고등학교 교과교육(女)</li> <li>• 직업능력개발훈련(헤어디자인, 피부미용, 제과제빵, 서비스마케팅)</li> <li>•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li> </ul>
중부 권	대전소년원 (대산학교)	7호, 9호, 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재활교육</li> <li>•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li> <li>• 분류심사</li> </ul>
	청주소년원 (미평여자학교)	8호, 9호, 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호(女)교육</li> <li>• 직업능력개발훈련(예술분장, 커피바리스타, 헤어디자인, 제과제빵)</li> <li>•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li> </ul>
호남 권	전주소년원 (송천정보통신학교)	8호, 9호, 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호(男)교육</li> <li>• 중·고등학교 교과교육</li> <li>•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li> </ul>
	광주소년원 (고룡정보산업학교)	9호, 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능력개발훈련(자동차정비, 용접, 건축환경설비, 소형건설기계조종사면허)</li> <li>•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li> <li>• 분류심사</li> </ul>
영남 권	대구소년원 (읍내정보통신학교)	9호, 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능력개발훈련(제과제빵, 커피바리스타, 케이크디자인)</li> <li>•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li> <li>• 분류심사</li> </ul>
	부산소년원 (오륜정보산업학교)	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능력개발훈련(자동차정비, 자동차용접, 제과제빵, 헤어디자인)</li> <li>•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li> <li>• 분류심사</li> </ul>
강원	춘천소년원 (신촌정보통신학교)	9호, 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능력개발훈련(헤어디자인, 가발전문, 스포츠마사지)</li> <li>•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li> <li>• 분류심사</li> </ul>
제주 권	제주소년원 (한길정보통신학교)	8호, 9호, 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호(제주지역男) 교육</li> <li>• 직업능력개발훈련(제과제빵, 골프매니지먼트)</li> <li>•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li> <li>• 분류심사</li> </ul>

자료 : 법무부(2020). 법무연감.



## 나. 보호소년의 수용

법원 소년부의 보호사건 대상자는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범죄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촉법소년),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우범소년)이다.

소년법 개정 이전의 처우과정은 단기과정(6호), 일반과정(7호)으로 구분되었다. 단기과정은 6개월 이하를 수용하고, 일반과정은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A과정,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의 B과정, 15개월 이상 19개월 미만의 C과정으로 세분화하였다. 그러나 소년법 개정 이후의 소년원 처우 과정은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7호), 1개월 이내 과정(8호), 단기과정(9호), 장기과정(10호)으로 구분하여,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10호 처분에 따라 달리하고 있다. 7호 처분의 경우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의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것으로, 현재 대덕소년원에서 그 임무를 전담하고 있는바 위탁기간은 6개월이며 소년부 판사의 결정에 따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호 처분의 경우는 1개월 이내로 소년원에 송치하고, 9호 처분의 경우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호 처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19년 소년원 수용기간별 인원현황을 살펴보면, 1개월 미만 수용자가 1,356명이었고, 6개월 미만자가 653명, 12개월 이상자가 483명 순으로 많았다. 평균수용인원은 2009년 5.71개월에서 2017년 4.85개월로 감소하였다가 2018년 5.10개월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2019년에는 4.61개월이었다.

〈표 9-4-2〉 연도별 소년원 수용기간별 인원

(단위 : 명, 월)

구분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2,672	2,755	2,716	3,399	3,005	2,531	2,171	2,138	2,275	2,328	2,755
1월 미만	1,221	1,356	1,370	1,680	1,348	969	883	773	902	830	1,356
3월 미만	98	86	76	125	96	80	62	62	47	64	86
6월 미만	590	653	649	796	894	769	670	676	777	773	653
6월 이상 12월 미만	262	177	160	209	232	208	181	189	179	214	177

구분 \ 연도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2월 이상	501	483	461	589	435	505	375	438	370	447	483
평균 수용기간	5.71	4.61	4.66	4.66	4.90	5.18	4.80	5.35	4.85	5.1	4.61

자료 : 법무부(2020). 법무연감.

보호소년은 교육과정을 마치면 퇴원 또는 가퇴원을 하게 되는데 퇴원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퇴원은 관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가퇴원의 적부를 심사·결정하고, 6개월~2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고 있다. 소년원에 수용된 신수용 보호소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였고, 2017년은 전년도에 비해 다소 증가한 2,450명을 기록한 이후, 2019년도에는 2,077명을 기록하였다. 1일 평균 수용인원도 2009년부터 증가하였다가 2013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였다. 이후 2017년에 1,166명으로 소폭 증가하였다가 2019년 946명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표 9-4-3〉 연도별 보호소년 수용 현황

(단위: 명)

구분 \ 연도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신수용인원	2,775	2,822	2,960	3,429	3,037	2,363	2,288	2,096	2,450	2,199	2,077
1일 평균 수용인원	1,191	1,163	1,264	1,390	1,380	1,236	1,112	1,131	1,166	1,078	946

자료 : 법무부(2020). 법무연감.

## 다. 소년원 교육

소년원 교육혁신의 결과, 지난 1999년 9월 이후 일반학교 학생이 참가한 '전국 중·고등부 영어 말하기 대회' 및 '컴퓨터 경시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소년원학생이 각종 수상을 하였으며, 컴퓨터 및 각종 기능 자격을 취득하였다. 최근 10년간 소년원생의 자격 취득현황을 보면 증감을 반복하긴 하나, 최근에 컴퓨터 등의 분야에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직업훈련분야인 자동차정비, 용접, 헤어디자인 등의 직종에서 전문기능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19년도에 자격증을

취득한 소년원생은 총 4,188명이고, 이 중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은 1,181명, 일반기능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은 1,478명이었다.

〈표 9-4-4〉 연도별 소년원 학생 자격 취득 현황

(단위: 명)

구분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2,674	2,644	2,980	3,125	2,687	3,301	3,106	3,681	4,710	4,762	4,188
외국어	74	45	41	48	-	-	-	-	-	-	-
컴퓨터	1,389	1,387	1,642	1,581	1,292	1,590	1,288	1,415	1,524	1,341	1,181
일반기능	584	634	670	900	774	947	992	1,238	1,524	1,634	1,478
기타	627	578	627	596	621	764	826	1,028	1,662	1,787	1,529

자료: 법무부(2020). 법무연감.

보호소년들이 임시퇴원 후 완전한 사회복귀를 실현하고 더 이상 재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 소년원에 취업 및 사후정착지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취업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민·관 합동의 총체적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303명이 취업하여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였다.

〈표 9-4-5〉 연도별 소년원 학생 취업 현황

(단위: 명)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취업인원	335	328	261	313	273	327	234	423	417	352	303

자료: 법무부(2020). 법무연감.

소년원에서는 지속적인 교과교육을 통해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19년 상급학교에 진학한 인원은 고등학교 49명, 대학교 55명 등 총 104명이었다.

〈표 9-4-6〉 연도별 상급학교 진학 현황

(단위: 명)

구분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66	108	111	137	115	134	154	159	167	165	104
대학교	52	38	22	45	45	71	91	93	88	86	55
고등학교	114	70	89	92	70	63	63	66	79	79	49

자료 : 법무부(2020). 법무연감.

## 라. 소년원생을 위한 사회복귀 지원

소년원생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가정관을 운영하여 단절된 가족관계를 회복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 소년원에 16명 규모의 가정관을 신축하여 학생과 가족이 함께 2~3일간 생활하며,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여 심리적 안정 하에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전국 10개 소년원에서 13동 26세대를 운영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가족합숙제 1,160명, 1일 생활제 5,462명, 가정관 면회제 17,048명으로 총 23,670명이 가정관을 이용하였다.

한편, 소년원생 상당수가 문신을 지니고 있어 사회적응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바, 법무부는 2000년 4월부터 서울소년원에 레이저시술실을 설치한 이후 전국 10개 소년원 및 1개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자체 의료진을 두어 문신제거 시술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보호관찰 대상자나 시술 비용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 청소년, 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문신제거시술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일반인 10,747명을 포함 총 29,931명에게 지원을 하였다.

전국 소년원에서는 ‘취업 및 사회정착지원계’와 민관 합동으로 ‘사회정착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취업지원을 하고 있다. 출원 후 취업 및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한 상담과 취업 추천, 구인업체 발굴 등을 하고 있다. 출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취업후견인제도’도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에 취업후견인 56명, 취업알선 174명, 산업체 현장실습 394명, 구인업체 방문 130회의 실적을 거두었다.

소년원 출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해 2001년 5월부터 기숙사 형태의 청소년자립 생활관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자립생활관은 경기를 시작으로 2005년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안양(여자 전용) 등 5개 지역에 추가 설치되었다. 2009년과 2010년에는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전주와

춘천지역에 대리부모가 24시간 상주하며 함께 생활하는 그룹홈 형태의 자립생활관을 신축하였다. 8개 청소년자립생활관에서는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총 2,589명이 입주하였고, 취업알선, 학업연계, 심리치료, 가족찾기, 결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2014년 12월에는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숙형 직업훈련학교인 YES센터를 신축하여, 자동차정비, 용접, IT, 골프매니지먼트,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등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2012년 10월부터 소년원 담임교사가 중심이 되어 출원생의 사회정착을 관리·지원하는 ‘희망도우미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2017년에 통신지도 36,859회, 방문지도 2,502회를 실시하였다.

## 마. 출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보호소년이 22세가 되면 퇴원하도록 하고, 22세에 달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용 중인 학생이 교과 성적이 양호하며 교정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년원장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퇴원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교정성적이 양호한 보호소년 중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년원장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심사를 신청하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는 보호소년의 인격, 교정성적, 생활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부를 심사·결정한 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임시퇴원을 시키고 있다. 그러나 임시퇴원생이 임시퇴원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재비행의 우려가 현저한 때에는 임시퇴원 허가를 취소하고 재수용하여 교육하도록 하고 있다. 2019년 소년원 출원 사유별 인원현황을 보면, 퇴원이 51.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임시퇴원이 43.0%였다.

〈표 9-4-7〉 소년원 출원사유별 인원(2009~2019)

(단위 : 명, %)

연도	출원사유	계	퇴원	임시퇴원	처분변경·취소	기타
2009		2,729 (100.0)	1,722 (63.1)	950 (34.8)	47 (1.7)	10 (0.4)
2010		2,820 (100.0)	1,821 (64.6)	934 (33.1)	44 (1.6)	21 (0.7)
2011		2,761 (100.0)	1,790 (64.8)	926 (33.5)	33 (1.2)	12 (0.4)

연도 \ 출원사유	계	퇴원	임시퇴원	처분변경·취소	기타
2012	3,399 (100.0)	2,151 (63.3)	1,195 (35.2)	38 (1.1)	15 (0.4)
2013	3,085 (100.0)	1,919 (62.2)	1,086 (35.2)	60 (1.9)	20 (0.6)
2014	2,608 (100.0)	1,442 (55.3)	1,089 (41.8)	54 (2.1)	23 (0.9)
2015	2,242 (100.0)	1,283 (57.2)	889 (39.7)	56 (2.5)	14 (0.6)
2016	2,216 (100.0)	1,192 (53.8)	946 (42.7)	51 (2.3)	27 (1.2)
2017	2,349 (100.0)	1,329 (56.6)	946 (40.3)	44 (1.9)	30 (1.3)
2018	2,416 (100.0)	1,259 (52.1)	1,069 (44.2)	68 (2.8)	20 (0.8)
2019	2,058 (100.0)	1,060 (51.5)	884 (43.0)	93 (4.5)	21 (1.0)

주 : 기타는 유죄판결, 사망, 이탈 등 인원.

자료 : 법무부(2020). 법무연감.

## 2. 소년교도소의 교정교육

소년교도소는 소년범죄자를 성인범죄자와 분리처우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징역 또는 금고형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소년교도소에 수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교도소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분리된 장소에 수용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3조). 다만, 소년교도소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소년교도소는 2004년까지는 천안교도소와 김천교도소에서 나누어서 수용하고 있었으나, 2006년 1월 법무부예규에 의해 천안교도소는 20세 미만 남자소년 수형자를 전담 수용하였다. 그러나 교정본부 직제 개편으로 2009년 12월 31일부터 소년범죄자는 김천소년교도소에 수용되고 있다.

## 가. 수용현황

최근 10년 동안 소년교도소 수형인원은 등락을 거듭하면서 2010년 146명이었던 것이 2019년 116명이 수용되어 있다. 최근 저연령자의 인구수 감소와 소년범에 대한 형사처벌의 자제 경향으로 인해 수형인원이 감소하고 있다.

〈표 9-4-8〉 연도별 소년교도소 수용 현황

(단위: 명)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7	2019
수형인원	146	114	170	152	131	130	150	128	105	128	116

자료: 법무부(2020). 법무연감.

최근 10년간 소년수형자의 죄명별 현황을 보면, 절도·살인·강도 등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에, 강간 등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도 소년수형자 중 강간범 등이 26명(22.4%), 강도 등이 14명(12.1%), 폭력·상해범이 11명(9.5%), 절도가 10명(8.6%)이었다.

〈표 9-4-9〉 소년수형자 죄명별 인원(2009-2019)

(단위: 명, %)

연도 죄명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69 (100.0)	146 (100.0)	114 (100.0)	170 (100.0)	152 (100.0)	131 (100.0)	130 (100.0)	150 (100.0)	128 (100.0)	105 (100.0)	116 (100.0)
절도	62 (36.7)	45 (30.8)	26 (22.8)	42 (24.7)	43 (28.3)	34 (26.0)	26 (20.0)	23 (15.3)	24 (18.8)	17 (16.2)	10 (8.6)
사기·횡령	3 (1.8)	3 (2.1)	-	2 (1.2)	1 (0.7)	2 (1.5)	10 (7.7)	2 (1.3)	12 (9.4)	12 (11.4)	9 (7.8)
폭력·상해	3 (1.8)	1 (0.7)	5 (4.4)	17 (10.0)	17 (11.2)	5 (3.8)	10 (7.7)	27 (18.0)	4 (3.1)	3 (2.9)	11 (9.5)
강간 등	44 (26.0)	32 (21.9)	33 (28.9)	54 (31.8)	46 (30.3)	34 (26.0)	27 (20.8)	35 (23.3)	44 (34.4)	24 (22.9)	26 (22.4)
강도 등	32 (18.9)	33 (22.6)	18 (15.8)	24 (14.1)	16 (10.5)	11 (8.4)	14 (10.8)	19 (12.7)	8 (6.3)	5 (4.8)	14 (12.1)

연도 죄명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살인	6 (3.6)	11 (7.5)	10 (8.8)	11 (6.5)	7 (4.6)	6 (4.6)	5 (3.8)	5 (3.3)	4 (3.1)	4 (3.8)	3 (2.6)
과실범	2 (1.2)	3 (2.1)	1 (0.9)	2 (1.2)	-	2 (1.5)	2 (1.5)	2 (1.3)	-	1 (1.0)	4 (3.4)
기타	17 (10.1)	18 (12.3)	21 (18.4)	18 (10.6)	22 (14.5)	37 (28.2)	36 (27.7)	37 (24.7)	32 (25.0)	39 (37.1)	39 (33.6)

주 : 폭력에는 폭행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포함됨.

자료 : 법무부(2020). 법무연감.

청소년 수형자의 형명을 보면 유기징역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금고형은 거의 없다. 최근 10년간 청소년수형자의 형기를 보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3년 이상'의 징역형, '5년 이상'의 징역형, '1년 미만' 징역형 순으로 높았다. 대체로 장기징역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 단기징역형의 비율은 늘어가는 추세였으나, 2012년 이후 장기징역형의 비율이 소폭 상승하였다. 2019년도 1년 이상 유기징역형과 3년 이상 유기징역형의 비율이 각각 38.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년 이상 유기징역형이 18.1%, 1년 미만 유기징역형이 3.4% 순으로 나타났다.

〈표 9-4-10〉 청소년수형자 형명·형기별 인원(2009~2019)

(단위 : 명, %)

형명·형기	연도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169 (100.0)	146 (100.0)	114 (100.0)	170 (100.0)	152 (100.0)	131 (100.0)	130 (100.0)	150 (100.0)	128 (100.0)	105 (100.0)	116 (100.0)
징역형	무기	-	-	-	-	-	-	-	-	-	-	-
	20년 이상	-	-	1 (0.9)	2 (1.2)	4 (2.6)	1 (0.8)	-	-	-	1 (1.0)	-
	10년 이상	3 (1.8)	5 (3.4)	4 (3.5)	5 (2.9)	4 (2.6)	3 (2.3)	2 (1.5)	2 (1.3)	-	-	1 (0.9)
	5년 이상	15 (8.9)	15 (10.3)	12 (10.5)	13 (7.6)	10 (6.6)	11 (8.4)	12 (9.2)	13 (8.7)	9 (7.0)	13 (12.4)	21 (18.1)
	3년 이상	42 (24.8)	45 (30.8)	38 (33.3)	44 (25.9)	39 (25.7)	42 (32.1)	48 (36.9)	56 (37.3)	47 (36.7)	33 (31.4)	45 (38.8)



형명·형기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징역형	1년 이상	89 (52.7)	58 (39.7)	48 (42.1)	94 (55.3)	87 (57.2)	67 (51.1)	56 (43.1)	69 (46.0)	64 (50.0)	55 (52.4)	45 (38.8)
	1년 미만	19 (11.2)	23 (15.8)	10 (8.8)	12 (7.1)	8 (5.3)	7 (5.3)	11 (8.5)	8 (5.3)	8 (6.3)	2 (1.9)	4 (3.4)
	6개월 미만	1 (0.6)	-	1 (0.9)	-	-	-	1 (0.8)	1 (0.7)	-	1 (1.0)	-
미고형	3년 미만	-	-	-	-	-	-	-	-	-	-	-
	1년 미만	-	-	-	-	-	-	-	1 (0.7)	-	-	-

자료 : 법무부(2020). 법무연감.

## 나. 교정교육

교정교육은 범죄적 심성을 순화시킴으로써 재범에 이르지 않고 사회에 유용한 일원으로 복귀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학과교육’, ‘직업훈련’, ‘생활지도’, ‘교화활동’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9년 소년교도소에서 학과교육을 받아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졸업한 인원은 6명이다.

〈표 9-4-11〉 연도별 소년교도소 학과교육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검정고시 합격인원	35	38	30	10	55	71	54	67	59	50	-
방송통신고 졸업인원	6	13	10	5	9	6	7	6	5	7	6

주 : 2019년 검정고시 합격인원은 통계자료 누락.

자료 : 법무부 교정본부(2019).

## 다. 출소

청소년수형자는 해당 형기가 종료하면 출소하게 되지만, 형기가 종료하기 전에도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이 무기형의 경우 5년,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의 1/3기간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소년법」 제65조). 청소년수형자 중 가석방된 자의 비율은 2009년 16.8%이었던 것이 2019년에는 19.3%였다.

〈표 9-4-12〉 청소년수형자 석방사유별 인원(2009~2019)

(단위 : 명, %)

연도	석방사유	계	가석방	만기석방	기타
2009		101 (100.0)	17 (16.8)	59 (58.4)	25 (24.8)
2010		114 (100.0)	21 (18.4)	75 (65.8)	18 (15.8)
2011		69 (100.0)	10 (14.5)	45 (65.2)	14 (20.3)
2012		86 (100.0)	17 (19.8)	45 (52.3)	24 (27.9)
2013		101 (100.0)	10 (9.9)	68 (67.3)	23 (22.8)
2014		103 (100.0)	12 (11.7)	78 (75.7)	13 (12.6)
2015		74 (100.0)	8 (10.8)	53 (71.6)	13 (17.6)
2016		94 (100.0)	9 (9.6)	64 (68.1)	21 (22.3)
2017		83 (100)	10 (12.0)	38 (45.8)	35 (42.2)
2018		67 (100)	5 (7.5)	43 (64.2)	19 (28.4)
2019		57 (100)	11 (19.3)	37 (64.9)	9 (15.8)

주 : 1) 집행종료결정은 단기만료 후 장기도래 전의 석방, 만기석방은 장기만료로 인한 석방을 의미함.

2) '기타'는 특별사면, 형집행정지, 사망, 노역종료 등을 포함함.

자료 : 법무부(2020). 법무연감.

### 3. 보호관찰소의 교정교육

#### 가. 개요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조사, 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 등에 관련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설치된 법무부 소속 국가기관이다.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교도소,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보내지 않고 일정기간 준수 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사회 내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원호를 받게 하거나,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봉사를 하게 하거나, 범죄성 개선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범죄자의 성행을 교정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최신 형사정책 수단이다. 1989년 7월 1일부터 소년범에 대하여 최초로 시행된 보호관찰은 제도의 실효성이 인정되어 성폭력사범(1994년), 성인형사범(1997년), 가정폭력사범(1998년), 성매매사범(2004년),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제도(2008년)로까지 점차 그 대상이 확대되어 왔다.

전체 보호관찰 실시인원 중 청소년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은 편이나, 청소년 대상자의 높은 변화가능성 및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대상자에 대해서는 보다 더 집중적인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대상자들이 범죄로부터 벗어나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재범방지 전문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보호관찰의 재범방지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고자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보호관찰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나. 조직

보호관찰행정 중앙조직으로는 인사 및 예산을 담당하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있다. 2019년 말 기준 18개 보호관찰소, 39개 보호관찰지소, 2개 위치추적 관제센터, 5개의 보호관찰심사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 다. 보호관찰 실시

청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보호처분대상자, 「형법」 제62조의2에 의한 집행유예 조건부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청소년대상자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청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수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추세에 있다. 2019년 현재 소년보호관찰 인원은 40,587명으로, 전체보호관찰 중 소년보호관찰이 차지하는 비율은 18.2%를 차지하고 있다.

〈표 9-4-13〉 연도별 청소년보호관찰 비율

(단위 : 명, %)

연도	구분	전체 보호관찰	소년보호관찰	소년보호관찰 비율
2009		218,049	66,789	30.6
2010		196,233	71,015	37.0
2011		179,767	70,549	40.0
2012		178,199	71,760	40.3
2013		175,318	65,815	37.5
2014		184,362	57,064	31.0
2015		199,713	51,978	26.0
2016		227,141	49,687	21.9
2017		240,073	47,493	20.0
2018		227,733	45,364	19.9
2019		223,072	40,587	18.2

자료 : 법무부(2010~2020). 법무연감.

청소년보호관찰 실시현황을 보면, 소년법에 근거한 보호관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조건부 기소유예의 한 유형으로 실시되는 선도위탁의 비율도 높은 편이다. 2019년 청소년보호관찰 대상자 가운데 소년보호처분이 34,842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선도위탁이 2,750명, 임시퇴원 1,787명, 집행유예 755명 순이다. 최근 10년간 변화를 보면 집행유예율과 소년보호처분율은 감소하는 반면에 임시퇴원율이나 선도위탁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표 9-4-14〉 연도별 청소년보호관찰 실시현황

(단위: 명)

연도	구분 계	형법			소년법		가정 폭력법	성폭력 법	성매매 법	선도 위탁	성구매자 교육	벌금 대체	아청법	아동 학대법	치료 감호법
		선고 유예	집행 유예	가석방	보호처분	임시퇴원									
2009	66,785	5	3,480	119	56,700	1,640	10	339	37	4,419	36	-	-	-	-
2010	71,102	5	3,259	72	59,751	1,696	6	330	22	5,852	10	86	13	-	-
2011	70,546	-	1,679	44	60,116	1,650	3	236	11	6,694	9	50	54	-	-
2012	71,756	1	1,365	51	61,850	2,009	10	193	1	6,172	9	34	61	-	-
2013	65,813	1	1,073	45	55,724	2,091	13	153	1	6,585	10	50	67	-	-
2014	57,064	-	1,025	28	45,831	2,043	28	145	5	7,774	3	85	97	-	-
2015	51,978	1	801	21	42,318	1,732	31	118	7	6,714	2	91	142	-	-
2016	49,687	2	731	12	38,967	1,726	61	105	8	7,864	17	67	122	5	-
2017	47,493	5	709	13	38,675	1,807	55	107	12	5,894	11	68	129	5	3
2018	45,364	6	666	12	38,145	1,963	40	104	12	4,173	5	56	173	3	5
2019	40,587	3	755	19	34,842	1,787	61	127	7	2,750	3	37	185	3	3

자료 : 법무부(2010~2020). 법무연감.

보호관찰 기간 중 청소년대상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의 법정 준수사항<sup>2)</sup> 및 외출제한명령 등 법원 및 심사위원회에서 부과한 특별준수사항을 지키며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호관찰관은 청소년대상자와의 초기면담, 재범위험성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일반 대상자, 주요 대상자, 집중 대상자 등으로 분류하고, 분류등급에 기초하여 차별화된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최근에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통제를 위해 출석지도 위주의 보호관찰 방식을 탈피하여 주거지 방문, 생활 근거지에서서의 면접 등 현장 중심의 적극적·역동적 보호관찰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2011년부터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청소년대상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년 전담 직원제’를 확대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사회자원 연계를 통한 특화된 처우와 집중 감독을 실시하는 등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보호관찰관은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는 등 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형의 집행 등 불이익 처분 가능성을 경고하고, 계속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구인하고 유치한 후 보호처분변경, 집행유예 취소, 가석방·임시퇴원 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실시한다. 그러나 보호관찰기간 중 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의 임시해제 또는 부정기형 종료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처우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을 통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적응력 제고를 위해 전국 57개 보호관찰(지)소에서 각 지역사회와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 특성별 재범방지 전문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2019년 보호관찰 성적에 따른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성적불량으로 인하여 경고, 구인, 유치, 취소·변경, 기타 조치가 이루어진 인원은 17,205명, 성적양호자는 196명이었다.

〈표 9-4-15〉 연도별 청소년대상자 보호관찰 성적에 따른 조치 현황

(단위: 명)

연도	구분	성적양호자	성적불량자					
		임시 해제	계	경고	구인	유치	취소·변경 등	기타
2009		367	24,903	18,827	1,987	1,943	2,033	113
2010		105	25,873	19,037	2,153	2,095	2,444	144
2011		626	27,890	21,305	2,007	1,936	2,449	193
2012		861	32,853	26,671	1,759	1,670	2,538	215
2013		836	32,216	25,880	1,917	1,815	2,431	173
2014		746	27,310	21,766	1,543	1,456	2,399	146
2015		1,176	24,076	18,948	1,351	1,256	2,364	157
2016		615	22,217	17,469	1,162	1,116	2,371	99
2017		602	22,033	17,693	1,051	1,015	2,158	116
2018		615	18,945	15,494	852	821	1,662	116
2019		196	17,205	14,436	705	663	1,301	100

주 : 1) 취소·변경 등은 집행유예취소, 보호처분변경, 가석방·임시퇴원 취소, 선도위탁 취소, 가정보호 취소임.

2) 기타는 기간연장, 보호관찰 정지, 사회봉사허가 취소를 포함함.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2020).

## 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 사회봉사명령을 통하여 범죄에 대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배상, 범죄에 대한 속죄의식을 유도하는 등 교육적 효과를 목표로 한다. 청소년대상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집행은 주로 처벌적 효과보다는 교육적 효과에 중점을 두고 노인, 장애인 등 생활복지시설에서 사회봉사활동이 이루어지게 하여 봉사체험을 통해 범죄에 속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년법」 개정에 따라 소년에게 단독 사회봉사명령 결정이 가능하게 되었고, 사회봉사명령의 부과 연령은 14세로 낮아졌으며, 사회봉사명령 시간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문화되었다(「소년법」 제33조 제4항). 2019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봉사명령은 6,787명, 수강명령은 5,182명에게 실시되었다.

〈표 9-4-16〉 청소년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부과형태(2009~2019)

(단위: 명)

연도	구분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계	보호관찰부	단독명령부	계	보호관찰부	단독명령부
2009		1,051	738	313	226	170	56
2010		932	703	229	193	146	47
2011		300	255	45	139	114	25
2012		10,347	7,482	2,865	13,792	9,339	4,453
2013		10,606	7,291	3,315	10,176	7,088	3,088
2014		9,442	6,017	3,425	7,297	4,991	2,306
2015		8,677	5,641	3,036	6,056	4,250	1,806
2016		7,616	4,973	2,643	5,587	3,999	1,588
2017		8,321	5,465	2,856	6,139	4,446	1,693
2018		7,845	5,111	2,734	5,952	4,151	1,801
2019		6,787	4,359	2,428	5,182	3,355	1,827

자료: 법무부(2010~2020). 법무연감.

2019년도 청소년 사회봉사명령 집행인원은 총 5,331명이고, 이 중 보호관찰소에서 직접 집행한 인원은 771명, 협력기관에서 집행한 인원은 4,560명이다. 협력집행은 주로 노인요양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서의 봉사로 실시되고 있다.

〈표 9-4-17〉 청소년대상자 사회봉사명령 분야별 집행인원(2009~2019)

(단위: 명)

구분 연도	총계	직접 집행	협력 집행					
			소계	자연보호	복지분야	공공시설	대민지원	기타
2009	8,178	1,443	6,735	7	6,429	184	48	67
2010	7,394	1,324	6,070	2	5,812	157	80	19
2011	8,346	1,481	6,865	51	6,490	168	89	67
2012	8,175	1,510	6,665	10	6,259	192	130	74
2013	8,857	1,941	6,916	1	6,293	220	314	88
2014	7,742	1,816	5,926	2	5,291	152	386	95
2015	7,222	1,553	5,669	3	5,208	133	301	24
2016	6,026	1,282	4,744	1	4,373	130	215	25
2017	6,656	1,122	5,534	4	5,246	159	99	26
2018	6,258	996	5,262	6	4,923	177	117	39
2019	5,331	771	-	23	-	568	180	4,560

자료: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2020).

수강명령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시간 동안 강의, 체험학습, 심신훈련, 봉사활동 등 범죄성 개선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수강명령을 통해 대상자가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이나 행동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내용의 교육과 치료를 실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고 있다. 특히 대상자의 범죄내용에 따라 약물 오·남용 방지교육, 알코올남용 방지교육, 정신·심리치료교육, 성폭력방지교육, 준법운전강의, 가정폭력방지교육 등 적합한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8년 「소년법」 개정에 따라 소년에게 단독 수강명령 결정이 가능하게 되었고, 수강명령 부과 연령은 12세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수강명령 시간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었다(「소년법」 제33조 제4항). 청소년 수강명령 집행인원은 2018년 4,490명에서 2019년 3,528명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이 중 보호관찰소에서



직접 집행한 인원은 2,293명이었고, 협력기관에서 집행한 인원은 1,235명이었다.

〈표 9-4-18〉 청소년대상자 수강명령 분야별 집행인원(2009~2019)

(단위 : 명)

연도	구분 총계	직접집행							협력집행						
		소계	약물	준법운전	심리치료	가정폭력	성폭력	기타	소계	약물	준법운전	심리치료	가정폭력	성폭력	기타
2009	10,397	9,954	49	987	2,688	-	365	5,865	443	13	-	2	-	46	382
2010	9,779	9,212	38	485	3,045	-	246	5,398	567	-	-	78	2	43	444
2011	10,135	9,518	29	429	2,695	2	338	6,025	617	-	11	277	-	74	255
2012	10,612	10,026	4	505	2,711	-	376	6,430	586	4	8	152	-	63	359
2013	7,864	7,374	20	508	2,166	-	473	4,207	490	2	9	240	-	48	191
2014	5,526	5,340	6	459	1,457	3	404	3,011	186	-	2	103	2	23	56
2015	4,410	4,375	6	421	1,244	5	385	2,314	35	-	2	26	1	4	2
2016	3,915	3,882	-	390	973	8	324	2,187	33	-	-	21	2	6	4
2017	4,372	4,349	6	394	1,020	16	304	2,609	23	-	-	3	-	1	19
2018	4,490	4,025	2	239	1,114	6	252	2,412	465	1	52	143	-	8	261
2019	3,528	2,293	6	159	653	5	131	1,339	1,235	1	81	312	-	69	772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2020).

## 마. 판결전조사, 결정전조사 및 환경조사

판결전조사는 법원이 형사 피고인(성인 및 소년)에 대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등을 조건으로 한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명하기 위하여 판결 전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요청함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범죄의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의 제반사항에 관해 사실조사를 하는 것이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이 제도는 보호 관찰처분의 적합성 판별과 법원의 적정판결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소년에 대한 판결전조사는 2015년 698건에서 감소하여 2017년에는 476건이었으나, 2018년부터 증가추세로 돌아서 2019년에는 557건을 기록하였다.

판결전조사 이외에도 법원은 「소년법」 제12조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등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에 대해 결정전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즉, 보호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소년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호처분의 결정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소년 보호사건에 대한 결정전조사는 2018년 8,601건에서 2019년 7,578건으로 감소하였다.

「소년법」 개정에 따라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 등에 대해 조사를 명할 수 있는 ‘검사결정전조사제도’가 신설되었다(「소년법」 제49조의2).

환경조사는 교도소, 소년원 등에 수용되어 있는 소년수용자, 보호감호소의 감호처분자에 대한 범죄의 동기 및 현재의 환경을 조사하는 것으로 교정 교육자료와 가석방·임시퇴원·가출소 등의 심사자료, 그리고 보호관찰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내용은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수용 전의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생계대책 등이며, 면접, 사실조회, 자료분석 등의 기법이 사용된다. 환경조사 결과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보호관찰소장은 본인, 가족, 관계인의 동의 또는 협력을 얻어 수용자의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을 한다. 소년원에 의뢰된 환경조사는 2009년 2,009건에서 증감을 반복하다 2019년 1,442건으로 나타났다.

〈표 9-4-19〉 연도별 청소년 대상 판결(결정)전조사, 검사 결정전조사 및 환경조사 접수 현황

(단위: 건)

연도	구분	판결전조사	법원 결정전조사	검사 결정전조사	환경조사
2014		676	8,154	5,818	1,488
2015		698	8,847	3,553	1,486
2016		592	8,046	3,761	1,473
2017		476	7,795	2,967	1,851
2018		513	8,601	1,225	1,472
2019		557	7,578	528	1,430

주: 법원 결정전조사는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결정전조사.

자료: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2020).



## 제10부 요약

제10부에서는 '청소년정책 추진 인프라'에 대해 다룬다. 청소년시설은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보호시설로 구분된다. 청소년활동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로 구분되는데, 청소년수련시설에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이 포함된다. 청소년이용시설에는 문화시설, 과학관, 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회복지관, 그리고 시민회관·어린이회관·공원·광장·둔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로서 청소년활동 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설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청소년활동과 관련되어 설치된 시설이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른 청소년이용시설 중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청소년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설치·운영자의 신청을 받아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복지시설로는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시설로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는 청소년보호·재활센터가 있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하여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시설·단체 관련기관 종사자를 총칭한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관련 분야의 경력·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친 자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한다.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상담실무 경력이나 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100시간 이상의 연수를 마친 자이다. 지속적인 청소년지도자 양성이 이루어짐에 따라, 2020년을 기준으로 누적된 청소년지도자 양성 인원은 청소년지도사는 총 58,019명, 청소년상담사는 총 26,364명에 달한다.

대표적인 청소년관련 단체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있으며, 행정기관으로는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과 청소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청소년관련 부서 등이 존재한다. 그 중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는 청소년정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의 협의·조정, 청소년정책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각각의 설립목적에 맞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청소년관련 연구기관으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있으며, 청소년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수행, 청소년정책평가 및 자문·지원,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 추진, 정책 및 연구자료 제공 등 국제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으로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 대학원에 청소년관련 학과나 전공을 둔 학교는 2020년 현재 전국 13개 시·도, 총 54개교에 달하고 있으나, 최근 학생수 감소와 대학구조조정으로 인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국제협의체로서 세계 각국의 청소년 연구개발기관 간 정보 및 학술교류 확대를 통하여 서로 협력하고자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World Associa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Youth: WARDY)가 설립되어 2020년 현재 11개국 18개 기관 및 1개 국제학회가 참여하고 있다.

2020년 청소년정책 본예산은 2,329억 원이며, 추경은 2,288억 원으로 본예산에서 41억 원이 감액되었다. 이 예산은 청소년정책 기반강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청소년유해환경개선 및 피해예방,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지원, 지역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 청소년정책관기본경비, 청소년 참여지원,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매체활용능력증진 및 역기능해소,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청소년 치료재활센터운영에 사용되고 있다.

# 청소년정책 추진 인프라

- 제1장 청소년시설
- 제2장 청소년지도자
- 제3장 청소년 단체
- 제4장 청소년관련 행정기관
- 제5장 청소년관련 연구·개발기관
- 제6장 청소년정책 재정기반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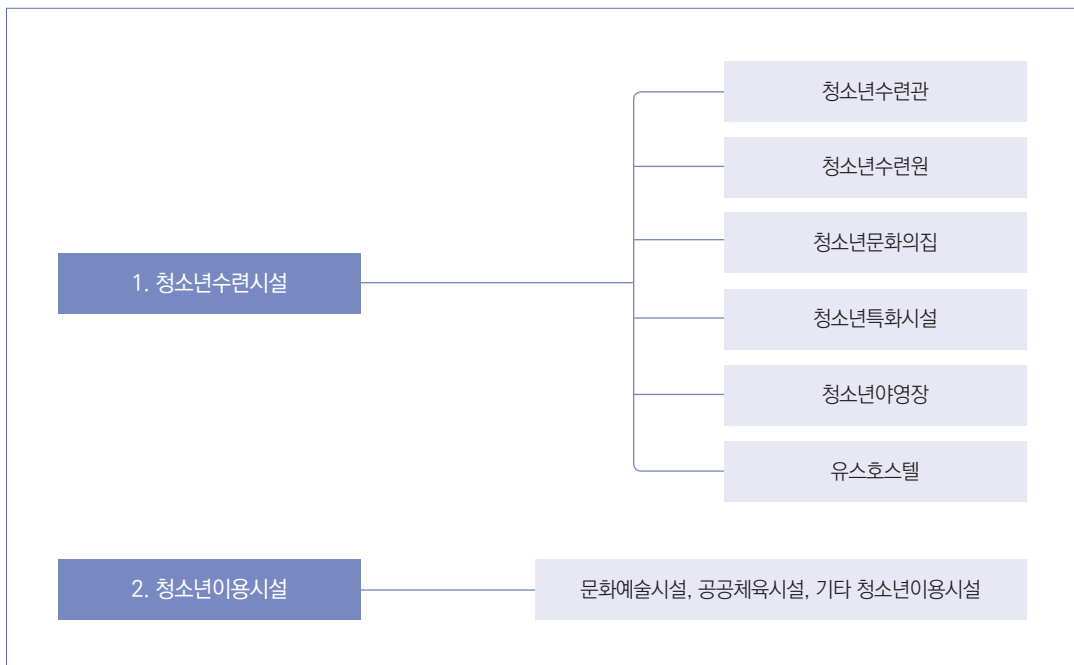
## 제1장

## 청소년시설

## 1.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서는 청소년 활동시설의 종류를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의 민간분야도 활동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가능하지만, 민간의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림 10-1-1] 청소년 활동시설의 종류



자료 : 여성가족부(2020).

## 가. 청소년수련시설

### 1) 수련시설 현황

청소년수련시설은 수련활동에 필요한 여러 시설, 설비,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청소년 지도자의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은 기능이나 수련활동 및 입지적 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전에는 생활관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리고 유스호스텔로 구분되어 왔으나, 2005년부터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 구분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을 시설과 역할에 따라 구분하면, ‘청소년수련관’은 다양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의미한다. ‘청소년수련원’은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 ‘청소년문화의집’은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을, ‘청소년특화시설’은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을 의미한다. ‘청소년야영장’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활동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을,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의 숙박체제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의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 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992년 이전에는 수련시설이 150여 개에 불과 하였지만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12월 기준 799개의 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표 10-1-1〉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총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계	799	191	294	159	32	108	15
공공	601	190	290	62	18	27	14
민간	198	1	4	97	14	81	1

자료 : 여성가족부(2020).

〈표 10-1-2〉 시·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총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계	799	191	294	159	32	108	15
서울	67	32	19	3	0	4	9
부산	22	8	9	3	1	1	0
대구	17	5	6	2	0	2	2
인천	22	8	6	3	0	5	0
광주	15	5	8	1	0	0	1
대전	15	4	8	2	0	1	0
울산	11	3	7	1	0	0	0
세종	4	1	3	0	0	0	0
경기	157	37	65	32	8	14	1
강원	77	16	32	15	3	10	1
충북	43	6	15	17	1	4	0
충남	50	11	20	13	3	8	0
전북	55	11	20	13	3	7	1
전남	56	8	23	12	5	8	0
경북	61	15	17	13	2	14	0
경남	77	18	17	25	4	13	0
제주	50	3	24	4	2	17	0

주: 국립청소년시설(5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충청남도 천안시),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강원도 평창군), 국립청소년우주센터(전라남도 고흥군), 국립청소년해양센터(경상북도 영덕군),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전라북도 김제시).

자료: 여성가족부(2020).

## 2) 수련시설의 설치

### 가) 중앙정부의 수련시설 설치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시설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및 ‘국립청소년우주센터’,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 ‘국립청소년



해양센터'를 건립·운영 중이다.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수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및 연수, 국내·외 청소년교류 및 수련시설 간의 네트워크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립수련시설이다. 충청남도 천안시 목천면 독립기념관 내(동곡)에 부지 540,641㎡, 연면적 35,401㎡ 내외 규모로 약 6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1년 6월에 준공되었다.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은 자연권 청소년수련활동의 시범적 운영 및 총괄·지원을 위한 자연권 수련시설로서, 수련시설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수련활동 운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백옥포리에 부지 483,818㎡, 연면적 22,348㎡ 규모에 약 2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998년 10월에 준공되었다.

국립청소년우주센터는 우주분야에 대해 전문화·특성화된 수련시설로서 청소년 우주체험 활동의 장을 해외에서 국내로 전환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우주체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건립된 국립수련시설이다.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에 부지 320,757㎡, 연면적 13,711㎡ 규모의 우주체험관, 우주생활관 등을 약 49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0년 7월에 준공하였다.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는 농업생명체험에 대해 전문화·특성화된 수련시설로서 생명과학·농업 기술·생태환경의 특화된 체험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건립된 국립수련시설이다. 전라북도 김제시 부량면 용성리에 부지 38,806㎡, 연면적 11,893㎡ 규모의 농·생명 실험시설 등을 약 22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3년 7월에 준공하였다.

국립청소년해양센터는 해양환경체험에 대해 전문화·특성화된 수련시설로서 해양자원 개발 및 기술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건립된 국립수련시설이다.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에 부지 50,169㎡, 연면적 13,664㎡ 규모의 해양환경체험시설 등을 약 372억 원의 민간 자본을 투입하여 2013년 7월에 준공하였다.

#### 나) 지방자치단체의 수련시설 설치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확대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많은 생활권 시설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1990년부터 지방양여금이 청소년시설 건립에 사용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사업에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되었으며,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의한 지원으로 건립되었다.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은 주로 생활권수련시설로 행정구역별로 1개소씩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시·군·구에 청소년 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 하며, 읍·면·동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씩 설치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다.

2019년까지 여성가족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련시설 신규건립과 더불어 기존 시설의 기능보강을 지원하여, 2017년도에는 51개소 신규건립, 79개소 기능보강, 2018년도에는 49개소 신규건립, 74개소 기능보강, 2019년에는 42개소 신규건립, 70개소 기능보강을 지원하였다. 2020년부터는 지방재정분권 실현을 목적으로 수련시설 건립 및 기능보강 사업 예산은 지자체로 이양되어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 다) 수련시설 설립 사전검토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르면 국립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련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경우, 입지조건이나 내부구조, 설계사항 등 건립의 타당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련시설 건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수련시설건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 중 청소년 및 청소년 전문가의 참여비율을 각각 5분의 1 이상으로 해야 한다.

### 3) 수련시설 운영지원

정부에서는 2006년도부터 정책적으로 수련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주요 구조부의 균열, 내구성 저하 등의 위험사항, 석축, 옹벽, 담장 및 부대시설의 안전성, 전기, 기계, 소방 및 냉·난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기타 관리 주체의 안전의식 및 재난 관리 체계 구축 여부 등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였으며,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설운영의 질적 수준 향상을 제고하였다.

특히, 2014년 7월부터는 개정된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에 따라 수련시설에 대한 감독 기관의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가 의무화(「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의3, 제19조의2)되었다. 그리고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 안전공사 등 안전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한 분야별 종합 안전점검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을 통하여 시설운영 전반사항에 대하여 시설 종류별 2년 주기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20년에는 자연권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유스호텔, 청소년야영장)을 대상으로 종합 안전·위생점검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였고, 2019년에는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을 대상으로 종합 안전·위생점검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강화되어 시설 붕괴 우려 등 안전 확보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의 운영중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2년 주기로 실시되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은 경우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리·감독 주체의 안전관리와 수련시설 운영주체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유지되고 있다.

## 나. 청소년이용시설

### 1) 청소년이용시설 개념과 유형

청소년이용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닌 시설이지만, 설치 목적의 범위 내에서 청소년 활동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을 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청소년이용시설로는 ①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② 「과학관육성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 ③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④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⑤ 「산림 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⑥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⑦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관, ⑧ 시민회관·어린이회관·공원·광장·고수부지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로서 수련활동 또는 청소년 여가선용을 위한 이용에 적합한 시설 등이 해당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이용시설 중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하여 다른 청소년이용시설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2) 청소년이용시설 현황

#### 가) 문화시설

문화예술시설로는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국가가 건립한 국립중앙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등이 있으며, 각 지역별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등의 시설이 있다. 문화공간은 공연시설(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등),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도서시설(도서관, 문고), 지역문화 복지시설(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문화보급전수시설(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등으로 분류된다.

#### 나) 과학관

과학관 중 대표적인 이용시설로는 국립중앙과학관과 국립서울과학관이 있다. 국립중앙과학관의 상설전시관에는 4개 분야 약 4,100여 점의 전시품이 전시되고 있다. 이 밖에 탐구관, 천체관, 영화관, 특별전시관, 야외전시장 등을 갖추고 있다. 국립서울과학관은 상설전시관, 특별전시관, 영화관, 과학교실, 세미나실, 놀이 및 휴식 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 다) 체육시설

우리나라의 체육시설은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로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다. 정부는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생활체육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민이 집 주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과 전문선수의 육성을 위한 전문체육시설의 건설을 지원해 왔으며, 각종 국제경기대회 등의 개최를 계기로 국제수준의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종류로는 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동네운동장, 길거리농구대, 시·군 기본체육시설 등이 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02-2100-6266

## 2. 청소년보호·복지시설

### 가. 청소년보호시설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서는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재활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시설은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2003년 9월부터 운영된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The Youth Center)’가 있다.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에서는 가정과 학교에서 학대와 폭력을 받는 청소년 및 가출청소년, 성범죄 피해 청소년, 임금체불 등 근로 현장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 청소년, 약물남용 청소년 등 위기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인 원스톱(One-Stop)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피해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지역별로 활동하는 NGO와 경찰, 행정당국 간의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전개하였으며, 2004년에는 가출청소년과 성매매 구조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들의 긴급구조와 일시보호를 위한 드롭 인 센터(Drop-in center)를 개설하였다. 2005년부터는 서울지역에서만 부분적으로 운영하던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부산, 광주, 경기, 경남 등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지역단위에서도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2011년 「청소년 보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재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변경되었다.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청소년 유해매체 및 환경에 대한 보호와 인터넷 게임 중독 등에 대한 보호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에 대해 상시적으로 전문적·효과적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상설치유기관인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을 2014년 8월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에서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정도에 따라 1주, 2주, 3주, 4주 과정으로 차별화된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집단상담, 가족상담 및 대안활동, 관계증진활동 등을 통해 참가 청소년들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을 해소하고 올바른 이용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에 명시된 ‘청소년보호·재활센터’ 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포함된 보호시설로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청소년지원시설’과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규정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등이 있다. 그리고 상담시설로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명시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이 있다.

## 나.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서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를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 1) 청소년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는 가출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쉼터의 주요기능으로는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가출청소년의 상담·선도·수련활동, 가출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청소년의 가출 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지원활동,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에 관한 활동 등이 있다.

청소년쉼터는 9~24세의 청소년들을 입소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호기간은 쉼터유형에 따라 일시 7일 이내, 단기 3개월(최장 9개월) 이내, 중장기 3년(필요시 1년 연장)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1992년 최초로 서울 YMCA에 청소년쉼터를 설치·지원하였으며, 1996년 이후 광역시 중심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2020년 국가에서는 전국 총 133개소 쉼터의 운영을 지원 중이며, 가출 청소년의 조기 발굴·긴급구조 및 초기개입으로 신속한 가정 및 사회복귀를 돕는 거리상담 전문인력 및 야간 시간대 청소년의 연계 의뢰 및 자해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야간보호상담원을 배치·지원하고 있다.

### 2)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일정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회복지원시설에서 생활하여 지원을 받았음에도 자립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로서, 2012년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전부개정에 따라 청소년 복지 시설의 한 유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2018년부터 서울, 인천, 경기 총 4개소에 국비 및 지방비를 지원하였으며, 2020년 현재는 서울, 대구, 인천, 경기, 충남에 총 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최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등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의 증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청소년 시설에서는 보호, 치료, 교육, 자립 등에 대한 개별적이고 분절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청소년의 성장·발달과정에 맞는 보다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치료·재활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심리상담 및 치료, 보호, 자립지도, 교육 등 종합적·전문적 치유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기 위해 거주형 치유기관인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를 2012년 12월에 개원하였다.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의 입교대상자는 ADHD, 우울증, 불안장애, 품행장애 등 정서적·행동적 장애를 가진 만 9~18세 청소년이고, 입·퇴교판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입교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개원 이후 2019년까지 총 7,061명의 청소년이 장·단기 치료·재활 서비스를 지원받았으며, 이중 상당수가 정서적 안정감이 향상되고 문제행동이 감소되어 일상생활로 복귀하여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청소년의 치유서비스 이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권역별치유 기관을 확충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에 지역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공사를 추진중(‘17~’21년)에 있으며 ’21년 하반기 개원할 예정이다.

#### 4)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을 감호위탁 기간 동안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2016년 11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그동안은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 청소년을 위해 민간 차원(일명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시설이 운영되어 왔는데, 법적근거의 마련을 통해 해당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 여건이 마련되었고, 2019년에는 최초 국비 확보를 통해 종사자 대상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주요기능은 처분 청소년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지원, 심리지원, 학업·진로 등 서비스 지원을 통해, 보호 소년들의 재범 방지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며, 향후 시설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운영 서비스 매뉴얼 마련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 보호 서비스 수준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295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7, 62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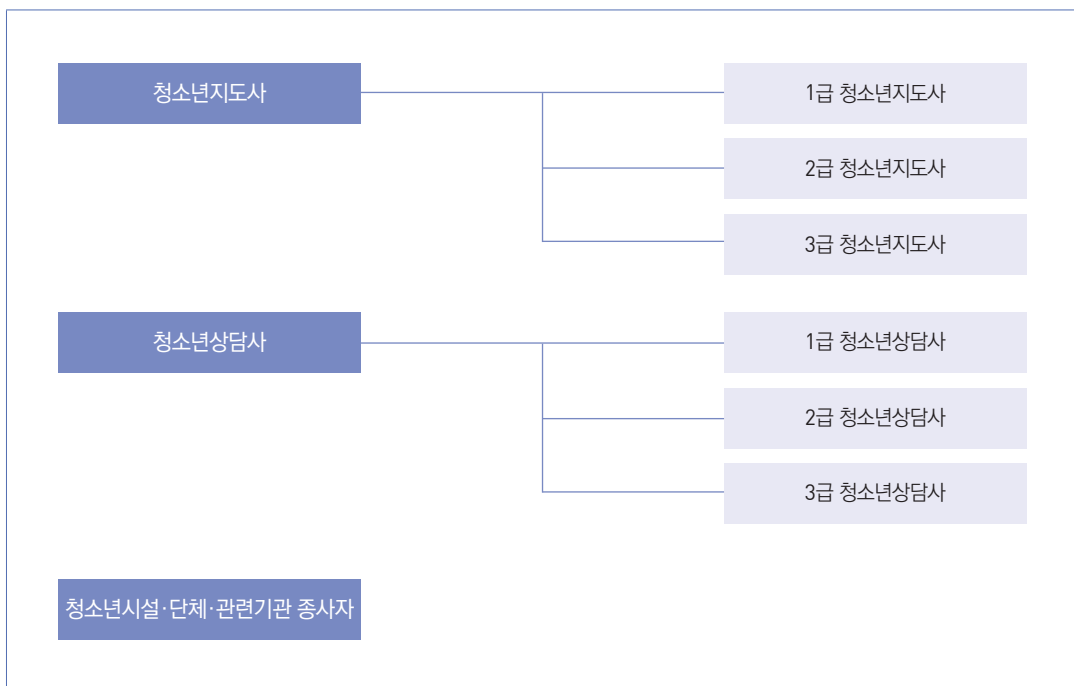
## 제2장

## 청소년지도자

## 1. 청소년지도자의 정의 및 유형

‘청소년지도자’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청소년관련 기관 등에서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총칭한다. 국가전문자격인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2020년까지 총 58,019명이 배출되었으며,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도 26,364명을 넘어서고 있다.

[그림 10-2-1] 청소년지도자의 분류



자료 : 여성가족부(2020).



## 2. 청소년지도사

### 가. 청소년지도사 응시자격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청소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체계적인 청소년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지도기법 및 자질을 갖춘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이 필요하다. 청소년지도자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성을 위해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지도사 양성 및 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1993년부터 국가공인 청소년지도사를 양성해 오고 있다. 청소년지도사는 1, 2, 3급으로 구분되며, 청소년관련 분야의 경력·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친 자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한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사업)을 전담하여 청소년의 수련활동, 지역·국가 간 교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예술활동 등을 지도한다.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기준과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10-2-1〉 청소년지도사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 기준

등급	응시자격 기준
1급 청소년지도사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급 청소년지도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li> <li>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li> <li>3.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li> <li>4.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의 규정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사람</li> <li>5.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li> <li>6.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 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li> <li>7.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li> <li>8.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li> </ol>

등급	응시자격 기준
3급 청소년지도사	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자료 : 여성가족부(2020).

〈표 10-2-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

구분	검정과목	검정방법	
1급	청소년연구방법론, 청소년 인권과 참여, 청소년정책론, 청소년기관운영, 청소년지도자론	주·객관식 필기시험	
2급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객관식 필기시험	면접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면접시험 면제)
3급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활동,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객관식 필기시험	면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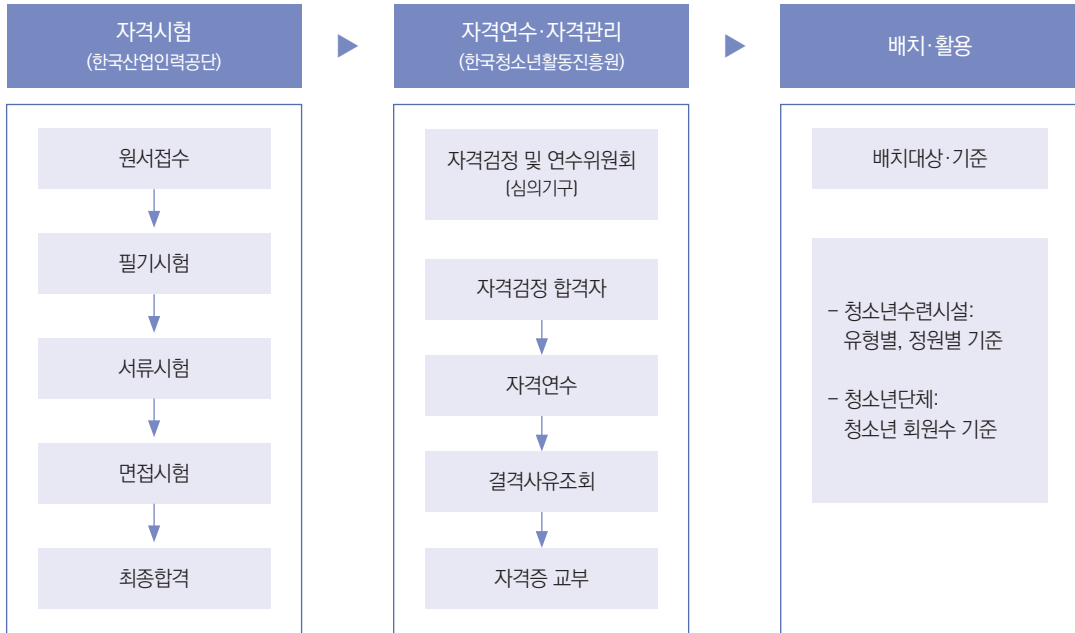
주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과 관련된 전공과목의 인정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함.

자료 : 여성가족부(2020).

## 나.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청소년지도사 양성은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자격검정을 실시하고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연수를 실시한 후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하고 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체계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10-2-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체계도



자료 : 여성가족부(2020).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합격 기준은 필기시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한다. 또한 2008년 1월부터는 2급 자격기준 중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와, 3급 지도사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는 해당 급수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는 30시간 이상으로 하며, 자질과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 다. 청소년지도사 양성실적

청소년지도사 양성계획에 따라 1993년부터 2020년까지 1급 청소년지도사 1,972명, 2급 청소년지도사 41,684명, 3급 청소년지도사 14,363명 등 총 58,019명의 국가공인 청소년지도사를

배출하였다. 2020년도의 경우 총 4,244명의 청소년지도사를 배출하였는데 이 중 여성이 3,072명으로 72.4%를 차지하고 있으며 1급은 107명, 2급은 3,293명, 3급은 844명이었다. 연도별 청소년지도사 양성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0-2-3〉 청소년지도사 양성 현황

(단위: 명)

연도별	1급		2급		3급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1993	-	-	311	174	156	72	467	246	713
1994	78	18	229	146	137	100	444	264	708
1995	81	20	193	168	137	116	411	304	715
1996	36	11	105	88	54	47	195	146	341
1997	98	33	167	147	110	80	375	260	635
1998	87	33	122	158	93	100	302	291	593
1999	77	51	266	264	96	114	439	429	868
2000	70	43	255	330	139	151	464	524	988
2001	58	39	421	569	221	275	700	883	1,583
2002	78	39	310	527	189	286	577	852	1,429
2003	47	43	269	431	194	386	510	860	1,370
2004	28	46	232	431	180	400	440	877	1,317
2005	14	17	160	296	217	688	391	1,001	1,392
2006	43	47	314	478	148	218	505	743	1,248
2007	11	20	247	448	37	146	295	614	909
2008	7	20	342	1,744	114	517	463	2,281	2,744
2009	11	23	359	1,806	186	546	556	2,375	2,931
2010	20	33	437	1,937	177	691	634	2,661	3,295
2011	30	52	436	1,826	140	567	606	2,445	3,051
2012	3	5	454	2,048	163	589	620	2,642	3,262

연도별	1급		2급		3급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2013	13	28	697	2,344	225	530	935	2,902	3,837
2014	-	-	12	50	13	31	25	81	106
2015	9	19	837	2,438	216	543	1,062	3,000	4,062
2016	39	37	906	2,440	192	482	1,137	2,959	4,096
2017	19	32	831	2,201	182	516	1,032	2,749	3,781
2018	32	32	843	2,181	217	567	1,092	2,780	3,872
2019	46	89	790	2,176	278	550	1,114	2,815	3,929
2020	41	66	871	2,422	260	584	1,172	3,072	4,244
누 계	1,076	896	11,416	30,268	4,471	9,892	16,963	41,056	58,019

자료 : 여성가족부(2020).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02-2100-6249

## 라.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시설과 단체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청소년시설별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10-2-4〉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배치대상		배치기준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4명 이상의 청소년지도사를 두되, 수용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청소년수련원	1.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청소년지도사를 두되, 수용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과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2.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교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 계절에만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배치대상		배치기준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유스호스텔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두되, 숙박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청소년야영장	1.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 다만, 설치·운영자가 동일한 시·도 안에 다른 수련시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야영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다른 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를 둔 경우에는 그 청소년야영장에 청소년지도사를 별도로 두지 않을 수 있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야영장으로서 청소년수련거리의 실시 없이 이용 편의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
	청소년특화시설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청소년지도사를 둔다.
청소년단체		청소년회원 수가 2천명 이하인 경우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두되, 청소년회원 수가 2천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2천명마다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두며, 청소년회원 수가 1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의 5분의 1 이상은 1급 청소년지도사로 두어야 한다.

자료 : 여성가족부(202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사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02-2100-6266

## 마. 청소년지도사의 보수교육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 등에서 청소년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는 역량강화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24조2에 근거하여 2013년부터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 2017년 1월,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개정(2017. 1. 1. 시행)으로 교육시간이 20시간 이상에서 15시간 이상으로 완화되었으며 청소년정책 및 권리교육, 성평등교육,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청소년활동과 안전, 청소년현장에 필요한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02-2100-6249

### 3. 청소년상담사

#### 가.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은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상담실무 경력이나 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100시간 이상의 연수를 마친 자에게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이다. 청소년상담사는 국가차원의 청소년상담 관련 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초·중·고·대학의 학생상담소,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청소년쉼터, 청소년관련 복지시설, 경찰청이나 법무부 등 청소년업무 지원부서, 사설 청소년상담실, 아동·청소년 대상 병원, 일반 청소년관련 사업체, 근로청소년관련 사업체 등에서 청소년상담업무에 종사한다.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과 자격 검정의 과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10-2-5〉 청소년상담사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 기준

등급	응시자격 기준
1급 청소년상담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li> <li>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li> <li>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li> <li>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li> </ol>
2급 청소년상담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li> <li>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li> <li>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li> <li>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li> </ol>
3급 청소년상담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li> <li>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li> <li>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li> <li>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li> <li>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li> <li>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li> </ol>

주 : 1) 상담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2)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은 별표 1의 비고 제4호와 같다.

3) 응시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자격검정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료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별표 3.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기시험 과목은 1급 5과목, 2급과 3급은 각각 6과목이며, 합격기준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다. 필기시험 합격 후 면접시험을 볼 수 있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응시자격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심사를 실시한다. 면접시험에 합격하고 서류심사를 통과한 자를 자격검정 최종 합격자로 본다.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과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10-2-6)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과목과 방법

등급	검정과목		검정방법	
	구분	과목		
1급 청소년상담사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담사 교육 및 사례지도</li> <li>• 청소년 관련 법과 행정</li> <li>•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li> </ul>	필기 시험	면접 시험
	선택	• 비행상담·성상담·약물상담·위기상담 중 2과목		
2급 청소년상담사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li> <li>•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li> <li>•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li> <li>• 이상심리</li> </ul>	필기 시험	면접 시험
	선택	• 진로상담·집단상담·가족상담·학업상담 중 2과목		
3급 청소년상담사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달심리</li> <li>• 집단상담의 기초</li> <li>• 심리측정 및 평가</li> <li>• 상담이론</li> <li>• 학습이론</li> </ul>	필기 시험	면접 시험
	선택	• 청소년이해론·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주 : “청소년 관련 법” 이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활동 진흥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소년법」을 말하며, 그 밖의 법령을 포함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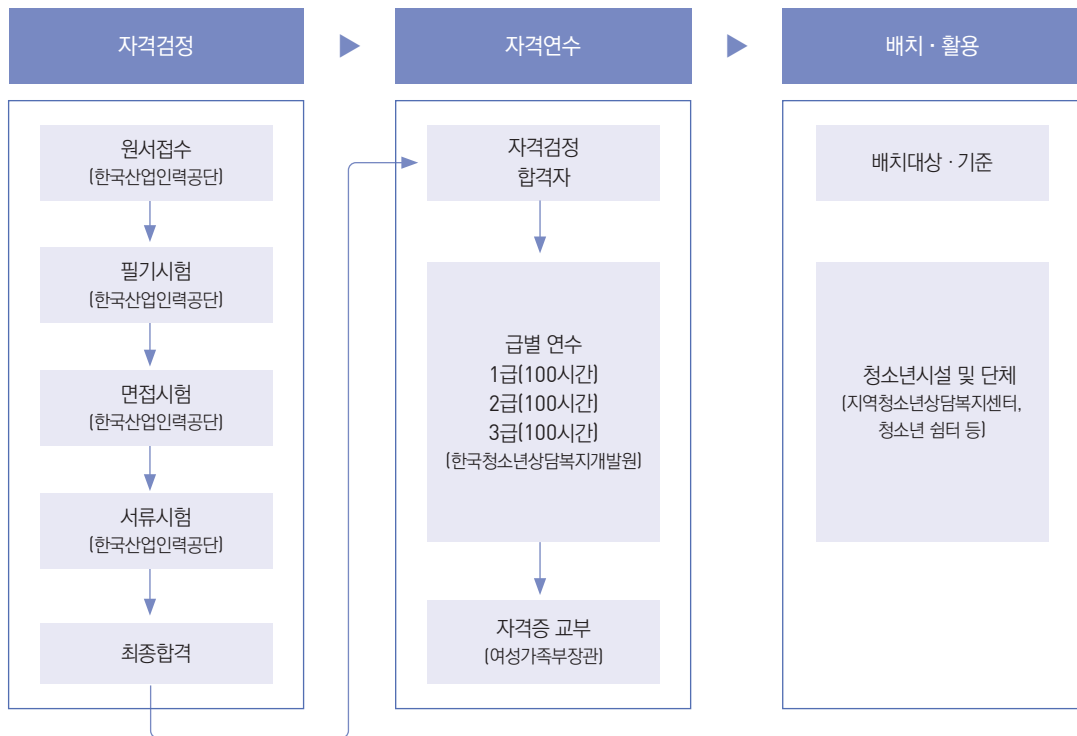
자료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별표 4.



## 나. 청소년상담사 양성체계

청소년상담사의 경우,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자격검정을 실시하고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100시간 이상 의무 연수를 실시하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 배치·활용된다.

[그림 10-2-3] 청소년상담사 양성체계



자료 : 여성가족부(2016).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과목은 청소년 상담관련 이론과 실제적인 실무를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1급·2급·3급 모두 5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격연수 형태는 급별 책무에 맞는 질적 교육을 위하여 이론, 세미나,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0-2-7〉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과목

등급	연수과목	
1급 청소년상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상담·수퍼비전</li> <li>• 청소년 위기개입 II</li> <li>• 청소년 관련법과 정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상담프로그램 개발</li> <li>• 청소년 문제세미나</li> </ul>
2급 청소년상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상담과정과 기법</li> <li>• 부모상담</li> <li>• 청소년 진로·학업상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상담</li> <li>• 청소년 위기개입 I</li> </ul>
3급 청소년상담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개인상담</li> <li>• 청소년매체상담</li> <li>• 청소년 발달 문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집단상담</li> <li>• 청소년 상담 현장론</li> </ul>

자료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제1항 별표 5.

## 다. 청소년상담사 양성실적

청소년상담사 양성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총 19회의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이 있었으며, 청소년상담사 1급 885명, 2급 9,382명, 3급 16,097명으로 총 26,364명의 청소년상담사를 양성하였다.

〈표 10-2-8〉 청소년상담사 양성 현황

(단위 : 명)

연도	1급		2급		3급		계
	남	여	남	여	남	여	
2003	8	99	22	271	37	247	684
2004	4	17	6	84	11	92	214
2005	5	16	21	150	19	132	343
2006	6	24	17	154	10	196	407
2007	0	1	11	166	17	279	474
2008	6	41	23	171	39	411	691
2009	3	12	20	219	56	461	771
2010	1	13	12	128	21	311	486
2011	1	18	16	282	27	391	735

연도	1급		2급		3급		계
	남	여	남	여	남	여	
2012	3	26	31	304	65	863	1,292
2013	3	9	17	208	94	896	1,227
2014	3	12	39	370	142	1,416	1,982
2015	9	43	48	516	135	1,396	2,147
2016	5	34	74	756	239	1,902	3,010
2017	10	78	98	944	193	1,401	2,724
2018	15	94	84	703	193	1,322	2,411
2019	17	70	155	1,438	223	1,400	3,303
2020	20	159	175	1,649	213	1,247	3,463
계	119	766	869	8,513	1,734	14,363	26,364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20).

## 라. 청소년상담사 배치기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면, 배치대상 청소년시설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청소년상담사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10-2-9〉 청소년상담사 배치기준

배치대상 청소년시설	배치기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사 3명 이상을 둔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사 1명 이상을 둔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상담사 1명 이상을 둔다.

자료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별표 5.

청소년지도사와 마찬가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에 배치된 청소년상담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청소년기본법」 제23조).

## 마.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청소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라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청소년 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는 자질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3장

## 청소년 단체

## 1.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The National Council of Youth Organizations in Korea)’는 “국제연합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국내·외 청소년단체의 상호연락과 제휴 및 협조를 도모함으로써 청소년활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5년 12월 8일 국내 15개 민간 청소년단체의 협의기구로 창립되었다. 청소년문제에 대한 공동연구, 정보교환, 청소년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청소년관련 정부부처, 유관 사회단체, 각급학교 및 세계청소년기구와의 연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활동하고 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1966년 8월 10일에는 ‘세계청소년단체협의회(World Assembly of Youth : WAY)’에 가입 하였으며, 1972년 8월 15일에는 ‘아시아청소년단체협의회(Asian Youth Council : AYC)’의 창설멤버가 되어 우리 청소년들이 세계 속으로 발돋움하는 데에 일익을 담당하는 등 청소년육성 운동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활동은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육성법」과 「청소년헌장」 제정 등 청소년정책이 추진되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청소년육성법」에 따라 1988년 11월 11일 사단법인으로서의 조직과 기능을 새롭게 정립하였다. 2005년에는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청소년 기본법」 제40조에 근거한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청소년육성과 국내·외 청소년단체 상호간의 협력 및 교류와 지원”을 목적으로 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단체들의 협의체 역할 및 기능수행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현재 7개의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포함하여 63개 청소년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2020년 기준으로 262만여 명의 청소년회원과 26만여 명의 청소년지도자 등 총 287만여 명이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회원단체 가입은 「청소년 기본법」에 준하여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신청하면 이사회 승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설립목적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해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지원,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에 대한 협조·지원, 청소년지도자의 연수와 권익증진, 청소년 관련 분야의 국제기구(WAY, AYC, UN Youth Unit, AUN 등)활동 및 외국 청소년단체와의 교류, 청소년육성을 위한 홍보 및 실천운동, 청소년관련 도서출판 및 정보지원, 청소년활동에 관한 조사·연구지원, 우수 청소년단체와 모범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의 포상, 국제청소년센터의 운영 및 관리, 기타 청소년 및 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관련 이슈를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회원단체, 유관기관, 청소년관련기관·단체 등과의 연대를 통해 대정부·대국회 활동을 전개하였고, 청소년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청소년정책토론회 등 관련 활동에 진력하였다. 또한, 청소년지도자의 전문 역량강화를 위해 청소년단체 소속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국내·외 연수를 진행하였다. 청소년 분야 정보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특히 청소년학과목의 기본·전문지식 습득과 청소년지도자의 교양 함양을 위해 2017년부터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사이버 평생교육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청소년학술정보지인 「오늘의 청소년」과 연간 사업실적을 망라한 사업 활동 종합보고서 발간 등 홍보·출판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회원단체 협력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진행하여 27개 회원단체를 선정하여 단체활동 활성화를 지원하였고, 2020년에는 청소년지도자들의 소통을 통한 화합과 교류의 장인 '제16회 전국청소년지도자대회'를 개최하였고, 성년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성년이 된 청소년들을 축하하고 격려하여 청소년 분야에 대한 범사회적인 관심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교 내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가능성 모색 연구 TF팀을 구성하여, 단체별 활성화방안 및 활동결과를 결과보고회(12. 1, 국제청소년센터)를 통해 발표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세계청소년단체협의회'와 '아시아청소년단체협의회' 등 청소년국제기구의 정회원국으로서 역할을 다하였고,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영상회의 등을 활용한 '2020 한·아세안 청소년 서밋'을 통한 국제 교류 활동을 통해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아울러 한국 청소년단체협의회는 국내·외 청소년 교류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유스호스텔인 '국제청소년 센터'를 2000년에 개원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매년 세계 각국의 청소년 및 지도자들이 참가하는 다양한 교류 사업을 개최하고 있고, 이 외에도 기업 및 기관의 교육연수 장소이자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체육의 장으로 활용되는 등 청소년교류 및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2.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The Korea Association of Youth Centers)’는 전국의 820여 개 공공 및 민간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야영장,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의 발전을 위한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간 연계 협력을 위한 협의와 조정,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 정책 제안 등을 위해 1989년 10월 1일 민간 청소년수련시설 중심으로 창립하였다. 1994년 6월에 사단법인(문화체육관광부)으로 승인받았으며, 2002년도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을 포함하여 조직과 기능을 재정립하였으며,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로 명칭을 정하여 2004년 2월에 공포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0조 의거 2005년 9월에 특수법인(국가청소년위원회)으로 재출범하였다.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주요 기능으로는 청소년활동 기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14개소)와 시설유형별협의회(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 또한, 시설협회의 회원인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및 위탁운영단체가 실시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지원, 청소년지도자의 연수·권익증진 및 교류사업, 청소년수련활동의 활성화 및 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조사·연구·지원사업,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사업 및 활동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청소년활동 참여 극대화를 위한 지역사회 및 학교 등과의 연계사업 개발·운영지원, 청소년활동을 통한 지역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실천 방안 수립, 청소년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방협회 구성 및 지역단위 청소년활동 지원체제 구축 등도 수행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다양한 청소년활동 욕구 수용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 지원, 청소년활동 기반 확대를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컨설팅,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운영 여건 개선 및 안전관리 능력 향상, 청소년수련시설이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 청소년지도자의 연수·권익증진 및 교류사업, 수련활동의 활성화 및 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간담회 개최 및 홍보, 수련활동에 대한 조사·연구·지원 사업과 국제교류사업, 청소년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지도자 양성사업,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사업의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설간의 벤치마킹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우수사례 공모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 및 지도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오픈강좌 등 청소년수련시설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과 청소년수련시설의 정책

개발 및 추진 체제 구축 등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주인인 청소년이 직접 자문·평가·참여토록 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우수 청소년운영위원회 선정 및 사례 발표, 전국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표단 구성·운영,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대표자 워크숍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변화, 안전성 강화를 요구하는 시대적 환경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변화와 혁신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활동의 전문화 및 활성화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국가 성장 동력이 됨은 물론, 그들과 함께 땀 흘려 헌신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제 4 장

## 청소년관련 행정기관

## 1.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 가. 설치 경위

청소년 업무를 전담하는 최초의 정부조직은 청소년관련 최초의 종합법률인 「청소년육성법」이 시행된 1988년 당시 체육부에 설치된 청소년국이다. 체육부의 청소년국은 1991년 청소년정책 조정실로 확대·개편되었고, 1993년 3월에는 정부조직의 통합에 따라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로 변화되었다. 이후 1997년 3월, 늘어나고 있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유해약물에 대한 유통규제와 단속,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시행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1997년 7월 문화체육부에 설치되었다.

청소년 조직은 다시 1998년 2월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청소년정책실이 청소년국으로 변화되어 문화관광부에 존치되었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변경되어 활동하여왔다. 이렇게 이원화된 청소년 중앙행정조직은 행정기관 분리에 따라 체계적·종합적 정책수행이 곤란하였고, 새로운 정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응능력이 미비하였다. 또한 각 부처에 산재한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역할을 시행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2004년 12월 17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정부의 청소년정책 기능(육성 및 보호)을 통합하는 방안으로 국무총리소속 하에 ‘청소년위원회’ 설치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2004년 12월 20일에 ‘청소년위원회’ 설립 추진단을 구성·운영하였으며, 2005년 3월 24일에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청소년위원회’ 설치를 위한 관계법률(「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정부조직법」)을 개정·공포하였다. 또한 2005년 4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청소년위원회 직제를 제정하였으며, ‘청소년위원회’를 공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5년 4월 27일 국무총리 소속하의 ‘청소년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이후 「청소년 기본법」 개정에 따라 2006년 3월 30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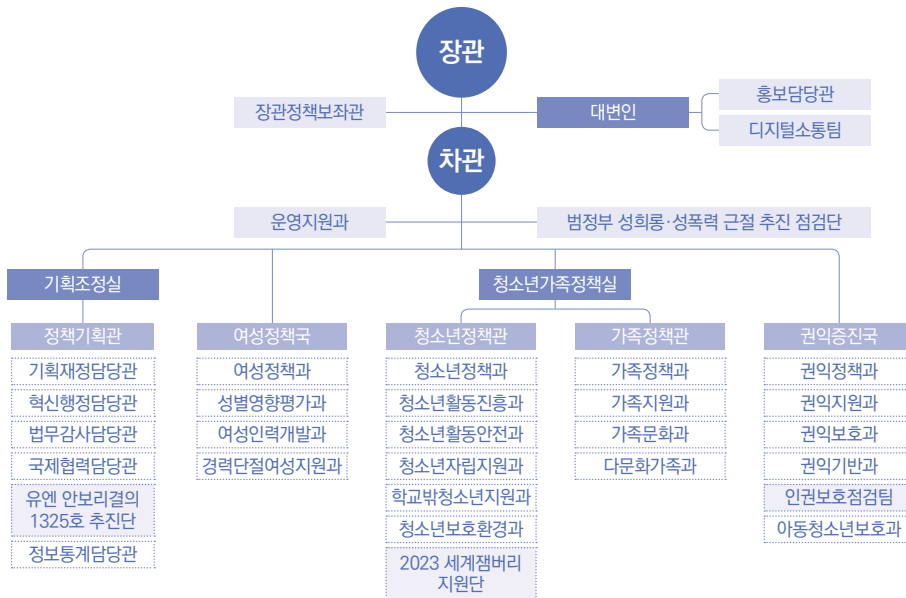
2008년 3월에는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종전 보건복지부의 아동정책, 여성부의 보육정책,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 정책을 통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로 개편되었다. 이와 함께 2008년 2월 29일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수행했던 가족 및 보육정책 기능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었고,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의 조정·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다.

2010년 1월 18일 가족해체 및 다문화가족 등 현 사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및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가족기능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어 가족정책 및 청소년 육성·보호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다.

## 나. 조직구조 및 업무

청소년가족정책실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청소년정책관, 가족정책관 등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 등급으로 하고, 청소년정책관과 가족정책관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 등급으로 보하고 있다.

[그림 10-4-1] 여성가족부 조직도



자료 : 여성가족부(2020).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관의 조직과 기능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sup>1)</sup>에 잘 정리되어 있으며,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표 10-4-1〉 청소년정책관의 조직과 기능

구 분	내 용
청소년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정책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li> <li>•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의 협의·조정 총괄</li> <li>• 청소년정책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li> <li>•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의 운영</li> <li>• 청소년정책 전달 기구·공무원 등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li> <li>• 관계 기관 청소년정책의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청소년의 달 등 청소년 관련 행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li> <li>• 청소년 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제도개선</li> <li>• 청소년 관련 통계의 유지 및 백서 등의 발간</li> <li>• 청소년 관련 산하기관 및 법인 관리 총괄</li> <li>•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지도·감독</li> <li>•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종사자의 교육·훈련</li> <li>• 청소년지도자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li> <li>• 청소년 인권 보호 등 청소년 권리증진에 관한 사항</li> <li>• 청소년 특별회의 및 참여위원회 등 청소년 정책참여기구 구성·운영 지원</li> <li>• 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 프로그램의 개발·보급</li> <li>• 청소년 우대정책의 수립 및 교육·홍보</li> <li>• 청소년증의 발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청소년활동진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활동진흥, 역량개발 및 국제교류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li> <li>•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운영 지원</li> <li>• 청소년 프로그램·사업의 개발·보급 및 평가</li> <li>• 청소년의 수련활동 및 문화·예술체험 활성화에 관한 사항</li> <li>• 청소년 축제, 동아리,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사항</li> <li>• 청소년 활동정보 제공·지원</li> <li>•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연수 및 활동 지원</li> <li>•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방과 후 활동프로그램의 개발·지원</li> <li>• 청소년의 국제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li> <li>• 청소년 관련 국제행사 개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li> </ul>

1)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www.mogef.go.kr.

구 분	내 용
청소년활동안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수련활동 안전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계획의 수립·시행</li> <li>•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및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업무관리, 온라인 종합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운영</li> <li>•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청소년수련활동 이행 실태 점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관리, 지도·감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li> <li>•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공개에 관한 사항</li> <li>• 국·공립 청소년수련시설 확충계획 수립 및 건립에 관한 사항</li> <li>•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지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li> <li>• 국립청소년수련원의 지도·감독 및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li> </ul>
청소년자립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복지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계획의 수립·시행</li> <li>• 청소년복지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li> <li>• 청소년복지서비스의 조사·연구 및 통계에 관한 사항</li> <li>•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지원 및 청소년복지·지원업무 종사자의 교육·훈련</li> <li>•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지도·감독</li> <li>•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연수 등에 관한 사항</li> <li>• 취약계층 청소년의 보호·상담·자립 등에 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li> <li>• 가출 등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청소년 비행·폭력 등의 예방 및 선도에 관한 사항</li> <li>• 폭력, 학대 등에 노출된 청소년의 상담, 치료 및 법률 서비스 지원</li> <li>• 위기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조정</li> <li>•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상담·구조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지도·지원</li> <li>• 청소년 전화·청소년 모바일 상담 및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운영</li> <li>• 청소년의 사회진출 및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li> </ul>
학교밖청소년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계획의 수립·시행</li> <li>•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li> <li>•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li> <li>•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li> <li>•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li> <li>•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상담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li> <li>•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li> <li>•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li> <li>•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li> </ul>

구분	내용
청소년보호환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보호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li> <li>• 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매체물·업소·약물·물건 등의 청소년 유해성 심의·결정 등에 관한 사항</li> <li>•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점검, 단속, 규제 및 개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인터넷 중독 등 매체의 역기능 피해의 예방·치료 및 재활 지원</li> <li>• 청소년의 건전한 매체 활용능력증진 및 건전한 매체 문화 조성 등에 관한 사항</li> <li>• 청소년 대상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 등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li> <li>•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신·변종 유해업소 등 청소년유해환경 점검·단속활동</li> <li>• 지방행정기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유도 및 평가</li> <li>•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추진상황 종합 점검·관리</li> <li>•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li> </ul>
2023 세계장애리 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장애리 조직위원회 설립 준비</li> <li>• 세계장애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li> <li>• 세계장애리 기반시설 설치 협업</li> <li>• 세계장애리 6대 유치공약(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등) 추진</li> <li>• 세계장애리 홍보 및 붙업 조성</li> <li>• 세계장애리 영내외 프로그램 개발·지원</li> </ul>

주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자료 : 여성가족부(2020).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의 조직은 청소년정책관과 가족정책관으로 구성되며, 그 중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정책과,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활동안전과, 청소년자립지원과, 학교밖 청소년지원과, 청소년보호환경과, 2023 세계장애리 지원단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 정책관’의 정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0-4-2〉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관 정원 현황

(단위 : 명)

직급	고위공무원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원	2	1	5	3	19	15	7	3	2	57

자료 : 여성가족부(2020).

## 2. 청소년관련 업무 추진기관

여성가족부를 포함한 중앙정부 부처는 고유기능에 따라 청소년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각 부처의 청소년관련 업무를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상의 정책 영역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4-3〉 청소년정책 영역별 소관부처 현황

영역	세부과제		소관부처	
1.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1-1. 청소년 참여 확대	1-1-1.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참여 확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1-1-2. 학교에서의 참여 및 권익 증진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1-1-3. 청소년 참여 방식의 다변화	전 부처	
	1-2.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	1-2-1. 청소년 인권 및 권리 의식 제고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2-2.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 예방 및 보호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1-2-3. 아동·청소년 여가권 신장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1-2-4. 청소년 정신 건강권 보호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1-2-5. 청소년 신체 건강권 보장	법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병무청	
	1-3.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 지원	1-3-1. 청소년 시민의식 함양	선거관리위원회,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제처, 방송통신위원회, 통일부	
		1-3-2. 양성평등 의식제고	여성가족부, 교육부	
		1-3-3. 청소년 인성 함양을 위한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2.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2-1.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	2-1-1. 역량 기반 청소년활동 지원체계 구축	여성가족부, 교육부, 중소기업부
			2-1-2.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활동 활성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2-1-3. 과학기술·산업분야 핵심인재 양성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부, 특허청	
2-1-4. 수요자 중심으로 청소년활동 인프라 재구조화			여성가족부	

영역	세부과제	소관부처	
2.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2-2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2-2-1.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2-2-2.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2-2-3. 국제교류 활성화 및 내실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외교부
		2-2-4. 남·북한 청소년 교류 기반 조성	여성가족부, 통일부
		2-2-5. 청소년 체험활동 안전관리 강화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해양경찰청
	2-3. 청소년 진로교육 체계 강화	2-3-1. 대상별 맞춤형 진로활동 내실화	여성가족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2-3-2.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교육 강화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2-3-3.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여성가족부, 교육부
		2-3-4. 청소년(청년) 취업 지원 기반 강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2-3-5. 청소년(청년) 창업 활성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3.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3-1. 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3-1-1. 촘촘한 청소년 복지지원체계 운영	여성가족부
		3-1-2.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 및 보호·지원 확대	교육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3-1-3. 청소년 폭력예방 및 아동 안전 강화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3-1-4. 가족관계증진을 위한 서비스 기반 조성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교육부
		3-1-5.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법무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3-2. 대상별 맞춤형 지원	3-2-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3-2-2. 가출 청소년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3-2-3. 비행 청소년 재범 예방 및 회복 지원	법무부, 경찰청,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3-2-4. 다문화 청소년 지원 강화	교육부, 통일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3-2-5. 청소년 한부모 지원 강화	교육부, 여성가족부
		3-2-6. 저소득층 청소년 자립기반 마련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3-2-7. 나홀로 청소년 활동·돌봄 지원 강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영역	세부과제		소관부처
3.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3-3.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보호지원 강화	3-3-1. 청소년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3-3-2.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 보호	교육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3-3.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지원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4.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4-1.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강화	4-1-1. 청소년정책의 실효성 제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4-1-2. 통합형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여성가족부
		4-1-3. 청소년정책 위상 강화	여성가족부
	4-2. 지역·현장 중심의 청소년정책 활성화	4-2-1.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지원 확대 및 운영 내실화	여성가족부
		4-2-2. 지자체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	여성가족부
		4-2-3. 청소년 사업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을 이어주는 플랫폼 마련	여성가족부
	4-3.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4-3-1.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강화	여성가족부
		4-3-2.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여성가족부

자료 : 여성가족부(2020).

부처별 청소년 업무의 특성을 보면 ‘부’단위 기관에서는 고유의 정책기능과 관련된 사업 중 청소년이 대상고객인 사업에 일정부분을 투자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청’단위 기관에서는 정책 예산보다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성 예산을 지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3. 청소년관련 시·도 행정조직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로 구분되어 추진되던 아동·보육·청소년정책은 보건복지가족부로 통합되어 추진되어 오다가 2010년 1월에 청소년정책이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다. 17개 시·도의 청소년관련 행정은 여러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지방청소년육성



위원회 설치 운영 및 시·도 청소년 업무 총괄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중앙정부와의 청소년 업무 연계 및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각 시·도 청소년관련 행정조직은 다음과 같다.

〈표 10-4-4〉 시·도 청소년관련 행정조직 현황

구분	담당 실·국	청소년 분야
서울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부산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대구	여성청소년교육국	청소년과
인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광주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
대전	청년가족국	교육청소년과
울산	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종	보건복지국	아동청소년과
경기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강원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청소년가족과
충북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충남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전북	복지여성보건국	여성청소년과
전남	자치행정국	희망인재육성과
경북	아이여성행복국	아이세상자원과
경남	여성가족아동국	아동청소년과
제주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자료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 4.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르면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의 소속 하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회의 성격은 각 시·도별로 상이한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전북, 제주는 심의기구로 운영되고 있고, 울산, 세종, 충북, 충남, 경북, 경남은 자문기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 경기, 강원, 전남은 자문기구와 심의기구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

〈표 10-4-5〉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성격

구분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성격	구분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성격
서울	심의/자문	강원	심의/자문
부산	심의	충북	자문
대구	심의	충남	자문
인천	심의(심사)	전북	심의
광주	심의	전남	심의/자문
대전	심의	경북	자문
울산	자문	경남	자문
세종	자문	제주	심의
경기	심의·의결/자문	-	-

자료 :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 5. 정부 산하기관

### 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의해 청소년활동 현장과 정책을 총괄 지원하여 청소년 육성을 지원하고자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수행하고 있는 주요 정책지원 사업으로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인증하고 그 기록을 유지·관리·제공하는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지원과 기록 관리, 청소년들이 신체단련·자기개발·자원봉사·탐험활동을 고르게 수행하여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 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지원 및 안전 관련 컨설팅 홍보, 그리고 국내·외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교류활동의 진흥 및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 활동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국립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과 청소년지도자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국가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여 2020년 말 현재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충남 천안),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강원 평창), 국립청소년우주센터(전남 고흥), 국립청소년농생명센터(전북 김제), 국립청소년해양센터(경북 영덕) 총 5개소의 국립 청소년수련시설을 각 원별 특성을 살려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지도자 양성과 관련하여 국가 자격증인 청소년지도사(1급, 2급, 3급) 자격 부여를 위한 자격연수와 함께 현직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운영하고, 청소년지도사 자격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다양한 전문연수를 개설하고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지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함양을 목표로 한 전문 연수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체험 활동을 진흥시켜 청소년의 잠재역량 계발과 인격형성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청소년활동을 조성하며, 수련·참여·교류·권리증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며 자신의 꿈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가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 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Korea Youth Counseling & Welfare Institute: KYCI)은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22조에 의해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주요 기능으로는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관계자 회의, 지도·지원 등을 실시하고, 종합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 이슈가 되는 청소년 문제들을 분석·연구함으로써 문제 해결과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상담복지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연구를 수행하고, 다양하고 심각해진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 청소년 유관 기관에 보급·운영하는 등 청소년 상담기법의 연구 및 상담 자료의 제작·보급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변화하고 다양화되는 청소년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상담의 전문화, 청소년 상담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제도를 위탁 운영하여 자격연수 및 보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이 외에도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친구의 문제해결을 돕는 또래상담자 양성, 건강한 청소년 성장에 목적을 둔 인성 및 품성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경제적, 환경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진로를 포기하거나 보호시설 등에 입소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립의지를 심어주고, 학교복귀, 진로 및 취업을 지원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여 건강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인터넷·스마트폰치유캠프(11박 12일, 중·고생 대상), 가족치유캠프(2박 3일, 초등생 및 보호자 대상)를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지원할 뿐만 아니라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을 위탁 운영하여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해소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서·행동장애 청소년들의 조화로운 성장을 위하여 상담·치료, 대안교육, 자립지원 등의 장·단기과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상담·집단상담·심리검사 등의 전문상담과 사이버상담 등 청소년상담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있다.

- 청소년 상담 및 복지와 관련된 정책의 연구
- 청소년 상담·복지 사업의 개발 및 운영·지원
- 청소년 상담기법의 개발 및 상담자료의 제작·보급
- 청소년 상담·복지 인력의 양성 및 교육
-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기관 간의 연계 및 지원
-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의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사항에 대한 지도 및 지원
- 청소년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 청소년에 관한 상담·복지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그 밖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사업

자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 22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밝은 미래를 위해 다양한 상담복지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청소년 및 청소년 가족이 가진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제5장

## 청소년관련 연구·개발기관

##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가. 설립배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송병국)은 「청소년육성법」 제19조에 의거하여 1989년 7월 1일에 ‘한국청소년연구원(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NYPI)’으로 설립되어 청소년분야 국책연구기관으로 국가 청소년정책 수립에 기여해오고 있다. 1991년 12월 31일에 제정·공포된 「청소년 기본법」 제50조에 의거하여 1993년 1월 1일에 ‘한국청소년개발원’으로 확대 및 개편되었고, 1999년 1월 29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 ‘인문사회연구회’에 소속되었다. 한편, 2005년 국무총리 산하 ‘인문사회연구회’와 ‘경제사회연구회’가 통합되어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NRC)’로 소속이 이관되었고, 2007년 5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잠재력 계발, 청소년의 디지털·글로벌 역량 강화, 청소년 인권과 참여를 위한 사회 환경 개선, 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복지·지원 등의 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연구와 자료축적을 통하여 미래사회의 새로운 국가발전 동력 창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수행, 청소년정책평가 및 자문·지원,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 추진, 정책 및 연구자료 제공 등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 및 정책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청소년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및 자문을 제공하는 등 청소년분야의 중추정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육성 및 보호를 위한 기초조사 및 이론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를 전망한다. 둘째, 청소년정책 연구 및 평가·분석을 통한 고객 만족을 실현한다. 셋째, 국내·외 교류협력과 결과 홍보를 통하여 청소년분야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한다.

이와 같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주요 기능에 따른 주요 업무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청소년 생활·의식 실태와 변화양상에 대한 종합적 조사연구를 통해 청소년 정책 수립의 시제열적 기초자료를 축적한다. 둘째,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및 정책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과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셋째,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효과분석을 위한 평가 사업 추진 및 자문 등을 지원한다. 넷째, 국내·외 청소년 전문기관 및 관련기관과의 국제 교류 및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교류·협력활동을 수행한다. 다섯째, 청소년 연구 및 정책 개발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세미나·협의회 등을 개최하며 정책연구 자료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나. 조직 및 방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993년 1월 한국청소년연구원에서 한국청소년개발원으로 확대·개편될 당시 원장을 중심으로 부원장과 5실 7부의 체계였으나, 1995년 12월 이후 기획조정실, 홍보사업단, 복지환경실, 수련활동실, 정보자료실, 행정실 등 5실 1단 12부로 조직이 개편되었다.

1997년 1월에는 외부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구팀제를 도입하여 4실 5부 8팀으로 재개편하였으며, 청소년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부설기구로 설치하여 청소년자원봉사중앙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1998년에는 자립경영 기반구축 및 경영혁신 추진을 위해 육성정책연구실, 복지정책연구실,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연구기획부, 총무부 등 2실 1센터 2부로 기구를 축소하였다. 그러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 기획부와 총무부를 기획조정실과 사무국으로 확대·개편하고, 주요영역별 업무를 팀제로 편성하였으며,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탁사업부서인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등 3실 1국 1부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2005년 초반에는 청소년의 생활·의식 실태와 변화양상에 대한 종합적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고자 2009년에는 1본부 1국 4실 5팀 체제로 개편하였다. 기획조정본부에 연구기획팀, 예산기획팀, 대외협력·자격검정팀 등 3팀으로, 감사실

외에 청소년정책연구실, 아동정책연구실, 통계조사연구실 등 3개의 연구실로, 사무국에 총무팀과 경리팀 등 2팀으로 각각 개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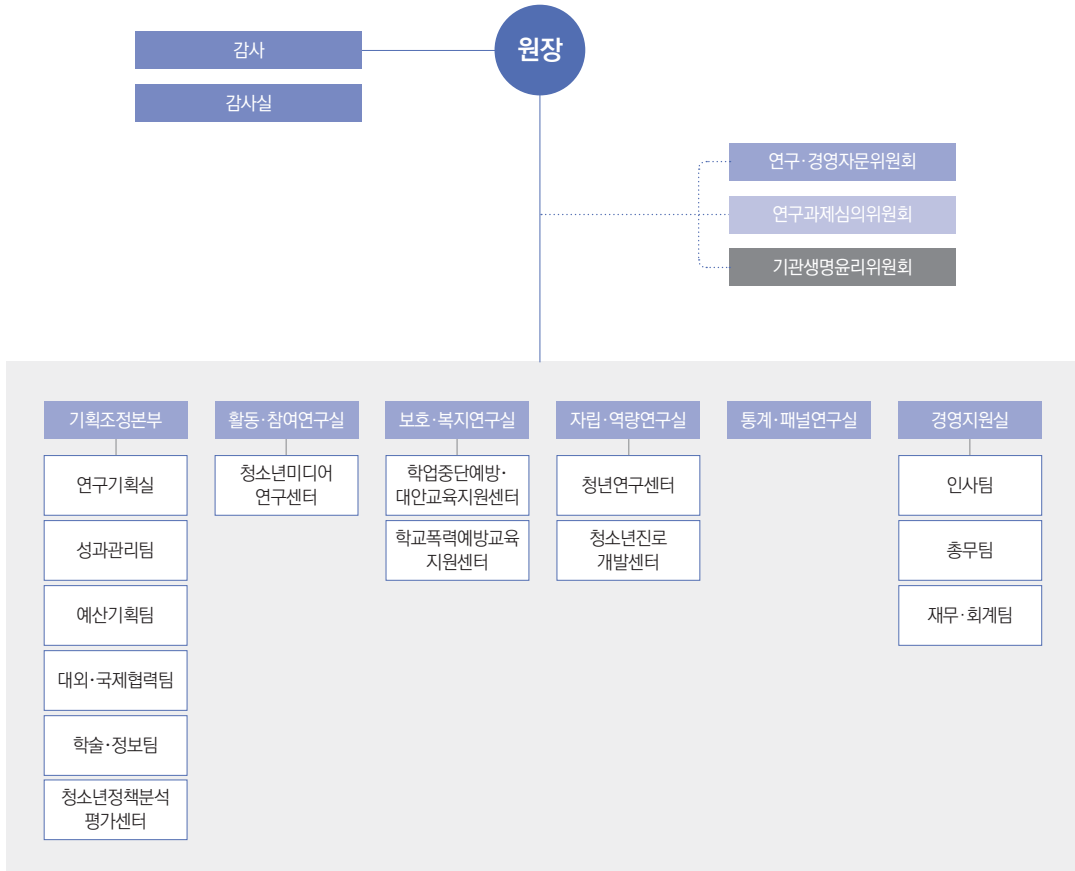
이후 2010년 중앙 및 지자체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및 실적 분석·평가를 위해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가 설치되었으며, 2014년에는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지원 정책의 수립·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었다. 2015년에는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국제 정세에 대비하기 위해 '동북아청소년분석센터'를 설치하였다. 연구실의 경우 2012년 활동·역량연구실, 보호·복지연구실, 통계·기초연구실로 개편하였고, 2015년에는 현안정책전략실을 신설하였으며 2016년에는 활동·참여연구실, 보호·복지연구실, 자립·역량연구실, 통계·기초연구실의 4개 연구실로 개편하였다. 기획조정본부는 2011년에 연구기획·대외협력팀과 예산기획·성과관리팀으로 운영되다가 2013년에 정보자료전산보안팀이 추가되었다. 2016년에는 연구·성과기획팀, 예산기획팀, 현안·협력팀, 학술·정보팀의 4팀으로 운영하였다. 한편, 2017년에는 부원장 직제가 신설되면서 기획조정본부는 기획조정실로 개편되었고, 원내 통합조사 등 기타 통계·기초조사 관련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통계아카이브센터'가 신설되었다. 또한, '동북아청소년분석센터'는 연구 대상을 동북아지역으로 특정하지 않고, 확대하기 위해 '청년연구센터'로 센터명이 변경되었으며,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는 '학업중단예방센터'와 '대안교육지원센터'로 분리되어 운영되었다.

2018년에는 1본부 5실 5센터로 다시 개편되었다. 부원장 제도가 폐지되고 기획조정실이 기획조정본부로 승격되었다. 이와 함께 연구·성과기획팀을 연구조정팀과 성과관리팀으로 분리하였고, 글로벌 역량 강화차원에서 현안·협력팀을 대외·국제협력팀으로 변경하였으며, 패널조사 강화를 위해 통계·기초연구실을 통계·패널연구실로 변경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학업중단예방센터'와 '대안교육지원센터'는 통합되어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로 변경되었으며, 2018년 5월부터 지속가능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와 지원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가 신설되어 운영 중이다.

2019년에는 1본부, 7실, 6센터로 개편되었다. 기획조정본부의 연구기획팀은 연구기획실로 승격되었으며, 경영지원실의 총무·인사팀은 총무팀과 인사팀으로 분리되었다. 신설된 센터는 '청소년진로개발센터'로 진로교육지원을 목적으로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 및 지원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미디어연구센터'는 2019년 4월에 개소되어 청소년 미디어 연구과제 발굴 및 수행, 청소년 미디어 역량개발을 위한 지원단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미디어 캠프 등 관련 사업을 운영 및 지원하고 있다. 2020년에는 1본부, 7실, 6센터로 조직을 유지하여 운영 중이다.



[그림 10-5-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직 현황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2020). <http://www.nypi.re.kr>에서 2020년 11월 30일 인출.

향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 관련 기초연구와 정책연구에 기반하여 미래사회의 새로운 국가발전 동력 창조에 기여함으로써 융합적인 청소년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청소년의 바른 성장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한 융합적 청소년정책연구 추진, 둘째, 청소년정책연구 허브기관으로서 국내·외 연구네트워크 강화와 고객체감 연구 성과 확산, 셋째, 조직의 윤리성·공공성 강화와 조직의 역량 극대화를 경영 목표로 설정하고 추진해오고 있다.

## 다. 사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0년 사업목표는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연구기획의 체계화 및 과학적 연구관리 체제 확립, 둘째, 고객중심 현장중심 연구체제 구축, 셋째, 연구 성과의 정책반영 및 사회적 확산 강화, 넷째, 청소년정책 관련 교류·협력체제 강화이다. 이를 토대로 2020년도 연구과제는 ① 정관상의 기관설립 목적 및 정부시책과의 부합성, ②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위상에 부합한 과제, ③ 아동·청소년·가족과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응 과제, ④ 연구결과의 정책반영도 현장 적용성이 높은 과제, ⑤ 연구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예산 및 인력 구성, ⑥ 원내 각 실별 고유기능 및 주요 연구영역에의 부합성 등 6개의 기준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선정되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사업은 크게 기관고유사업과 특수사업으로 구분되는데, 기관 고유사업 중 기본연구사업은 5가지 연구목표와 방향을 토대로 추진된다. 첫째, 연구원의 정관상 설립목적 및 전문화된 특성, 둘째, 연구원의 경영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 셋째, 국정과제 및 국가의제, 넷째, 연구목표 및 방향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다섯째, 사회적·정책적 환경 및 시대적 요구 변화 관련 사항이다. 2020년 기본연구사업 과제로 총 10개의 연구과제가 수행 중이다. 수행 중인 기본연구사업은 ①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② 청소년·청년의 디지털 플랫폼노동 실태 및 대응 방안연구, ③ 포스트 밀레니얼 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연구, ④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연구, ⑤ 청소년지도자 양성시스템 재구축방안 연구 II: 청소년상담사를 중심으로, ⑥ 청년 사회·경제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V, ⑦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III, ⑧ 청소년 빅데이터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⑨ 청소년의 사회배제 실태와 포용사회 정책과제 : 주거권 보장을 중심으로, ⑩ 시급한 현안 주제에 대한 단기적 연구수행 및 관련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수시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수사업은 일반사업, 협동연구사업, 패널사업으로 구분되며, 일반사업은 2개, 협동연구사업 4개, 패널사업 2개의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일반사업 과제는 ① 아동·청소년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인권 실태 2020, ②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정책 추진체계 구축 방안 연구 II이며, 협동연구사업은 ①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지원방안 연구 III: 청년 이직자, ②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I, ③ 미래 지향적 청소년 미디어 정책대응방안 연구 I 이 있으며, 패널사업에는 ①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XI, ②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20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 위탁사업으로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를, 교육부 위탁사업으로 '학업

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청소년진로개발센터’와 ‘청소년미디어 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국가들의 청년 연구동향을 점검하고 청년 정책자료 수집 및 분석과 청년 연구 교류협력 증진, 공동사업 및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청년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통계아카이브센터’를 두어 NYPI 한국 아동·청소년 통합조사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청소년통계아카이브센터’는 「NYPI 한국 아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NYPI Youth and Children Data Archive)」를 구축하여 통합조사시스템의 구성을 통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생산한 아동·청소년 데이터의 대내외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학업중단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는 중앙과 지방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소년정책 구현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추진의 책임성 강화와 정책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2010년 개소하였다. 주요 사업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분석평가 사업 추진, 둘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의 성과평가를 위한 자료분석·지표개발, 셋째, 청소년정책 포럼·세미나 개최 및 컨설팅 추진, 넷째, 청소년정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워크숍 개최, 다섯째,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시행계획 종합분석, 여섯째, 청소년백서 발간 지원 등이 있다.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는 학업중단예방과 학교 및 대안학교의 대안교육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 3월 교육부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학업중단예방센터를 지정하고, 동년 8월 추가로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함에 따라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되고 있다.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사업으로는 크게 연구/프로그램 개발 사업, 교육청/학교지원 사업, 정책홍보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연구/프로그램 개발 사업으로는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모듈개발(초등용), 미인가 대안학교 실태조사 연구, 홈스쿨링 도입 방안 연구 등을 진행하며, 교육청/학교지원 사업에는 시·도교육청 담당자 워크숍 지원, 민간위탁형 공립대안학교 설립추진 지원, 원격연수 활성화, 관리자 및 담당자 연수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학업중단예방 우수사례 UCC 공모전 등을 통해 정책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는 교육부의 학교폭력예방교육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년 5월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설치되었다. 정책 추진전략은 크게 3가지로, 단위학교 국가수준 예방 프로그램 적용 확대 및 자율적 예방 활동 강화, 언어 및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지속가능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체제 기반 구축 등이다. 이를 위해 센터에서는 ‘어울림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 학교폭력예방 교육 프로그램 체계화, 학교폭력예방 교육 지원체계 구축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청년연구센터’는 국내·외 국가들의 청년 연구동향을 점검하고, 청년 정책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며, 청년연구를 위한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공동사업 및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5년 개소하였다. 기본 방향으로는 연차별 단계적 투자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의 청년연구를 위한 연구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연차별로 청년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청년연구의 교두보와 허브(Hub)연구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년연구 관련 교류협력 및 공동사업 발굴, 청년연구 관련 정책과제 발굴 및 분석, 센터 홈페이지 운영 및 청년 온라인 웹진 및 뉴스레터 발간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진로개발센터’는 소외계층 학생 유형별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2019년 1월 1일에 개소되었다. 정책 추진방안은 크게 3가지로 소외계층 진로교육 및 상담지원 자료 개발과 보급, 학생 진로탄력성 지원단 활동 지원 및 선도교원 양성, 캠프 및 포럼 등을 통한 소외계층 진로교육 확산이다. 이와 관련하여 진로탄력성 심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진로지도프로그램 개발, 학생 맞춤형 상담지원 진로카드 개발 및 보급, 진로탄력성 지원단 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 선도교원 컨설팅 활동 지원, 진로탄탄 TV(youtube채널) 운영,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 공모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미디어연구센터’는 1인 미디어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등 청소년과 미디어 문제에 대한 연구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9년 4월 2일에 개소되었다. 2020년 일반과제로 ‘미래 지향적 청소년 미디어 정책대응 방안 연구’를 발굴하였으며, 2020년부터 교육부의 ‘미디어교육사업 활성화 사업’을 수탁 받아 운영 중이다. 청소년미디어연구센터의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청소년 미디어 연구과제 발굴 및 수행, 청소년 미디어 역량개발을 위한 지원단 운영 및 교원 연수, 청소년 미디어 역량개발을 위한 매뉴얼 및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성과분석 및 역량증진 컨설팅 등 운영지원, 청소년 미디어 캠프 등을 진행하고 있다.

## 2. 청소년관련 학과 및 민간 청소년관련 연구기관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문제가 대두되었지만, 1990년 초반까지는 청소년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학문적 기반이 충분하게 조성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청소년정책의 발전과 전문적인 청소년지도인력의 양성 및 확보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국내에서는 1991년부터 대학에 청소년관련 학과들이 신설되기 시작하였다.

2020년 현재, 청소년관련 학과(대학 및 대학원 포함)는 전국 13개 시·도에서 총 54개교<sup>2)</sup>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학위과정별로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은 총 9개교로, 2년제 3개교, 3년제 5개교, 사이버대학 1개교가 운영 중이다. 다음으로 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은 총 29개교로 일반 4년제 대학교(22개교)와 한국방송통신대학교(1개교), 4년제 사이버대학(6개교)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석사, 박사, 석·박 통합과정은 29개 대학교(대학원대학교 포함)의 36개 대학원에 존재한다. 이들 대학원 과정은 일반대학원(11개교)과 교육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상담대학원 등을 포함하는 특수대학원(24개교), 전문대학원(1개교)으로 구분되어 운영 중에 있다.<sup>3)</sup>

1991년에 청소년관련 학과가 최초로 개설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 관련 분야의 발전과 확장에 기인하여 청소년관련 학과의 수가 증가해왔으나, 최근 학생 수 감소와 대학구조조정으로 인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한편, 청소년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창출하며, 정기적으로 학술지를 발행하는 청소년 관련 학회들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연구와 관련된 대표적인 학회로는 한국청소년학회,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한국청소년활동학회, 한국청소년상담학회 등이 있다.

한국청소년학회는 청소년 분야 일반의 공익을 위한 사단법인으로 청소년 문제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수행하고 청소년(관련)학 분야의 학술연구 및 연구자 상호 간의 전문적 지식과 정보 교환을 통하여 청소년학의 정립과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1년 설립되었다. 한국청소년학회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인 '청소년학연구'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다양한 학술대회 및 세미나,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2) 2020년 12월 기준, 청소년 관련 학과(대학 및 대학원 과정 포함)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는 서울(17개교), 경기(6개교), 강원(1개교), 충남(8개교), 충북(2개교), 경북(4개교), 전남(3개교), 부산(3개교), 대구(2개교), 전북(3개교), 광주(2개교), 대전(2개교), 인천(1개교)에 소재하고 있음.

3) 청소년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명 및 학과명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1에서 제시하고 있음.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는 2004년 청소년학의 정체성 확립과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고 연구자 상호 간의 정보교환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미래청소년학회지'를 매년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또한 춘계, 추계 학술대회를 통하여 다양한 학술세미나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육체와 정신을 발달시킬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02년 창립되었다. 청소년 육성·보호를 위한 시설물의 확대 방안 및 기존 시설의 활성화 방안, 청소년 시설물의 연계 활용 방법, 시설물 사용 활성화 등을 위한 국제교류, 봉사활동, 국제심포지엄, 학술대회, 작품집 발간, 월례세미나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청소년시설환경'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

한국청소년복지학회는 1998년에 청소년복지의 연구와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창설되었으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청소년복지연구' 학술지를 발간하고, 비정기적으로 학술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다.

한국청소년활동학회는 청소년활동 분야의 연구 활동과 국내·외 학계, 현장 전문가들 간의 학술적 교류를 통하여 청소년활동의 이론체계를 정립 및 청소년활동의 학문발전과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2012년에 설립되었다. 한국청소년활동학회는 학술발표 및 국내·외 학술회의 개최, 학회지(한국청소년활동연구) 발간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학회는 2013년에 '현장 전문가' 중심의 청소년문제 예방 및 해결, 청소년 상담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설립된 학회이다. 부설기관으로 '한국청소년상담연구소'를 두어 현장상담사례 중심의 학술지인 '한국청소년상담학회지'를 발간하고, 청소년상담 프로그램을 연구 및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학회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정기적으로 청소년 관련 이슈에 대해 세미나, 학술대회 등도 개최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대구한의대학교 부설 청소년문제연구소, (사)청소년교육 전략21 등에서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속하고 있다.



### 3.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WARDY)

세계 각국의 청소년에 대한 연구 및 개발관련 기관 간의 협의회로 세계청소년연구개발 협의회(World Associa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Youth: WARDY)가 운영되고 있다. 협의회는 설립목적은 세계 각국의 청소년연구개발기관 간 정보 및 학술교류 확대를 통한 상호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청소년 건전 육성 및 연구에 도움이 되고, 21세기 지구촌 공동체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협회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1995년 11월 24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일본청소년 연구소, 중국 사회과학원(청년사회학연구회)은 이러한 취지의 세계협의기구 구성에 원칙적인 합의를 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하여 1997년 10월 7일 중국,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6개국의 8개 기관 대표들이 한국에 모여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WARDY)를 발족하였고, 2020년 현재까지 11개국 18개 기관 1개 국제학회가 참여하고 있다.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의 주요 사업은 크게 4개로 구분된다. 첫째, 청소년 연구 및 개발에 관한 공동사업 추진, 둘째, 청소년 및 청소년 전문가의 상호방문을 통한 교류추진, 셋째, 청소년 관련 국제학술회의 등 회원국 간의 상호교류와 연대를 통한 연구협력 강화, 넷째, 청소년관련 정보와 자료의 상호교환 등이다.

협의회의 주요 실적은 크게 국제세미나 개최와 공동연구 수행으로 구분된다. 국제세미나는 1997년 협회 발족 이후 매년 1~4회 개최되고 있다. 제1차 WARDY 국제학술회의는 1997년 10월 7일 ‘청소년폭력의 국제 비교’란 주제로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제2차 WARDY 국제학술회의는 1999년 10월 11일 중국 북경에서 ‘21세기를 지향한 청소년과 청소년 연구’란 주제로 개최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의 청소년 육성정책 수립의 과제’, ‘사이버상의 청소년 보호와 역량 강화’,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정책’, ‘다문화주의’, ‘미래시민으로서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과 교육’, ‘청소년정치참여실태’ 등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청소년정책 이슈에 대한 공통의 내용으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2020년에는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 기관인 유로필로조피와 함께 ‘2020 유로필로조피 서울 대회’ 온라인 컨퍼런스를 진행했다.

또한 협의회는 1997년 이후 매년 1~3개의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수행한 연구 주제로는 1997년 ‘청소년의식에 관한 한·중·일 국제비교연구’, 1999년 ‘청소년 성공의식에 관한 국제 비교연구-한·중·일을 중심으로’, 2000년 ‘새천년 청소년 생활실태와 의식에 관한 국제 비교연구-한·미·일·프를 중심으로’, 2001년 ‘주요 외국의 청소년정책 동향 연구’ 등이 있다.

최근 2010년대에는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청소년 생활실태 국제비교연구 (한·중·일·미)’, ‘한·중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 및 정책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아시아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국제비교 연구’, ‘4개국(한·중·미·일) 청소년 건강실태조사’ 등이 수행되었으며, 2018년에는 ‘한·중·일·미 청소년 장래 및 유학의식에 관한 비교’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표 10-5-1〉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 회원 현황

NO	국가	기관명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1	한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6~7층	<a href="http://www.nypi.re.kr">http://www.nypi.re.kr</a>	82-44-415-2114
2	중국	중국청년정치학원 (Chinese Youth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25 Xisanhuan Beilu, Haidian District, Beijing, People's Republic of China, 100089	<a href="http://international.cyu.edu.cn/">http:// international.cyu.edu.cn/</a>	86-10-88567233
3		상해청년관리간부학원 (Shanghai Youth College of Management)	Hongkou District, 573 West Bay Road, Shanghai, China	<a href="http://www.shqgy.com.cn">http:// www.shqgy.com.cn</a>	86-21-56662668
4	일본	게이오대학 (Keio University)	6th Floor, Mita Toho Building 3-1-7 Mita, Minato-ku Tokyo 108- 0073, Japan	<a href="http://www.coe-ccc.keio.ac.jp">http://www.coe- ccc.keio.ac.jp</a>	81-3-5427-1045
5		일본청소년연구원 (Japan Youth Research Institute)	15, Kasumigaokacho. Shinjuku-ku, Tok 0160, Japan	<a href="http://www1.odn.nejp/youth-study">www1.odn.nejp/youth- study</a>	81-3-3475-2535
6		아시아진로개발학회 (Asia Regional Association for Career Development)	1-1, East 9, North 16, Higashi-ku, Sapporo, Hokkaido 065-8567, Japan	<a href="http://www.aracd.asia/">http://www.aracd.asia/</a>	81-11-742-1965
7		슈레 대학교 (Shure University)	28-27, Wakamatsu-cho, Shinjuku-ku, Tokyo, Japan	<a href="http://shureuniv.org/">http://shureuniv.org/</a>	81-3-5155-9801



NO	국가	기관명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8	몽골	과학기술대학 (Mongol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MUST))	International Affairs Mongol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8th khoroo, Baga toiruu 34, Sukhbaatar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14191	<a href="http://www.must.edu.mn">http://www.must.edu.mn</a>	976-11-329081
9	말레이 시아	사회과학연구원 (Institute Pengajian Sains Sosial(IPSAS))	43400 UPM Serdang, Selangor Darul Ehsan, Malaysia	<a href="http://www.ipsas.upm.edu.my/">http:// www.ipsas.upm.edu.my/</a>	60-3-8947-1865
10		말레이시아 푸트라 대학교 (Universiti Putra Malaysia)	Universiti Putra Malaysia 43400 UPM Serdang Selangor Darul Ehsan MALAYSIA	<a href="http://www.upm.edu.my/">http://www.upm.edu.my/</a>	60-3-8947-1865
11	호주	멜버른대학 청소년연구센터 (Youth Research Centre)	Youth Research Centre Melbourn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University of Melbourne Victoria 3010	<a href="http://web.education.unimelb.edu.au/yrcc/">http:// web.education.unimelb. edu.au/yrcc/</a>	61-3-8344-9633
12		태즈메이니아대학교 청소년연구센터 (Center for Applied Youth Research)	PO Box 5011 UTAS LPO, Sandy Bay Tasmania 7005, Australia	<a href="http://cayr.info/">http://cayr.info/</a>	61-3-5294-0444
13	핀란드	핀란드 청소년연구네트워크 (The Finnish Research Network)	Finnish Youth Research Society Asemapäällikönkatu 1 (2nd and 3rd floors) FI-00520 Helsinki Finland	<a href="http://www.youthresearch.fi/">http:// www.youthresearch.fi/</a>	358-20-755-2662
14	미국	뉴욕아동환경연구그룹 (Children's Environments Research Group)	365 Fifth Avenue New York, NY 10016	<a href="https://cernyc.org/">https://cernyc.org/</a>	212-817-1902
15		캘리포니아 대학교 리버사이드, 김영옥 센터 (UCR, The Young Oak Kim Center for Korean American Studies)	900 University Ave. 4031 CHASS INTN Riverside, CA92521	<a href="http://www.yokcenter.ucr.edu">http:// www.yokcenter.ucr.edu</a>	951-827-5661

NO	국가	기관명	주소	홈페이지	전화번호
16	미국	재외한인사회연구소 (The Research Center for Korean Community at Queens College)	Kissena Hall I, Room 333 Queens College 65-30 Kissena Blvd Flushing, New York 11367	<a href="http://www.qc.cuny.edu/Academics/Centers/RCKC/Pages/default.aspx">http://www.qc.cuny.edu/ Academics/Centers/ RCKC/Pages/ default.aspx</a>	718-570-0300
17	베트남	청소년연구소 (Youth Research Institute)	No.5 Chua Lang st., Dong Da dist. Hanoi, Vietnam	<a href="http://www.yri.edu.vn/">http://www.yri.edu.vn/</a>	0084-4-3-7754263
18	노르웨이	노르웨이 응용과학대학교 (Inland Norway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Inland Norway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Postboks 400 2418 Elverum Norway	<a href="https://eng.inn.no/">https://eng.inn.no/</a>	47-61-28-8286
19	프랑스	유로필로조피 (EuroPhilosophie)	Bureau de coordination EuroPhilosophie Université Toulouse II - Jean Jaurès 5 allée Antonio Machado 31058 Toulouse Cedex 9	<a href="https://europhilomem.hypotheses.org/">https://europhilomem. hypotheses.org/</a>	33-5-6150-4308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2020). [https://www.nypi.re.kr/wrdmb/wrdmbUserView.do?menu\\_nix=iO4NOV5F&srch\\_mu\\_site=WR2](https://www.nypi.re.kr/wrdmb/wrdmbUserView.do?menu_nix=iO4NOV5F&srch_mu_site=WR2)에서 2020년 12월 23일 인출.

## 제 6 장

## 청소년정책 재정기반

## 1. 청소년정책 재정 현황

2020년도 청소년정책 예산은 총 2,288억여 원으로 일반회계 1,022억여 원, 청소년육성기금 1,266억여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0-6-1〉 연도별 청소년 예산

(단위 : 백 만원)

구분 연도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관실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정책실	문화부청소년국		청소년 보호 위원회	국가 청소년 위원회	예비비 (일반 회계)	균특회계 (구. 광특회계)	청소년육성기금		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농특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육성사업	시설용자	
1995	-	-	28,098	2,000	-	-	-	13,654	4,309	10,000	58,061
1996	-	-	37,896	3,000	-	-	-	18,984	6,300	10,000	76,180
1997	-	-	52,591	3,000	-	-	-	21,645	10,803	10,000	98,039
2000	-	-	25,954	1,000	4,111	-	-	26,525	10,814	12,350	80,754
2003	-	-	25,084	-	7,077	-	-	36,607	13,979	7,000	89,747
2004	-	-	23,149	-	8,817	-	-	30,248	41,610	6,000	109,824
2005	-	-	10,872	-	9,950	-	8,138	37,643	52,436	6,000	125,039
2006	-	-	-	-	-	19,825	321	45,442	67,727	4,500	137,815
2007	-	-	-	-	-	35,388	-	43,128	74,812		153,328
2008	-	116,433	-	-	-	-	-	39,251	75,182		230,866
2009	-	182,641	-	-	-	-	-	36,522	81,741 [증진기금 3,463 포함]		300,904
2010	20,885	-	-	-	-	-	-	34,215	90,652		145,752

연도	구분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관실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정책실	문화부청소년국		청소년 보호 위원회	국가 청소년 위원회	예비비 (일반 회계)	군특회계 (구. 광특회계)	청소년육성기금		계
			일반회계	농특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육성사업	시설용자	
2011	21,671	-	-	-	-	-	-	49,417	73,491	144,579	
2012	47,435	-	-	-	-	-	320	41,477	58,036	147,268	
2013	58,427	-	-	-	-	-	-	50,550	62,435	171,412	
2014	67,694	-	-	-	-	-	-	44,991	64,405	177,090	
2015	67,711	-	-	-	-	-	-	65,564	80,472	213,747	
2016	68,691	-	-	-	-	-	-	48,117	89,364	206,172	
2017	87,469	-	-	-	-	-	-	62,491	95,310	245,270	
2018	77,948	-	-	-	-	-	-	87,931	102,404	268,283	
2019	87,267	-	-	-	-	-	-	78,180	114,518 (추경)	279,965	
2020 (본예산)	102,585	-	-	-	-	-	-	-	130,327	232,912	
2020 (추경)	102,173	-	-	-	-	-	-	-	126,647	228,820	

주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권익기반과(구 폭력예방교육과) 청소년 예산은 제외되었음.

- 2010년 : 4,603백만원(일반회계 1,085백만원, 청소년육성기금 3,518백만원).
- 2011년 : 5,687백만원(일반회계 1,580백만원, 청소년육성기금 3,926백만원, 여성발전기금 181백만원).
- 2012년 : 5,979백만원(일반회계 2,053백만원, 청소년육성기금 3,926백만원).
- 2013년 : 8,623백만원(일반회계 3,441백만원, 청소년육성기금 5,182백만원).
- 2013년 : 8,623백만원(일반회계 3,441백만원, 청소년육성기금 5,182백만원).
- 2014년 : 11,664백만원(일반회계 6,310백만원, 청소년육성기금 5,354백만원).
- 2015년 : 13,97백만원(일반회계 8,032백만원, 청소년육성기금 5,965백만원).
- 2016년 : 13,785백만원(일반회계 8,040백만원, 청소년육성기금 5,745백만원).
- 2017년 : 12,292백만원(일반회계 6,813백만원, 청소년육성기금 5,479백만원).
- 2018년 : 12,359백만원(일반회계 7,029백만원, 청소년육성기금 5,330백만원).
- 2019년 : 12,894백만원(일반회계 7,441백만원 -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 청소년육성기금 5,453백만원 -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자 치료재활).
- 2020년(본예산) : 12,946백만원(일반회계 7,378백만원 -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 청소년육성기금 5,568백만원 -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교육 및 피해자 치료재활).

자료 : 여성가족부(2020).

일반예산은 청소년정책 기반강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청소년유해환경개선 및 피해예방,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운영지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운영지원, 지역청소년활동정책 진흥사업,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 청소년정책관기본경비 사업에 사용되고 있고,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참여지원,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매체활용능력증진 및 역기능해소,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청소년 치료재활센터운영에 사용되고 있다.

## 2.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현황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기본법」 제53조에 의거하여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이 설치되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청소년 기본법」 제54조)은 정부의 출연금,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3항제1호 및 「경륜·경정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출연금,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수입금에 의한다.

청소년육성기금의 용도(「청소년 기본법」 제55조)는 ① 청소년활동의 지원, ②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지원, ③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지원, ④ 청소년단체의 운영과 활동을 위한 지원, ⑤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⑥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원, ⑦ 청소년 육성정책의 수행 과정에 관한 과학적 연구의 지원, ⑧ 기금 조성사업을 위한 지원, ⑨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청소년육성에 관한 홍보, 청소년의 포상 및 격려, 기금의 운용 및 관리, 그밖에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등이다. 청소년육성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은 기금 조성 초기에는 정부출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입액 등이 수입 재원이었으나 현재는 경륜·경정사업 법정 분담금과 복권기금전입금으로 주로 조성되고 있다. 그나마 2011년에 「경륜·경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수익금의 30%를 받던 것이 19.5%로 축소되었다.

2020년까지의 누계 조성규모는 15,246억 원이며, 재원별로는 정부출연금 350억 원, 국민체육진흥기금전입금 766억 원, 경륜·경정사업수익 법정출연금 4,534억 원, 복권기금전입금 7,123억 원, 이자수입 등 운용수익 적립금이 2,473억 원 등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육성기금 사용액을 살펴보면, 2020년까지 청소년육성 사업 지원에 14,415억 원, 기타 경비 등에 94억 원, 복권기금 반납금 156억 원을 합하여 총 14,665억여 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조성액 누계는 2020년 581억 원이다.

〈표 10-6-2〉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내역

(단위 : 백 만원)

구분 연도	조성액(A)						사용액(B)				순 조성액 (A-B)	조성액 누계
	정부 출연금	민간 출연금	경륜· 경영사업 수익법정 출연금	복권기금 전입금	이자 등 기타	계	청소년 사업지원	기타 경비	복권기금 반납금	계		
1989	-	5,000	-	-	206	5,206	132	-	-	132	5,074	5,074
1990	-	5,000	-	-	1,363	6,363	847	3	-	850	5,513	10,587
1991	-	5,010	-	-	2,299	7,309	1,031	9	-	1,040	6,269	16,856
1992	-	8,150	-	-	3,415	11,565	1,507	12	-	1,519	10,046	26,902
1993	10,000	5,000	-	-	3,965	18,965	1,613	6	-	1,619	17,346	44,248
1994	-	11,000	-	-	5,285	16,285	9,034	13	-	9,047	7,238	51,486
1995	10,000	10,000	-	-	7,749	27,749	4,484	15	-	4,499	23,250	74,736
1996	10,000	10,000	-	-	8,739	28,739	5,415	8	-	5,423	23,316	98,052
1997	5,000	10,000	111	-	11,598	26,709	8,209	6	-	8,215	18,494	116,546
1998	-	4,400	5,888	-	15,453	25,741	6,245	6	-	6,251	19,490	136,036
1999	-	3,000	6,251	-	13,271	22,522	12,547	7	-	12,554	9,968	146,004
2000	-	-	11,836	-	11,201	23,037	9,905	7	-	9,912	13,125	159,129
2001	-	-	32,320	-	13,160	45,480	7,284	84	-	7,368	38,112	197,241
2002	-	-	46,920	-	10,094	57,014	9,443	21	-	9,464	47,550	244,791
2003	-	-	70,805	-	14,725	85,530	14,363	31	-	14,394	71,136	315,927
2004	-	-	40,786	-	14,686	55,472	40,670	72	-	40,742	14,730	330,657
2005	-	-	24,623	-	19,710	44,333	48,721	57	-	48,778	-4,445	326,212
2006	-	-	14,330	-	16,878	31,208	68,857	48	-	68,905	-37,697	288,515
2007	-	-	2,846	735	17,634	21,215	74,750	62	-	74,812	-53,597	234,918
2008	-	-	17,489	255	8,141	25,885	75,138	45	-	75,183	-49,298	185,620
2009	-	-	15,672	860	11,085	27,617	61,060	262	22	61,344	-33,727	151,893

구분 연도	조성액(A)						사용액(B)				순 조성액 (A-B)	조성액 누계
	정부 출연금	민간 출연금	경륜· 경정사업 수익법정 출연금	복권기금 전입금	이자 등 기타	계	청소년 사업지원	기타 경비	복권기금 반납금	계		
2010	-	-	19,312	2,964	5,947	28,223	69,473	113	213	69,799	-41,576	110,317
2011	-	-	20,266	4,318	2,841	27,425	70,247	3,286	306	73,839	-46,414	63,903
2012	-	-	22,235	34,417	1,955	58,607	58,650	3,207	30	61,887	-3,280	60,623
2013	-	-	16,933	43,403	2,074	62,410	68,238	49	622	68,909	-6,499	54,124
2014	-	-	12,744	46,694	4,707	64,145	70,096	1,088	1,408	72,592	-8,447	45,677
2015	-	-	9,655	76,412	1,744	87,722	85,568	38	1,118	86,724	998	46,675
2016	-	-	16,441	85,230	3,236	104,907	95,499	41	1,179	96,719	8,188	54,863
2017	-	-	17,285	91,235	3,897	112,417	101,548	320	3,527	105,395	7,022	61,885
2018	-	-	15,853	97,605	3,206	116,664	108,758	37	3,219	112,014	4,650	66,535
2019	-	-	8,511	107,598	3,631	119,740	119,390	40	1,211	120,641	-901	62,228
2020 (계획)	-	-	6,922	120,688	4,961	132,571	133,201	40	3,500	136,741	-4,170	58,058
계	35,000	76,560	453,444	712,259	247,313	1,524,576	1,441,554	9,386	15,578	1,466,518	58,058	

자료 : 여성가족부.

부록

---



## 부록

부록 1 청소년관련 학과(전공) 현황

부록 2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단체 현황

부록 3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원 현황

부록 4 전국 청소년복지시설(쉼터, 자립지원관) 현황

부록 5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황

부록 6 지방자치단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현황

부록 7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현황

부록 8 청소년백서 용어집

## 부록 1

## 청소년관련 학과(전공) 현황

(2020년 12월 기준)

학교명	학과·전공명(학위과정)	주소
경기대학교	휴먼서비스학부 청소년전공(학사) 일반대학원 청소년학과(석·박사) 교육대학원 청소년지도상담교육전공(석사)	[1622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Tel: 031-249-9490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청소년상담전공(석사)	[426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Tel: 053-580-6332
고구려대학교	청소년복지상담학과(전문학사)	[58280] 전라남도 나주시 다시면 백호로 125 Tel: 061-330-7400
고려사이버대학교	청소년상담학과(학사)	[03051]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06 Tel: 02-6361-1862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청소년교육·상담전공(석사)	[32553]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로 27 Tel: 041-850-1361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청소년교육전공(석사)	[32588]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Tel: 041-850-8159
광신대학교	상담치료대학원 청소년상담지도학과(석사)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사로 36 Tel: 062-605-1125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아동청소년전공(석사)	[01897]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 20 Tel: 02-940-5411
광주대학교	청소년상담·평생교육학과(학사)	[61743]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로 277 Tel: 062-670-2057
군장대학교	청소년교육지도과(전문학사)	[54045]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군장대길 13 Tel: 063-450-8240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청소년복지학전공(학사)	[3117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48 Tel: 041-570-7772
대구과학대학교	아동청소년지도과(전문학사)	[41453] 대구광역시 북구 영송로 47 Tel: 053-320-1139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청소년학과(학사)	[38453]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Tel: 053-850-5000

학교명	학과·전공명(학위과정)	주소
대구한의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학사) 보건·복지대학원 청소년가족상담학과(석사) 일반대학원 청소년학과(석사)	(38610) 경상북도 경산시 한의대로 1 Tel: 053-819-1348
대원대학교	청소년지도상담과(전문학사)	(27135) 충청북도 제천시 대학로 316 Tel: 043-645-3143
대전대학교	아동교육상담학과(학사) 상담대학원 아동청소년상담학과(석사)	(34520) 대전광역시 동구 대학로 62 Tel: 042-280-2452
대진대학교	교육대학원 청소년교육학습컨설팅전공(석사)	(11159)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007(선단동) Tel: 031-539-2128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청소년심리상담학과 (석·박사·석·박통합)	(38066)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Tel: 054-770-2508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청소년상담심리전공(학사)	(47011)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47 Tel: 051-320-1908
동아보건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평생교육복지전공(전문학사)	(58439)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영산로 76-57 Tel: 061-470-1746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청소년상담학과(학사) 교육대학원 청소년교육·상담전공(석사)	(4734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176 Tel: 051-890-2180
디지털서울문화예술 대학교	사회문화계열 평생교육·청소년학과(학사)	(0364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37길 60 Tel: 02-2287-0253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학사) 일반대학원 청소년지도학과(석·박사) 통합치료대학원 청소년지도학과(석사)	(0367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Tel: 02-300-0620
명지전문대학	청소년교육복지과(전문학사) 청소년교육복지학과(학사)	(0365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좌로 134 Tel: 02-300-1207, 3961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청소년학전공(학사) 상담대학원 청소년상담학전공(석사)	(31065)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백석대로 1 Tel: 041-550-2527, 2597-8
부산디지털대학교	상담치료학부 아동청소년상담학전공(학사)	(47011)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57 Tel: 051-320-2782
상명대학교	상담대학원 아동·청소년상담학과(석사)	(03016)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문2길 20 Tel: 02-2287-5120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청소년복지전공(학사)	(01133)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49길 60 Tel: 02-944-5631~3
서울여자대학교	청소년학전공(학사)	(01797)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621 Tel: 02-970-7931

학교명	학과·전공명(학위과정)	주소
서정대학교	상담아동청소년과(전문학사)	[11429]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화합로 1049-56 Tel: 031-860-5100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아동·청소년학과(학사) 일반대학원 아동·청소년학과(석·박·석·박통합)	[0306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Tel: 02-760-0525
성산호텔학원대학교	HYO아동청소년교육학과(석·박사)	[21503]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정로 543 Tel: 032-433-1996
세종사이버대학교	아동가족학부 청소년학과(학사)	[05000]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121 Tel: 02-2204-8666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청소년교육상담학과(학사)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청소년상담전공 (석·박·석·박통합) 일반대학원 청소년교육학과(석·박·석·박통합)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청소년교육전공(석사)	[31538] 충청남도 아산시 순천향로 22 Tel: 041-530-1146
숭실사이버대학교	청소년코칭상담학과(학사)	[06978]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69 Tel: 02-828-5501
안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청소년상담교육전공(석사)	[1402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37번길 22 Tel: 031-467-0700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청소년교육전공(석사)	[5489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Tel: 063-270-2739
전주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아동·청소년상담심리학과(석사)	[550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Tel: 063-220-2693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청소년학과(석·박·석·박통합) 사회복지대학원 청소년학과(석사)	[06974]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Tel: 02-820-5149
청운대학교	사회서비스대학 청소년상담교육학과(학사)	[32244]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대학길 25 Tel: 041-630-3114
초당대학교	산업대학원 아동청소년상담학과(석사)	[58530]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380 Tel: 061-450-1881
총신대학교	청소년상담학전공(학사)	[06988]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43 Tel: 02-3479-0200
충북보건과학대학교	보건보육청소년과(전문학사)	[28150]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덕암길 10 Tel: 043-210-8260
칼빈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상담학과(학사)	[1691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184 Tel: 031-284-4752~5

학교명	학과·전공명(학위과정)	주소
평택대학교	아동청소년교육상담학과(학사) 일반대학원 아동청소년학과(석·박사) 사회복지대학원 아동청소년복지학과(석사)	[17869] 경기도 평택시 서동대로 3825 Tel: 031-659-811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학사) 특수대학원 청소년교육학과(석사)	[03087]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86 Tel: 02-3668-4400
한국복지사이버대학	청소년복지상담학과(전문학사)	[38695]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남천로 746-10 Tel: 1644-9775
한국체육대학교	생활체육대학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학사) 사회체육대학원 스포츠청소년지도전공(석사)	[05541]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39 Tel: 02-410-6753
한남대학교	사회문화·행정복지대학원 청소년지도학과(석사)	[34430]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Tel: 042-629-7226~7, 8098
한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청소년학과(학사)	[24252]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1 Tel: 033-248-1740
한서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청소년상담심리학과(석·박사)	[31962]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360 Tel: 041-660-1049
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아동청소년상담전공(석사)	[04763]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Tel: 02-2220-2611
한양사이버대학교	심리상담학부 청소년코칭상담학과(학사)	[04763]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0 Tel: 02-2290-0340
호서대학교	청소년문화·상담학과(학사) 일반대학원 청소년문화·상담학과(석사) 문화복지상담대학원 청소년문화·상담학과(석사)	[31066]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호서대길 12 Tel: 041-560-8140, 8114

자료 : 대학알리미(2020).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제5부

제6부

제7부

제8부

제9부

제10부

부록

## 부록 2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단체 현황

(2020년 12월 기준)

단체명	대표자		설립 년-월-일	총회원수 (명)	청소년 회원수(명)	설립목적
	성명	직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서상기	회장	1965-12-08	2,873,503	2,617,445	바람직한 청소년육성과 국내·외 청소년단체 상호간의 협력 및 교류와 지원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이용권	이사장	1996-12-30	83,537	83,327	아동·청소년 육성, 복지, 자선사업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존엄성 실현
국제교류문화진흥원	유정희	원장	2009-03-03	6,214	5,974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청소년 교육, 자원봉사 활동, 국제교류활동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
국제청소년연합	박문택	회장	2001-05-31	106,267	105,665	국제교류를 통한 국제화 시대 주도 청소년 양성
기독교청소년협회(CYA)	정진해	이사장	1995-10-30	3,854	3,140	기독교정신에 의한 청소년상담 교육으로 인재양성
대건청소년회	이성호	이사장	1998-09-21	1,136	1,000	청소년활동을 통해 건전 사회기풍 조성 및 국가와 사회발전에 필요한 올바른 청소년육성
대한불교청년회	하재길	중앙회장	1920-06-20	9,311	8,389	불타의 가르침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심신계발과 사회정화
대한안전연합	정현민	대표	2008-06-05	4,468	3,813	재해·재난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교육, 연구, 홍보 활동을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함
대한적십자사청소년적십자(RCY)	신희영	회장	1953-04-05	259,522	245,936	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현 및 세계평화와 인류복지 공헌
대한청소년성경연구락부	김순권	이사장	1929-12-01	9,627	9,004	종교, 지육, 체육, 봉사생활로 바른 교회생활 기여
대한청소년총효단연맹	김영희	총재	1997-12-30	16,960	15,930	총·효·예의 연구와 교육 및 수련활동을 통한 전통문화 계승
비로자나청소년협회	송귀영	회장	2000-07-24	6,018	5,956	청소년에게 불교이념을 통한 인류공영에 이바지
빅드림	강미소	대표	2011-09-02	5,487	5,350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

단체명	대표자		설립 년-월-일	총회원수 (명)	청소년 회원수(명)	설립목적
	성명	직위				
삼동청소년회	양재호	이사장	1989-01-18	8,270	7,508	일원주의 사상의 도덕적 품성 함양과 세계평화에 기여
서울가톨릭청소년회	정순택	이사장	1999-09-01	22,026	21,262	가톨릭정신 및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육성
성산청소년효재단	최성규	이사장	1994-02-28	110,042	107,200	기독교 신앙에 입각하여 보호·지도육성 및 가치관 확립
세계도덕재무장(MRA/IC) 한국본부	차광선	총재	1948-06-21	41,157	40,457	절대 정직·순결·무사·사랑으로 청소년 건전지도 육성
세계화교육문화재단	이돈희	이사장	2009-02-13	3,880	3,580	세계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청소년단체활동
아미미청소년문화재단	안구현	이사장	1992-06-29	451	431	지·덕·체가 균형잡힌 청소년육성과 한민족의 주체성 전파
아이섹코리아	조은비	중앙위원장	1962-11-26	700	700	미래의 유능한 경영인 양성과 국제적 교류
어린이재단	지훈상	대표이사	1948-10-15	614,221	587,029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토록 보호 및 지원
울산청소년선도지도회	김일수	회장	1977-03-17	3,514	1,013	선도활동 및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건전 청소년 육성
인터넷꿈희망터	김은호	이사장	2011-03-07	3,167	3,160	인터넷 및 다양한 미디어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
청소년과사람사랑	신명철	이사장	1994-12-22	5,560	5,161	청소년 수련활동 및 문화활동을 통한 청소년 육성
청소년교육전략21	김영성	이사장	2002-01-15	307	220	아동, 청소년과 시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지도자연수 등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탁틴내일	최영희	이사장	1995-03-01	334	95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한 청소년 문화환경 조성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정성호 (지현)	회장	1996-09-30	47,216	46,396	민족의 주체성 확립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
푸른나무재단	문용린	이사장	1995-10-31	400,132	398,830	청소년 수련활동·선도·유해환경 정화, 복지증진
한국119소년단연맹	윤명오	총재	2013-03-21	17,203	16,442	청소년들에게 안전에 대한 의식과 습관을 기를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교육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함
한국4-H본부	고문삼	회장	1954-11-09	30,809	20,042	4-H 농·어촌 청소년에 대한 소양과 기술 지원

단체명	대표자		설립 년-월-일	총회원수 (명)	청소년 회원수(명)	설립목적
	성명	직위				
한국YMCA전국연맹	안재웅	이사장	1903-04-03	12,123	9,327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민중의 복지향상과 새 문화 창조
한국YWCA연합회	원영희	회장	1922-04-20	11,526	5,683	젊은 여성의 기독교 생활 실천 및 평화와 정의사회 건설
한국걸스카우트연맹	김종희	총재	1946-05-10	109,558	94,969	소녀와 젊은 여성의 잠재력 계발과 민주시민 자질 함양 및 봉사 실천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서상기	총재	1989-03-11	58,042	55,042	우주시대 인재양성 및 정보화 선진과학입국 실현
한국라보	유시경	이사장	1973-12-31	3,932	3,512	각국 간의 상호민박을 통한 친선 문화교류
한국로타리청소년연합	장기윤	이사장	1997-07-15	161,192	39,232	청소년의 지역사회 봉사와 국제간의 이해 증진
한국숲사랑청소년단	김명전	이사장	1991-07-24	10,910	10,439	국토보전을 위한 나무심기 운동 전개 및 푸른숲선도원 선발·육성
한국스카우트연맹	강태선	총재	1922-10-05	158,153	136,443	민주시민 자질향상 도모와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
한국유스호스텔연맹	신용우	총재	1967-04-17	28,389	28,235	야외여행활동을 통한 풍부한 지식과 건전 청소년육성
한국청소년골프협회	김창연	회장	2005-12-24	1,988	1,877	청소년골프선수 선발 및 육성
한국청소년발명영재단	한미영	총재	2002-03-22	2,543	2,411	발명영재의 발굴지원을 통해 유능한 발명인 육성
한국청소년복지진흥회	최노사	회장	1991-05-04	22,079	21,809	복음선교와 후원활동을 통한 청소년육성
한국청소년봉사단연맹	박승주	총재	2011-04-19	18,155	15,507	국제사회에 기동이 될 청소년세대를 육성하는데 기여
한국청소년순결운동본부	김동연	이사장	1999-8-16	4,774	4,753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가치관 및 인성교육을 위한 교화
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강경순	총재	2003-10-06	10,548	10,000	해양스포츠 지도교육 능력 함양 및 해양환경보전활동
한국청소년연맹	한기호	총재	1981-03-19	243,868	240,313	청소년 전인교육을 통한 민족·국가관 확립
한국청소년육성회	박문서	총재	1970-11-11	3,879	3,151	청소년의 비행예방과 건전활동 지도로 민주시민 육성
한국청소년인권센터	강병연	이사장	1993-08-25	388	256	심신단련과 지도육성을 통해 건전한 가치관 확립



단체명	대표자		설립 년-월-일	총회원수 (명)	청소년 회원수(명)	설립목적
	성명	직위				
한국청소년재단	황인국	이사장	2002-02-25	360	350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건강한 청소년 육성
한국항공소년단	안현호	총재	2005-08-02	6,876	6,849	항공, 우주교육을 통한 도전, 개척정신 함양
한국해양소년단연맹	강무현	총재	1962-12-07	106,453	100,021	해양개척정신 고취를 통한 진취적 기상증진
한국화랑청소년육성회	박계홍	회장	1989-07-10	62,335	62,321	강건한 신체와 올바른 품성 및 국가관 확립
한국환경청소년단	양광선	총재	2001-05-09	5,909	5,149	환경친화적 생활양식 정착과 자연환경 계몽 감시운동
행복함께나누는재단	이원희	이사장	2011-04-21	358	200	소외계층·저소득층 청소년의 교육 및 청소년 활동을 지원
흥사단	박만규	이사장	1913-05-13	7,775	6,586	무실, 역행, 총의, 용감의 정신으로 인재 양성
광주청소년단체협의회	박춘현 (도제스님)	회장	2008-03-24	30개 지역청소년단체		지역청소년단체 상호 간의 협력·지원과 청소년건전육성
대구청소년단체협의회	김영민	회장	1996-03-01	22개 지역청소년단체**		
대전청소년단체협의회	유덕순	회장	2002-10-11	36개 지역청소년단체**		
부산청소년단체협의회	백명숙	회장	2001-09-26	36개 지역청소년단체		
울산청소년단체협의회	김진	회장	1998-03-05	17개 지역청소년단체		
인천청소년단체협의회	김말숙	회장	2002-06-07	16개 지역청소년단체**		
전북청소년단체협의회	김경희	회장	1995-05-11	13개 지역청소년단체		

주 : 1) 청소년단체 현황은 2020년 12월 기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단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2) \*\*: 해당 단체에 문의하여 파악하였음.

자료 : 1)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2020).

2)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홈페이지(www.ncyok.or.kr).

## 부록 3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원 현황

(2020년 11월 기준)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서울	송파청소년센터	수련관	송파구청장	사)한국청소년연맹
서울	서울시립금천청소년센터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재)푸른나무청예단
서울	시립목동청소년센터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서울	시립강북청소년센터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학교법인 광운대학교
서울	서울시립성북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사)한국청소년한마음연맹
서울	시립창동청소년센터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광운학원 광운대학교
서울	서울시립문래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학)명지학원 명지전문대학
서울	서초구립방배유스센터	수련관	서초구청장	재)푸른나무청예단
서울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서울	시립서울청소년센터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서울	서울시립중랑청소년센터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사)한국청소년연맹
서울	마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송파구청장	[재)행복함께나누는재단
서울	시립수서청소년센터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사)한국청소년세상
서울	시립은평청소년센터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사)엔젤스헤이븐
서울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사)한국청소년재단
서울	서울중구청청소년센터	수련관	중구청장	중구시설관리공단
서울	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사)한국청소년연맹
서울	관악청소년회관	수련관	관악구청장	사)온터드레회
서울	구립강남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강남구청장	사)한국YWCA연합회 후원회
서울	강남구립역삼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강남구청장	사)홀리비전
서울	구립서초유스센터	수련관	서초구청장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서울	시립화곡청소년센터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사)흥사단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서울	마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희)명지학원 명지전문대학
서울	시립구로청소년센터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한국청소년연맹
서울	구립용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용산구청장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서울	시립강동청소년센터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사)한국청소년연맹
서울	서울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재)푸른나무청예단
서울	시립성동청소년센터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서울	서울시립광진청소년센터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사)흥사단
서울	서울시립망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울특별시장	재)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서울	삼성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서울	도봉숲속마을	수련원	박형호	재)송석교육문화재단
서울	북한산생태탐방연구원	수련원	환경부장관	국립공원관리공단
서울	양천구립신월청소년문화센터	문화의집	양천구청장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수녀회
서울	사당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동작구청장	사)청소년교육전략21
서울	동작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동작구청장	사)청소년교육전략21
서울	성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성동구청장	서울YWCA
서울	구립흥은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서대문구청장	사)한국청소년재단
서울	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도봉구청장	사)청소년교육전략21
서울	구립마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마포구청장	사)한국청소년재단
서울	창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도봉구청장	사)한국청소년지원네트워크
서울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문화의집	노원구청장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	구립왕원청소년문화센터	문화의집	마포구청장	사)한국청소년지원네트워크
서울	구립도화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마포구청장	사)한국청소년재단
서울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영등포구청장	재)청소년과사람사랑
서울	은평구청소년문화의집신나는애프터센터	문화의집	은평구청장	사)열린사회시민연합
서울	성북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성북구청	한국스카우트연맹
서울	용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용산구청장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서울	갈현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은평구청장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서울	구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구로구청장	사)한국청소년재단
서울	송파구립잠실청소년센터	문화의집	송파구청장	사)인터넷꿈희망터
서울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특화시설	서울특별시시장	재)푸른나무청예단
서울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특화시설	서울특별시시장	재)대산문화재단
서울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특화시설	서울특별시시장	재)한국기독교청년회전국연맹유지재단
서울	서울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특화시설	서울특별시시장	학)연세대학교
서울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특화시설	서울특별시시장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서울	서울시립은평청소년미래진로센터	특화시설	서울특별시	사)한국스카우트연맹
서울	미래교육센터 오금Hub	특화시설	송파구청장	사)한빛청소년대안센터
서울	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특화시설	조광운	(학)광운학원·광운대학교
서울	서울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특화시설	서울특별시시장	(사)한국청소년연맹
서울	서울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서울특별시시장	사)한국스카우트연맹
서울	서울올림픽파크텔	유스호스텔	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	하이서울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서울특별시시장	(사)한국청소년연맹
서울	국제청소년센터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부산	부산광역시양정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부산광역시시장	재)안국청소년도량
부산	사상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사상구청장	부산YMCA
부산	함지골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부산광역시시장	재)내원청소년단
부산	금정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부산광역시시장	(재)범어청소년동네
부산	금곡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부산광역시시장	(사)삼동청소년회
부산	기장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기장군수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부산	구덕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구청장	재)내원청소년단
부산	해운대청소년수련관	수련관	해운대구청장	부산YMCA
부산	기장문화예절학교	수련원	기장군수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부산	부산광역시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부산광역시시장	부산광역시청
부산	부산북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북구청장	사)삼동청소년회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부산	부산중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중구청장	(재)내원청소년단
부산	부산진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부산진구청장	재)부산YMCA
부산	사하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사하구청장	재)내원청소년단
부산	부산서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서구청장	재)안국청소년도량
부산	부산진구청소년문화센터	문화의집	부산진구청장	사)티스토리
부산	수영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수영구청장	재)범어청소년동네
부산	해운대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해운대구청장	해운대구청 가족복지과
부산	부산관광공사 아르피나	유스호텔	부산관광공사	부산관광공사
대구	대구달서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달서구청장	사)마하아나불교문화원
대구	대구광역시서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구청장	함께하는 마음 재단
대구	대구수성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수성구청장	사)마하아나불교문화원
대구	대구광역시북구청소년회관	수련관	북구청장	재)대구광역시 북구청소년회관
대구	달성군청소년센터	수련관	달성군수	재)달성복지
대구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대구광역시장	(재)대구가톨릭청년회
대구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수성구청장	사)마하아나불교문화원
대구	대구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대구광역시장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	중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중구청장	대구광역시 중구청
대구	달성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달성군수	재)달성복지재단
대구	대구동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대구동구청	사)대한불교조계종 마하아나불교문화원
대구	대구청소년문화의집꿈지락발전소	문화의집	대구광역시장	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	동구청소년문화의집아름드리	문화의집	동구청장	사)대한불교조계종 마하아나불교문화원
대구	대구광역시남구청소년창작센터	특화시설	남구청장	대구광역시 남구청
대구	대구청소년창의센터 꿈&꿈	특화시설	대구광역시	대구가톨릭청소년회
대구	팔공산맥섬석유스호텔	유스호텔	곽성근	주)팔공산맥섬석유스호텔
대구	비슬산유스호텔	유스호텔	달성군수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제5부

제6부

제7부

제8부

제9부

제10부

부록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인천	인천서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구청장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인천	인천광역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인천광역시장	인천시설공단
인천	동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동구청장	재)성산청소년효재단
인천	부평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부평구청장	재)부평구문화재단
인천	연수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연수구청장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인천	미추홀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미추홀구청장	재)성산청소년효재단
인천	계양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계양구청장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인천	바다의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정신철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인천	성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재)성산청소년효재단	재)성산청소년효재단
인천	그레이스힐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유승배, 박근원	서울도시가스(주)
인천	마니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주)마니산수련원	(주)마니산수련원
인천	검단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서구청장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인천	연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서구청장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인천	남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남동구청장	남동구청
인천	가좌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서구청장	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
인천	연수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연수구청장	연수구청
인천	서해청소년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주)서해교육문화	주)서해교육문화 고재룡
인천	강화로알호스텔	유스호스텔	주)강화로알호텔	주)강화로알호스텔
광주	광주광역시북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북구청장	사)한국청소년인권센터
광주	광주광역시동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동구청장	사)파라미터청소년연합회
광주	광산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광산구청	(재)광주기독교 청년회 유지재단
광주	광주광역시남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남구청장	학)호심학원
광주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구청장	재)광주기독교 청년회 유지재단
광주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광주광역시장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수녀회
광주	광주광역시 화정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광주광역시장	사)흥사단광주지부
광주	광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박금호	사)광천사랑숲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광주	광주광역시원당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광주광역시	한국스카우트광주연맹
광주	서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서구청장	지역교육네트워크 화월주
광주	광주광역시각화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광주광역시장	새꿈과도전
광주	광주광역시용봉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광주광역시	사)광주기독교청소년연합회
광주	월곡동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	문화의집	광산구청장	광산구청
광주	광주광역시청소년삶디자인센터	특화시설	광주광역시장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대전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수련관	대전광역시장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전	대전대덕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대덕구청장	재)대전가톨릭청소년회
대전	유성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유성구청장	백석대학교
대전	대전청소년위캔(WeCan)센터	수련관	대전광역시장	대전YWCA
대전	대전청소년수련마을	수련원	대전광역시장	사)대전청소년심신수련회
대전	살레시오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대전	도솔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서구청장	(사)대전흥사단
대전	대흥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중구청장	대전YWCA
대전	탄방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서구청장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광역시지부
대전	장대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유성구청장	백석대학교
대전	도화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서구청장	사)월드유스비전 대전시지부
대전	갈마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서구청장	사)한국항공소년단
대전	도안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서구청장	사)온누리청소년문화재단
울산	울주서부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울주군수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울산	울주중부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울주군수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울산	청소년차오름센터	수련관	남구청장	사)울산흥사단
울산	삼동배내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이순식	사)삼동청소년회
울산	남목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동구청장	울산YMCA
울산	공업탑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남구청장	사)마이크즈
울산	문수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남구청장	한국걸스카우트울산연맹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제5부

제6부

제7부

제8부

제9부

제10부

부록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울산	울산광역시동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동구청장	유네스코울산광역시협회
울산	울산중구청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중구청장	새꿈빛소금
울산	북구청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북구청장	사)울산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함께
울산	성남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중구청장	울산YWCA
경기	토당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고양시장	재)고양시청소년재단
경기	동안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안양시장	재)안양시청소년재단
경기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수련관	평택시장	재)평택시청소년재단
경기	부천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부천시장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
경기	군포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군포시장	재)군포시청소년재단
경기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수련관	수원시장	재)수원시청소년재단
경기	상록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안산시장	재)안산시청소년재단
경기	의왕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의왕시장	재)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부천시장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
경기	용인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용인시장	재)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경기	구리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구리시장	재)구리시청소년재단
경기	시흥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시흥시장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경기	과천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과천시장	과천시청
경기	화성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화성시장	재)화성시문화재단
경기	성남시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성남시장	재)성남시청소년재단
경기	성남시청소년재단 수정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성남시장	재)성남시청소년재단
경기	성남시중원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성남시장	재)성남시청소년재단
경기	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성남시장	재)성남시청소년재단
경기	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성남시장	재)성남시청소년재단
경기	김포중봉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김포시장	(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안양시만안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안양시장	재)안양시청소년재단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경기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남양주시장	남양주도시공사
경기	포천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수련관	포천시시장	포천시청
경기	의정부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의정부시장	재)의정부시청소년재단
경기	권선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수원시장	재)수원시청소년재단
경기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수련관	이천시시장	재)이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광고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수원시장	재)수원시청소년재단
경기	연천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연천군수	재)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경기	광명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광명시장	재)광명시청소년재단
경기	고양시마두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고양시장	재)고양시청소년재단
경기	광주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광주시장	재)한국청소년진흥재단
경기	동두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동두천시청	동두천시청
경기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고양시장	재)고양시청소년재단
경기	부천시소사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부천시시장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
경기	단원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안산시	재)안산시청소년재단
경기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성남시장	재)성남시청소년재단
경기	하남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하남시장	사)한국청소년재단
경기	딱따구리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신필호	신필호
경기	미리내캠프	수련원	이광섭	(주)미리내
경기	여주청소년수련원	수련원	홍영광	홍영광
경기	유스토리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김성식	김성식
경기	하내테마파크	수련원	전학열	전학열
경기	한울유스센터	수련원	임화순	임화순
경기	한터캠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김용실	김용실
경기	양주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양주시장	양주시청
경기	김포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김포시장	(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청심국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김민용	효정국제문화재단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경기	새싹동산청려수련원	수련원	김종희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봉사회
경기	엄마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임계두	너리굴문화마을
경기	평택시무봉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평택시장	재)평택시청소년재단
경기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경기도지사	재)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	서경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서경대학교	학)서경대학교
경기	아침햇살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주)바로교육	(주)바로교육
경기	영산수련원	수련원	재)순복음선교회	[재)순복음선교회
경기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재)천주교의정부교구유지재단	[재)천주교의정부교구유지재단
경기	(주)축구마을	수련원	주)축구마을	주)축구마을
경기	용인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용인시장	재)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경기	[재)서울YMCA 일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재)서울YMCA	재)서울YMCA
경기	자연나라수련원	수련원	정신	농업회사법인(주)자연나라
경기	포천염광수련원	수련원	학)염광학원	학)염광학원
경기	여주중앙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여주시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	김포로그밸리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김형금	김형금
경기	청학서당예절교육수련원	수련원	서재욱	서재욱
경기	덕평수련원	수련원	덕평골프장	덕평수련원
경기	상천수련원	수련원	남상순	한국기독교에덴성회 선교재단
경기	대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윤은도	사회복지법인 대순진리회복지재단
경기	삐띠프랑스청소년수련원	수련원	한홍섭	주)삐띠프랑스
경기	국제광림비전랜드	수련원	광림교회	광림교회
경기	해찬여울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정영섭	(주)해찬여울청소년수련원
경기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부천시장	부천여성청소년재단
경기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군포시장	재)군포시청소년재단
경기	문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파주시장	파주청소년문화원
경기	부천여성청소년센터	문화의집	부천시장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경기	안양시만안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안양시장	재)안양시청소년재단
경기	안양시석수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안양시장	재)안양시청소년재단
경기	창전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이천시시장	재)이천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평택시 북부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평택시장	재)평택시청소년재단
경기	평택시 팽성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평택시장	재)평택시청소년재단
경기	고양시성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고양시장	재)고양시청소년재단
경기	장안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수원시장	재)수원시청소년재단
경기	금촌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파주시장	파주청소년문화원
경기	신갈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용인시장	재)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경기	영통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수원시장	재)수원시청소년재단
경기	오름청소년활동센터	문화의집	광명시장	재)광명시청소년재단
경기	이천부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이천시시장	재)이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일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안산시시장	재)안산시청소년재단
경기	해남청소년활동센터	문화의집	광명시장	재)광명시청소년재단
경기	하남시덕풍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하남시장	사)인터넷꿈희망터
경기	사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김포시장	(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성남시청소년재단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성남시장	재)성남시청소년재단
경기	성남시청소년재단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성남시장	재)성남시청소년재단
경기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부천시시장	재)부천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경기	안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안산시시장	안산YWCA
경기	양주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양주시시장	양주시청
경기	통진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김포시장	(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교하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파주시장	파주YMCA
경기	금광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김영삼	대한예수교장로회 금광교회
경기	동탄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화성시장	재)화성시여성가족재단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제5부

제6부

제7부

제8부

제9부

제10부

부록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경기	오산남부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오산시장	새오산예일
경기	가평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가평군	한국스카우트연맹
경기	나름청소년활동센터	문화의집	광명시장	재)광명시청소년재단
경기	시흥시꾸미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시흥시장	시흥YMCA
경기	여주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여주시장	여주시청
경기	당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군포시장	재)군포시청소년재단
경기	안중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평택시장	재)평택시청소년재단
경기	양촌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김포시장	(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오산중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오산시장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경기	유림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용인시장	재)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경기	고양시탄현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고양시장	재)고양시청소년재단
경기	디딤청소년활동센터	문화의집	광명시장	재)광명시청소년재단
경기	안양시호계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안양시장	재)안양시청소년재단
경기	꿈빛나래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오산시장	오산시
경기	사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안산시장	재)안산시청소년재단
경기	선부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안산시장	재)안산시청소년재단
경기	새말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의정부시장	재)의정부시청소년재단
경기	수지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용인시장	재)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경기	운정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파주시장	파주기독교청년회
경기	청미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이천시장	재)이천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포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포천시장	포천시청 교육지원과
경기	누림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화성시장	재)화성시여성가족재단
경기	서정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평택시장	새평택YFC
경기	안양시평촌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안양시장	재)안양시청소년재단
경기	연천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연천군수	재)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원평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평택시장	새희사단평택안성지부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경기	철보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수원시장	재)수원시청소년재단
경기	시흥능곡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시흥시장	시흥YMCA
경기	안성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안성시	사)청소년선도위원회 안성시지부
경기	천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수원시장	재)수원시청소년재단
경기	흥선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의정부시장	재)의정부시청소년재단
경기	고촌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김포시장	재)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정왕어울림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시흥시장	시흥YMCA
경기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의왕시장	재)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
경기	경기도청소년야영장	야영장	경기도지사	경기도
경기	서삼릉청소년야영장	야영장	사)한국스카우트연맹	사)한국스카우트 경기북부연맹
경기	중앙(근지입)야영장	야영장	재)한국스카우트재단	사)한국스카우트연맹
경기	가평힐링캠프	야영장	남상환	남상환
경기	안성시다목적야영장	야영장	안성시장	안성시청
경기	골목대장 잉클 팜	특화시설	장지성	(주)농업회사법인 잉클대장잉클팜
경기	캠프그리브스 유스호텔	유스호텔	경기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	수원유스호텔	유스호텔	수원시장	재)수원시청소년재단
강원	원주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원주시장	원주YMCA
강원	동해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동해시장	사)푸른동해
강원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수련관	철원군수	철원군청
강원	영월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영월군수	원주YMCA
강원	홍천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홍천군수	춘천YMCA
강원	강릉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강릉시장	강릉시
강원	고성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고성군수	고성군
강원	춘천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춘천시장	재)춘천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강원	삼척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삼척시장	삼척시청
강원	화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화천군수	화천군청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제5부

제6부

제7부

제8부

제9부

제10부

부록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강원	황성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황성군수	황성군청
강원	양양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양양군수	양양군청
강원	속초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속초시장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강원	태백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태백시장	재)태백시복지재단
강원	정선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정선군수	사)한국BBS중앙연맹
강원	호림오대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호림오대산청소년수련원	주)호림동산 평창점
강원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수련원	강릉시장	한국해양소년단 강원연맹
강원	강원도치악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강원도지사	사)한국청소년야외활동협회
강원	미리내 캠프	수련원	이지연	(주)미리내 캠프
강원	안전문화수련원	수련원	정기성	안전문화수련원
강원	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장	수련원	강원도지사	한국스카우트연맹
강원	철원군병영체험수련원	수련원	철원군수	철원군수
강원	만해마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강원	간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황민혜	황민혜
강원	강원도청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강원도청	재)춘천가톨릭청소년회
강원	평창힐링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주)리드패밀리	(주)리드패밀리
강원	치악산황둔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이성주	(주)피노키오
강원	강촌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원윤희	재)서울시립대학교발전기금
강원	거진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고성군	고성군
강원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춘천시장	춘천동부디아코니아
강원	도계청소년장학센터	문화의집	삼척시장	삼척시청
강원	속초시아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속초시장	속초YMCA
강원	북면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인제군수	인제군
강원	원주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원주시장	원주YMCA
강원	기린면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인제군수	인제군청
강원	강릉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강릉시장	강릉시청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강원	중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원주시장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
강원	현내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고성군	고성군
강원	신동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문화의집	정선군수	한국청소년연맹
강원	동해시향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동해시장	사푸른동해
강원	사북청소년장학센터	문화의집	정선군수	한국청소년강원연맹
강원	원덕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삼척시장	삼척시청
강원	사내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화천군수	화천군청
강원	임계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정선군청	사)한국BBS중앙연맹
강원	영월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영월군수	사)아름다운청소년들
강원	진부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평창군수	평창군청
강원	평창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평창군수	평창군청
강원	근덕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삼척시장	삼척시청
강원	횡성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횡성군수	횡성군청
강원	철암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태백시장	재)태백복지재단
강원	상장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태백시장	재)태백복지재단
강원	화천청소년야영장	야영장	화천군수	화천군청
강원	한국안전체험관	특화시설	태백시장	태백시청
강원	동서울유스호텔	유스호텔	(주)동서울레스피아	(주)동서울레스피아
강원	신안종합유스호텔	유스호텔	신안종합리조트(주)	신안종합리조트(주)
강원	휘닉스빌유스호텔	유스호텔	휘닉스중앙 주식회사	휘닉스중앙 주식회사
충북	청주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청주시장	학)주성학원
충북	증평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증평군수	재)증평복지재단
충북	진천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진천군수	진천군청
충북	영동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영동군	영동군청
충북	나인밸리포레스트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박주희	박주희, 최지수
충북	한국전문문화체험학교	수련원	박명숙	월악민속놀이학교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충북	청소년수련마을보람원	수련원	서윤덕	[재]오운문화재단
충북	속리산유스타운	수련원	주계룡산업	주계룡산업
충북	박달재수련원	수련원	이종진	재단총청소년활동개발원
충북	괴산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괴산군수	대한청소년총후단
충북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수련원	충청북도지사	학)주성학원
충북	꽃동네사랑의연수원	수련원	오웅진	[재]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
충북	충주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충주시장	재단총법인청소년활동개발원
충북	송호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임묘진	(주)송호연수원
충북	진천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진천군수	진천군
충북	속리산알프스청소년수련원	수련원	한창환	(주)속리산알프스수련원
충북	제천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제천시장	사)아름다운대한민국
충북	로하스아카데미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이상부	주)로하스아카데미
충북	청주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청주시장	한국스카우트 충북연맹
충북	음성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음성군수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충북	제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제천시장	[재]단총청소년활동개발원
충북	괴산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괴산군수	괴산군수
충북	단양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단양군수	단양청소년문화의집
충북	매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단양군청	매포청소년문화의집
충북	보은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보은군수	한국BBS충북연맹보은군지회
충북	금왕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음성군수	한국BBS충북연맹 음성군지회
충북	음성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음성군수	음성군청
충북	횡간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영동군	영동군청
충북	덕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진천군수	진천군
충북	장락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제천시장	제천시청
충북	청주시청원정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청주시장	사)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충북	태동유스호텔	유스호텔	(주)속리산알프스수련원	(주)속리산알프스수련원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충남	홍성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홍성군수	재)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충남	보령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보령시장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충남	태안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태안군수	태안군
충남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수련관	아산시장	학)동은학원 순천향대학교
충남	천안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천안시장	호서대학교
충남	예산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예산군수	(재)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
충남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천안시장	학)백석대학교
충남	서산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산시장	재)서산시복지재단
충남	서천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서천군수	사)서천청소년문화마당 봄
충남	논산시청소년문화센터	수련관	논산시장	재)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충남	서해천수만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반채홍	사)한국인성문화원
충남	청양송의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재)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충남	부여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부여군수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충남	만리포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오인근	주)만리포수련원
충남	군포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군포시	재)군포시청소년재단
충남	서해안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차군규	재)서해안청소년수련원
충남	청포대썬셋수련원	수련원	함승우	(주)케이와이엠
충남	대천오성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김경석	대천오성청소년수련원
충남	삼정부여유스타운	수련원	박명길	(주)삼정관광호텔
충남	한양여자대학교 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김종량	한양여자대학교
충남	마달피삼육청소년수련원	수련원	황춘광	재)제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유지재단
충남	아산늘푸름수련원	수련원	재)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대한청소년총후단
충남	케이티엔지상상마당논산	수련원	주)케이티엔지	컴퍼니에스에스(주)
충남	제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진경수, 김미숙	제천청소년수련원(주)
충남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충남	합덕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당진시장	당진시청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제5부

제6부

제7부

제8부

제9부

제10부

부록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충남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보령시장	(사)보령시청소년교화연합회
충남	당진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당진시장	당진시청
충남	서산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서산시장	재)서산시복지재단
충남	서천군청소년문화센터	문화의집	서천군수	재)서울기독교청년회(서울YMCA)
충남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	문화의집	공주시장	사)한국B.B.S 대전충남연맹 공주지회
충남	광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홍성군수	재)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충남	예산군청소년미래센터	문화의집	예산군수	재)예산군청소년복지재단
충남	금산청소년미래센터	문화의집	금산군수	금산군청
충남	청양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청양군	청양군청
충남	공주시청소년공방작소	문화의집	공주시장	사)한국BBS 대전·충남공주시지회
충남	아산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아산시장	재)아산시청소년재단
충남	공주유스호텔	유스호텔	서경원	공주유스호텔
충남	해가든유스호텔	유스호텔	오백근	주)해가든유스호텔
충남	부여군유스호텔	유스호텔	부여군수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전북	익산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익산시장	사)새벽이슬
전북	순내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전주시장	재)쌍백합청소년육성회
전북	진안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진안군수	진안YMCA
전북	정읍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정읍시장	정읍YMCA
전북	무주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무주군수	재)쌍백합청소년육성회
전북	군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군산시장	사)군산기독교청년회(군산YMCA)
전북	김제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김제시장	김제시장
전북	남원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남원시청	삼동청소년회
전북	고창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고창군수	고창군청
전북	청정테마힐링센터	수련원	이강동	이강동
전북	진실되게하는 지리산유스캠프	수련원	이종범	주)진실되게하는 지리산유스캠프
전북	무주수련원	수련원	이장호	이장호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전북	임실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임실군수	임실군청
전북	대광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장흥기	장흥기
전북	상생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사)상생복지회	사)상생복지회
전북	부안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부안군수	부안군청
전북	모악산유스타운 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최지승	최지승
전북	무주덕유산유스타운	수련원	이종혁	주)무주덕유산리조트
전북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군산시장	사)군산기독교청년회(군산YMCA)
전북	덕진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전주시장	사)흥사단
전북	완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전주시장	[사)삼동청소년회
전북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익산시장	사)삼동청소년회
전북	전주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전주시장	재)한기장복지재단
전북	효자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전주시장	사)아모스청소년회
전북	남원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남원시장	사)삼동청소년회
전북	안성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무주군수	재)쌍백합청소년육성회
전북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완주군수	사)봉상청소년육영회
전북	부안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부안군수	부안군청
전북	금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김제시장	김제시장
전북	만경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김제시장	김제시장
전북	한국스카우트송광훈련장	야영장	홍오남	한국스카우트전북연맹
전북	진안군마이산청소년야영장	야영장	진안군수	(사)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진안지회
전북	부안군청림청소년수련시설	특화시설	부안군수	부안군청
전북	익산유스호텔	유스호텔	익산시장	사)삼동청소년회
전북	전북 JK유스호텔	유스호텔	조희천	전주기전대학 학교기업 jk여행사
전남	나주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나주시장	광주YMCA
전남	영암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영암군수	한국청소년인권센터
전남	광양시청소년문화센터	수련관	광양시장	광양기독교청년회(광양YMCA)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전남	장성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장성군수	새광주기독교청소년협회(CYA)
전남	여수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여수시	사)여수기독교청년회
전남	장흥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장흥군수	사)한들청소년센터
전남	무안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무안군수	무안군청
전남	완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새삼동청소년회	새삼동청소년회
전남	진도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진도군수	(사)삼동청소년회
전남	목포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목포시장	목포YMCA
전남	순천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순천시장	한국스카우트연맹
전남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전라남도지사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전남	신안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최호성	신안군청소년수련원
전남	보성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보성군수	(사)흥사단
전남	곡성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곡성군수	사)푸른청소년육성개발원
전남	보성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보성군수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전남	고흥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고흥군수	고흥군청
전남	광양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광양시장	광양YMCA
전남	담양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담양군수	담양군청
전남	목포시청소년문화센터	문화의집	목포시장	목포YMCA
전남	완도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완도군수	새꿈틀
전남	삼호읍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영암군수	사)청우인재육성회
전남	함평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함평군수	재)광주가톨릭청소년회
전남	황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해남군	사)청소년공용왕국
전남	목포시하당청소년문화센터	문화의집	목포시	목포YMCA
전남	여수시여문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여수시	사)여수기독교청년회(여수YMCA)
전남	옥과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곡성군청	푸른청소년육성개발원
전남	여수시미평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여수시장	사)한국청소년육성회여수지구회
경북	문경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문경시장	한국청소년경북연맹
경북	영천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영천시장	영천시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경북	상주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상주시장	상주시
경북	칠곡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칠곡군수	칠곡군
경북	경주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경주시장	경주시청
경북	구미시선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구미시장	구미대학교
경북	울진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울진군수	울진군청
경북	안동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안동시장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경북	봉화군청소년센터	수련관	봉화군수	봉화군청
경북	포항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포항시장	재)포항시청소년재단
경북	보문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주)보문청소년수련원	(주)보문청소년수련원
경북	국민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이주환	(주)국민관광농원
경북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경상북도지사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경북	포항시구룡포청소년수련원	수련원	포항시장	재)포항시청소년재단
경북	오케이그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대한불교진각종류지재단	노장환
경북	영양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영양군수	영양군청
경북	영주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영주시장	한국BBS경북지회
경북	안동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안동시장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경북	화랑마을	수련원	경주시장	경주시청
경북	경산시계림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경산시장	학)대구한의대학교
경북	군위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군위군청	재)대구가톨릭청소년회
경북	상주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상주시장	상주시
경북	김천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김천시장	김천시청
경북	문경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문경시장	문경시청
경북	영천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영천시장	영천시청
경북	안동청소년문화센터	문화의집	장체기	(재)고운청소년재단
경북	칠곡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칠곡군수	칠곡군청
경북	성주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성주군수	성주군청 가족지원과
경북	고령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고령군	고령군청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경북	산내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경주시장	사)청소년서라벌문화원
경북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문경시장	문경관광진흥공단
경북	Remember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김성기	김성기
경북	성보촌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주)성보문화재단	주)성보문화재단
경남	김해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김해시장	김해복지재단
경남	거제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거제시장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경남	진주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진주시장	진주시청
경남	창원시늘푸른전당	수련관	창원시장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경남	창녕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창녕군수	[재)푸른쉼터장학회
경남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수련관	창원시장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경남	양산시청소년회관	수련관	양산시장	양산시장
경남	진해청소년전당	수련관	창원시장	재)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
경남	창원시봉림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창원시장	사)봉림
경남	함안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함안군	재)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
경남	진해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창원시장	재)반석청소년재단
경남	거창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거창군청	거창군수
경남	밀양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밀양시장	재)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
경남	하동군청소년수련관	수련관	하동군수	하동군
경남	남해유스타운	수련원	조문권	남해유스타운
경남	김해수련장	수련원	김은진	김은진
경남	거제그린유스타운	수련원	임만규	임만규
경남	온누리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김윤현	김윤현
경남	지리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조임순	조임순
경남	몽양당청학동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김보곤	김보곤
경남	해운청소년수련원	수련원	박해운	해운개발(주)
경남	황석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정철상	박미화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경남	통영시청소년수련원	수련원	통영시장	한국해양소년단 경남남부연맹
경남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경상남도지사	한국스카우트경남연맹
경남	거창군월성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거창군	거창흥사단
경남	남해청소년수련원	수련원	한대섭	한려개발
경남	덕유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강철훈	덕유산청소년수련원
경남	홍의청소년수련원	수련원	학교법인문화교육원	사)경남청소년교육개발원
경남	부일수련원	수련원	윤영화	윤영화
경남	하동군청소년수련원	수련원	하동군수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경남	청학동서당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서흥석	서흥석
경남	가배랑리조트수련원	수련원	주)거제해양복합리조트	주)거제해양복합리조트
경남	알펜라켄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엔데버주식회사	엔데버주식회사
경남	사랑도천문대수련원	수련원	김학	주)사랑도천문대
경남	봉림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창원시장	(재)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
경남	옥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거제시장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경남	양산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양산시청	양산시장
경남	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고성군수	고성군청
경남	영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창녕군수	(재)푸른쉼터장학회
경남	거창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거창군수	거창군수
경남	마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창원시장	마산YMCA
경남	밀양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밀양시장	재)푸른쉼터장학회
경남	고현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거제시장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경남	사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사천시	재)사천시청소년육성재단
경남	남지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창녕군수	(재)푸른쉼터장학회
경남	의령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의령군수	경남홍의청소년육성회
경남	통영동원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장정규	주)남양종합개발
제주	제주시청소년수련관	수련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

시도	시설명	시설종류	설치주체	운영자(단체)
제주	비자림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흥사단
제주	(주)부영주택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수련원	주식회사 부영주택	(주)부영주택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제주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서귀포YWCA
제주	강정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강정마을회	강정마을회
제주	송산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서귀포시장	서귀포시
제주	도남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
제주	아라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
제주	법환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서귀포시장	법환동청소년문화의집
제주	한림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
제주	예래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예래마을회	예래동주민자치위원회
제주	추자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추자면사무소
제주	화북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
제주	용담1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
제주	이도1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
제주	도평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
제주	구좌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
제주	애월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시청
제주	하효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서귀포시장	하효마을회
제주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사청소년과미래
제주	조천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YMCA
제주	조이빌제주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	(주)아트오브리빙	(주)아트오브리빙
세종시	북세종종합청소년센터	수련관	세종특별자치시	사)삼동청소년회
세종시	조치원청소년센터	문화의집	세종특별자치시장	사)한국청소년진흥재단 세종특별자치시지부
세종시	새롬청소년문화의집	문화의집	세종시장	세종YMCA
세종시	고은청소년센터	문화의집	세종특별자치시장	세종특별자치시

주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원 현황은 2020년 11월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자료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2020).



## 부록 4

## 전국 청소년복지시설(쉼터, 자립지원관) 현황

(2020년 기준)

지역	시설명	시설유형	주소	연락처
서울	서울시립용산일시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04302] 서울특별시 용산구 만리재로 156-1	02-718-1318
서울	서울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청소년쉼터	[01054]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140길 5-26(수유3동)	02-6435-7979
서울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북권)	청소년쉼터	[03164]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1길 11, 3층(인사동 YMCA 별관)	02-722-1318
서울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남권)	청소년쉼터	[03164]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1길 11, 3층(인사동 YMCA 별관)	02-722-1318
서울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권)	청소년쉼터	[05408]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303 평원빌딩 3층	02-6239-2014
서울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남권)	청소년쉼터	[05408]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재대로 1303 평원빌딩 3층	02-6239-2014
서울	서울시립드림일시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43 신관 5층	02-2051-1371
서울	은평구립일시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03328]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89길 6-20 [갈현동]	02-382-1388
서울	서울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	청소년쉼터	[08753]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376 대경빌딩 3층	02-876-7942
서울	서울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	청소년쉼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 43, 신관1층	02-3281-8200
서울	서울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	청소년쉼터	[02062] 서울특별시 중랑구 송림길 156	02-493-1388
서울	강남구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06353]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185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6층	02-512-7942
서울	강서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07723] 서울특별시 강서구 초록마을로 10길 5, 201호	02-2697-7377
서울	서울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	청소년쉼터	[08856]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24가길 54, 301호	02-3281-7942
서울	서울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	청소년쉼터	[08578]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73길 10-16(독산동)	02-6259-1011

지역	시설명	시설유형	주소	연락처
서울	서울시립은평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03337)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92길 37-6 (불광동 동산출타운)	02-6959-2401
서울	어울림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07656)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향대로48길 76, 예루뜨빌 303호	02-302-9006
부산	부산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청소년쉼터	[46943]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덕로 82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1층 122호	051-303-9670
부산	부산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청소년쉼터	[46943]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덕로 82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1층 112호	051-303-9677
부산	부산광역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46943]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덕로 82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2층 211호	051-303-9672
부산	부산광역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4828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해변로 255번길 58(구. 부산광역시 민락동 165-7)	051-756-0924
부산	부산광역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46943]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덕로 82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2층 211호	051-303-9671
부산	부산광역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46222] 부산광역시 금정구 팔송로 39번길 109, 2층	051-581-1388
대구	대구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42031)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원로1길 5 흥사단회관2층(범어동)	053-764-1388
대구	대구광역시이동형일시청소년쉼터 (다운)	청소년쉼터	(42409)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34길 16 3층 302호	053-754-1388
대구	달서구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42733]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 10안길 11	053-526-1318
대구	대구광역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41934]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81길 66-5, 4층	053-659-6290
대구	대구광역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41972]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8길 14(3층)	053-426-2275
대구	대구광역시중장기여자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42654] 대구광역시 달서구 당산로 106 (성당동 4층)	053-426-2276
인천	인천시일시청소년쉼터 (꿈꾸는별)	청소년쉼터	(21931)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56	032-817-1318
인천	인천시일시청소년쉼터 (한울타리)	청소년쉼터	(21415)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1059번길 10	032-516-1318

지역	시설명	시설유형	주소	연락처
인천	인천시단기청소년쉼터 (남자, 바다의별)	청소년쉼터	(2215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남주길 125번길 5	032-438-1318
인천	인천시단기청소년쉼터 (남자, 우리들)	청소년쉼터	(21437)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60번길 4	032-442-1388
인천	인천시단기청소년쉼터 (여자, 하늘목장)	청소년쉼터	(21401)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 45-2, 201호	032-528-2216
인천	인천시단기청소년쉼터 (여자, 하모니)	청소년쉼터	(21537)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01 대영빌딩 5층	032-468-1318
인천	인천시청소년중앙기쉼터 (남자, 별마루)	청소년쉼터	(2215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일로40번길 85, 401호 (대창스페이스빌라 가동)	032-875-7718
인천	인천시중앙기청소년쉼터 (여자, 예꿈)	청소년쉼터	(21543)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157번길 34-15 원빌리지 301호	032-465-1393
광주	광주광역시청소년일시쉼터(이동형)	청소년쉼터	(61640) 광주광역시 남구 제중로46번길 1, 2/3층	062-527-1318
광주	광주광역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61245) 광주광역시 북구 중가로 43 5층	062-525-1318
광주	광주광역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61172) 광주광역시 북구 면앙로 87 3층	062-227-1388
광주	광주광역시여자중앙기청소년쉼터 (맥지쉼터)	청소년쉼터	(61502)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로 34 5층	062-366-1318
광주	광주광역시남자중앙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62051) 광주광역시 서구 풍금로24번길 5-1 풍암빌 402~404호	062-714-1388
대전	대전광역시청소년이동일시쉼터	청소년쉼터	(34830)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466번길 53	042-221-1092
대전	대전광역시청소년드림인센터	청소년쉼터	(34630)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천동로 508 청소년위캔센터 6층	042-673-1092
대전	대전남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34921)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488번길 9 보육정보센터 5층	042-223-7179
대전	대전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34921)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488번길 9 보육정보센터 4층	042-256-7942
대전	대전시남자중앙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35277)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342번길 현진빌라 402호	042-528-7179
대전	대전광역시중앙기청소년쉼터(여자)	청소년쉼터	(35289) 대전광역시 서구 도솔로 251번길 18-54 상희빌 402호/403호	042-534-0179

지역	시설명	시설유형	주소	연락처
울산	울산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44532) 울산광역시 중구 먹자거리 31 2층	052-245-1388
울산	울산광역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44240) 울산광역시 북구 화동11길 28	052-261-1388
울산	울산남구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44673) 울산광역시 남구 돈질로 27번길 14, 씬플러스	052-269-1388
울산	울산울주군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44962)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대북2길 18-1	052-223-5186
울산	울산남구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44721) 울산광역시 남구 꽃대나리로 15번길 6, 드림타운	052-265-1388
경기	수원남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달보듬터)	청소년쉼터	(1659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61(세류동, 리치타워 3층)	031-216-4313
경기	수원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1626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77, 3층 (송산빌딩)	031-216-8677
경기	성남시일시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1329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 80, 2층	031-758-1388
경기	성남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13385)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마지로 29 럭키참조은 201, 202호	031-758-1213
경기	성남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13647)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12 우남이타워프라자 8층	031-722-6260
경기	성남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1336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원터로 106번길 4, 요림빌딩 3층	031-758-1720
경기	성남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13647)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12, 우남이타워프로자 8층	031-752-9050
경기	부천시청소년일시쉼터	청소년쉼터	(14641)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54번길 9(심곡동)	032-654-1318
경기	부천모통이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14669)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763번길 16-23(역곡동)	032-343-1880
경기	용인남자단기청소년쉼터(푸른꿈)	청소년쉼터	(16829)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문인로39번길 7	031-276-0770
경기	용인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푸른꿈)	청소년쉼터	(1683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89번길 4-11(풍덕천동 738-9)	031-264-7733
경기	안산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징검다리)	청소년쉼터	(1545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1로 35, 501, 502호 (제일프라자)	031-481-8232

지역	시설명	시설유형	주소	연락처
경기	안양시일시청소년쉼터 민들레뜨락	청소년쉼터	(13997)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63번길 31(안양동)	031-464-1388
경기	안양남자단기청소년쉼터(FORYOU)	청소년쉼터	(1408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665번길 31. B동 (호계동 한길맨션)	031-455-9182
경기	안양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호숙)	청소년쉼터	(14109)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606, 5층(호계동, 봉성빌딩)	031-468-5141
경기	오산시립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18115)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끝동 366(2층)	031-374-1388
경기	평택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17887) 경기도 평택시 매봉산4길 26 (비전동825-15)	031-652-1384
경기	시흥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10549) 경기도 시흥시 오동마을로 33 5층	031-434-1318
경기	시흥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꿈다락)	청소년쉼터	(14951) 경기도 시흥시 시흥대로 1073번길 4-2	031-314-9072
경기	군포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하나로)	청소년쉼터	(15805)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789 온누리청소년센터	031-399-7997
경기	화성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18312)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매봉로 478, 대호프라자 303호	031-227-7935
경기	김포시이동형일시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10099) 경기도 김포시 걸포로 76	031-980-1604
경기	고양남자단기청소년쉼터 동지	청소년쉼터	(1031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견달산로161번길 77	031-969-0091
경기	고양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10244)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현종로 26번길 37-9	031-918-1366
경기	구리여자단기청소년쉼터(보금자리)	청소년쉼터	(11934)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32-1	031-564-7707
경기	구리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민들레)	청소년쉼터	(11934)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51 3~4층(수택동)	031-568-1318
경기	남양주시 일시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12239) 경기도 남양주시 흥유릉로 248번길 39 다남빌딩 203호	031-591-1319
경기	의정부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청소년쉼터	(11683)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395 5층(가능동)	031-871-1318
경기	의정부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11617) 경기도 의정부시 비우로 12 청소년비전센터 3,4층	031-837-1318
경기	의정부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11654)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 56 유흥빌딩 5층	031-829-1318

지역	시설명	시설유형	주소	연락처
경기	이천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나르샤)	청소년쉼터	(17363) 경기도 이천시 영창로227번길 28, 대호 2차@ 111호	031-631-7305
강원	강원도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청소년쉼터	(24255)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379번길 27, 3층	033-256-0924
강원	강원도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청소년쉼터	(24210) 강원도 춘천시 동면 춘천로 527-40, 1층	033-255-1005
강원	강원도남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24255) 강원도 춘천시 후석로379번길 27, 4층	033-255-1002
강원	강원도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24210) 강원도 춘천시 동면 춘천로 527-40, 2층	033-255-1004
강원	강원도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24207) 강원도 춘천시 화목원길 166	033-244-5118
강원	강원도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24210) 강원도 춘천시 동면 춘천로 527-40	033-256-7179
강원	강릉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25540) 강원도 강릉시 금성로 28-2, 2층(금학동)	033-655-1424
강원	원주시일시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26316) 강원도 원주시 복원로 2718번길 17(태장2동)	033-742-9997
충북	청주시청소년일시이동쉼터	청소년쉼터	(287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26번길 21(서운동)	010-4654-1388
충북	청주남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28394)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194번길 60-4(가경동)	043-231-2676
충북	청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느티나무	청소년쉼터	(28699)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안뜸로 26번길 10, 행운빌402호	043-276-1318
충북	충청북도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28595)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신울로 166 (3층)	043-266-2204
충북	친구청소년쉼터(남자)	청소년쉼터	(27398) 충청북도 충주시 금봉3길 27	043-911-3479
충북	충주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27369) 충청북도 충주시 봉현로 109	043-852-0924
충북	제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27369) 충청북도 제천시 고암로4가길 3	043-643-7946
충남	천안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3115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3길 52	041-576-1316
충남	천안남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3114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개목5길 34, 2층	041-578-1388
충남	공주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32537) 충청남도 공주시 백미고을길 5-1(금성동)	041-853-1337

지역	시설명	시설유형	주소	연락처
충남	공주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32556) 충청남도 공주시 버드나무1길 64 (옥룡동)	041-853-4486
충남	아산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31520) 충청남도 아산시 삼동로 29 성심빌딩 4층	041-548-1326
충남	아산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31530)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896-36	041-534-1388
충남	홍성남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32219)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36번길 49 다기능복지센터 3층	041-634-6564
충남	홍성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32219)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36번길 49 다기능복지센터 4층	041-631-6560
전북	전주푸른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55024)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3길 5-6	063-903-1091
전북	전주한울안남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55057)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범안1길 26-8, 402호	063-251-3530
전북	전주임마누엘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55014)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6길 30-22	063-244-1774
전북	익산일시청소년쉼터(디딤돌)	청소년쉼터	(54643) 전라북도 익산시 고봉로28길 31, 3층(영등동)	063-857-1091
전북	군산꽃동산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54079) 전라북도 군산시 검다메안길 6-6(2층)	063-451-1091
전남	목포남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58723) 전라남도 목포시 호남로52번길 19-1, 3~4층	061-278-1388
전남	목포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58642) 전라남도 목포시 상리로15번길 19	061-287-1388
전남	여수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59754) 전라남도 여수시 대교로 51, 2층	061-644-0918
전남	여수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59641)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3길 2, 3층	061-661-0924
경북	경상북도청소년남자쉼터(남자단기)	청소년쉼터	(39316)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로34길 31(형곡동)	054-455-1234
경북	구미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39302) 경상북도 구미시 원남로10길 13-3	054-444-1388
경북	포항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37608)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흥로 100번길 64, 2층	054-244-1318
경북	포항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3775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171번길 43-1	054-284-1388

지역	시설명	시설유형	주소	연락처
경북	경상북도청소년여자쉼터 (여자중장기)	청소년쉼터	[36682]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270 (안막동)	054-857-6137
경남	경상남도일시청소년쉼터(남.여)	청소년쉼터	[51514]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133번길 11(3층)	055-285-7361
경남	창원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하라)	청소년쉼터	[5116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하남천서길37번길 6-4	055-237-1318
경남	경상남도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마야)	청소년쉼터	[5145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55번길 14-3	055-274-0924
경남	김해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50918]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277 5층	055-332-1318
경남	경상남도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클라라의 집)	청소년쉼터	[52674] 경상남도 진주시 석갑로 142번길 3	055-745-1316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일시청소년쉼터 (고정형)	청소년쉼터	[6301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명월로 324-3	064-796-0922
제주	제주버프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청소년쉼터	[633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별랑길 47(삼양삼동)	064-723-0179
제주	제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6327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만덕로3길 2, 3층(건입동)	064-751-1388
제주	제주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6332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별랑길 47(삼양삼동)	064-759-1388
제주	서귀포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6356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동로 35	064-739-9805
제주	서귀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6358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장수로 2(동홍동)	064-733-1376
서울	서울시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자립지원관	[01315]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15길 93(방학동) 대원리초빌 102동 203호	02-6959-5012
서울	관악들꽃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자립지원관	[0885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우16길 17, 1층(신림동)	02-851-1924
대구	대구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자립지원관	[42452] 대구광역시 남구 자유6길 45-1 1층	053-657-1924
인천	인천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관 별바라기	청소년자립지원관	[21309]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367번길 40	032-875-1319



지역	시설명	시설유형	주소	연락처
인천	인천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관 행복자리	청소년자립지원관	(21553)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169번길 40-17, B동 301호 (간석동, 가람주택)	032-467-1398
경기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자립지원관	(11617) 경기도 의정부시 비우로 12 청소년비전센터 1층	031-928-1316
경기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자립지원관	(15805)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789 온누리청소년센터 4층	031-360-1824
경기	성남시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자립지원관	(1329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71번길 21-13	031-723-7942
충남	천안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자립지원관	(3114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개목5길 34, 3층	041-578-1380

자료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2020).

제1부

제2부

제3부

제4부

제5부

제6부

제7부

제8부

제9부

제10부

부록

## 부록 5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황

(2020년 기준)

시도	센터명	주소	연락처
서울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543]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1길 23, 7층	02-2285-1318
서울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138]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777, 2층	02-2091-1386
서울	양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7991]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43 목동청소년수련관 1층	02-2646-8341
서울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73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영로22길 36 해광빌딩 2층	02-844-0924
서울	동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슬기동 2층	02-834-1355
서울	강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362]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144 [수서동 749] 2층	02-2226-3611
서울	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254]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217 청소년수련관 3층 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490-0222
서울	강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1012]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74 강북청소년수련관 3층	02-6715-6661
서울	도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1412]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9길 132 창동문화체육센터 1층	02-6956-4508
서울	성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750]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60 성동청소년수련관 3층 308호	02-2299-1388
서울	금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8645]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30길 54 (시흥동) 금천청소년수련관 2층	02-803-1873
서울	서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67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30길 45-9 휴먼센터 3~4층	02-3141-1318
서울	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476]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4길 16 은평청소년수련관	02-384-1318
서울	서초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670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5길 11, 2층 (방배동, 구립방배유스센터 내)	02-525-9128
서울	송파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834]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4길 4 송파청소년센터(구 송파청소년수련관) 3층	02-407-7179

시도	센터명	주소	연락처
서울	마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009]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우정로 77 상가동	02-6376-9900
서울	광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072]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24길 17 자양공공힐링센터 3층	02-2205-2300
서울	강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7647]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42길 23-19 강서청소년회관 3층	02-2649-1318
서울	관악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879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34길 73 싱글벙글센터 4층	02-871-7942
서울	동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58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2길 23-9 신설동복지지원센터 2층	02-2236-1318
서울	용산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316]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 329(원효로 1가) 꿈나무종합타운 4층	02-706-1318
서울	구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8256]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 949(공동 204-4) 3층, 구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867-1318
서울	강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211]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93길 47 서울시립강동청소년수련관 2층	02-6252-1388
서울	종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076]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35가길 13	02-762-1318
서울	성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8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242 성북아동청소년센터 4층	02-3292-1780
부산	부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4724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전로 43, 6층(전포동)	051-804-5043
부산	영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9113] 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 321 함지골청소년수련관 1층	051-405-5224
부산	부산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405번길 85 양정청소년수련관 2층	051-868-0950
부산	금정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6267]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찰로96번길 47, 2층	051-581-2072
부산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6579]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로3 (구포1동 610-1)	051-334-3000
부산	해운대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808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75 국제빌딩 11층	051-715-1388
부산	수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8308]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521번길 77 수영구청소년문화의집 3층	051-759-8411
부산	사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9412]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매로 161	051-207-7179
부산	부산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849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24, 5층	051-621-4831
부산	기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46069]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서로 86 대라다목적도서관 4층	051-792-4932

시도	센터명	주소	연락처
부산	동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7710)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523 SK허브스카이 A3동 06호	051-555-1389
부산	부산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9206) 부산광역시 서구 시약로 125, 1층~3층	051-714-0701
부산	사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6927)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952 사상아동보건센터 3층	051-327-0808
부산	부산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8723) 부산광역시 동구 범곡로 9, 비전센터 3층	070-7733-8351
부산	부산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8954)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길 39-2, 3층	051-245-1388
부산	연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7525)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243번길 19 거제동원타워상가 503호	051-506-1388
대구	대구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41934)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81길 66-5 대구청소년지원재단 3층	053-659-6272
대구	달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2726)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7길 39(월성동)	053-638-1388
대구	수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2027)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1 (범어동, 범어도서관 5층)	053-666-4201
대구	대구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1155)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16길 20 아인빌딩 2층	053-984-1318
대구	대구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1770)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222, 3층	053-216-8310
대구	대구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1434) 대구광역시 북구 대천로 21 구수산도서관 1층	053-324-1388
대구	대구달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42985)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252, 3층	053-614-1388
대구	대구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1919)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541, 8층	053-423-1388
대구	대구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2410)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49길 25, 2층	053-624-1388
인천	인천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2573) 인천광역시 동구 박문로 1 인천교구 가톨릭청소년센터 1층	032-721-2300
인천	연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21936)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283 연수3동 주민센터 4층	032-819-7308
인천	계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21026)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937 계양구청소년수련관 4층	032-547-0856
인천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22543) 인천광역시 동구 솔빛로 82, 3층	032-777-1389
인천	인천미추홀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2213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82 청소년미디어센터 5층	032-862-8751

시도	센터명	주소	연락처
인천	인천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22771]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7번길 12 가좌청소년문화의집 2층	032-584-1388
인천	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21387]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37번길 1	032-509-8910
인천	남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2152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70, 3층	032-471-1388
인천	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22309]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72번길 25 동인천동행정복지센터 3층	032-773-1318
인천	중구영종청소년상담복지센터	[22379]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북로 1000-26 하늘문화센터 복지동 2층	032-747-1318
광주	광주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61475]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196번길 5, 4층	062-232-2000
광주	광주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61132] 광주광역시 북구 대천로 86, 북구청소년수련관 1층(문흥동 1009-1)	062-268-1388
광주	광산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62363]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46-7, 2층	062-951-1380
광주	광주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61727]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693	070-4044-7081
광주	광주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62048]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278 국민생활관 2층 213 ~ 215호(포암동염주체육관 내)	062-375-1388
광주	광주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46 광주YMCA 3층	062-229-3308
대전	대전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4630]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천동로 508, 6층	042-257-2000
대전	대전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35334] 대전광역시 서구 도솔로 72, 3층	042-527-3112
대전	유성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34097]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158 유성구청소년수련관 3층	042-862-7942
울산	울산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44532] 울산광역시 중구 강북로 105 상가동 2층(성남동, 롯데캐슬스카이)	052-227-2000
울산	울산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4011] 울산광역시 동구 남목9길 13(서부동) 남목청소년문화의집 4층	052-209-3435
울산	울산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4224] 울산광역시 북구 제내1길 6 예세빌딩 4층	052-283-1390
울산	울산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4692]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 106 마이코즈건물 3층	052-227-2011
울산	울주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45006]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남로 5 JS 빌딩 3층	052-229-9630
울산	울주군중부청소년상담복지센터	[44920]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구영로 101-20 울주중부청소년수련관 3층, 중부거점상담실	052-229-9656

시도	센터명	주소	연락처
경기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1630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55 행정동우회관 1층	031-248-1318
경기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439) 경기도 성남시 성남대로997번길 25-9 삼성빌딩 3층(여수동)	031-756-1388
경기	의정부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1622)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27 청소년수련관 3층	031-872-1388
경기	안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997)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263번길 31	031-8045-2745
경기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4596)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7 복사골문화센터 301호	032-325-3002
경기	광명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4241)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 34 노들들 1동 1층	02-809-2000
경기	평택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7903)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616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4층	031-654-1388
경기	동두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1362)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로 95 청소년수련관 3층	031-865-0785
경기	안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5387)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초로 76, 4층	031-482-3181
경기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051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633번길 25 토당청소년수련관 2층	031-970-4003
경기	구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1922)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32-10 구리시청소년수련관 2층	031-557-2000
경기	남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2244)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51-47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 2층	031-590-8097
경기	오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8136)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278번길 3(오산동 2층)	031-372-4004
경기	시흥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4914)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 179 시흥시청소년수련관 별관 1층	070-7435-5464
경기	시흥시정왕청소년상담복지센터	(15049) 경기도 시흥시 오동마을로 33 금강빌딩 3층	031-318-7101
경기	하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2919)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111 하남시청소년수련관 2층	031-790-6681
경기	군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5823)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112 군포책마을 슬기관 2층	031-398-1277
경기	의왕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6077) 경기도 의왕시 문화공원로 33	031-458-5037
경기	용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청소년수련관 4층	031-324-9300
경기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0894)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415 운정행복센터 6층	031-946-0022

시도	센터명	주소	연락처
경기	이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7371] 경기도 이천시 영창로 260 서희청소년문화센터 3층	031-634-2777
경기	안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7591] 경기도 안성시 낙원길 108 안성시청소년문화회집 2층 (낙원동)	070-7458-1320
경기	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0099] 경기도 김포시 걸포로 76 중봉청소년수련관 2층	031-980-1681
경기	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1469] 경기도 양주시 옥정서로 254 행복플러스 유치원 2층	031-8082-4120
경기	여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2636] 경기도 여주시 신록사길 6-8	031-886-0541
경기	화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8732] 경기도 화성시 태안로 145 유엔아이센터 2층(병점동)	031-267-8771
경기	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2744]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 197, 1층	031-760-2219
경기	연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11026]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영로 11 연천군종합복지관 2층	031-839-2000
경기	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12452]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은고개로 39 청평호반문화체육센터 1층	031-582-2000
경기	양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12556] 경기도 양평군 양근로 183 삼진빌딩 2층	031-770-2715
경기	포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1184]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523번길 59-56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내 2층	031-538-2219
경기	과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28] 경기도 과천시 참마을로 9 과천시청소년수련관 1층	02-502-1318
경기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6486]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93 희망등대센터 3층	031-212-1318
강원	강원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241]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167 강원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2층	033-256-2000
강원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5474]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72-21 강릉시청소년수련관 2층	033-646-8666
강원	원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6475]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234 원주시청소년수련관 이음관 2층	033-734-1388
강원	철원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037]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명성로139번길 52	033-450-5622
강원	영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6237]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제방안길 100	033-375-1328
강원	속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867] 강원도 속초시 관광로 377	033-633-0741

시도	센터명	주소	연락처
강원	정선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6150] 강원도 정선군 사복읍 사복6길 12-6	033-591-1311
강원	동해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5759] 강원도 동해시 천곡2길 8 (1층)	070-4278-8326
강원	태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6044] 강원도 태백시 태백로 1663(문곡동)	033-582-7500
강원	홍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5131]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산림공원2길 31 청소년수련관 2층	033-432-1386
강원	춘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400]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외솔길19번길 45	033-818-1389
강원	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5236]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문예로 75 문화체육공원 내	041-634-4858
강원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5919] 강원도 삼척시 엑스포로 50-1, 3층	033-575-5002
충북	충청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28516]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3 (문화동 69-1)	043-220-6826
충북	충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7411] 충청북도 충주시 증원대로 3324	043-856-7804
충북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8543]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앙로 30 청하빌딩 5층	043-223-0755
충북	제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7153]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대로12길 4, 2층	043-642-7939
충북	단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7012]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삼봉로 187-18 단양군청소년수련관 2층	043-420-3142
충북	서청주청소년상담복지센터	[28436]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351번길 56 (청주시청소년수련관 3층)	043-297-8802
충북	영동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9149]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성안길 8 청소년수련관 2층	043-740-3968
충북	음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7703]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설성공원길 16 음성청소년문화의집 1층	043-873-1320
충북	옥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9040]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39 청소년수련관 1층	043-731-1388
충북	진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7832]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포석길 37-10 4층(청소년수련관)	043-536-3430
충북	괴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8035]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6길 20-9 괴산경찰서 앞	043-834-7944
충북	증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7948]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보건복지로 64-2	043-835-4189
충북	보은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28936]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뱃들4길 11-14	043-544-1388



시도	센터명	주소	연락처
충남	충청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311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66 3~4층 (두정동, 진암빌딩)	041-554-2000
충남	공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2546] 충청남도 공주시 대통1길 57	041-858-1318
충남	금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2726]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1559 다락원 만남의 집 3층	041-751-1383
충남	논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2993]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대로 424 논산시청소년수련관 1층	041-746-5920
충남	당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1772] 충청남도 당진시 무수동7길 142-26	041-360-6963
충남	보령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3466] 충청남도 보령시 문화원길 9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 3층	041-936-3893
충남	부여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3149]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의열로 43	041-837-1898
충남	서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1967] 충청남도 서산시 서령로 136 서산문화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3층(동문동)	041-660-2255
충남	서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3644]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서천향교길 3, 2층	041-953-9799
충남	아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1513] 충청남도 아산시 시장길 29 시민문화복지센터 303호	041-541-0039
충남	예산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2423]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빗꽃로 214 예산군청소년수련관 내 2층	041-335-5700
충남	청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3339]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187 청양군문화의집 3층	041-940-4803
충남	태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2140]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199 청소년수련관 1층	041-674-2800
충남	홍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2293]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홍남로744번길 14	041-632-4859
충남	계룡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2829]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문화1로 13 계룡문화예술의전당 3층	042-841-0343
충남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1129]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은행길 15-1 도시창조두드림센터 4층	041-523-1318
전북	전라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5493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46	063-274-1388
전북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508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94, 3층	063-227-1005
전북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4121] 전라북도 군산시 동리2길 7	063-468-2870
전북	익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4621]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32길 32	063-853-1388

시도	센터명	주소	연락처
전북	정읍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6190] 전라북도 정읍시 상동중앙로 14 청소년문화체육관 3층	063-536-1388
전북	남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5749] 전라북도 남원시 총정로 72, 남원시청소년수련관 3층	063-633-1977
전북	김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4378] 전라북도 김제시 요촌길 45 지평선어울림센터 2층	063-545-0112
전북	진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5432]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054-14 청소년수련관 3층	063-432-2388
전북	완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5340]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125 완주군청소년수련관 2층	063-291-3303
전북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5514]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326-34 2층	063-324-6688
전북	장수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5631]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신천로 81 장수군여성청소년문화센터 1층	063-351-2000
전북	임실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5927]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운수로 33-50 임실군청소년문화의집 2층	063-644-3028
전북	순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6047] 전라북도 순창군 장류로 192	063-652-1388
전북	고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6431]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월곡뉴타운1길 11	063-560-8925
전북	부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6305]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81	063-580-4518
전남	전라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30 (전남여성플라자 4층)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061-280-9000
전남	나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8254] 전라남도 나주시 죽림길 34, 2층	061-333-1368
전남	목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8684] 전라남도 목포시 신흥로83번길 14 복지동 2층(옥암동, 목련아파트)	061-272-2546
전남	여수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9739] 전라남도 여수시 고소4길 6-4	061-662-4646
전남	해남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9028]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수성2길 9 (2층)	061-537-1318
전남	장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9327]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37-23, 2층	061-863-1317
전남	진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8927]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진도대로 7195 진도여성플라자 2층	061-540-3156
전남	순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7992] 전라남도 순천시 명말1길 57, 3층	061-749-4232
전남	완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9115]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159번길 41	061-555-1318

시도	센터명	주소	연락처
전남	광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7790]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14 청소년문화센터 2층	061-795-7008
전남	영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7047]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3길 6-10 영광군청소년문화센터 2층	061-353-9188
전남	화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8114]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광덕로 231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2층	061-375-7444
전남	영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8418]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로 1511, 2층	061-470-1004
전남	고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9535]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793 청소년문화의집 2층	061-830-6652
전남	보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9453]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281-7	061-853-1381
전남	강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9233]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영랑로1길 10 강진복지타운 3층	061-432-1387
전남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7341]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중앙로 83, 2층	061-381-9845
전남	무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8517]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공항로 347-83	061-450-5508
전남	장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7222]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문화로 110 장성군청소년수련관 별관	061-393-1388
전남	곡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7504]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리문리 205 옥과청소년문화의집 5층	061-363-9586
전남	함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7149]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154	061-323-9995
전남	구례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7636]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로 508 청소년문화의 집 2층	061-782-0882
전남	신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8824]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보건소동 3층	061-240-8704
경북	경상북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36708] 경상북도 안동시 축제장길 20 [옥야동, 398-22번]	054-850-1000
경북	경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8627] 경상북도 경산시 서상길 75, 2층	053-815-4105
경북	경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8088] 경상북도 경주시 알천북로 131	054-760-7740
경북	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6073]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 63	054-639-5865
경북	영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8844] 경상북도 영천시 운동장로 92 체육시설사업소 2층	054-338-2000
경북	포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760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호로 533 청소년수련관	054-240-9140

시도	센터명	주소	연락처
경북	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9570] 경상북도 김천시 다삼로 3	054-431-2009
경북	구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9221]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중앙로11길 13	054-472-2000
경북	문경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6949] 경상북도 문경시 중앙로 50	054-550-6600
경북	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7159] 경상북도 상주시 북상주로 24-42 (계산동, 상주시청소년수련관 1층)	054-534-8047
경북	울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6324]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대나리항길 2 고우이청소년수련관 2층	054-783-8284
경북	청송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7433] 경상북도 청송군 청송읍 금월로 244-30 청소년수련관 2층 상담센터	054-870-6696
경북	의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7331]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충효로 68	054-830-6947
경북	칠곡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9885]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2번도로길 83, 3층	054-971-0419
경북	청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8333]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령로 1846 청소년수련관 3층	054-373-1611
경북	예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6708]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393	054-650-8237
경북	성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40025]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4길 25 성주군민회관 1층	054-931-1397
경북	안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6708] 경상북도 안동시 축제장길 42번지 안동시청소년수련관 2층	054-841-7933
경북	봉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6238]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내성로1길 17-20 (봉화군청소년센터 2층)	054-673-1231
경북	고령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40138]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30 대가야문화누리 4층	054-956-1384
경북	영덕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6427]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강변길 324	054-730-7371
경북	군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39013]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158 군위국민체육센터 3층	070-4922-8001
경남	경상남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5113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45번길 59 경남대표도서관 청소년관 3층, 4층	055-711-1388
경남	창원시창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	[51412]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두대로 97 늘푸른전당 3층	055-225-3901
경남	창원시마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1358]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28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별관 2층	055-225-7299
경남	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2686] 경상남도 진주시 북장대로6번길 9, 1층 (인사동)	055-749-6222

시도	센터명	주소	연락처
경남	창원시진해청소년상담복지센터	[51629]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101 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2호	055-225-6812
경남	통영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3078] 경상남도 통영시 발개로 194 통영시청소년수련원 3층	055-641-0079
경남	사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2561] 경상남도 사천시 문선4길 23 청소년수련관 3층	055-832-7942
경남	김해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0912]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176번길 3	055-330-4635
경남	김해서부청소년상담복지센터	[51016]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2로 210 김해서부문화센터 2층	055-340-7181
경남	밀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0436]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송림길 26 밀양시청소년수련관 2층	055-352-7942
경남	거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3246] 경상남도 거제시 중곡로 46 고현청소년문화의 집 2층	055-639-4981
경남	양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0620] 경상남도 양산시 양주3길 36 양산시청소년회관 2층	055-392-2596
경남	의령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2151]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의령대로 1577-25 청소년문화의집 2층	055-570-4972
경남	함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2046]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1길 10 [청소년수련관 2층, 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5-583-0924
경남	창녕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0332]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화왕산1로 46, 5층	055-533-4288
경남	고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2932]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교사4길 13 청소년문화의집 3층	055-670-2920
경남	남해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2419]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 종합사회복지관 3층	055-860-3885
경남	하동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2326]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72 하동군청소년수련관 3층	055-880-6039
경남	산청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2226]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웅석봉로 92 산청군청소년수련관 2층	055-970-6591
경남	함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0034]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함양여중길 10 함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층	055-960-5157
경남	거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013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100-30 거창군청소년수련관 3층	055-940-8860
경남	합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50231]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옥산로 96-5	055-930-3911

시도	센터명	주소	연락처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632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남로7길 4, 2층	064-759-9950
제주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6359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94, 3층	064-763-9190
제주	제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6309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녕로 39, 3층	064-725-3799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0024}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로 108, 2층	044-867-2000

자료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2020).

## 부록 6

## 지방자치단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현황

(2020년 11월 기준)

시도명	센터 명칭	센터 주소	연락처
서울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02-849-0404
부산	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48792]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11	051-852-3461~2
대구	대구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41934]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81길 66-5	053-659-6210
인천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21556]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69 (구월동 경인일보사), 3층	032-833-8057~9
광주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61477]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226번길 13-3번지 흥사단회관 2층	062-234-0755~6
대전	대전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35204]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201(만년동) 평송청소년문화센터 3층	042-488-0924
울산	울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44660]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 84 가족문화센터 A동 3층	052-227-0606~7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30026] 세종특별자치시 마음로 284, 2층	044-864-7935
경기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1630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55, 2층	031-232-9383~5
강원	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26428]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89 원주시민복지센터 4층	033-731-3704
		[25474]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72-21 강릉시청소년수련관 2층	033-641-3990
충북	충청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28516]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3 충북도청 제3별관	043-220-6821~2
충남	충청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311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66, 4층 (두정동 진암빌딩)	041-554-2000
전북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5499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264 JK사이언스 2층	063-232-0479
전남	전라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30 전남여성가족재단 4층	061-280-9002
경북	경상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36708] 경상북도 안동시 축제장길 20	054-850-1004
경남	경상남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5113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45번길 59 청소년관 3층	055-711-1355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632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남로7길 4 (이도2동)	064-751-5041~3

자료 : 각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홈페이지(2020).

## 부록 7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현황

(2020년 12월 기준)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서울	서울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4543]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1길 23, 7층	02-2285-1318
서울	용산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4316]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 329 용산꿈나무종합타운 4층	02-706-1318
서울	광진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507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 4동 13-28 자양공공힐링센터 3층	02-2205-2300
서울	동대문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258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2길 23-9 신설동복지지원센터 2층	02-2237-1318
서울	중랑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2254]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217	02-490-0222
서울	성북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28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242 성북아동청소년센터 4층	02-3292-1785
서울	강북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1012]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74 강북청소년수련관 3층 강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6715-6665
서울	도봉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1412]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9길 132 창동문화체육센터 1층 도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6956-4505
서울	노원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1638]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115길 8 5층(성원빌딩)	070-4290-6484
서울	은평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3476]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4길 16, 1층	02-384-1318
서울	서대문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367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30길 45-9, 3층	02-3141-1388
서울	마포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4016] 서울특별시 마포구 희우정로 77 상가동 마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6376-9911
서울	강서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7647]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42길 23-19 강서청소년회관 3층	02-3662-1388
서울	구로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8256]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 949 구로청소년문화의집 3층	02-863-1318
서울	금천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8645]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30길 54	02-803-1873
서울	영등포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736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영로22길 36 해광빌딩 2층	02-2637-1318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서울	동작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2층	02-834-1358
서울	관악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879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34길 73 싱글벙글교육센터 벙글동 4층	02-877-9400
서울	서초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670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5길 11, 2층	02-525-9128
서울	강남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6362)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144, 2층 상담복지센터	02-2226-8555
서울	송파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5807)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14길 7, 2층	02-3402-1318
서울	중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4596)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5길 19, 2층	02-2250-0543
서울	강동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5211)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93길 47, 2층 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6252-1388
서울	성동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4750)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60 시립성동청소년센터 성동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2-2296-1318
서울	양천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7991)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43, 2층 양천구 청소년지원센터	02-2645-1318
서울	종로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03090)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길 124	02-762-1318
부산	부산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724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전로 43, 6층 꿈드림 사무실	051-304-1318
부산	영도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9113) 부산광역시 영도구 절영로 321	051-405-5224
부산	부산진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405번길 85, 2층	051-868-0905
부산	동래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7710)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523 SK허브스카이 A3동 06호	051-555-1389
부산	부산 서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9206) 부산광역시 서구 시약로 125	051-714-0701
부산	부산 남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849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24, 5층	051-621-4831
부산	부산 북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6579)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로 3	051-334-3003
부산	부산 중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8954)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길 39-2, 3층	051-245-1388
부산	해운대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808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 151-21 해운대청소년수련관 4층	051-715-1377
부산	사하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9412)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매로 161, 1층	051-207-7179
부산	금정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6267)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찰로96번길 47	051-714-2079
부산	부산 강서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6700)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63번길 31	051-972-4595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부산	연제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7525)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시아드대로46번길 45	051-507-7658
부산	수영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8308)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521번길 77 청소년문화의집 3층	051-759-8422
부산	사상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6931)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상로 129	051-316-2214
부산	기장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6069)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서로 86 (대라다목적도서관 4층)	051-792-4927
부산	부산 동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8723) 부산광역시 동구 범곡로 9, 3층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051-632-1388
대구	대구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2429)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 45, 1층	053-431-1388
대구	대구 중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1919)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541, 8층	053-422-2121
대구	대구 동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1155)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16길 20, 2층	053-963-9400
대구	대구 서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1770)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222, 3층	053-216-8310
대구	대구 남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2452)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64 대구YWCA 3층	053-652-5656
대구	대구 북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1516)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71-17 북구청소년회관 2층 207호	053-384-6985
대구	수성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2027)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1, 5층	053-666-4207
대구	달서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2609) 대구광역시 달서구 계대동문로11길 33	053-592-1377
대구	달성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2985)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252	053-614-1389
인천	인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2573) 인천광역시 동구 박문로 1, 1층	032-721-2320
인천	인천 중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2309)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72번길 25 동인천동 행정복지센터 3층	032-765-1009
인천	인천 동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2543) 인천광역시 동구 솔빛로 82, 3층	032-777-1383
인천	인천 미추홀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213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82, 5층	032-868-9846
인천	연수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1913)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429, 4층	032-822-9840
인천	남동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152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70, 3층	032-453-5876
인천	부평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1387)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37번길 1, 3층	032-509-8910
인천	계양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1026)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937	032-547-0853
인천	인천 서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2771)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7번길 12 가좌청소년문화의집 2층	032-584-1387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광주	광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61985)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179번길 63, 2층	062-376-1324
광주	광주 동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61502) 광주광역시 동구 지원로 34, 1층	061-673-1318
광주	광주 서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62048)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278 국민생활관 2층 213~215호	062-710-1388
광주	광주 남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61727)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693	062-716-1324
광주	광주 북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61132) 광주광역시 북구 대천로 86, 1층	062-268-1318
광주	광산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62359)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46-7(우산동) 101동 2층	062-951-1378
대전	대전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4630)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천동로 508 청소년위캔센터 6층 꿈드림	042-222-1388
대전	대전 서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5334) 대전광역시 서구 도솔로 72, 3층	042-527-1388
대전	유성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4166)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798-1, 2층	042-826-1388
울산	울산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4532) 울산광역시 중구 강북로 105 롯데캐슬 스카이 2층	052-227-2000
울산	울산 남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4692)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 106, 3층	052-291-1388
울산	울산 동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4011) 울산광역시 동구 남목9길 13, 4층	052-232-5900
울산	울산 북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4224) 울산광역시 북구 제내1길 6 나운빌딩 4층	052-281-0924
울산	울주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5001)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남로 5, 3층	052-229-9635
세종	세종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0024)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로 108 세종조치원금융센터 2층	044-868-1318
경기	경기도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650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6 (이의동, 광교비즈니스센터) 105호	031-253-1519
경기	수원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6486)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93 수원청소년문화센터 B1층	031-236-1317
경기	성남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343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997번길 25-9 삼성빌딩 2층	031-729-9171
경기	의정부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1714)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155-1 장수원어린이집 3층	031-828-9571
경기	안양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3997)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263번길 31	031-8045-5012
경기	부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4727)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92번길 33 송내어울마당 5층	032-325-3002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경기	광명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4214) 경기도 광명시 연서일로 10	02-6677-1318
경기	평택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7903)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616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4층	031-646-5480
경기	동두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1362)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로 95 동두천청소년수련관 3층	031-865-2000
경기	안산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5387)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초로 76, 4층	031-414-1318
경기	고양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051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633번길 25 토당청소년수련관 2층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970-4032
경기	과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3828) 경기도 과천시 참마울로 9, 1층	031-2150-3991
경기	구리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1934)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32-1, 1층	031-565-1388
경기	남양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2244)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51-47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 2층	031-590-3951
경기	오산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8136)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278번길 3, 2층	031-372-4004
경기	시흥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4914)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 179 별관 1층 (대야동, 청소년수련관)	031-318-7100
경기	군포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5823)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112 군포책마을 슬기관 2층	031-399-1366
경기	의왕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6077) 경기도 의왕시 문화공원로 33 의왕시청소년수련관 3층	031-459-1334
경기	하남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2919)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111 하남시청소년수련관 2층	031-790-6314
경기	용인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701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61번길 69-2	031-328-9840
경기	파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0915) 경기도 파주시 금릉역로 85 금릉역사 2층	031-946-1771
경기	이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7371) 경기도 이천시 영창로 260, 3층	031-634-2777
경기	안성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7562)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길 46	070-7458-1312
경기	김포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0099) 경기도 김포시 결포로 76	031-980-1691
경기	화성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8313) 경기도 화성시 진동1길 47-2 덕수빌딩 2층	031-278-0179
경기	광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2779) 경기도 광주시 회안대로 350-17 광주시청소년수련관 4층	031-762-1318
경기	양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1492) 경기도 양주시 고읍남로 205 양주시청소년문화의집 2층	031-8082-4121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경기	포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1184)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523번길 59-56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내 2층 청소년상담복지센터	031-538-3398
경기	여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2636) 경기도 여주시 신륵사길 6-8	031-882-8889
경기	가평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2416)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문화로 120	031-582-2000
경기	양평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12556)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 183 삼진빌딩 3층	031-775-1317
강원	강원도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4241)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 167	033-257-9805
강원	원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6475]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234 원주시청소년수련관 이음관 3층 꿈드림센터	033-813-1318
강원	강릉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5474] 강원도 강릉시 종합경기장길 72-21, 2층	033-646-7942
강원	동해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5759] 강원도 동해시 천곡2길 8	033-535-1038
강원	속초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4867] 강원도 속초시 관광로363번길 14	033-635-0924
강원	홍천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5131]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산림공원2길 31	033-432-1386
강원	영월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6237]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제방안길 100	033-375-1328
강원	정선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6150] 강원도 정선군 사복읍 사복6길 12-6	033-591-1311
강원	철원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4037]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명성로139번길 52	033-450-5388
강원	춘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4400]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외솔길19번길 45	033-818-1318
강원	삼척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5919] 강원도 삼척시 엑스포로 50-1, 3층	033-575-5002
강원	태백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6044] 강원도 태백시 태백로 1663	033-582-1389
충북	충청북도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8509)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3, 3층	043-257-0105
충북	청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8543]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앙로 30, 7층 (청하빌딩)	043-223-0753
충북	청주시 서청주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8436]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351번길 56	043-264-8807
충북	충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7411] 충청북도 충주시 중원대로 3324	043-842-2007
충북	제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7153]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대로12길 4, 2층	043-642-7939
충북	보은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8936]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뱃들4길 11-14	043-542-1388
충북	옥천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9040]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39 청소년수련관 1층	043-731-1388
충북	영동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9149]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성안길 8	043-744-5700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충북	증평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7948]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보건복지로 64-2 증평군청소년수련관 2층	043-835-4193
충북	진천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7832]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포석길 37-10	043-536-3430
충북	괴산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8026]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6길 20-9	043-834-7945
충북	음성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7702]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음성천동길 122	043-872-9024
충북	단양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27012]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삼봉로 187-18 청소년수련관 2층	043-421-8370
충남	충청남도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1100]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66 진암빌딩 3층	041-554-1380
충남	천안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1123]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먹거리 11길 45	041-415-1318
충남	공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2546] 충청남도 공주시 대통1길 57	041-854-7942
충남	보령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3466] 충청남도 보령시 문화원길 9, 3층	041-935-1388
충남	아산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1513] 충청남도 아산시 충무로 31 동성빌딩 6층	041-544-1388
충남	서산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1967] 충청남도 서산시 서령로 136 청소년수련관 3층	041-669-9056
충남	논산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2993]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대로 424 청소년수련관 1층, 논산시청소년지원센터	041-746-5935
충남	계룡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2829]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문화로 31 계룡문화예술의전당 3층	042-551-1318
충남	당진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1772] 충청남도 당진시 무수동7길 142-26	041-357-2000
충남	금산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2726]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금산로 1559 다락원 만남의 집 3층	041-751-1383
충남	서천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3644]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서천향교길 3, 2층	041-953-4040
충남	청양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3339]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187 청양청소년문화의집 3층	041-940-4810
충남	홍성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2293]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홍남로744번길 14	041-642-1388
충남	예산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2423]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214	041-335-1388
충남	태안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2140]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199 태안군청소년수련관내 1층	041-674-2800
충남	부여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3149]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의일로 43	041-837-1898
전북	전라북도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493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46	063-274-1388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전북	전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508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 94, 3층	063-227-1005
전북	군산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4121] 전라북도 군산시 동리2길 7 청소년지원센터	063-468-2870
전북	익산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4621]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32길 32 여성회관 1층	063-852-1388
전북	정읍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6190] 전라북도 정읍시 상동중앙로 14	063-531-3000
전북	남원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5749] 전라북도 남원시 충정로 72 남원시청소년수련관 3층	063-633-1977
전북	김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4378] 전라북도 김제시 요촌길 45 지평선어울림센터 2층	063-545-0112
전북	완주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5340]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125	063-291-3303
전북	무주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5514]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326-34 2층	063-324-6688
전북	순창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6047]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192	063-652-1388
전남	전라남도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8726] 전라남도 목포시 북교길 22, 3층	061-242-7474
전남	목포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8684] 전라남도 목포시 신흥로83번길 14-1 목련아파트 복지동 1층	061-284-0924
전남	여수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9739] 전라남도 여수시 고소4길 6-4	070-8824-1318
전남	순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7992] 전라남도 순천시 명말1길 57, 3층 순천시청소년문화의집	061-749-4236
전남	나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8254] 전라남도 나주시 죽림길 34, 2층	061-335-1388
전남	광양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7790] 전라남도 광양시 광장로 14 청소년문화센터 2층	061-795-7953
전남	담양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7341]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중앙로 83 담양청소년문화의집 2층	061-381-0924
전남	곡성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7504]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리문5길 11-5	061-363-9586
전남	보성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9453]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 281-7	061-853-1377
전남	강진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9233]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영랑로1길 10 복지타운 308호	061-432-1388
전남	해남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9028]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수성2길 9, 2층	061-535-1315
전남	무안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8517]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공향로 347-83	061-450-5527
전남	함평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7149]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154	061-323-9995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전남	영광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7045) 전라남도 영광읍 영광읍 중앙로 119, 1층	061-353-6188
전남	장성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7222)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문화로 110 청소년수련관 별관 노란원형건물 1층	061-393-1387
전남	신안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8827)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보건소동 1층	061-240-8702
전남	화순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8114) 전라남도 화순군 광덕로 231	061-375-7443
전남	장흥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9327)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흥성로 37-23	061-863-1318
전남	영암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8418)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영암로 1511, 2층	061-470-6773
전남	구례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7636) 전라남도 구례군 구례읍 구례로 508	061-782-0882
전남	진도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8926)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진도대로 7195	061-540-3156
전남	완도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9115)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159번길 41	061-555-2323
경북	경상북도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6708) 경상북도 안동시 축제장길 20	054-850-1003
경북	포항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760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호로 533	054-240-9140
경북	경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8088) 경상북도 경주시 알천북로 131	054-760-7744-5
경북	김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9570) 경상북도 김천시 다삼로 3	054-431-2009
경북	안동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6708) 경상북도 안동시 축제장길 42 안동시청소년수련관 2층	054-841-7937
경북	구미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9221)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중앙로11길-13	054-472-2000
경북	영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6073)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 63 영주청소년문화의집 2층	054-639-5865
경북	영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8844) 경상북도 영천시 운동장로 92 체육시설사업소 2층	054-338-2000
경북	상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7159) 경상북도 상주시 북상주로 24-42	054-537-6724
경북	문경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6949) 경상북도 문경시 중앙로 50, 3층	054-556-6600
경북	경산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8627) 경상북도 경산시 서상길 75 경산문화원 2층	053-815-4105
경북	칠곡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9885)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2번도로길 83, 3층	054-971-0425
경북	고령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40138)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30 문화누리 4층	054-956-1320
경북	봉화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6238)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내성로1길 17-20	054-674-1318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경북	울진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36324]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대나리항길 2 고우이청소년수련관 2층 상담실	054-789-5436
경남	경상남도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1151] 경상남도 창원시 사림동45번길 59 경남대표도서관 4층	055-711-1336
경남	창원시 창원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1412]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두대로 97 늘푸른전당 3층	055-225-3907
경남	창원시 마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1358]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28 별관 2층	055-225-7292
경남	창원시 진해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1629]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1101번길 203호	055-225-3893
경남	진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2686] 경상남도 진주시 북장대로6번길 9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층	055-749-7939
경남	통영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3078] 경상남도 통영시 발개로 194, 3층	055-644-2000
경남	사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2561] 경상남도 사천시 문선4길 23 청소년수련관 3층 상담복지센터 사무실	055-832-7942
경남	김해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0912]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176번길 3	055-324-9190
경남	밀양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0436] 경상남도 밀양시 삼문송림길 26 청소년수련관 2층	055-352-0924
경남	거제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3246] 경상남도 거제시 중곡로 46 고현청소년문화의집 2층	055-639-4980
경남	양산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0620] 경상남도 양산시 양주3길 36, 2층	055-367-1318
경남	의령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2151]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8길 44 종합사회복지관 3층	055-570-4972
경남	함안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2046]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말산1길 10	055-583-0921
경남	고성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2932]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교사4길 13 청소년문화의집 3층	055-670-2921
경남	남해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2419]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 종합사회복지관 3층	055-864-7962
경남	하동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2326]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72 청소년수련관 2층	055-884-3001
경남	산청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2226]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응석봉로 92 산청군청소년수련관 2층	055-970-6591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경남	함양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0031)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필봉산길 55, 3층	055-963-7922
경남	거창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0130)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100-30 청소년수련관 3층	055-940-3969
경남	합천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50231)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옥산로 96-5	055-930-3909
경남	창녕군 청소년상담센터 꿈드림	(50332)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화왕산1로 46, 창녕군청소년수련관 5층	055-532-2000
제주	제주도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6321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마로 152, 2층	064-759-9982
제주	서귀포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6359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94, 3층	064-763-9191
제주	제주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6309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녕로 39, 3층	064-725-7999

자료 : 여성가족부(2020).

● 가족치유캠프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주관하는 것으로, 인터넷 과의존 청소년 가족치유캠프와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가족치유캠프가 있다. 이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문제로 인하여 학업이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4~6학년 초등학생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2박 3일간 진행되는 캠프이다. 가족치유캠프에서는 가족 간 소통·친밀감 향상과 올바른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지도를 위한 상담지원(집단상담, 가족/부모교육, 심리검사), 활동지원(체험활동, 대안활동), 생활지원(멘토링, 숙식제공), 사후관리지원(사후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한다.

● 경제활동인구

(經濟活動人口,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일정 연령 이상의 인구 가운데 노동 능력이나 노동 의사가 있어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과 같은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인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만 15세 이상의 인구 중 학생, 주부, 환자 등 노동 능력이나 노동 의사가 없는 사람을 제외한 인구이며,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함한다.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教育福祉于先支援事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사업대상학생(「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수급권자, 법정 차상위 계층의 자녀, 법정 한부모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다문화가족의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그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 중에서 사업 학교의 장이 상담 등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학생에게 필요에 맞는 학습, 문화체험, 심리치료, 복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복지 프로그램은 특기적성 프로그램, 개별 학생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현물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학교 및 학교 주변에 교육환경위생에 지장이 있는 행위 및 시설을 제한한 지역을 말하며 쾌적하고, 명량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육부'에서 지정하고 있다.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구분되는데, 절대보호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을 의미하고,

상대보호구역은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 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의미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國民基礎生活保障受給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에 대하여 최저생계비와 가구 소득의 차액을 보충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 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며, 조건 불이행시 생계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 국제금장총회(International Gold Event : IGE)

영국의 에든버러 공작과 교육학자들이 고안한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 활동을 통해 금장을 포상 받은 청소년 중 20~35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리더십 연수 프로그램으로 매 3년마다 개최되며 한국이 주최한 2014년에는 40개국에서 100명의 금장 포상 청소년인 차세대 리더들이 참석해 자신의 포상활동 경험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The Duke of Edinburgh's International Award)

만 14~24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신체단련, 자기개발, 봉사활동 및 탐험활동을 통해 체계적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제적 청소년 자기성장 프로그램으로 1956년 영국에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143개 국가에서 운영 되고 있다.

● 국제학업성취도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 PISA)

국제학업성취도평가는 만 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소양 수준 파악 및 소양 수준에 영향을 주는 배경변인과의 연계 분석을 통해 각국 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지식을 상황과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강조하는 평가로 평가 주기는 3년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의무교육이 종료 되는 시점인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 **기소유예제도(起訴猶豫制度)**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에 따라 검사가 공소(公訴)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소송 조건을 구비하여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있는 경우라도 범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피해자와의 관계범행 동기수단 결과범죄 후의 정황 등 사황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제도이다.

● **꿈드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세상으로 나온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당당하게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청소년 공간’으로, 학교 밖에서 학업을 희망하거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기를 원하는 등,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싶은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꿈’과 ‘드림(Dream)’의 합성어로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드린다는 의미

● **내일이름학교**

내일이름학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근거로 청소년의 성공적인 사회진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내일이름학교는 ‘청소년의 내일(미래 또는 나의일)을 이룬다’는 의미로 학교밖청소년, 비진학청소년, 청소년한부모, 가출청소년 등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직업훈련프로그램이다.

● **다문화 중점학교**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 학생이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서로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다문화 감수성 제고, 다문화 이해, 반(反)편견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학교로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다.

● **드림스타트(Dream Start)**

드림스타트의 시초는 학대, 방임 아동이 증가하는 가운데 아동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06년 20개 보건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아동보호 보건복지 통합서비스이다. 2007년 희망스타트라는 이름으로 16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08년 사업명을 ‘희망스타트’에서 ‘드림스타트’로 변경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레드존(Red Zone)**

윤락가나 유흥가, 숙박업소 밀집지역 등 청소년의 범죄비행 탈선 위험이 있는 유해환경에 청소년이 접근하거나 출입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정된 구역을 일컫는 말이다. 레드존은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이라는 명칭으로 명시되어 있다.

●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 Treaty)**

1992년 2월 7일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유럽 공동체 가입국이 서명하고 1993년 11월 1일부터 발표된 조약으로 유럽 연합의 기초가 되는 조약이다. 유럽중앙은행 창설과 단일통화사용의 경제 통화 동맹, 노동조건 통일의 사회부문, 공동방위정책, 유럽시민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명목임금(名目賃金, Nominal Wage)**

현행 구매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임금으로, 명목임금은 생활용품 구입량이 물가변동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즉, 가격이 오르면 생활용품의 구입이 줄고 가격이 내리면 구입량이 증가하므로 이것으로는 생활 실태 변화의 파악이 어렵다.

● **명예경찰소년단**

명예경찰소년단은 경찰, 학교, 선도단체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스스로가 각종범죄 및 제반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봉사활동과 교통질서 등 기초질서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초등학교 4학년~6학년과 중학생 중에서 선발하는 제도이다. 명예경찰소년단은 경찰서에서 호신술을 배우는 명예경찰 무도학교, 경찰관서 치안시스템 견학, 지역경찰관과 합동순찰 등 현장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내에서도 학교폭력예방활동, 교통질서·기초질서 캠페인, 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 **방과후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활동으로, 학교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교육활동을 말한다.

● **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 상 ‘보호대상아동’을 의미한다.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 말로,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이다. 브렉시트는 2020년 1월 31일 단행됐고, 2020년 12월 24일 브렉시트 전환 기간 종료를 일주일여 앞두고 양측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비롯한 미래관계 협상 타결을 완료했다.

## ● 사랑의교실

폭력, 절도 등 범죄나 비행으로 인해 경찰조사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을 선도하여 재비행 방지를 위한 맞춤형 선도 프로그램이다. 보호자와 청소년이 사랑의 교실 입교에 동의한 경우에 해당경찰관서에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전문선도기관에 의뢰하여 다양한 인성교육 및 재범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 ● 산학협동(産學協同)

학계와 산업계가 교육의 성과를 높임과 동시에 산업경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는 것으로, 자매결연·협정 등의 방법을 통해 서로 연계함으로써 학생들을 산업체에 파견하여 현장실습 경험을 얻게 하거나 학계와 산업계 인사가 상호 교류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 연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산업계 자원인사들의 교육 참여 등 각종 인적·물적 교류 관계가 모두 이에 포함된다.

## ● 새천년개발목표

###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 MDGs)

2000년 9월, 뉴욕 국제연합 본부에서 개최된 밀레니엄 서밋에서 채택된 빈곤 타파에 관한 범세계적인 의제이다. 당시에 참가했던 191개의 국제연합 참여국은 2015년까지 빈곤의 감소, 보건, 교육의 개선, 환경보호에 관해 지정된 8가지 목표를 실천하는 것에 동의 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① 극심한 빈곤과 기아 퇴치, ② 초등교육의 완전보급, ③ 성평등 촉진과 여권 신장, ④ 유아 사망률 감소, ⑤ 임산부의 건강개선, ⑥ 에이즈와 말라리아 등의 질병과의 전쟁, ⑦ 환경 지속 가능성 보장, ⑧ 발전을 위한 전 세계적인 동반관계의 구축을 들 수 있다.

## ●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서는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다른 신고의무 대상시설의 운영자,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 소년·소녀가장

부모의 사망, 이혼, 질병, 심신장애, 가출 등으로 인해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구)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가정을 말한다.

## ● 소년법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여기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의미한다.

## ●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 (Devotion to Best Interests of the Child)

무차별 원칙, 생존과 발달의 권리 원칙, 어린이 의견 존중 원칙과 함께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이 되는 원칙이다. 동법 제3조에서는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행정·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모든 아동 관련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도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아동보호전문기관(Child Protection Agency)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법률 제6261호, 2000. 2. 3., 제정).

## ● 아동학대(兒童虐待, Child Abuse)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 아웃리치(Outreach)

일반적으로는 보다 넓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 아웃리치는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기다리기 보다는 직접 현장에 나가 그들에게 도움과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여러 이유로 인해 복지 기관이나 상담소를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실시하는 구제지원활동을 말한다. 한 예로, 노숙인 지원 단체나 청소년 단체 등에서도 직접 거리로 나가 노숙인이나 청소년을 만나 상담활동을 전개한다.

## ● 우범소년(虞犯少年)

죄를 범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성격이나 환경으로 보아 장차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일컫는다. 우범소년에 대하여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본인을 보호교도 개선시키기 위하여 형사정책적으로 보안처분(보호처분)을 과하는 것이 세계 각국의 예로 되어 있다. 한국의 소년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품행의 교정(矯正)을 위하여 보호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 유엔 아동권리협약  
(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협약이다. 이 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돼 한국(1991년 가입)과 북한을 포함하여 세계 193개국이 비준했다. 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생명권, 의사 표시권, 고문 및 형벌 금지, 불법 해외이송 및 성착취대금지 등 각종 아동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가입국은 이를 위해 최대한의 입법·사법·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UN SDGs(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는 17가지로 구성되며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된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종료하고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새로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를 의미한다. 인류의 보편적 사회문제(빈곤, 질병, 교육, 여성, 아동, 난민, 분쟁 등), 지구 환경 및 기후변화문제(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문제(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인프라구축, 대내외경제)를 2030년까지 17가지 주요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해결하고자 이행하는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이다.

● 이주배경청소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문화 적응 및 언어 학습 등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 인터넷치유캠프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주관하는 11박 12일의 인터넷중독 기숙형 치료캠프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터넷·스마트폰과 단절된 환경에서 상담 지원, 활동지원, 생활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캠프 종료 후에도 청소년동반자, 멘토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 사후모임을 실시하여 참여 청소년 치유 효과가 지속되도록 돕는다.

● 조사망률(粗死亡率, crude death rate)

1년간의 사망수를 그 해의 인구로 나눈 것으로 보통 1,000배하여 인구 1,000분비로 표시한다. 연령, 계층,

성별, 사인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정정하지 않은 채로 나타낸 사망률을 말한다.

$$\text{조사망률}(\%) = (\text{특정 1년간의 총 사망건수} / \text{당해 연도의 연앙인구}) \times 1,000$$

● 조이혼율(粗離婚率, crude divorce rate)

1년간 발생한 총 이혼건수를 당해 연도의 주민등록에 의한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이다.

$$\text{조이혼율}(\%) = (\text{특정 1년간의 총 이혼건수} / \text{당해 연도의 연앙인구}) \times 1,000$$

● 조출생률(粗出生率, crude birth rate)

특정인구집단의 출산수준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지표로서 1년간의 총 출생아수를 당해 연도의 총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이다.

$$\text{조출생률}(\%) = (\text{특정 1년간의 총 출생아수} / \text{당해 연도의 연앙인구}) \times 1,000$$

● 조혼인율(粗婚姻率, crude marriage rate)

1년간 발생한 총 혼인건수를 당해 연도의 주민등록에 의한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이다.

$$\text{조혼인율}(\%) = (\text{특정 1년간의 총 혼인 수} / \text{당해 연도의 연앙인구}) \times 1,000$$

●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 ADHD)

아동기에 많이 나타나는 장애로, 지속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하여 산만하고 과다활동, 충동성을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증상들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아동기 내내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일부의 경우 청소년기와 성인기가 되어서도 증상이 남게 된다.

● 중도입국 청소년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하여 본국의 자녀를 데려온 경우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 외국인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가 재입국한 청소년의 경우를 말한다.

●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며, 청소년 육성·보호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자문, 시책의 조정 및 평가에 대한 자문,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자문역할 등을 수행한다. 위원회의 성격은 각 시·도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심의기구, 자문기구 등의 성격을 갖는다.



## ●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청소년 정책 전달 체계상의 정책기관으로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주요 사업은 지역청소년활동 요구 조사,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청소년활동 정보 제공, 지역 교육기관과의 연계 및 지원, 지역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신고제 지원 등이다.

##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ty Net : CYS-Net, 청소년안전망)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근거한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상황(학업중단, 가출, 인터넷중독 등)에 빠진 청소년에게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 ●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아동복지이용시설로서, 18세 미만의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 ●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의 소속하에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 및 자문하는 기구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 ● 청소년 기본법(靑少年基本法)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법률 제4477호, 1991. 12. 31., 제정).

##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의 2에 의해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기반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방과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정이나 학교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및 생활관리 등 청소년을 위한 종합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국가 정책사업이다.

##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의거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매체물로 「청소년 보호법」 규정에 따른다. 동법 제7조에 의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심의·결정하는 곳은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다.

## ● 청소년 유해약물

「주세법」에 의한 주류,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환각물질 및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해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약물을 말한다.

## ●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8호에 근거하여 청소년 유해 매체물, 청소년 유해약물 등, 청소년 유해업소 및 청소년 폭력·학대를 말한다.

## ● 청소년(靑少年, Youth)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의거해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는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 청소년동반자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동반자' 사업의 핵심인력으로 가출, 비행·폭력, 학업중단, 성매매 피해 등 심화된 위기 상황에 직면한 청년들에게 찾아가서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전일제 동반자의 경우 주 40시간 근무를 실시하되, 청소년의 시간에 맞추어 저녁, 휴일 등에 탄력적으로 근무한다. 반면 시간제 동반자는 주 12시간 근무하며 이들은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를 근거로 움직이나 실제적인 사무실은 '청소년이 있는 현장'이다.

## ●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매체물(인터넷, 음반, 게임물, 영상물 등) 모니터링 사업이다.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며, 주요 업무로 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 ●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청소년 문화의 집은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 문화, 예술 중심의 수련시설로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운영할 의무가 있다.

● **청소년 보호법(青少年 保護法)**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 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법률 제5297호, 1997. 3. 7., 제정).

●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심의·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구성 되어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青少年福祉 支援法)**

「청소년 기본법」 제49조4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법률 제7164호, 2004. 2. 9., 제정).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청소년 기본법」 제3조4호). 청소년은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인종·종교·성·연령·학력·신체조건 등의 조건에 의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제42조의2에 근거하여 청소년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0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및 212개 시·군·구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 **청소년성문화센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는 전문 기관이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체험형 현장 중심의 성교육장으로 청소년 스스로 자기 주도적, 실천적 체험학습을 통해 올바른 성지식을 습득하게 하도록 하여 건강한 성 가치관을 지닌 개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청소년 수련관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로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청소년 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 및 운영할 의무가 있다.

●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에 따라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계획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참가자가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하는 제도이다.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활동 운영 전반의 안전을 점검하게 되고, 범죄경력자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지도자의 활동 운영을 막을 수 있으며,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수련 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 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 기록을 유지관리제공하는 국가인증제도이다. 국가가 청소년수련활동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인증함으로써 청소년 활동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소년의 교육·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양질의 청소년활동 정책과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청소년활동 정보제공 및 청소년활동 참여 활성화 기능을 하며 자기 계발 및 진로모색 등에 활용 가능한 활동 기록을 관리하고 제공한다.

● **청소년 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제1호에 따라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상담·선도·수련활동,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청소년의 가출 예방을 위한 거리상담지원 활동 등을 주요 업무로 삼고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 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을 법적 근거로 한다.

● **청소년어울림마당**

문화예술, 스포츠 등을 소재로 한 공연, 경연, 전시, 놀이 체험 등 문화체험이 펼쳐지는 장으로 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하고 다양한 지역 사회 자원이 결합된 일정한 공간(상설 공간)을 의미한다.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사업은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활용 육성을 위해 놀이 마당식 체험 공간에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각종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0조, 제61조에 근거하여 각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다.



●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등을 청소년들이 직접 자문평가토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하는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 보호법」 제5조 및 제48조에 의거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청소년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 중인 민간단체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선도·보호와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감시·고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해 감시 및 고발과 청소년유해매체를 모니터링 및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성장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기본법」 제53조에 의거 하여 청소년 육성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육성 기금은 청소년 참여지원,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국립중앙청소년 치료재활센터 운영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청소년육성 기금의 주요 조성 재원은 기금 조성 초기에는 정부출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입액 등이었으나 2020년 현재 경륜 경정사업 법정 분담금과 복권기금전입금으로 조성되고 있다.

● **청소년의 달**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국민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목적으로 제정한 달로, 해마다 5월이다(「청소년 기본법」 제16조). 행사 주관 부처는 여성가족부이며,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청소년단체 및 직장별로 각각 실정에 따라 기념행사를 연다. 행사 내용은 ① 청소년의 문화·예술·수련·체육에 관한 행사, ②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③ 모범 청소년, 청소년 지도자 및 우수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④ 대중 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사, ⑤ 그밖에 청소년 육성에 관하여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등이다.

● **청소년자기도전포상제**

우리나라 「청소년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중 저연령인 만 9~13세(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2학년)의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를 모태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자기개발, 신체단련, 봉사 및 탐험활동 4가지 활동영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자기 스스로 정한 목표를 성취해가며, 숨겨진 끼를 발견하고 꿈을 찾아가는 자기성장 프로그램이다.

● **청소년상담 1388**

청소년의 일상적인 고민 상담부터 가출, 학업중단, 인터넷 중독 등 위기에 이르기까지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전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등 국가자격을 소지하거나 일정기간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상담선생님과 상담이 진행되며,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 **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 기본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청소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 및 제도 개선, 청소년정책분석·평가, 유관부처 간 청소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조정하는 기구이다. 여성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청소년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청장, 여성가족부 차관이 위촉하는 민간 청소년 전문가 등 총 20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된다. 2018년 12월에는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 정수를 20명에서 30명 이내로 변경하고, 청소년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해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시 청소년을 일정비율 이상 반드시 포함도록 하는 방향으로 「청소년 기본법」을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청소년증**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만 9~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어학시험 등 각종 시험과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 대중교통 박물관·공원·미술관·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 요금 적용이 된다. 2017년 1월 11일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되어 대중교통 및 편의점, 베이커리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도 가능하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청소년참여기구이다.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통해 청소년이 청소년정책의 형성·집행·평가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청소년 친화적 정책의 구현이 가능하다.

●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 기본법」 제12조에 의하여 17개 시·도 청소년과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가 토론과 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제안하여 정책화하는 전국 규모의 청소년참여기구이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青少年活動 振興法)**  
「청소년 기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법률 제7163호, 2004. 2. 9., 제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법률 제12700호, 2014. 5. 28., 제정).
- **학교전담경찰관(School Police Officer)**  
각 초·중·고등학교에 배치되어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상담 등을 담당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은 강의로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상담으로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을 선도 및 보호하며 학부모, 교사와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여 학교폭력을 예방 및 근절하는 것이다.
- **학교폭력(學校暴力)**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하여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력,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 모두를 말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법률 제7119호, 2004. 1. 29., 제정).
- **학령인구(學齡人口)**  
학령인구는 교육인구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일차적 요인으로 우리나라 학령인구는 만 6세 이상부터 만 21세 인구, 즉 6~11세는 초등학교 해당 인구이고, 12~17세는 중등학교, 18~21세는 고등교육인구에 해당한다.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국내 청소년단체들의 자발적인 민간협의체로 약칭 '청협(靑協)'이라 한다.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청소년문제에 대한 공동연구, 정보교환, 청소년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며 청소년관련 정부부처, 유관 사회단체, 각급학교 및 세계청소년기구와의 연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활동하고 있다.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국책 상담복지 중추기관으로서 청소년 문제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일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 상담 및 복지와 관련된 정책의 연구, 청소년 상담복지 사업의 개발 및 운영지원, 청소년 상담 기법의 개발 및 상담 자료의 제작보급, 청소년 상담복지 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이 있다.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의해 청소년활동 현장과 정책을 총괄 지원하여 청소년 육성을 지원하고자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주요 정책지원 사업으로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인증하고 그 기록을 유지·관리·제공하는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과 기록 관리, 청소년들이 신체단련·자기개발·자원봉사·탐험활동을 고르게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꿈과 끼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 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지원 및 안전 관련 컨설팅 홍보, 국내·외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교류활동의 진흥 및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활동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국립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과 청소년지도자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다.
- **합계출산율**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특히 출산력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지표로서 일반적으로 연령별 출산율의 합으로 계산된다.
- **Wee센터**  
Wee는 We(우리들)와 education(교육), emotion(감성)의 합성어로,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다종의 통합 지원 서비스망이다.

# 2020 청소년백서 편집위원 및 집필진, 감수자 명단

## 기획·편집

<b>이남훈</b>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장	<b>전재은</b>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전문위원
<b>하형석</b>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b>권은비</b>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 집필진(부처별)

<b>최성유</b>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b>이남훈</b>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장
<b>장석준</b>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장	<b>양종윤</b>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장
<b>김은형</b>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장	<b>김애영</b>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장
<b>김성벽</b>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	<b>김성철</b>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장
<b>이정연</b>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b>유성렬</b>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b>장여옥</b>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교수	<b>임성은</b>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b>이정아</b>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분석센터 부연구위원	<b>한수연</b>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정보분석센터 연구원
<b>김 혁</b>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b>하형석</b>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b>권은비</b>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b>전원호</b>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사무관
<b>이동형</b>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주무관	<b>이하림</b>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주무관
<b>박혜진</b>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주무관	<b>박호진</b>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주무관
<b>정예선</b>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사무관	<b>박대선</b>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사무관
<b>김서영</b>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연구사	<b>김혜미</b>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연구사
<b>김서아</b>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연구사	<b>김상민</b>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연구사
<b>임경미</b>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정책사업2부 대리	<b>최정욱</b>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정책사업2부 대리
<b>정일용</b>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폭력예방부 담당		

## 감수진(가나다순)

<b>김진호</b>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교수	<b>이광호</b>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b>조아미</b>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 2020 청소년백서

---

발행인 | 정영애  
발행처 | 여성가족부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기 획 |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전 화 | 02-2100-6000  
인 쇄 | (사)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  
발행일 | 2020. 12.  
발간등록번호 | 11-1383000-000102-10

[www.mogef.go.kr](http://www.mogef.go.kr)

---